2023

법무 연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2024

法務年鑑

법무부

2023

법무 연감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2024

국가비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법무행정비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 전경



법무부 간부 일동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지난 한 해 동안 법무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민생범죄 및 주요 경제범죄에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민생을 파괴하는 전세사기에 대하여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였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전국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과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설치하였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를 엄단하였고, 보이스피싱과 국가재정범죄에 대해서도 전담수사부서를 운영하며 수사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둘째, 마약·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신설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재활팀' 신설과 전담교정시설 운영을 통해 마약류 사범 치료·재활을 강화하였으며,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잠정조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중대범죄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머그샷' 촬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국익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을 시행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전면 도입하는 등 해외 우수 자원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책임있게 대처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복잡해지는 국제법무 이슈와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여 정부부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65년 만의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 등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친화적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공익 수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친권상실·성년후견 등에 관여하는 '공익대표전담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교정시설을 현대화하고 '장소변경접견제도'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썼고, 개방형 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외국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2023년 법무연감이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법무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믿음직한 법질서의 수호자이자 든든한 인권의 보루로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법무부장관

2023 법무행정일지

1월

- 1. 1. •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1. 2. • 장·차관, 정부시무식 참석
  • 법무부 시무식
- 1. 5. •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1. 6. •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현판식
- 1. 9. • 차관,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이전 기념식 참석
- 1. 10. • 차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원회 참석
- 1. 11. •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 1. 12. • 차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참석
- 1. 13. •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개최
- 1. 17. • 설 명절맞이 안양의 집·평화의 집 사회복지시설 위문
- 1. 18. • 차관, 미 국무부 인신매매 대사 면담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 20. • 차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 1. 26. •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1. 30. • 장관, 주한 미국대사 접견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1. 31. • 장관, 주한 외교단 초청 신년 인사회 참석

2월

- 2. 2. • 장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합동 브리핑
- 2. 6. • 신임검사 임관식
- 2. 8. • 장관,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 차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 관련 인터뷰
- 2. 10. • 장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접견
  • 차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책현장 방문
- 2. 14. • 장관, 몽골 총리 접견
- 2. 16.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2. 17. • 형사·법무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차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 2. 20. • 장관,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접견
- 2. 22.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2. 23. • 차관,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회장 접견
- 2. 24.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2. 27. • 법무시설건축협의회 개최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2023 법무행정일지

3월

- 3. 1. • 장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 3. 2. • 차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참석
- 3. 3. • 차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참석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
- 3. 6. • 장관, 법원행정처 차장 접견
  • 정기 직제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3. 17. • 2023년 법무부 국민기자단 해단·위촉식
- 3. 22.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3. 23. •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3. 27. • 차관,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 참석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3. 28. • 차관, 한·일 형사사법협력 실무회의 참석자 접견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3. 29. • 장관, 내수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3. 30. • 차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몽골 법무내무부장관 면담
- 3. 31. • 장관, 신규 교정직 7급 수료 및 임용식 참석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4월

- 4. 6.
  - 장관,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 디지털 역량 강화 명사 초청 강연
- 4. 7.
  - 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난민위원회 개최
- 4. 12.
  - 장관, tvN 방송 드라마 '보호자들' 제작진 접견
    EU 사법담당 집행위원 접견
  - 차관,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 4. 14.
  - 장관,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
- 4. 17.
  - 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단 접견
- 4. 18.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4. 19.
  - 장관, 교정직 9급 보안실무전문화 과정 강화
- 4. 20.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 4. 21.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 차관, 전세사기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
- 4. 24.
  - 차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강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 4. 25.
  - 제60회 법의 날 기념행사
  - 장관, 신임 헌법재판관 접견
- 4. 26.
  - 장관,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네트워크 서울 총회 참석
  - 검찰업무 수행유공 포상식
  - 장관, 주한영국대사·영국변호사협회장 접견
  - 차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참석
- 4. 27.
  - 차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참석
- 4. 28.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동남아시아 형사사법 네트워크 서울 총회 참석

2023 법무행정일지

5월

- 5. 1. • 신임검사 임관식
- 5. 3. • 장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단 면담
- 5. 4. •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접견
- 5. 10. •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5. 11. •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차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
- 5. 12. • 장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5. 16. • 제414차 민방위의 날 훈련
- 5. 17.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5. 18. • 장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개최
- 5. 19. •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5. 22.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5. 24. • 장관, 국가배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언론 브리핑
  • 차관,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접견
- 5. 25. •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5. 26. • 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면담
  • 마약 예방 교육 명사 초청 강연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법전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참석
- 5. 30. • 장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 언론 브리핑
  •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 5. 31. • 장관, 사회보장 전략회의 참석
  •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6월

- 6. 1.
  -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 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접견
  - 차관, 공공질서 확립 TF 점검회의 참석
- 6. 2.
  - 저스티스 서포터즈 발대식
  - 난민위원회 개최
- 6. 5.
  - 순직 교도관 충혼탑 제막식
- 6. 6.
  - 장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 6. 8.
  - 장·차관, 유엔 인권조약기구 위원 면담
- 6. 10.
  - 제10회 다링안심캠페인
- 6. 11.
  - 장관, 관계장관현안간담회 참석
- 6. 14.
  - 광주솔로몬파크 개관식
- 6. 16.
  -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 6. 19.
  - 차관, 영국 법무부차관 접견
- 6. 21.
  - 장관, 이데일리 전략포럼 참석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6. 22.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6. 25.
  - 장관,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참석
- 6. 26.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임명장 전수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 6. 27.
  - 장·차관, 대검찰청 사무국장 접견
- 6. 28.
  - 장관,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 6. 29.
  - 장관, 문화미래리포트 참석
- 6. 30.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2023 법무행정일지

7월

- 7. 3. • 인구 위기 관련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
- 7. 4. • 장관,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접견
- 7. 5. •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 위촉식
  • 차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참석
- 7. 6.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간담회 개최
- 7. 7. •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 7. 10. • 장관, 현대삼호중공업 정책현장 방문
  • 엘리엇 ISDS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
- 7. 11. • 장관, 전라남도청 정책현장 방문
- 7. 12. • 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접견
- 7. 14. • 장관, 제주 4·3사건 재심수행단 및 제주지검 정책현장 방문
  • 차관, 킬러규제 혁신 TF 회의 참석
- 7. 15. •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
- 7. 17. • 장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참석
- 7. 18. • 장관, 엘리엇 ISDS 판정 불복절차 개시 관련 브리핑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7. 20. • 장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면담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7. 21. • 장·차관, 국민권익위원장 면담
  • 2023년 법무부 청렴라이브 개최
- 7. 27. •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7. 28.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제35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 7. 31. • 차관, 제17차 테러대책위원회 참석

8월

- 8. 1.
  - 신임검사 임관식
  - 차관, 공공질서 확립 TF 점검회의 참석
- 8. 7.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8. 9.
  -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 8. 11.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개최
- 8. 12.
  - 장·차관, 대법관 접견
- 8. 15.
  - 장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 8. 16.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 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 8. 17.
  - 장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8. 18.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 8. 21.
  - 2023년 을지연습 상황보고회의 개최
- 8. 23.
  - 장관, 묻지마 범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 8. 24.
  - 장관, 규제혁신전략회의 참석
- 8. 25.
  - 차관,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장관, 일본 법무성 형사국장 접견
- 8. 27.
  - 장관, 관계장관 현안간담회 참석
- 8. 28.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개최

2023 법무행정일지

9월

- 9. 1. • 차관,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참석
- 9. 4.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9. 6.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규 이사장 임명식 개최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9. 7. • 2023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개최
  • 신규 검사 임용식
- 9. 18. • 추석 명절맞이 평화의 집 사회복지시설 위문
- 9. 19.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 9. 20. • 차관, 2023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참석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9. 21. • 차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참석
- 9. 22.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9. 26. •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10월

- 10. 5.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 10. 11. • 2023년 법무부 국정감사
- 10. 13. •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 10. 17. • 장관, 2023 국민미래포럼 참석
- 10. 18. • 거창구치소 개청식
- 10. 19.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0. 20. • 장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참석
- 10. 24. •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 등 입법예고 브리핑
- 10. 25. • 차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
- 10. 26. • 2023년 법무부 종합감사
  • 제52회 교정작품 전시회
- 10. 27. •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10. 30. • 장관, 계절근로 현장 및 전북도청 정책현장 방문
- 10. 31. • 장관,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
  • 차관, 필수의료혁신 관련 관계차관회의 참석

2023 법무행정일지

11월

- 11. 1.
  -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 장관, 전세사기 피해회복 관련 합동 브리핑
  - 차관, 이민정책연구원장 접견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개최
- 11. 2.
  - 장관, 2023 SBS D 포럼 참석
- 11. 3.
  -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정부대응팀 제1차 회의 개최
- 11. 6.
  - 장관, 몰타 외교부장관 접견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개최
- 11. 14.
  - 법무부-ICC(국제형사재판소) 공동세미나 개최
- 11. 15.
  -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관련 법무부-서울시 업무협약
- 11. 16.
  - 장관,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면담
- 11. 17.
  - 장관, 대구 달성산업단지·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 방문
  - 난민위원회 개최
- 11. 20.
  - 장관, CBS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참석
    이민정책연구원장 접견
- 11. 21.
  - 장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평가 대전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정책현장 방문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1. 22.
  - 장관,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참석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10주년 학술대회
  - 차관,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 참석
- 11. 24.
  - 장관, HD현대중공업, 울산과학기술원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 11. 27.
  - 차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회의 참석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 11. 29.
  - 제16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차관,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 접견
- 11. 30.
  - 장관,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
  - 차관, 국민통합위원회 지역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 참석

12월

- 12. 1. •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개최
- 12. 4. • 장·차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임원 오찬
  • 장관, 과천시장 접견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12. 5. • 장관, 마음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참석
- 12. 7. •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 12. 8.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개최
- 12. 11. • 장관, 대법원장 취임식 참석
- 12. 12. • 차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면담
  • 장관,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 참석
- 12. 13. • 장관, 수용자의 지역사회 내 치료체계 구축 관련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 체결
  • 차관, 제10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참석
  • 국가인권정책 실무협의회 개최
- 12. 14. •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 12. 15. • 차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동계 학술대회 참석
  •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 12. 18. •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 12. 20. •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기념식
  • 2023년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 12. 21. •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임식
- 12. 29. • 법무부 종무식

2023년 법무부가 만든 '정의와 상식의 법치'

2023년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23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2023. 01.



2023년 법무부 시무식



수용시설의료체계개선팀 현판식



법무부 인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 위촉식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필립 세스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면담

2023. 02.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신임검사 임관식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면담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면담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수원보호관찰소
정책현장방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그레고리 비자엔드란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장 면담

2023. 03.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면담



국민기자단 위촉식



교정시설 중앙통제실 현장



제81기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2023. 04.



부산고등·지방검찰청
현장 방문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사법담당 집행위원 면담



김형두 헌법재판관 면담



김권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면담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정정미 헌법재판관 면담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검찰업무수행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루브나 슈자 영국
사무변호사협회장 면담

2023. 05.



신임검사 임관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면담



대한변호사협회 면담



교정대상 시상식



인천국제공항 정책현장방문



제414차 민방위의날
민방공 대피훈련



제16회 세계인의 날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티라나 하산 휴먼라이츠워치 집행이사 면담



마약예방 명사(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초청 강연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
위원회 위원 면담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합동 브리핑



제1회 아·태 보호관찰 국제회의

2023. 06.



박종훈
대한공증인협회장 면담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즈 발대식



6.25 전쟁 순직 교도관
충혼탑 제막식



유엔인권협약기구 위원 면담



다링안심캠페인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식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



마이크 프리어
영국 법무부 정무차관 면담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



안양교도소 순회점검 현장

2023. 07.



인구정책 전문가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



법무부·유엔난민기구, 「이민·난민 용어사전」공동 발간 기념식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윤박 배우 위촉식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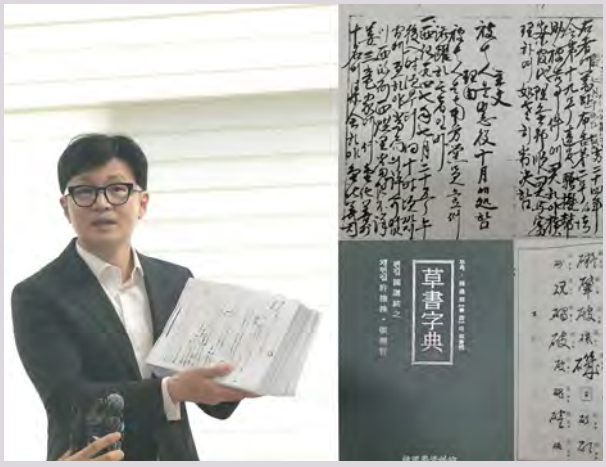


2023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정책현장방문


전라남도청 정책현장방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방문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 관련 브리핑



제35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2023. 08.



신임검사 임관식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면담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관련 브리핑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제9회 한·일 검찰 형사사법 교류워크숍 및 친선축대회 일본 대표단 면담

2023.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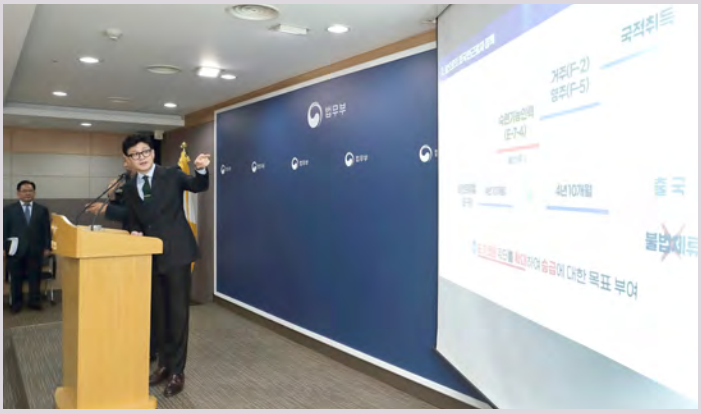
이종엽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장 수여



신규 대검 검사급 검사 임용장 전수식



평화의 집 위문 방문



숙련기능인력 확대방안 브리핑

2023. 10.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국정감사 수감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거창구치소 개청식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전라북도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식



전북 완주군 스마트팜 외국인 계절근로 정책현장방문



출입국 기동순찰팀 훈련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걷기축제

2023. 11.



전세사기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이안 보그 몰타 외교부장관 면담



청렴문예 공모전


법무부-ICC 고위급 공동세미나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식


법무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대구 달성산업단지
정책현장방문



대구스마일센터 정책현장방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CBT 대전센터 개소식



법무부-KAIST 간담회



10주년 기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학술대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책현장방문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23. 12.



제21회 범죄피해자 보호실무위원회 개최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제7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촉식



응우엔 바 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차관 면담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기념 축사



제69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임식

2023
법무연감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58
제2절 기구·인원 65
제3절 예산·시설 85

제2장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96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96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99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103
4. 법무행정개선 추진 107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10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112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4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20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22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127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133
12. 성별 편견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135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138

제2절 정책홍보 업무 152
1. 기관장 소통활동 152
2. 언론 홍보활동 153
3. 홍보 기획 154
4. 디지털 소통활동 159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165

제3절 법무업무 166

1.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 추진 166
2.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68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및 피해 회복 지원 169
4.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 간편화 171
5.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173
6.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175
7.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 176
8.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및 신탁등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정비 178
9.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연구 180
10.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182
11.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84
12.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188
13.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189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191
15.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194
16.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96
17.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국가배상소송 대응 197
18.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198
19.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200
20.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201
21.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208
22.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남북가족특례법」 정비 추진 213
2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215
24.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219
25. 도산법의 체계적 정비 및 절차 편의성 개선 220
26.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한 제도개선 222
27.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223
28.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26
29. 경제 형벌규정 개선 228
30. 전자어음제도 운영 230
31. 전자증권제도 시행 232
32. 중재산업 활성화 233
33.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35
34.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37
35. 선진법제포럼 개최 239
36.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40
3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47

제4절 검찰업무 249

1. 검찰 역량의 강화 249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53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61
4. 국민의 권익 보호 275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79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08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309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311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313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315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316
1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323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324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26
15. 형의 집행시효 관련 「형법」 개정 328
16. 재판시효 정지 규정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 329
1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 330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332
19.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형법」 개정 추진 333
20.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추진 334
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 336

제5절 범죄예방업무 338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338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347
3. 감호제도 개선 354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359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363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68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72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77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81
10.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390

제6절 감찰·감사업무 395

1. 감찰업무 395
2. 감사업무 397

제7절 인권업무 401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401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406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417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431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435

제8절 국제법무업무 439

1. 국제법무 역량 강화 439
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444
3.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449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451
5. 정부부처·지자체 등 국제소송 및 법률지원 459

제9절 교정업무 460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460
2. 국민 중심의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466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472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478

제10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485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485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492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503
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508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519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524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531
8.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535
9.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543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548
11.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추진 554

제11절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업무 560

제12절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업무 562

제13절 인사정보관리단 565

제3장 법령정비

제1절 개관 570
제2절 법률 571
제3절 대통령령 588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603

제4장 국회업무

제5장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636
제2절 검찰업무 통계 649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671
제4절 인권업무 통계 709
제5절 교정업무 통계 711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733

자 료

제1절 직제 752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785
제3절 장관 연설문 797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853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871
제6절 인사 921
제7절 국외훈련·출장 922
제8절 국제교류 현황 923
제9절 상훈 932
제10절 위원회 현황 954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法務年鑑

01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1. 국정방향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윤석열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등 6대 국정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정비전 및 6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23대 약속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전략별로 핵심 정책을 12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월 자체 점검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2023년에는 '국익과 실용' 및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운영의 원칙 하에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위한 법무행정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6대 국정목표(〈표 1-1〉)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한 2023년도 국정과제 현황(〈표 1-2〉)은 다음과 같다.

| 표 1-1 | 국가비전 – 6대 국정목표 –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6대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나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①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② 핵심전략 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①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②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②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②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③ 중소·벤처 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④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⑤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③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④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③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④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③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③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0대 국정과제	15개 과제	26개 과제	32개 과제	19개 과제	18개 과제	10개 과제

| 표 1-2 | 윤석열정부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 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주관 4개)	주관 (협조)	주요내용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② 검찰 독립 예산편성 ③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④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하겠습니다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협조)	여가부 (법무부)	⑤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 ⑥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식약처)	①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②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③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④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⑤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⑥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①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②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④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2. 법무행정의 지표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환희

가. 개요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이라는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법무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부 각 부서에서는 4대 전략목표 아래 8개 성과목표 및 48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3 | 2023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표 1-4 | 2023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주요내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Ⅰ. 따뜻한 법무행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한다	1.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국제 기준 및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제도화와 이행 노력
		② 인권침해자체예방 및 조사구제 시스템 강화	•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개선조치 등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③ 능동적 범죄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젠더기반 폭력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선 추진 •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추진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②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여성·아동 관련 법령 지속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성 제고 교육 및 진술조력인 추가양성 통한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실화
Ⅱ. 선진 법무·검찰 시스템 확립으로 반듯한 사회를 구현한다	1. 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한다	① 검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② 민·소상공인 울리는 경제범죄 엄단	• 관계기관과 수사·조사 협력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및 경제 범죄 집중 단속
		③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해 급증하는 마약범죄 집중단속, 마약중독자 재활·치료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④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 사경 송치 후 새롭게 실체가 확인된 사건 수사절차 간소화, 보완수사 효율성 제고
		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담검사 지정·운영 통한 내실있는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유형별 세분화된 사건처리기준 마련
		⑤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 국가경제와 국민불편을 볼모로 한 집단적 이익추구 목적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노사법치주의 실현, 엄정대응 기조의 사건처리기준 마련·시행
		⑥ 국제형사협력 강화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	• 특별관리 국외도피사범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송환 추진 및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노력
		⑦ 부패대응 공백 방지	•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 국회 입법논의 지원 등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부패범죄대응 공백 방지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무시스템을 운영한다	①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 추진	•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와, 변화한 사회·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기 위해 「민법」 전면개정 추진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변호사 제도 구축	•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법률플랫폼 업계와 변호사단체가 상생하는 제도 개선 추진
		③ 선진형 공증제도 정착	• 기존 전자공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추진
		④ 국제 민·상사 규범 성안·도입 및 법률 ODA	• 국제 민·상사 규범 관련 회의 참석 및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법제정비를 지원
		⑤ 국제투자분쟁(ISDS)대응 및 예방강화	• 국제투자분쟁(ISDS) 담당자의 전문성·역량을 강화하여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
		⑥ 부패·비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국고손실 철저 환수	• 부패·비리, 입찰담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및 국고투입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환수하도록 법률적 자문 및 지원
		⑦ 선진화된 행정소송 송무 체계 실현	• 변화된 국가송무 체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행정소송 관련 제도개선 추진
		⑧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강화	•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종합 법률 서비스와 창업지원 법률정보 제공
		⑨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법률업무 강화	•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기반 구축 및 위기 탈북민 발굴·지원 중심의 법률안전망 강화
		⑩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개선	•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Ⅲ. 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	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신속수사팀 수사역량 제고, 훼손 방지 성능을 강화한 '강화형전자장치' 현장 적용, 디지털분석 확대 등 고위험자 관리·감독 강화
		② 범죄예방정책 홍보강화로 국민이해도 제고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홍보 강화를 통해 대국민 이해도 제고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초기비행 청소년 개별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재비해 예방 강화
		④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지원	• 소년원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처우 및 비행예방 교육 강화, 친인권적 처우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
		⑤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의사 처우개선을 통한 인력 확충, 병실당 병상 수(8인→6인) 축소,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준공, DUR 시스템 구축 등 치료환경 개선
		⑥ 마약사범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추진	• 치료적 개입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전문 처우프로그램 확대 등 실효적 재범방지 추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⑦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 강화	• 취업지원 수혜자 확대, 전담인력 전문화 교육 등 통한 지원 역량 강화,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추진
	2. 다양한 교정정책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① 수용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증축 및 수용동 증·개축으로 수용공간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 보장 강화
		②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교정 행정의 이미지 제고 도모
		③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도모
		④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 강화	• 재범고위험군 수형자를 대상으로 정밀분류심사 및 재범유발 요인을 감안한 개인별 처우를 통해 재범 위험성 관리체계 구축 추진
		⑤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 역량 강화	•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으로 수형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연계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출소 후 경제적 자립 도모
		⑥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집중인성교육의 일환인 감사나눔 문화확산 및 소년수형자 교정교육강화, 다양한 사회적처우 실시로 가족관계회복·성공적인 사회복귀
		⑦ 수용자 의료처우 내실화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도입, 건강검진, 의료장비 현대화, 원격의료시스템 운영확대 등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추진
		⑧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 이상동기범죄 등 재범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마약류사범에 대한 전담조직 신설 및 종합적인 치료·재활 정책 추진
Ⅳ. 성장, 안전, 통합을 위한 체계적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1. 미래지향적 이민행정을 구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환승무사증 재개, 무안공항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자여행허가(K-ETA) 등을 통해 국익위해 우려자의 국내 입국 차단
		②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및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로 산업현장 및 농어촌 인력부족 해소, 우수인재 확보 위한 적극적인 비자정책 추진
		③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및 자진출국 유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추진 및 개방형보호시설 확대 운영
		④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신형 외국인 등록증 도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⑤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홍보역량 강화	• 국민과 외국인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여 출입국·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추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2. 국격에 걸맞은 외국인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이민정책 추진 체계 구축, 출입국 관리법 등 소관 법령 제·개정 등 추진
		②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특별공로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적증서 수여,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도입 등 국적제도 개선
		③ 이민자 권익증진을 위한 실효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실시,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등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정책 효율성 제고
		④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 정책 추진	• 난민법령·지침 개정 및 난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난민 인식개선 활동 강화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법령·지침 개정, 난민조사관 교육 실시, 기타 국제기구 협업을 통한 연구사업 및 제도 개선 시행으로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나. 국정과제 등 관리체계

법무부는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이행점검 회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기구·인원

제1항 본 부

1. 기구

본부 기구는 2023. 12. 31. 현재 2실 4국 2본부 11관 59과·팀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관 직속으로 있던 정책기획단을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재편(2021. 6. 8.)하여 법무행정의 개혁 과제 발굴 및 연구, 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법무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 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관장, 법조인 양성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형사사건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 및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전자감독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소년범죄예방팀을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이로운법(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법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방지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개별처우와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등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 데이터분석 기반의 강력범죄자 재범억제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2. 8.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2025. 6. 30.까지 존속)하여 소년 범죄예방정책 수립 및 소년보호관찰 제도 운영 등 소년사법정책 및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벤처형 조직으로 설립된 범죄예방데이터과가 존속기한 만료(2023. 5. 31.)로 해소 된 후,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분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능형서비스 등 디지털플랫폼 구축·개선, 국가연구개발 추진과 같은 범죄예방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사정보관리단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6. 7.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여 인사정보1담당관실, 인사정보2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을 보좌하여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아동학대 관련 법령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국은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를 두고 있으며,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간행 및 국제협력·교류,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부 내 국제개발협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자.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특별점검팀을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마약사범재활팀을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대체복무요원 복무 및 교육,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특별점검팀 및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시행, 교정시설 수시 점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마약·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과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 등의 업무를 각각 전담하고 있다.

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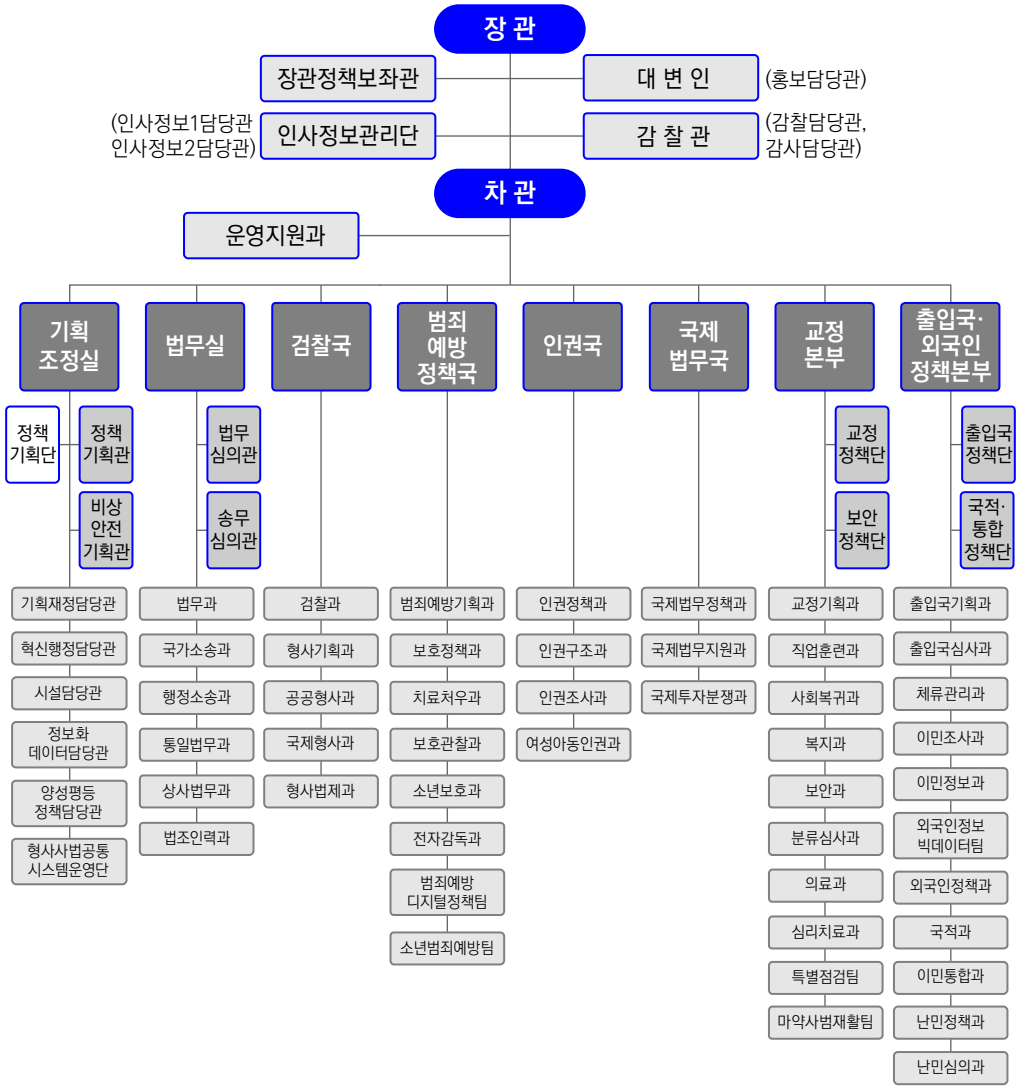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플랫폼 구축,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국적판정,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23. 6. 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신설(2026. 5. 31.까지 존속)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운영, 외국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빅데이터 생성·관리 및 분석을 전담하고 있다.

카.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 표 1-5 | 본부 조직도



2. 인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인력,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인력, 국제법무국 신설, 법무부 기록관 운영인력,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잠정조치 시행을 위한 제도 운영 인력 등 16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을 감축하여 2023. 12. 31. 현재 본부 정원 781명, 현원 762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 표 1-6 |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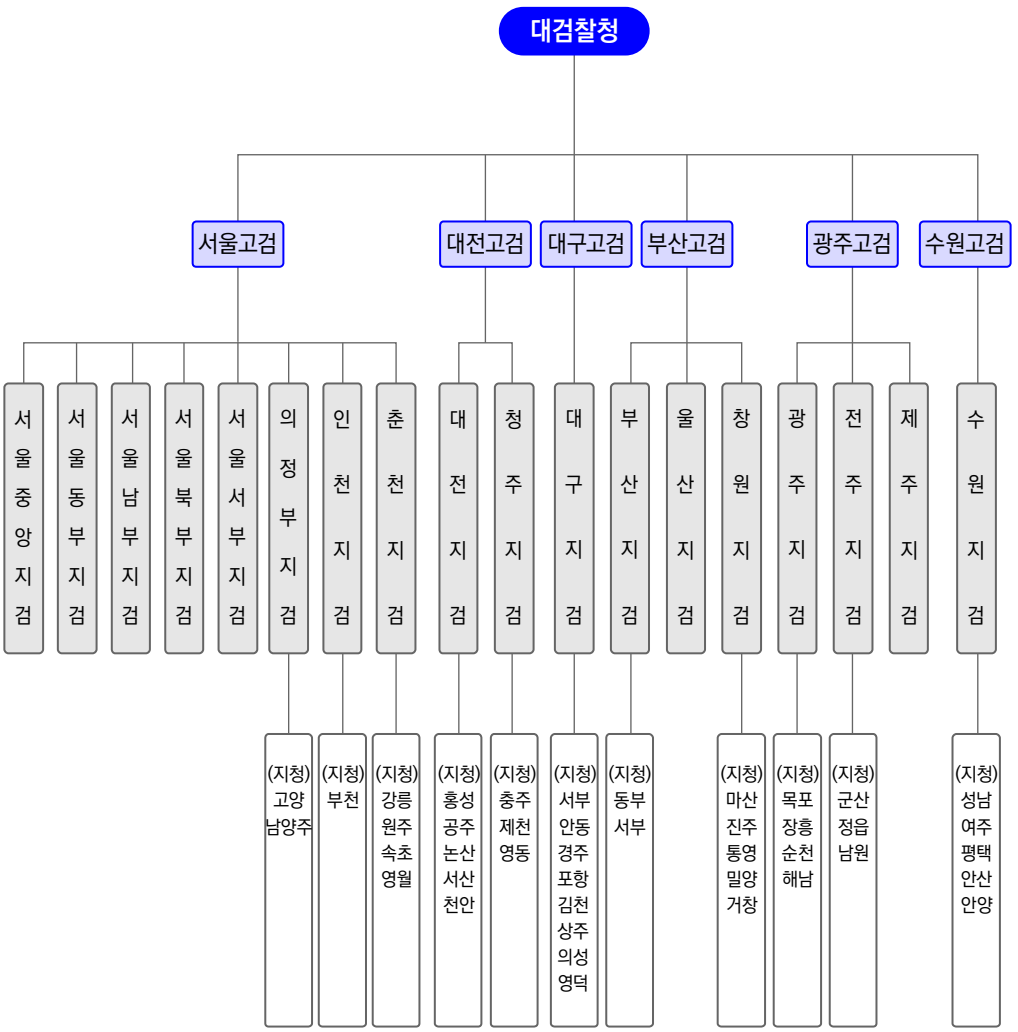
구 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781	2	30	745	4
현원	762	1	49	712	0

제2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23.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7 | 검찰청 조직도



| 표 1-8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인 원	10,683	2,292	8,391

| 표 1-9 |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292	2,023
검찰총장	1	1
고등검사장급	7	6
대검검사급	32	32
검사	2,252	1,984

| 표 1-10 |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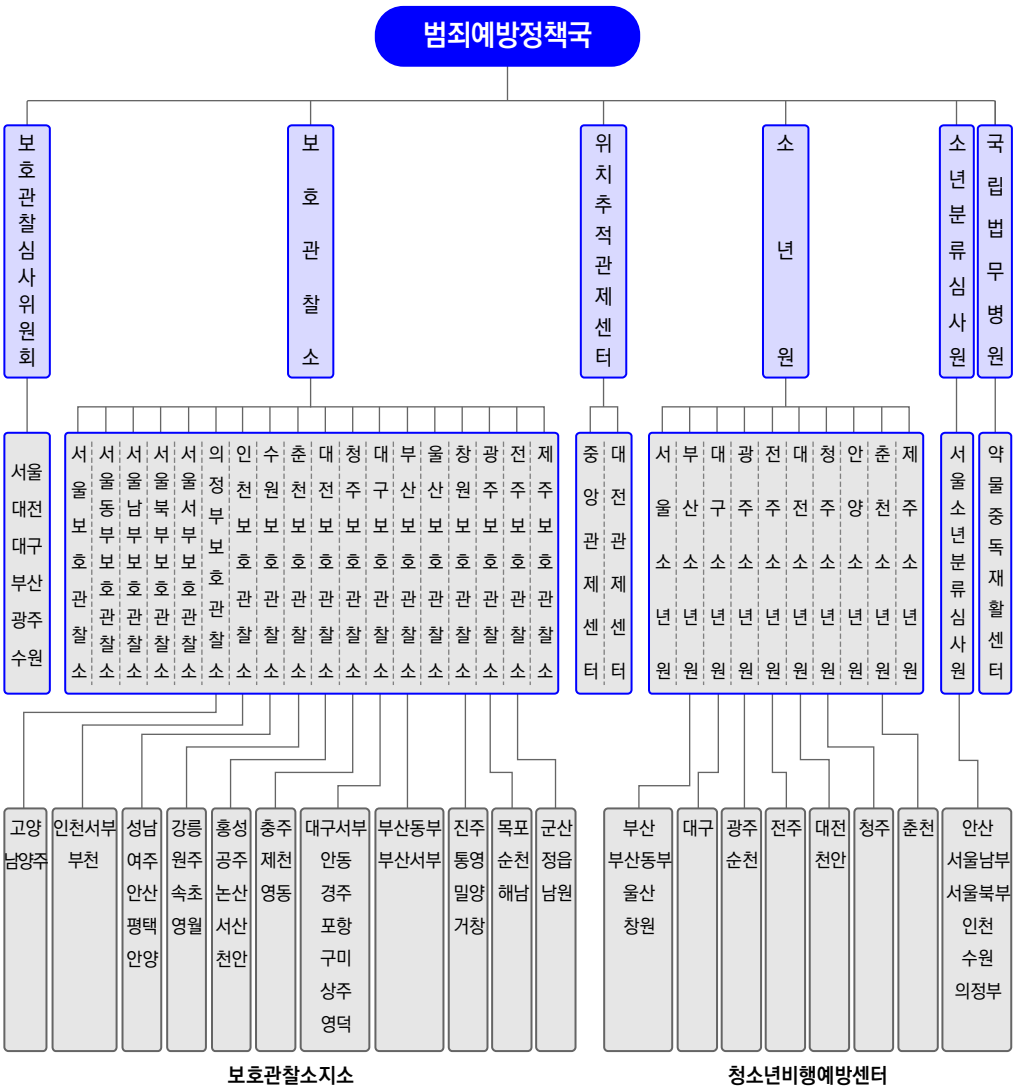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391	8,461
고위공무원단	26	20
검찰부이사관	17	17
검찰수사서기관	184	165
임기제서기관	1	1
서기관	5	5
검찰사무관	458	393
검찰주사	1,450	1,479
검찰주사보	1,833	1,872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7
검찰서기	1,080	1,084
검찰서기보	841	896
마약수사직	308	292
통계직	1	1
전산·방송통신직	231	217
시설·공업직	97	90
사서직	4	4
임업직	2	2
운전직	271	267
방호직	159	157
위생직	1	1
관리운영직	1,318	1,398
연구직	71	71
전문경력관	5	2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23.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40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국립법무병원,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와 같다.

| 표 1-11 |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 표 1-1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2,083	2,04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4
서기관	29	28
서기관(임기제)	4	3
서기관또는보호사무관	6	5
보호사무관	190	185
보호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354	343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0
전산주사	2	2
보호주사보	492	482
보호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4	4
보호서기	491	485
보호서기또는전산서기	1	1
공업서기	4	5
운전서기	2	14
보호서기보	418	400
보호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57	47
방호서기보	14	15
관리운영직군	3	12

| 표 1-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974	957
고위공무원단	2	2
서기관	16	16
과학기술서기관	9	6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8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과학기술서기관·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1
보호사무관	46	45
의무사무관	12	4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0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보호주사	105	104
공업주사	1	1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4	3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1
보호주사보	188	187
공업주사보	4	4
의료기술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19	18
약무주사보	1	0
보호서기	191	194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5
간호서기	4	6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7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조리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방호서기	1	1
보호서기보	169	168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2
공업서기보	17	16
시설서기보	1	1
식품위생서기보	4	4
운전서기보	23	23
조리서기보	56	55
방호서기보	18	17
관리운영직군	8	1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1	20
전문경력관나군(교과교육담당)	13	13
전문경력관나군(특수교육담당)	3	3

| 표 1-14 |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464	420
고위공무원단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1	1
과학기술서기관	13	8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3	0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	1
의무사무관	2	0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3	3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5
약무주사	2	2
간호주사	33	30
간호조무주사	2	2
보호주사·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3
공업주사	1	1
의료기술주사	1	1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2
간호주사보	62	66
간호조무주사보	7	6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1
의료기술주사보	2	3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2	2

직 급	정 원	현 원
방송통신주사보	1	1
조리주사보	1	1
기계운영주사보	1	1
보호서기	3	3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2	1
간호서기	62	46
의료기술서기	4	4
간호조무서기	16	16
전기운영서기	1	1
기계운영서기	2	1
보호서기보	2	1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0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2	3
운전서기보	2	2
간호조무서기보	138	130
조리서기보	17	16
방호서기보	11	12
관리운영직군(서기보)	2	3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1	0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4	2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5	5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2	2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1	0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2	1

3. 교정기관

2023.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 교정청과 39개의 교도소, 12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8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6,638명이며, 2023. 12. 31. 현재 16,538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3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5 | 교정기관 조직도



| 표 1-16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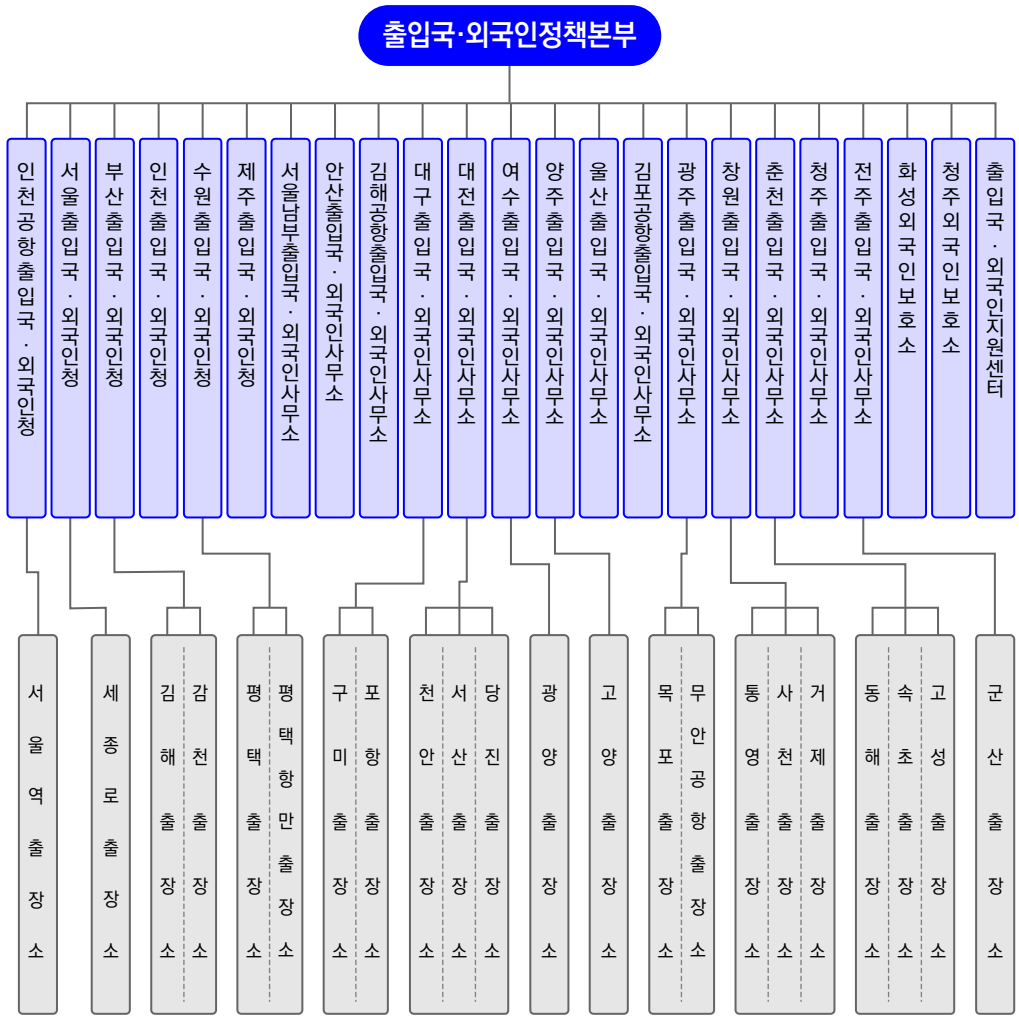
(단위 : 명)

직급별 / 직렬별	정원	현원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계	16,638	16,538	15	9	117	66	382	1,546	2,020	5,846	6,512	4	121
교정	15,432	15,376	15	5	58	34	342	1,426	1,813	5,629	6,110		
의무	116	83		4	59	30	23						
약무	16	14					13	3					
간호	186	182					1	38	62	85			
의료기술	36	36						15	14	7			
식품위생	89	89						13	35	24	17		
행정	0	0											
시설	73	70				2	2	29	24	11	5		
전산	11	11					1	2	5	3			
공업	234	230						17	59	69	89		
방송통신	4	4						3		1			
운전	271	270							5	5	261		
보건	1	1								1			
관리운영	44	47							3	11	30		
기록연구사	4	4										4	
전문경력관(가군)	10	10											10
전문경력관(나군)	111	111											111

4. 출입국기관

2023.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4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2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632명이며, 현원은 2,542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7 | 출입국기관 조직도



(6개청, 14개 사무소, 2개보호소, 1개센터, 22개 출장소)

| 표 1-18 |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2,632	2,542
고 위 공 무 원	3	3
부 이 사 관	3	1
서 기 관	29	2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13	112
출 입 국 관 리 주 사	435	420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707	699
출 입 국 관 리 서 기	704	673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526	499
전 산 직	44	44
의 무 직	3	2
간 호 직	4	3
관 리 운 영 직 군 등	61	61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신임검사 교육, 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19 |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5	130
검 사	19	16
고 위 공 무 원	6	5
서 기 관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등	7	7
행 정 사 무 관 · 교 정 관 등	21	20
행 정 주 사 · 교 감 등	26	25
행 정 주 사 보 · 교 위 등	21	31
검 찰 서 기 · 교 사 등	24	24
행 정 서 기 보 · 운 전 서 기 보 등	11	2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며, 2023.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2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2	1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0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2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2
전산주사보	1	1
기록연구사	1	1

제3절 예산·시설

1. 예 산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임미랑

가. 개요

2023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을 위해 범죄불안 해소,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수용자 인권 보호, 국가 배·보상금 적기 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0.7% 감액된 1조 4,673억 1,300만 원, 세출이 1.3% 증액된 4조 2,974억 8,100만 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수입·지출이 1,133억 4,7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1〉과 같다.

| 표 1-21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기금		2023 예산·기금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예산	세 입	1,477,327	1,477,330	1,467,313	△10,014	△0.7
	세 출	4,240,855	4,229,249	4,297,481	56,626	1.3
기금	수 입	100,114	100,114	113,347	13,233	13.2
	지 출	100,114	100,114	113,347	13,233	13.2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세 입	1,355,756	1,355,756	1,345,834	△9,922	△0.7
세 출	4,119,284	4,107,675	4,176,002	56,718	1.4

○ 교도작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B-A)	%
세 입	121,571	121,574	121,479	△92	△0.1
세 출	121,571	121,574	121,479	△92	△0.1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기금		2023 기금 (B)	2022 대비	
	당초(A)	수정		증△감(B-A)	%
수 입	100,114	100,114	113,347	13,233	13.2
지 출	100,114	100,114	113,347	13,233	13.2

나. 일반회계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0.7% 감액된 1조 3,458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1.4% 증액된 4조 1,760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446조 2,422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3%, 세출이 0.9%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 1,760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이 67.7%인 2조 8,249억 원, 교정활동이 10.3%인 4,317억 원, 검찰활동이 8.1%인 3,382억 원, 법무활동이 3.0%인 1,259억 원이며, 기타 인권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 등 6개 프로그램이 10.9%인 4,553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2〉 ~ 〈표 1-24〉와 같다.

| 표 1-22 |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4,119,284	4,107,675	4,176,002	56,718	1.4
인 건 비	2,475,578	2,472,062	2,535,242	59,664	2.4
기 본 경 비	153,073	151,606	155,022	1,949	1.3
사 업 비	1,396,433	1,389,807	1,391,538	△4,895	△0.4
기금전출금	94,200	94,200	94,200	-	-

| 표 1-23 |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396,433	1,389,807	1,391,538	△4,895	△0.4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2,337	2,323	4,112	1,775	76.0
• 국가배상금지급	150,000	150,000	100,000	△50,000	△33.3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319	319	287	△32	△10.0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805	763	743	△62	△7.7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62	162	156	△6	△3.7
• 기업환경지수 개선	248	248	223	△25	△10.1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5,219	4,891	5,504	285	5.5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197	1,173	4,341	3,144	262.7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3,249	3,219	3,271	22	0.7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730	730	1,274	544	74.5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667	649	773	106	15.9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4,150	4,116	4,499	349	8.4
•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691	691	692	1	0.1
• 법률구조	62,402	62,402	59,795	△2,607	△4.2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703	4,693	4,846	143	3.0
• 인권교육	214	199	214	-	-
• 아동인권 증진	258	248	265	7	2.7
• 국제인권역량강화	188	188	226	38	20.2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37	237	239	2	0.8
• 이민정책개발지원	429	429	390	△39	△9.1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2,004	2,004	2,268	264	13.2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 운영	43,843	43,843	48,462	4,619	10.5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3,986	3,986	4,657	671	16.8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7,864	17,864	25,175	7,311	40.9
• 외국인보호관리	18,200	18,200	19,736	1,536	8.4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4,569	14,158	14,026	△543	△3.7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9,740	9,740	9,812	72	0.7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10,482	10,482	10,532	50	0.5
• 검찰청시설운영	74,095	74,095	81,894	7,799	10.5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8,014	8,004	7,873	△141	△1.8

사 업 명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8,676	8,650	9,336	660	7.6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2,509	2,509	2,509	-	-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 사업(R&D)	2,624	2,575	2,677	53	2.0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24,795	24,276	25,743	948	3.8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2,778	32,778	31,164	△1,614	△4.9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10,919	10,901	9,774	△1,145	△10.5
• 형사부 등 수사지원	87,425	85,553	85,894	△1,531	△1.8
• 공공수사	4,441	4,371	3,109	△1,332	△30.0
•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12,121	11,710	12,549	428	3.5
• 마약수사	4,385	4,319	4,857	472	10.8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3,849	3,849	4,290	441	11.5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6,220	6,101	6,307	87	1.4
• 공판활동지원	2,175	2,165	2,561	386	17.7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8,260	7,850	7,300	△960	△11.6
• 형사보상	40,000	40,000	40,000	-	-
• 형사법정비	292	292	350	58	19.9
• 교도소행정지원	42,156	42,098	46,644	4,488	10.6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6,108	106,108	107,682	1,574	1.5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17,854	18,177	14,575	△3,279	△18.4
•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40,940	240,663	252,286	11,346	4.7
• 교정교화	10,491	9,473	10,537	46	0.4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0,940	10,940	12,313	1,373	12.6
• 소년원생수용	23,518	23,373	25,217	1,699	7.2
• 청소년비행예방	5,750	5,750	5,820	70	1.2
• 갱생보호활동	40,505	40,505	44,519	4,014	9.9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9,845	9,845	11,721	1,876	19.1
• 보호관찰활동	13,277	12,714	14,002	725	5.5
• 전자감독	27,449	27,449	30,677	3,228	11.8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8,430	8,282	7,449	△981	△11.6
• 특별감찰활동	399	399	399	-	-
• 연수원시설관리 및 운영	4,612	4,612	4,705	93	2.0
•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749	1,702	1,745	△4	△0.2

사 업 명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51	151	151	-	-
• 신임검사양성 및 교육지원	1,188	1,164	1,188	-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613	599	613	-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120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9,223	9,173	10,086	863	9.4
• 정보기획지원	33	33	33	-	-
• 양성평등정책 지원	253	253	253	-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2	42	40	△2	△4.8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8,227	38,197	41,011	2,784	7.3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29	807	807	△22	△2.7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7,374	7,362	6,641	△733	△9.9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61,948	61,923	48,509	△13,439	△21.7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19,938	19,938	22,360	2,422	12.1
• 법무부 기록관 운영	-	-	4,730	4,730	순증

| 표 1-24 |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		2023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4,119,284	4,107,675	4,176,002	56,718	1.4
• 법무활동	169,774	169,284	125,875	△43,899	△25.9
• 인권활동	68,002	67,967	65,585	△2,417	△3.6
• 출입국관리	121,117	120,706	135,058	13,941	11.5
• 검찰활동	333,578	329,998	338,187	4,609	1.4
• 교정활동	417,549	416,519	431,724	14,175	3.4
• 범죄예방활동	139,714	138,858	151,718	12,004	8.6
• 특별감찰관활동	998	998	997	△1	△0.1
• 법무교육훈련	7,700	7,629	7,789	89	1.2
•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2,766,652	2,761,516	2,824,869	58,217	2.1
• 기금전출금	94,200	94,200	94,200	-	-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23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214억 7,9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643억 4,300만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98억 4,0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3억 6,9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50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18억 2,400만 원, 국고금 환급금 1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7,900만 원, 교도작업 554억 5,500만 원, 직업훈련 39억 6,400만 원, 시설보완 65억 6,4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49억 1,700만 원으로 〈표 1-25〉와 같다.

| 표 1-25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1,571	121,574	121,479	△92	△0.1
기타경상이전수입	-	-	103	103	순증
교 도 소 수 입	64,343	64,343	64,343		
기 타 잡 수 입	369	369	369		
전년도세계잉여금	9,840	9,840	9,840		
기금예탁원금회수	45,000	45,000	45,000		
기금예탁이자수입	2,019	2,022	1,824	△195	△9.7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2 예산		2023 예산 (B)	2022 대비		내 역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1,571	121,574	121,479	△92	△0.1		
교 도 작 업	55,213	54,962	55,455	242	0.4	• 작업재료비 • 기타보전금 • 일반수용비 등	23,050 24,094 8,311
직 업 훈 련	4,173	4,173	3,964	△209	△5.0	• 실습재료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등	1,531 1,105 1,328
시 설 보 완	6,909	6,909	6,564	△345	△5.0	• 작업장 신축 등 • 작업장비구입비	5,111 1,453
기 본 경 비	579	579	579	-	-	• 운영비 등	579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예 탁	54,697	54,951	54,917	220	0.4	• 예탁액	54,917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133억 4,700만 원이며, 수입은 기타재산수입 4억 1,700만원, 변상금 15억 5,200만 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3억 7,3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48억 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42억 원이며,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13억 6,3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375억 3,700만 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37억 7,300만 원, 운영비 4,800만 원, 예수원금상환 25억 원, 예수이자상환 8,500만 원, 여유자금 280억 4,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6〉과 같다.

| 표 1-2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2 기금		2023 기금 (B)	2022 대비	
	당초(A)	수정		증△감 (B-A)	%
계	100,114	100,114	113,347	13,233	13.2
기타재산이자수입	417	417	417	-	-
변 상 금	1,552	1,552	1,552	-	-
기타경상이전수입	2,029	2,029	2,373	344	17.0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916	1,916	14,805	12,889	672.7
일반회계전입금	94,200	94,200	94,200	-	-

나. 지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2 기금		2023 기금 (B)	2022 대비		내 역
	당초(A)	수정		증△감 (B-A)	%	
계	100,114	100,114	113,347	13,233	13.2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3,305	43,305	41,363	△1,942	△4.5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구조금 등 5개 사업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36,172	36,172	37,537	1,365	3.8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3,164	3,164	3,773	609	19.2	• 신변보호장치 및 임시숙소 지원
운 영 비	48	48	48	-	-	
예수원금상환	2,500	2,500	2,500	-	-	
예수이자상환	120	120	85	△35	△29.2	
여 유 자 금	14,805	14,805	28,041	13,236	89.4	

2. 시 설

⭘시설담당관실 사무관 박주선

가. 개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7개, 보호관찰소 66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31개, 교정시설 58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6개 등 총 271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6개 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 소속기관 정책체험 등을 통한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공사관계자 간담회,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23년 신규사업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춘천소년원 재건축, 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 춘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논산지소 수용동 증축, 청주출입국사무소 증축 총 6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법무부기록관 신축,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증축,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여주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통영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인천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춘천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거창구치소 신축, 안산보호관찰소 증축, 인천보호관찰소 증축, 천안교도소 수용동 증축, 목포교도소 수용동 증축 총 16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2,094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813억 원(38.9%), 보호시설에 375억 원(17.9%), 교정시설에 527억 원(25.2%), 출입국외국인시설에 148억 원(7.0%), 기타 시설에 231억 원(11.0%)을 집행하였다.

2023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다.

| 표 1-27 | 2023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공 사 명	규 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 사 기 간
		부 지	건 물		
신규 (6)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9,035	17,633	1,055	'23. 12월 ~ '26. 5월
	춘천소년원 재건축	기존	7,795	281	'23. 1월 ~ '25. 3월
	울산구치소 수용동 증축	기존	2,000	81	'23. 11월 ~ '25. 5월
	춘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2,307	78	'23. 1월 ~ '24. 4월
	논산지소 수용동 증축	기존	2,156	85	'23. 12월 ~ '25. 8월
	청주출입국사무소 증축	기존	720	24	'23. 2월 ~ '24. 4월
계속 (16)	원주교도소 이전신축	200,319	41,709	1,535	'22. 6월 ~ '25. 8월
	법무부 기록관 신축	7,048	18,031	464	'20. 12월 ~ '24. 1월
	치료감호소 중증환자 치료병동 신축	303,393	13,857	433	'20. 12월 ~ '23. 10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11,244	6,876	165	'20. 12월 ~ '23. 4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별관 증축	기존	2,843	84	'22. 10월 ~ '24. 9월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기존	3,648	87	'22. 12월 ~ '24. 6월
	여주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1,648	46	'22. 12월 ~ '23. 12월
	통영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773	22	'22. 12월 ~ '23. 12월
	인천구치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1,456	40	'22. 12월 ~ '23. 12월
	춘천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965	27	'22. 12월 ~ '23. 12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기존	1,553	40	'22. 11월 ~ '23. 10월
	거창구치소 신축	160,818	19,844	912	'15. 11월 ~ '23. 1월
	안산보호관찰소 재건축	기존	5,034	154	'22. 10월 ~ '24. 10월
	인천보호관찰소 재건축,	기존	999	27	'22. 9월 ~ '23. 12월
	천안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800	55	'21. 12월 ~ '23. 3월
	목포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	1,498	47	'21. 10월 ~ '23. 1월

法務年鑑

02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홍보 업무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국제법무업무
제9절 교정업무
제10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1절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업무
제12절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업무
제13절 인사정보관리단

제1절 기획조정업무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개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관리를 목표로 ① 성공적인 국정과제·현안대응 추진 지원, ②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직 관리, ③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 관리, ④ 자율과 책임 기반의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정기직제·수시직제 증원 및 기구 신설,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감축,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신설 및 직급 조정, 자율기구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1) 정기직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

’23. 4월 법무부와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인력 각 1명을, 서울구치소에 수용동 증축에 따른 교대근무 필요 인력 4명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대기실 운영 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사할린동포 국적 판정 심사 업무 수행 인력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였다.(4.11.)

’23. 8월 법무부에 기록관 운영 인력 5명을,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였다.(8.8.)

’23. 12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동 증축에 따른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을 증원하였다.(12.26.)

2) 수시직제 기구 신설, 인력 증원 등

’23. 8월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였다.(8.8.)

’23. 12월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 운영 인력 1명을,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동 제도의 관제 및 관리·감독 인력 20명을, 출입 소속기관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였고, 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12.26.)

3)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감축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통합활용정원 관리 대상으로 정원의 5%인 548명을 발굴하였고(’22년) 5년간 매년 1%씩 감축할 예정이며 ’23년 12월에는 본부 7명, 소속기관 103명 등 모두 110명을 감축하였다.(12.26.)

4)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신설, 직급 조정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을 위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류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사범재활팀, 교정시설의 점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점검팀,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한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대구·대전·안양·광주·경북북부제1교도소와 서울·서울남부·서울동부·부산·수원·인천구치소에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팀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입국대기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을 각각 신설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법무부 정원 14명, 교정 소속기관 정원 11명, 출입 소속기관 정원 1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6.8.시행, 12.26.개정)

5) 자율기구 운영

국정과제와 장관 중점사항 추진을 위하여 자율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22.11.7.~'23.11.6.) 및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22.12.19.~'23.12.18.)를 운영하였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에서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이민정책위원회 발족 및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 국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국립법무병원 이송 활성화, 교도관 CIT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시설 내 질서 유지 및 재범 예방을 도모하였으며, 의약품 중복처방·오남용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연계, 의무관 급여 수준 상향 등 의무관 처우 개선, 성격문제 대응 실무지침서 발간을 통한 성격문제 수용자 이해도 제고 및 직원 대응 역량 강화 등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업무를 수행하였다.

6) 그 외 직제 개선사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였다.(8.30.)

다. 향후 계획

부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정부조직관리를 목표로 ① 성공적 국정과제 추진 지원, ② 자율·책임에 기반한 탄력적 조직 운영, ③ 효율적 정부조직 관리 ④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기직제 및 수시직제를 통한 조직·인력 확보 및 법무행정 분야 직제의 지속적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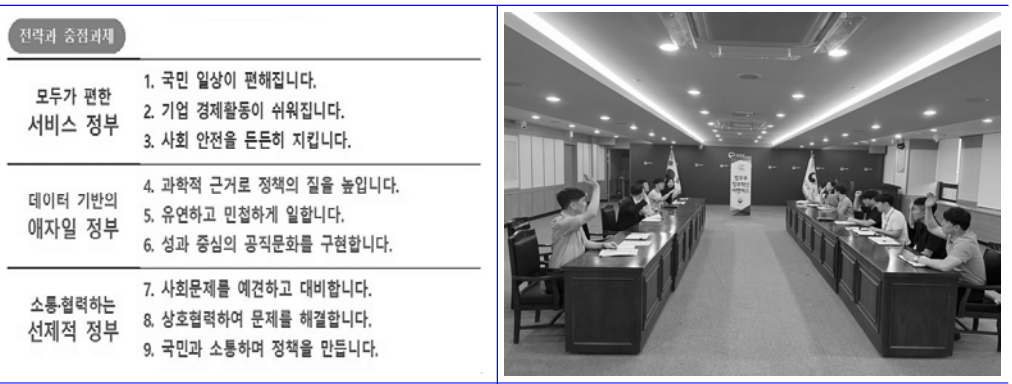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정부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실·국·본부와 협력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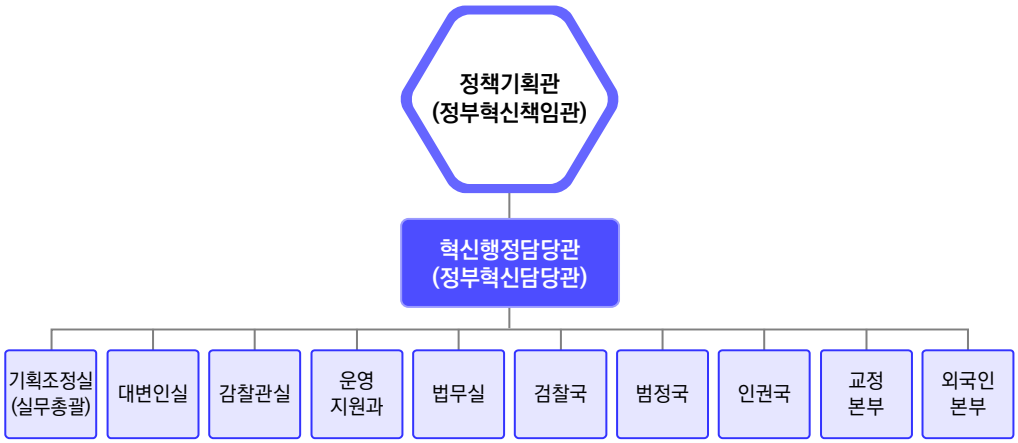
2023년에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3개 전략, 9개 중점과제 분야에서 11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실·국·본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실국본부 주무과장 등이 참석하는 '정부혁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법무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제시를 통해 혁신 성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그림 2-1 |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정부혁신 어벤져스 정기회의



정부혁신 3대 전략과 중점과제 | 정부혁신 어벤져스 정기회의(2023. 8. 10.)

| 그림 2-2 |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 구성도



나. 주요 혁신 성과

1)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이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따로 발급받지 않고 전자소송시스템 안에서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3. 8. 8.)하여 2024. 8. 1. 시행될 예정이다.

| 그림 2-3 |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법 개정



2)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시행으로 체류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

체류외국인이 모바일 앱으로 통장개설 등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송한 외국인 등록증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확인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외국인등록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시행하였다.(2023. 9. 18.)

이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금융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위·변조 및 타인 신분증 도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다.

| 그림 2-4 | 외국인진위확인서비스 업무 흐름도

내 용

(금융기관 → 금융결제원 → 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서 추출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 전송
(법무부 → 금융결제원 → 금융기관) 진위여부 확인 결과 실시간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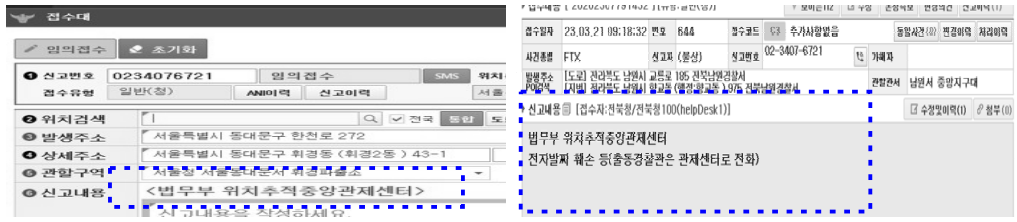
3) 전자감독 실시간 모바일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검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출동경찰관의 관용 휴대전화 등으로 대상자의 인상착의, 특이사항, 위치정보 등 검거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2023. 2. 14.)

이러한 효율적인 소재추적 및 신속한 검거환경 마련으로 강력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다.

| 그림 2-5 | 전자감독 실시한 모바일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내 용



112 접수시 자동 현출 화면 | 신고내용에 자동 현출 화면

4) 숙련기능인력(E-7-4)제도 확대를 통한 산업계 구인난 해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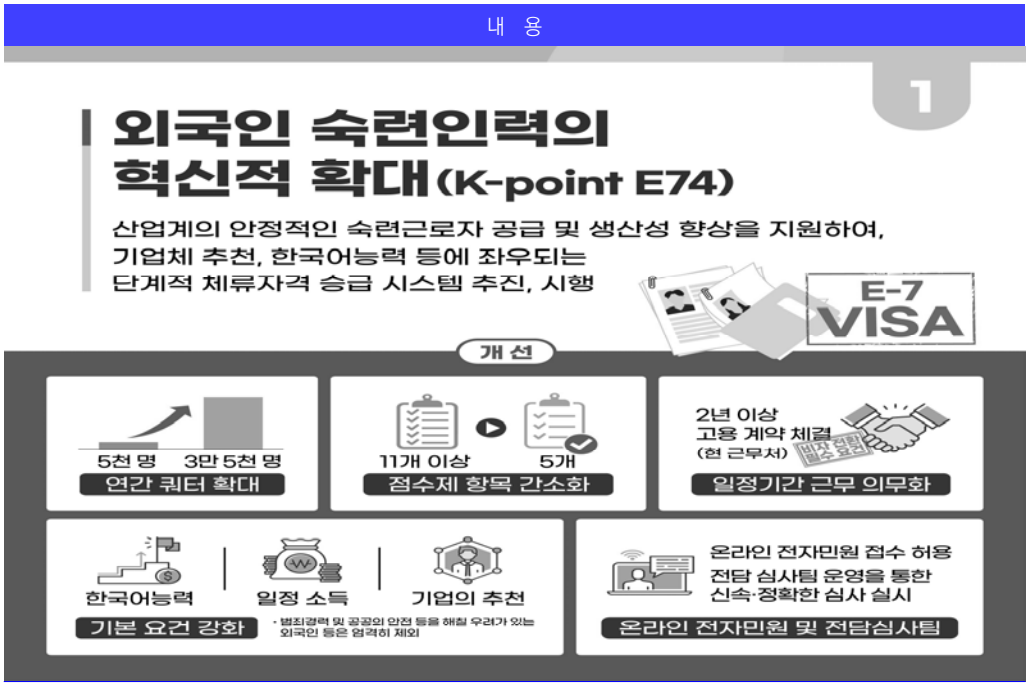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법무부는 산업현장에 숙련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를 시행하였다.(2023. 9. 25.)

*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한 후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1) 숙련기능인력 연간 쿼터 확대, 2) 점수제 항목 간소화 및 한국어 능력 검증 강화 3)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4) 온라인 전자민원 및 전담심사팀 운영이며, 그 결과 전년 대비 6.75배 증가한 12,035명의 숙련 근로자들이 공급되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 그림 2-6 | 혁신적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시행

내 용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증가하는 범죄와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중요해졌다. 또한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 및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부(部)내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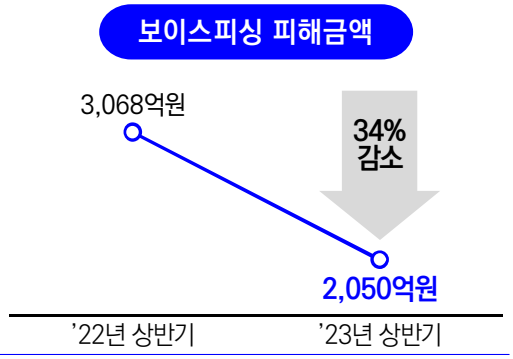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이 안전한 나라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적극행정 노력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 민생범죄에 적극 대처하였고, 마약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 및 치료·재활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과 농어가 목소리를 비자정책에 반영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제퇴거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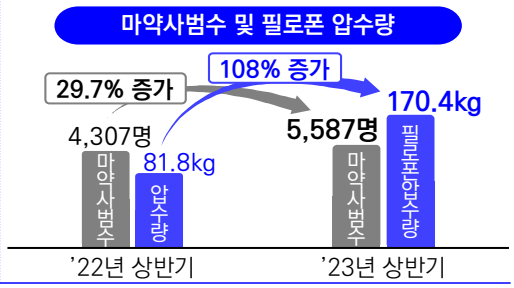
| 그림 2-7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범죄에 적극 대처

- 아동·상습성범죄자 등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추진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를 강화
-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 민생침해 범죄에 정부 역량을 집중
  * 34개 전세사기 조직 일망타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30% 감소('23.)



| 그림 2-8 | 마약범죄 대응 강화로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

- 일상생활로의 마약범죄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및 치료·재활을 실시
  * 치료·사회재활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23.6.)
- 지역사회내 마약사범 관리를 위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
  * 마약사범 대상 수시 약물검사, 초·중·고 출장 법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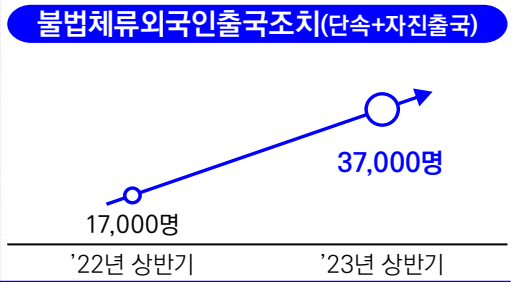
| 그림 2-9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 제도를 도입·개선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과 농어가 목소리를 비자정책에 반영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22. 2천명→'23. 35천명, 17배↑)
  * 파종·수확기 등 농어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상한 상향(5개월→8개월)
-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 제도를 도입·개선
  *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분야 우수인력 취업허용 범위 확대(비자 신설)
  * 영주·귀화 패스트 트랙 시행으로 영주권·국적 취득 기한 단축(6년→3년)



| 그림 2-10 | 불법체류외국인 관리를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엄정 확립

- 서민 일자리 잠식하거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제퇴거 등을 실시
  * 택배·배달라이더, 불법택시 영업 등 37천명 단속('23. 2배↑), 불법고용주 2,991명 등 구속·범칙금 부과



2) 적극행정 국민 소통창구 마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였다. 법무행정 분야별 정책고객 및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심사 및 개인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의 국민 체감도 제고에 일조하였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직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직원 13명을 선발하고,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적극 추진하였다.

| 표 2-1 | 2023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13개 사례)

구분	등급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 최초로 환수하다	국제형사과
	우수상	학교를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대학교 입학, 직업학교 입학 등 단계별 성공체험을 만들어간다	광주보호관찰소
	장려상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지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제도 도입을 통한 직업훈련 내실화 기여	제주교도소
		적극적 정책현장 개방으로 이민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다	출입국기획과
		자해·자살·도주불안 락!(Lock) 국민사회안전 & 수용자 생명·신체보호 락!(樂)	청주교도소
		담장 안의 외국인도 돌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대전교도소
'23년 소·확·행 직원선발	범죄예방정책국	외국인 위탁생 및 보호자를 위한 통·번역 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도서지역 내 사회봉사 협력기관 발굴을 통한 집행 여건 획기적 개선	인천보호관찰소
	교정본부	무연고 장기수형자 복잡한 민사문제 해결로 사회복귀 꿈 키운 교도관	홍성교도소
		법무시설 조성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 안양교도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다	안양교도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결혼이민자 가정의 육아 지원을 위한 예외적 체류자격 변경 허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미성년 자녀 양육 불법체류자에 대한 예외적 범칙금 면제 및 체류자격 변경 허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4) 적극행정 주요성과 사례 발굴·포상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과 국민체감 확대를 위해 매월 법무부 전 분야의 업무 중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가 발생한 사례를 '주요성과'로 선정, 선정부서에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부(部) 내 적극행정 동기부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표 2-2 | 2023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주요성과 사례(8개 사례)

분야	선정월	주요성과 사례명	기관(부서)
선제적조치	4월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체류관리과
적극법제	5월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국가소송과
기타	6월	소년수형자 학과교육 강화 관련 '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사회복귀과
관행극복	7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 지원 개선	법조인력과
적극법제		「스토킹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법제과 치료처우과
적극법제	8월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무심의관실
기타	9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4.)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	체류관리과
적극법제	10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 특별법 제정	형사법제과

5) 적극행정 문화 확산

가) 적극행정 인식 제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등을 공유하여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을 개최, 우수표어를 활용하여 자체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부(部) 내 직원들의 적극행정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1 | 적극행정 자체 포스터



나) 적극행정 홍보 확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를 제작, 모니터링단 개인 블로그 및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적극행정에 관하여 전달하고 소속기관 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적극행정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 그림 2-12 | 전광판을 통한 적극행정 홍보 및 적극행정 카드뉴스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법무행정개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김승권

가. 추진배경

「정의와 상식의 법치」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안전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 변화관리 교육

창의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 ①전화외국어, ②전자도서관, ③온라인 문장강화, ④독서증진, ⑤오디오북, ⑥소속기관 방문 정부정책소통과정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 '23년 6개 과정, 총 7,414명 교육 실시(온·오프라인 병행)

나) 직무 워크숍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소년보호기관 특사경, 지식행정 등 직무역량강화 워크숍(6개, 48백만원)을 실시하고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바른급식사랑방 등 우수 학습동아리(7팀, 6백만원)를 지원하였다.

| 표 2-3 | 2023년도 교육과정 운영(3개 분야 8개 과정, 9,821명 참여)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인원	시기	비고
창의역량 강화	① 오디오북	전 직원	2,000	6~11월	6회
	② 전자도서관(e-book)	전 직원	3,128	연중	
	③ 독서증진	전 직원	1,000	6~11월	6회
	④ 온라인문장강화강의	전 직원	18(첨삭)	7~10월	3회
조직문화 향상	⑤ 정부정책소통	소속기관	1,028	6~11월	40회
직무역량 강화	⑥ 전화외국어	전 직원	240	6~11월	3회
	⑦ 워크숍(6개)	전 직원	380	5~11월	
	⑧ 학습동아리지원	우수 학습동아리(7팀)	2,027	연중	
합계	8개 과정		9,821		

※ 우수학습동아리 활동회원(2,027명)

- 전자감독 905명, 바른급식사랑방 380명,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64명, APIS 정보분석 429명, 사회내 자원을 활용한 수강명령 협력진행 활성화 연구 모임 6명, 보호관찰 국제협력단 60명,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183명

2) 국민·안전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2023년 1,031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총 197건을 채택하였으며, 제안자의 소속기관에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등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여 행정제도개선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나)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창의적 분위기 조성

2023년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전자감독 실시간 모바일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등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 그림 2-13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 표 2-4 | 자체 우수사례 내용

번호	분야	우수사례	등급	기관(부서)
1	법무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최우수	법무심의관실
2	출입국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서비스 시행으로 체류외국인비대면금융서비스 이용	우수	이민정보과
3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확대를 통한 산업계 구인난 해소 지원		체류관리과
4		조선업 외국인력의 정착지원을 위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범실시	장려	이민통합과
5	범죄예방	전자감독 실시간 모바일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우수	전자감독과
6		청소년 마약예방 법교육 실시 및 콘텐츠 개발	장려	보호정책과
7	교정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장려	사회복귀과
8		여성수형자 사회복귀 종합지원	장려	직업훈련과
9		2차원 QR코드 영상지식정보활용 등을 통한 업무방식 개선	장려	청주교도소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관방문, 정부정책 소통교육', '직원 간 소통 문화 기반 확대', '연가 사용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등이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변기선

가. 추진배경

정부는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를 추진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부응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의 적극적 처리, 타 부처 소관 민원의 신속한 이송,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안전한 민원환경의 구축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 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36,654건으로, 그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76.9%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5 |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23. 1. 1. ~ 2023.12.31. 기준)

구분	계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장관과의 대화 접수·처리
건수	36,654	28,190	7,748	716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행정복지센터·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3) 국민청원제도 운영 개선

청원법 개정(2020. 12. 22.)으로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제도가 도입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원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2023년 총 2,077건의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해 총 57회의 청원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원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4)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2023년 접수된 총 4,403건의 국민제안 중 '법무부 홈페이지 내 콜센터 전화번호 유/무료 표시' 등 12건을 채택, 3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표 2-6 | 국민제안 주요 반영사례

연번	개선사항
1	법무부 홈페이지 내 콜센터 전화번호 유/무료 표시
2	법무부 홈페이지 내 줄임 제목글에 대한 말풍선 서비스 기능 추가
3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 작성자 비공개 기능 추가

5) 민원행정 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위해 '2023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67점으로 전년도 대비 0.09점 하락하였으며, 일반민원에서는 신청편리성(8.68점)이, 인터넷민원에서는 신속정확성(8.10점)이 가장 낮게 나와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7.7점으로 전년도 대비 0.3점 상승하였으며, 단계별 친절도는 수신단계 90.2점, 응대단계 87.1점, 종료단계 85.9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결과를 BSC 공동지표 부서 평가점수로 반영하였으며, 미흡한 기관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또한 본부 및 소속기관에 결과를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게 하고 미흡사례는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의 중요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신문고·국민제안·온라인청원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윤영신

가. 추진배경

정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국민불편·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신산업, 탄소중립, 지방시대 실현, 투자·일자리 창출을 규제혁신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하였다. 법무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맞추어 국민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각종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나. 추진내용과 성과

1) 국민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각종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균형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정책(K-point E74)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의지를 공표하고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단계적으로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국가간 인재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등 외국인 우수인재를 위한 정주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한편,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고자 2022년 1차 개선 추진에 이어 2차 108개, 3차 46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국민들이 전자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거쳐야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문서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컴퓨터 작성방식(CBT) 변호사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 예치 및 본국 재산 추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우수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을 확대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 등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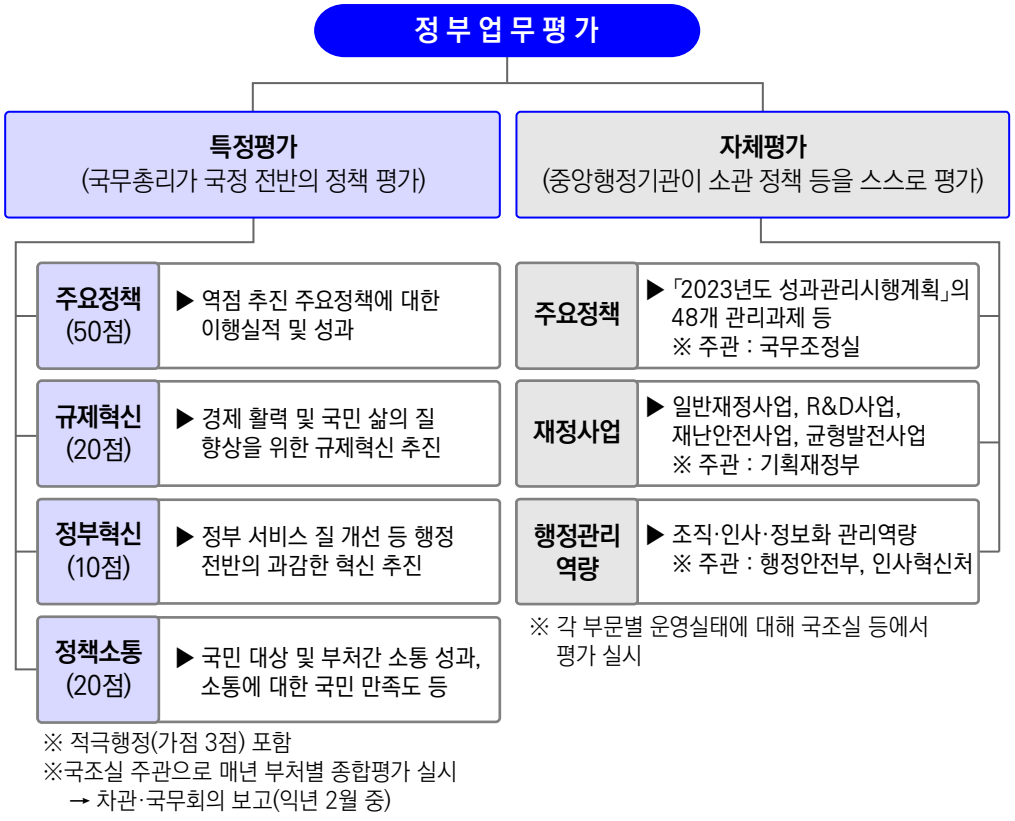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별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분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14 |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특정평가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가) 주요정책 부문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추진 •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관련 「수사준칙」 개정 • 스토킹피해자 보호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 • '머그샷' 공개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 관계부처 협력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및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등 구성·엄정 대응	•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 조선업·산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및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례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시행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3.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 65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을 위한 개정안 마련 및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 국제법무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국제법무국' 신설 •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실시한 첫 변호사시험 안정적 시행 및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추진	• 국민편익을 위한 디지털 법무서비스 구축 추진
4.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및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거창구치소 신축, 대구교도소 이전 등 수용동 증·개축 추진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나) 규제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11건 중 11건 완료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과학·기술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경제형벌 2·3차 개선과제 발표 등 국민 경제에 활력을 주는 규제 개선 • 전자소송 공문서 제출 간편화를 위한 '민소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 전자주주총회 참여가 가능한 상법 개정 등 법무·인권 및 출입국·외국인 정책 분야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검토과제 수용 처리 개선	•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수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다) 정부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서비스 정부, 애자일 정부, 선제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 – 정부혁신 실행계획 : 다른 부처와 차별화되는 우리 부만의 혁신과제 발굴(3개 분야 11개 과제) – 국민체감도 :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서비스 시행으로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전자감독 실시간 모바일 정보제공시스템 개발로 범죄예방 강화, 산업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제도 혁신	• 각 기관 간·부서 간 협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 •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의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혁신 노력 필요 • 정책 집행·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대국민 소통 강화 노력 필요

라) 정책소통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방송 출연 확대) 장관 출퇴근길 및 국회 등청길 방송사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방송 출연 대폭 확대 – 국조실 선정 방송출연 우수부서 선정(총 65회) ▸(온라인 소통 강화)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책 소통으로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 유튜브 채널 실버버튼(구독자 10만) 달성 ▸(마약근절 캠페인)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 선수 활용 마약근절 캠페인 실시('23.4.~10.)	▸(외신 홍보 부족) 외신 대상 홍보 강화 노력 필요 ▸(협업 체계 강화) 대·내외 정책 사전협의 체계 강화 필요

2)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정과제, 대통령업무보고 등을 반영한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8개 관리과제를 추진하였다.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정책 효과성 등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7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매우우수(1등급) 과제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과제명	주요성과	비고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확대 • 심리치료 집행체계 개편으로 근원적 재범요인 개선 • 디지털 분석 등 과학적 방식의 준수사항 점검 확대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신설 추진('24. 7. 개소 예정)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나)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36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7개(20%), 보통 23개(65%), 미흡 6개(15%)로 3단계 등급화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 및 지출구조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다)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인력운영 추이 및 대·내외의 행정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책방향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 및 역점 추진과제의 인력을 증원하여 정책 현안의 적극적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정부조직 진단·컨설팅에 참여하여 조직운영체계,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한 인력 효율화·재배치를 실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분야에서는 국정과제 교육 및 연간 상시학습 이수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공직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공직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만, 교정·보호·출입 기관 등 공안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 비율이 높은 조직 특성상 계획 인사교류, 개방형·공모 직위 외부인사 임용률 등 일부 지표의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분야에서는 민간채널 협업으로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거대 인공지능 도입 추진 등 지능형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침해예방·대응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보안점검 대상 확대 등 선제적 보안 활동으로 정보보호 수준이 높게 평가되었다.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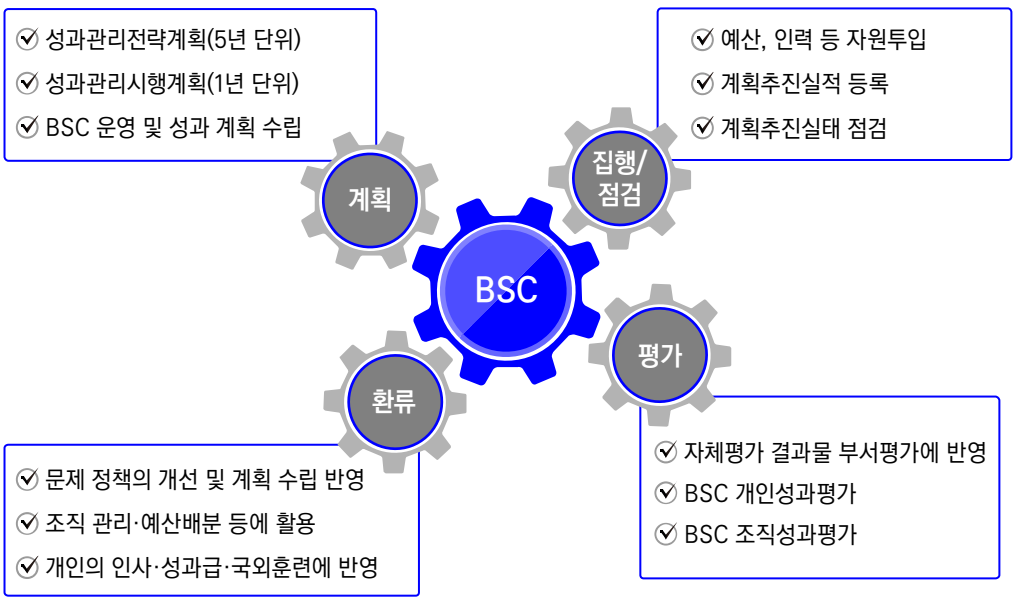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수립, 실적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2023년 법무부(본부 및 검찰청 제외)는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340개의 BSC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총 925개 부서 및 2만 4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30%, 교육훈련에 10% 각각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15 | 성과관리와 BSC 체계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유재륜

가.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시사항 시달 시 소관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시사항별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2023년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23건이다. 이 중 법무부 주관지시사항 12건 중 1건을 이행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중이며, 타부처협조 지시사항 11건 가운데 3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중이다.

나. 지시사항 현황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12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	2022. 7월	비자정책의 유연화	종 료
2	2022. 7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추진중
3	2022. 7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	추진중
4	2022. 7월	인권 보호 행정 추진	추진중
5	2022. 7월	부정부패 등에 대한 엄정 대응	추진중
6	2022. 7월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추진중
7	2022. 9월	스토킹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추진중
8	2023. 4월	마약 범죄 근절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추진중
9	2023. 8월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추진중
10	2023. 9월	교권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중
11	2023. 10월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연계범죄 근절	추진중
12	2023. 11월	불법사금융(민생약탈범죄) 척결	추진중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11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주관부처)	이행상황
1	2022. 7월	성희롱 피해자 등 보호에 만전 (여가부)	추진중
2	2022. 9월	대통령 순방(영미캐) 후속조치 만전 (외교부)	추진중
3	2022. 10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추진 (기재부)	추진중
4	2022. 12월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사업실태 점검 및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국조실)	종 료
5	2023. 1월	전세사기 대응 (국토부)	종 료
6	2023. 2월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 단속 (국토부, 경찰청)	종 료
7	2023. 2월	불법 콘텐츠 근절 위한 지원대책 마련할 것 (문체부)	추진중
8	2023. 4월	전세사기 대책, 지속 점검·보완 (국토부)	추진중
9	2023. 5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고용부)	추진중
10	2023. 6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국조실, 기재부, 권익위, 행안부)	추진중
11	2023. 6월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마련 (국조실)	추진중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비상안전기획관실 사무관 하헌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1) 을지연습 실시

2023년에는 북한의 빈번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우크라-러 전쟁, 중-대만 갈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와 총력전 대응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둔 비상대비 훈련이 필요하였다.

법무부는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전쟁 이전 위기관리연습과 전시전환연습, 전면전 대응연습을 포함한 을지연습을 실시(2023. 8. 21. ~ 8. 24.)하였다. 전시 법무기능 수행의 심장부로서 전시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정립하였으며, 중앙통제단 및 자체 사건을 처리하는 도상연습과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시 우발상황 대응능력 숙달을 위해 군·경·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을지연습을 통해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 법무행정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국가 안보태세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이 같은 내실 있는 연습실시 결과, 법무부는 비상대비확립 유공으로 202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안정적으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 그림 2-16 | 2023년 을지연습



장관 주재 일일상황보고



중앙통제단 사건 처리 도상연습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의 변화와 을지연습 시행간 도출된 법무·검찰·보호·인권·교정 및 출입국관리 전시 업무 수행계획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충무3600 법무부 집행계획」, 「충무6000 자체충무계획」을 개정하였고 본부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시행태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소속기관 117개의 시행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였다.

3) 소속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 소관 총 52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실태를 점검하여 대상 소속기관의 방호계획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공초소 등 방호실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규 개청 기관을 통합방위본부와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방호태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평상시에도 소속기관은 물론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재난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1) 법무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2021년 법무시설 내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본부, 실·국·본부 및 전 소속기관의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을 제정한 이후 2023년에는 변화하는 재난관리 환경과 국민의 요구사항,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실제 재난 상황 대응 과정에서 발굴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법무시설 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2)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법무시설 내 재난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및 「법무시설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점검하기 위해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순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은 여주교도소에서 '산불로 인한 기관 내 화재 발생 및 집단도주 등 복합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재난발생 현장의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13개 협업기능 작동 및 매뉴얼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2024년도에는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법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그림 2-17 |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여주교도소 현장 훈련

3)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중앙부처, 지자체 및 안전 관련 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C등급 이하 위험시설, 노후화 시설물, 사고우려시설 등 205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특히 민간전문가 218명, 전문업체 29곳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진단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 결과 주벽 이격 및 박리 점검, 구조체 균열 확인, 건축물 마감 확인, 사면 침하 여부 및 옥상 누수 등 결함사항에 대한 현장조치와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하였다.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요인을 효과적으로 사전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그림 2-18 | 법무부 집중안전점검 추진단 구성



4) 일일재난안전결산 제도 운영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는 매월 시의적절한 테마를 선정하여 전 소속기관이 자체 일일점검을 통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일일재난안전결산 점검 제도를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8월 중점점검테마로 '태풍 및 강풍 대비 시설물 점검'을 선정하였는데, 올해는 대한민국에 잦은 태풍이 예상되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태풍 대비 점검을 완료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 카눈으로부터 시설 및 인명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법무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11월에는 '폭설·한파 대비 시설물 점검'을 선정하여 눈이 자주 왔던 올 겨울, 대설로 인한 기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정된 중점 테마 이외에도 일반 시설물·장비 및 매뉴얼 점검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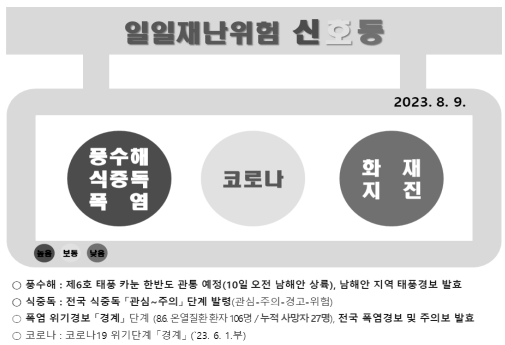
5) 일일 재난안전 상황판단회의 시행 및 일일 재난안전위험 신호등 운영

수용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수용공간에 보안을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법무부 소속기관의 특성상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는 일 단위로 재난담당 전문기관 및 부서, 언론보도 등 재난과 관련한 각종 징후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일재난위험 신호등을 제작하여 전 소속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재난예방 및 대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체 상황판단회의 결과 위기징후가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실·국·본부 관계관을 포함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단계를 판단 및 전파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법무부의 재난안전 비전인 「법무시설 인명사고 제로화」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그림 2-19 |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법무샘 게재



법무샘 내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배너



일일재난위험 신호등

다.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

1) 본부 및 소속기관 코로나19 감염확산 지속 대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취약한 수용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3년 3회에 걸쳐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속기관 방역 정책을 논의·수립하였다. 특히 수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완화된 방역 기조보다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해 수용시설의 대규모 감염 발생을 예방하였다. 법무부는 약 3년간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활용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추후 신종 감염병의 등장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법무시설 보호

2023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감염병이 많았으며 교정기관에서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위생상의 미흡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는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제작을 지시하였다. 그 결과 각 실·국·본부별로 식중독 매뉴얼이 개발되었으며, 기관별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하여 매월 식중독 카드뉴스를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법무시설 식중독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2023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빈대가 유행하였다.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는 빈대를 수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일종의 재난으로 판단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였다. 2023년 11월 ~ 12월 중 4주 간 빈대 정부합동대응회의에 참석하여 빈대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국·본부별로 「빈대 발생 예방 및 발생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의 왕래가 잦고 밀집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빈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빈대가 발생한 기관에서도 즉시 대응하여 안전한 수용환경을 유지하였다.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가. 데이터·신기술 기반 과학적 법무행정 추진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박상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본격 추진에 맞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법무행정 체계로 전환을 위해 법무행정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과제 발굴 및 적용,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도입이 가능한 법무행정 과제 발굴, 컨설팅 및 기술 검증을 추진하였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문서 복사, 붙여넣기, 자료검색, 파일 다운로드 등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프로그램이 수행(소프트웨어 로봇)

2) 추진내용과 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법무행정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경찰관서별 종합안전도, 경찰 순찰활동, 112신고 건수 데이터를 재분류·취합하여 셉테드(범죄예방 환경 개선) 컨설팅 사업 대상지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군구 인구 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역별 범죄 발생 위험도'를 분석·제공하는 등 총 15개 데이터분석 과제를 발굴하여 9개 과제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실·국·본부를 대상으로 RPA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업무 자동화', '법무행정 업무포털 웹 서비스 점검 자동화', '법무행정 메일 서비스 점검 자동화', '법무부 전자민원(교정) 연계 서비스 점검 자동화'를 구축하여 최대 업무수행 시간을 87%(일일 수작업 123분 → RPA 수행 16분) 절감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루었다.

셋째, 「'23년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정되어 '법령, 업무지침, 업무매뉴얼 등의 검색·요약 및 챗봇서비스' 등 6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 및 3개 과제에 대한 기술검증을 수행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법무행정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컨설팅(행정안전부)」에 선정되어 데이터 역량진단 실시를 통해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원 대상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신기술 기반 과학적 법무행정 수행을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범정부 데이터 업무 정책현안 등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 등급(86.76점)을 획득하였다.

다섯째, 마을변호사 지역별 현황 등 2종에 대해 국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로 개방하는 등 총 21종(전체 240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프로그램

3) 발전방향

신규 데이터 분석 과제를 추가 발굴·수행하여 법무행정 정책 추진에 적용할 예정이며, 단순·반복 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발굴하여 법무행정 업무 자동화(RPA)를 지속 추진하고, 「'23년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지원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컨설팅 결과 및 기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행정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신기술 기반 과학적 법무행정 추진'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법무행정 수행, 업무절차 자동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고품질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 선제적·맞춤형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시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하는 국민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제적·맞춤형으로 법무정책정보 제공, 정책 중심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 국민 개선 의견 적극 반영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첫째, 활용도가 높은 정보(주요 법무정책, 공공데이터, 통계, 보고서 등)의 개방을 확대하여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국민이 보다 쉽게 법무부와 소통하고 법무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관·본부장·기관장과의 대화 창구를

운영하고, 맞춤형 관심 분야 메뉴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였다.

둘째, 홈페이지 '국민 제안'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홈페이지 연락처↔스마트폰 전화앱' 자동 연결 기능, '게시판(제목) 말풍선 적용', '공지사항 본문 바로보기', '교정 접견시 동반인 정보 연계' 등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하였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23년 법무부 1·2분기 민원서비스 종합 포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셋째, 홈페이지 방문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민원서비스' 메인 화면을 전면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정 경력채용 합격자 발표서비스 도입',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신설', '국립법무병원 면회예약 개선', '간편인증 서비스 추가 확대', '변호사시험 CBT 프로그램 체험하기', '마을변호사 검색기능 도입', '교정·국립법무병원 인터넷편지 개편' 등의 선제적·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넷째,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 접근 소외계층이 불편함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실국본부 7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갱신하는 등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지속 개선하였다.

이런 다양한 노력의 성과로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서 98.2점(중앙부처 평균 86.9점)을 획득하여 3년 연속 웹사이트 관리 우수 평가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21년 92.54점 우수, '22년 95.22점 우수),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향상 및 홈페이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관리역량평가 '웹사이트 관리 우수성'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 그림 2-20 | 온라인민원서비스 메인 개편



| 그림 2-21 | 교정 합격자 발표 서비스 도입



3) 발전방향

2024년도에도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홈페이지 민원서비스('교정시설 도서반입 사전등록 서비스', '홈페이지 민원접수', '답변등록 알림방식 개선', '홈페이지 동시 접속자 폭주시 부하 분산 서비스 도입' 등)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을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모바일 및 앱까지 확대하는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 법무지식 생산·공유·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 및 성과 창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김시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업무 효율 향상 및 조직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무지식*의 축적·공유라는 목표하에 업무 개선사례,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보고서·연구논문 등 품질 높은 자료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법무지식 : 법무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실천적 정보

2) 추진내용과 성과

2023. 2월 지식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 지식행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식등록 주간', '최초 등록 시 마일리지 점수 추가 부여', '우수성과 직원 보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법무지식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11.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 5월 지식행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지식인·우수 학습동아리 운영자·법무지식 컨테스트 입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 우수사례 공유 및 분임 토의,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여 지식행정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분기별 우수지식인 및 연말 지식행정 우수직원 선정 시 최초 지식등록 직원을 배정하여 신규 참여를 장려하고, 단순 양적 활동이 아닌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준 높은 지식활동을 전개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고품질 지식 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2023. 7월 ~ 9월 '법무지식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개인부문 '구입 실무 업무매뉴얼', 단체부문 '바이오정보(지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개발' 지식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포상하는 등 지식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활동 촉진 학습동아리 7개를 자체 선정하고 운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경진대회에 '바른사랑급식방' 학습동아리가 입상하는 등 학습동아리를 통한 집단 지식 창출 및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또한 전개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고품질 법무지식 등록·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및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실질적·실효적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당한 평가 및 보상,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의 활동을 지속 실시하여 지식사회에 적합한 명품 법무지식 발굴 및 법무행정 활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라.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 역량 강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배재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3년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해킹조직들이 상대 진영 국가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에 따라 '모바일 어플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포감과 혼란 조성', '웹서비스를 해킹하여 콘텐츠 게시를 통한 가짜 정보 제공', '디지털 사회를 마비시키는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등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였고, 법무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중요 정보와 자산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법무부는 범죄예방, 교정행정, 외국인 관리, 출입국심사 등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 랜섬웨어 :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

** 디도스 공격 :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

이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무행정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각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조치, 보안관제 통합분석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첫째, 보안관제 통합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실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법무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을 분석·제거하였고, 대민 홈페이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을 예방·차단하였다.

둘째,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해 소스코드를 진단·조치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신규 구축 중요 시스템(바이오정보 전문 분석시스템 등)에 대한 긴급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최신 해킹기법을 이용한 모의해킹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 보안성을 높였다.

셋째, 법무부 직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보보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메일로 제공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는 매일 1회 보안 관련 주요 뉴스·핫이슈 등의 보안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메일 발송함으로써 최신 보안 동향 전파 및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직원들이 교육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요인 사전 제거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중요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마.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 배재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업무환경은 매년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노후화되는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인해 안전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사이버안전센터에서는 기술지원 종료와 단종된 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 및 고도화하여 보안취약점을 해소하고,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고품질의 법무정보통신망에서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안인증이 만료된 네트워크 접근제어 장비를 교체하였고, 증가된 네트워크 트래픽 해소를 위해 보안장비를 고도화하여 기관별로 통신회선 대역폭을 3배 이상 확대하였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유해 사이트 차단 확대와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였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여 더욱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고정식과 이동식 도청탐지기를 추가 도입하여 도청탐지의 수준을 제고하였고, 장애가 빈번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법무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AI 기반으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법무정보통신망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기술지원 종료 및 단종되는 장비들에 대한 교체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보안취약점 해소 및 운영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활용정보 항목 확대 및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윤정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6개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업무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형사사법포털 간 변호사 등록정보 연계,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자문서 등 연계, 검찰-국토부 철도특사경 업무시스템 연계 등 기관 간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등 형사사법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편인증 방식을 확대하였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655여 종의 유통서식을 하루 평균 약 210만 건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79억 6,000만 건(전자문서 약 8,417만 건, 사건정보 약 78억 7,583만 건)에 달하는 정보를 공유하여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였다.

| 표 2-7 | 형사사법포털 운영 현황

구 분	'23 운영 현황	누적 건수('10. 7.~23. 12.)
포털 접속	5,207만 건	4억 5,116만 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81만 건	508만 건
사건진행 상황 조회	1,821만 건	1억 2408만 건
벌과금 조회	289만 건	2,545만 건
민원서비스	9만 건	76만 건

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및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사무관 조윤주

현재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KICS")은 2010년 구축 이후 13년이 경과된 노후 시스템으로, 눈부신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결과물들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경찰·해양경찰과 함께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형사사법 업무에 적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절차 실현을 위한 형사사법 업무 혁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디지털시대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미래지향 IT구조 개선'을 전략목표로, 기존에 종이문서로 진행되던 형사절차를 전면 전자화하여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조사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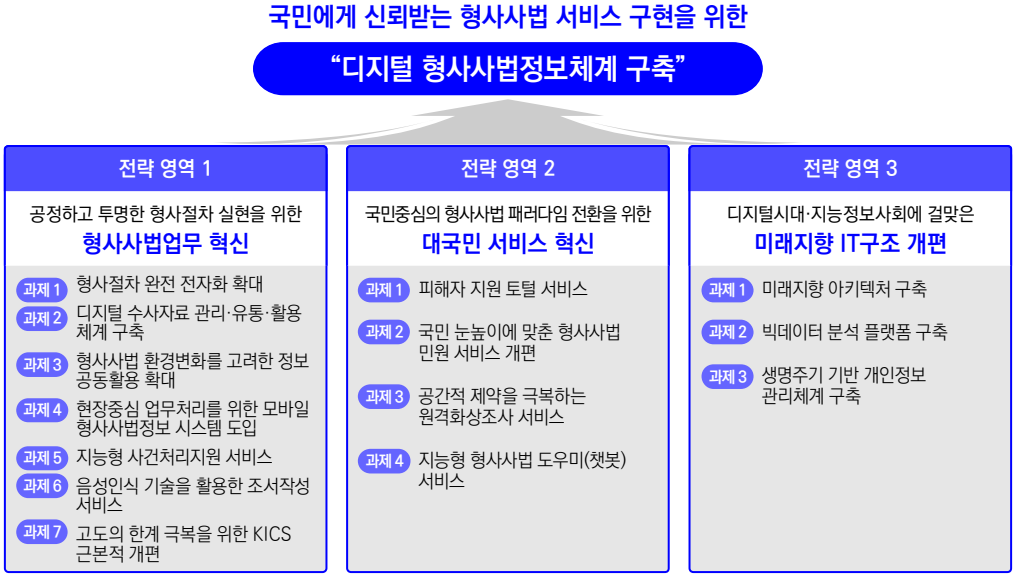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21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총 3단계에 걸쳐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단계 사업은 2022년 8월, 2단계 사업은 2023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3단계 사업은 2023년 8월에 착수하였다.

1단계 사업에서는 현행 KICS의 분석 및 기본 설계를 수행하여 2,118건의 기관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최종 2,087건을 반영하기로 확정하였고, 2·3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확정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36,481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형사사법포털·범죄피해자지원포털의 기능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생성, 유통을 규율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에 대비한 하위 법규 제정을 위해 형사사법기관(법무부·검찰·경찰·해경·공수처)으로 구성된 TF에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쟁점 사항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법원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 KICS가 구축되어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확대되어 민원인이 직접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각종 통지와 안내를 제공받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지원 서비스 등이 도입되어 조사 시간이 단축되고, 조사과정이 투명해지면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22 | 사업 목표



12. 성별 편견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주무관 김태리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조직 신설 이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23년에는 '법무행정의 실질적 성주류화 실현'을 비전으로 직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 법무행정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의 4가지 대과제와

소속기관 양성평등 교육전문성 강화 및 다양화, 훈령·홍보물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 점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정비 등 수요를 반영한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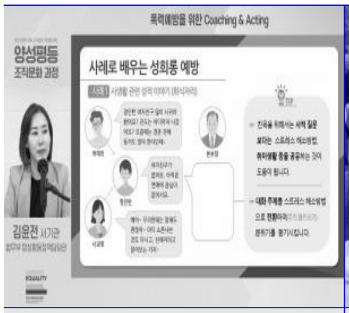
1) 의식 개선 분야

양성평등교육 실시 및 성인지 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해 조직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양성평등교육의 경우 집합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의 3가지 형태로 실시하였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실시간 쌍방향(ZOOM) 교육(5급이상)과 합숙교육(6급이하, 양성평등업무담당자)을 별도로 총 9회 운영하였으며 250명이 수료하였다. '법무연수원 연계교육'의 경우 승진자 및 신규자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총 6회 실시하였으며, 429명이 수료하였다. 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의 경우 기관장 등 간부 대상 교육 104회(847명), 영화 등 문화융합형 교육 17회(711명)를 포함하여 총 235회 실시하였으며, 6,090명이 수료하였다.

한편, 2023년 법무부 '양성평등의 날'의 경우 총 4회(2월, 5월, 9월, 11월) 운영하였으며,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법무샘에 게시하여 구성원들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 그림 2-23 | 양성평등교육



실시간 온라인교육



합숙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2) 정책·제도 분야

우리부 소관 행정규칙 314개를 성인지 관점(△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균형참여, △성별통계)에서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1차 개선 추진 결과 「교도작업 운영지침」별지 서식 중 특정 성별만 지칭하는 용어인 '형제'는 '형제자매'로, 아내와 아들을 의미하는 '처자'는 '배우자와 자녀'로 개정 완료하였다('23. 2.).

한편, 대국민 홍보영상 시나리오 2건(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보호제도, ② 아동인권 증진)에 대해 『법무부 홍보물 제작 양성평등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피해자는 위축된 소녀 vs 가해자는 위협적인 남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적 구분을 지양하고 '피해자 vs 가해자'로만 표현할 것을 제안하여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개선하였다.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기 임기('20. 4. ~ '22. 4.)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발족하여('22. 12.)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39개의 작품 중 6개의 작품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분야

폭력예방교육의 다양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사건 처리의 내실화,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연구」('21) 결과를 반영한 폭력예방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직접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고위직 대상 별도 세미나를 실시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주변 사람들(주변인)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변인 개입 교육 프로그램과 효과성을 연구하여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표준교안을 제작하였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 및 숙달모델을 개발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사건 처리의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소속·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처리절차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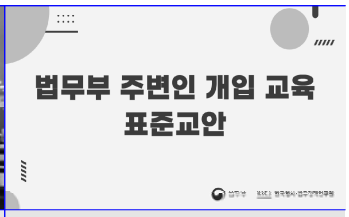
| 그림 2-24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대상 별도 세미나



주변인 개입 교육 표준교안

다.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조직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시간 쌍방향(ZOOM) 교육, 합숙교육, 영화 등 문화융합형 교육 도입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실시, 고충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 및 숙달모델 개발,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홍보하고,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과 실태조사 등에서 도출된 개선점 등을 양성평등 정책 수립·추진 시 반영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조직 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추진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가. 교육훈련 개요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이혜린

2023년 법무연수원은 「미래 번영을 이끌 법무·검찰 인재 양성」이라는 주요 교육 목표 아래, '전문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인권을 보호하는 공정한 법무·검찰 공무원 양성',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행정 인재 양성'을 세부 교육 목표로 설정하여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과 국내·외 유관기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총 926개 과정, 6,557회, 510,796명(집합교육 165개 과정, 300회, 11,385명 / 사이버교육 761개 과정, 6,257회, 499,41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교육 인원 기준 전년 대비 18.1% 증가(집합교육 50명, 사이버교육 78,224명 증가)한 수치이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우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 체계화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의 다양한 교육수요와 교육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요도가 상승한 업무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참여·실습형 과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직무역량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예술·인문학 등 문화 향유 프로그램과 힐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소양 교육을 운영하여 교육생에게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직렬별 교육을 살펴보면 검사 교육의 경우 3~4년차 검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선택)」 과정의 교육 대상을 검사 전체로 확대하여 공판, 아동학대·성폭력범죄, 조세·관세, 경제범죄심화, 특허·지재 등 형사부 주요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 희망자의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였다. 일반직 교육의 경우 「보호직 5급 관리자 리더십」, 「보호직 6급 역량강화」과정을 신설하여 조직 내에서 경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신규자 과정에는 국가관·공직관 과목을 집중 편성하고 승진자, 리더십 과정에는 양성평등, 갈등 조정을 중점 교육하는 등 과정 특색에 맞는 직무·소양과목을 편성하여 단계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교정직 교육의 경우 입교 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여 직무중심의 사전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와 업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주입식 정보 전달형 교육을 사례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교정공무원 직무집행 강화체계 구축 작업으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수용동 근무실습', '교정장비 사용법' 등 신규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무·검찰 구성원 외 특별사법경찰, 행정기관 국가송무 소송수행자, 군검사 등 타 부처 대상 직무역량 교육 또한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하고 국가 전반의 법집행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검사 교육과정 개편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구민경

1)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 및 검사 역량강화 과정 개편

가) 추진배경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의 경우 새로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부장검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를 통해 일선청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부장검사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여 중간관리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동안 저년차 검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과정(경력 3~4년차)과 선택과정(경력 5~7년차)으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나 선택과정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임의로 제한(경력 5~7년차)되어 참여율 저조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2. 11월 실시 '법무연수원 검사교육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분야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선택과정을 각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연차 제한없이 전 검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성 및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였다.

나) 상세내용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승진대상자인 부부장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시기, 기간을 설계하고, 부장 승진자 중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예외적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상반기 부장승진 예정자인 부부장 검사를 대상으로 1주(5일), 2회차로 나누어 교육 진행하였고, 2023년 하반기 부장 승진자 중 부장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1주(5일), 1회 진행하였다.

검사 역량강화 교육은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선택과정을 폐지하고, 전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별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공판」, 「아동학대·성폭력범죄」, 「조세·관세」, 「특허·지재」, 「경제범죄심화」 등 5개 전문분야 교육을 각 2~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특히 「공판」 분야는 기존 선택과정에 없던 분야로, 최근 공판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성, 이해도를 높이고자 신설하였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규 공판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의 경우 관리자로의 역할 전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 횟수를 늘려 참여 기회를 높인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다만, 기수당 부장검사 승진 비율을 감안하여 볼 때 부부장 검사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육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고, 각종 현안, 인사시기 미확정 등으로 인해 안정적 교육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교육 대상 및 시기를 현실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 검사 대상 분야별 역량 강화 과정에 대한 교육생들의 설문 결과, 각 전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의 사례 중심 강의 및 실무 대응 역량강화에 집중한 과목 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일부 강의의 경우 업무시 고민되던 지점에 대한 해결 내지 아이디어를 주는 강의여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도 교육생들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제고에 부합하는 실무 위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임유정

2)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연수원은 신임검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검찰 업무 관련 기본 실무지식을 익혀 정발령 후 원만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임검사 교육과정을 8주에서 9개월로 확대·개편하고, 당해 로스쿨·군법무관·경력 신임검사들에 대한 통합교육('18. 최초 신설)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 로스쿨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들과 군법무관·경력 신임검사들 간 법조 경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실무경험 및 형사법·형사절차 관련 실무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 로스쿨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찰업무의 이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결정문 작성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교준비과정(3~4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법무연수원은 신임검사 통합교육(5월~다음 해 1월)을 통해 결정문, 조서, 영장 및 수사보고서 작성법과 조사·공판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 사건·공판기록으로 지도교수의 맞춤형 1:1 지도를 병행하는 등 실무 중심의 집중 교육을 강화하여 신임검사의 직무역량을 향상함과 동시에 출신과 기수가 다양한 신임검사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상호 존중과 연대감을 높이도록 돕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신임검사 총 95명을 대상으로 2023. 5월부터 2024. 1월까지 4학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경력 신임검사 3명은 9월까지 5개월 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변호사시험 12회 신임검사 및 변호사시험 9회(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총 92명은 10월까지 종합직무교육을 마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일선 청 실무교육을 거쳐 2024. 1월 1주간의 마무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약 9개월 간의 통합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법무연수원은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공판 교육(조서·영장·결정문 작성, 증인신문조서·의견서 및 보고서 작성, 공판·조사기법 1:1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임검사들의 실무감각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임검사 교수진이 발굴·조제한 기록들을 활용한 통합형 기록실습을 확대하여, 신임검사들로 하여금 사건처리 방향과 작성 필요 서류를 직접 결정하고 작성하게 한 후 지도교수 면담·첨삭지도를 병행함으로써 종합적 기록 파악 능력 및 사건처리 역량 향상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적극 확대하였다.

신임검사들이 민생범죄 사건에 대한 기본역량을 갖추도록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재산범죄 주요 판례, 민사집행법, 보전소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법 실무 집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민·다중 피해범죄, 기업·금융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회계지원팀을 통한 기본 회계 교육도 실시하였다.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은 장애인·재심 전문 변호사 등 실무가를 통한 실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검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검찰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침해 사례들을 교육함으로써 신임검사들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무적 인권감수성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조사·공판 교육은 「롤플레잉 조사실습」, 「국민참여재판 롤플레잉 실습」, 「영상녹화 조사실습」, 「공판 스피치 교육」 등 참여형·체험형 방식으로 진행하여 신임검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을 통해 신임검사가 피조사자 역할을 담당해 봄으로써 조사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인문학 강의를 과학기술,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직무윤리 사례토론 등의 소양교육, 멘토-멘티 방식의 지도교수 '1:1 튜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춘 신임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개편 및 제도개선

●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김유리

1)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단계별 교육 강화

가) 추진배경

신규자(9급, 7급) → 승진자(7~4급) → 관리자 리더십(5급~고위관리자) 과정의 단계별 교육을 편성하여 조직 내에서 경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단계별 교육 특성에 맞는 소양과목 편성을 통해 맞춤형 역량 배양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보호직 5급 관리자 리더십」과정을 신설하여 신임 5급 보호기관장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범죄예방정책 발전방향', 'MZ 세대와의 소통키워드' 등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과 관리자로서 갈등 조정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6급 보호관찰관, 소년원 생활지도팀장을 대상으로 「보호직 6급 역량강화」과정을 신설하여 '정신질환자 대응훈련 매뉴얼', '체포술' 등 직무 활용도가 높은 교과목을 중점 교육하였으며, '범죄이해와 대응방향' , '사례로 알아보는 인권' 과목 등을 통해 보호직 초급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였다.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신규자 과정에는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청렴 및 갑질 예방' 등 국가관, 공직관 과목을 집중 편성하여 신규 공직자로서 함양해야 할 기본소양을 교육하였다.

「검찰 4급, 5급 승진자」, 「보호직 6급, 7급 승진자」과정에는 리더십 및 다양한 분야의 소양과목을 편성하여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 배양을 도모하였다. 특히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조직 내에서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해 과정을 신설하고, 과정 특색에 맞는 소양·직무 과목을 집중 편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신규자 과정은 국가관과 공직관 함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승진자·관리자 리더십 과정은 문제해결 능력, 조직통합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에도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단계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신설, 개편할 계획이다.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주무관 강인원

2) 교도관 직무집행 강화 교육훈련 실시

가) 추진배경

교정기관에서 일어나는 전체 교정사고 중 수용자 간 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고 있으며, 그 외 직원에 대한 폭행·모욕 등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일부 수용자의 수용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도관과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등 관련 법령에서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력 행사의 기초가 되는 교정장비(보안장비) 사용 절차 등이 미비하여 구체적인 지침 마련과 함께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나) 추진내용

2023년 교정본부 보안과에서는 수용자의 위반 형태에 따라 강제력 사용 수단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범위 등을 명시한 교정공무원 직무집행 강화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연수원에서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도관 훈련교범 제작에 참여하였다.

교정공무원 직무집행 강화체계 구축의 후속 작업으로 「교도관 강제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및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새로 제정된 위 규정을 반영하여 '수용동 근무 실습', '교정장비 사용법' 등 신규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교도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강제력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외 전자충격기 사용 현황을 조사·연구하여 교정 현장에 부합하는 전자충격기 교안을 발간하였으며, '전자충격기 기능별 사용법', '상황별 시뮬레이션 실습 훈련' 등을 포함하는 「보안장비(전자충격기)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2024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교도관 직무집행 강화체계 구축에 따라 법무연수원은 기존 교육과정 개선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충격기 전문 교육과정 신설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찰인재개발원의 「전자충격기 사용 전문가 인증」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가 인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향후 법무연수원은 교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주무관 김우겸

3)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 운영 확대

가) 추진배경

성폭력·성격장애·물질중독 등 정신질환자 증가에 따른 각종 심리치료, 교정시설 내 응급·재난 상황별 대응, 교정 특별사법경찰 수사·정보 교육 등 직무 전문성 배양 및 체계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추진내용

교정연수부 교육훈련 계획에 입교 전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여 과정별 직무중심의 사전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와 업무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법무부 인권국과 연계한 토론형·실습형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에 따른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이해 및 수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 수용자 위기상황 조정」과정, 코로나19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자체 매뉴얼 교육으로 대응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염병 담당자 양성」과정 등을 신설하였고, 코로나19 기간 실시간 화상교육 위주로 교육받은 신규직원 등을 위한 「보안실무 전문화」과정을 증설하였다. 주입식 정보 전달형 교육에서 사례·체험 중심의 토론식 교육으로 개편하고, 교육 효과성 설문 결과 등을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다) 향후 계획

교정현장에서 직원의 호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5일 이상 집합교육 과정에 '호신술과목'을 우선 편성하고, 교정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정보 분야별 과학수사·정보수집·정보분석 방법 등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기동순찰반 실무」, 「의료간호 실무」,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이정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 표 2-8 | 2023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 원 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서정민	
위 원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김용자	
위 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이곤호	
위 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손지혜	
위 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위 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준	
위 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위 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옥	

2)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23년『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수사, 공판 환경의 변화 연구』등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주제 3건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23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자료와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연수원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자 선정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높일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법무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표 2-9 | 2023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용역 과제명	책임연구원
1	형사사건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수사, 공판 환경의 변화 연구	(사)정책법령연구소 이상근 변호사
2	신임검사 교육 관련 가상화폐 실무	충북대 박재평 교수
3	형사법에서의 인공지능(AI) 연구	형정원 윤지영 박사

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 구현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1)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운영

가) 추진배경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검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 운영 중이다.

나) 상세내용

2021년을 시작으로 충북혁신도시 및 진천군 지역주민과 진천군 소재 단체, 직장, 학교 등에 소속된 사람에게 대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야구장, 부대시설(주차장)을 주말·공휴일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개방하고 있다. 진천군체육시설 유지·관리업무 지원협의에 따라 사용료는 100% 감면 중이며, 2023년 테니스장 59회, 풋살장 36회, 야구장 30회 개방을 하였고 특히 진천군 유소년 야구단의 경기 및 연습장으로 본원 야구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테니스동호회, 배드민턴동호회, 풋살동호회는 인근 지역 공공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시설개방으로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25 | 법무연수원 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다목적 구장〉



〈테니스 코트〉

바. 국제협력 강화

●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최동우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 등 선진국 법제와의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를 통해 법무·검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호주 등 한인검사를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지원하였다. 2023년 위촉 비상임 연구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2-10 | 2023년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내역

	비상임 연구위원	국가	위촉기간
19대	수잔 박(Susan Park)	미국	'22. 08. 08. ~ '23. 02. 17.
20대	수영 최(Sooyoung Choi)	호주	'23. 04. 17. ~ '23. 07. 31.
21대	조혜림(Hyelim Cho)	미국	'23. 08. 16. ~ '24. 02. 15.

위촉된 비상임 연구위원들은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자국의 사법제도를 강의하는 한편, 법무부 국제형사과, 전자감독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서울고검, 수원지검 검사실 및 디지털포렌식팀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형사법 및 제도들을 경험하고 연구하였다.

2023년 법무연수원은 '케냐 NCRC 보안시스템 체계 구축 및 범죄수사 역량강화 사업('21.~'23.)', '튀니지부패방지수사 역량강화('22.~'24.)', '몽골 검찰 사법 역량강화('22.~'24.)', '라오스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23.~'25.)' 등의 국제연수과정을 진행하여 70명의 국제연수생을 배출하고, 이들에게 국내 법무 행정제도를 바탕으로 연수대상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검사협회(IAP) 본부, 독일 베를린 부스트라우 소재 독일사법관학교(Deutsche Richterakademie), 오스트리아 빈 소재 유엔마약조직범죄사무소(UNODC), 법무부, 항소법원, 검사협회 등을 방문하여 법무연수원의 국제연수과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등 대표단, 아부다비 사법부(ADJD) 차관 등 대표단, 일본 법무협력관 요스나가 야스오 등이 법무연수원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할 것을 협의하였다.

3) 향후 계획

풍부한 국제연수 연수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검찰 법집행아카데미와 교육프로그램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및 독일 사법관학교와 MOU 체결을 논의 중에 있는 등으로 다양한 해외 법무·검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법무·검찰 교육 관련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법무연수원 총무과 주무관 안효준

1) 추진배경

법무연수원은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점진적인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러 강의실 교육기자재 교체, 건축물 방수, 노후 배관 교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진천본원 난방 시스템 개선 작업 및 2022년부터 시작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작업을 계속 추진하여 직원 및 교육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진천본원 난방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2023년까지 생활관 6개동(537실)에 바닥난방 공사를 완료하였다. 2021년 생활관 2개동(131실), 2022년 생활관 2개동(220실), 2023년 생활관 2개동(186실)을 공사 완료하여 기존 천장형 온풍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불충분한 난방, 실내 습도 저하 등 교육생 불편 사항 문제가 해소되고, 겨울철 교육생 건강 증진과 교육시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조항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진천본원 13대, 용인분원 4대를 설치함으로써 직원 및 교육생의 편리성을 증대하였고 자전거 보관대 추가 설치, 본관동 지하 통행로 일부 증축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점차 노후화되는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의 내구성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강의실 빔프로젝터 램프교체, 강의실 모니터링시스템 장비교체, 옥상방수 등의 공사를 하여 교육·연구시설로서의 기능을 문제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26 | 진천본원 교육환경 개선



〈생활관 바닥 난방 공사 완료〉



〈전기차 충전시설〉

용인 분원은 교육생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 3월 원내 매점인 '카페 행복마루'를 오픈하였다.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설 용도 또한 합법적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본관동 화장실의 노후 배관 및 노후 위생도기 등 교육생 및 직원들의 열악한 교육·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3. 6월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2023. 10월부터 12월까지 본관 주요 통로 6개소 화장실에 대한 노후 배관 및 위생도기 등을 교체하는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여 직원 및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35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관 개선 및 교육생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생활관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 운동장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설치 후 18년이 경과된 기계실 소방펌프의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잦은 고장에 따른 운전효율 저하 및 화재발생 대비 소방펌프의 압력 저하로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절히 교체 공사를 이루는 등 재난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노후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림 2-27 | 용인분원 교육환경 개선



〈본관 화장실 전경〉



〈카페 행복마루 전경〉

3) 향후 계획

진천 본원은 2024년부터 강의실의 노후 빔프로젝터를 점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공사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 분원은 녹물이 나오는 35년 이상 된 노후배관을 2024년까지 교체하고 약 1,000석 규모의 대강당 조명, 바닥, 의자 등을 교체하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교육·연구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무연수원은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생들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공무원을 양성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정책홍보 업무

1. 기관장 소통활동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법무부장관 인터뷰(총 72회)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퇴근, 정책현장 방문 및 국회 출석 시 다수 언론을 상대로 즉석 일문일답 방식의 언론 인터뷰를 수시로 진행하여 주요 법무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법무정책 이슈에 대한 법무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효율적으로 소통하였다.

| 그림 2-28 | 법무부장관 인터뷰


The JoongAng

"가해자 교화보다 피해자 인권 우선…합당한 죗값 치러야"

한동훈 법무부장관 서면 인터뷰
흉악범죄자 영구격리 메시지 필요
사형제 아래 단계, 반대 논거 약해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 (2023. 8. 28.)



계절근로자 정책현장 방문 시 인터뷰(2023. 10. 30.)

나. 법무부장관 언론 브리핑(총 11회)

기관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현안 및 법무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전세피해예방 등) 합동브리핑(2023. 2. 2.) △비상경제민생회의 합동브리핑(2023. 3. 29.)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2023. 5. 2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관련 합동 브리핑(2023. 5. 30.)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2023. 7. 18.) △광복절 특별 사면 관련 브리핑(2023. 8. 14.)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2023. 8. 24.) △임금체납 관련 합동 담화문 발표(2023. 9.

25.) △숙련기능인력 확대 구체적 방안 관련 브리핑(2023. 9. 25.)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브리핑(2023. 10. 24.)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관련 합동 브리핑(2023. 11. 1.) 등으로 이슈에 적극 대처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였다.

| 그림 2-29 | 법무부장관 언론브리핑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브리핑(2023. 5. 24.)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2023. 8. 14.)

2. 언론 홍보활동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가. 실국본부장 언론 브리핑(총 4회)

법무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이외 법무부 간부 브리핑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각 실·국·본부장 및 과장이 2023년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법조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총 4회의 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대변인, 2023. 1. 25.) △마약류관리 종합대책 브리핑(검찰국장, 2023. 4. 18.)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브리핑(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23. 11. 3.)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브리핑(범죄예방정책국장, 2023. 11. 20.) 등이 있다.

나.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총 383건)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홍보 수행을 하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법무정책에 대한 언론사 등의 취재 요청 1,280건 이상에 응대하였고, 보도자료 333건을 배포하여 법무정책 및 장·차관 참여 행사, 실·국·본부의 다양한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의 왜곡 보도·비판 보도에 대해 50건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다. 오보 대응(총 120건)

대변인실은 법무부 소속의 실·국·본부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120건 이상의 오보 및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사실관계 오류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언론사를 통해 오보 내용이 적시에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5건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 공식적인 이의 제기 과정을 거쳐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홍보 기획

대변인실 사무관 김정원

가. 대·내외 홍보협의체 운영 및 대응

법무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주제 선정 등을 위하여 매주 대변인 주재의 '주간 홍보 기획회의'(이하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는 대변인 주재로 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 관련 사무관, 주무관 등이 참석하여 법무정책 홍보강화를 위한 꾸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통해 △마약근절 캠페인 △전세사기 대응 △출입국 이민정책 △이상동기 범죄 대책 △'머그샷' 촬영 규정 마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외 홍보협의체인 국정홍보점검회의,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및 법무부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입체적 홍보를 진행하였다.

| 표 2-11 | 대내·외 홍보협의체

구분	홍보협의체	참석 대상	주재
외부	국정홍보점검회의	각 부처 차관	국무조정실장
	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대변인	문체부 2차관
	온라인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 BH디지털소통센터장(행정관)	문체부 차관보
	외신대변인협의회	각 부처 외신대변인, BH해외언론비서관(행정관)	해외문화홍보원장
내부	주간 홍보기획회의	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 관련 사무관, 주무관 등	대변인

나. 정책소통평가 실적 관리

국무조정실에서는 부문별 평가를 통해 각 부처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부처별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부처별 정책상황을 고려해 중점 추진 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행성과를 제대로 반영·홍보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정성 평가가 강화되었고, 특히 '소통성과' 부문의 배점이 전년 대비 크게 상향되는 등(55점→70점) 바뀐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 평가실적을 관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노력 강화를 위해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검토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대국민 소통활동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평가 등급에서(미흡) 벗어나 2년 연속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지표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표 2-12 | 정책소통평가 지표별 주요성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성과
정책 소통 활동	부처협업 활동	•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 협의회, 외신대변인 협의회 참석을 통한 부처협업 강화 • 타부처 협업이 필요한 정책이나 우수 홍보사례를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함으로써 법무정책에 대한 전 부처 공감대 형성
	보유자원 활용	• 타 부처 공유협조 영상 송출을 위한 보유매체 4건 증가(36건→40건) • 「KTV 나누리포털」 아카이브에 부처 홍보 콘텐츠를 공유
정책 소통	주요정책 소통성과	• '마약 근절', '전세사기 근절', '출입국 이민정책', '이상동기범죄 대응' 등 법무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성과
성과		• 홍보대사(체조전수 양학선) 활용 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 부처 내 협업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사전협의 활성화 필요
	현안대응 성과	• 온·오프라인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한 오보대응 - 온·오프라인 오보대응 120건 - 컨텐츠 제작 대응 6건 - 신속대응 약 90%
	온라인 소통성과	• 기관장 현장방문, 기획 홍보 영상, 쇼츠 등 다양한 홍보영상 제작으로 법무부 유튜브 채널 '실버버튼'(구독자 10만) 달성 - 중앙부처 중 구독자수 4위 • 보도자료 배포 당일 카드뉴스 제작·배포하고 주요정책 중 선별하여 웹툰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
	기관장 소통성과	• 기관장 방송 출연 강화로 '방송출연 우수부서 선정'(2023. 9월.)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작년 대비 약 10% 증가
	외신 소통성과	• 영문 보도자료 배포, 외신 취재지원 등 외신과의 소통 노력 지속
체감도	소통만족도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소통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온라인 체감도	• 국정현안 및 부처 정책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홍보에 활용
가감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 보도자료, 보고서, 누리집 화면에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

다. 외신 소통활동

2023년에는 국내 상주 외신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여 외신 취재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였고, 출입국·외국인정책, 국제공조 사건 등 외신에서 관심 있는 법무부 주요정책을 영문·중문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또한 외국인에게 알려야 할 출입국 주요 정책을 영문·중문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다.

또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주최하는 외신대변인협의회, 외신대변인 연수에 꾸준히 참석하여 타 부처 외신대변인과 협업을 강화하고 외신기자와 직접 소통하였다.

라. 홍보 콘텐츠 광고 강화

더 많은 국민에게 법무부의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기존 디지털 매체에 편중되었던 광고 집행을(2021년 42%, 2022년 53%) 2023년에는 매체를 다변화함으로써 디지털 소외계층 및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보다

쉽게 법무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 대국민 캠페인으로 진행된 '마약 근절 캠페인(23. 4. 15.~10. 3.)'의 경우, SNS 콘텐츠 광고를 비롯하여 포스터를 활용한 옥외 광고를 총 3차례 (△1차 4. 15.~ 5. 14. | 지하철 1~8호선 39개 역 730개 모니터, △2차 5. 10.~6. 9. | 지하철 1~4호선 25개 역사 57개 세트 모니터, KTX, SRT 전광판 △3차 9. 4.~10. 3. | 지하철 1~4호선 25개 역사 57개 세트 모니터, KTX, SRT 전광판) 진행하였다.

또한 마약 근절 캠페인의 메시지를 담은 약 40초 분량 음성을 청취율 높은 라디오 'SBS 『2시 탈출 컬투쇼』 프로그램'에 총 30회 송출하였다.(4. 15.~5. 14.)

| 그림 2-30 | 홍보 콘텐츠 광고



유튜브 콘텐츠 광고(2023. 6월)



지하철 포스터 광고(2023. 4월)



삼성역 대형 전광판(2023. 6월)

마. 대국민 캠페인 진행

국민적 공분을 사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❶마약근절 ❷전세사기 근절 ❸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시의성에 맞는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소통 활동을 강화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1) 마약근절 캠페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급증하면서 법무부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마약청정국으로의 힘찬 도약!" 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국민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23. 4. 15. ~10. 3. 동안 법무부 홍보대사(체조선수 양학선)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 촬영, 라디오 음성 광고, 홍보 포스터 제작, 옥외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법무부의 마약 근절 의지를 피력하였다.

| 그림 2-31 | 마약근절 캠페인 관련 콘텐츠



법무부 홍보대사 양학선(2023. 4월)



마약과의 전쟁 비밀무기 (2023. 6월)



수서역 옥외광고 (2023. 9월)

2) 전세사기 근절 캠페인

'건축왕'.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전세사기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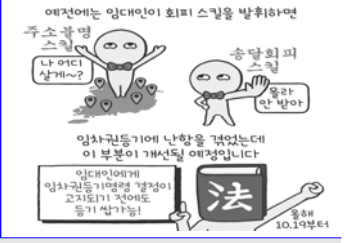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웹툰 작가 루나파크)를 활용한 협업 콘텐츠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전세 사기 웹툰은 향후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으로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32 | 전세사기 근절 캠페인 관련 콘텐츠



전세사기 영상 (2023. 5월)





[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웹툰 (2023. 5월)

3)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캠페인

'신림동·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불안 해소와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을 통해 법무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콘텐츠 및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머그샷' 촬영 근거를 규정한 '신상공개법' 개정안 관련 영상·쇼츠·카드뉴스·웹툰 등은 법무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그림 2-33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캠페인 관련 콘텐츠



머그샷 영상(2023. 11월)



머그샷 카드뉴스 (2023. 11월)



머그샷 웹툰 (2023. 12월)

4. 디지털 소통활동

가. 영상 콘텐츠의 양적·질적 향상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2023년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법무부 영상 콘텐츠가 크게 도약하였으며, 그 결과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한층 더 높아졌다. 특히 법무부 홍보대사로 체조선수 양학선을 위촉하여 함께 마약근절 캠페인을 진행한 것과 기관장이 직접 법무부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영상에 대한 국민 호응도가 높았다. 그 결과 2023년 법무부 유튜브 영상 편당 평균 조회수는 109,522회로 2022년 대비 48.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법무부 유튜브 채널인 '법TV' 구독자도 2023년 130,721명으로 2022년 84,964명 대비 53.8% 증가하였고 구독자 10만 이상에게 증정하는 '유튜브 실버버튼'을 획득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법무정책을 쉽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법무부의 비전을 필두로 민생 중심의 법무정책 콘텐츠 등 다양한 영상을 생산하였다. 특히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강화하였고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 유튜브(법tv)는 높은 수준의 유튜브 채널로 정착하였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증가와 SNS 채널에 대한 팬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법무부 홍보대사로 체조선수 양학선을 위촉하여 △ '홍보대사 양학선'과 함께 하는 마약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더불어 기관장이 법무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영상 콘텐츠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 '홍보대사 양학선'과 마약 근절 캠페인 영상 제작

기관장이 직접 '홍보대사'를 섭외하는 과정부터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들의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이후, '홍보대사 위촉식', '홍보대사의 소년원 특강', '마약근절 캠페인 영상' 등을 차례로 제작하여 업로드 하면서 '홍보대사 양학선'을 활용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행하였다. 이는 '종합편성 채널'에 보도가 되는 등 큰 효과를 이루었다. '홍보대사 양학선 섭외영상'은 조회수 300,568회(2023. 1. 11. ~ 2023. 12. 31.)를 기록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 그림 2-34 | '홍보대사 양학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법TV 유튜브)



3) 기관장 현장 방문 영상 콘텐츠

출입국 이민관리정책을 위한 산업현장 방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위한 스마일센터 방문 등 주요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이슈를 콘텐츠화 하였다. 일반적인 동정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다' 「우문현답」이라는 콘셉트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제시하는 기관장의 모습을 담았다.

또한 제주, 목포 등 지역을 기관장이 방문하여 지역 현안과 법무정책의 접점을 부각시키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의 영상'은 조회수 1,229,490회(2023. 7. 15. ~ 2023. 12. 31.)를 기록하면서 유튜브에서도 이례적으로 100만 조회수를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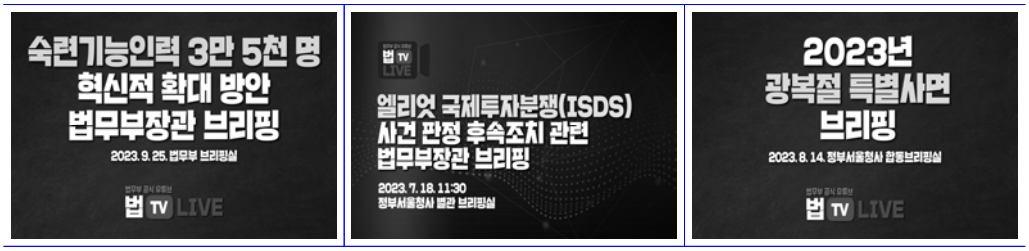
| 그림 2-35 | 기관장 현장 방문 영상 콘텐츠(법TV 유튜브)



4) 정책 브리핑의 실시간 생중계

국민의 알권리와 빠른 정책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법무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지속 추진하였다.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브리핑', 등 법무정책 관련 브리핑 2회,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엘리엇 투자분쟁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 '신년 특별사면', '광복절 특별사면' 등 정책 이슈 관련 브리핑 4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2023년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브리핑' 실시간 생중계 등 법무부 주요 행사 2회로 2023년 총 8회의 자체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하였다.

| 그림 2-36 | 법TV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나. 유튜브 법TV 채널 활성화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는 2023년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법무부의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만의 채널 특징을 살린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대표적 타이틀과 함께 유튜브 트렌드에 맞는 썸네일을 제작하였다. 특히, 썸네일이 본 영상과 연결되는 '움직이는 썸네일'을 시도하였는데 이로써 많은 구독자 수 증가와 높은 조회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유튜브 구독자 알림, 태그 작성 등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채널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구독자 증가세가 뚜렷하였다. 전년 84,964명이었던 누적 구독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130,721명으로 전년 대비 연간 구독자 45,757명의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2년 증가치인 25,135명 보다 82% 높은 증가 수치였다. 조회수 역시 2022년 5,007,116회보다 101% 증가한 10,076,078회를 기록하였다.

다. 최신 경향을 반영한 이미지 콘텐츠 제작

대변인실 주무관 정다슬

적극적인 이미지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법무정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홍보한 결과 법무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접근 장벽을 낮추고 콘텐츠 조회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1) 웹툰 시리즈 제작

웹툰 시리즈의 색상 사용법 및 편집 방식 개편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새로운 법무정책을 웹툰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이 보다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웹툰 1편당 컷 수를 2022년 평균 6.8컷에서 2023년 평균 9컷으로 늘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 하였다.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법무정책 인식 제고로 이어지게끔 하였다. 올해 법무부 홈페이지 내 웹툰 평균 조회수는 편당 4,862회로 작년 4,156회 대비 약 17% 증가하였다.

특히, 법무부의 주요 정책을 "알기쉬운 법무정책" 웹툰 시리즈로 제작·연재하여 어려운 법무정책이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특히 당시에 유행하던 드라마『더

글로리』 캐릭터 및 장면 등을 활용하여 스토리에 재미를 더하였고, 단순한 웹툰에서 벗어나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한 시리즈물은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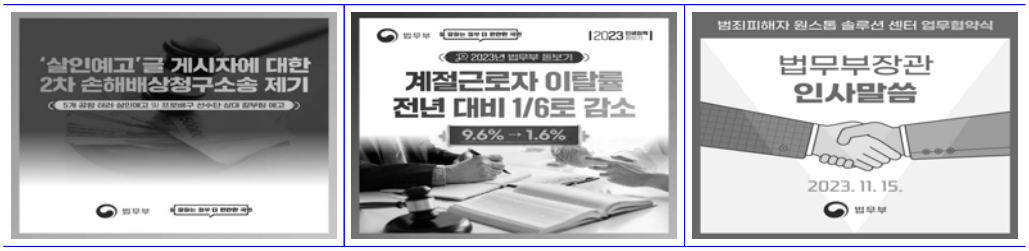
올해 법무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는 총 101개로, 개선된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미지 콘텐츠 제작기간을 단축하고 가독성을 높였으며,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확성 높은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였다. 또한, 보도자료에 인포그래픽·표 등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에는 주요 정책 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카드뉴스를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바뀐 정책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기반 카드뉴스 101개 중 보도자료 배포 당일 게시된 카드뉴스는 78개, 익일 게시된 카드뉴스는 17개, 그 외 6개로 약 94%의 카드뉴스가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근접하게 게시되었다.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2023. 11월),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2023. 11월) 카드뉴스 등이 대표사례이다.

| 그림 2-37 | 웹툰 시리즈 (법무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그림 2-38 | 보도자료 기반 우수 카드뉴스(법무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라. 디지털 매체(SNS)의 효율적인 운영

대변인실 주무관 조현아

법무부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SNS상에서 내용이 쉽게 전달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따라서 SNS에 정책 콘텐츠를 게시할 때 쉽고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콘텐츠 자체의 진입 경계를 허물고 정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의성 높은 정책 발표의 경우, 신속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차 없이 콘텐츠를 생산·게시 하였고 이로써 주요정책의 홍보 효과를 높였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 디지털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에게 호감도 높은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였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양방향 콘텐츠인 ❶쉼 없이 '달려' 온 마약 근절 캠페인에 어떤 댓글이 '달려' 있을까? (2023. 6월) ❷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2023. 8월) 등을 제작하였다.

이 외에도 국민과의 양방향 실험적 소통 창구로 공식 스레드를 개설(2023. 8월)하여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 그림 2-39 | 콘텐츠 변주



마약근절 캠페인 어떤 댓글? (2023. 6월)



홍보 아이디어 제안 (2023. 8월)



법무부 공식 스레드 (2023. 8월)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어려운 법무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과 동시에 국민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중등부(3), 고등부(3), 대학부(20), 성인부(14) 총 40명을 선발하여 총 12개월 간 활동하였다.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2023년 한 해 총 708건의 기획기사,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업로드 하였고, 제16회 세계인의 날(23. 5. 19),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23. 6. 5.), 다링 안심 캠페인(23. 6. 10.),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및 실무자 인터뷰(23. 6. 26.),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23. 11. 25.) 등 다양한 법무현장을 취재하여 기사화 하면서 법무정책 현장을 친근하게 소개하였다.

| 그림 2-40 | 국민기자단의 다양한 법무현장 취재 모습



제3절 법무업무

1. 65년만의 민법 전면개정 추진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법무관 구한결, 법무관 이선욱, 법무관 진지홍

가. 추진배경

국민생활의 기본법이자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된 이래 65년간 단 한번의 전면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이 변화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독일('02.), 프랑스('16.), 일본('21.) 등 주요 대륙법계 국가들이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계약법 등 민법의 대개정을 완수하였고,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과 국제규범(CISG, PICC, PECL, DCFR 등) 역시 등장하였다.

과거 법무부는 1999년~2003년 제1차 민법개정위원회, 2009년~2013년 제2차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여 「민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1999년~2003년에 걸친 민법개정위원회는 2004년 17대 국회에 개정안(130여개 조문)을 제출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9년~2013년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통해 성년후견제도(86개 조문)가 개정되었으며 보증(3개 조문) 및 여행계약(8개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본래 의도였던 재산법은 그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본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했던 과거 민법개정위원회의 성과를 참고하고 당시 논의와 개정안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 주요 추진 내용

1)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23. 6. 16.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확정하고자 위원회 내에 개정시안을 작성할 기초위원회, 이를 검토할 검토위원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훈령 제1476호)을 제정하였다.

민법개정위원회는 민사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민법」 중 개정이 필요 부분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며 사회 일반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2) 위원회 논의 기초로 활용될 예비초안 작성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기초가 되는 예비초안이 작성되어 논의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민법개정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3. 9. 26. 연구용역계약 3건(「민법 개정안(계약법 총론·각론·법률행위) 예비초안 연구」)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3. 12. 15. 계약종료와 동시에 최종결과물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계약법 총론, 계약법 각론, 계약법 법률행위 부분에 대한 예비초안이 마련되었다.

3) 개정안 마련 논의 계속

현재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위 예비초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논의 상황, 규율 목적, 비교법적 상황에 대한 개관 등을 포함하여 다방면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법」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이율·담보책임 등 계약법 부분 규정들을 우선 개정 추진 중에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그 과정에서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만큼, 금번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미리 보도자료나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2.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영민, 법무관 전진원

가. 추진배경

1989년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후 국제사회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인 등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출생통보 제도안을 협의하였고, 법무부는 2022년 3월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2023년 6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아동들은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양육되면서 생존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나. 주요내용

1) 출생사실의 통보(법 제44조의3)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2)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법 제44조의4)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에 대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및 피해 회복 지원

●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 검사 홍현준, 법무관 이재상, 법무관 이승기

가. 추진배경

2022년 말부터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무자본갭투기' 또는 '신탁사기' 등 방식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서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미 발생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특별법 제정에 일조하고, 법률 구조 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임대인의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신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세금을 체납해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는데,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이 자신의 체납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23. 4. 19.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①임차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②「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임차권등기 절차 신속화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만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3. 7. 19.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였다. 따라서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만 하면 그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3)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다수의 서민 또는 청년 임차인들이 법률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였으나,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법률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 강서 및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버스·부스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익법무관 등 법무부 소속 인력을 파견하고('23. 4. 20. ~ '23. 6. 16. 법률상담 641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1. 시행)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 우선매수권 부여 및 양도, 경·공매 유예 또는 정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특별법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아가 국토교통부 주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여('23년 기준 전체회의 17회, 분과위원회 월 1회)하여 피해자 결정 등 심의를 지원하고, 특별법상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보증금액 및 임대인의 체납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보증금 회수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임차권등기를 보다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게 되어 향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경·공매의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서민·청년 임차인들에 대한 법률 구조 시스템이 확충된바,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 간편화

● 법무심의관실 검사 박준석, 전문위원 윤세교, 법무관 이재찬

가. 추진배경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① 이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필요한 공문서를 종이로 발급받고, ② 이를 직접 전자문서화하여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이 전자소송에서 필요한 소송서류를 법원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의 등재를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은 공문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들이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일일이 전자문서화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손쉽게 소송서류(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도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업무부담이 감소되고, 향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도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41 |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제 도	내 용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5.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전문위원 이승연

가. 추진배경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작·공급되는 콘텐츠나 그 콘텐츠의 제작·처리·저장·접근·유통에 관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디지털제품"의 제공·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통상의 물건과 달리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적 지배가 어려운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제공계약에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의의, 제공자의 의무 및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등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2023. 6. 12. 국회에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의무(안 제733조의3 신설)

제공자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제공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내려받도록 하는 방법 또는 콘텐츠의 저장매체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제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공기간 동안, 일회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지털제품의 성질과 용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약에서 정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2) 디지털제품 제공자의 담보책임(안 제733조의4 신설)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하자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의 시정, 대금의 감액 청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디지털제품의 제공기간이 종료한 때 등부터 2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민법」 상 계약에 관한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3) 제공된 디지털제품의 변경(안 제733조의5 신설)

제공자는 디지털제품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 당시에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보(留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제품의 변경으로 디지털제품의 이용에 관한 이익을 침해받은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4)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안 제733조의6 신설)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디지털제품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 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 이용자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디지털콘텐츠 확산에 따른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며, 이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데이터·플랫폼 거래 관련 향후 입법·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 법무관 홍인기

가. 추진배경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 역시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며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인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23. 11. 10.「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 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였다.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과 같은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나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제거·예방청구권도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될 것이다.

7.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

●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김다혜, 전문위원 모승규

가. 추진 배경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의 거품을 걷어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였다.

우리 부는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자체·학계·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토대로 '21. 2. 집합건물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구분소유관계에 대한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한 집합건물법의 입법 소요(所要)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도 집합건물법의 추가적인 개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부는 '21. 3.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국회에서 대안으로 가결되어 '23. 3. 법률 제19282호로 공포되어 '23. 9. 시행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화 제고, ② 집합건물 관리 이용·효율화이다.

1)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관리인이 그 사무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추가하고,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토록

하는 법적 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등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2) 집합건물 이용·관리 효율화

시·도지사에게 표준규약 마련·보급의무를 두던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법무부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위한 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서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였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특수성 및 재건축 진행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재건축 및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서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단순히 사적자치의 영역으로만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집합건물법은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이지만, 진정으로 사적 자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질서의 형성을 단체자치에 맡겨놓기보다는 이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공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여 관리인에게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행정청이 감독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집합건물법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칭할 수 있고, 집합건물 관리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개정작업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법은 사전적으로는 자치관리의 기본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행정청의 점검(통제)의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8.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및 신탁등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김다혜, 법무관 홍인기

가. 추진배경

그간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의 불편함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특히 2006년 등기의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생소함으로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의 설정·말소에 관한 전자신청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그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쉽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고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는 등,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임차인 등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 전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등기부에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하는 점을 반영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등기의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 신청인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PC를 기반으로 하는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여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 확인토록 주의사항 기재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함으로써, 임차인 등이 신탁된 부동산 거래 시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현행법상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 신청인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상속·유증 부동산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등기사무와 관련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신탁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전제사기 등의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9.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연구

⭘법무과 검사 석동현, 법무관 박재경

가. 변호사 징계 및 변호사제도 관련 법령 검토

1) 추진배경

사회의 복잡다기화로 인하여 종래 없었던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 생겨나는 속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다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 제21대 국회에서는 변호사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소관 부처로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변호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관련 행정소송에 조속히 대응하였다. 또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제도의 본질, 소송 법제와의 정합성,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정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추진내용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총 6회에 걸쳐 심의기일을 개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들을 다수 심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확정된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하여 징계대상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전부 승소함으로써, 법조윤리 확립에 일조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각종 법률에 관한 개정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의견을 회신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정비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법조인접직역 자격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취지의 법무사법,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는바, 법무부는 유관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논의와 학계·실무계의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관 부처로서 내실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법조윤리 강화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 연구를 의뢰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3) 기대효과

비위 변호사 제재 및 변호사 관련 법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리걸테크 관련 규제 정비

1) 추진배경

최근 ChatGPT를 위시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법률서비스 기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조계와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의 영역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여 헌법상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며, 법률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리걸테크의 구체적인 운영 양태에 따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리걸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추진내용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과의 제도적·법적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최근 수년간 리걸테크 산업의 향방을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 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법적 분쟁으로까지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기일을 개최하여,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2023년 11월 학계·실무계·리걸테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리걸테크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 또한 병행하였다. 2023년 5월에는 스위스 리걸테크협회(SLTA, Swiss LegalTech Association), 이탈리아 베네치아 지방법원(Tribunale di Venezia), 독일 프랑크푸르트 변호사회(FAV, Frankfurter Anwaltsverein) 등을 방문하여 리걸테크 규제에 관한 유럽 지역의 규제·업계 동향 등을 조사하였다. 6월에는 변호사법과 리걸테크에 관한 일본 법무성 측의 문의에 답변하였으며, 8월에는 일본 법무성에서 공표한 AI 법률사무 관련 가이드라인을 번역·분석

함으로써,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과도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외에도 법무부는 '리걸테크를 활용한 사건예측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주제로 정책 연구를 발주하고, 관련 포럼·심포지엄·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지난 1년 간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충실히 모색하였다.

3) 기대효과

리걸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규제의 모호성을 해소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라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리걸테크 생태계를 육성하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 간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양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10.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 법무과 검사 석동현, 법무관 조원휘, 전산주사보 박재완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전자공증을 이용하더라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6월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문서를 인증할 수 있는 화상공증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에는 본인 인증수단에 여권 등을 추가하면서 재외국민의 전자공증서비스 접근이 한층 용이해졌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전자공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전자공증이 일반 대면공증과 완전히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특히 기존의 전자공증시스템은 ① 전자공증한 문서를 인쇄할 경우 신뢰도가 저하되는 점(온·오프라인 호환성 문제), ② 대상이 전자문서의 인증(사서증서 인증)으로 한정되는 점, ③ 어플리케이션 및 웹 프로그램의 노후화 등이 사용률 저조의 주된 원인들로 지적되어 왔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제1차년도)은 2023년 1월 블록체인 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선정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공정증서 작성 기능의 도입, ②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호환성 부여, ③ 본인인증 수단 확대, ④ 모바일 공증시스템 재구축, ⑤ 화상공증 기능 고도화, ⑥ 공정증서 이력관리 및 진위확인이며, 특히 블록체인의 특성인 탈중앙화를 통해 전자 공정증서의 신뢰성, 안정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전자공증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11월『제3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수용하여 현행 규제를 임시적으로 완화시키기로 하였다. 내실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회의, 사업자 교육 및 외부 자문 역시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연간 29회). 2023년 연말에는 드디어 전자공증시스템 웹 프로그램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가오는 2024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서버(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마치고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개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공증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은 향후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의 제2차년도 사업까지 2년 연속으로 블록체인 지원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고도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2차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서증서 인증 기능의 고도화이다. 요컨대, 서면 사서증서의 전자변환체계 및 전자문서 출력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현재 각 사무소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서증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1차년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토대로 2024년에는 제2차년도 사업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 표 2-13 |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의 비교

구 분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공증 방식	• 공증인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촉탁을 받아 공증인 명의 서류를 직접 작성	• 인증 대상 문서인 사서증서를 당사자가 작성하고 공증인은 그에 대한 인증을 수행 •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대상 문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함
효력	• 공문서로서 증거력 인정 •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의 경우 집행력 인정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으로 인한 증거력 인정
전자공증 (현행)	• 전자공증 불가(고도화 진행 중)	• 전자공증시스템 개발·운영(2010) • 화상대면 공증기능 도입(2018)
고도화 계획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1차년도 사업(2023)	•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제2차년도 사업(2024)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화상공증제도 개선 방향 중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화상공증을 받은 문서의 출력물도 공증의 효력이 온오프라인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60.4%로 제일 많았다.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공증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적 바람이 법무부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2023.

11.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 법무과 검사 석동현, 법무관 나정욱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다만, 제도 출범 이후 ①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고, ②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제도를 모르거나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무부는 2020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마을변호사가 위촉된 모든 지역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마을주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23년 제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였다. 10년간 꾸준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우수등급' 평가를 받고(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2020년)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 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나.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 6월 전국 250개 읍·면에서 제1기 마을변호사 415명을 위촉하며 출범하였다. 이후 마을변호사 인원 수 및 배정 지역을 확대하고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결과,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제6기 마을변호사 1,228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총 1,535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마을변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14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구 분	제1기 ('13. 6. ~ '14. 6.)	제2기 ('14. 6. ~ '16. 6.)	제3기 ('16. 6. ~ '18. 6.)	제4기 ('18. 6. ~ '20. 6.)	제5기 ('20. 7. ~ '22.7.)	제6기 ('22.8. ~ '24.8.)
배정 지역수	250개 읍·면	1,412개 읍·면	1,413개 읍·면	1,442개 읍·면·동	1,491개 읍·면·동	1,414개 읍·면·동
마을 변호사수	415명	1,455명	1,519명	1,444명	1,371명	1,228명

| 표 2-15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담 건수	232	311	811	2,060	1,125	1,323	1,607	2,120	2,650	2,290	3,122

제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18,000여 건에 달한다. 마을변호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마을변호사를 찾는 주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사태의 단계적 해소에 따라 마을법률담당공무원들이 마을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상담실적을 제출하는 변호사의 수가 전체 마을변호사 수의 약 2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실제 진행되는 상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한 이래로, 국가재난, 사회범죄 등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와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각 구성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였다.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제6기 마을변호사의 활동을 돕고, 읍·면·동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에 제작된 마을변호사를 위한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에 2023년 제도운영현황, 우수사례 등을 수정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그림 2-42 | 마을변호사·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마을변호사 활동 가이드라인





마을법률담당공무원 가이드라인

2) 마을변호사 제도 적극적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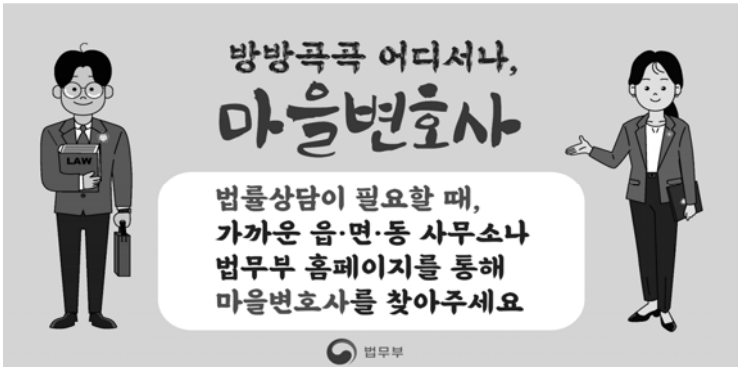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버스음성광고를 실시하였으며,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였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위촉된 '마을변호사 서포터즈'들의 적극적인 온·오프라인(마을변호사 SNS, 무변촌 행정복지센터 및 대학교 캠퍼스 등) 활동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다각적으로 홍보하였다.

| 그림 2-43 | 마을변호사 홍보 컨텐츠



홍보포스터



마을변호사 홍보 스티커

3) 마을변호사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매년 마을변호사 기념식을 개최하여 제도발전에 기여한 마을변호사·공무원·지자체를 표창하고 있다. 2023년도 제10주년 기념식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고, 마을변호사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마을변호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제도 출범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근속 변호사와 역대 마을변호사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하여 제도 출범 10주년을 함께 축하하였다.

| 그림 2-44 |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2023. 12. 18.)

12.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법무과 검사 석동현, 교위 조대권

가. 추진배경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소·법무법인·국가기관·지자체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주최하는 연수를 마쳐야만 개업·사건 수임 등 변호사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

법무부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에서의 법률사무 종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 이수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의 근무를 통한 실무 역량의 함양 및 저년차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통합 선발'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2020년 1월경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6월경 기획재정부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제도의 운영 예산을 협의한 결과 2024년도에 총 167명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채용은 법무부가 선발 기간, 선발 인원, 채용 절차에 관한 통합 공고를 담당하고, 각 국가기관이 면접, 채용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2021년 5월경 13개 국가기관, 총 72명의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는 18개 국가기관, 총 130명, 2023년에는 총 20개 국가기관, 총 135명의 선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21개 국가기관, 총 16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채용 국가기관의 법률사무 수요에 맞추어 법률자문, 행정소송 수행, 법령연구 등 다양한 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법무부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판 참관, 세미나 참석, 진로 상담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다. 기대효과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적극 선발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공익법무관들의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여 법치행정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 법무과 검사 석동현, 법무관 안현규, 법무관 전세환

가. 제도 취지

공익법무관 제도는 병역미필인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일부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후 법률구조·국가소송 기타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제8조), 법률구조공단,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소송수행청에 배치되어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제2조, 제9조).

1995년에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임용·배치, 복무지도·감독, 관련 법령 제·개정, 예산집행 등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나. 인원 및 배치 현황

공익법무관이 최초 임용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35개 기수, 2,470명의 공익법무관이 임용되어 복무하였다(복무만료 32개 기수, 2,337명). 2023년 8월 1일 기준 총 131명의 공익법무관이 52개 기관(법률구조공단 21곳, 각급 검찰청 17곳, 소송수행청 12곳,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2곳)에 배치되어 있다.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이래 2010년대 중반까지는 공익법무관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치기관 및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재학생 중 병역미필자 수 감소,

변호사시험 합격률 감소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인원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등 공익법무관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 표 2-16 | 연도별 공익법무관 총원 및 신규임용자 인원수

(단위 : 명)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1995	27(27)	2010	231(72)
1996	100(73)	2011	212(73)
1997	103(3)	2012	294(147)
1998	95(19)	2013	387(165)
1999	75(53)	2014	530(217)
2000	140(68)	2015	582(200)
2001	190(69)	2016	622(205)
2002	195(58)	2017	583(178)
2003	216(89)	2018	469(86)
2004	207(60)	2019	324(60)
2005	204(55)	2020	200(54)
2006	188(73)	2021	142(28)
2007	202(74)	2022	122(40)
2008	240(93)	2023	131(63)
2009	233(66)		

※ 괄호 밖이 해당 연도에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 총원, 괄호 안이 해당 연도 신규임용자 수

다. 기대효과

구조 담당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 배치되어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도 활동하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소송수행청에 배치되어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지휘·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 행정청의 소송총괄관 및 소송수행자의 법률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패소와 소송지연을 억제하고, 패소율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 이전(1994년)에는 국가소송·행정소송 패소율이 약 35%에 달했으나, 공익법무관 제도가 정착된 2018년에는 패소율이 약 10%로 크게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가. 국가소송 및 국가배상 신청사건 현황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이선민

1) 국가소송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의 수행은 국가 전체의 공익을 수호하면서도 개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소송의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소가 2억 원 이상 사건의 소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등 주요 소송행위에 대하여 통일적인 승인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2023년 국가소송 사건 수는 9,598건으로, 총 청구금액은 약 5조 3903억 원이었다. 이러한 국가소송의 증가 추세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의 비중 확대는 국가정책의 수립·시행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소송의 승인·지휘 업무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가소송 패소율은 검사·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및 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 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보다 0.5%p 감소한 9.3%를 기록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국가의 상고율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27.5%로 나타나는 등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8〉와 같다.

2)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법에서는 국민들이 소송보다 간이한 국가배상절차를 통하여 신속한 손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심의회를 통한 국가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본부배상심의회를 설치하여 개산(槪算)액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전국 고·지검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서 심의한 사건의 재심사건에 대하여 심의·처리하고 있다.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8,590건을 접수하여 그 중 1,079건을 인용하고, 2,876건을

기각하는 등 총 4,048건을 처리하였다.

나. 소송수행청과의 소통 강화 및 소송수행자의 역량 제고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1) 전국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2023. 12. 22. 전국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및 송무담당 실무자 34명이 참석하여 일선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송총괄관 회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이용한 전자 승인·지휘 전면 시행, 시행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판례분석,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의 주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 소송총괄관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또한 국가송무 수행 관련 애로사항·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논의하여 법무부와 일선 소송수행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림 2-45 | 소송총괄관 회의



인사말씀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2) 국가송무 수행자 교육 실시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자의 송무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기존 집합교육 방식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하여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였고, 2022년에는 이러한 교육방식 전환이 안정화되어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으로 교육 횟수를 회복할 수 있었다. 특히, 법무연수원 뿐만 아니라 우정공무원교육원,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유관 기관의 교육과정으로

범위를 넓혀 활발한 국가송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고손실 환수소송 매뉴얼과 국가송무 현황 등 출판물을 개정하여 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소송수행자들이 국가송무 수행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송무지도점검 실시

법무부는 국가송무 및 국가배상 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무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청주지검(3월), 울산지검(4월), 대전고검(5월), 인천지검(6월), 광주고검(10월), 대구고검(11월), 서울고검(12월) 총 7개 검찰청의 국가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각 고·지검이 국가소송 지휘 및 국가배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수검대상 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향후 국가송무 수행에 참고하는 기회로 삼았다. 수검대상 기관은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 개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4)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개최

2023. 12. 11. 전국의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65명이 모여 국가송무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만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고·지검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들이 국가·행정·헌법소송의 수행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하여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국가송무 전반에 걸친 송무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밖에 법무부와 일선 수행청간 원활한 소통채널 확보, 공익법무관의 역할증대 방안 논의 등을 통하여 공익법무관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을 격려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송무업무유공자 101명(국가소송 55명, 행정소송 46명)에 대하여 총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윤경식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과 법률자문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로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단의 홍보노력 등으로 공단의 2023년 수임사건은 1,610건으로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2008년 수임사건 377건). 특히, 2023년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방식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 20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70억 원의 배상을 이끌어 내는 등 입찰담합 국고손실 환수, 귀속재산 환수소송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단의 전문적인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15.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국가소송과 행정사무관 강형광, 행정주사 남승우

가. 추진배경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판례가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손해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29조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그 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종래 전사·순직한 군경 유족이 법령상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일체의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위 유족 고유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사고 당시의 군복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군 복무와 관련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국가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에서 전부 산입하도록 하여 국가배상 기준의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같은 법 제3항으로 신설하였다.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었으나,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문언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2023. 10. 25.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되면 군인, 경찰, 예비군대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본인 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3. 10. 31.부터 시행된 개정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통하여, 국가배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병역의무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소송과 사무관 서 려

가. 추진배경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실제 범죄 대응에 필요한 공권력 행사가 방해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되었다. 이러한 ‘살인예고’글 게시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추진경과

이에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과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을 준비하였고, 2023. 9. 19.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4,3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어,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어서 전담팀은 2023. 11. 24.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청구액 약 3,200만 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청구액 약 1,200만 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다. 성과 및 향후 계획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7.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국가배상소송 대응

국가소송과 사무관 강형광, 이선민

가. 추진배경

국가배상청구권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에 관하여 제기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대응은 국가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에도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기관의 잘못과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명백히 확인된 여러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정의와 상식에 따라 상소 포기를 결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나. 추진경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 및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23. 1. 31. '상고 포기'를 결정하였다. 법원이 기무사의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심 판결보다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은 최근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것인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 등 위법행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재판을 조속히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결정이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8월 범인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중곡동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2023. 2. 17. 재상고를 포기하였고 , 2023. 11. 24. 에는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칼을 휘둘러 5명이 사망한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였다. 두 결정 모두 국가의 미흡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범죄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정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법무부는 2023. 12. 14. 일명 '프락치 강요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다. '프락치 강요 사건'의 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에 의하여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강요에 의하여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일명 '프락치 임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는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및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피해자)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다. 성과 및 향후 계획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공식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밝히는 등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8.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 국가소송과 사무관 강형광

가. 추진배경

국고손실 환수소송이란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물품구매 관련

입찰담합 등으로 인해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민사소송을 의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소송으로서 수행·관리된다. 국가는 국고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수단을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손실액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적 환수방안, 즉 국고손실 환수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수행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는 각 소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환수소송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고손실 환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 9. 22. 법무실 국가소송과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한 바 있다.

나. 추진경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출범 이래 국가 상대 입찰담합 사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등 의결서 및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국고손실 환수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법무부의 국가소송 승인권한이 확대된 이후, 중요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한 승인을 통해 소 제기 및 환수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 전(全) 단계에 걸쳐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추진성과

2023년,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가능 사례 발굴 및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해 환경부 등 유관기관 및 환수소송 대리인 등과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각급 검찰청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 부패·비리, 입찰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판결문 및 형사판결문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 8건의 환수소송 제기를 승인하였다.

또한, 국방부 군식기세척기 임차사업 입찰담합 사건, 방위사업청 군복원단 제조 입찰담합 사건, 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건, 우체국 보험사기 사건 등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총 9억 8,598만 원을 환수하였다.

라. 향후 계획 및 기대 성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환수사례 발굴과 환수소송 수행을 위해

소관부처, 관계기관 및 각급 검찰청과 상시적 협업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학계 등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환수소송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여 국가기능의 정상적 작동에 기여하고,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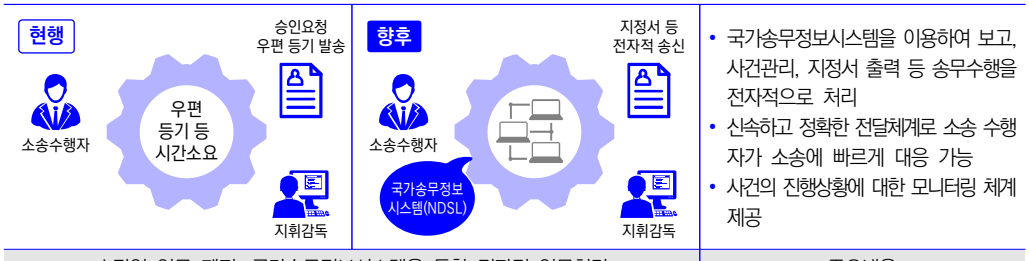
19.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국가소송과 사무관 유영걸

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법무부는 국가송무의 규모 증대 및 전문화,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통신수단 발달 등 현대의 급변하는 송무환경에에 대응하여 국가송무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구축하고, 2016년 9월 전체 행정기관을 수행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 그림 2-46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나. 추진 성과

법무부는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여

왔고, 2020년 12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2021년 국가송무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검찰 사건번호→법무부 사건번호) 및 지역관할에서 사건유형으로 배당체계를 개편하고, 2022년에는 수행청 시스템의 Non-ActiveX 전환 등 주요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3년 지휘청 시스템을 Non-ActiveX 전환하고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를 위해 상소 및 불변 관련 전자 승인·지휘 기능을 추가하였다. 2023년 말까지 행정기관(수행청)은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34,233건의 소송사무 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처리 하였고, 116,037건의 소송문서를 등록하여 지휘청과 공유하였다.

다. 기대 효과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무행정의 질을 꾸준히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휘청은 물론 전체 수행청에 걸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국가송무 관련 판례 등 정보·지식 관리·공유를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등 승인·지휘청은 시스템을 통해 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 행정소송과 검사 이현진, 법무관 양재혁, 법무관 박준상

가. 개요

행정소송은 공권력의 행사가 법령에 부합하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소송은 소송의 형태가 다양하고 소송유형별 독자적 법리가 적용되는 등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나아가 행정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2월 28일 국가 송무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전국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 위임된 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였으며, 변호사 자격자인 송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에서 통일적 지휘를 통해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상 과오 시정, 제도개선 권고 등 개별 사건의 지휘를 넘어 법치행정 구현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국가 송무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체계화를 통해 소송수행청에 대한 보다 실질적·효율적인 소송지휘를 추진하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소송수행청의 송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수행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나. 소송지휘 업무 전자화

과거에는 공문을 통한 지휘 요청, FAX를 통한 수기 결재 지휘 문서 전송의 방식으로 행정소송 지휘가 이루어졌으나, 수행청과의 소통 강화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지휘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3월 국가송무 전산 관리 체계인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이용한 행정소송 전자지휘 기능 개발에 착수하였고, 수행청 대상 NDSL 교육, 상소 전자지휘 병행실시를 거쳐 2023년 9월 상소 전자지휘를 전면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상소 외 다른 소송행위에 대한 전자지휘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 송무업무 수행(효율적·통일적 행정소송 지휘·감독, 직접수행)

1) 개관

국가송무체계 개선으로 전국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이 모두 법무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행정소송 지휘, 중요 사건 지정·관리 등 행정소송 업무 전반을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된 이후 공정거래, 조세, 노동·인사징계, 일반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한 행정소송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진행 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46,021건으로, 전년 대비하여 약 7.7% 증가하였다. 행정소송 신건 접수 건수는 2020년 소폭 감소한 것 외에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사건 처리 건수는 18,922건이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1〉과 같다.

2) 주요 행정소송 직접수행·지휘 사례

가) 법무부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직접수행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2019. 5.경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와 면담 중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면담내용을 녹음하려 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무부장관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2020. 12. 29. 원고가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 및 부당한 처우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에 원고는 방어권 미보장 및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1. 7. 27. 원고 소 제기
- 2022. 2. ~ 2023. 12. 총 3회 변론기일
- 2023. 12. 21. 1심 판결 선고 [피고 승소]
- 2024. 1. 6. 1심 판결 확정

(3) 법무부 직접수행 사항

법무부는 ❶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조사일정 연기 및 문답서를 통한 조사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원고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며, ❷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어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약 1,180억 원 규모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지휘

(1) 사건 개요

원고는 담배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담배소비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이 증가하는 내용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이 시행되는 2015. 1. 1. 이전에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 104,634,000갑을 '미납세반출' 한 뒤 위 각 법률 시행 이후 다시금 '납세반출'하는 방식으로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원고가 납세반출한 시점이라는 취지로 개정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18,212,293,2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원고가 미납세반출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2017.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19. 2. 22. 원고 소 제기
- 2020. 1. 9. 1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 (1심 판결 요지) ❶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미납세반출 시점이며, ❷'반출'이란 그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현실적으로 제조장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가리킴**
- 2020. 1. 30. 피고 항소 제기
  - *** (항소 제기 이유) ❶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납세반출 시점이며, ❷판매의사 없이 단순히 재고를 이동시킨 것을 개별소비세법상 '반출'로 평가할 수 없는바,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존재함**
- 2020. 9. 23. 2심 판결선고 [피고 패소]
  - *** (2심 판결 요지) 1심 판결 인용하여 피고 항소 기각**
- 2020. 1. 30. 피고 상고 제기
  - *** (상고 제기 이유) 항소 제기 이유와 동일**
- 2023. 7. 13. 3심 판결 선고 [파기 환송]
  - *** (3심 판결 요지) ❶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납세반출 시점이며, ❷개정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개정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법무부 지휘 사항

법무부는 1·2심 패소판결 선고에 대해 일관적으로 ❶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미납세반출 시점이 아니라 납세반출 시점이며, ❷판매의사 없는 단순 재고 이동을 관련법상 '반출'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상소 제기 지휘하였고, 결국 2023. 7. 13. 대법원은 법무부의 상소제기 지휘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노래방 영업정지 조정권고 사건 일괄 지휘

(1) 사건 개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자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다수 제기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실무상 영업정지 기간을 일부 감축하고, 감축한 기간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병과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한바 있고, 아래는 그중 한 사건이다.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강동구청장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주류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일부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 2022. 12. 27. 원고 소 제기
- 2023. 1. 6. 조정권고
  *** (조정권고안 요지)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15일 처분과 과징금 75만 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소취하**
- 2023. 1. 20. 법무부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
- 2023. 4. 26. 1심 판결 선고 [피고 승소]

(3) 법무부 지휘 사항

법무부는 음악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등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업정지처분 일부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하는 조정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다수의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하였고, 서울시 및 산하 자치단체에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의 대응 기조를 전파하였다.

위와 같은 법무부 지휘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지 않고,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 강화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청을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소송업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주요 소송수행청을 방문하여 소송업무 수행 실태(기록관리상황,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소송비용 회수현황 등)를 조사·점검하고,

소송수행청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여 송무행정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8개 기관에 대한 송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주요 소송수행청, 소송수행해태가 빈번한 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송무 지도·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청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더욱 내실 있는 송무업무 관리·감독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라. 헌법재판 업무 수행

1) 개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립해 오고 있는바,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필요 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관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입법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2) 주요 헌법소송 대응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정한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2020헌바295 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4조, 제7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 건수는 총 131건이다.

3) 위헌법률심판 수행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타 부처 주요 법령의 위헌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따라 심판대상 법령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23년에는 총 48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합헌 11건, 각하 5건, 위헌

25건, 헌법불합치 7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위헌제청 (2023. 2. 23. 2021헌가9 등 31건 병합) : 위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위헌제청 (2023. 3. 23. 2021헌가1) : 헌법불합치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호 제1호 등 (선거기간 중 화환 설치 금지) 위헌제청 (2023. 6. 29. 2023헌가12) : 헌법불합치

4) 헌법소원 수행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무부는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4조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 2023년에는 총 2,552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합헌 등 459건, 각하 등 2,075건, 위헌 61건, 헌법불합치 7건이 선고되었으며,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자를 父로 규정) 위헌확인 (2023. 3. 23. 2021헌마975) : 헌법불합치
-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확인 (2023. 7. 20. 2019헌마1443 등 5건 병합) : 합헌
-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이적단체가입·이적행위·이적표현물 금지) 위헌소원 (2023. 9. 26. 2017헌바42 등 10건 병합) : 합헌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대북전단살포 금지) 위헌확인 (2023. 9. 26. 2020헌마1724 등 2건 병합) : 위헌

21.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가. 통일 대비 법제연구 강화

●통일법무과 검사 심재신, 서기관 한경태

1) 추진배경

비록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준비하고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선제적인 법제 정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

2023년 2월 전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별분과위원회는 '북한 체제 전환 대비 베트남 개혁·개방법제 연구' 소위원회와 '북한의 최근 입법 동향 연구' 소위원회로 이루어졌다. 각 소위원회는 총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층적인 통일법무 자문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2023년 12월에는 제52차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일법무지원단 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 그림 2-47 | 2023년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통일법무지원단 전체회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통일법무지원단 전체회의

2023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관련 법령 제·개정안 39여 건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북한의 체제전환 및 통일 대비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의 2022년 활동내역을 검토하여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2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2023년 5월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하였다.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내용도 담았으며,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였다. 집필에는 법학 교수와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전(前) 북한 검사인 북한이탈주민 등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 그림 2-48 | 연구자료 발간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2022년 연례보고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

한편, 2010년 2월 창간한 통일법 전문 학술지(계간지) 「통일과 법률」을 2023년 2월 제53호부터 11월 제56호까지 발행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호당 연구논문 4~5편과 실무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활동 수기, 남북관계 동향 등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제54호에는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특별기고를 실어 통일법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원고의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 그림 2-49 | 「통일과 법률」 발간



「통일과 법률」 제5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특별기고

3)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남북관계 관련 법령 제·개정안 검토, 「통일과 법률」 발간 등을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통일법무과 사무관 장윤정, 행정주사 박보경

1) 추진배경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여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법무과는 매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진행하며 통일법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 추진내용

2023년에는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10.23.~11.20.)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공무원 등 수강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총 5강으로 준비된 제13기 아카데미에서는 미래 통일법제의 주요 법적 쟁점과 방향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하였다. 강연은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미래'(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남북한 법제 통합'(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정전협정 70주년과 미래

안보'(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북한 조세제도와 법제 변화'(최정욱 공인회계사 겸 북한학 박사)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필요성이 두각 됨에 따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북한 인권과 국제 협력' 주제가 신규 편성되었다.

제12기 아카데미 이후 대면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여, 강연자와 수강생 간 소통의 통로를 다양화하였다.

그 결과 제13기 아카데미 수료생은 총 104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며, 강연별 수강생 만족도 평균은 전년 대비 4.5점 상승한 96.80점을 기록하였다.

※ 역대 아카데미 수료 인원 :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 10기 68명, 11기 72명, 12기 75명

| 그림 2-50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포스터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률신문 광고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법무실장 축사



제13기 아카데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강연

2023년 6 ~ 10월에는 '제5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1회 개최되는 논문 공모전은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로 응모가 가능하다.

약 4개월간의 공고 및 홍보를 거쳐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2023년 11월 최우수상 1편(“남북통일 이후 국가책임의 승계”)과 우수상 2편(“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에 대한 고찰”)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수상작들은 「통일과 법률」 제57호(2024년 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 그림 2-51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제5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포스터



제5회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시상식

3) 주요성과 및 평가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22.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남북가족특례법」 정비 추진

통일법무과 검사 심재신, 사무관 김태희

가. 추진배경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은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 등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등을 명목으로 허가 없이 재산을 임의 유용하는 등 재산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추진내용

법무부는 '23. 5. 26. ~ '23. 10. 30.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사전 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소속)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북한주민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은 '23. 10. 31. 국회에 제출되었고, '23. 12.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다.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을 구체화하였다(안 제18조 제1항). 또한 재산관리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유증재산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신청할 시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거래 내역을 법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법무부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18조 제3항 신설).

라. 기대효과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북한주민 소유의 금융재산을 자의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사전에 감독할 수 있으므로,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2-52 |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5. 25.(목)

북한주민의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강화

- 북한주민이 상속·유증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금융·신종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는 「남북가족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 배경

○ 법무부는 내일(5. 26.)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북한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검불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고,

○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 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증

2. 주요 내용

○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법상 허가 대상)** 「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보존행위 및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을 넘는 행위

○ 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① ---------- 다음 각 호의 ---------- ----------. 1.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등에 대한 금융거래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재산관리인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신청서에 제1항의 허가서 원본 또는 정본을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으로부터 허가서 원본 또는 정본을 제출받은 금융회사등은 그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산관리인이 신청한 거래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실 통일법무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현 (02-2110-3223)
		담당자	사무관	김태희 (02-2110-32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2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통일법무과 사무관 이예은

가. 추진배경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각종 정보 부족 등으로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이다. 더불어 법치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북한사회에서 체득한 낮은 준법·인권의식으로 인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하며 법률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1)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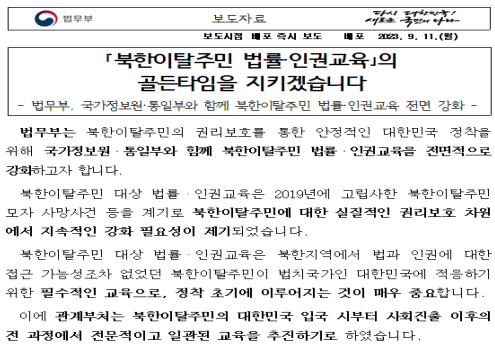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을 위하여 월 1회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본원 및 분원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남북한 법체계 비교', '민·형·가사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을 강의하였다.

나아가 법률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이후부터 지역 전입에 이르는 정착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협의하여 법무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법률교육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통일법무과 검사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출강하기 시작하였고 10월에는 지역전입 1~3년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나원 법률교육의 경우에는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 그림 2-53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체계 개선



법률교육 강화 개요



법무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3. 9. 11.(월)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계부처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시부터 사회진출 이후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일관된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국가정보원·통일부 공동보도자료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은 유선 및 온라인(통일법제 DB 홈페이지·카카오톡)을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310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격월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거주지역 관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과 구조연계를 진행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지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총 6회).

* 통일법무과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상시 법률상담 제공

| 그림 2-54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법률상담



서울북부하나센터 방문상담



서울남부하나센터 방문상담

2)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의 내실화

경제적 곤란, 질병, 고립 등에 더불어 법적 문제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변호사를 1:1로 매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2023년 1월,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분포를 고려하여 변호사 32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7월에는 임기(2년) 만료시점을 맞아 재위촉 및 추가위촉을 진행하였다.

2023년 12월 기준, 총 71명의 지원변호인이 위촉되어 있으며, 위기 북한이탈주민 15명이 매칭되어 있다(종결 건 포함 총 62명 지원).

한편,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을 2023년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23년 6월과 12월에 현장강의와 함께 온라인 동시 중계로 총 2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지원변호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2회에 걸쳐 총 181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 그림 2-55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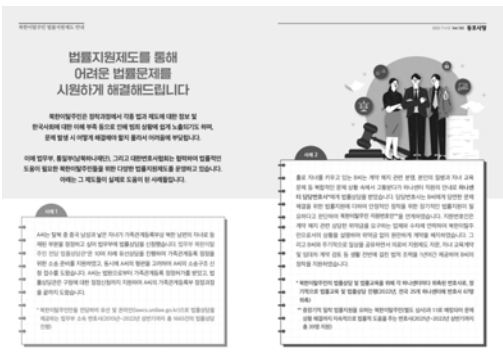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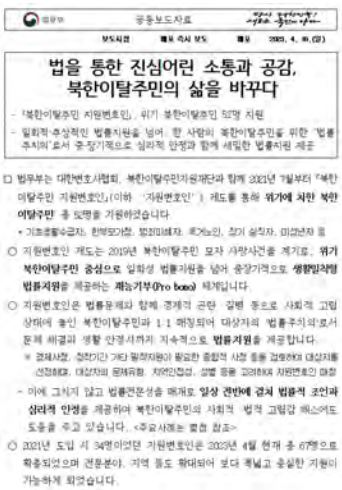
3) 적극적인 제도 홍보

제도홍보자료와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률지원제도를 알리도록 노력하였다. 2023년 1월, 남북하나재단이 발간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배포하는 「동포사랑」(정착사례·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격월간지)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와 실제 지원사례, 법률상담 신청방법을 소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의 우수 지원활동 사례들을 다룬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변호인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 그림 2-56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제도 홍보



「동포사랑」 기고문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활동사례 관련 보도자료

다. 주요성과 및 평가

법률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내실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치주의 적응을 위한 법률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을 빠짐없이, 그리고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4.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서기관 박세준

가. 주요 추진사항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근래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사 및 동시상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분할회사 주주의 주식가치 및 투자자 신뢰 훼손 논란이 발생하였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통한 주주보호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비상장회사도 동일한 주주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현행법상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주식의 매매가액에 관하여 회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지연이자도 과다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에 대학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총 11인의 상법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행 상법상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전자문서로 통지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구체적인 동의 방법과 절차가 불분명하여 실무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주주총회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현행 주주총회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23년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은 주주총회 내실화 및 개최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주주총회의 전자적 소집통지를 활성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하여 2023년에 '상법특별위원회' 내 '전자주주총회 자문팀'을 구성하여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1)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강화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

금번 개정안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경제 기본법인 상법에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방안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만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화 및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주주총회의 소집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서 소집통지를 위한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은 '이에스지(ESG)' 경영이념 하에서 요구되고 있는 '주주가치 극대화'에서 '주주복지 극대화'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부합한다. 특히 국내기업 중 약 90%가 주식회사인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의 법질서 인프라를 선진화시키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개정 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주주총회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상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다.

25. 도산법의 체계적 정비 및 절차 편의성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였으나, 2015년「지방세법」개정으로, 1976년 개정 이후 비과세이던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동 개정안을 2023. 8. 18. ~ 9. 27. 입법예고 하였고, 2023. 11. 13.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 주요내용

1)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협의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등 관련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하는 한편,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비과세 범위 명확화하였다. 그리고 2024. 1. 1. 기준 회생절차·회생계획 진행 중인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2)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하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이용자들의 절차 편의를 개선할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공포·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6.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회사의 안정적 배당을 위한 제도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전문위원 이보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법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다. 이 때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이유는 평가상 이익이 향후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상법은 원칙적으로 미실현손실과 미실현손익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상계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23. 1. 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원가평가 방식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달라지는 부채평가 방식을 반영할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 되고 이로 인해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 실무계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상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상품과 연계된 거래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을 정비하였다.(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68호로 공포 및 시행)

*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①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파생상품의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③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해 질 것이고 이를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7.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분쟁해결, 기업도산, 금융서비스, 기업입지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점수가 발표된다. 법무부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분쟁해결, 기업도산, 금융서비스, 기업입지)를 담당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2019. 10.까지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6년 연속하여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를 지켰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2021. 9. 기업환경 평가(EoDB)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2023년 새로운 평가체계인 신기업환경평가기준(Business Ready, B-Ready)의 개요를 새롭게 발표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3. 11. 새로운 평가항목인 대체적 분쟁해결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싱가포르 및 홍콩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였다. 또한 같은 달 서울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국의 법률가 및 유관부처의 실무자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의견교환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17 | 2020년 기업환경지수 주요 국가 종합순위

국 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8위	29위

| 표 2-18 | 2020년 기업환경지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주요 국가 순위

국 가	싱가포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17위	21위	34위	50위

* 2021년 이후 기업환경지수 결과 미발표

나. 홍콩, 싱가포르 현지세미나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내역 홍보

세계은행은 2023년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을 새롭게 발표하고 기존 기업환경평가기준(EoDB)와 평가방식을 달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의하면 법무부는 4개 분야(기업 입지, 금융 서비스, 분쟁해결, 기업 도산)을 담당한다. 세계은행은 2023년 1차로 50여개 국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의한 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새로운 평가항목인 대체적 분쟁해결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기존 기업환경 사업내역을 공유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 항목에 관한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내 신기업환경평가 담당부처인 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 변경된 기업환경 지수 평가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아태경제협력체 싱가포르 사무소를 방문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 향후 운영계획 및 우리나라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환경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확충하였다. 이처럼 법무부는 현지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내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B-Ready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 그림 2-57 | 2023 홍콩·싱가포르 세미나 개최



홍콩 세미나 개최



싱가포르 세미나 개최

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23. 11. 28. 서울 호텔 나루에서 2023년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40여 명이 현장 및 화상으로 참석하여 기업환경 현황과 신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대응방안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58 | 2023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법무실장 축사

28.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법무관 정종현

가.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법률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현재 79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2023년 1년 간 75건 법률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10여건의 법률지원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 법률지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중소기업의 법률지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지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법률지원 절차의 신속·간편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문에 앞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유용한 법률정보를 게시하여 사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4Min 가이드, Case Study 등의 영상을 통하여 간편하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사례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강의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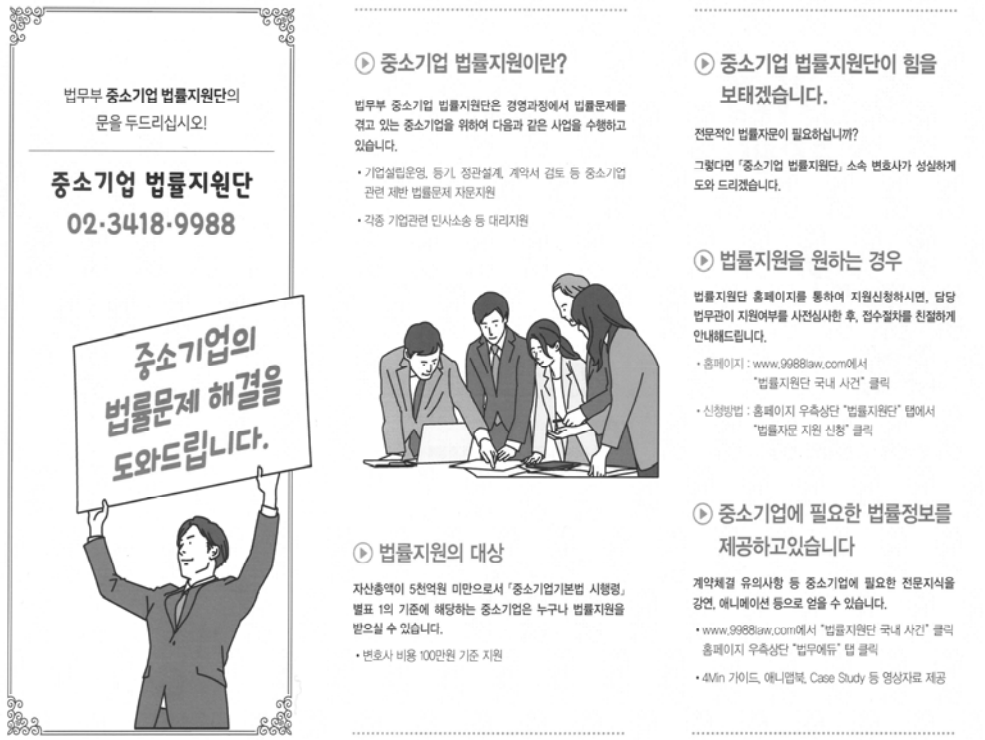
한편 2022년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지원 신청절차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지원 절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 및 법률지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팜플릿을 제작하여, 2023년 12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팜플릿을 배포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네이버 해피빈 광고를 진행하여 약 3만 3천여건의 캠페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 그림 2-59 | '23. 12.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네이버 해피빈 광고〉



| 그림 2-60 | '23. 12.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홍보 팜플릿〉



29. 경제 형벌규정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법무관 김영근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종래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형사벌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있어 과도한 형벌규정이 마련되고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왔다는 비판이 존재하여 온 측면이 있다. 이에 2022. 7. 13. 법무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가 출범하여 경제 형벌규정에 대하여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유사한 법률과 형평성에 맞는지,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한지 등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는 '22. 8.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1차 과제(32개 형벌규정), '23. 3.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2차 과제(108개 형벌규정), '23. 10.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3차 과제(46개 형벌규정)를 발표하였다. 현재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 및 서민·자영업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포함한 4차 과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61 |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3차 회의 및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TF」 3차 회의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 그림 2-62 | 2차 과제 개선방안 중 주요내용

❶ (주요 경제 형벌규정)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유사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

구성요건	기존	개선
⦿ (문체부) 관광진흥법 제83조 제1항 제6호(제25조 제4항 관련)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과태료 1백만원 이하

❷ (생활밀착형 규정) 5년간 **입건수 1천 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 개선

구성요건	기존	개선
⦿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제39조 제3항, 제55조 관련)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승계일 1개월 이내 미신고한 자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❸ (사문화된 규정)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규정**을 선별해 **국민 재산·안전 등에 중대한 우려가 없는** 한 적극 합리화

구성요건	기존	개선
⦿ (법무부) 전자어음법 제22조 제3항(제20조 제2항 관련)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징역 1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천만원 이하

나. 평가 및 발전방향

경제 형벌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특히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뿐 아니라 서민·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정들을 합리화한다면 국민경제 발전과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TF」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30. 전자어음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서기관 박세준

가. 전자어음제도 개관

전자어음제도는 약속어음의 발행·유통 및 어음상의 권리행사 등이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전자어음의 발행인은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이 모두 전자어음관리기관이 구축한 전자적 방식의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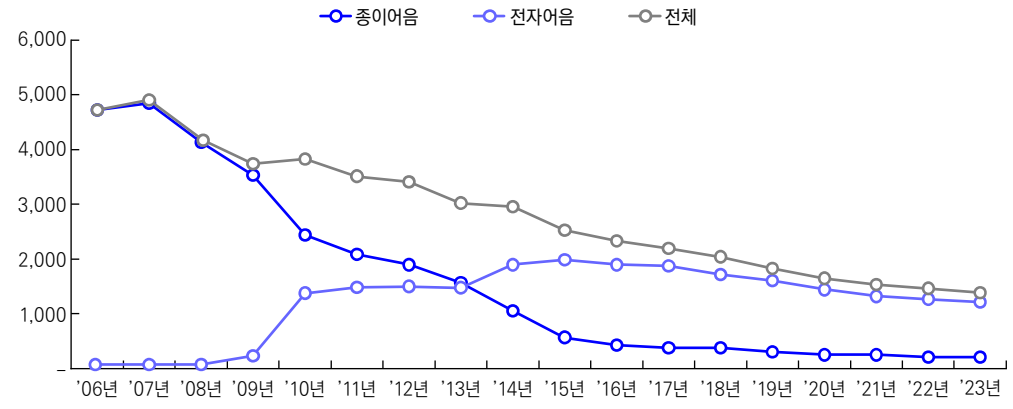
법무부는 2005년「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 및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의 어음은 실물종이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 및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2009. 5.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과하였고, 2014. 1. 및 2022. 2. 두 차례의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의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 2023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3년도에 전체 전자어음은 약 122만 6,000건(전년대비 약 4% 감소), 903조 원(전년 대비 11.8% 감소) 상당액이 발행되었고,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 중 전자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87.4%(전년 대비 0.9% 증가), 금액 기준 62.65%(전년과 같은 수준)의 추이를 보였다. 종이어음은 약 17만 6,000건(전년대비 12% 감소), 538조원(전년대비 12.2% 감소)이었다. 한편 전자어음의 부도율은 최근 5년간 건수 기준 0.43%에서 0.51%로, 금액 기준 0.05%에서 0.7%로 증가하였다. 전자어음이 종이어음을 대체 및 보완하는 안정적인 금융 및 결제수단의 하나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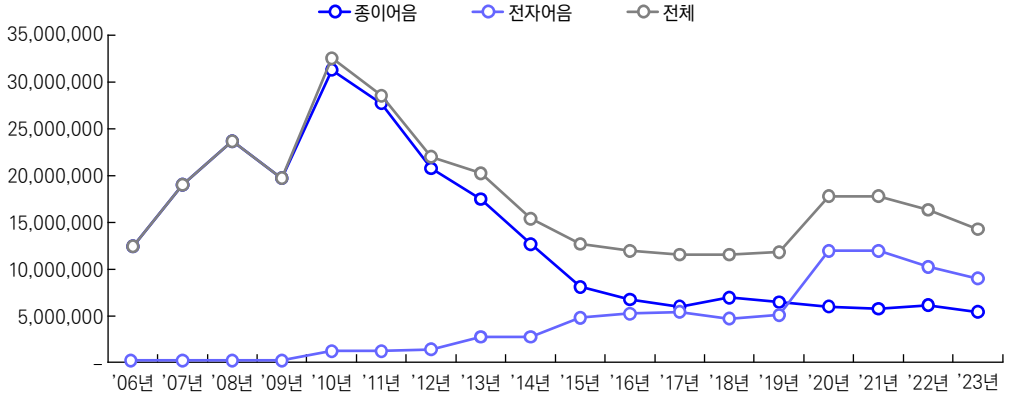
| 그림 2-63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천 건)



| 그림 2-64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억 원)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어음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은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하는 실물어음(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전자어음 의무발행사업자의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전자어음제도 자체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전자어음의 유통성 및 거래의 안정성을 함께 제고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1. 전자증권제도 시행

●상사법무과 서기관 박세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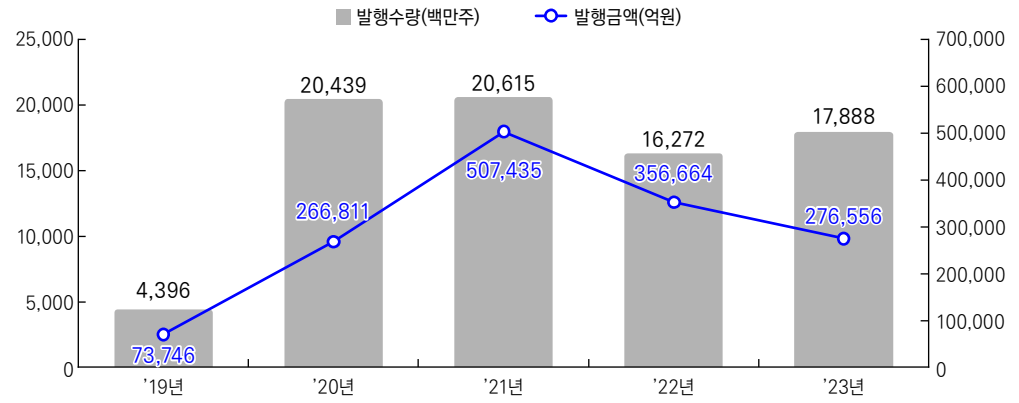
법무부는 2019. 9. 16.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6. 3. 22.「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2019. 6. 25.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2019. 9. 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고 신규 발행 시에도 전자증권으로 발행할 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분산원장 방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윤창현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나. 2023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23년도에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는 1,351개사로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발행수량은 약 178.9억주로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발행금액은 약 27.7조원으로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였다. 특히 비상장법인 주식의 발행수량과 발행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69.4%, 8.5% 증가하였다. 한편 신규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발행회사는 총 273개사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신규 발행되거나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주식은 30.1억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 그림 2-65 | 연도별 전자증권제도 신규 이용 실적

(단위:개사, 개)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 주식의 발행수량과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자등록 및 유통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법적·실무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32. 중재산업 활성화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 사무관 김영수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19. ~ '23.)」을 수립해 2019. 1. 1.부터 시행하였다.

| 표 2-19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
목표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4대 추진전략	**9대 추진과제**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1. 중재 전문인력 양성 2.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2. 국내중재 활성화	1. 중재제도 인식 개선 2.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
3.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1.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2. 중재기관 역량 강화 3. 신규 중재분야 발굴·육성
4. 국제중재 유치 확대	1.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 2. 국제중재 유치 지원

나.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 ADR 페스티발 및 아·태 ADR 컨퍼런스(법무부 등 공동 개최) 등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재교육원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재 전문인력을 양성에도 주력하였다. 국제중재분야 외에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을 반영한 「국제조정규칙」을 제정('24. 1. 1. 시행)하여 국제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3년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보다 26건 증가한 368건으로 이 중 국제중재사건은 54건이다. 향후에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중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33.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서기관 박세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기존 기부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 2. 29.「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였다. 공익신탁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부수단으로서 설립절차가 법인보다 간소하고 신탁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기부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TV·웹툰·해피빈 공익신탁 캠페인·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지원, 환경보호, 생활 SOC 등 총 35개의 공익신탁이 설정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문가들로부터 공익신탁제도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 11. 14.「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3. 12. 21. 학계·실무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림 2-66 | 공익신탁 홍보 관련



| 그림 2-67 | 2023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나.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까지 다양한 목적의 공익신탁이 설정되었으나, 법무부는 공익신탁 제도를 통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고령자 등의 소득과 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욱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신탁이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기부모델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학계와 실무계의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이다.

34.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무과 전문위원 이보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23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101호는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2022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와 최수정(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 등 논문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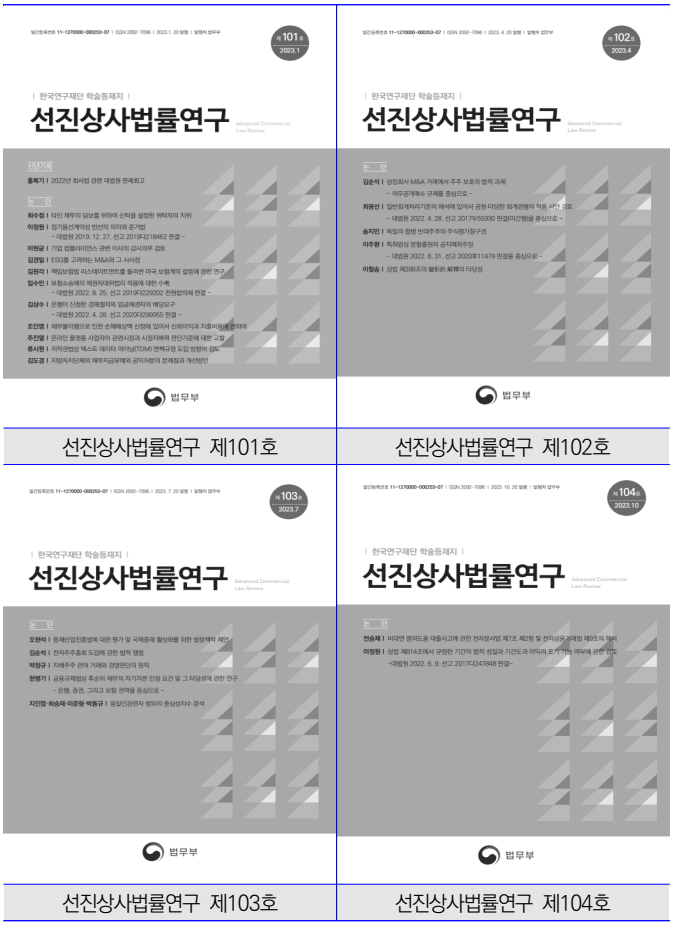
4월에 발간한 통권 제102호에는 이철송(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상법 제398조의 변형적 해석의 타당성』 논문 등 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103호는 김순석(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논문을 비롯하여 총 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104호는 전승재(토스뱅크 법무팀) 변호사의 『비대면 명의도용 대출사고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 기고를 포함하여 2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대학도서관, 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68 | 선진상사법률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1호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2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3호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04호

35.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사법무과 검사 박광호, 전문위원 이보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 도산사건 증가에 대비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산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3. 12. 21.「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윤남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사회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최준규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한 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전병서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범석 판사(서울회생법원), 최수정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 제도 제·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그림 2-69 | 2023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개회사



선진법제포럼 주제 발표

36.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법조인력과 사무관 홍진희

가.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

1) 시험 문제 합숙 출제 및 시험 시행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22. 12. 28.부터 2023. 1. 14.까지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의 유무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기존의 합숙출제시설이 비좁고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아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새로운 합숙시설을 수개월간 물색하여 비용 편익, 보안 동선,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합한 시설업체를 선정하는 등 합숙시설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다.

2023. 1. 10.부터 1. 14.까지 4일간(1.12. 휴식일 1일 제외)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하였으며 총 3,644명이 원서 접수하였으나, 실제 3,255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89.3%를 기록하였다.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하였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용 컴퓨터, 책상, 보조인력 등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용 승인 등의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였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22. 12.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4월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로 시험실시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실시 직후인 2023. 1. 이를 발표하였다.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023년에도 채점위원 간 채점편차의 최소화, 채점기준의 객관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채점을 위해 본채점 실시 이전에 채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순위중심·세트반복형 가채점회의를 3일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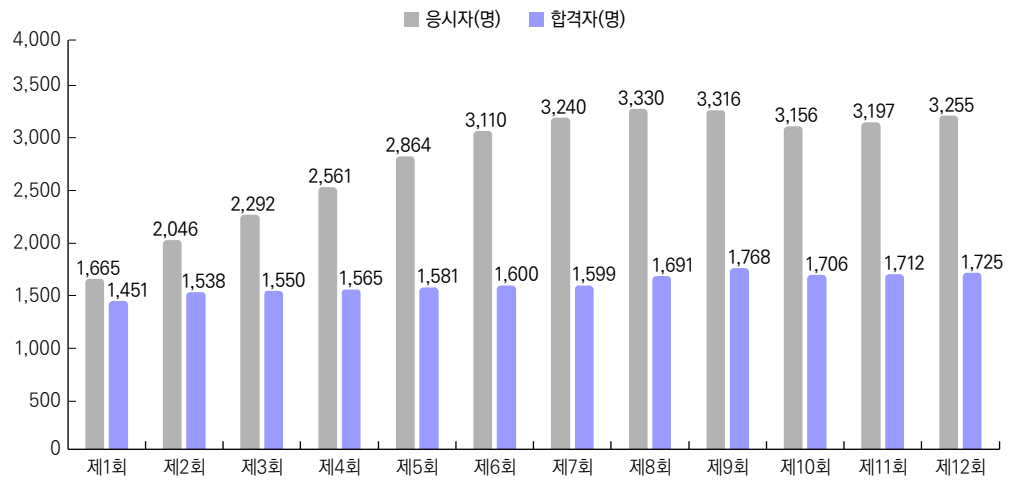
그 외에 출제 과정에서 시험위원을 상대로 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 가안(假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최종 정답을 공개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3. 4. 20.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2. 12.)에서 결정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1,700명 내외로 결정한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1,725명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 표 2-20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3,156	3,197	3,255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1,706	1,712	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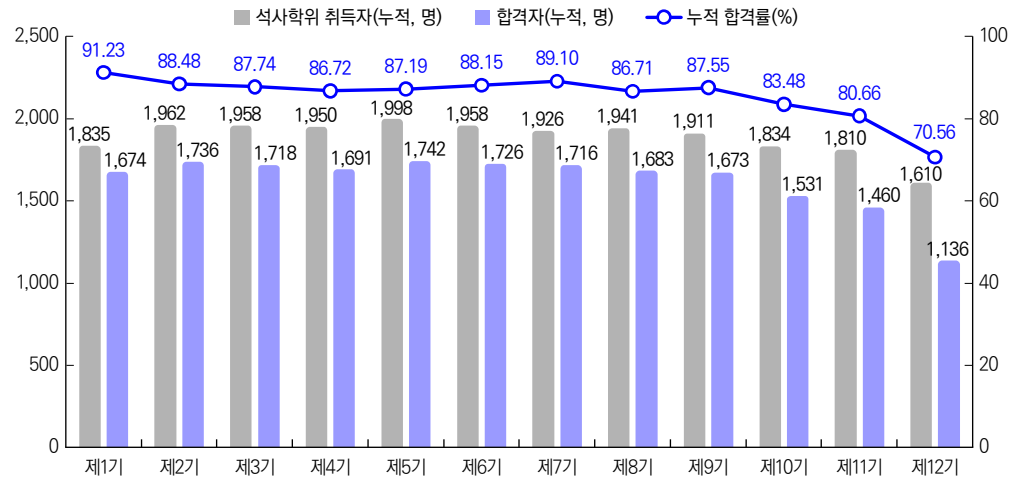
| 그림 2-70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 표 2-2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명)	1,835	1,962	1,958	1,950	1,998	1,958	1,926	1,941	1,911	1,834	1,810	1,610	22,693
합격자 (누적, 명)	1,674	1,736	1,718	1,691	1,742	1,726	1,716	1,683	1,673	1,531	1,460	1,136	19,486
누적 합격률 (%)	91.23	88.48	87.74	86.72	87.19	88.15	89.10	86.71	87.55	83.48	80.66	70.56	85.87

| 그림 2-71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 합격률



나.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은 2023. 8. 5. 전국 법전원 소재 대학 10개 시험장(서울5,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충실히 구축된 문제은행 및 검토 시스템 가동, 실력 있는 시험위원 위촉 등을 통해 문제의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해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하였다.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양과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배출 할 수 있도록 변호사윤리, 법관윤리, 검사윤리 등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변호사법, 법관징계법,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역윤리 및 가치관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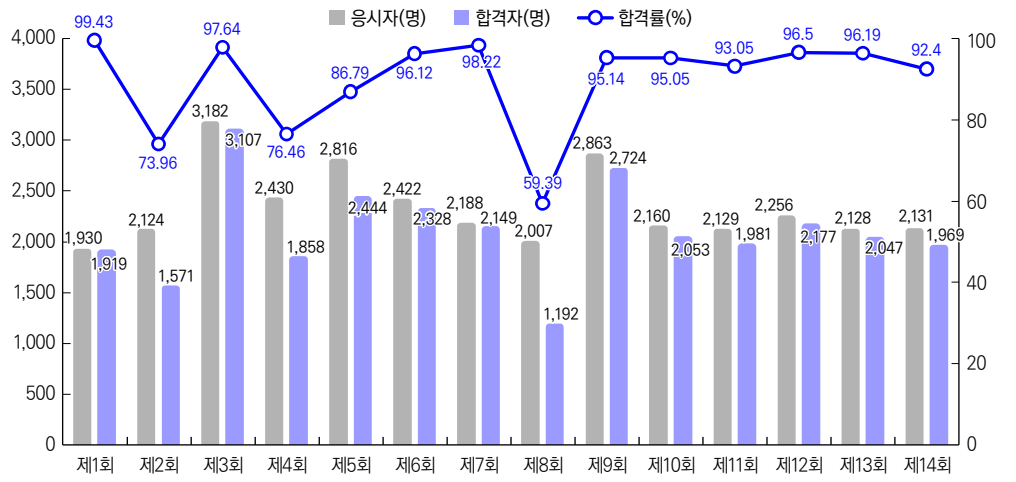
그 결과 총 2,162명이 출원하여 2,131명이 응시(응시율 98.6%)하고, 1,969명(합격률 92.4%)이 합격하였다.

※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 2,128명 응시, 2,047명 합격(합격률 96.19%)

| 표 2-22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1회 (2010)	2회 (2011)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11회 (2020)	12회 (2021)	13회 (2022)	14회 (2023)
응시인원(명)	1,930	2,124	3,182	2,430	2,816	2,422	2,188	2,007	2,863	2,160	2,129	2,256	2,128	2,131
합격자(명)	1,919	1,571	3,107	1,858	2,444	2,328	2,149	1,192	2,724	2,053	1,981	2,177	2,047	1,969
합격률(%)	99.43	73.96	97.64	76.46	86.79	96.12	98.22	59.39	95.14	95.05	93.05	96.50	96.19	92.40

| 그림 2-72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다.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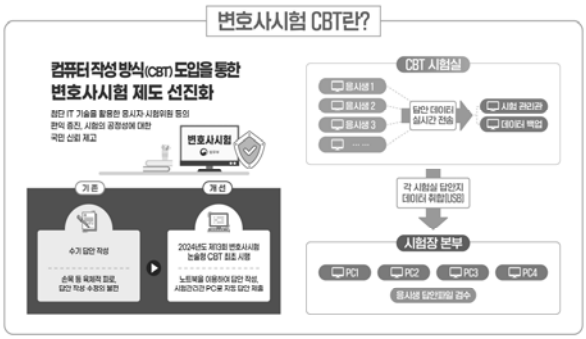
1)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첫 시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시험 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 시행을 추진하였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사례형·기록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하여 CBT 방식과 수기(手記) 방식 간에 차이가 없으며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도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및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 임차하여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관리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한다. 참고로 수기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전국 5대 광역권에 시험장을 설치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73 |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2022. 7. 변호사시험 논술형을 CBT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함에 따라 2023년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 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CBT 방식 전국 모의시험 실시, 네트워크 반복 점검, 전문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첫 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다.

2023. 8. CBT 방식의 노트북 사양 및 키보드 타입 기본 사양을 공지하였고, 응시자들에게 CBT 방식에 대한 연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CBT 방식 체험 서비스(일명 '튜토리얼')를 시행하여 응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CBT 방식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로그인부터 답안 작성까지 전 과정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림 2-74 | 법무부 홈페이지 변호사시험 CBT 방식 체험 서비스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3차례('23. 6월, 8월, 10월)에 걸쳐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8월·10월 모의시험에는 2024년 본시험에 활용할 법무부 시험장 책임관·보좌관을 사전 선발 운용함으로써 운영상의 안정성을 지속 검증하였고 응시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3. 11. CBT 응시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 공고함으로써 응시자가 사전에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고에는 CBT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장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3. 12. 본시험장에 노트북을 설치한 후 CBT 네트워크를 노트북 임대업체, 전산장비 운영 전문업체, 프로그램 개발업체 3곳이 교차점검 하였고, 2023. 7. 사전 선발된 시험감독관이 전반적인 CBT 시험 진행체계와 준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반복 실시하며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종전의 수기 방식과 CBT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출원자의 99.1%가 CBT를 신청할 정도로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는 전국 모의시험을 통해 제도의 장점(시간 절약, 육체적 피로 감소, 각종 문자표를 활용한 답안 작성 편리성 등)에 만족한 응시생들이 CBT를 적극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2023. 5.부터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3. 6.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22. 8.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제1기를 구성하였고 제2기는 '23. 3. 구성하였음

우선 변호사시험 논술형 중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하였다. 아울러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 추가 노트북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13회 변호사시험 CBT 시행에 맞추어 장애 응시자는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는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최초로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시험 실시 이전 합격자 규모 결정·발표

2023. 11.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27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24. 1. 9.~13. 시행)의 합격자는 기본적으로 1,730명 내외**로 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최초로 시험 시행 전에 '제13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를 통해 합격자 범위와 그 결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응시자의 예측가능성과 알 권리를 제고하였다.

* 법무부차관(위원장), 판사, 법학교수,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교육부 담당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시험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함(「변호사시험법」 제14조 및 제15조)

** 유관기관이 참여한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에서 수 개월간 논의를 진행하여 전원 합의

37.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연구사 조경희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3. 3. 제정, 2016. 9. 4. 시행)에 따라 2016. 10. 11. 북한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개소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7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3개월 마다 총 2,177건의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이관받아 분석을 완료한 후 가해자 인명카드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서고 및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보존·관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23. 8. 8. 법무실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장검사인 통일법무과장을 소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체제불법 청산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통일법무과와 긴밀히 협업하게 하는 등 법무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3. 8. 18. 사무실을 기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법무행정의 중심인 정부과천청사로 재이전하며 정상화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특정도가 높은 기록을 중심으로 인물, 죄명, 기관별 분석을 실시하는 등 책임규명을 위한 실태분석 방법을 고도화하였으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서울사무소장 등 국제사회 전문가들과도 적극 교류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표 2-23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이관시기	2017(3회)	2018(4회)	2019(4회)	2020(4회)	2021(4회)	2022(4회)	2023(4회)	합계
건 수	355	457	700	411	103	40	111	2,177

2) 평가 및 발전방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 연구를 내실 있게 진행하며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가해자 인명카드 작성에 더해 반인도범죄 중심으로 북한 고위층 책임규명을 위한 실태분석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제불법 자료를 수집해 '북한인권 디지털 아카이브'에 축적·활용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들과도 적극 협력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4절 검찰업무

1. 검찰 역량의 강화

검찰과 검사 안홍균

가. 검사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개요

2023년도 검사 인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검사를 배치하였고, 인사 희망과 고충을 충실히 반영하여 검찰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조화가 가능한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검찰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업무 역량 증진을 기하고자 하였다.

2) 주요내용 및 성과

2023. 2. 6. 상반기 검사 인사 시 업무능력과 전문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바른 자세를 갖춘 검사를 인사 규정에 따라 전국 청에 고르게 배치하였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2022. 11. 23. 개정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등 5개 검찰청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변경한 개정 규칙을 적용하되, 3년청 제도 시행 당시 해당 5개 검찰청으로 전보된 검사들이 3년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였다.

2023. 9. 25. 하반기 검사 인사 시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능력과 전문성,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아동, 지식재산권, 식품·의약, 마약·조직범죄, 증권·금융 등 다양한 전담 부서에 최적임자를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였고,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우수 형사부장 등을 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한편, 여성 고검검사급 검사 다수를 발탁하여 법무·검찰의 각급 주요 보직에 고루 배치하였다.

나. 검찰 조직 개편

1) 추진배경

정부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의 축소를 위해 수사권 조정과 함께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전담부서를 축소·폐지한 결과, 마약·조직범죄와 부패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다루는 반부패부와 마약, 조직범죄를 다루는 강력부는 전혀 상이한 부서임에도 무리한 개편으로 부패·기업범죄는 물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마약·총기·실탄 동시 밀수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테라·루나 사건과 대규모 펀드사기 및 주가조작 등 서민 다중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도 반복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수십년간 축적된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 회복을 위해 검찰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20여년간 유지된 대검찰청 범죄정보부서(1기획관·2담당관)를 축소하고 범죄정보 검증기능을 별도 회의체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정보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보안에도 취약해지고, 범죄정보 수집 역량도 약화되었다. 범죄정보 역량의 약화는 마약·조직 범죄, 서민다중에 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대응 공백과 직결되고, 마약밀수·유통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직원 등 정보원, 해외기관 등을 통한 정보입수가 필수이며 금융·증권 범죄도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정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규모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여 범죄정보 역량 강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공안부 내 3개 과의 업무조정 및 관리, 일선 청 중요 수사지휘 등 공안부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한 공안기획관이 2020. 9월 폐지되고, 공공수사 전담부서의 축소로 인하여 검찰 공공수사 사건 대응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월)과 산업현장의 조폭식 불법행위 등 팽배한 반법치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사건의 통일적 처리 및 컨트롤타워 기능 회복과 함께 공공사건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추진경과

2023. 5. 23.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76호)을 개정·시행하였다.

3) 주요내용과 성과

2023. 5. 2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맞추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였다.

반부패부의 하부조직을 반부패 1~3과로 분리하여 각 공직비리, 금융·증권범죄, 공정거래·조세범죄의 수사 지도·감독 및 대외협력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편하였고, 마약·조직범죄부 하부조직을 마약, 조직범죄, 범죄수익환수의 전담별 수사 지도·감독 및 대외협력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편하였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였고,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1·2담당관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로 재편하였다.

2022. 5월 서울남부지검에 비직제기구로 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수사지원과'를 유관기관과의 협력 수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수사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공공수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수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의 형사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변경하였다.

4) 평가 및 기대효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 반부패수사 지도·감독, 수사지원, 대외협력 업무 총괄 등 반부패수사 컨트롤타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반부패기획관 신설 및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1~3과 개편을 통해 반부패 분야별 수사역량의 체계적 축적, 맞춤형 수사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검찰의 중요범죄 대응 역량을 신속히 회복하고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전국 마약·조직범죄의 효율적인 지도·감독, 수사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마약·조직범죄수사 컨트롤타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설 및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통해 마약·조직범죄 분야별 수사역량의 체계적 축적, 맞춤형 수사지원 및 국제공조 업무 강화 등으로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3년 범죄정보 관련 조직 개편으로 서민다중피해 범죄, 반부패 범죄 등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분석·검증 역량의 실효적·기능적 강화를 통해 수사력 낭비를 막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신설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축적·은닉한 불법 재산을 최대한 추적·환수하여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엄단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보호 및 법질서 수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범죄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반영

사회적으로 사업장 내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예산을 신규, 증액 편성함으로써 검찰청 내 안전·보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자 블록, 점자 안내판, 장애인용 화장실 등 설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등 사건관계인의 편의 증진 및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2)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검찰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진단하여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검찰시설 내진보강 성능평가, 도청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 도청탐지시스템 확대 도입, 재산형 집행 담당 직원들의 업무 숙련을 돕기 위한 사이버 컨텐츠 제작 등 검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검찰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알뜰폰 통신영장 전자집행시스템 구축, 마약탐지기 등 첨단 마약수사장비 도입, 마약범죄 수사용 차량 지원, DNA 서열분석장비 S/W 업그레이드 등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나날이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각종 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형사기획과 검사 곽중욱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월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월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월 서울중앙지검에, 2016. 1월

대구·광주지검, 2017. 2월 대전·부산지검, 2018. 2월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현재 총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을 재개정하여 불법촬영·유포 사범을 엄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8. 12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 이후, 이 협약에 따라 2018. 12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19. 7월에는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공동포럼을 개최, 2019. 11월에는 「가정폭력 상해 사건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20. 4월 대검찰청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과 결부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여성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검찰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 5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20. 6월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1.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였고, 2021. 7.부터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로 2021. 12월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아동학대 수사매뉴얼을 제정, 일선 청에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2021. 7월 대검찰청은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 학대 아동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청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1년 12월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2. 6월, 9월, 10월 대검찰청은 사건처리기준 및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검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동영상, 사진을 삭제·차단하는 등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2022. 12월 지역 거점 검찰청인 각 지방검찰청(18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권역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2022. 12월 피해자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 QnA 및 우수사례」 자료를 제작하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례를 연구한 책자를 만들어 일선 청에 배포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6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도입하고. 2022. 6월부터 2023. 12월까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장애인 전용조사실 설치 등 관련 물적 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 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1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2. 11월부터 2023. 6월까지 「디엔에이법」 시행 이전에 전국 검찰청 및 경찰서에 보관된 DNA가 남겨진 미제 사건들을 법 시행 이후에 확보한 DNA와 대조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른바 '진주 연쇄살인범'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범죄 등 중대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을 다수 밝혀내기도 하였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 5월 전국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23. 12월에는 전국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 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국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 7월에는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월에는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9. 6월에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호관찰소를 통해 위탁 절차와 상담 관리를 함으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법무·검찰은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정 사기범죄들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맞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20. 1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 규정이 완비되었는바, 개정 취지에 따라 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 취약 계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등 서민 다중 피해범죄를 근절하고자 정기적인 전담검사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2023. 11월 관련 '수사 및 공판시 단계별 유의·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등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1. 6월 소년사건의 수사와 처분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소년사건 처리지침(대검예규)」을 개정하였고, 2021. 9월 소년원생 인권보호 및 신속·적정한 소년사건 조사 및 처분을 위해 검찰청과 소년보호기관(전국 11개)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시범실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21. 11월 전국 확대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2022. 1월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한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선도활동 위축화 극복방안으로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우수사례」를 발굴,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13년경부터 소년사범 처분 충실화 및 학교폭력 대책 일환으로 학생인 소년범 사건에 대해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처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년 간 동결되어 있던 교사 자문료를 기존 1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그 결과 2021년 2건, 2022년 1건에 그쳤던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건수가 2023. 9월 18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된 고소·고발 등사건 등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2023. 9월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처리시 유의사항'을 일선청에 전파하였고, 검찰 수사 중인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시 교육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 후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등을 일선청에 배포·전파하여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받을 권리, 교사의 교권 및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였다.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월 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 2008. 10. 31.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2019. 3월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2023. 7월 서울동부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월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 12. 1. 위 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령으로 승격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수사절차 변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 10월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을 공개예규로 전환하여 새롭게 제정하고,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호활동 내역 입력 및 관리를 전산화하였으며, 수사담당자 상호간 입력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0. 12월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문자통지를 당사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KICS 기능개선을 완료하고 대한변협과 문자통지 수신용 변경된 변호인선임서 적극 활용 홍보에 관하여 협력하면서 변호인 문자통지 확대에 따른 업무매뉴얼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검찰청은 2020. 10월 KICS에 '변호활동 관리부'를 신설하여 변호활동의 전산 입력 기능을 구현한 이래 '변호활동 관리부' 입력 사건 확대, 업무담당자 및 기관장 등 간 변호활동 내역의 공유 기능 구현 등 지속적으로 변호활동 관리 투명화를 추진하여 왔고, 2022. 12월 업무시스템에 '변호활동' 메뉴를 신설하고 모든 변호활동을 전산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3. 1월 변호활동 관리 전면 전산화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검찰 수사절차에서 모든 변호활동 내역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23.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903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월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7.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752호)이 개정되면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검사의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개시 절차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검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022. 9월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2023. 11월 「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전면 개정하여, 출석보증 제도가 피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닌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임의적 조치임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불필요해지거나, 사문화된 규정 총 11개를 폐지하여 관련 규정 등을 현행화하고 재정비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월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월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월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13. 6월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2014. 4월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2016. 1월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9. 6.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12. 18. 시행)」, 「도로교통법(2019. 6. 25. 시행)」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전면 시행하였고, 2020. 4. 9.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시행하였다.

2021. 5월 「검찰사건처리기준」 3차 개정 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중사범'을 6개 법률로, '특별법범'을 260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신병 및 구형과 관련된 대검의 최근 주요 지침·지시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42개 범죄군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였다.

2022. 6. 3.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결정'에 따라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2022. 8. 19. 보이스피싱 지능화에 따라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 급증에 따른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2022. 10. 5. 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처벌강화를 위하여 「폭력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방안을, 2023. 3. 8.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한 「교제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강화방안」을 각 시행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4. 27.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법(전부개정) 시행 대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023. 6. 26. 마약류 거래 확산 추세 억제를 위해 공급사범 뿐 아니라 투약사범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 등으로 「마약류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으며, 2023. 7. 11.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개정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여 2023. 7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2019. 6. 25. 제정)」을 전면 개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2020. 2월 시행)」,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수정안(2023. 4.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5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아울러 2004. 7월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표 2-24 |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재청구	항고	기타
2019년	1,076	2,323	587	1,340	1	167	26	109	93
2020년	375	701	187	419	0	33	6	26	30
2021년	178	347	89	211	0	12	4	14	17
2022년	291	520	103	332	1	26	7	22	29
2023년	408	894	214	543	0	31	3	21	82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를 통해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금융·증권범죄, 공정거래범죄, 국가재정범죄, 조세포탈, 대형 경제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반부패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3. 5월 대검찰청 반부패부 직제를 개편하여 반부패기획관실 신설, 반부패1과(공직비리), 반부패2과(금융·증권), 반부패3과(공정거래, 조세, 대형 경제사건)로 나누어 전담 분야에 따른 주요 현안 신속대응 및 관계기관 협업 체계 구축하였다.

또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3. 5.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및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였으며, 2023. 7월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범시켜 가상자산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밖에도 국가재정 범죄의 근절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주축으로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가상통화·P2P 관련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해화학물질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고 있던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2020. 8.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3과로 제도화하여,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환수·회복 업무 관련 지휘·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매뉴얼 T/F를 구성하였고, 2019. 7월 환경범죄 일반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2020. 10월 대표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우수수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작하여 전국청에 배포함으로써 환경 분야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대검찰청은 2022. 5월 「동물학대 행위 등 처벌관련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일본 등 주요국가의 처벌사례를 중심으로」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책자를 일선청에 배포하여 동물보호법 관련 수사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 부정부패 척결 지속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23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 부패범죄 사범 464명을 단속(178명 구속)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284명 단속하여 103명을 구속하고, 공정거래법위반 등 경쟁질서 저해사범을 82명을 단속하여 4명 구속하는 등 각종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처하였다.

또한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반(전담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 1,522억 1천 1백만 원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범죄유발동기 차단에 주력하였다.

| 표 2-25 | 2023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4(1)	2(0)
건축	2(1)	2(1)
토지	1(0)	1(0)
공사	8(1)	0(0)
보건·환경	0(0)	0(0)
교통	0(0)	0(0)
소방	0(0)	0(0)
노동	4(0)	2(0)
수사	5(5)	2(2)
세무	13(1)	2(0)
교육	3(3)	2(2)
병무	0(0)	0(0)
금융	284(4)	103(1)
법조주변	16(6)	5(2)
납품	9(3)	1(1)
사이비언론	0(0)	0(0)
기타	115(21)	34(6)
합계	464(46)	156(15)

※ ( )는 공무원

| 표 2-26 | 2023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직급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1(0)	1(0)	1(0)	0(0)	3(0)
4급 이하	19(7)	4(0)	2(2)	11(2)	36(11)
합 계	20(7)	5(0)	3(2)	11(2)	39(11)

※ ( ) 구속인원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1) 교통사범 엄정 대응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또는 3년 이상 구형 등」,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등 다양한 사건처리 방안을 각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8. 9월 故 윤창호 군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엄정 대처」, 2019. 3. 18.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에 「음주운전사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구형 및 치료감호 적극 청구」를 지시하였고, 2019. 3. 29.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음주운전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구형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의견 개진토록 하고, 알코올 습벽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등을 지시하여 각 검찰청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 (2019. 6. 25. 시행) 일명 '윤창호 법'에 따라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강화,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실효적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하였다.

2020. 10월 ~ 2021. 12월 기간 동안 음주운전사범 총 120,257명 중 37,286명을 구공판하여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2019. 6. 25. 시행) 일명 '윤창호 법' 시행 후 구공판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표 2-27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구공판 피의자 수(구속)	구공판율 (구속구공판율)
2020. 10월 ~ 2021. 12월	120,257명	37,286(251)명	31.01(0.21)%
2021. 10월 ~ 2022. 12월	132,144명	32,787(188)명	24.81(0.14)%
2022. 10월 ~ 2023. 12월	130,568명	28,590(239명)	21.89(0.18)%

한편,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헌 결정함에 따라 신속히 각 검찰청에 조치사항을 시달('21. 11. 26)하고,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21. 12. 6)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2.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2023. 4월 대전 스쿨존 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등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2023. 7. 1. 전국 검찰청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달하였고, 그 결과 2023. 11. 기준 전국에서 173대의 차량을 압수하였고 1심 재판이 종결된 25건 중 88%에 이르는 22건에 대해 법원의 몰수 판결이 선고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죄의 검찰 송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매달 평균 400건대였던 위 범죄 송치 건수가 근절대책 시행 이후 평균 290건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하는 등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사건 엄정 대응

2020.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가 국내에 최초로 발생하고, 국내외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대검찰청은 2020. 2월 「감염병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 등 수사참고 자료」 및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전파하면서 엄단 지시하였고, 2020. 3월 ~ 9월 「코로나19 역학조사 정부합동지원단」에 2차에 걸쳐 검사, 수사관 및 포렌식 요원을 파견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 8월 코로나19 재확산 직후 대검찰청 형사부 주관으로 방역당국 등 담당자 핫라인 구축 및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8. 25. 개정된 감염병예방법(2020. 4. 5.시행) 내용을 반영하고 방역저해 사범 구공판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3. 18.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조치와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를 명확히 구분(법적근거, 위반시 제재 등)하여 행정명령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3)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적 사명 중 하나이므로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2023. 7월 및 2023. 8월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및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2023. 8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신속·긴밀 협력하여 필요한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고 신병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또한, 살인예고 등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범죄도 등장하여 이러한 범죄예고 행위 및 모방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2023. 8월 및 2023.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을 적극 적용하여 원칙적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는 등 엄정대응을 지시한 결과 2023. 8월 ~ 12월 총 3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한편, 2021.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 2023. 7월 새로운 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신설(온라인 스토킹, 전자장치효용침해 등)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음에도 스토킹범죄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은 2023. 12월말 기준 전국 60개 청에 108명을 스토킹범죄 전담검사로 지정하여 스토킹처벌법 적용 관련 유의사항, 주요 지시 사항 일람 등 업무상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관할 경찰관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3월 및 2023. 12월 경찰청과 스토킹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각 스토킹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적극 청구 및 스토킹사범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엄정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다.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 조직범죄 엄정 대응

우리나라 조직범죄는 1980~1990년대 폭력을 이용한 업소 갈취, 주류 도매상 운영 등 전통적 방식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던 '제1세대형' 조직범죄부터, 1990년대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제2세대형' 조직범죄, 2000년대 무자본 M&A,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한 '제3세대형' 조직범죄로 변모하여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경제 및 시대 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 범죄단체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범죄가 범람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상의 범죄단체 개념이 아닌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집단의 개념을 기초로,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코인사기,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온라인 불법도박, 성착취물 제작·유통,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의 범죄와 같이 '경제적 이익 추구를 궁극적 목적으로 폭행, 협박, 기망 등 모든

불법적 방법을 통원하는 구조화된 단체 또는 집단'이라는 개념, 즉 '제4세대형' 조직범죄의 개념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대검찰청은 조직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 12. 1.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4세대형' 조직범죄의 개념 및 대응 방안을 전파하고,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사례와 수사기법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하여는 초동 단계부터 전담검사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ONE-STOP'(강력한 처벌-피해자 보호-범죄수익 박탈) 수사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2023년도 주요 조직범죄 수사 사례로 ▲폭력조직 수노아파 '하얏트 호텔' 난동사건을 송치받아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신규조직원 21명을 추가 입건하고, 관련 조직원 등 39명(9명 구속) 기소한 사례, ▲단순 리딩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한 집중적 보완수사를 통해, 리딩투자 사기문자 발송조직을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조직원 총 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으로 입건하고 불구속 송치된 조직원 5명을 구속하여 추가 범행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사례, ▲변호사 사무실 등기 사무장의 유령법인 설립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송치 요구한 뒤 전면 재수사하여, 등기 사무장, 대포통장 모집책 등이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통하고 이를 세금 포탈에 이용한 사실을 밝혀 총 16명 입건, 그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한 사례, ▲원주 조직폭력단체 '신종로기획파' 조직원이 가담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유통조직 총책 및 중간관리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령법인 명의대여자 1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34개 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례 등이 있다.

| 표 2-28 |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폭력행위등 (단체등의구성·활동)	278(119)	278(107)	345(91)	178(43)	226(33)	291(72)	236(44)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등	-	-	-	-	-	-	792(415)

※ ( )는 구속구공판 인원

2)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엄단

2022. 7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대검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엄정 대응」 지시를 하는 등 전세사기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2019년 ~ 2021. 8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 6천억 원 상당으로

미반환 사고 건수 및 액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에 이르고 있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2. 7. 11. '서민을 울리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하여, ①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②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③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④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검찰은 2022. 10. 14.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를 중점적으로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①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며, ② 전국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③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소액·다수 피해자 대상 전세사기를 합산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하였다.

한편, 소위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전세사기 엄단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2023. 1. 18. 검찰·경찰·국토부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검찰총장은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수사초기부터 범부처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국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검사(71명)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세모녀 전세사기 19개월 →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 → 구리 전세사기 4개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기존 전세계약에 따라 잠재되어있던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 2023. 7월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검찰총장은 2023. 11. 2.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 등을 통한 일망타진',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하여 계속 엄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종래 전세사기 범행은 임대인 개인이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전세사기 범행은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다수의 임차인을 타겟으로 삼아 범죄 전(全) 과정을 설계하고, 임대인·임대사업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까지 가담하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①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실제 분양·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사기, ② 조직적으로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 ③ 부동산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신탁부동산 이용' 사기, ④ 대출금, 건물의 전월세 계약 현황 등을 속여 충분히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권리관계 기망' 사기 등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한 주요 수사사례로는 ①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무자본갭투자자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기소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총 피해자 355명, 편취금 795억 원)', ②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의 임대보증금, 분양대금 등 내집마련 자금 73억 원을 편취한 임대사업자 직접 구속기소 사건, ③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총 17명으로부터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이 있다.

또한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례로는 ① 다수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괄팀장, 실장팀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을 편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사건' ② 전세사기 주범이 부동산임대법인, 중개사무소를 설립하고, 다수의 중개보조원 등 총 19명과 범죄집단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 원을 편취한 '광주 빌라왕 사건' 등이 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한 결과 법정최고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주요 사례로는 ① 무자본갭투자로 세입자 110명을 상대로 123여 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 ② LH·SH 협력업체 사칭·계약서 위조 등 수법으로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억 원 편취한 사범에 대해 징역 9년 선고된 사례 등이 있으며,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한 사례로는 ①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최초 의율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서 계좌추적, 관계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동해 망상지구 소재 토지 214필지, 시행사 주식 등 약 9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사례, ② 19~34세 청년층을 상대로 가짜청년 임차인을 모집하여 7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총책의 차명 재산 약 2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등이 있다.

| 표 2-29 | 전세보증금 사기 사범 단속 실적

(단위 : 명)

구분 (2022. 7월 ~ 2023. 12월)	2022. 7월 ~ 12월	2023. 1월 ~ 12월	합계
기소 인원	145	1,154	1,299
구속 인원	45	313	358

3) 서민다중피해범죄 엄정 대처

최근 인터넷과 기술 발전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민 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경제적 상황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 취약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 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불법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대응을 위해 전국 28개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수 서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상통화 범죄 근절을 위해 ① 경찰 신청 영장 신속·엄정 처리 및 송치 사건에 대한 신속·철저 수사, ② 관련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적용, ③ 범죄수익의 근원적 박탈, ④ 정보보고 및 공보 철저 등을 일선청에 전파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사범에는 채권추심법 및 스토킹법 등을 적극 적용하고, 조직적 범행에 대한 범죄단체 의율, 구속 수사와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 피해 내용과 피해자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각종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4) 불법 사행행위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검찰은 인터넷 사행행위를 대표적인 서민생활침해범죄로 간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국제화·거대화·첨단화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청소년 도박중독 및 이에 따른 2차 범죄 발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하여 2023. 11. 3. 법무부 주재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부처 TF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검찰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책임수사체계 구축, 조세포탈 혐의자료 국세청 통보 및 고발의뢰, 조세포탈 혐의 수사, 청소년 대상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구형 기준 강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국외도피 운영자에 대한 강제송환 등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고, 도박중독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치유원과 협력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개정, 종전 1회성 교육 대신 장기간에 걸친 상담을 통해 중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주요 수사사례로 ▲구속 송치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원들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 1,300억 원 상당의 도금 규모를 밝혀내고, 상선 2명을 추가 입건·구속, 범죄수익 현금 40억 원 상당을 압수하였으며, 고급 승용차 등을 몰수보전청구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팀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 불구속기소한 사례(춘천지검),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이트를 관리하여 준 피의자를 도박공간개설 및 사행행위규제법위반죄로 입건·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금 2억 6,720만 원 추징보전조치한 사례(대구지검),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범죄수익 550억 원 중 535억 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총책 등 4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인터폴 적색수배한 사례(부산지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단서로 이와 연결된 약 470개의 계좌를 추적하여 1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자 총 34명(구속 5명, 불구속 29명)을 기소함과 동시에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한 사례(광주지검) 등이 있다.

| 표 2-30 |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도박 등	27,462	26,239	28,119	20,582	17,441	18,568	19,243	12,814	10,971	12,819
게임산업법	9,682	11,771	12,403	10,233	7,837	7,580	6,226	4,434	4,562	4,810
국민체육진흥법	4,032	4,742	15,467	8,342	4,757	7,658	7,889	1,088	607	475
사행행위규제법	2,082	1,815	1,321	757	493	473	359	205	267	174
한국마사회법	1,122	1,049	1,266	906	1,127	1,210	852	393	567	757
합계	44,380	45,616	58,576	40,820	31,655	35,489	34,569	18,934	16,974	19,035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가상세계와 가상자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의 범죄는 ① 일반인이 SNS에 일상공유와 상업활동을 위한 홍보를 병행하면서 타인의 사진도용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 ②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불법 웹툰 사이트·유투버 등의 리뷰 콘텐츠 불법공유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 ③ '병행수입정품'을 가장한 위조품 판매 사기 사례, ④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위조품 유통 사례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기 위해 2015.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2017.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2018. 2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17. 10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 기술유출·특허법위반 등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이 직접 쟁점 기술을 시연·설명하고, 검사가 기술적 쟁점 등을 신문하며 특허수사자문관이 자문할 수 있는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였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충분한 변론 및 기술적 공방 기회가 부여되는 특허범죄 수사에 특화된 원스톱(One-Stop)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특허범죄에 연루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①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명품 15,965점(정품가격 약 53억원)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국동포를 구속기소한 사건, ②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안테나로 수신한 K-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송출하는 설비를 구축한 뒤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해 미국·중국·싱가포르 등에 방송송출한 중국국적 해외동포를 구속기소한 사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며,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그 피해 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차단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2. 10월 종래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과학수사부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지휘 및 지원,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2023년에는 ① 세계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여 독점적으로 납품 중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국회로 유출한 연구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한 사건, ② 2차 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대기업 전임원 1명을 구속기소한 사건 ③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한 전직 연구원 1명을 구속기소한 사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표 2-31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죄명 / 연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4	6,611 (110)	41,900 (9)	9 (0)	21,935 (518)	1,624 (0)	72,079 (637)
2015	7,398 (144)	52,196 (4)	2 (0)	23,262 (586)	1,390 (1)	84,248 (735)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2018	5,861 (47)	18,638 (13)	0 (0)	16,805 (259)	1,354 (0)	42,658 (319)
2019	7,941 (24)	16,285 (12)	2 (0)	16,532 (195)	1,382 (0)	42,142 (231)
2020	6,207 (26)	13,747 (7)	0 (0)	12,759 (147)	1,427 (3)	34,140 (183)
2021	4,636 (7)	5,695 (7)	0 (0)	10,992 (84)	884 (2)	22,207 (100)
2022	4,272 (4)	6,070 (8)	1 (0)	11,471 (70)	761 (0)	22,575 (82)
2023	4,229 (19)	10,133 (7)	0 (0)	11,508 (76)	669 (1)	26,539 (103)

6)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 수립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서, 범행수법이 지속적으로 조직화, 전문화, 지능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커다란 사회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검찰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2023. 7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으로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연장 운영하여 2023년 보이스피싱 사범 369명 입건, 124명을 구속하는 수사 성과를 올리는 등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을 전년 대비 18%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구성·가입·활동 혐의를 적극 의율하였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수거책 등 단순가담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였으며,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아니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사범, 범죄수익 환전사범 등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실무' 개정판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청에 배포하였고, 국제공조를 위해 보이스피싱 해외 거점국인 필리핀에 검찰수사관을 장기출장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신속한 현지 정보수집, 해외도피사범 송환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요 보이스피싱 범죄수사 사례로는,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하여, 총책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게 한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의 비용지급계좌 분석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련 범죄집단 조직원 17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합계 1,000여개의 대포유심 유통 관련자 4명을 구속한 사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어 있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중국 대련, 청도를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하고,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등 총책, 관리책 등 조직원 총 27명을 입건하여, 그중 19명을 구속기소한 사례, ▲2014.경부터 성명불상 기소중지로 종결된 23건의 사건이 동일 조직의 범행임을 확인, 전국 18개 청에 산재된 각 사건을 이송받아 피의자 6명을 입건 후 불구속기소한 사례 등이 있다.

| 표 2-32 |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출처 : 경찰청)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34,132	37,667	31,681	30,982	21,832	18,902
검거건수	29,952	39,278	34,051	27,647	24,522	20,991
검거인원	37,624	48,713	39,713	26,397	25,030	22,386
피해금액(억원)	4,040	6,398	7,000	7,744	5,438	4,477

마. 형집행 지휘·감독

1) 벌과금 집행

가) 집행실적

2023년 세입예산액은 1조 2,347억 1,100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110.82%인 1조 3,682억 6,958만 원을 집행하였다. 2023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33조 8,687억 9,070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2.48% 증가되었다.

2023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43〉과 같다.

나)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23.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등 6개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8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 표 2-33 | 2023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순 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부산지검	광주지검	대구서부지청	춘천지검	안동지청	제천지청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세입예산액 달성도(20%) + 강제집행실적(10%)

2) 사형 확정자 관리

2023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5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594명 중 103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680명 중 600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1,864명 중 289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형사기획과 검사 곽중욱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월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월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9. 12월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피의자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피해자·참고인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조사실 이용,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참고로 2023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2,528명 중 25.0%에 해당하는 8,140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23년에 모두 3,185회에 걸쳐 구속 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 이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은 점검반(인권감독담당관을 반장으로 총 4명으로 구성)을 편성하여 시행 중인 각종 인권보호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직원들의 인권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일선 청의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국 59개 검찰청(지검 및 지청)에 대한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60개청 중 46개청에 대한 2회차 점검을 완료하였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고검 인권보호관의 역할 확대 및 보다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5개 고검(수원고검 제외, 관할 단독지청 없음) 인권보호관이 관할 단독지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역할을 분담하였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결과를 해당 청에 송부하여 인권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보완 후 조치내역을 대검찰청에 보고토록 하였다. 인권업무 이행실태 점검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심야조사 개선 방안, 인권보호수사규칙 고지 표준화 방안, 인권 관련 실태조사 표준화 방안, 수용자 출석요구 시 인권 개선방안 등을 기준으로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시·지침 등을 반영하고 점검사항을 확대하여 2021년에는 기존 점검사항에 더하여 '반복 출석조사 적정성, 수용자 출석 후 수사과정의 기록, 압수수색 관련 인권보호관 기록 열람 및 의견 제시'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고 2022년에는 '통역인 운영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추가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1. 9. 1.부터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영장, 출국규제, 기소의 각 단계에서 수사절차의 적법성·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보호관이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각종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검찰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고, 인권중심의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수사 관련 제도와 실무관행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2020. 6. 16. 검찰인권위원회 산하 연구조직으로 '인권중심 수사TF'를 발족하였다. 위 TF 발족 이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TF'와 총 7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2020. 10. 12. '인권중심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수용자 출석요구 개선, 반복 출석조사 점검 강화, 참고인 조사방식 다양화, 일선 인권교육 강화, 압수수색 영장청구 및 절차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 1차 시행계획'을 일선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은 2021. 1월 종전 지시로 시행하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사전 영장까지 확대 실시하고, 요건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경 인신구속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2021. 3월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수사개시 요건·승인절차·수사주체의 분리 등을 규정하여 직접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대검찰청은 2021. 6월 검찰-교정시설 KICS 개선으로, 수용자용 출석요구서를 KICS로 발송,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법령상 출석의무가 없는 피의자가 아닌 수용자의 임의 출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을 통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대검찰청은 2023년 피의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2023. 10월 KICS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 발송'(안내문구 마련) 기능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청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검찰청은 2023. 11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변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사실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구두 외에도 문자메시지로 선정 사실을 알려주도록 일선 청에 전파하였다. 더불어 2024. 1월 경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에게 미리 조사일정을 통지하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였다.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3년 피고인 보상은 836건에 500억 267만원, 무죄비용 보상은 2,076건에 58억 7,980만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44건에 9억 6,903만원이 지급되었다.

| 표 2-34 | 2023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836	246	590	2,076	2,912
금액	50,002,666	6,318,529	43,684,138	5,879,802	55,882,468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 표 2-35 | 2023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44	44	·	44	·	44
금액	969,026	969,026	·	969,026	·	969,026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형사기획과 검사 곽중욱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월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월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하였으며, 2018. 2월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2018. 6. 21.「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2020. 2. 4.「검찰청법」,「형소소송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개정 법 시행(2021. 1. 1.) 등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사무분장 조정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일부 조직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2020. 9. 3.)됨에 따라 과학수사기획관을 폐지, 4과 조직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법과학분석과는 총괄운영실을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의 행정통합 관리·운영 업무의 공백이 없이 계속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비 하였다.

기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설치되었던 기술유출범죄수사지원센터가 2022. 9. 19.자로 대검 사이버수사과로 이전되었고, 관련 업무를 과명칭에 반영하고자 2023. 12. 26.자「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하여 사이버수사과에서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 4월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년도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신설하였고,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으로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디지털증거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자체의 무결성 등에 대한 법정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짐에 따라, 2021년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 공판업무 지원을 위한 공판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전자정보 선별과정에 대한 사건관계인·변호인 등의 참여 증가, 선별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참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청 3개에 포렌식수사관 6명을 증원하고, 참관실 3개를 증설하였으며, 2024년 추진과제로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청 6개에 참관실 8개를 증설 예정이다.

마약 및 DNA 감정 분야에서 2007.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획득한 이래로 2009. 2월 국내 최초로 문서감정 분야 인정 획득, 2020. 11월 디지털포렌식과 법화학 규제물질류 분야에서 추가로 인정을 획득하였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공인시험기관 재평가를 통해 인정 갱신을 받음으로써 과학수사부에서 수행되는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전문 감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2023. 10월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재평가에 통과, 2023. 12월 각 분야에 대한 인정 갱신을 받았다.

2023. 11월경에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진술분석의 수요에 대응하고 분석의 효율 및 객관성, 진술의 증명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술분석의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연구 수행 및 분석을 위해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 수사장비 등 진술 분석장비와 2023년 상반기(5월), 하반기(11월)경에는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여 영상 및 음성을 기록하여 수배자 검거, 악성민원 대응 채증용도 등 수사지원장비 총 174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현장 수사역량 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수사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다.

문서감정 분야는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및 문서의 각종 위·변조 식별여부, 잠재지문 현출과 관련된 감정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 등을 통해 지질감정, 출력기기 동일여부 감정 등 관련 감정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며, CA훈증챔버(CyanoAcrylate Fuming Chamber, 2021년), 분광비교측정장비(VSC-8000, 2022년) 등 첨단 감정장비도입 및 '필적감정의 객관화 지표 개발 연구'(2023년), '국내시판 인주 시료분석 및 DB구축에 관한 연구'(2023년)로 감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첨단화되는 문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리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4. 12월에는 급증하는 묻지마 범죄 및 살인, 아동학대 등의 강력사건에 대응하고자 임상심리평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인지적·성격적 특성, 사이코패스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6. 5월부터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를 상대로 '판결 후 성범죄자 심리생리검사(Post-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 PCSOT)'를 실시하여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0. 11월에는 1:1 전자감독 대상자, 2021. 11월에는 고위험 피부착자로

PCSOT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 (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2018. 4. 2.(1차) 및 2021. 8. 17.(2차) 인가를 갱신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22. 3. 16.「진술분석 규정(대검 예규 1267호)」을 개정하여 진술분석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상한을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아동학대사건의 18세 미만 피해자를 진술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진술분석 수요 현실을 반영하여 2022. 5월 진술분석관 6명, 2023. 5. 4명 총 10명을 증원하였고, 신규 진술분석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실무에 투입하는 등 분석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진술분석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2019년 '성폭력 사건 판결문 내용 분석 연구' 결과를 학계 등 외부기관 실무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진술분석세미나를 개최, 발표하고 논의하는 등 국내 전문가들과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2020년 '진술분석기법 강화 및 외연 확장을 위한 연구', 2021년 '형사사법 내에서 진술분석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22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진술분석기법 강화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등 진술분석 기법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심리학·공학·언어학의 융합 연구로 '진술 진위 탐지를 위한 진술분석 준거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동 발달 특성에 최적화된 진술 수집용 챗봇과 국내 최초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한 진술분석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추후 데이터 보강 등을 통한 고도화가 필요하나, 공간·시간 등 물리적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비대면 면담 체계와 진술분석의 자동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진술분석 운영체제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음성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 2016. 11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월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2019. 11월에는 '자동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녹음 채널별 화자 내부 음성 변이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업무에 활용 중이며, 2020. 11월에는 AI를 이용한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자동 화자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21. 12월에는 '스마트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 분석 기법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022. 11월에는 'AI를 이용한 자동 화자 확인 기법 고도화 연구'를 완료하여, 기존 시스템에 비해 향상된 분석 능력을 확보하였다.

2023. 11월에는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녹음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기존 위·변조 식별 프로그램의 분석 성능을 강화하였다.

영상 분석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2017. 11월 영상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 현장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동일인 식별을 위한 얼굴 표지점 자동 추출 및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였고, 2021. 12월 저화질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한 차량번호 인식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차량 번호판 분석의 감정 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2. 6월 '차량의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특허출원하였고, 2023. 1월 특허등록되었다.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와 관련하여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월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2020. 4월에는 데이터가 손상된 증거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상된 압축 파일에서 동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2021. 12월에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등에서 사용하는 FAT32 파일시스템에서 삭제된 파일의 생성시간, 수정시간, 파일이름, 파일 크기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2. 2월에는 신속한 속기업무 지원을 위해 표준 규격이 아닌 녹음파일을 일반 재생프로그램에서 재생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2023. 8월에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등을 위해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하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모자이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e-Pros를 통해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23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62,718점, DNA감식 21,306점, 심리분석 1,628명(전국, 전년대비 11% 감소), 진술분석 250명(전년 대비 12% 증가), 문서감정 3,157점(전년 대비 6% 감소), 음성분석 1,848점(전년 대비 29% 감소), 영상분석 3,417점(전년 대비 3% 감소), 멀티미디어복원 5,168점(전년 대비 28% 증가)으로 전년 대비 총 0.001%가 감소하였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월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30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10.2.1을 운용 중이고, 2012. 11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월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중소기업 대상 회계 도구 FAST를 개발하고, 2017년에 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기능을 가진 통합 회계 분석도구인 FAAT을 개발, 2018. 5월 최종검증 후 배포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게 선별압수가 가능한 eFA를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시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저장 데이터 체계를 연구 및 분석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하였다. 2020년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의 표준화에 의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춘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인정기구 (KOLAS)로부터 디스크 이미징기법, 모바일데이터 획득기법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차세대 디지털 현장 압수수색 프로그램인 DFT의 성능진단과 시험사용을 계속 진행하고, 국세청, 특허청 등 2023년 한해 동안 37개 유관기관에 1,270점을 배포하였다.

또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 등 자동차 내부의 전자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연구하는 등 자동차포렌식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직 설계 및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표준랩 구축 모델을 개발·공유하는 등 검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2022년에는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기기 또는 획득 대상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획득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개발 사업을 통해 자체개발한 해시값생성도구인 해시젠(HashGEN, Hash value GENerator) Ver. 2.1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세청 등 23개 유관기관에 총 231점을 배포하였다.

2023년에는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와 협업 툴에 대한 데이터 획득·분석·복호화 기법 연구,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수집 대상과 새로운 운영체제(신규 업데이트 버전) 기반 사용 기기로부터의 데이터 획득·분석·복호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모바일포렌식 도구(MFA, Mobile Forensics Acquisition&Analysis)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WinTriage(윈도우 아티팩트 획득 도구)와 WinART(윈도우 아티팩트 분석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윈도우 아티팩트에 대한 획득·분석 기능이 특화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2023년도에는 3,057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12,805건의 증거분석(참관·법원감정·법정증언·기술자문 포함)등 총 15,862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월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월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월 2003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에는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화성연쇄살인범의 DNA신원확인정보가 일치됨을 확인하여 국내 최장기 미제사건의 진범을 밝히는 데 일조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2021년 9월에는 2001년 발생된 강간사건에서 정액이 묻은 수건으로부터 확보된 피의자의 DNA형이 20년 만에 대검 수형인등 DNA-DB 일치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시효를 불과 5개월가량 앞두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2001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의 피의자가 별건으로 수형인등 DNA-DB에 수록되면서 2019년에 검색 일치가 통보된 사건은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 3월에 기소 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023. 1월에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검찰청에 송치된 '인적사항 불명 성폭력 미제사건' 중 DNA 감정서가 있는 사건에 대해 DB 수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22개 검찰청으로부터 총 65개의 감정서, 93개의 DNA형을 검토하였고, 그중 2건의 미수록 DNA를 확인하여 수록하도록 국과수에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수록된 DNA신원확인정보를 DNA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수형인 일치 1건을 확인하였고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강도강간 사건의 범인을 특정하여 공소시효 2개월을 앞두고 수사 재개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 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대검이 보유한 'DNA를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 판별방법' 특허 기술 및 마약성 대마 분석법을 관세청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법생물DNA 감식업무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2021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성분 불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성분확인 검사를 요청받아 NGS를 이용한 첨단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환각버섯 및 다양한 식물 성분의 혼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등의 화학감정을 지원하고, 2016.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5월경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내용으로 총 7회

고소·고발 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압수품에 대한 화학감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사건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21년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연구비 187억 원을 받아 진행한 차세대 CO2분리막 개발 사업의 재료비 124억 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어야 할 팔라듐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중금속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을 포함하여, 금세공 관련 사기사건과 관련한 순금 함량 측정, 특허출원한 액정보호필름의 특허 등록 내용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점도 측정 등 다양한 감정 기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를 지원하였다.

2023년에는 폐수 증발 실험 등 과학수사를 통해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합계 276만 톤을 수증기 등 형태로 불법 배출한 사건과 폴리올(건축 단열재 원료) 생산업체에서 재생 폴리올이 섞인 혼합 폴리올을 공급하고 순수 폴리올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기 사건에 대한 화학감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8. 12월부터 약물치료 집행명령에 대한 확인 검사 기법개발에 착수하여, 2019. 1월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약검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 9월부터 권역별로 복약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러한 복약검사는 치료명령이 부과된 정신장애범죄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인 약물 검사를 통해 치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치료명령 대상자의 소변 시료에서 항정신성 약물(antipsychotic drug)을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치료 도중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DNA감정실은 긴급한 시일을 다투는 긴급 DNA감정이나 기존에는 DNA 확보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감정물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통해 사건 수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년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흉기인 과도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칼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탄핵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건이나, 흉기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여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의 실마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감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살포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지폐 및 선거공보 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지문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DNA 정밀감정을 통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연관성 입증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DNA감정을 통해 제보자 진술에 의존하던 마약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필로폰 소지 범행을 규명하고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2020년 '구리선관위 잔여투표용지 은닉 등 사건'에서는 주요 증거물인 찢어진

서류봉투의 흔적에서 피고인의 DNA를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선거범죄 실체 규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2020. 9월부터 법무부(이민통합과)와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신청자들의 혈연관계 확인 업무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2011년 법무부(국적과)의 '국적 취득 신청자등에 대한 DNA검사 협조체계' 구축 이후 혈연관계 확인 업무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DNA 감정을 통해 피의자(할머니)와 사망한 여아(손녀)의 친모녀 관계를 규명하였고, '제주 조천읍 10대 중학생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15세)를 목졸라 살해한 범행도구인 허리띠에서 피의자 2명의 DNA를 검출해냄으로써 혐의 규명에 기여하였다. 2023년 택시기사 및 前 동거녀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DNA 감정을 통해 이복형제 관계임이 확인되어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청구된 건 등 다수의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다.

과학수사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0.4억 원의 예산으로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검증체계 고도화' 연구를 통해 법과학 증거의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증명력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 최종 단계로서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재판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의 대량화,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압수대상의 다양화, 암호화 등 보안기술 강화, 5G, AI기술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과학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학수사부는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과학수사부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동등(영상분석 분야)하거나 20 ~ 30% 이내의 기술격차로 진단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023년도에 종료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형사사법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및 활용전략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R&D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를 체계화 함으로써 검찰 과학수사 기술의 도약과 '객관적 증거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인권보호'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1. 10월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주기적으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대검·일선 청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기존의 조서 위주의 수사관행에서 탈피, 수사과정 전반을 영상녹화하고 이를

CD로 제작 고착화 하여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진술증거 수집을 과학화하여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월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월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월 ~ 4월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4.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16. 대검 예규 제982호, 2019. 3. 15. 대검 예규 제1131호, 2020. 12. 30. 대검 예규 제1220호, 2021. 8. 11.대검 예규 제1268호, 2022. 3. 16. 대검 예규 제1325호, 2023. 2. 1.)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월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월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19. 3월부터 2019. 4월까지 주무과장이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5월에는 일선 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 6월에는 현장 설명회 일선 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2020. 12월에는 검찰청 외 제3의 장소에서도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고 휴대와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영상녹화조사장비 18대를 도입하여 장소적 제한 없이 영상녹화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2021. 12월에는 개정 형사소송법(2022. 1. 1. 시행)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영상녹화조사를 유죄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법령 및 지침 상 필요적 영상녹화조사 사건, 사건 유형별 영상녹화물 증거 활용 사례, 새로운 방식의 영상녹화조사 사례를 소개한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청 영상녹화조사 활용에 기여하였다.

또한 영상녹화 조사 시 조서 작성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영상녹화 조사과정 전체를 문서화하여 수사 및 재판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영상녹화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2009. 2월 일반임기제 속기사 28명, 2013. 8월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54명, 2019. 5.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의 전문 속기사를 채용하여 전국 청에 배치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 대검 예규 제934호, 2018. 3. 2. 개정, 대검 예규 제1215호, 2021. 8. 11.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정비함으로써 민사사건과 같이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였고, 여성아동조사실은 피조사자의 성별·연령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휴게실에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권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23. 12. 31.까지 전국 66개청에 총 903실을 운용하고 있다.

| 표 2-36 | 조사실 설치현황(2004 ~ 2023년)

종 류 / 연 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2016	8	-	-	8	-	-
2017	73	-	3	70	-	-
2018	3	-	-	3	-	-
2019	82	-	5	77	-	-
2020	5	-	-	5	-	-
2021	-	-	-	-	-	-
2022	9	-	1	8	-	-
2023	4	-	-	-	-	4
계	1,011	21	71	766	77	76

※ 전국 수사검사(934명, 2023. 12. 31. 현재) 대비 96% 설치

※ 설치 누계는 1,011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903실 활용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7. 26.부터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23. 12. 31.기준 총 238,026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216,845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검찰이 관리하는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2,670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9. 6월부터 2020. 6월까지 검찰은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DB 연례운영보고서를 발간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업무 참고 및 국민들이 DNA-DB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0. 12월 검찰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DNA-DB 운영성과를 담은 DNA-DB 10주년 백서를 발행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였다. 2021. 6월에는 제4차 연례운영보고서를 제작·배포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월, 2014. 2월, 2015. 3월, 2016. 7월,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월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월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 ~ 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월에 개최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2020. 12월에는 COVID-19감염증 팬데믹의 영향으로 제6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발표자 6명(폴란드 1명, 네덜란드 1명, 국내 4명) 및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천향대, 중앙대, 국과수, 대검 등 국내·외 약 85명이 참석하였다. 2023. 5월 제7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과 제16회 한국법생물연구회를 공동 개최하였고, 국내·외 연구자 약 120명과 국과수, 관세청,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등 회원기관 19개 약 70여 명이 각각 참석하였다.

2019. 4월과 9월에 개최된 한국법생물연구회는 2014. 4월 대검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발족하였고, 그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원산지와 종판별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 특정 동·식물의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회 연구회까지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 간 협업 모델로 발전하였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11회 연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황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란'이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립 종자원에서 개최한 12회 연구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같은 감식 기관들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여러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연구회를 제13회(2021년 하반기) 및 제14회(2022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연구회로 개최하였고, 2022. 9월에는 제15회 연구회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의 현장 개최로 진행하였으며, 생물의 종을 판별하는 DNA바코드 입력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2023. 5월에는 대검찰청 주관으로 제16회 연구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 사례 및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중국 의과학 아카데미 지앙 슈(Jiang Xu) 교수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의 노력이 깃든 참신한 실용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법생물연구회에서 구축된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도 지원하고 있다.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월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부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월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8. 10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준공 이후 정원 약 102%, 감정건수 약 450%, 감정장비 약 200% 등 인력 및 장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심지어 일부 감정실은 개방된 별관 건물(예식장, 강당)을 임시 사용하고 있어 시설 보안 및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 해결이 시급하였다.

더욱이 2020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센터'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R&D 사업 및 과학수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증축이 절실하였다.

이에 2020. 12. 2. 국회 심의를 거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증축 예산(총 사업비 약 325억 원)이 확보됨으로써, 지하 3층·지상 6층(연면적 12,455㎡) 규모의 증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여 2021. 12월 설계업체 선정 이후 최적의 센터 건립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2022.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 1월 현재 기재부에서 위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전국 청에서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일선 지방청의 수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검과 각 지방청간의 수사장비 관리의 통합된 과학수사장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2006. 8.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 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수사장비 관리대장을 기준 근거로 삼아 대검과 일선청간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국청 통합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사장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출·회수, 폐기 등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 및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은 대검과 각 급 검찰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해당 권한(ID, PW)이 부여된 수사장비관리 담당자만 접속권한을 갖고 시스템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사장비 보유현황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 장부 대출·회수업무를 업무처리의 정확성,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효율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총 관리자(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실시간으로 바코드 출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수사장비관리시스템(TAMS)에 일선청 장비 바코드 분실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메뉴기능을 추가하여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 6월 수사장비관리시템의 노후화와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2010. 10월 성능 및 기능이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14년 수사장비관리시스템과 한컴오피스 2014 호환성이 문제되어 한셀2014 프로그램에서 열리지않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월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 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수원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그리고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17. 8월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 증거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한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하여 네트워크(초고속 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5개 지검(서울중앙, 수원, 인천,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였고, 2023. 7월 서울동부지검 포렌식팀을 설치하여 6개 고검 및 7개 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 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긴밀하게 연동,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및 폐기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디지털증거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검 자체 개발 모바일분석도구(MFA)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압수된 대용량 디지털증거에서 범죄 단서를 식별할 수 있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회계부정 적발 시나리오 기반의 대용량 회계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빅데이터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 3개년 수행)을 착수하여 2023. 12월 기준 23개 유관기관에 디지털증거 데이터 통합 분석 서비스(NDFaaS)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참여 기관 확대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 접수실에서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개정(2018. 11. 1.)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 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9. 10월 정확한 감정의뢰 방법 교육을 위해 '감정의뢰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자료에 게시하였다.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신설에 따른 감정의뢰 절차의 변화 및 DNA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NA감정 의뢰 시 감정물 확보부터 포장까지의 유의사항, 감정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 지문-DNA-법화학 공동 감정 의뢰 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와 설명 자료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감정물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감정물의 채취 단계부터 감정 완료시까지 감정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등기 및 사송으로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접수되는 감정물(9개 분야 : 문서, 영상, 음성, 복원, 화재, DNA, 법화학, 모바일, 컴퓨터포렌식)은 2019년 2,243건, 2020년 3,552건, 2021년 3,963건, 2022년 3,996건, 2023년 4,482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감정물 소급성 유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검찰업무 정보화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통합사건관리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2000년 「검찰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검찰업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자료 등 중요 문서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 서울고검 등 10개청, 2018년 대구고·지검 등 13개청, 2019년 광주고·지검, 전주지검,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포항지청

1개청, 2021년 제주지검 등 12개청, 2022년 부산고·지검 등 3개청, 2023년 울산지검 등 5개청에 망분리를 적용하여 총 57개청에 대한 네트워크 망분리를 완료하였고, 향후 5년내에 전국 67개 검찰청의 망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장비 및 전화교환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대검찰청 등 5개청, 2008년 춘천지검 등 6개청, 2009년 대구고·지검 등 5개청, 2010년 서울동부지검 등 6개청, 2011년 대전고·지검 등 9개청, 2012년 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2013년 김천지청 등 3개청, 2014년 서울고·지검 등 2개청, 2015년 창원지검 1개청, 2017년 천안지청 등 2개청, 2019년 수원고·지검 등 5개청, 2020년 인천지검 등 2개청, 2021년 서울서부지검 등 8개청, 2022년 군산지청 등 10개청에 대한 정보통신 인프라 성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검찰 전화교환기 성능 개선 및 보안 강화를 위해 IP교환기 OS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에는 대검찰청 등 48개청에 대한 IP교환기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대검찰청 1개 청에 대한 IPT 고도화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추진하였다.

검찰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검찰 정보통신망의 대역폭을 확대하였고, 각 고검의 관내 지청 정보통신망을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유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대용량 자료 임시저장소(1인 20GB)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료저장 용량을 1인 40GB로 확대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을 추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시스템 이중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수원고검 개청, 2022년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라 전국 67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2014년 구축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년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2019년 검사 전문분야 개편에 따른 관련 기능을 개선하였고, '프로스피디아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 및 실행과제를 토대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검색의 정확도 향상 및 결과 화면 개선, e-PROS 메인 메뉴 정비, 사용자 화면 개선, 훈령·예규/ 지침·지시/매뉴얼 메뉴 통합 등을 통해 지식의 효율적 사용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3년 e-PROS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고, 지원 종료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벗어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와 호환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사용자가 손쉽게 자료를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전자문서관리 및 검찰정보시스템들 간의 연계 확장을 위해 2010년 검찰 자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 문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호환성 확보, 웹 표준방식의 웹기안기를 도입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으며, 기록관리기준표 체계를 적용하였다.

실시간으로 직원간 상호 업무공유 및 각종 업무시스템과의 연계로 신속한 정보전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신기술이 적용된 검찰 메신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검찰 소통문화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안정적인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안이 강화된 신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정과제에 따라 ActiveX 제거 및 호환성 확보 등으로 사용자 편의기능을 보다 향상시켰다.

검찰은 전자정부법 등에 의거, 검찰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및 사용자 조직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 검찰 행정전자서명시스템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 등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여 재구축하였고, 현재 검찰 업무시스템 뿐만 아니라 타기관 제공 시스템까지 연계하여 검찰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사용자 업무 활용도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 2005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 2007년에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2014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하였다. 2019년 대검찰청 등 전국 66개청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검찰청 대표 1301검찰콜센터 소개와 이용안내 메뉴,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견학안내 메뉴를 추가하였다. 2022년에는 남양주지청 개청에 따른 홈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였고,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웹사이트 품질개선을 통하여, 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을 강화하고 웹 표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10년(2014년~2023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월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 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 등 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통지서, 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 항고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매년 송달건수가 많은 통지서 선정 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 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에 기여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 구현, 주요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인 소환 또는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기능 구현,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관련 기능 등 신설하였고, 민원 관련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 통지 장애예방체계를 구축, 벌과금 수배자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여 불법구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형 인치 업무 개선,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처분결과 통지방식 개선, 특사경 송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송치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업무 전자화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2021. 1. 1.부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서식 및 신설 제도에 따른 기능을 검찰 KICS에 신속히 반영하였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전자송달기능을 추가하여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개선하였다.

피해자지원시스템도 전면 재정비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 메뉴를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 수사지휘, 공소제기·유지, 재판집행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전관예우' 등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변론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활동 관련 절차를 시스템화 하였으며,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 개정(2019. 12.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 대상 사건 관련 보고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게 개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하여 이첩사건, 형의 집행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기존 적용 중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 28종 외에 추가로 항고사건결정결과통지서 등 총 44종에 대하여 음성

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업무투명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차별 해소에 기여하였다.

2022년에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관련 서식을 KICS 시스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소환장 발송 등 소환절차를 도입하였고, 입국시 통보요청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벌과금 관리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 발생 시 알림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산형집행시스템에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피해자 환부대상사건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압수물관리시스템에 '압수물환부통지서' 및 '압수물본환부통지서' 전자송달 기능을 구축하여 압수물환부 관련 통지업무를 개선하였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잠정조치 등 검찰·경찰·법원 간 KICS로 연계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고, 국세 등 체납자 감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치 신청 관련 업무를 KICS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하였다.

또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재수사요청 미이행을 송치사유로 추가하였고, 재수사 후 기록송부요청 및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유포 등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월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6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악성코드 유입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악성행위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유용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 e-PROS 게시판 등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보안뉴스레터·보안권고문 등 최근 보안이슈를 e-PROS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23. 7월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정보보안을 주제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유익한 '스마트폰 보안수칙', '정보보호 실천수칙', '랜섬웨어 피해예방 5대 수칙' 및 정보보안

웹툰 16편을 함께 수록한 '알고보면 쓸데있는 유용한 보안상식'을 발간, 전국 검찰청(민원실 포함)에는 책자로 제작·배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에는 웹진(webzine) 방식으로 제작·배포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점점 정교해지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검찰 및 행정기관의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의 탐지정책 개발 및 보안 이슈 제공 등 예방활동 675건, 유해의심사이트와 유해의심 IP 차단 등 침해분석/대응활동 30,062건,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 PC 탐지 등 침해탐지활동 320건의 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전한 업무 환경 마련 및 사이버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에서부터 랜섬웨어, 비트코인, IoT공격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며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통해 경유하거나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95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High Tech Crime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변조·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9. 11월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다변화를 위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유로폴의 사이버범죄센터(EC3) 등을 방문하여 공조 강화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9. 11. 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APC-HUB) 설립을 위해 대검찰청-월드뱅크-GFCE, 3자 MOU를 체결하였다. 후속 조치로 2020. 1. 9.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을 개소하여 대검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다. 2021년 허브 전문인력 채용, 허브 로고 제작, 허브 홈페이지 구축, 2022년 허브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2023년 허브 홈페이지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2022. 11. 1. ~ 4. 캄보디아,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1회 APC-HUB 훈련세션 및 연례총회를 개최하였고 2023. 10. 31. ~ 11. 3. 제2회 APC-HUB 훈련세션 및 연례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검찰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글로벌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가안보실 및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2. 10. 11. 오랜 숙원이었던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를 유럽평의회에 제출하는데 기여하였고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협약 가입 절차에 참여 중이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련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첩보 협력은 물론 국가 사이버안보 위협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주한 미 FBI, HSI(미 국토안보수사국) 협력관과 주기적인 공조 회의를 실시하여 사이버범죄 및 기술범죄 정보 교류 등 해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1. 12월에는 미 FBI와 긴밀히 협력하여 리플(Ripple)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부함으로써 범죄 척결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였다.

2016년에는 일반 수사관도 IP주소, 도메인 등 사이버범죄자원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수사지원시스템(Cybercrime Investig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일선청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가상화폐 지갑주소 소유 거래소를 식별하는 가상화폐주소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1년부터 국내 6개 거래소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외 거래소까지 조회 범위를 확장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2019년에 불법 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웹 자동화 분석, 동영상 콘텐츠 특정점 추출 등) 개발에 착수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0.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여 2023. 12월까지 336개의 피해자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차단의뢰 하였으며, SNS, 다크웹 등 불법촬영물의 유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추적 시스템을 회피하는 기술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시스템 자체 서버구축 및 불법동영상 수집사이트 범위 확장, 2023년 영상 비교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유포 정황 탐지 시간 단축 및 일별 정상탐지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1월경에 자체 개발하여 2023. 12월까지 총 12,082건을 차단하였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사이버범죄수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수사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시장성장과 기술적 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추진위한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수립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사이버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2021년~2023년) 사업을 통해 '공개출처정보와 스냅샷 사이의 링크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공개출처정보 포렌식 시스템 및 그 동작 방법'을 특허등록(2023. 11. 7.)하였고 저작권등록(3건), 기술이전(DFT 1.3.2. 탑재) 등 큰 성과를 내었다.

또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유출 범죄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IT 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사이버범죄 사건 급증에 따른 신속한 보강수사와 전문적인 증거분석 및 공소유지 지원을 위해 일선 수사관 대상 사이버범죄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2020. 8월 제1기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과정을 시작하여 매년 1회 전문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형·비정형 데이터분석, 침해사고 조사 및 로그분석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유출범죄는 그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이 어려워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처벌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2. 9월 기술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반부패·강력부 소관이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관하고 과학수사부 내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기술유츨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국정원, 경찰청, 관세청, 특허청 등)과 전경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하여, 기술유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하여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하여, 피해 상황 확인시 적극적으로 수사 개시하고, 중기부 연계 기술분쟁 형사사건 조정도를 전국청 대상으로 활성화하여 피해업체가 수사단계에서도 신속이 분쟁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등 기술탈취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기술탈취 범죄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술유출 전담 검찰청을 전국 44개청으로 확대하고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행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구형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엄정 대처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상향에 의견을 모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상향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책연구용역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등 제9기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가 포함된 지식재산군이 수정대상군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였고, 마침내 양형위원회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였다.

위와 같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기술유출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힘쓰고 있다.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월),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월),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월),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월),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월),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월), 차량의 번호판 인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2023. 1월), 멀티미디어 복원 분야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디지털 녹음 파일 위변조 식별을 위한 헤더 및 파일구조 비교 프로그램(2016. 2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이미지 정렬 장치 및 그 방법(2016. 11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음성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7. 7월), FAT32를 기반으로 하는 삭제 파일의 메타데이터 복구 장치 및 그 방법(2022. 5월),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월)을 특허 등록하였고,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월)와

컴팩트디스크용 라벨지 (2010. 3월)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뇌파분석 방법 및 그 장치(2017. 11월)를 특허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20건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최근 5년 간 법화학실은 암페타민 검출 방법(2019. 6월), ADB-푸비나카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쿠밀 페가클론의 대사체 합성 방법(2019. 11월), GC-MS 주입구 유도체화를 이용한 대마 대사체 분석 방법(2020. 7월), 메트암페타민의 제조방법을 추정하는 방법(2020. 12월), 크로마토그램 이미지 유사도 분석방법 및 시스템(2023. 3월) 및 온라인 마이크로고체상추출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이 적용된 대마 대사체 자동화 분석방법(2023.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또한 2021. 1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나 성범죄에 악용 빈도가 높은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대사체 성분에 대해 세계 최초로 모발 분석법을 개발함으로써 감정기간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실효성 있는 범죄수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 3월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소변분석법을 국제학술지 게재하였고 이어서 5월 알코올의존증 치료약물 복용 확인을 위한 측정값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2022. 6월 마약지문감정 크로마토그램 이미지 유사도 분석방법 및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고, 2022. 9월 마약류 분석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미지물질에 대한 신종 마약류 여부를 판별하고 화학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2022. 12월 대마복용 확인을 위한 소변 중 대마 대사체 자동화 분석법을 개발하여 감정에 적용하였다. 2023. 10월 암페타민 함량분석의 측정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R프로그램으로 몬테카를로법을 구현하였고, 소변 시료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크레아티닌 농도 및 색도 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실무 적용하였다.

DNA-DB 운영 및 DNA감정 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STR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월),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월),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월),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월),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월),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 (2015. 10월),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월)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 (2014. 6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저명한 국제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2018. 8월).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체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EuroForMix를 이용한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2019. 9월).

2022. 4월에는 '마약성과 비마약성 대마의 식별을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합성 유전자 유래 분자마커 및 이의 용도' 1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등 2건, 신속한 증거물 수집 및 교차 오염 방지능이 우수한 핀셋 캡 탈리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핀셋 1건을 특허등록 하였다.

2022. 9월에는 '포렌식 체액식별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며, 2022. 11월에는 미생물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타액흔 판별용 미생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타액흔 판별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다.

DNA감정 관련 단일염기다형성(SNP) 분석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3건(유전적 거리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기반 방식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 물리적 위치 및 기준값을 이용한 친족관계 분석 방법)을 등록하였고(2023. 8월),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현장감정물 시료의 체액흔 확인을 위한 상용화키트의 유효성 평가'를 게재하였다(2023. 9월).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자체시험연구 관련 저작권 2건 'seq2pattern(단염기반복서열 패턴추출분류)(2023. 3월) 및 seq2pattern (식투패턴)Version(버전 2.2.0)(2023. 11월)'을 등록하였다. 또한, 법생물 감정 관련 특허 '미생물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타액흔 판별용 미생물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타액흔 판별 방법(제10-2022-0160582)'을 등록하였고(2023. 6.), '체액 식별 모델 구축 장치 및 방법과 체액 식별 모델을 이용한 체액 식별 장치 및 방법'(2023. 3.)을 특허 출원하였다.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 (2011. 12월),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월),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월),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월)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월),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월)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월)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월)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월),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월),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월), 인공지능비서 서비스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의 IoT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장치 및 방법'(2020. 9월)을 발명하여 특허 등록하였다.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가. 추진배경

2023년 법무·검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테러 범죄 엄정 대처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테러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으나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을 적발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3명을 구속기소(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2023. 12월까지 구속기소 17명, 불구속기소 2명 등 총 19명을 사법처리) 하였고, 테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 등 2개국과 국제 형사사법공조 3건을 이행하는 등 테러위협 제거 및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 노력함으로써 테러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수사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여 범죄집단 「자통민중전위」를 결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한 국가안보 위해조직을 적발하여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죄(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 범죄단체활동죄로 각 구속기소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지령과 암호통신 장비를 수수하고,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하여 보고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국가안보 위해조직(「제주ㅎㄱㅎ」)을 적발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로 구속(2명) 및 불구속(1명) 기소하는 한편, 北 문화교류국 공작원에 포섭된 ○○노총 전·현직 핵심간부들이 ○○노총에 침투하여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北 공작원과 해외접선·비밀 교신 등을 통해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사건을 수사하여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으로 각 구속기소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응하여 내실 있는 국가안보 수사체계를 운영한 결과 2023년 총 50명의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12명을 기소(구속기소 11명)하였다.

라. 인권보장 철저

또한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의 확보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한편 2024. 1월 개정 국가정보원법 시행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국정원에서 장기 내사 진행한 사건을 점검하여, 실질적 수사활동이 진행된 사건은 입건 후 송치하고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지휘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였다.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7년 이후 직권재심 및 처분변경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심청구되지 않은 183명에 대해 추가로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182명이 무죄 선고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9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023.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결정자 150명 중 이미 재심을 청구하거나 사망한 피고인 등을 제외한 100명을 직권재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추가 발굴한 3명을 포함하여 총 103명 중 81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그 중 59명이 무죄 선고되었다(22명은 심리중).

또한 제주4·3사건 합동수행단 출범 후, 군법회의 수형인 1,3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1,240명이 무죄 선고되었고, 일반재판 수형인 7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50명이 무죄 선고되는 등,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다.

다. 진실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 또한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

가. 추진배경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6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금품선거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달리 여전히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였다.

2023. 4. 5. 전주 '을' 국회의원, 창녕군수 선거 등 총 9곳(국회의원 1곳, 기초단체장 1곳, 교육감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특히 2023. 10. 11.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언론에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하반기 보궐선거 이후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대립적 정치환경이 계속되어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활동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허위사실공표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였다.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벌칙해설 개정판'을 발간하여 전국청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고, '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가동하여 금품선거사범 등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2023. 10월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선거전담반 가동 등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제3회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3. 9. 8. 기준 1,441명 입건, 836명 기소(당선자는 103명 기소), 33명을 구속하였다.

제3회 조합장선거는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입건인원(제2회 1,303명 → 제3회 1,346명)이 증가, ▲당선자 입건 및 기소인원(제2회 229명 입건, 116명 기소 →

제3회 226명 입건, 103명 기소) 감소,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제2회 824명, 63.2% → 제3회 1,005명, 69.7%)은 크게 증가하여 금품선거사범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 표 2-37 | 역대 조합장선거 유형별 입건 현황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 단위: 명, ( )는 차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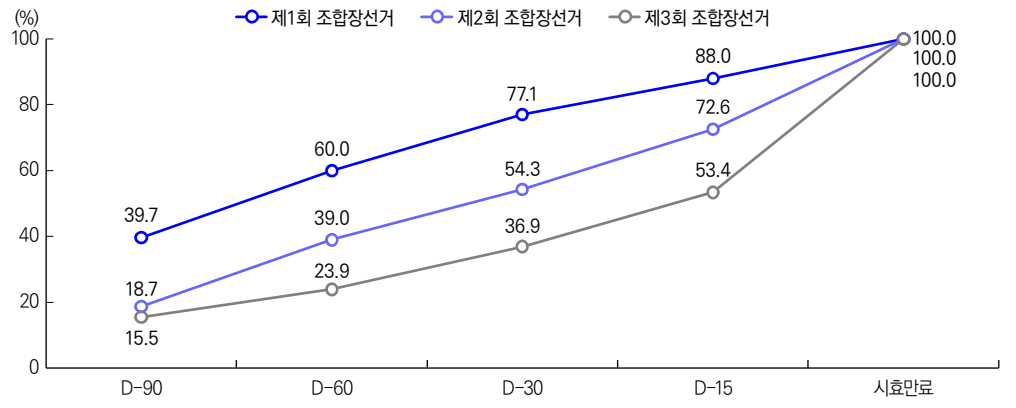
선거	금품선거		흑색선전		사전선거 운동		임원등의 선거개입		기타	
제3회	1,005	(69.7%)	137	(9.5%)	57	(4.0%)	37	(2.6%)	205	(14.2%)
제2회	824	(63.2%)	177	(13.6%)	67	(5.2%)	34	(2.6%)	201	(15.4%)
제1회	737	(55.2%)	190	(14.2%)	169	(12.7%)	25	(1.9%)	213	(16.0%)

이는 금품선거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특별한 선거 이슈가 없고 유권자 수도 적어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조합장선거의 특성, 지역사회에서 사적 관계에 얽매인 투표 경향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는 2021년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사 직접 수사개시 제한 이후 치러진 최초 전국단위 선거로, 단기 공소시효 및 비효율적 수사시스템의 문제가 노출되어 검·경 협력절차를 통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안에 실체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변화된 수사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한 해였다.

특히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조합장선거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고, 공소시효 만료일에 임박하여 수백여 명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되어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도 노출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사권 조정 전 실시된 지난 제1회, 제2회 조합장선거에 비하면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된 사건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 그림 2-75 | 역대 조합장선거별 검찰 사건처리율 변동 추이



법무·검찰은 위와 같은 제도변화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벌칙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적극 대처하였다.

나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의견제시 및 교환하는 방안 마련,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최근 선고된 판례 분석 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 개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선거범죄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하였다.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23년에도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범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중대재해 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노조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법무·검찰은 2022. 10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시행함으로써, 재산관계 조사를 통해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2023. 1월 ~ 12월 12명 구속, 전년 대비 2배 증가)하고, 소액 임금이라도 상습적 임금체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공판(2023. 1월 ~ 9월 1,851명, 전년 동기 대비 1.9배 증가)하는 등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00산업 내 채석장 붕괴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경영책임자가 그룹 회장임을 규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는 등 총 22건 48명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한편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집단이익 관철 목적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경과 협력하여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구속영장 청구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146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검찰의 노동집단사건처리기준, 관련 판결문 분석 결과 및 일선청 전담검사의 의견을 반영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배포(2023. 12. 29)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수사역량과 연구활동 강화 노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수사 워크숍 교육 및 중대재해 전담검사 세미나를 통해 주요 처분사건에서의 수사방법과 착안점,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여 중대재해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회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초동수사, 효율적 증거수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근로감독관 교육 지원 확대 등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인 안착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76 | 공공수사 워크숍,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실무협의회, 중대재해 전담검사 세미나



〈 공공수사 워크숍 중대재해 교육 〉



〈 검찰·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실무협의회 〉





〈 중대재해 전담검사 세미나 〉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공공형사과 검사 남상오

가. 추진경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특히, 전 대통령 사저 앞 경호구역을 차량으로 진입하다 제지받자 경호원을 충격한 1인 시위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엄정 대처하였다.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건수 추이

노동·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권리 주장과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최근 집회신고가 다수 감소하였음에도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현행범 체포 및 입건자 수는 유의미한 감소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불법·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집회에는 엄정히 대응하여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표 2-38 |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집회시위 추이 (출처 : 경찰청)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요 집회·시위(건)	13,864	12,465	10,300	10,293	10,431
집회신고(건)	129,642	138,636	150,729	171,911	124,938
현행범 체포(명)	342	256	188	429	311
입건자(명)	1,515	1,488	1,380	1,865	1,662

* 주요 집회·시위란 경력이 배치된 집회·시위를 말함

| 표 2-39 | 2023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요사건	비 고
안보사범	• 대남적화통일 노선 추종 범죄집단「자통민중전위」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서울중앙지검
	• 제주 이적단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	제주지검
	•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	수원지검
선거사범	• 경북교육감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운동 등 사건	포항지청
	• 전북교육감 동료교수 폭행사건 관련 위증사건	전주지검
	• 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부산지검
	• 제주성산포수협조합장 상품권제공 매수 사건	제주지검
	• 장성농협조합장 현금제공 매수 사건	광주지검
	• 우포농협조합장 기부행위 사건	밀양지청
노동·집단사범	•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중대재해 사건	의정부지검
	• 건설현장 공갈,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사건	울산지검 등
	• 위니아전자 대표 임금체불 사건	성남지청
	• 민노총 광화문집회 사건	서울동부지검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1) 개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어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79개국(발효 79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7개국(발효 77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5개국(발효 75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범죄인인도

범죄인인도법은 1988. 8. 5.에 제정 및 발효되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법 제정 이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40 | 범죄인 송환 현황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수	55명	74명	70명	85명	60명	73명	70명	96명

3)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23년 중 외국에 총 1,065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206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표 2-41 |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요청	220	240	320	375	420	741	1,043	1,065
외국 요청	137	160	195	235	202	285	207	206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부터 수형자이송이 실시되었고, 2023년에는 국외이송 심사대상자 7명 중 4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 2021. 6. 5.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21. 9. 11. 한-키르기즈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23. 1. 13. 한-파키스칸 수형자이송조약이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표 2-42 |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구 분 / 연도별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6	3명	1명
2017	1명	4명
2018	2명	6명
2019	6명	3명
2020	1명	0명
2021	1명	0명
2022	2명	1명
2023	2명	3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엄정처리

1) 개요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월 체결되어 1967. 2월부터 시행된 뒤, 1999. 2. 1. 및 2001. 1. 18.에 개정되었다. 2001. 1. 18.자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12. 5. 23.에는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greed View) 개정을 통해 위 12개 중대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국 당국은 수사기간 중에도 대한민국의 구금인도요청 자제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재판권 행사율이 증가하여 2023년에는 51.3%에 이르고 있다.

한편, SOFA 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344건, 2013년 365건, 2014년 405건,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이다.

| 표 2-43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 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20	건	541	508	392	33	231	128	149	69(54.0%)	218
	명	587	554	426	33	258	135	161	70(51.9%)	231
'21	건	457	428	313	29	161	123	144	95(77.2%)	239
	명	487	458	337	29	172	136	150	104(76.4%)	254
'22	건	521	509	355	12	153	190	166	132(69.4%)	182
	명	579	567	401	12	178	211	178	144(68.2%)	196
'23	건	599	587	432	12	143	277	167	145(52.3%)	312
	명	626	614	450	12	146	292	176	149(51.0%)	325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주식회사 외부 감사인 등의 금품수수 행위 및 이에 대한 공여행위, 사회적 약자를 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 9. 2.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 가결되어 2019. 4. 23.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범죄수익환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을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명령으로 보전하여 재산은닉을 막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8. 11. 29. 국회에 제출하여 2019. 8. 2.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관련 몰수·추징, 환부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환부 절차와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20. 11. 24. 공포·시행되었다. 또한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확대를 위해 법정형(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 4. 공포·시행되었다.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월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월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월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2023. 11월 외교부, 대법원과 공동으로 ICC 재판소장, ICC부소추관, 동남아시아 8개 국가 대표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ICC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보편성 확대를 논의하는 등 ICC 회원국들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이행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2003. 9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07. 9월 이행입법 T/F를 구성하고 2008. 12월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월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월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고, 2014. 7월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시행된 법률들을 충실히 시행하여 국내 법제도 운영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따른 '범죄화 및 관할' 분야 이행평가 수검 절차 진행 중으로 2023년에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사무국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을 완료하는 등 충실히 수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이행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6. 10월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월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 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법죄화 및 법집행' 분야에 대하여 이행평가 수검을 받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패예방 및 자산환수'에 대한 이행평가 수검을 완료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 국제협력성과

| 그림 2-77 | 국제협력성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개최(2023. 4.)



한-일 실무협의(2023. 3.)



한-미 실무협의(2023. 5.)





법무부-ICC「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공동개최(2023. 11.)

12.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최근 토막살인·연쇄살인·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 대상자가 공소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 또한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법무부는 2023. 6. 18.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2023. 6. 20.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라 함)」을 의원입법(정점식 의원안)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2023. 10. 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어, 2023. 10. 24.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공포·제정되었고, 시행령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 1. 25.부터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종전에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되어 대상 범죄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신상공개 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되어, 공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신상정보를 공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소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피의자의 최근(30일 전후)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가 가능해졌으며,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의 비밀누설죄도 규정하였으며, 피의자 의견청취 절차,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시 별도의 형사보상규정 등도 추가로 신설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법정 등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2. 4. 14.부터 2022. 5. 24.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2. 6. 29.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2023. 6. 21.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고, 2023. 7. 11.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2023. 10. 12.부터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개정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진술조력인의 역할로 '원활한 조사·증인신문'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추가하여, 진술조력인이 수사·재판기관의 보조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조력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이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 함)를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새롭게 특례 조항을 도입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미리 증언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생생한 진술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 피해자가 영상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영상녹화 진술을 한 친숙한 장소에서 신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문 사항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부적절한 질문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를 의무화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가 도입되어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2021. 10.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함)」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2. 10. 21.부터 2022. 11. 14.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3. 2. 15.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2023. 6. 21.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어, 2023. 7. 11.「스토킹처벌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일부 조항은 하위 법령 등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 1. 12. 부터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기존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시켰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하였다.

나아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범죄신고자법」에 따른 보호조치(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경이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이후 전체 스토킹범죄 접수와 기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5. 형의 집행시효 관련 「형법」 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개정 전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시효')하고 있을 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시효 제도와 공소시효 제도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개정 전 법률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3. 4. 13.부터 5. 23.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3. 6. 12.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3. 7. 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대안이 가결되었고, 2023. 8. 8. 「형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의 시효의 기간 및 시효의 중단 규정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제77조, 제78조 제1호, 제80조).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으로, 그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 11. 23.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방지하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16. 재판시효 정지 규정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가. 추진배경

기존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인 사건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른바 '재판시효')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시효 기간의 진행 정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판을 받고 있는 범인이 국외로 장기간 도피하여 재판시효가 완성되면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존재하였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수사나 형집행에 관하여 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불균형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3. 2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4. 1.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대안이 가결되었고, 2024. 1. 25.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재판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재판을 받고 있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재판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면 범인이 아무리 오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가. 추진배경

헌법재판소는 2022년 2월 24일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함)」 제26조 제1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2018헌마998 등), 「형사보상법」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였다.

나. 추진경과

2022. 9. 2. 윤영덕 의원이, 2023. 9. 7. 권칠승 의원이 각각 관련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헌재 결정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3. 11. 17.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2023. 12.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대안이 가결되었고, 2023. 12. 29. 「형사보상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음으로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에는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사보상법」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였다.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함)」의 '이득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할 뿐, 다수 피해자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는 죄질이 중하고 실제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여,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워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3. 4월 대검찰청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이 어려워 대부분 「형법」으로 의율되는 등 처벌이 경미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2023. 4. 27.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중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의 이득액 합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위 발표의 후속조치로 2023. 4. 28.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수 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각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같은 종류의 형에 대한 경합범 처벌례, 같은

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벌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경합범 가중의 특례임을 명시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광범위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다면, 국민들의 상식이나 정의 관념에 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은 기소나 판결 당시 누락된 여죄가 밝혀지더라도 추가 기소가 가능하도록 경합범 가중의 특례로 구성하여, 수죄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9.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형법」 개정 추진

●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97. 12. 30.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 「형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형벌의 응보적·예방적 기능이 제한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에 살인 등 흉악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3. 8. 22. '묻지마식 강력범죄 대응·관리 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 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2023. 8. 14.부터 9. 25.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3. 10. 31.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법」상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이원화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은 살인 등 흉악범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여,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유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가. 추진배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상동기 강력범죄나 '살인예고' 등이 빈발하여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공백이 있거나 법정형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구체적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3. 8.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 공중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였다.

2023. 8. 22. '묻지마식 강력범죄 대응·관리 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범죄자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위 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로 2023. 8. 28.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형법」상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의 장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조항을 개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또는 살인·상해·폭행·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제거하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될 흉기를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

형사법제과 검사 이정아

가. 추진배경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경과

2023. 10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였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2023. 12. 28. ~ 2024. 2. 6.)

*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청소년성보호법」, 「인신매매방지법」

다. 주요내용과 성과

개정안은 범죄의 중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상 범죄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증거기록도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강화되면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5절 범죄예방업무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보호관찰과 서기관 강신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은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 7. 1.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해 1997.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으며, 2004. 9. 2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사범에까지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취,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실시하여 치료 여부를 형사사법 집행 과정으로 포섭하였으며, 더 나아가 2018. 6월부터 치료감호 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소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44 |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 원	48,729	49,178	52,387	55,784	52,580	50,269	49,560	47,921	47,730	47,881

2) 추진내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서부, 서산 등 총 2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9실을 추가 설치하여 2023. 12. 기준 전국 49개 기관에서 총 266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7개 사범에 대해 전담 직원제를 지속하는 한편, 기관 규모가 작으나 관할구역이 넓은 지소의 경우 전담제를 폐지·축소하여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이 지역별로 전담사건을 맡는 등 재범 방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재범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사례관리·공동출장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월 2회 이상 수시로 불시검사를 실시하여 재범억제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재범위험 요인에 대한 근본적 개입,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1:1상담 지원 및 집중면담을 실시하는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범죄 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펜타닐·암페타민 등 신종 마약 투약 여부까지 검출이 가능한 19종의 진단 시약기로 검사 도구를 교체 적용하였고, 보호직 직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44명 취득),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등 마약범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제적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 및 기타사범 중 집중 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주취·정신질환 의심자로 확인될 경우,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활용한 연계상담 및 병원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는 집중 등급으로 분류하여 월 2회 이상 밀착 지도감독하고, 피해자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 표 2-45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범률	7.4	7.6	7.9	7.8	7.2	7.2	7.3	6.4	6.0	6.7

| 그림 2-78 | 보호관찰 실시현장



출석면담



정신건강 선별검사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 보다 0.4%p 낮은 6.0%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신질환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범별 전담 보호관찰제 개편 및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및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조사 업무

보호관찰과 사무관 김현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사제도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직업, 가족사항,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보호관찰 조사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년 판결전조사'와 석방 전 조사인 '환경조사'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 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가 도입 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전조사, 이행실태조사, 치료명령 판결전조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귀주환경조사는 가출소 및 가석방 심사가 신청된 대상자 중 귀주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귀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표 2-46 | 조사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판결전조사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618	1,273	1,430	18,094
법원결정전조사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0	18,038	174,800
검사결정전조사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1,194	23,997
청구전조사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1,501	18,073
소급청구전조사	192	119	79	86	39	52	37	33	18	12	667
환경조사	1,594	1,561	1,555	1,920	1,496	1,442	1,356	1,185	1,117	1,511	14,737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이후 근거 법령의 확대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업무가 증가하며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일명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시행, 스토킹사범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에 따른 스토킹사범 청구전 조사 시행 등 향후에도 조사업무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구전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3. 4월부터 운영해 온 27개 청구전조사 전담기관을 2019. 12월 21개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0. 8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전문조사관 제도까지 시행함으로써 조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우수한 조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12월 현재 944명의 조사관과 31명의 전문조사관을 선발하였으며, 전문조사관에게는 조사 담당 직원을 수퍼비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향후 조사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양질의 조사서 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호관찰과 사무관 이상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 9월부터 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 1월 부터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11만1천 명, 총 155만여 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47 |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건 수	51,058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61,919

| 표 2-48 |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연인원	115,536	103,511	106,864	97,188	76,118	65,712	78,015	188,214	185,781	145,247	1,162,186

| 표 2-49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건수	2,964	2,992	1,974	1,667	1,626	1,113	1,330	1,367	15,033
연인원	26,522	26,338	16,591	13,855	13,849	20,304	22,283	14,685	154,427

| 표 2-50 | 사회봉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봉사	접수	41,435	44,386	42,249	40,279	41,943	35,954	33,513	35,843
	실시	48,395	53,231	51,224	49,788	51,448	65,693	62,115	53,702
벌금 대체	접수	8,530	8,282	7,624	7,413	9,097	7,207	5,830	6,589
	실시	9,892	9,819	9,062	8,709	10,561	11,091	7,791	8,217
계	접수	49,965	52,668	49,873	47,692	51,040	43,161	39,343	42,432
	실시	58,287	63,050	60,286	58,497	62,009	76,784	69,906	61,919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적 약자지원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긴급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275,093명,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일손 돕기에 연인원 145,247명 등 총 420,340명을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자리 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탁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의 내실화는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탄력집행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될 것이다.

아울러 대상자에게는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의 참가치를 깨닫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사랑받고 희망을 주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그림 2-79 | 사회봉사 집행현장



국민공모제(주민과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저장강박 장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과 사무관 김현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역할극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근거 법률의 확대에 따라 수강명령 부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폭력치료, 정신·심리치료 등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08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성폭력·가정폭력·약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해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재범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이수명령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필요적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알코올·약물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수원에 수강집행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실형 판결 선고 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법률의 확대로 수강 분야와 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2-51 | 수강명령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수강명령	38,857	45,459	41,884	42,408	50,357	68,422	72,805	61,040	421,232
이수명령	5,073	6,290	7,999	7,808	8,225	9,200	11,518	13,417	69,530
기소유예 등	36,889	27,564	20,897	19,173	16,139	18,471	22,919	21,522	183,574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는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친범죄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수강·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수강명령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고, 약물치료 수강명령의 효과성 및 집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독전문가 등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심화형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향후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80 | 수강명령 집행현장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마.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이상기

범죄예방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한 우수직원,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하여 격려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23. 11. 27.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시상식에는 한동훈 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각 과장, 수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의 범죄예방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선진 범죄예방을 위한 미래를 다짐하였다.

한동훈 장관은 기념사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범죄예방의 한 뜻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자원봉사자분들과 동료 여러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대수 보호관찰위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협의회 박상규 법무보호위원이이 국민훈장 동백장, 광주소년원협의회 나금석 소년보호위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협의회 류우현 법무보호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대구보호관찰소포항지소 이규학 사무관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33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가. 전자감독 고위험사범에 대한 밀착 관리감독으로 국민 안전 강화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김용권

전자감독제도는 법원 등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 대상이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09년 미성년자유괴, ’10년 살인, ’14년 강도사건으로 확대되었고, ’12. 12월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20. 8. 5.부터는 같은 해 2월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기존 4대 특정사범에 한정해 부착하였던 가석방 전자감독을 모든 가석방자로 확대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 표 2-52 | 연도말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재원	1,703	2,119	2,313	2,696	2,981	3,126	3,111	4,052	4,316	4,421	4,188

'19. 4월 「전자장치부착법」(일명 조두순법)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 1:1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하여 고위험 사범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및 매일 생활실태 점검 등 강화된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24시간 중단 없는 밀착 지도감독 및 경보상황 대응을 위해 '13년 신설된 전자감독 범죄예방팀(보호직 공무원, 무도실무관 각 1명으로 구성)은 신설 초기 26개 팀에서 현재는 58개 전 기관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재범방지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자장치 훼손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대상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1. 9월부터 제한된 인력으로 전자감독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였고, 관리역량이 우수한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였다.

성폭력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확대, 채팅앱 등 SNS를 악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23년 기준 0.91%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08년 전자감독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 제도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수단을 넘어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표 2-53 |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동종 재범률

(단위 : 명,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범자	30	48	53	58	66	83	55	41	46	24	30
재범률(%)	1.72	2.03	2.00	2.00	2.17	2.53	1.70	1.27	1.40	0.73	0.91

나. 신속수사팀 운영을 통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범죄 신속 엄정 대응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박지훈

'20. 12월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21. 6월부터는 전자장치 훼손범죄,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사하던 것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21. 8월 전자장치 훼손 전후 두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21. 10. 12.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신설, '22. 7월 18개팀으로 신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하여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특사경 업무가 분리되어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위반 시 현장출동을 통해 현행범체포 등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신속수사팀 도입 후 전자감독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크게 감소하고 수사 건수는 월평균 10.8건에서 '23년 96.1건으로 약 9배 증가하였고, 검찰 사건송치 기간도 평균 34일에서 16일로 단축되었으며, 이전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무했으나, 신속수사팀 설치 후 강제수사 '22년 146건, '23년 127건을 실시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다. 전자장치 및 시스템 고도화

●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한상경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 전자감독대상자의 발목에 부착하므로 '전자발찌'라고 칭하기도 한다. 전자장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나타났고, '0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장치 훼손 방지 등 내구성 강화, 위치측정 기능향상, 측위방식의 다각화, 충격 및 임의분리 감지 기능 탑재 등 전자장치의 고도화가 지속 추진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자장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등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훼손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켜 현장검거가 가능하도록 전자장치의 훼손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훼손 욕구 억제를 위해 장치의 외형에 금속프레임을 적용한 '강화형 전자장치'를 개발하였다. 강화형 전자장치는 현재 일부 고위험대상자에게 현장적용 중이며 부착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만 확인 가능하므로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시 현장출동 외에 현장 확인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년부터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CCTV의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 '23년 기준 서울, 인천 등 1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계·활용되고 있고, 보호관찰관이 태블릿 PC로 현장에서도 직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현장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훼손 사건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공조 시 기존에는 유선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경찰에게 인상착의, 위치정보 등 대상자를 식별하여 검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24년 1월부터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고,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도 개선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다.

*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일정거리 이내 접근 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 문자 전송

라.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월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3. 12.까지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판·결정 현황은 총 108건으로, 이중 30건(검사 청구 72건, 기각 39건, 미결 3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78건은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23. 12월까지 총 81건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50건이 집행 종료되었다. 2023년 성충동 약물치료 개시 사건은 10건이며, 집행 인원은 총 31명이다.

| 표 2-54 |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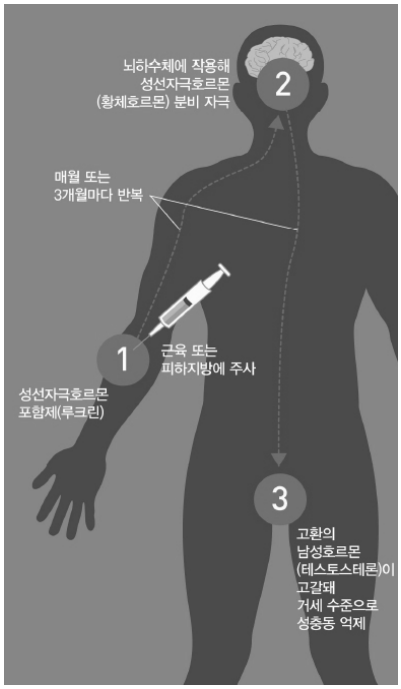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재원	7	8	14	17	22	39	33	40	42	31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시행 이후 총 81명을 집행하였고, 재범은 2021년 1명이 있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81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전자감독과 보호사무관 이정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11.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13.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 주체가 재편되었고 등록 대상 성범죄도 확대되었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 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3년 말 기준 총 126,789명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13년 대비 9.3배 증가) 중이고, 그 중 6,147명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5,931명이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 표 2-55 |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등록 건수	13,628	23,874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94,160	105,455	116,434	126,789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미제출자,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 상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자(공개·고지)는 신상 등록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게 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감독대상자는 실시간 확인 가능한 보호관찰 정보와 비교·검토하여 명백히 잘못된 거주지 정보는 법무부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히 공개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오(誤)정보가 공개·고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직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실무에 필요한 표준화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담은 '2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서 및 교정기관에 배포하였다.

'20년에는 그 동안 누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성범죄자 7만5천여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고, '23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등록·관리사건 39,464건을 추가 분석한 「2023 성범죄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백서에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더불어 신상정보 제도 변천 과정, 업무절차, 외국제도 운영사례, 사회내 처우 현황 등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강간 등의 경우 2014년 3,246건에서 2021년 2,356건으로 감소한 반면 강제추행은 2013년 2,166건에서 2021년 6,599건으로 건수로 3배이상 늘어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3년 412건에서 2021년 2,113건으로 5.1배 급증하였다

주목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체 등록사건에 비해 재등록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전체등록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중은 13.9%인 반면에 재등록사건 중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비중은 17.1로 나타났다.

또한 원등록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동종범죄로 재등록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등록된 사건은 1,082건인데, 이 중 원등록 사건의 죄명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 사건은 641건(64.1)%으로 동일 범죄일 확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사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정한 관리, 체계적인 교육 시행 또한 절실해 보인다.

이처럼 「2023성범죄백서」*는 성범죄자 및 성범죄 특성 등을 분석한 기초 데이터로서 각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 성범죄백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서 열람 가능

또한 누적된 성범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데이터를 DB화하여 종이기록물을 이미지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항상 시키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21. 10. 19.)됨에 따라 '24년 10월부터는 신상등록분야에서도 현행 '우편송달' 방식에서 '전자적 송달'로 개선될 예정으로 효율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82 |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3. 감호제도 개선

가. 국립법무병원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의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제고 및 수용 안정화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집중치료시설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국립법무병원 유휴부지에 376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사업비(총 492억 원)를 확보하여 2019. 12월 실시설계 완료, 2020.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3. 11월 준공을 완료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2024년 상반기 내 의료기기 설치 등 치료환경 조성 후 신축병동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선진국과 같은 1~2인실 위주의 소규모 병실 운영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피치료감호자 치료효과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 의료 전문인력 확충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국립법무병원은 살인 등 중범죄 정신질환자 관리, 격오지 근무,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23년 12월 기준 의사 정원 20명 중 9.9명(충원율 49.5%)이 근무하며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96명을 담당하는 실정으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한 의사 보수 인상(기준급 250% → 최대 350%), 보건복지부 업무협의, 노후화 된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국외연수 기회 확대, 법정신의학 연구소 운영 및 학술대회 개최 등 의사처우 개선 노력을 통해 의사 3명 채용, 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각 1명 배정, 정신과 전공의 3명을 확보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우수한 의료인력 채용을 위해 의사 연봉인상, 국외연수 기회 확대 등 의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스카웃 제도 및 채용 홍보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 보호감호자 수용시설 독립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 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23. 12. 31. 현재 7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 그림 2-83 |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생활관 내 독서실

| 표 2-56 |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집행인원	18	20	22	31	17	31	30	32	24	19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도소 내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 과정을 설치하였고, 〈표 2-61〉 같이 2014년과 2016년 각 1명, 2018년 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정수기 부품 조립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표 2-57 |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	-	1	-	2	-	-	-	-	-
중입자격	-	-	-	-	-	-	-	-	-	-
고입자격	-	-	-	-	-	-	-	-	-	-
고졸자격	1	-	1	-	2	-	-	-	-	-

| 그림 2-84 | 위탁 작업장





2) 평가 및 발전방향

중단된 학업을 지속함으로서 지적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위탁 작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위탁 작업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정착금 마련에 기틀을 다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박두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법무부 고위공무원·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68, 5-69, 5-70, 5-71〉과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32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가 자연 감소되었고, 법 폐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부과 등 사회 내 통제장치 마련 후 적극적 가출소를 실시하여 2023년에는 8명이 가출소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고, 향후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치료경과, 사회복귀가능성 등 실질적 평가를 통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가. 범법 정신질환자 사법적 치료관리 강화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정현

1) 추진배경

정신질환자에 의한 연이은 강력사건 발생으로 정신질환범죄자 관리강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보다 강화된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여 증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입원 등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였고, 치료명령 대상자의 치료약 복용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복약검사를 의무화하였으며, 1회 주사로 1~3개월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적용을 확대하였다.

국립법무병원 출원자 사후관리를 위해 국립법무병원 및 전국 5개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최대 20년 동안 무상 외래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법무병원 대형병실 소규모화*(정원 50명 → 10명 이하)사업을 치료환경을 개선하였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 1월 병상 수 단계별 조정(8병상 → 6병상 이하)

3) 향후 추진계획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실형을 선고 받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보호관찰과 서기관 강신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6. 12월 개정 「치료감호법」의 시행으로 경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경미한 강력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검사가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16명, 2017년 606명, 2018년 572명, 2019년 750명, 2020년 572명, 2021년 453명, 2022년 381명, 2023년 427명이 치료명령 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58 |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3
집행유예	446	584	473	338	343
선고유예	5	6	0	8	2
기소유예	121	160	99	107	82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50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다.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 강화

● 소년보호과 사무관 양정훈

1) 추진배경

소년원 내 규율위반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소년에 의해 발생하는 등 수용안전 및 교육운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필요하였다. ('23년 소년원 징계자 중 정신질환 소년의 비율 63.2%)

2) 추진내용과 성과

전국 11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의무과장 8명, 정신과 전문의 등 10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0명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심리치료 등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였다. 한편, 기존 경력직 의무관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보수 상향 및 소년보호기관에 대하여 '23년 인사특례운영기관 지정 신청·운영 등을 통해 채용한 의료인력으로 보호소년 등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처우를 도모할 수 있었다.

3) 향후 추진계획

민간병원에 비하여 급여수준 및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의료인력의 상시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병원과 MOU 체결을 통한 의사 초빙,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소년원생이 퇴원하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상담·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라.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 시행

소년보호과 사무관 양정훈

1) 추진배경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 의료재활소년원은 7호 처분자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9호·10호 정신질환소년에 대한 각 소년원별 자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모든 소년원 학생을 대상으로 입원 시 정신질환 진단을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료 및 개입의 필요에 따라 치료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심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정신과 상담 등 단계별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도입·시범실시한 결과, 정신질환소년 징계율 16.3%p 감소 등 전반적인 수용 안정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소년원생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전국 소년원에서 전면 실시하고, 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따른 처우계획을 세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과 '정신건강증진 프로세스'를 연계하여 보호소년의 개별처우 단계에서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치료적 개입을 확대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7호 처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 다수가 병원, 요양소가 아닌 소년원에 위탁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치료·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소아·청소년정신의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보호 의료자문단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 경중·종류 등에 따른 7호 처분 위탁이 적합한 보호소년의 구체적 기준과 입원 기간, 조기위탁 종료 기준 등 의료재활소년원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가.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강화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홍성원

1) 추진배경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위기·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전문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초기비행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인구감소로 소년 비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점차 확산되는 마약범죄 등 초기비행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22년 전국 19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에 관심을 가진 민간자원을 조직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생과 멘토링 연계 등 초기비행소년에 대한 지속적 개입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초기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교육 참여 동기를 강화하고 소년의 개별 성향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편성과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등 비행예방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비행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표 2-59 | '23년 개별상담, 마약 및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 추진현황

(단위 : 명)

개별상담	마약예방 교육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
2,737	1,110	173

아울러 2023년 10월에는 초기비행 청소년 중 정신 질환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 도구인 정신진단검사(K-SCL95)를 시행하여 고위험군에 대하여 맞춤형 처우방안 모색 등 초기비행 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배양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비행예방 전문교육과정 운영하여 비행예방교육의 전문화·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초기비행소년 대상 개별상담 강화 및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연계하고 도박·마약 관련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지속적 개입과 교육을 통해 초기비행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소년 보호관찰 지도감독 강화

●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배현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7월 1일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된 후 1997년 1월 성인범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성인 강력사범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7년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에 소년범죄예방팀이 신설되면서 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도감독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 이후 2022년 8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소년범죄예방팀 직제가 반영되어 소년에 특화된 전문 보호관찰 정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60 | 연도별 소년 보호관찰 등 실시사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4,034	62,813	61,583	50,594	56,910
보호관찰	28,062	25,874	23,830	23,291	24,484
사회봉사	6,824	6,318	6,785	5,593	5,785
수강명령	18,054	19,605	21,404	12,184	14,489
조사	11,094	11,015	9,564	9,526	12,152

2) 추진내용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및 맞춤형 처우를 위해 2016년 9월 「소년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S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2018년 2월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DRAI-D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를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2021년 6월에는 기존 정적·동적 평가도구를 하나로 합쳐 「통합 소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Ⅱ :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Ⅱ)」를 개발하여 처우계획 수립에서부터 실질적인 처우에 이르기까지 소년 지도감독 전반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소년대상자 처우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에는 통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정확도 및 왜곡 정도 등을 진단·평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원인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 2월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소년 상담형 면담 전문교육'을 신설하고, 같은 해 11월 KICS의 지도감독 체계를 처우계획 점검 중심으로 개편하여 범죄원인별 맞춤형 처우계획 수립 및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3년 4월 "소년보호관찰 역량 강화 교육"에 이어 같은 해 11월 "소년지도감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장경험, 지도감독 기법 등의 노하우를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소년 대상자의 학습권 및 가족의 수면권을 보호하는 등 친인권적이면서도 엄정한 집행을 위해 외출제한명령 집행감독 방식을 기존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에서 '스마트워치 형태의 재택 확인'으로 개선하였다. 스마트워치 형태의 재택 확인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권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4월 부산권역 포함 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2023년 11월 스마트워치 장치의 소형화·경량화 등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킨 신형 감독 장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 실무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소년사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공감 및 관계회복의 '회복적사법' 이념을 적용하여 2018년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19년 '소년보호관찰 회복적사법 운영 매뉴얼' 개발 및 강사 양성을 통해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소년수강명령 회복적사법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27개 보호관찰소에서 회복적사법 수강명령을 집행하였다. 2021년 '소년선도위탁 회복적 사법 패널회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5개 보호관찰소에서 시범 운영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서울보호관찰소에 '마음이음 회복적사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23년에는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년원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교육('23.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내강사 교육('23. 6.)', '소년원 담당자 워크숍('23. 12.)'을 실시하여 회복적사법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소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과 담당교사를 1:1로 연계하는 교사멘토링 사업(2007년), 중·고졸 검정고시 학습권 지원(2009년), 농협기부금을 활용한 소년보호관찰 라포 형성 프로그램(2019년)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정신질환 치료·상담 지원, 콜코칭 상담지원, 조혼·미혼모 대상 생계비 및 양육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가 연계 상담을 강화하였다. 또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실시, 눈높이 면담, 상담전문가 연계 등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표 2-61 |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범률	12.8	13.5	12	12	13.2

3) 평가 및 발전방향

재범위험성에 기반한 소년 맞춤형 처우 및 지도감독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체계화, 기반확립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에는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신규 개발, 피해자 보호 및 관계 회복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확대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재범위험 평가체계 개편, 청소년 마약, 도박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 고위험군 소년대상자의 사회적응지원 확대 등의 정책 개발 및 현장 중심의 소년보호관찰 활동을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 및 소년사법제도 개선 추진

●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박유원

1) 추진배경

법무부는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6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85호)을 제정하였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발표하였고,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하고 있다.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산림청 등

** '청소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핵심가치(예방·교화·보호·협력) 아래 5대 전략 16개 추진과제 수립

2) 추진내용 및 성과

2023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2022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여 2023년 시행계획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고, 제6차 소년비행예방실무협의회 및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거쳐 2023년 4월 「2023년 소년비행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023년 시행계획은 11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위기청소년 비행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사법 관련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보호자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초기 단계 비행소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다. 위탁·유치소년에 대한 표준화된 비행원인 진단 체계를 개발하는 등 비행원인진단 전문화를 추진하고, 저연령 소년의 특성에 맞는 비행예방, 청소년 마약예방 등 소년범죄 연령 및 유형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년범의 사회복귀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소년범 교정·교화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도 도모하였다. 그 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도 2023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확대, 학교생활 속 준법교육 강화 등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년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소년비행예방 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개정안(정부) 국회통과를 위해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등 소년사법 관련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소년비행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고, 소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사법 관련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 2024년에는 향후 5년간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청소년이 비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장하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가. 소년원생 재비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인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소년법」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꾸준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한식조리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표 2-62 |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23년 소년원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1942. 4. 20.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한식조리·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947. 1. 18.	20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용접·제과제빵·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구소년원 (읍내고등학교)	1945. 11. 21.	2000. 8. 31.	9호 10호	• 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커피바리스타) • 인성강화교육(커피바리스타)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1946. 11. 7.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에너지설비) • 인성강화교육(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1967. 3. 25.	2000. 9. 1.	8호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특별반(드론) •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1998. 7. 1.	2002. 3. 4.	7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7·9·10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1978. 7. 8.	2009. 7. 1.	8호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제과제빵) • 인성강화교육(예술분장·커피바리스타) • 여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63. 7. 2.	2000. 8. 30.	9호 10호	• 여성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1966. 4. 16.	20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 인성강화교육(그래픽디자인·디저트)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1987. 11. 9.	2000. 8. 30.	8호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골프매니지먼트) • 제주지역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에는 소년원생 개별처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소년원 입원부터 출원까지의 과정에서 가정결손 분석, 정신질환자 선별, 개별처우 계획 수립 및 사회정착 지도 연계를 통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으로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 ~ '27년)」을 근거로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년원학교 입원 초기부터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정도를 파악하고, 기초학력 향상 학습지원 등 소년원 학교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과 차별없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통해 향후 소년원생 재범률 감소, 기초학력 증진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 소년보호과 사무관 최윤경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에 따라 10 ~ 15인 규모의 대형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3년까지 전국 8개 소년원(대구·광주·춘천·청주·전주·대전·안양·부산)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와 춘천소년원 교육관 및 부대시설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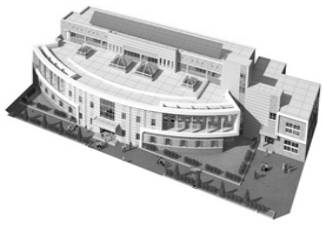
| 그림 2-85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 이하 소규모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을 위해 법원 위탁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전용 소년분류심사원,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확충을 위해 설계 착수와 부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 그림 2-86 | 생활실 리모델링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과 함께 집단 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소년원생의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이 미완료된 기관의 생활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비행 초기단계 위탁소년 비행원인진단 및 교육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인수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최근 20년 간 누범 청소년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자가 중대범죄자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소년의 개별특성에 적합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범죄를 중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 전담 시설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전국에서 유일하며,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은 해당 지역 소년원이 분류심사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한편, 위탁소년에 대해 진단과 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22년에는 위기개입 중심의 위탁소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피해자 공감과 책임 있는 도덕적 인성 함양 등 초기비행단계 소년에게 적합한 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적·개인적 위기를 진단·개입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재범에 유의미한 통계적 예측력을 갖도록 하는 비행원인진단체계를 개발, 적용하여 분류심사 시 재범률 예측을 강화하였다. '23년에는 위탁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촉법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약물남용 선별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도입 등 위탁소년 교육 및 비행예방 기능과 진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과학적인 비행원인진단과 전문적 인성교육 환경 조성, 위탁소년 전담 시설 확충을 통하여 위탁소년에 대한 위기 조기개입과 비행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이 가능하도록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위탁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교육과 분류심사, 생활지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미경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 사항은 법무부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의 회의 개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법체험 기관 '솔로몬로파크(대전, 부산, 광주)' 운영 및 전주솔로몬로파크 신설 추진 등이다.

나. 추진성과

1) 법교육 체계 구축

2005.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 6월「법교육지원법」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 및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9.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법교육위원회를 총 26차례 개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표 2-63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 방안

2)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2005. 9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05. 12월 대학생 및 시민 대상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6. 1월 법교육 프로그램 강사·교사용 지도서 '법은 내 친구', 2006. 4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2012. 3월에 다문화가정 대상 'Fun Fun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2018년에는 일반 시민 대상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를 발간·배포 하였고, 2019년에는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DREAM)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 4월에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 직후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Law) 및 전자책자(e-book)를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였고, 2021년에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판 '디지털 소통로(Law)Ⅱ'를 발간하였다. 2022. 10월에는 여러 아동학대 사례를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안내책자 '아동행복지금바로(Law)'를 제작하였다.

| 표 2-64 | 대상별 법교육 교재

대 상	도서명(발간일)
중·고교생	청소년의 법과 생활('05.12./'07.2./'08.1./'10.3./'11.3./'13.3./'14.2./'16.3./'18.10./'19.10.),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09.7.),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10.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12.10.), 장난과 범죄사이('13.), 디지털 소통로 중·고등용('20.), 디지털소통로Ⅱ('21.10.)
대학생·시민	한국인의 법과 생활('05.12./'07.2./'08.2./'09.2./'10.2./'11.3./'13.3./'15.9./'17.9./'18.10,/'19.2./ '21.8.),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09.2.),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09.4.),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10.6.), 축구 잘하는 법(法)('11.1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12.8.), 희망을 만드는 법('13.9.),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점자 및 음성도서)('13.9.),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18.10),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19.12./'21.6.), 아동행복지금바로('22. 10.)
법교육 강사·교사	Law Educator Ⅰ·Ⅱ, 법은 내 친구('06.1.),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08.3.),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08.5.), 학교폭력 OUT('09.12.),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1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12.6.), 강력범죄 예방 강의안('13.3.) 및 가해방지 강의안('13.10.),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13.10.),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고 사회용)('15.12.),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16.9.)
어린이	나는야 법짱(06.4.), 손오공 무법소탕기Ⅰ·Ⅱ('06.9.) 및 Ⅲ('11.6.), 함께하는 법이야기('07.11.), 법에게 물어봐('08.4.),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09.1.),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12.11.),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13.3.), 헌법야! 놀자Ⅰ·Ⅱ('13.9.),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13.11.), 나는야! 법짱('13.12.), 내친구 LAWⅠ·Ⅱ('15.2.), 조선은 법치국가다('15.5.),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및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15.12.), 우리곁엔 헌법('16.7.),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16.8), 교과서 속 법이야기('17.11.), 어린이로스쿨('19.5.), 디지털소통로 초·중등용('20.4.), 이야기로(Law)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①·②('21.9.)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Fun Fun 대한민국의 법('12.3.), 우리법 바로알기('12.6.),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 및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15.6.), 대한민국으로 온 청소년을 위한 우리법 이야기 초·중급('16.7.) 이민자 생활법률강연 소책자('20.6.)
장애인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수어영상도서('19.12.)

3)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5년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2009년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2010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2011년 스포츠 법교육, 2014년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를 위해 2007년 '시민법률콘서트', 2013년 '시민로스쿨' 및 2013년 '법사랑학교', 2015. 12월부터 '유아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1월부터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독서 활동을 결합한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블라인드 변호인 제도, 참관인 제도 등 학생인권의식 향상을 강화한 학생자치법교육 운영매뉴얼 4.0 개발·보급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각종 경연대회(생활법퀴즈, 모의재판, 헌법토론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법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대회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중·고교생 법체험 캠프로 개편하였고, 2020년에는 법체험 캠프를 확장하여 법과 인권 체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소외계층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대상 '로티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에는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의 여름 법 체험 캠프와 월별 법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에 기여하였다.

또한,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출장강연형 프로그램 운영 등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했고, 국민들이 법교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법교육 프로그램을 편재했다.

2022년에는 청소년의 초기 비행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강화하였고,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를 위한 법교육 직무연수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23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을 막기 위해 법교육에 마약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마약예방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실시하는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예방 교육활동을 강화하였다.

4)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2006. 3월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2007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여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및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표 2-65 | 연도별 MOU체결 현황

연 도	MOU체결 대상
200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 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 6개교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관관대)
2010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개교(충남대, 동아대)
2016년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야구위원회(KBO)

그 밖에 민간의 법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한국법교육센터, 청소년 희망재단, YES21청소년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법무법인 청파 등 민간기관 17개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다.

5) 법 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운영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솔로몬로파크(법연수관, 법체험관)를 설립하였다.

2019년에는 노후화된 법체험관 전시 시설물 개선 및 후생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2022년에는 법연수관 내 '해돌이 방송국'의 방송 설비 확장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법교육'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국민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법탐험캠프, 중학생 법사랑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체험관은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생생한 법률 현장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대전솔로몬로파크와 차별화하여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텍스트 위주로 구성된 헌법배움터에 체험형 콘텐츠를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충청권(대전로파크), 영남권(부산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3년 광주솔로몬로파크를 개관하였고, 법과 인권을 주제로 체험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솔로몬로파크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 그림 2-87 |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에는 청소년의 법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형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CPTED(범죄예방환경개선)·마약예방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였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상 법교육을 새로 시작하는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을 확대 추진하였고,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풍성한 법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특색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연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다.

2024년에는 청소년의 마약사용, 도박문제, 살인예고 등 관련 범죄 확산방지를 위한 법교육 출장강연을 확대할 예정이며, 솔로몬로파크를 통해 법페스티벌 등 기획 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체험객 발굴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법교육 전문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양성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고 보수과정 운영을 통해 변화하는 법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법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3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년·대학생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 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약 3천2백 명 이상의 청년·대학생이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타운' 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경기 광명 등 3개소 '법사랑타운'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경기 남양주 등 5개소와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선정지역 광주 남구 등 5개소 등 모두 13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기 용인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경남 남해군 등 3개소,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부산 진구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전남 완도 등 3개소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기 용인시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강원 삼척시 등 2개소에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경기 안산시 등 2개소를 더한 총 7개소를 선정하여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및 기초설계안 등을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경북 울진군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사업 300) 협력지 거제시 유교항 등 2개소,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인천시 남동구 등 3개소를 더한 총 7개소를 선정하여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부산 등 3곳의 청소년시설에 비상벨·잠금장치 등 설치, 시설 관리자를 위한 긴급상황 대처 물품(호신용 경보기 등) 제공하였으며, 위기청소년들에게는 범죄예방키트를 지원하였다.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등 3개소,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협력지 전남 진도군 도명항 등 2개소, 지방자치단체 협력지 대전 서구 갈마동 등 4곳을 선정하여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 컨설팅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023년에는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생 및 청년으로 구성된 저스티스 서포터스 35개 팀, 163명이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동학대·스토킹·사이버범죄·성범죄·학교폭력 예방 및 마약 퇴치 및 근절 등의 주제로 457회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고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활동 1,204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23년에 제주 서귀포시, 전남 진도군 도명항 등 9곳에 보행로 정비를 비롯하여 고보 조명 설치, 쉼터 정비 및 비상벨 설치 등 주거지 안전강화 및 방범시설물 확충 등의 범죄예방 컨설팅을 제공하여 범죄 불안감 감소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였다.

| 그림 2-88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법질서 캠페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2)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식 개선 활동

2023년에는 마약 등 중대사회범죄 근절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제목: 몸도 정신도 파괴하는 마약, 당신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를 10개 광역자치단체 및 15개 기초 자치단체 전광판, 지하철, 버스, 국악방송, 공항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전광판 국가광고 표출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국 약 266개 전광판을 통해 공익광고를 송출하면서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유도하였다.

| 표 2-66 | 연도별 홍보 현황

연 도	홍보 내용
2012년	공익광고('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 송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제작,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12.7.)
2013년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에 홍보('13. 9.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13. 9. ~ 12.),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
2014년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 편을 방영,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
2015년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 당 300여 회)에 송출, SNS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 개설('15.8.)
2016년	페이스북에 법사랑서포터스가 제작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및 '삼국지 웹툰' 등 300여개 콘텐츠 게시
2017년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페이스북에 재능나눔을 주제로 웹툰과 카드뉴스 제작·배포,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 실시,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 연합뉴스TV, 채널A에 공익광고를 송출)
2018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 제작('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이 곧 예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객차 및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에 게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명예보호관찰관 등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송출('MBC 굿모닝 FM김재동',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를 제작('당신은 부끄러운 어른이 아닌가요?' 등)하여 수도권 1 ~ 4호선 지하철 출입문, 수서역 수서평택고속선 옥외매체, 서포터스 활동, 사이버랜드 등 다양한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되지 마세요)를 제작하여 수도권 지하철 2호선 행선안내기(승강장, 대합실) 및 유튜브, 전국 약 115개 전광판 국가광고 송출
2021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을 주제로 5개월간 매월 영상컨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광고,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을 버스 내부,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유트브 채널(누적조회수 127만회)에 게시
2022년	마약범죄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버스·지하철·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홍보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 홍보(누적조회수:161만회) 실시
2023년	마양범죄 예방(몸도 정신도 파괴하는 마약, 당신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 공익광고 다양한 매체에 송출

| 그림 2-89 | 2023년 홍보



마약범죄 예방 홍보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 법질서 실천운동은 확산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 퇴치 및 근절을 주요 주제로 하고 아동학대·스토킹·사이버범죄·성범죄·학교폭력 예방의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었다.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SNS 등 온라인 활동과 활발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법질서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력지와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협력지 및 지방자체단체 협력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범죄예방 컨설팅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2023년 법질서 홍보는 안전한 사회 구현 및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범죄 예방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유튜브·지하철·버스·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시다발적 홍보를 통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법질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고,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태윤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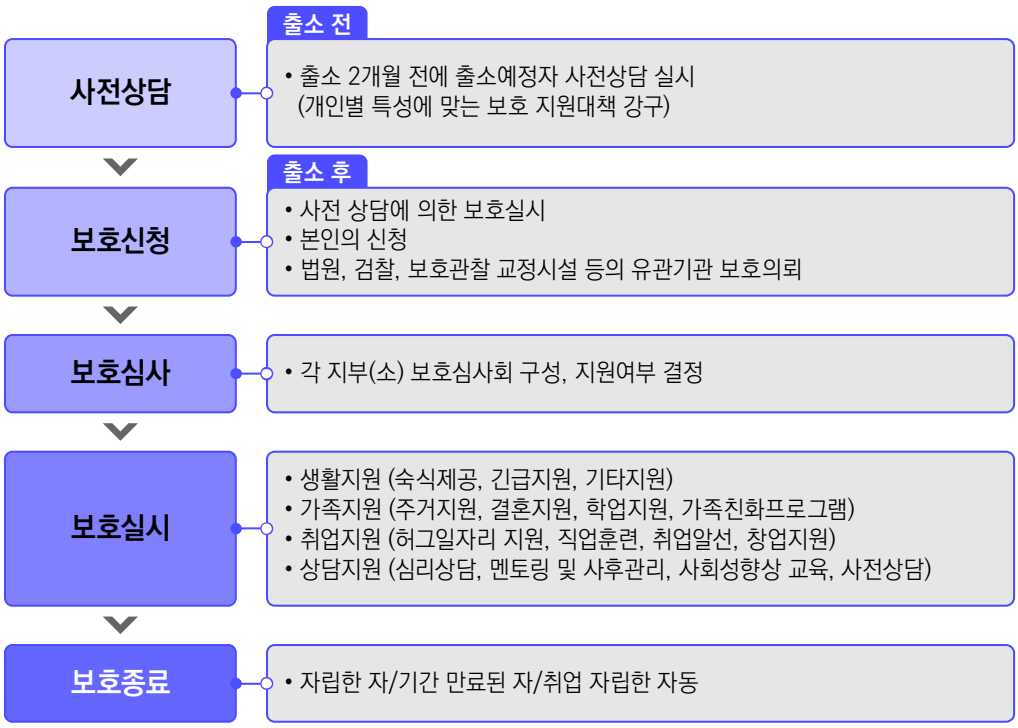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23년까지 출소자 56,624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정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법무보호교육원 가족희망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전국 지부(소) 단위로 확대하였고, 2023년까지 법무보호대상자 86,195명에게 147,699건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보호대상자 가족 1,074명에게 263회에 걸쳐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행사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으로 변경했다.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기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지부(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 허그(HUG) 후원의 날 : 법무보호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행사

| 그림 2-90 | 법무보호사업 신청 절차



나. 추진성과

1) 출소자 취업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취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및 공단·교정·기업대표의 우수사례 공유 등 2023년 취업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권역별(영남권, 호남권)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과 관련하여 성인범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취업지원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소년원 및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소년범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출소자 7,762명(전년 동기 대비 33명 증가)이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2,635명이 수료(4,027명 진행 중), 이 중 2,159명(81.9%)이 취업에 성공하여 자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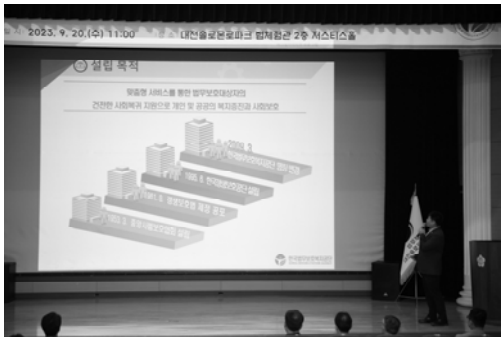
| 표 2-67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참여연도	참여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자 취업현황	
			취업 인원(명)	취업률(%)
2018	5,726	4,915	2,630	53.5
2019	6,117	4,904	3,144	64.1
2020	6,605	5,037	3,354	66.6
2021	7,019	5,252	3,568	67.9
2022	7,729	5,560	3,779	68.0
2023	7,762	2,635	2,159	81.9
계	40,958	28,303	18,634	64.0

| 그림 2-91 |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 노력



2023년 공단·교정 합동 성과대회



소년범 중간평가회 개최

2023년 4월 출소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조직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를 출범하였다. 권역별 취업박람회 개최 및 회원사 투어를 추진하며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협력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례화를 통해 1,759개 업체에 출소자 3,812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23년까지 77개의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대출시 보증한도비율 10% 상향 및 보증보험료 0.2% 할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3년은 금융기관 우대혜택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1월 신한은행 '일하기 좋은 기업'에 포함되어 0.5% 금리우대 혜택을 도입하였고, 12월 국민은행 'KB GreenWave_ESG' 기업에 선정 0.4% 금리 우대혜택을 도입하는 등 신규 우대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92 | 일자리 기반 활성화 노력



제72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제74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

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조선비계, 용접 / 기계가공), 서울동부(미용, 제과제빵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 1월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공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이 포함됨에 따라 기술교육원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표 2-68 |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2. ~ 2023.)

구 분	입교(명)	수 료		취 업		비 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동부	724	553	76.4	150	27.1	
인천	1,146	962	83.9	441	45.8	
충남	615	579	94.1	175	30.2	
경북	292	224	76.7	30	13.4	
울산	1,258	973	77.3	434	44.6	
경남	742	572	77.1	110	19.2	
전북	725	600	82.8	134	22.3	
계	5,502	4,463	81.1	1,474	33.0	

공단 창업지원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에 곤란함을 겪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출소자 212명에게 83억 2,755만원을 지원, 출소자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보호수용(공단 생활관 입소)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63번(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에 따라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 수형자에 대해 전자감독·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가석방 조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단 생활관 4곳을 보호수용 가석방 대상자의 생활관으로 지정하였으며, 2023년 7월, 충남지부, 울산지부에서 시범 운영하여 현재까지 6명의 가석방 대상자가 입소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지부, 전남동부지소의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보호수용 생활관 운영으로 심리상담, 직업훈련 등 개인별 재범 유발 요인을 감안한 단계적 사회적응 지원을 통해 흉악범죄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3)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가족지원사업은 2023년 한 해 주거지원 147세대, 심리상담 20,698건, 수형자 가족지원 1,150명 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 및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2,828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총 3,836세대(기존 주택 재사용 포함, 재사용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의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이 주거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 현재 1,512세대가 자립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출소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진단·치료,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각 지부,지소에 배치하여 2023년까지 86,915명에게 147,699건의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법무부와 공단은 수형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까지 학업지원 1,635건, 주거지원 42가구, 심리상담 1,818건, 긴급지원 1,343건, 접견지원 1,857건, 장학금 지원 87건 등 활발한 지원을 통해 수형자 가족해체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69 |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23.)

연번	기 관 명	관할지역	누적지원주택	현 관리주택	누적지원대상자
1	서울지부	서울(서울동부, 서울북부 관할 제외)	209	127	359
2	서울동부지부	서울 동부(서초, 강동, 성동, 광진)	51	36	65
3	인천지부	인천, 부천, 김포	301	155	401
4	경기지부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319	175	478
5	경기남부지부	경기 남부(오산, 평택, 화성, 안성)	94	61	122
6	경기북부지부	경기 북부	201	125	276
7	강원지부	강원 서부(원주, 춘천)	108	69	149
8	강원동부지부	강원 동부(강릉, 동해)	9	8	9
9	대전지부	대전(세종, 논산, 계룡 포함)	183	78	258
10	충남지부	충남(세종, 논산, 계룡 제외)	44	32	48
11	충북지부	충북	95	55	118
12	대구지부	대구, 경북(경산, 경주, 포항)	235	109	334
13	경북지부	경북(경산, 경주, 포항 제외)	35	21	36
14	부산지부	부산	155	85	205
15	울산지부	울산	132	64	156
16	경남지부	경남(부산, 울산 제외)	156	86	204
17	광주전남지부	광주, 전남	198	69	250
18	전북지부	전북	120	53	154
19	제주지부	제주	47	35	58
20	서울북부지소	서울 북부(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동대문,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	139	87	156
합계			2,831	1,530	3,836

| 그림 2-93 |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활동



주거지원대상자 가정방문 및 명절 위문 실시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2023년 12월,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표 2-70 | 법무보호복지의 날 추진경과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2006. 10. 26.	전국거점도시	• 발대식, 헌혈운동, 가두캠페인	2,800여명
2007. 06. 14.	라비돌리조트	• 전진대회, 노란리본, 가두캠페인	3,000여명
2008. 08. 29.	백범기념관	• 전진대회, 노란리본, 청계천 가두캠페인	4,000여명
2009. 09. 02.	올림픽홀	• 바자회, 콘서트, 사회적비용 컨퍼런스	4,000여명
2010. 09. 10.	장충체육관	• 바자회, 콘서트, 취업박람회(교정기관 합동)	3,000여명
2011. 10. 31.	코엑스	• 전진대회, 바자회, 축하공연(난타, 샌드 애니메이션)	1,500여명
2012. 10. 30.	국립중앙박물관	• 전진대회, 바자회, 성과경진대회(영상물 상영 등)	1,000여명
2013. 10. 30.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바자회, 노란리본기	1,000여명
2014. 10. 29.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기업홍보 축하공연(타악, 대학생 & 보호청소년)	1,000여명
2015. 11. 18.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료전시, 축하공연(국악, 대학생 & 청춘합창단)	1,000여명
2016. 11. 16.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진전, 축하공연(음악축제 수상자(합창, 난타))	1,000여명
2017. 11. 16.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역사관 개관 기념 기록물 전시, 축하공연	1,000여명
2018. 11. 07.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축하공연(홍보대사 등), 공단가 제창	1,000여명
2019. 11. 08.	과천정부청사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기념공연, 손피켓 퍼포먼스	200여명
2020. 11. 04.	공단본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2021. 11. 03. 2021. 11. 10.	과천정부청사 공단본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손피켓 퍼포먼스	70여명
2022. 11. 30.	공단본부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법무보호명문가 인증패 전달식	140여명
2023. 12. 05.	산학연유치지원센터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후원금 전달식, 명예의전당 현액패 전달식	200여명

| 그림 2-94 |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

아울러, 2013년부터 법무보호사업·기술교육원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공단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월간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출소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을 활용하여 공단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출소자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법무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법무보호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공단 본부 청사 1층에 홍보역사관(Koreha Re-Entry Hall)을 개관하여 누구나 쉽게 법무보호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역사관에서는 공단 변천사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피니티 미러룸, 실감형 콘텐츠, 체험형 콘텐츠 등 총 3개의 다양한 테마 공간을 통해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공단은 홍보역사관을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혜택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 그림 2-95 | 홍보역사관(리엔트리홀) 사진



홍보역사관(리엔트리홀) 개관식



홍보역사관 체험하는 어린이들(김천 소재 어린이집)

5) 전국 자원봉사 조직 개편

2019. 3월 기존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코레하 아너스클럽,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 가정희망복원자문위원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등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2023년 현재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조직 384개, 자원봉사자 8,490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71 |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운영위원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교화	여성	사전상담	대학생	기타
위원회수	384	4	36	26	21	17	22	28	33	197
인원	8,490	35	855	625	536	195	465	784	1,454	3,541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및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관련 모바일뉴스레터, 공단 소식지, SNS 등을 통해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 허그일자리프로그램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심리상담, 자녀학업지원 등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내실 있는 주거지원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해 교정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용 생활관 시범운영이 완료된 충남지부, 울산지부의 리모델링 공사 실시 후 2024년 말에는 보호수용 생활관 4곳이(경기, 충남, 울산, 전남동부) 전면 운영됨에 따라 보호수용 가석방 대상자의 재범위험성 관리 및 집중처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공단 소식지와 뉴스레터,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언론사 초청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홍보 네크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책소통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기획기사 연재 등을 통해 공단과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자원봉사조직은 전문화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분야 지속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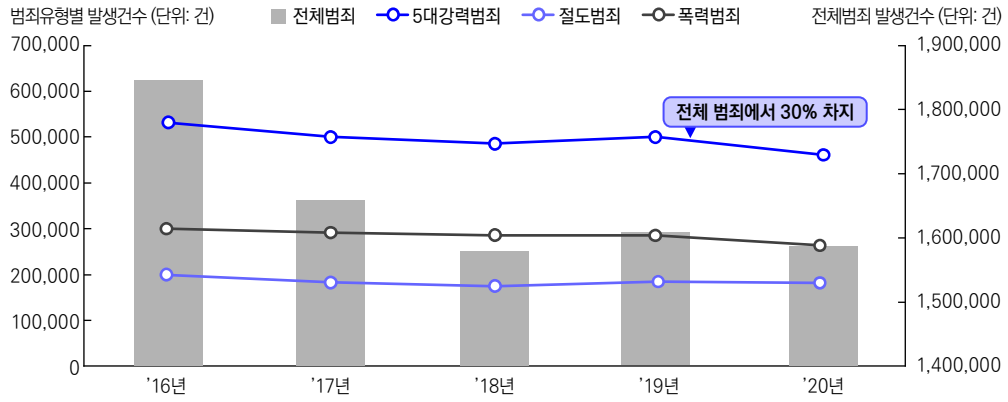
10.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태윤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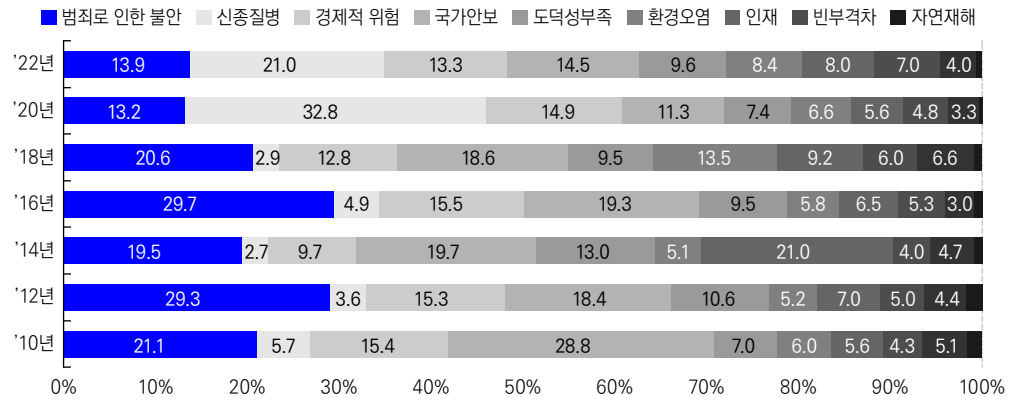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다. 실제로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5년간(2016~2020) 범죄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여전히 전체 범죄의 약 30%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의 범죄로 인한 불안감 수치도 지난 10년간 약 25%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 그림 2-96 | 국내 범죄 발생건수 연도별 추이



출처: 경찰청(2020a), 경찰범죄통계, p,20를 참고, 건축공간연구원

| 그림 2-97 |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출처: 통계청(2010, p.37); 통계청(2012, p.35); 통계청(2014, p.41); 통계청(2016); 통계청(2018); 통계청(2020, p.36); 통계청(2022, P.38)을 참고, 건축공간연구원

범죄로 발생하는 사후적 손실을 줄이고, 범죄 발생 요인들을 제거 및 억제하는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서의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이하 셉테드라 함)은 범죄예방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여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셉테드 사업들은 행정·재정적인 문제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관계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유사 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 시행중인 셉테드 사업의 조정을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22년 5월,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체계적 총괄·관리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법무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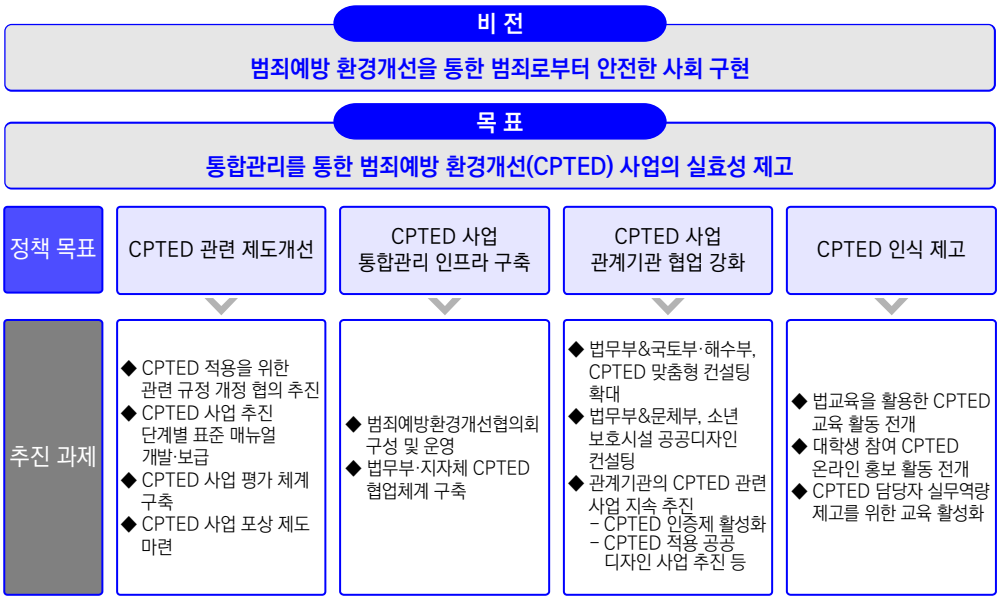
이에, 셉테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팀(법무부 보호정책과)을 구성하여, 대통령훈령인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였다(2022. 11.). 또한,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셉테드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학, 범죄학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행중인 셉테드 사업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5개년(2023. ~ 2027.)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2023. 3.)

나. 추진성과

본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의 기조에 따라 '통합관리를 통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각 관계기관의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8개 부처에서 4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4대 추진과제 분야 중 'CPTED 사업 관계기관의 협업강화'에 대한 세부과제가 전체 과제의 약 50%를 차지하여 CPTED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에서 셉테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각 관계기관 간의 협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 그림 2-98 | CPTED 사업 관계기관 협업강화



출처: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 법무부

본 기본계획의 내용을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전략 1.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셉테드 관련 규정 내용의 상당부분(건축, 개발, 사업 분야 등)이 권장사항에 그친 바, 범죄예방 효과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설비·시설물 중심의 규정 내용에 건축물의 공간·형태·구조·입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방범 시설물 설치에 치중하는 지자체 셉테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후 유지관리 방안까지 각 단계별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 번째로는, 그 동안 셉테드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전무하여 지자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셉테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 셉테드 사업에 대한 정부 포상 등의 포상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전략 2. 셉테드 사업의 통합 관리 기반 구축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셉테드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의 CPTED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이 협의회 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차관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건축학 등 각종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 간의 협의, 사업 이행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다(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규정 제2조, 제3조). 이에 따라 1차 협의회를 개최(2023. 3.)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2023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였다. 또한, CPTED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지자체와 CPTED 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보 교류 및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등을 위해 법무부와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추진전략 3. 셉테드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셉테드 사업의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및 해양수산부(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즉, 국토부·해수부는 개발사업 추진 시, CPTED 적용 필요 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법무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컨설팅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CPTED 설계 자료를 제공, 안전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낙후된 소년보호시설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낙후된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자 함이다. 또한 교육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셉테드 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해 ▲CPTED 인증제 활성화,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사업 추진, ▲CPTED 실효성 제고를 위한 CPO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주소정보시설 고도화를 통한 야간 범죄예방 환경조성, ▲국립부설학교 안전 강화사업 확대 등 다양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전략 4. 셉테드 관련 인식 제고

그간 셉테드 사업 지역주민들의 경우 “범죄”라는 용어 때문에 셉테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었다. 셉테드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먼저, 법무부의 법교육 기반을 활용한 CPTED 관련 교육 활동을 전개, 국민들의 CPTED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활동 중심의 청소년 셉테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법교육 프로그램에 셉테드 교육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과 함께 셉테드 온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셉테드 담당자의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등 교육 강화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들이 제도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폭넓게 발굴하고자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였다.

우선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으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유인을 높혀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질적인 셉테드 사업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좌우되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셉테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셉테드의 성과는 사업지역의 범죄율 감소 및 주민들의 불안감 감소로 나타나는 만큼 성과 도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제6절 감찰·감사업무

1. 감찰업무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최병휘

가. 개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조치함으로써 유사 비위 차단에 주력하였다.

특히,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공직윤리 관련 안내와 교육을 통하여 직장 내 인권증진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감찰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위원 수를 조정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감찰에 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1)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상시적인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비위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동시에, 다각적으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비위공무원을 직접 조사하는 등 비위 발생의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2)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취약 분야, 과오 다발 분야, 중점 점검 대상자, 다수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한 비노출 관찰 활동, 부장·차장검사 승진대상자 인사검증 등의 선제적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였다.

3)「법무부 감찰규정」 개정(23. 1.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0632호)」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임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 절차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개정하였다.

4)「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23. 1. 9.)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마련하였다.

다. 감찰 업무를 통한 법무부 내 인권증진·공직윤리 확립

1)「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2018년부터 현재까지「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갑질 피해자 구제,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2022년 카카오톡을 이용한 법무부 오픈채팅방「감찰톡」을 개설하여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여 조직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2)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

법무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청탁금지법에 관한 안내와 교육 실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절차 안내 및 심사, 퇴직 공직자 취업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공개대상자에 대해 병역 신고 안내 등을 통해 비위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및 공직 윤리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공무원의 청렴한 윤리의식을 고취하였다.

라. 감찰업무의 객관성 제고

1) 검찰의 감찰업무 효과적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부 및 각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부 등으로부터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아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 전면 개편 및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외부위원의 직업, 성비를 두루 고려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였다. 또한 감찰위원회를 연간 5회 개최하여 감찰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의견을 제시하여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 감사업무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조오행

가. 자체감사체계 역량 강화

1) 추진개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감사성과 제고 및 우수 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국민관심 분야와 내부비위 근절 및 청렴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지원사업·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등에 대한 특정감사, 채용실태 및 공직복무점검, 부조리 신고민원 조사를 통해 국민 불편해소와 내부비위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69개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복무감사, 내부 비위 제보 조사(청렴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총 32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88명에게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였고,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58,398천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2) 추진실적

| 표 2-72 | 실시현황

구 분	내 용	실시기관 수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점검	69
특정감사	특정업무·사업 등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1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비위, 근무실태 등 점검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 표 2-73 |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조치 결과 / 종별	계			신분·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징계		경고		주의 등		회수 등		감액 등	
	건	인원	금액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금액	건	금액
합 계	321	88	58,398	-	-	12	14	266	74	43	58,398	-	-
종 합 감 사	232	79	53,998	-	-	9	11	181	68	42	53,998	-	-
특 정 감 사	19	2	4,400	-	-	1	1	17	1	1	4,400	-	-
복 무 감 사	70	7	-	-	-	2	2	68	5	-	-	-	-

나. 다각적인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응

1) 추진개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청렴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부터 반부패·청렴 전담팀을 신설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라이브·청렴릴레이 등 조직 맞춤형 청렴 교육, 청렴의 날 행사, 청렴멤버스 운영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일상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속기관장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마일리지,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다양한 내부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처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2) 주요 반부패·청렴 추진 활동

가) 반부패·청렴 교육

소속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를 목표로 청렴 전문 강사를 섭외하여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1차 교육은 수도권(2023. 6. 27.), 충청권(2023. 7. 12.), 호남권(2023. 7. 13.), 경상권(2023. 7. 13.) 등 4개 권역에서 각 소속기관별 청렴담당자 2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교육 이수자가 해당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릴레이 방식(2단계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장·차관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라이브'(2023. 7. 21.), 소속기관 청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청렴워크숍'(2023. 9 .7. ~ 9. 8.)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직원 청렴 교육 이수율 95.9%(22,340명)를 달성하였다.

| 그림 2-99 | 2023년 반부패·청렴 교육



청렴라이브(2023. 7. 21.)



청렴워크숍(2023. 9. 7. ~ 9. 8.)

나) 내부 청렴도 평가

부처 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양한 내부 청렴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3. 7~8월 소속직원 설문조사(공정한 직무수행, 균형적인 조직관리 등 4개 영역 16개 항목)를 통해 기관장·부서장 등 관리자 832명의 부패 위험성을 진단하였으며, 하위 진단자에게 개인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실·국·본부 및 124개 소속기관의 연간 반부패·청렴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진행하였다. 2023년부터는 정성평가 지표를 삭제하고 청렴 교육 이수율, 자체점검 실적 등 청렴 관련 통상적 업무 수행과정을 정량적으로 점수화하여 청렴의 일상화와 담당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을 도모하였다.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이 공공부문까지 적절히 확산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부 산하 5개 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하였다. 2023년에는 공정채용 절차 마련, 청렴 홍보활동 등 각 기관의 청렴 노력도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다) 청렴 문화·홍보 활동

2023. 9월 '법무부 청렴알림e 6호'를 발간하였다. '법무부 청렴알림e'는 법무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발간한 청렴 소식지로서,

이번 '청렴알림e 6호'는 김용성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여는 글을 시작으로 교정본부장의 부패취약분야(장소변경접견) 개선 인터뷰, 소속기관 직원들이 기고한 청렴 수필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 및 청렴의 생활화를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2023. 9월에는 '청렴문예 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 직원에게 청렴선진국 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 그림 2-100 | 2023년 청렴 문화·홍보 활동



청렴알림e 6호



청렴문예 공모전



우수직원 청렴선진국 싱가포르 시찰

제7절 인권업무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

인권정책과 사무관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정부는 2023. 1. 4.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동 협약은 2023. 2. 3.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제실종 근절 노력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국내외로 표명하였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은 당사국에게 강제실종의 범죄화 및 처벌을 요구하는바, 이를 이행하는 국내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학계 등의 요구가 계속 있었다. 이에 그간 법무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 운영(2020년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방안 토론회 참석(2023. 9. 8.) 등 적극적으로 이행입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러 노력의 결과 현재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된 강제실종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번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우리 정부는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제출할 최초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추진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동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년 ~ 2022년)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권정책기조,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년 ~ 2027년)을 수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2023. 8월), 정부·시민사회단체 1~2차 간담회 개최(2023. 9월 ~ 10월), 제4차 NAP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회의 개최(2023. 11월), 제4차 NAP 관련 시민사회단체(보수·진보 단체, 종교계 등) 면담 4회 실시 (2023. 11월 ~ 12월) 등 일반 국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정부 부처 실·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의장 : 법무부차관)를 개최(2023. 12월)하여 제4차 NAP 초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하였고, 실무협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기관 의견 조회(2023. 12월)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내실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비전과 시대변화에 따른 인권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고,

전문가, 국민이 참여한 공청회,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보수·진보 단체, 종교계 등과의 면담 등을 실시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제4차 NAP 정책과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향후 5개년 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 운영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에서는 2021. 3. 30.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 제1351호)을 제정하였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국내외 규정 및 권고를 준수하는지를 사전 평가한 후, 개선책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이다. 수용자가 조사수용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통지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징벌 처분뿐 아니라 조사수용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외국인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기록부에 사용 사유 및 시간, 건강 특이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소년보호기관에서는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급식 재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행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금·보호시설' 분야에서 수용자, 보호외국인, 보호·위탁 소년의 처우를 향상하고 그 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본부 각 과에서 법령등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라.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장현주,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민국은 총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법무부는 4개의 조약(「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소관부처이다. 2023년 주요 성과로서 역시 법무부 소관인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시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10개 관계부처·기관 합동

정부대표단이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심의절차에서 약 95개의 참가국이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며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 2023. 11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2020. 9월 제출한 제5차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를 현행화하여 유엔 자유권위원회 측에 제공하였고 4차례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심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다. 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 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8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심의에 참여하였고, 자유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충실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서한, 개인진정 사건 등 유엔 인권기구의 다양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나아가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 시 자료 제공 등 국제사회외의 협력을 통해 인권 증진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은 유엔 핵심 헌장기구인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와 양대 규약인 자유권규약 심의 및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서 제출이 모두 진행되어 국제인권 업무가 매우 활발히 진행된 한 해였다. 법무부는 향후 내실 있는 국제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심의 현장 기록 및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이행계획 등 향후 후속 조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인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와 여성가족부 소관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2024년에 이루어질 예정인바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심의에 적극 응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정책과 제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확한 설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 인권정책과 사무관 장현주, 전현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다하고,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 핵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3년 하반기,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와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제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샵은 2022년 실시한 유엔 인권조약기구 보고 절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국가보고서 초안 및 답변자료 작성

요령, 심의 대응 등 실무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 부처 담당자들의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과제를 파악하고 신규 정책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사법담당 집행위원 및 주한유럽연합대사,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및 아시아국 디렉터, 유엔 국제인권협약기구 현직 한국인 위원 등 국제기구, 국제인권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전문 인력양성에 기여하고자 국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주요 국제인권협약의 주무부처로서 대한민국이 다양한 국제 보고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샵을 정례화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인권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교류를 지속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국내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체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 규범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및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을 포함,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 인권정책과 서기관 서혜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무부는 2023. 4. 25.(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및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2) 추진내용

이번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인신보호법 및 행정구금제도 개선 등 사법인권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명이 포상을 수상하였다.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법무부부터 법이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그림 2-101 | 제60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2020. 11월 합법체류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총 148건, 89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박종범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평가, 심리 치유, 집단프로그램, 사회적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2010. 7월 서울동부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6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표 2-74 | 연도별 설치현황

구분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설치 지역	서울 (동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서울 (서부) 수원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제주	목포

스마일센터의 외형 확대에 맞추어 질적 성장을 기하고자 지속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해왔고, 2023년에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개발된 비대면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였으며,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과 외상 후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 범죄피해자 심리적 후유증에 대한 표준 평가 프로토콜 및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
  '21. 스마일센터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연구
  '22.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23. 강력범죄 피해자 자가치유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화

스마일센터에서는 2023년 말까지 25,791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507,757건), 임시주거 제공(48,135건), 사회적 지원(32,737건) 및 법률적 지원(41,347건) 등을 제공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표 2-75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명, 건)

연 도	신규접수 (명)	서비스 지원					교육홍보
		계	심리지원	사회지원	법률지원	임시주거	
2021	2,630	72,398	59,664	4,369	5,281	3,084	5,080
2022	3,251	90,945	69,989	5,040	6,452	9,464	5,912
2023	2,566	82,974	61,121	4,284	6,451	11,118	5,970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의 치료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척도(PDS), 사건충격척도(IES), 한국판 벡우울척도(K-BDI), 한국판 벡불안척도(K-BAI) 평균값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하단 표 참조)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스마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크게 완화되어 심리적 회복을 이루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앞으로도 스마일센터는 신규개소 등 외형적 확대에 맞추어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국내 유일의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 표 2-76 | 심리치료 효과 검증 결과

(단위 : 명, 건)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결과해석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척도 (PDS)	치료 전	322	30.02	10.525	• 10점이하 : 낮은 수준 • **11~20점 : 중간 수준** • 21점이상 : 높은 수준
	치료 후	322	13.95	10.994	

구분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결과해석
사건충격척도 (IES-R)	치료 전	322	52.10	18.035	• 기준점 22점 • 22점 초과 시 외상과 관련된 증상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치료 후	322	23.85	17.620	
벡우울척도 (K-BDI)	치료 전	322	29.84	11.844	• **13점이하 : 증상 없음** • 14~19점 : 경미한 우울증 • 20~28점 : 중간정도 우울증 • 29점이상 : 심각한 우울증
	치료 후	322	13.62	10.496	
벡불안척도 (K-BAI)	치료 전	322	26.47	13.939	• 7점이하 : 불안증상 거의없음 • **8~15점 : 경미한 불안** • 16~25점 : 중간정도 불안 • 26점이상 : 심각한 불안
	치료 후	322	10.32	9.609	

※ 출처 : 2022년 스마일센터 백서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2010. 8월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020. 5월 얼굴 공개, 보복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고,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였다.

| 표 2-77 | 주거지원 대상 확대(2020. 5.)

종 전	개 선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좌동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 시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3.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 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좌동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디지털 성범죄 추가 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의 유포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의율 대상 피해자까지 확대 - 주거지원 대상 범죄에 과실범죄가 제외되는 점 명시 -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반영 및 지원규모 및 대상 주택 상세 기술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피해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3년에도 총 23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고,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3년에는 뒷머리를 심하게 맞아 뇌손상, 다리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고, 보복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 등 11명에게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157명에게 7억 4천여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하여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1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한 해 총 38억 5,48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61개 센터는 피해자 상담 85,234건, 경제·의료 지원 16,050건, 신변보호 418건 등 총 117,136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 표 2-78 | 최근 3년간(2021 ~ 2023)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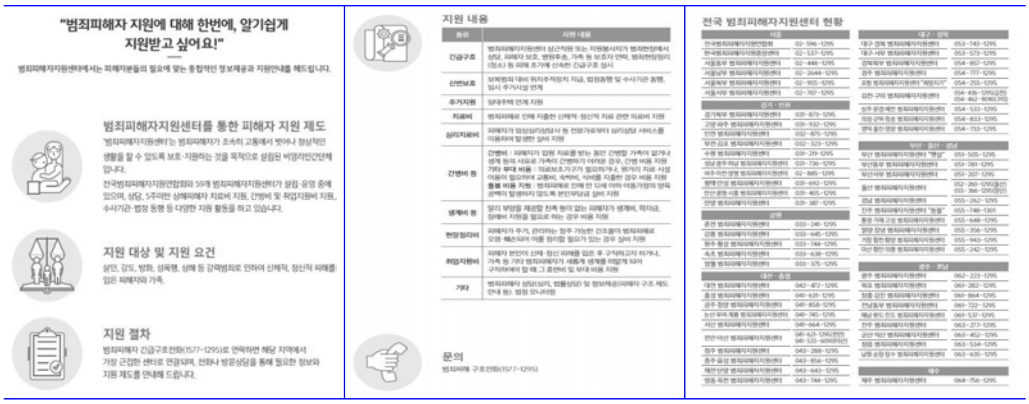
(단위 : 건)

연 도	합 계	상 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21	119,620	84,752	18,476	604	15,788
2022	124,980	86,322	16,403	435	21,820
2023	117,136	85,234	16,050	418	15,434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사회에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0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제10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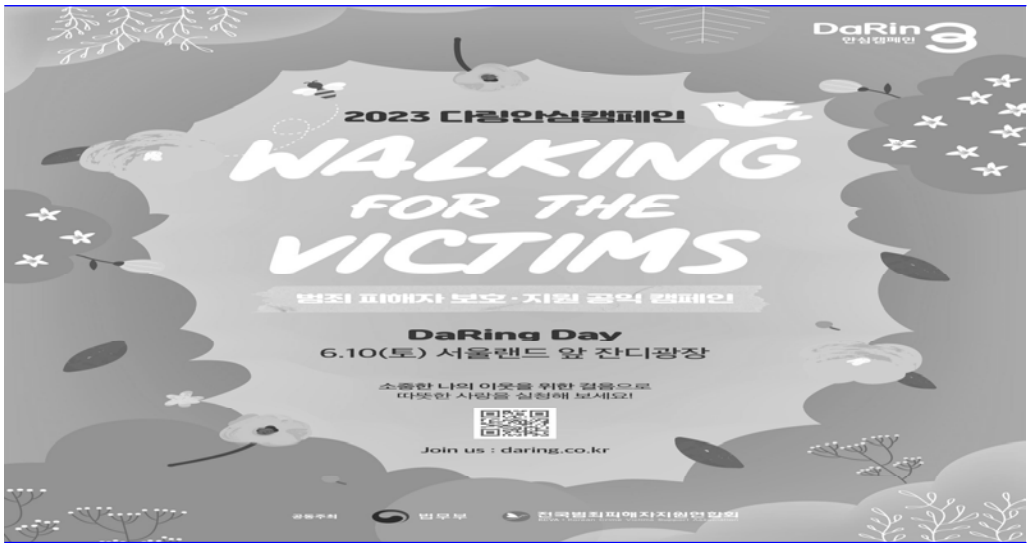
법무부에서는 2023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열 번째 다링안심캠페인을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다만, 2022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5~6월 한 달간 「방구석 탈출 다링」을 부제로 하여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너와 나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널리 전파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체 비대면 걷기, 워크온 어플리케이션」 홍보방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3. 6. 10. 서울대공원에서 진행한 다링행사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및 시민 700여 명이 참여하여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온라인 캠페인의 장점을 적극 살려 관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03 | 제10회 다링안심캠페인



2)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 및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의 사기 진작과 함께 피해자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3. 11. 29.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최근 3년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포상 전수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으나, 2023년에는 상황이 호전되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에 대한 격려가 이뤄져, 국민포장을 수상한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형철 이사장을 비롯한 6인이 정부포상을 받고, 45인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를 주제로 한 산악인 엄홍길의 강연, 범죄피해 회복을 염원하는 희망 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의 글짓기 낭독, 범죄피해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싱어송라이터 장재인의 공연 등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를 극복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 애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림 2-104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포상 전수 후 기념촬영



기념사

3) 홍보 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2023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3년 상반기에는 버스 정류장 BIS 시스템 및 각 지방 거점 지역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광고를 송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연휴 기간에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시설(KTX·SRT) 스마트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집중 홍보하였다.

| 그림 2-105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역사 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인권구조과 서기관 김홍준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0. 5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3.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2015.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였다. 이후 2021. 1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2022. 1월에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48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에는 280억 원으로 확대되어 안정적인 기금 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표 2-79 | 2023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270	34,069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3,220	
	범죄피해구조금	10,015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564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60	48,604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37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9,707	
기금 운영비	기금 관리비	48	4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500	2,5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85	85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28,041	28,041
총 계			113,347

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인권구조과 검사 박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그간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되어 개별적·독자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의 유기적 안내·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각 기관별로 분산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2022. 10월)하여 2023. 11월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 12. 27. 이를 확정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협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 서울시」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원스톱 전담 인력 배치,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통합 교육 등 피해자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그림 2-106 | 「법무부-서울시」 업무협약('23. 11. 15.)





2) 평가 및 발전 방향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에 대한 의미가 깊다. 향후에도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사건 증가, 법률구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격차 발생 등에 따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른 법률보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차원에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75개 지역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였다.

공단은 민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강화하고자 무료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확대하였고, 금융감독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종사자 및 집단피해자(공익소송)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새롭게 실시하였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일부 유료에서 전부 무료로 변경하여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2023년에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응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으로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시작하였으며 구체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0 | 민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강화 추진 실적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실시 시기	법률구조사업 실적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1. 1.	10,743건, 311,242백만 원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9. 1.	76건, 2,728백만 원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사업 실시	2020. 1. 28.	채무자대리인선임 10,113건, 소송구조 80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실시	2021. 5. 10.	148건, 24,436백만 원
집단피해자(공익소송)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2022. 4. 1.	69건, 15,012백만원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2022. 4. 1.	7건, 280백만원
전세사기피해자	2023. 6. 26.	53건, 5,179백만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	2023. 11. 1	2건, 92백만원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 개정, 업무협약 등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및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플랫폼종사자, 집단피해자(공익소송)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나.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 예방 및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와 같은 전담팀 구성 후 각 7개 지부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1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실적

지원확대 내용	시기	추진 실적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09. 1. 21.			
대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0. 6. 1.			
부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1. 5. 27.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2. 8. 27.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3. 7. 23.			
수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5.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12.			

	법률상담	법률구조
공단 전체	1,306,026건	192,735건
센터	**621,867건** (공단 전체의 47.6%)	**143,438건** (공단 전체의 74.4%)

한편, 공단은 법원 등과의 융합행정 구현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실시(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범 운영) 중으로, 그 이용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패스트트랙 : 법원·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법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 표 2-82 | 패스트트랙 이용실적 증대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률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실 적	197	3,222	247	3,683	25.4	14.3

3) 평가 및 발전 방향

공단은 2013. 5. 15. 법원 및 채무조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적용한 후, 2017. 6월까지 전국 9개 지부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소요기간 단축으로 금융소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2005.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에 따라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 4월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인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곧바로 제공받는 등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3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명)	162,977	137,637	116,465	61,757	61,379
건수(건)	106,249	90,174	77,668	43,078	44,833
금액(천원)	1,118,822,106	1,009,918,012	830,382,985	452,681,720	473,373,051

| 표 2-84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건수	67,338	73,244	89,759	90,151	95,137	106,249	90,174	77,668	43,078	44,833

공단은 2017. 4. 24.부터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곧바로 제공받는 등 One-Stop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 8. 26.부터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업무지원(출장)하여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다.

한편, 2021년 대비 2022년, 2023년의 급격한 실적 감소는 2021. 10월 개정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판결 없이 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 평가 및 발전 방향

공단은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단 지부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은 2001년부터 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에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토록 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원격화상상담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최근 5년간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5 |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횟수	300	135	141	90	184
건수	2,267	696	684	259	1,885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운영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07 | 이동법률상담





2) 추진내용과 성과

이동법률 상담버스 운영 이후 총 2,000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9,289건, 법률구조회부 안내 775건, 강연 359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6 |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연 도	방문지역	법률상담(건)	구조회부 안내(건)	강연(회)	수강인원(명)
2021년	128	656	7	12	530
2022년	140	631	16	8	331
2023년	127	774	49	2	120

2023년의 경우, 이동법률 상담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에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 현장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였다.

※ 이동신문고 37회, 법률상담 199건 실시

3) 평가 및 발전 방향

공단은 법률구조 수요자 편의를 위해 2014. 10월 이동법률 상담 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였다. 2019. 8월 1대를 교체하여 무변촌, 산업단지,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 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와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단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바.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노인 및 취약계층 청소년 등 권리보호를 요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7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명)	4,273	2,347	3,615	4,619	4,773

2023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나센터·노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교도소 등을 적극 방문하여 학습자의 수요에 맞춘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법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진로체험학습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교육 255회, 9,178명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귀농·귀촌인, 중장년층 시민, 군인,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맞춤형 법교육을 추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23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8 | 2023년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구 분	귀농·귀촌인	중장년층 시민	군 인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추진노력 대상	남원시 귀농·귀촌인	서초50+센터 등	격오지 근무 군인	아동권리보장원 등
추진실적	369명	305명	205명	1,299명

3) 평가 및 발전 방향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법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청소년 등에 대한 법교육은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사.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절차 등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2012. 3월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월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으며, 2021. 6월에는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까지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3. 7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 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다. 2015.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고, 2015. 4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 1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증원하였고, 2019. 3월 국선전담변호사 4명, 2020. 4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 2022. 12명을 증원하였다. 2023. 1월에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하고, 2023년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증원하여 2023. 12월 현재 전국 41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 3월부터 2023. 12월까지 총 102,321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였고 국선전담변호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9 |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구조건수	4,062	4,221	5,534	5,682	5,916	8,389	10,232

또한, 2023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사건의 처리절차 및 성범죄 피해자 심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6회*에 걸쳐 총 858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 기본과정 3회 및 심화과정 3회(각 과정 1회 1일, 6~7시간)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2023년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한 갭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초년생 등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경제 주체로서 재기의 발판 마련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체계적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하기 위해 법률상담 및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임차권등기명령 등 민사소송 무료 지원을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One-Stop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체계(법률지원-저리대출-긴급 주거지원)를 구축하고 서울·인천·경기·부산 「전세피해 지원센터」 및 강원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에 출장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정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집단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0 | 「전세피해 지원센터」 법률지원 추진내용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하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출장 법률구조 –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함께 국토교통부, HUG 등 8개 기관이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22. 9.
•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 부평구)에 출장 법률구조 실시	'23. 1.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 팔달구)에 출장 법률구조 실시	'23. 3.
•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 부산진구)에 출장 법률구조 실시	'23. 5.
• 강원도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도청 등)에 출장 법률구조 실시	'23. 6.

| 표 2-91 | 「전세피해 지원센터」 법률상담 추진실적('22. 9.~ '23. 12.)

기 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강원	총계
법률상담건수	787	353	195	142	18	1,495

| 표 2-92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추진실적('22. 9.~ '23. 12.)

기 관	2022년(10~12월)	2023년	총계
소송구조건수	293	814	1,107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HUG·지방자치단체와 One-Stop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추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강화, 출장상담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피해현황 등 추가 수요 파악, 온라인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사건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법률구조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자.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인권구조과 사무관 김용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며,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사회 전반에서 급증하는 비대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법률구조 전자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공단은 2023. 2. 27. 1차 시범실시 후 2023. 5. 10.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23. 5. 10. 전자접수시스템 본격 개시 후 전자접수의 이용실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3 | 전자접수 실적(2023. 5월~2023. 12월)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회원가입	167	189	191	185	178	193	200	197	1,500
전자접수	34	50	49	60	45	70	81	64	453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 방문 없이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자접수 시스템 구축으로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예약 대기기간 단축 등 기존의 예약제도를 이용하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고객만족도도 향상되고 있다. 앞으로 전자접수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인권구조과 사무관 손장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로 인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 정식 채용을 시작으로,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법률홈닥터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시·군·구청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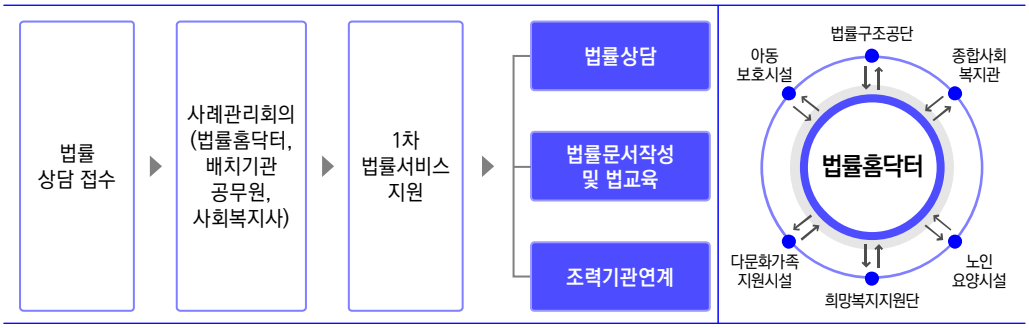
| 표 2-94 | 2023년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지역	배치기관
서울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서울협의회, 중랑구, 광진구, HUG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인천	인천강화군, 인천미추홀구, 인천협의회, 고양덕양구,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수원협의회, 광주시, 구리시
충청	충주시, 충북협의회, 대전 유성구, 대전동구, 대전광역시,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 아산시
전라	익산시, 전주시, 전북협의회, 광주광산구, 광주남구, 광주서구, 순천시, 전남협의회
대구·경북	대구달서구,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중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남구, 부산사상구, 부산수영구, 부산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진주시, 창원시
강원	속초협의회, 삼척시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 전담 변호사로서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종합적인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2-108 |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법률홈닥터의 보다 전문적인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법률홈닥터 실무수습 및 직무교육', '법률지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적 재난·위기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 '충청권 등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전담 법률홈닥터를 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강화하였다.

2023년 법률홈닥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법률지원 유관기관(1,842개)에 포스터·리플릿·우수사례집을 배포하고,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로스쿨 연계 홍보 프로그램에 법률홈닥터가 직접 참여하여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무실습 등을 진행하여 예비법률가를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도 추진하였다.

| 그림 2-109 | 법률홈닥터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동영상 등)



포스터



리플릿



우수사례집



시내버스 홍보(배너)



지하철 홍보(동영상)



2023년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은 46,296건으로 최근 3년 평균(45,436건) 대비 1.2% 상회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0.00점으로, 전년 87.91점 대비 2.09점 상승하여 2년 연속 '만족' 이상 수준이었다.

| 표 2-95 | 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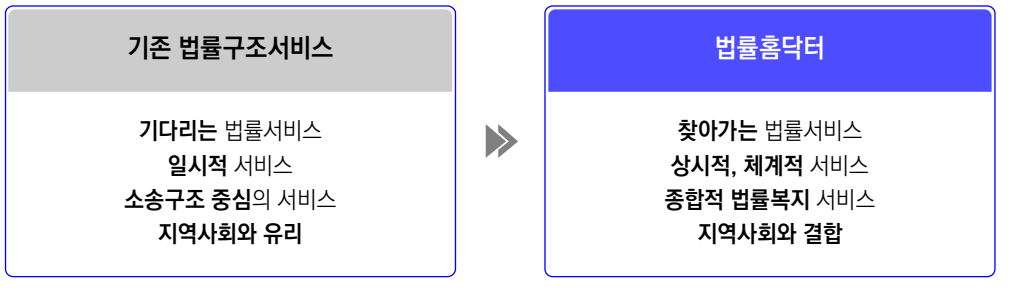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법률지원 실적	28,563	37,663	39,361	55,439	59,201	56,145	47,172	41,500	47,637	46,296

* 법률지원 실적 : 법률상담, 법교육,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조력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가까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률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110 |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권조사과 검사 최현주

가.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인권침해신고센터와 각 수용시설에 네트워크 연결망 및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조사관과 수용자 사이에 1:1 원격 화상면담이 가능하도록 한 원격조사시스템인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관련 장비를 설치 중이고, 2023년에 6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법무부 인권국(2대)과 총 69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림 2-111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서면 또는 출장조사만으로 수용자의 진정내용을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접수 시 신속하게 화상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직접 수용자와 마주 보고 수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상조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면전진정제도를 통해, 수용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면전진정 신청서'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법무행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진정 등의 경우에는 조사관의 상세한 설명이나 안내만으로 진정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 표 2-96 |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적	358	354	462	602	567	559	918	777	899	1,169

2023년까지 법무부 소속 전국 교정시설, 외국인보호시설 등 69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소년보호시설 및 구치소에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나. 충실하고 적정한 인권침해사건 처리

2023년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은 총 4,395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4,304건(전화 2건, 우편

2,818건, 인터넷 377건, 팩스 1.106건, 방문 1건), 인지사건은 91건이다. 2023년 4,597건을 처리(인용 및 구제 92건, 이첩 1,451건, 각하 2,687건, 기각 367건) 하였다.

보호소년에 대한 폭언 및 불친절 사례, 교정기관 내 의료용품 보관 상태 불량,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 누락 기재 사안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2006년부터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3년에는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정기 실태조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총 32개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피보호자 포함, 이하 같음) 설문조사(2023년 2,383명), 개별면담(2023년 516명)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97 | 2023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	합계
횟수	11	7	8	6	32

또한 정기 실태조사,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제도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인권실태 개선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 1회 집중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하는 '주제별·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공항 내 출국대기실의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출국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출국대기실의 시설 및 외국인 처우 등을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어 출국대기실을 운영 중인 3개 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 등을 점검하고, 출국대기실 내 외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023년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훈련, 검사·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등 직렬별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시행해오던 인권교육 전반을 진단·분석하고, 교육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신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98 | 2023년 인권교육 현황

(단위 : 회)

교육 기관	인권감수성훈련			맞춤형인권교육		외부인권강사 기관방문교육	기타	합계
	교정	보호	출입국	검사	검찰수사관			
횟수	9	4	3	5	10	33	6	70
인원	247명	92명	63명	49명	117명	1,511명	116명	2,195명

마. 인권보호 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 8월부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에 대한 인권보호 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 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검찰 5명, 교정 5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증진의 공이 큰 내부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명(조사 1명, 인권교육 1명)을 선정하고 표창하였다.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김도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중 아동, 장애인과 수사기관, 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피해자 국선변호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선변호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8개 지역에 신규 채용·배치하여 전담 인력을 기존 35명에서 43명으로 크게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진술조력 지원을 위하여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및 대구해바라기센터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규 배치하였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2023년 10월부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진술조력인의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 표 2-99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피해자 국선변호사	16,106	19,336	19,903	22,755	25,487	26,007	38,446	39,161	37,150
진술조력인	727	1,203	1,381	1,722	2,226	2,684	4,184	3,822	4,231
합계	16,833	20,539	21,284	24,477	27,713	28,691	42,630	42,983	41,381

3) 평가 및 발전방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원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지원 대상 범죄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24년 전국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0명,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 계획

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시스템 구축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강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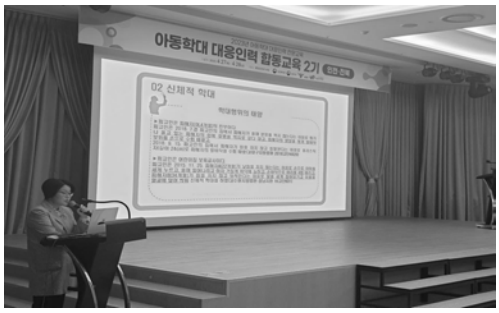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보호자가 신변비관 등을 이유로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중대한 아동학대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서 사후 대처 및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전방위적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의 공동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표 2-10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24. 1. 10. 국회 제출)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규정 정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뿐만 아니라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정비
-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 응급조치시 피해아동등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 검사가 임시조치에 수사 중 새롭게 나타난 사정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변경·취소·연장 청구권 부여

| 그림 2-112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위탁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감호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 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내 감호위탁 시설을 점검하였고, 2023. 5월 유관기관인 서울가정법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2023. 6월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023. 9월 전국 법원 및 검찰청에 감호위탁 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아동인권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하여 법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공동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형사사법기관에 감호위탁 제도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제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향후에도 관련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 대응 법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장애인차별시정명령

●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강성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장애인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8. 4. 11.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총 6건의 시정명령을 발동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해소하였다. 또한 시정명령 제도의 실질화·활성화를 위하여 안건 세부사항 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해당사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 조사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전담 조사관을 두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차별행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8절 국제법무업무

1. 국제법무 역량 강화

가. 국제법무 전담조직 신설

● 국제법무정책과 행정사무관 권호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부처 맞춤형 국제법무 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 2023년 8월 8일부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을 신설하였다.

'국제법무국'은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나급 또는 검사로 보임할 수 있는 국장 포함)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3개 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를 두었다. '국제법무정책과'는 국제 민·상사 규범 관련 업무, 국제개발협력(ODA),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국제사법공조(중앙당국) 등을, '국제법무지원과'는 정부부처 등 대상 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통상·투자협상 지원,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등을, '국제투자분쟁과'는 론스타, 엘리엇 등 각종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대응, ISDS 제도개선, ISDS 연구·법적지원·교육 등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향후 업무추진 계획

국제법무국은 수천억 원대 방위산업, IT 사건 등 주요 국제소송에서 처분청과 함께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며, 정부부처·지방자체단체별 국제법무 현안에 대한 맞춤형 자문도 실시한다. 또한 AI, IT 등 해외 주요 규범·규제 등 모니터링, OECD 등 국제법률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국내 제도개선 추진, AI·우주항공 등 고부가 산업에 대한 규범 성안을 주도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 국제투자분쟁(ISDS) 발생 초기단계부터의 적극 대응 및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운영 활성화,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추진, 2028년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총회(ICCA Congress) 유치 및 상설중재재판소(PCA) 소재지협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해 국제법률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 국제법무정책과 주무관 손남순·실무관 윤찬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2016. 3. 2. 공포된 이후 2016. 7. 1.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3단계 개방은 이후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 2020. 1. 1. 캐나다, 2021. 1. 1. 영국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23. 12월 말 기준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총 232명(미국법자문사 169명, 영국법자문사 39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호주법자문사 11명, 중국법자문사 9명, 뉴질랜드법자문사 1명, 싱가포르법자문사 2명)이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37개(미국 로펌 26개, 영국 로펌 7개, 중국 로펌 3개, 호주 로펌 1개)이다. 특히 2022. 11월에는 국내 로펌과 영국 로펌 간 최초의 합작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3. 9월에는 한-미 합작법무법인이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3단계 시장 개방이 현실화되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총 27곳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별 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교류를 이어나갔다. 2019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각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법률시장 개방 정책 및 협의 과정 등을 조사하는 등 향후 법률시장 개방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우리나라의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법률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2020년에는 법률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1년에는 법률시장 개방 10주년을 맞아 관리·감독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합작법무법인이 출범하는 등 법률시장 개방에 큰 변화가 있었던바 향후 법률시장 변화에 맞추어 적합한 법률시장 개방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4년 한-영 FTA 개선협상 및 유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시장 개방 법제 관련 세계 동향을 세심히 살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정한 법률개방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15년을 맞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도 발전의 방향성 및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심사업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법무지원과 공익법무관 강윤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월과 2015. 4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월과 2014. 4월에는 홍콩에서, 2016. 5월에는 UAE에서 각각 국내 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단기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46명, 2017년에 38명, 2018년 38명, 2019년 45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4. 9월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Academy)'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제6기-제8기)되었던 아카데미를 2023년(제9기)부터 다시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국제법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의 국제 M&A,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등에 더해 국제 지식재산권, 글로벌 ESG와 같은 새로운 강의도 함께 편성하였다. 그 결과 제9기 아카데미에서는 역대 최다인 7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O.K. 아카데미 수료생중 우수자원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해외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 ~ 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중단되었던 청년 법조인 해외 파견 사업(2012~2019, 7년간 18명 파견)을 2023년 "글로벌 펠로우십"으로 개편하여, 국제법무 인턴 기회를 10개국 12개 도시, 27개 자리로 대폭 확대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은 O.K. 아카데미 및 해외 인턴 파견을 통해 국제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청년법조인의 취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 파견을 통한 실무 교육을 체계화하고, 아카데미 수료를 통해 해외로펌 또는 국제기구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 국제법무지원과 검찰사무관 박다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교수, 변호사 등 자문위원 213명)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영문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전문적 법률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100선 사례집』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 등 총 27종의 자료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92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무역협회 '스타트업 브랜치'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등 대상 온·오프라인 법률세미나 및 1:1 온라인 법률상담회를 매월 진행하였는바, '23년 세미나에는 총 1,069명이 참석하였으며 총 180건의 오프라인 자문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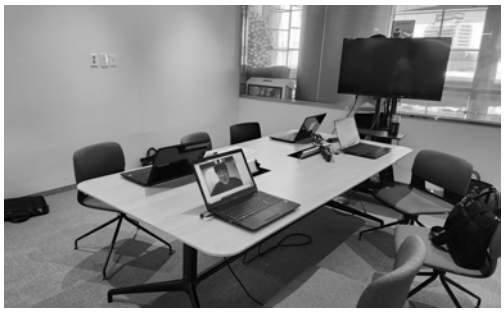
한편 '23. 12월 중국 다롄에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해외 현지 법률설명회 및 간담회 행사를 재개하였다.

나아가, 우리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23년 중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 발간을 준비하여 '24. 1월 발간 완료하였다.

| 그림 2-113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설명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제도 활용 안내('23.12.6.)



법무부-무역협회 1:1 온라인 법률상담회('23.1.20.)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 자문, 국내·외 법률설명회 및 1:1 오프라인 법률상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법률길라잡이 발간 등 다각화된 방식으로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향후 법률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해외진출기업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자문과 1:1 법률상담 사례를 정리한 '법률자문 150선 사례집' 및 주요 진출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시리즈 발간을 통해 진출 기업들이 신흥 국가의 낯선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 국제법무정책과 에디터 안수영·실무관 윤찬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연 4회(2, 5, 8, 11월) 발간해오고 있으며, 권호마다 국제법 전문가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창간호부터 2023년 현재 통권 제161호에 이르기까지 국제공법 및 국제거래법, 국제투자법 등에 대한 깊은 논의를 통해 국제통상법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세계적 학술지로 도약하고자 영어 논문 투고가 용이하도록 발간 규정을

| 그림 2-114 | 통상법률 통권 제161호



정비하였으며, 국제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외동향」 투고를 독려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23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9년 만에 등재 학술지로 재선정되어 향후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한국법령의 최신 동향』을 창간한 이래로 2023년 통권 42호까지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본 저널은 기업·투자 활동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사항, 판례 동향, 정부 정책과 외국인에게 유용한 출입국 정보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규, 정책을 영문으로 번역해 알리는 정기간행물로서 외국인 투자자 및 주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영문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도입 및 이행에 관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발행하여 실무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법률은 학술지로서 위상을 제고하여 국제법무 분야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해당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문저널은 2024년부터 구성을 전면 개편해 대한민국의 법률 시스템과 법무부의 신규 정책, 주목할 만한 판례 등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가독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콘텐츠의 내실화를 통해 독자층을 더 다양화할 예정이다.

2.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가. BIT·FTA 등 국제협정 성안 및 법률지원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심인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투자·통상분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8월 국제법무국이 신설되면서 구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에 흩어져 있던 협정 관련 업무를 신설 국제법무지원과가 통합하여 담당하면서 협정업무의 일원화와 그로 인한 국제규범 선진화의 시너지에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대한민국-세르비아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 등 여러 협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 총 15회 참여하여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디지털, 분쟁해결 등 6개 유관 분야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체결 협정의 해석 등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타 부처의 자문 요청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총 18회 제공하는 등, 명실공히 정부부처의 법률자문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향후에도 법무부는 투자에서 통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제법무 분야에 걸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 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관계부처의 법률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여 종합적 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FTA와 BIT 등 협정의 제·개정 협상이 재개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각종 국제 현안에 기체결 협정의 해석이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등 국제법적 쟁점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축적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 표 2-101 | 2023년도 법률자문 및 협상 참석 현황(32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3. 17.	한-UAE BIT 적용범위 관련 관계부처·기관 회의 참석	외교부	검사 양준열 사무관 심인혜
2	4. 24. ~ 4. 28.	한-세르비아 BIT 제정 제2차 협상 참석	외교부	검사 양준열 사무관 심인혜
3	4. 5. ~ 4. 7.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SECA)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검사 양준열
4	5. 31. ~ 6. 2.	한-UAE BIT 개정 제5차 협상 참석	외교부	검사 양준열 사무관 심인혜
5	7. 18. ~ 7. 19.	한-멕시코 BIT 개정 제8차 협상 참석	외교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6	8. 18.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디지털경제 분과) 대비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7	8. 23.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SECA) 지식재산권 챕터 협정문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8	8. 25.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공식협상(지식재산권 분과) 대비 협정문 초안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9	9. 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 참석(관세 및 무역 원활화 분과)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0	9. 5.	한-UAE CEPA 제1차 공식협상(서비스 분과) 대비 협정문 초안 및 UAE Request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11	9. 13. ~ 9. 17.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 참석(디지털경제 분과)	산업부	검사 이성직 사무관 심인혜
12	9. 17. ~ 9. 20.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공식협상 참석(지식재산권 분과)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3	9. 25.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관련 국내 입법 소요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4	9. 26.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SECA) 지식재산권 챕터 협정문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5	10. 2.	한-UAE CEPA 제2차 공식협상 참석(서비스 분과)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16	10. 10.	한-아르헨티나 투자보장협정(BIT) 해석 관련 1차 검토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17	10. 12. ~ 10. 13.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사전협의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8	10. 13.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공식협상(서비스 분과)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19	10. 15. ~ 10. 24.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6차 공식협상 참석(디지털경제, 서비스 국내규제 및 법률·제도 분과)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0	10. 23. ~ 10. 26.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공식협상 참석(서비스 및 투자 분과)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1	10. 25.	한-아르헨티나 투자보장협정(BIT) 해석 관련 2차 검토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22	11. 3.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공식협상(지식재산권 분과)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3	11. 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7차 공식협상(서비스 국내규제 분과) 대비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24	11. 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7차 공식협상(디지털경제 분과)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5	11. 5. ~ 11. 11.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7차 공식협상 참석(디지털경제, 서비스 국내규제 및 법률·제도 분과)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6	11. 6.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7차 공식협상(법률 및 제도 분과)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7	11. 1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개선협상(지식재산권)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8	11. 21.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공식협상(지식재산권) 대비 검토의견 송부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29	11. 29. ~ 12.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공식협상 참석(지식재산권 분과)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30	11. 20. ~ 11. 23.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회기간회의 참석(서비스 분과, 화상)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31	12. 13. ~ 12. 15.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 제1차 공식협상 참석	산업부	사무관 심인혜
32	12. 28.	한-대만 투자보장협정(BIT) 제정 관련 검토의견 송부	외교부	사무관 심인혜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법무정책과 주무관 임진욱·박혜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국제거래규범 및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법제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므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을 위한 법제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부처 및 기관에서 법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연수사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의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여 개도국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기여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ODA)'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캄보디아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관련 법제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 4월에는 캄보디아 법무부의 법원 연계형 조정 활용 교육 희망 의사를 접수하여 캄보디아 법무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전문가 등을 초청, 한국의 법원연계형 조정제도 및 주요 분쟁해결 사례 공유 등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23. 12월에는 캄보디아 현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의 법원연계형, 행정형 등 조정제도에 대하여 사례와 함께 공유하였으며 캄보디아측의 새로운 제도와 신설 기구에 관한 부분들도 소개받았다.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NADR)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 그림 2-115 | 법무협력사업 및 법제정비지원사업



캄보디아 법무부 초청 세미나



캄보디아 조정 법제 현지 세미나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을 비로소 대면 방식으로 전환 가능 하게 됨에 따라, 상반기에 진행한 캄보디아조정제도 활용방안 연구를 토대로 2023. 4월에는 캄보디아 법무차관 등 고위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캄보디아 측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분쟁해결기구(NADR)를 신설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만 진행되던 조정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함에 따라,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법무부의 법제정비 지원에 따른 결과로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해당 국가의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면 이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편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지원 사업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를 확대하여 아태지역 국가들의 법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법무정책과 공익법무관 양동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나라는 2012. 12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약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다. 위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위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피탈취부모와 해외 중앙당국의 연결, 탈취아동의 한국 입국 사실 확인 및 소재 파악 등 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24. 2월 현재 기존 가입국 103개국 중 65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24. 2월 현재 총 115건을 기록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아동을 탈취당한 부모가 국내 법원에 아동반환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재판예규로 인해 유아인도 강제집행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22. 6월 미(美) 국무부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설명하였고, 2023. 6월부터 법무부, 외교부, 법원행정처, 아동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T/F를 발족하여 2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4. 1월 “유아가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구의 삭제, 집행관의 권한 범위 명확화, 집행보조자 참여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가 제정되었고, 2024. 4월 시행 예정이다.

3.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 국제법무정책과 전문위원 길시온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조정 및 중재 포함 분쟁해결, 운송, 담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관련 국제규범을 도입하여 국제거래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수단으로서 국내 법제 정비 및 선진화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국제해사기구(IMO),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등 주요 국제회의에 지속 참여하여 국제민·상사규범의 성안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법무부는 UNCITRAL 본회의 및 5개 실무작업반(9회), HCCH(2회), IMO 법률위원회(1회), UNIDROIT 총회(1회) 등에 참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HCCH 관할권 작업반 회의(2. 13. ~ 2. 17.)에서 국제적 소송결합 해결규범 마련 문제, UNCITRAL 제1실무작업반 제39차 회의(2. 13. ~ 2. 17.)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공여에 관한 입법지침, IMO 법률위원회(3. 27. ~ 3. 31.)에서 선주책임한도액 개정 필요성 평가 방안, 선원의 공정한 대우 등 관련 정부 입장 개진, UNCITRAL 제4실무작업반 제65차 회의(4. 10. ~ 4. 17.)에서 자동화

계약 및 데이터 계약의 민사법적 쟁점 등에 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국제회의 참석 이후 법무부는 AI를 활용한 계약(Automated contract), 데이터제공계약(Data provision contract), 기술 분쟁에서의 국제중재 활용 등 신기술 활용 거래의 법적 쟁점 및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에 전파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제협약 가입 문제에 있어 국내 법제와의 체계적 정합성과 가입 필요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 가입 검토(3월), 국토부 추진의 철도여객·화물운송협정 가입 과정에서 법률자문 제공(5월) 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제거래 규범 발전 방향에 관한 학계, 국제기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행사(3회)를 개최하였는데, 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와 공동으로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MLETR) 도입에 관한 제3회 인천앤비즈니스포럼(9. 11. ~ 9. 12.)을 개최하여 전자선하증권의 상법상 요건이 엄격하여 국제적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법무부-UNCITRAL 스페셜세션(11. 2.)에서는 ISDS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아태조정컨퍼런스(12. 4.)에서는 싱가포르조정협약상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국제 민·상사규범 관련 의제 발굴 및 성안 과정부터 채택 및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국내 전파 및 국내 법규 제·개정 작업 참가,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법무부는 국제조정을 통한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을 재개하여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규범의 동향과 주요 쟁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제회의 준비 및 참석, 관련 국제동향 국내 전파, 법제 제정 및 개정 작업 착수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국제거래 촉진, 국내법의 국제경쟁력 강화, 법제 정비 및 선진화 등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

| 표 2-102 | 2024년도 국제민·상사규범 관련 국제회의 일정 및 안건

기구	회의명	주요 안건	일정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UNCITRAL)	본회의	선거 및 의제 채택, 보고서 채택(창고증권 관련 모델법 및 입법지침 초안, 기술 관련 분쟁해결 및 조정에 관한 모델조항 초안 등)	(제57차) 6. 24. ~ 7. 5.

기구	회의명	주요 안건	일정
	WG1	창고증권 관련 모델법 및 입법지침 초안 검토	(제41차) 2. 5. ~ 2. 9. (제42차) 9. 2. ~ 9. 6.
	WG2	기술 관련 분쟁해결 및 조정에 관한 모델조항 초안 논의	(제79차) 2. 12. ~ 2. 16. (제80차) 9. 30. ~ 10. 4.
	WG4	계약에서의 AI를 활용한 자동화 논의	(제67차) 9. 2. ~ 9. 6. (제68차) 11. 18. ~ 11. 22.
	WG5	국제도산의 준거법,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수 관련 법적 쟁점 논의	(제64차) 5. 13. ~ 5. 17. (제65차) 11. 25. ~ 11. 29.
	WG6	복합운송증권 관련 협약 마련을 위한 조항 초안 검토	(제44차) 5. 6. ~ 5. 10. (제45차) 12. 9. ~ 12. 13.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CCH)	-	국제사법, 국제가족법(아동탈취, 아동입양, 아동부양, 성년보호 등)	(아동탈취) 6. 18. ~ 6. 21. (아동보호) 9. 24. ~ 9. 27.
국제해사기구 (IMO)	법률위원회	선원의 공정한 대우, 허위선박등록 등 논의	4. 22. ~ 4. 26.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총회	AI, 디지털 자산, 우주 관련 자산 금융 등 논의	12. 13. ~ 12. 15.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가. '론스타 사건' 판정 후속조치(판정 정정신청, 취소신청 및 집행 대응)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양준열·사무관 김영옥·공익법무관 노주영

1) '론스타 사건'의 경과 및 판정선고

LSF-KEB v. Republic of Korea, 일명 '론스타 사건'은 2012. 11. 21. 미국 사모펀드인 론스타 펀드(Lone Star Fund)의 8개의 자회사(이하 '청구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하 'BIT')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 사건이다.

청구인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매각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BIT상 공정·공평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국세청이 자의적·차별적으로 한-벨기에 조세조약 상 면세혜택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46.8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을 구성하고 효율적·체계적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리로펌과의 협의, 서면검토, 증인 등 확보,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등 사건 대응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론스타 사건은 2016. 6. 2. ~ 6. 3. 진행된 최종 심리기일 등, 총 4회의 심리기일을 거쳐 2022. 6. 29. 절차종료가 선언되었으며, 중재가 제기된 지 약 10년 만인 2022. 8. 31.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선고되었다.

중재판정부는 본 사건에서 문제된 관할·금융·조세 3가지 주요쟁점에 관하여 일부 금융 쟁점을 제외한 관할과 조세 쟁점에 대하여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측 주장 손해액 중 4억 3,300만 달러를 손해로 인정하되, 헐값매각·주가조작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청구인의 형사책임이 손해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당국과 청구인 과실을 동등하게 분배(50%)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및 2011. 12. 3.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 측이 손해배상을 주장한 금액 약 46.8억 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만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95.4%에 해당하는 44.6억 달러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승소하였다.

2) 판정 정정신청 및 정정결정

정부는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명령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여 2022. 10. 15. ICSID 협약 제49조 제2항에 따라 배상원금 중 48만 1,318달러의 감액을 구하는 정정신청을 제기하였다.

2023. 5. 9.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정정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한화 약 6억 3,534만 원)가 감액되었다. 즉, 중재판정부가 판정문 상의 오류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3) 판정 취소신청 제기

2022. 8. 31. 판정이 선고된 이래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2023. 9. 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한편, 론스타 측도 2023. 7. 29.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4) 판정 집행 대응

정부는 2023. 9. 1. 원 판정의 취소를 신청함과 동시에 판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고, 2023. 9. 12. ICSID 사무총장은 '본 취소신청 절차를 담당할 취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원 판정의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하였다.

그 후 2023. 11. 1.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판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원 판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하였고, 2023. 11. 22.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구술심리 등 공방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개진하였다.

위와 같은 공방 결과, 2023. 12. 16.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절차에서 서면공방 및 구술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 '엘리엇 사건' 판정 후속조치(판정 해석·정정신청, 취소소송 대응)

국제투자분쟁과 검사 양준열·서기관 엄영신

1) '엘리엇 사건'의 경과 및 판정선고

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일명 '엘리엇 사건'은 2018. 7. 12. 미국 사모펀드인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 사건이다.

청구인은 구(舊)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본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여,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총 약 7.7억 달러(한화 약 9,91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을 구성하고 효율적·체계적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대리로펌과의 협의, 서면검토, 증인 등 확보,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등 사건 대응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였다.

엘리엇 사건은 2021. 11. 15. ~ 11. 26. 진행된 구술심리를 거쳐 2023. 3. 14. 절차종료가 선언되었으며, 중재가 제기된 지 약 5년 만인 2023. 6. 20.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선고되었다.

중재판정부는 관할 성립 여부와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① 손해배상 원금 53,586,931 달러(약 687억 원), ② 배상원금에 대한 2015. 7. 16.부터 판정일까지 연 5% 비율의 복리 이자('판정 전 이자', 약 326억 원), ③ 배상원금에 대한 판정일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5% 비율 복리 이자('판정 후 이자'), ④ 엘리엇 측 법률비용 중 일부인 28,903,188.90달러 및 그 이자(연 5%)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 7.7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2) 판정 해석·정정 신청 및 결정

정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여, 2023. 7. 18.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2023. 9. 1. 판정 해석·정정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판정 정정 신청 관련,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2022.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 받은 추가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종전 약 687억 원에서 약 622억 원으로 정정되었으며(약 65억 원 감액), 판정 전 이자는 약 326억 원에서 약 294억 원으로 정정되었다(약 32억 원 감액).

한편 이자의 지급 방법(통화)에 대한 정부의 판정 해석 신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원 판정의 주문과 판정 이유를 종합하면 배상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2023. 6. 20.)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의미상 모호함이 없다'는 취지로 정부 측 신청을 기각하였다.

3) 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인정하였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상 ISDS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귀속)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정부의 조치'라고 판단한 것을 비롯, 위 세 요건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내렸고, 관련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영국 중재법이

정한 판정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4) 엘리엇 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엘리엇 측은 2023. 8. 12. 정부가 제기한 위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2023. 10. 18. ①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②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또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6,500 파운드(한화 약 4,370만 원)를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앞으로 정부와 엘리엇 양측은 취소소송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개선

● 국제투자분쟁과 사무관 박소영·김영옥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의제 검토업무를 수행하는 등 ISDS 제도 개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2023년 UNCITRAL 제56차 본회의, 제3실무작업반 제44차·제45차·제46차 공식 회의 및 회기간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고, 총 5회의 의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23. 11. 2. UNCITRAL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UNCITRAL RCAP)와 공동으로 ISDS 제도개선을 주제로 'ADR 스페셜 세션'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국, 일본 등 총 9개국 정부 대표단, 국제분쟁해결기관 관계자, 변호사 및 교수 등 다양한 ISDS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였고, ISDS에서의 조정, 행동규범, 자문센터 설립, 분쟁의 예방 및 완화 등을 주제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 표 2-103 | 2023년도 회의 참석, 검토의견 제출 및 국제세미나 개최 현황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6.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4차 회의 의제 검토의견 I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박소영 전문위원 김아주
2	1. 10.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4차 회의 의제 검토의견 II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박소영 전문위원 김아주
3	1. 23. ~ 1. 27.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4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박소영 전문위원 김아주
4	3. 7.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5차 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사무관 박소영 전문위원 김아주
5	3. 27. ~ 3. 31.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5차 공식회의 참석	외교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6	6. 28.	UNCITRAL 제56차 본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사무관 박소영
7	7. 3. ~ 7. 7.	UNCITRAL 제56차 본회의 참석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박소영
8	9. 7. ~ 9. 8.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6차 회기간 회의 참석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9	9. 22.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6차 회의 의제 검토의견 제출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문희조 사무관 박소영 사무관 김영옥
10	10. 9. ~ 10. 13.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제46차 회의 참석	외교부	서기관 엄영신 사무관 김영옥
11	11. 2.	법무부-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CITRAL RCAP) ISDS 제도개선에 관한 'ADR 스페셜 세션' 공동 개최	법무부	국제법무국

| 그림 2-116 | ISDS 제도개선에 관한 ADR 스페셜 세션



ISDS 제도개선에 관한 ADR 스페셜 세션('23.11.2.)

2)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 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는 자문센터의 설립, 항소체제, 상설법원, 절차규칙 개선 등 ISDS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UNCITRAL 본회의 및 제3실무작업반 공식회의 등 ISDS 제도개선 관련 국제회의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ISDS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대상 국제투자분쟁 예방 적극 지원

● 국제법무지원과 주무관 이상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다수 유치함에 따라 사업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ISDS 사건 진행에 따른 막대한 국익손상, 국부유칠 방지를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제법무국 신설 시 국제투자분쟁(ISDS)의 대응과는 별도로 '예방' 업무를 독립·분리하여 국제법무지원과에서 전담하도록 체제를 개편하였다. 기존에 ISDS 예방교육에만 국한되었던 예방업무를 확장하여, ①협정업무 실질화 ②정부부처·기관 등 법률지원 ③대외협력 재개 ④훈령 실질화 등으로 다각화하였다.

구체적으로, ①협정업무 실질화 관련해서는 모델 협정문 마련을 위하여 10년 간의 ISDS 피소사례들 분석을 하고, 이를 ISDS의 근거법인 BIT, FTA 투자챕터 협상 시 적극 활용하여 법률자문 기능을 집중 및 강화를 추진하였다.

②정부부처·기관 법률지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제분쟁 현황 파악을 하는 모니터링을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악된 사안들에 관하여 필요 부처에 법적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ISDS 관련 경험이 부족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ISDS 진단 및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하기 위해 제작 중에 있다.

* 부처·기관별 주요 국제법무 및 국제분쟁(소송·중재 등) 현황 파악 협조 요청 공문 총 63곳 대상으로 발송(10. 4 ~ 10.) 및 필요부처에 다수 법률지원 제공

③대외협력 재개와 관련해서는, 외국 투자자의 고충 접수창구인 산업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민원 접수 시 대응 및 처리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④「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가능 사안 통보의무"*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발생 가능한 ISDS 이슈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원활히 공유하여 향후 분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대통령 훈령은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단장(법무실장)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신설된 국제법무지원과를 기반으로 최근 UN 등 국제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분쟁 예방 및 조기 완화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부처 ISDS 예방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기된 바와 같이 다각화된 예방 업무 등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잠재적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정부부처·지자체 등 국제소송 및 법률지원

가. 정부 관련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현안의 법률지원

● 국제법무지원과 행정사무관 황현준

1) 추진 배경 및 현황

최근 우리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과 관련된 국제적 민·상사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 실생활과 국고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소송, 법률현안에 대하여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 법률분쟁에 관한 우리 정부의 법률자문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3. 8. 8.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출범하였고, 신설된 국제법무지원과에서 정부부처, 지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 현안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및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23. 10월부터 각 부처, 지자체 등에 산재되어 있는 국제소송 및 국제분쟁 현황을 조사하여 소송지원 등을 위한 1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① 소가 1,000억 원 이상, ② 소송결과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사안, ③ 사회적 파급효 및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담당 부처를 도와 국외증거 및 법리분석, 비교법적 법률자문, 직접 소송수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빅테크 기업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소송, 방위산업 분야 국제소송 등 약 9건의 사건에서 관계부처와 「국제소송지원TF」를 구성하여, 국제분쟁 준비단계부터 판결확정 시까지의 전 과정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구체적 추진계획

향후 계획으로, 연중 분기별로 각 정부부처·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우리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국제법무 현안, 법률지원 필요 사항을 정기 모니터링하는 한편, ① 부처별 국제현안 및 해외규제에 대해 법률자문 제공, ② 관련 해외법령, 처분례, 판례분석 등 실시, ③ 국제소송에서 처분청을 도와 공동 수행 및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실'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나아가, 늘어나는 다양한 부처별 국제분쟁과 현안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국제법무DB를 구축하고, 범부처적 공유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및 국부를 훼손하는 국제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여할 계획이다.

제9절 교정업무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소년수용자 학과교육 등 처우 강화

●사회복귀과 교정관 정희동

1) 추진배경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와 지리적 한계로 인한 외부 자원 활용의 어려움 등에 따른 학과교육 미흡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2022. 10. 26.)

2) 추진경과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17세 이하)을 통해 학과교육 중점 운영 및 생활·학습 환경을 개선('23. 3.)하였고, 김천소년교도소에 대학진학준비반 및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3) 주요성과

수도권 소년전담 교정시설(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및 필수 검정고시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여 학령기 수용으로 인한 학업 단절이 출소 후 또 다른 낙인과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023년도 검정고시 결과 46명 응시 및 42명(중졸 6, 고졸 36) 합격

| 그림 2-117 | 만델라 소년학교 개교식 (2023. 3. 2.)



현판식



학과 선생님 소개

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복지과 시설사무관 최명근

1) 추진배경

2012년 이후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와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출소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확인'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교정본부는 2023년 말까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20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663억 원을 편성하여 거창구치소 신축, 원주교도소 이전 등 아래의 사업을 추진하여 과밀 수용 해소에 기여하였다.

| 표 2-104 | 2023년 국유기금 사업 현황

(단위 : ㎡, 원)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시설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2023예산 (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이전	원주교도소	'14	'25	200,319	41,709	157,665	10,522 (공사비 등)	공사
	창원교도소	'18	'27	237,558	45,817	199,692	6,171 (공사비 등)	설계
	전주교도소	'12	'27	198,348	54,545	187,404	2,971 (설계비 등)	설계
신축	거창구치소	'15	'23	160,818	19,844	96,146	사업완료	완료
	경기북부구치소	'20	'25	116,000	38,524	114,357	1,720 (설계비)	설계
	화성여자교도소	'20	'25	41,930	19,780	72,301	5,803 (공사비 등)	설계
	태백교도소	'22	'28	444,187	52,717	200,127	4,525 (설계비)	설계
	남원교도소	'22	'27	150,600	21,185	72,936	2,036 (설계비)	설계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시설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2023예산 (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수용동 증축	울산구치소	'21	'24	현 부지내	2,000	6,132	1,930 (공사비 등)	공사
	제주교도소	'21	'24	〃	2,000	5,908	1,735 (공사비 등)	공사
	진주교도소	'22	'24	〃	1,800	5,456	2,080 (공사비 등)	공사
	군산교도소	'22	'24	〃	1,800	5,456	2,080 (공사비 등)	공사

또한, 과밀해소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를 별도로 확보하여 제주(교)·강릉(교) 등 7개 기관의 유휴부지 내에 수용공간 확충 사업을 시행하여 수용정원 928명을 확대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 그림 2-118 | 교정시설 신·증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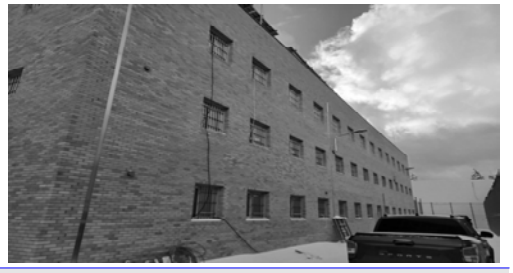
거창구치소 개청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정율 15%)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설·이전 및 수용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교정시설 이전 신축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래와 같다.

| 표 2-105 | 교정시설 신·증축 사업계획

(단위 : ㎡, 원)

구 분	기 관 명	사업기간		시설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24예산 (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신축	태백교도소	'22	'28	444,187	52,717	200,1277	7,848	설계
	남원교도소	'22	'27	150,600	21,185	72,936	1,730	설계
	경기북부구치소	'20	'25	116,000	38,524	114,357	1,117	설계
이전	원주교도소	'14	'25	200,319	41,709	157,665	38,044	공사
	전주교도소	'12	'27	198,348	54,545	187,404	3,147	설계
	창원교도소	'18	'27	237,558	45,817	199,692	6,775	설계

또한, 교정본부는 2024년도에 영월(교), 춘천(교), 울산(구) 등 구내 유휴 부지를 이용한 수용공간 확충(일반회계 사업)을 통해 수용환경 개선 및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목표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다.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 수립

● 의료과 교정관 임종오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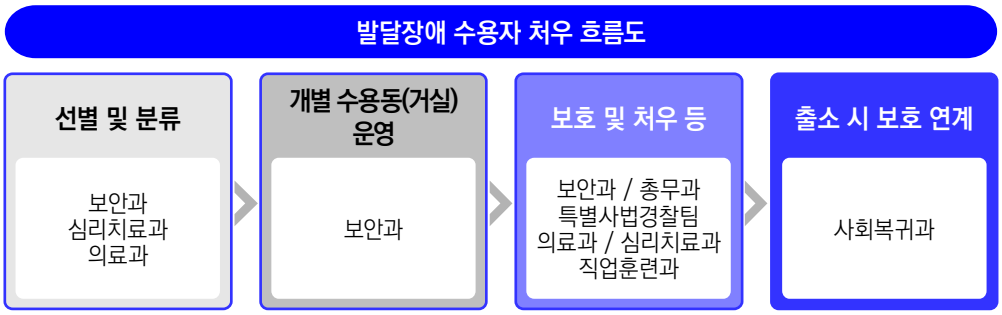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비장애 수용자의 부당한 대우, 폭행, 성적 학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예방과 보호 및 형사·행정 절차상의 권리보장 필요성에 따라 발달장애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 매뉴얼을 수립하였다.

2) 추진경과 및 성과

2023년 8월 전문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감수를 통해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을 수립하고, 2023년 9월 각 교정기관에 매뉴얼을 시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별 및 분류, 개별 수용동(거실) 운영, 상담 및 조사·형사 사건 전담 직원 지정, 직원 대상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있으며, 발달장애 수용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

| 그림 2-119 |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흐름도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흐름도

라. 수형자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운영

직업훈련과 교정관 권익광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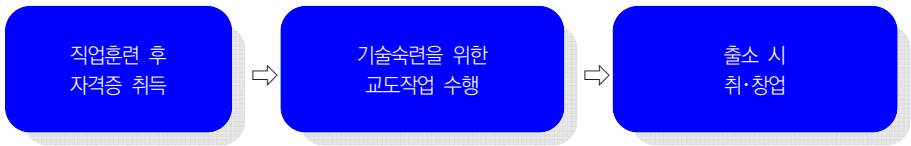
문화콘텐츠 강국인 한국의 새로운 디지털 문화 산업환경에 맞춰 수형자 특성에 적합한 신직종을 도입하고 수형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 직업훈련부터 출소 후 사회정착까지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단계적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수형자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을 운영하게 되었다.

* 국가기관 – 대학 산학협력단 – 민간기업 3자 협업을 통해 수형자 직업훈련 ⇒ 교도작업 ⇒ 취·창업을 연계하는 수형자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2) 추진경과

2022년 7월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신설・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상・하반기 자격증 취득 6개월 양성 훈련과정을 2회 운영하였으며, 양성 훈련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 훈련과정을 상반기에 별도로 진행하며 다수의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2023년 6월 민간 사업자인 「WM스튜디오」와 신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하반기에는 교도작업 연계 숙련훈련을 진행하였다.

| 그림 2-120 |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흐름도



웹툰 크리에이터 자격증 취득

웹툰 제작 교도작업 부과, 실무능력 배양 및 자립을 위한 사회정착금 마련

지역사회 협력 및 취·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사회정착

| 그림 2-121 |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웹툰 직업훈련 모습



공모전 대상 수상작

3) 정책성과 및 평가

2023년 한 해 동안 30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설된 웹툰 크리에이터 3급 자격시험에 27명의 수형자가 응시하여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기술 우수 수형자 12명이 교도작업을 통한 숙련훈련을 실시하며 실무능력을 배양하였고「안양예술공원 시민아트 공모전」대상 등 다수의 웹툰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 해당 훈련은 자격증 취득, 기술 숙련 및 사회정착금 마련, 출소 후 취·창업까지 지원하는 수형자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 국민 중심의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가.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전국 지방교정청 동시 개최

● 직업훈련과 교정관 박성현

1) 추진배경

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동안 서울(수도권) 중심의 전시회 개최로 지역별 균형 있는 대국민 교정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는 지방교정청이 주관하여 전국 4개 지역에서 전시회 준비를 하였다.

2) 추진경과

2023. 10. 26.부터 3일간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전시장에서 수형자 및 직원이 제작한 공예작품, 생활공예품, 문예작품 736점과 교도작업제품 331점을 전시하였고, 국화 전시, 교정 체험 부스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정행정을 홍보하였다.

| 그림 2-122 |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서울특별시 금나래아트홀



대구광역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광주광역시 송정역 야외광장

3) 정책성과 및 평가

수형자들의 작품에는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며 밝은 내일을 소망하는 진심이 담겨 있으며, 교정작품전시회는 많은 국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접견 예약 필수제 개선

보안과 교정관 문우식

1) 추진 배경

2021. 1. 1.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평일접견 예약 필수제를 시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이 회복되면서 접견수요가 대폭 증가하였고, 미결수용자 비중이 높은 일부 대형기관을 중심으로 민원인들이 접견 예약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접견 예약 필수제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2) 추진 내용과 성과

2023. 12. 11.부터 각 기관별 자체 계획안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접견 예약 필수제 개선안을 시행 중이다.

【접견횟수 증가】

- 회차 준비시간 및 접견시간 단축 등을 통한 접견횟수 증가
- 일반접견실 비율 확대

【당일접견 대상자 확대】

- 신입수용자 가족, 고령자, 장애인, 장기간 접견을 하지 못한 수용자의 가족 등 당일접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인
- 접견 예약제로 인하여 장기간 접견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일 접견을 적극 실시 또는 차후 예약을 돕는 등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

【변호인접견 및 공무상접견 개선】

- 긴급한 사유로 변호인접견이 필요한 경우에 빈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

3) 향후 추진 계획

교정본부는 스마트 접견 확대 등을 통하여 수용자의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보안과 교정관 문준영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지난 2003년에 구축된 기존 교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총사업비 312억원을 투입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0년부터 3년간 총 3차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개발·도입(1차 사업),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차 사업),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도입(3차 사업) 등을 핵심 목표로 완료된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사업】(2020. 3. ~ 2021. 5.)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개발·도입
- 민원인 키오스크(KIOSK) 개발 및 시범운영 등

【2차 사업】(2021. 6. ~ 2022. 2.)
-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구축(태블릿PC 도입)
- 민원인 키오스크(KIOSK) 전국 교정기관 확대 구축
- 급양 및 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차 사업】(2022. 8. ~ 2023. 2.)
-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확대 구축(태블릿PC 확대, 스마트폰형 도입)
- NFC 기술을 활용한 수용관리 방안 도입
-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개발 및 시범운영 등

3) 향후 추진계획

2024년에는 2020년부터 시작되어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스마트폰형 확대) 및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의 확대 시범운영이 예정되어 있다.

향후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동향을 살펴, 필요한 기술 도입을 통해 교정행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그림 2-123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 사업 관련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성(안)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PC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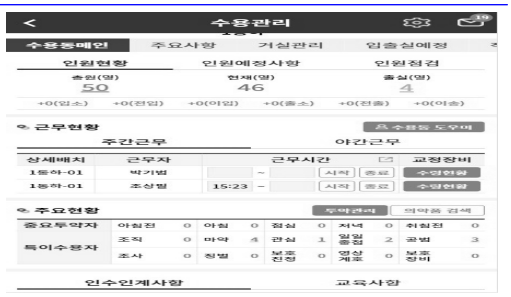


교정정보시스템 업무화면(PC 화면)

| 그림 2-124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2차 사업 관련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초기 화면)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업무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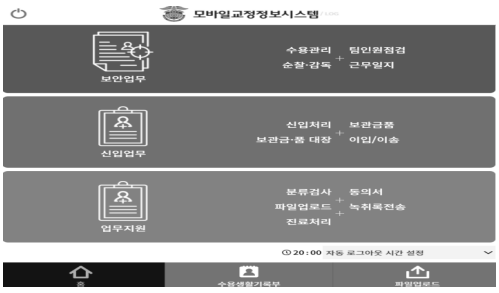


모바일 수용생활기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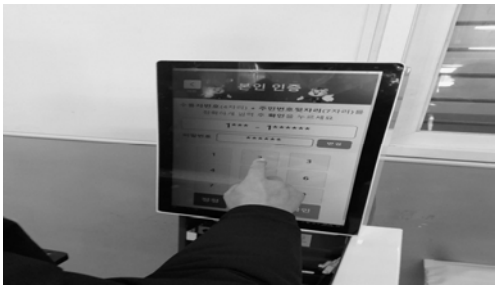


민원인 키오스크(KIOSK)

| 그림 2-125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3차 사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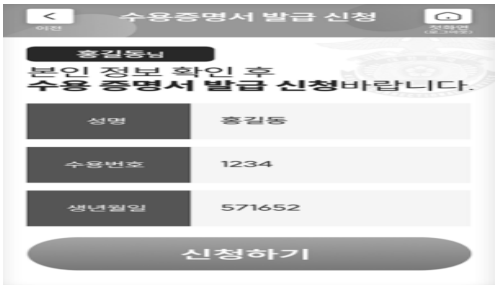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메인화면(개선된 화면)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NFC 기술을 활용한 수용관리 예시 화면



수용자용 키오스크(KIOSK) 예시 화면

라.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교정기획과 교정관 이형직

1) 추진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20. 1. 1.)이 제정되어 2020. 10. 26.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대체복무요원은 소집과 동시에 대체복무교육센터에 입교하여 3주간 신규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 후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2020년 10월 첫 소집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423명을 소집하여, 현재 25개 복무기관에서 1,355명이 복무하고 있다.

| 표 2-106 | 대체복무요원 소집·교육 현황(2023년 실적 기준)

(단위: 명)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50	40	54	-	-	-	39	-	-	-	142	75

교정본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 생활관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여주교도소 생활관 등 5개 기관을 리모델링, 증축하였다. 특히, 지난 2022년 9월에는 영월 대체복무교육센터를 준공하여 대체복무요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기본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시설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관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그림 2-126 |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정착



영월 대체복무 교육센터 전경



영월 대체복무 교육센터 개관식(2022. 12. 7)

시설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개선, 휴대폰 사용 완화 등 처우개선, 대체업무분야 발굴 및 확대,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개정 등 효율적인 대체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처우 개선, 복무관리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대체복무제도 정착을 도모하였다.

3) 향후계획

2024년도에는 신규 대체복무요원 766명을 소집·교육하여 5개 교정기관 및 결원 기관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며, 향후 2026년까지 34개 복무기관(교정기관)에서 1,9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및 복무 적응력 향상교육 등 내실 있는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실태조사를 통한 각 대체복무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복무 부실을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신뢰받는 대체복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소양과 직무역량을 두루 갖춘 대원 양성을 위해 빈틈없는 복무관리와 제도 혁신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현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복지과 교정관 위종진

1) 추진배경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처우 및 직접 계호, 상시화된 야간근무 등 강도 높은 근무환경으로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인적·물적 열악함을 개선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직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법무부장관 지시사항 (2022. 5. 25)	현장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보수·근무환경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본부는 현장 교정공무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관련 예산을 약 45억원 증액한 181억원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수용동 근무자 등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확대, 혹한기 실외근무에 대비한 방한점퍼 신설, 악천후에 적합한 실외근무자실 설치, 야간근무자의 급식비 및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직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직원 정신건강 회복지원 확대, 노후 비상대기소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현장근무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무기기 설치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2006년 17만원으로 인상된 후 동결 상태였던 계호업무수당은 교정공무원 업무의 난도 및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교정공무원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수당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교정공무원 대상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3만원을 신설하여 18년 만에 수당을 인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그림 2-127 | 현장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추진



홍성교도소 비상대기소 리모델링(전)



홍성교도소 비상대기소 리모델링(후)



야간 상황대기실 리모델링(전)



야간 상황대기실 리모델링(후)



실외 근무자실 설치



교정공무원 혹한기 방한점퍼

| 표 2-107 | 2023년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주요내용

사업명	주요 내용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교정공무원)	• 교정공무원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신설(월 3만원)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확대	•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수용동 근무자 등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확대
급식비 단가 인상	• 수시순찰 등 육체활동이 빈번한 야간근무 특성 고려 급식비 인상 ('22년 11,000원→'23년 13,000원)
피복 품질 개선 및 교정공무원 방한점퍼 신설	• 피복류 품질 개선 및 혹한기 실외경비에 대비한 방한 점퍼 신설
정신건강 회복지원 프로그램 확대	• 수용자에 의한 폭행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 특성 고려 정신건강 회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22년 4,400명→'23년 6,896명)
특수건강검진비 단가 인상	• 야간근무자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비 현실화 ('22년 5만원→'23년 8만원→'24년 10만원)
실외 근무자실 설치	• 악천후 등 열악한 실외근무 환경에 적합한 근무자실 설치(92개소 설치)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 노후된 비상대기소 순차적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3년 홍성교도소→'24년 강릉교도소)
현장근무지 사무기기 설치	• 수용동 팀사무실 복합기 설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열악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교정업무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시범운영

보안과 교정관 김세정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처우 향상을 위해 기존 윤번 4부제 방식의 근무 체계를 개선하여 완전 4부제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4부제 정상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시범운영」은 '23년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15개 교정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24년 1월 중 14개 교정기관의 추가 시행을 통해 단계적 확대 시행을 준비 중이다.

【4부제 정상화 시범 운영】(표 2-108 참조)

- (운영 기관) 서울동부구치소 등 15개 기관
- (예정 기관) 14개 교정기관 추가 시행 예정('24. 1. 중)

【4부제 정상화 주요 내용】

- 4부제 정상화 시범 실시 여부 기관 자율 선택
- 야근부 완전 책임제(상황대기자 근무 활용 등) 시행
- 휴무자 자원 근무제 운영
  - (평일) 주간 한계 인원을 설정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외적 허용
  -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자 중 자원 근무자를 우선 배치하고, 자원자가 없을 시 보안일근, 사무 부서 등 지원
- 4부제 정상화 TF를 구축하여 효율적 인력 운용 및 지원사항 등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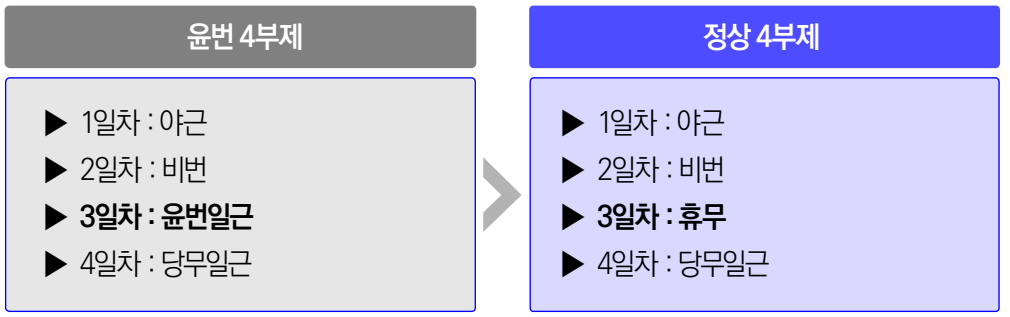
3) 향후 추진계획

교정본부에서는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등의 인력 구조 개편과 함께 지속적인 인력 충원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국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확대 시행'을 위해 중·장기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표 2-108 | 교정기관 4부제 정상화 추진 현황

구 분	계	기관명
시행기관('23. 1. ~)	15개 기관	동부(구), 안양(교), 의정부(교), 원주(교), 강릉(교), 부산(구), 경북1(교), 부산(교), 안동(교), 진주(교), 대전(교), 청주(교), 청주여(교), 순천(교), 제주(교)
시행 예정 기관('24. 1. ~)	14개 기관	남부(구), 남부(교), 여주(교), 창원(교), 대구(구), 경북2(교), 김천소년(교), 울산(구), 통영(구), 밀양(구), 광주(교), 전주(교), 해남(교), 정읍(교)

| 표 2-109 | 보안 야근자 근무 체계 변경



다.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범죄심리사 양성과정 운영

심리치료과 사무관 이현진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 전문상담 체계를 통해 내적 변화를 유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유형 및 수형자 특성에 적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한국심리학회와 협의하여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죄심리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2) 추진경과

2023년 2월에 교정본부와 한국심리학회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죄심리사 1급과 2급 양성 과정 운영을 협의하였고, 7월에 법무연수원에서 2주간의 교육 및 자격검정을 시행하였다. 교육 후 수용자 상담 및 사례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수련과, 9월에 시행한 학술회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서류심사까지 4개월여간의 과정이었다.

| 그림 2-128 | 교정공무원의 범죄심리사 양성 과정



법무연수원 교육



학술회의

3) 정책성과 및 평가

100명의 교정공무원이 참여하였고,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등 심리학 관련 교수님들과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들,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 진행요원 등 총 30여명의 스텝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였다. 단순한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수형자의 심리적·정서적 변화를 위한 열띤 공론의 장이었으며, 교정기관 심리치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과정에서 양성된 범죄심리사 1급 30명, 2급 41명은 수용자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하여 그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이다.

라. 교정시설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도입

● 의료과 교정관 최장훈

1) 추진배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교정기관과 외부 의료기관 간의 의약품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중복처방, 병용금기 등의 우려가 있어서 수용자가 약물 부작용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 그림 2-129 | DUR 사용 화면





교정기관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2) 추진경과 및 성과

교정시설 의료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자체 DU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3년 10월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전교도소, 창원교도소, 장흥교도소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3년 12월 28일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전면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기대효과

의약품 처방 시 DUR 점검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약물 처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수용자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가. 재범고위험군수형자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분류심사과 교정관 양성필

1) 추진배경 및 경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수형자의 출소는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교정본부에서는 이러한 고위험군 수형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2015년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시작으로

광주·대전·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차례로 신설,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심층 심리검사를 통한 정밀분류심사 및 집중개별처우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여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2) 추진성과

2022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가 직제상 정식 기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권역별 통일된 정밀분류심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 표 2-110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현황

구 분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개 원 일	2015. 11. 23.	2021. 7. 19.	2018. 3. 2.	2017. 3. 2.

최신 범죄경향을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마약사범 등을 심사대상에 추가하여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실적이 2022년 1,172건 대비 475건 증가하였으며 교육·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처우방안을 제시하고, 출소 예정자의 석방 전 위험관리수준 평가,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표 2-111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운영실적

(단위: 건)

구 분	합계	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
2022년	1,172	302	452	252	166
2023년	1,647	629	531	297	190

3)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권역별 분류센터 신설을 완료하여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출소 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의 경찰 등 사회 유관기관과 공유·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우범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소년 성폭력사범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심리치료과 교정관 박경식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22. 10. 26. 법무부 발표)과 관련, 소년수형자 중 다수(86.2%)를 차지하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교육 강화차원에서 기존 성인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 적용 방식 등을 개선하여 가족과의 애착관계 강화 등 심리·발달학적 특성을 반영한 소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추진내용

소년 성폭력사범 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아존중감 향상 도모), 동기면담(변화 동기 유발), 좋은 삶 모델(출소 후 좋은 삶 실천 계획) 등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소년 성폭력 범죄(또래 문화가 성범죄로 연결,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심 부족, 피해자의 고통 이해 부족) 및 심리발달학적 특성(왕성한 성적 호기심, 급격한 신체발달,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조절의 어려움, 부모와의 불완전한 애착 및 가족붕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내재, 진로 및 적성, 직업 등에 대한 고민 시기)에 맞추어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였다.

프로그램은 80시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상자의 이수명령 시간,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회기별 운영시간 조정, 개인치료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년 성폭력사범의 흥미 유발을 위해 '칭찬나무', '감사 바구니' 등 신체적 활동을 다양하게 추가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척도검사(SOTEST) 결과에서 재범유발 요인, 치료적 요인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반응성 부분을 살펴보면 만족도는 성인과 함께 했던 기존 방식보다 소년로만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년 수형자의 호응 등이 기존 프로그램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반응성에서는 왜곡된 성의식 수정 및 출소 후에도 건전한 삶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등 긍정적 피드백을 확인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교정본부는 소년 성폭력사범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소년 성폭력사범의 범죄성향 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출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다. 선별적 가석방 실시 및 심사 내실화

분류심사과 서기관 정혜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모범수형자, 여성, 환자, 노인 등 형집행법이 '특별한 처우'를 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한 적극 심사와 함께 살인, 고위험 성범죄 등 강력사범은 사회의 감정, 국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제한 심사를 하였다. 또한, 서류 위주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형자의 개선의지, 심리상태 및 사회복귀 준비상태 등 실질적인 재범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석방 심층면접제도를 확대하였다.

※ 심층면접제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층면접관이 강력사범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대면면접, 심리검사, 담당교도관 면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가석방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가석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강력사범 등의 가석방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 표 2-112 | 가석방 심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비심사인원	53,739	55,407	63,155	71,364	72,319
신청인원	11,328	12,203	13,035	13,794	14,214
허가인원	8,174	7,911	9,390	10,310	9,525

| 표 2-113 | 가석방 심층면접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 분	추천인원	실시인원	실시율
2021년	592	252	42.6%
2022년	1,153	476	41.3%
2023년	1,260	518	41.1%

2) 평가 및 발전방향

교정본부는 고위험 수형자 및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맞춤형 제도 활용, 실질심사 강화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모범수형자·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석방 실시로 사회복귀 촉진 및 과밀수용 완화에 기여하였다.

라. 마약사범 치료·재활 전담조직 마약사범재활팀 신설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김도균

1) 추진배경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 등 마약류 범죄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8일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였다.

대통령 지시사항 (2023. 4. 18.)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반드시 처벌되도록 수사·단속하고,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

2) 추진내용

마약사범재활팀은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정교화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 김진아(서기관) 및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하였으며,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양성, 선진 사례 분석·연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 그림 2-130 |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2023. 6. 26.)





3) 평가 및 향후계획

마약사범의 심리적 변화단계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치료·재활 평가척도 개발, 마약사범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개발 및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

시범운영, 마약사범 상담 강화,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사회재활 연계를 위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2023. 9. 7.) 등 마약사범 치료·재활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마약사범의 재범 방지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마.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 및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시범운영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정성진

1) 추진배경

교정시설의 치료재활 기능 강화 및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의 운영이 필요하였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었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및 출소 후 연계에 이르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추진내용

업무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시설 여건, 전담교정시설로서의 대표성 등을 평가한 결과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 2개 교정기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재활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운영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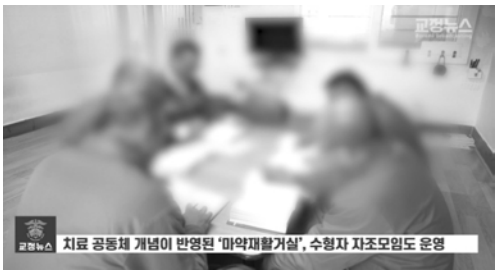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①치료공동체 개념을 적용한 마약재활거실 자조집단 운영, ②회복동기 강화상담, ③12단계 촉진치료* 방식의 회복단계별 개별상담, ④출소 전 중독재활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례관리 사전등록 등 지역 재활시설 연계를 통한 출소 후 회복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출발하여 중독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기까지 총 12단계의 회복과정을 거치는 효과성이 입증된 중독치료 방법

| 그림 2-131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마약재활교육실



마약재활거실

3) 평가 및 향후계획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서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한 결과, 마약사범의 단약 동기 효능감과 물질 의존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광주지방교정청과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각 1개 교정시설을 전담교정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전담교정시설을 총 4개 교정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10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정비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환승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그간 침체되었던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 등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20. 2월부터 중지되었던 환승객 대상 3가지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3.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였다.

*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 재개), △ 인천공항 일반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및 제주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5. 15. 재개)

나)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연장 및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22. 6. 1.부터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이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출국하려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에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호남권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공항과 마찬가지로 무안공항에도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도입을 건의해와 이를 수용하여 '23. 3. 15.부터 동남아시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하여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양양공항 및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는 1년 단위로 그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양양공항 무사증 제도의 경우 강원지역 경제활성화 등 제도 운영 성과가 인정되어 2024. 5. 31.까지 제도 연장이 결정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세계 관광시장 수요 회복 및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환승무사증 제도의 재개는 이러한 관광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아울러, 양양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연장 및 무안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으로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동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체에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리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나.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개선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 관광산업이 회복됨에 따라 외국인 입국 편의를 향상시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자 여행허가제(K-ETA)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적용 면제 ▲ K-ETA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2개 → 8개*) ▲ 단체 신청 가능 인원 확대(30명 → 50명) ▲ 공통항목 자동 입력 기능 제공 ▲ 청소년(17세 이하)·고령자(65세 이상) 의무 적용 대상 제외 ▲ K-ETA 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년 → 3년)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 한국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또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자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전략계획 (ISP)*」을 수립('23. 5.~ 8.)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고도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단체관광객 전용 시스템 구축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 등 수립

2) 평가 및 발전방향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정상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으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표 2-114 | K-ETA 신청 현황

구분	신청건수
2021년	86,211 건
2022년	2,082,358 건
2023년	2,134,136 건

그간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입국불허율과 불법 체류율이 감소하는 등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무사증 국가 국민의 입국 및 체류질서 확립에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K-ETA 허가자에 대한 다양한 사후 분석을 통해 국익 위해 외국인의 선별 및 정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안전한 국경 관리체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 자동출입국심사제도 확대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최재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코로나19로 '20. 1월부터 중단된 한·중 국제여객선이 '23. 8월 운항을 재개함에 따라 '23. 12월부터 평택항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항을 이용하는 소무역상(빈번 출입국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등록 절차를 통해 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시범사업을 통해 소무역상을 포함한 평택항 이용 승객들의 입출국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심사장의 혼잡도가 완화되는 등 항만의 출입국심사 신속화 및 간소화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나) 단기체류외국인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지역 전면확대

'19. 7월 인천공항을 포함한 주요공항 및 부산항에서 만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이 사전등록 없이 출국 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한 이후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 12월 단기체류외국인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지역을 나머지 3개 공항(청주, 무안, 양양)과 3개 항만(평택, 인천, 군산)에 추가 확대 시행하여 만 17세 이상 단기체류외국인이 모든 공항만에서 출국 시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132 | 추진경과



| 표 2-115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 2023. 12. 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설치 대수	247	159	26	10	10	4	8	3	4	9	5	5	4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08.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이래 외국인 이용 대상 확대, 사전등록 절차 생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특히,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국가 간 이동이 회복됨에 따라 전년 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가 27,232,777명 증가하여 3,725% 상승하였다. 전체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 비율은 54.6%로 전년 대비 34.6% 증가하였다. 비대면 심사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 및 이용 가능 지역 확대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표 2-116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입국자	계	93,548,093	14,701,839	4,391,173	19,223,428	68,121,658
	국 민	57,795,389	9,171,423	2,326,774	12,778,752	45,423,313
	외국인	35,752,704	5,530,416	2,064,399	6,444,676	22,698,345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37,697,784	5,490,622	908,914	9,992,181	37,224,958
	국 민	32,093,114	4,729,477	800,626	8,403,293	29,850,937
	외국인	5,604,670	761,145	108,288	1,588,888	7,374,021
전체 대비 자동 이용률(%)		40.3%	37.3%	20.7%	52.0%	54.6%
국민 자동 이용률		55.5%	51.6%	34.4%	65.8%	65.7%
외국인 자동 이용률		15.7%	13.8%	5.2%	24.7%	32.5%

라.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상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2. 1. 1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며 ’22. 1. 13.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였다.

특례시는 그 인구 규모, 자치 권한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준하여 자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23. 12. 14.「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되었던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특례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례시도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2) 평가

특례시에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존중하고 특례시 출범 취지도 반영하는 한편 특례시가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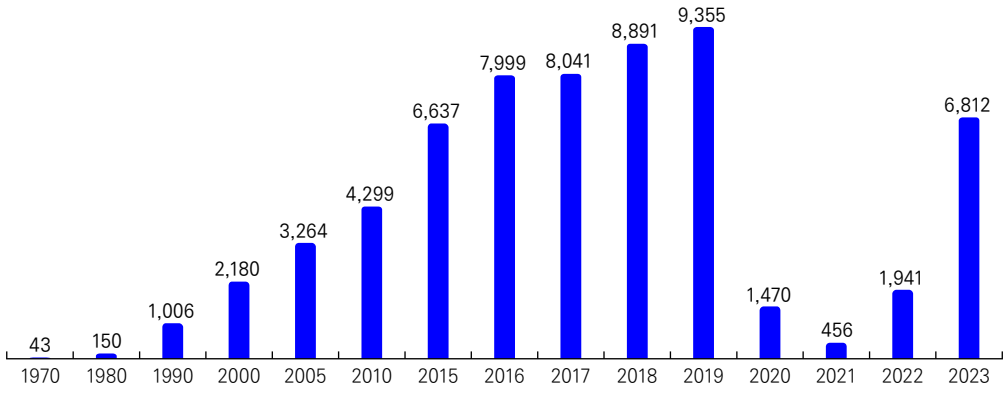
마.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김영오

2023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19,414,228명 보다 250.9% 증가한 68,121,658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45,423,313명으로 전년도 12,889,166명에 비해 252.4%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22,698,345명으로 전년도 6,525,062명에 비해 247.9% 증가하였다.

| 그림 2-133 | 출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만 명)



1) 외국인 입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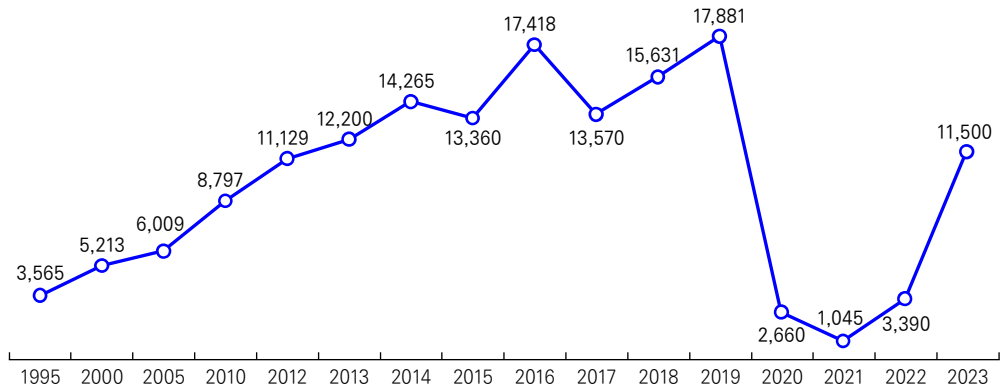
2023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1,500,883명으로 전년도 3,390,009명에 비해 239.3%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일본 약 234만 명(20.3%), 중국 약 221만 명(17%), 미국 약 117만 명(10.2%), 대만 약 97만 명(8.4%) 순이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약 873만 명(75.9%)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약 38.9만 명(3.7%), 유학 약 24.7만 명(2.1%), 비전문취업 약 16.8만 명(1.5%)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34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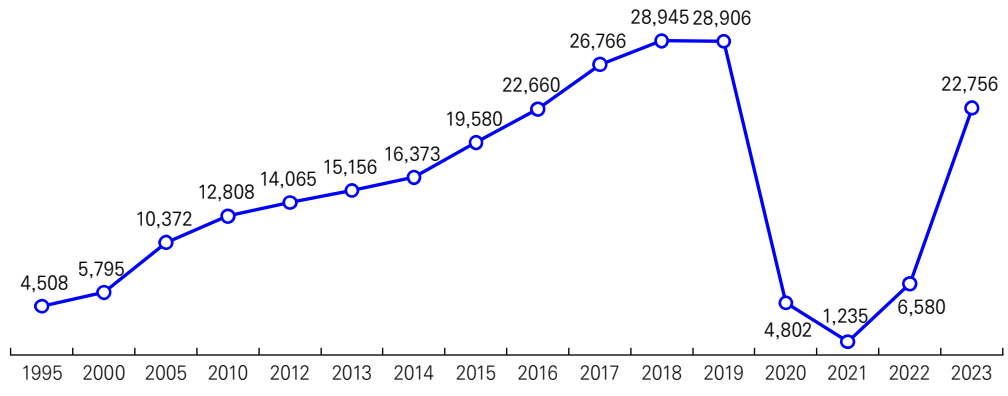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2,756,008명으로 전년도 6,580,145명 대비 432.9%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던 국민 출국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22년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전 세계적 방역 관련 조치 해제로 국민의 출국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다.

| 그림 2-135 |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

체류관리과 사무관 손흥기

1)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법무부는 산업현장에 숙련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2023. 9. 25.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시행하였다.

*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한 후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 그림 2-136 | 법무부 장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브리핑('23. 9. 25.)





2) 추진내용

가)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 확대

법무부 장관이 국가재정전략회의(2023. 6. 28.)에서 발표한 것처럼 '22년 2,000명이었던 쿼터를 '23년 3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숙련근로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점수제 항목 간소화 및 한국어능력 검증 강화

우수한 숙련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11개 이상이었던 평가항목을 5개로 간소화하였으며,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필수화하여 업무숙련도, 직무적합도 등을 검증받도록 하였고, 한국어능력 또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여 국내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 근무처에서의 2년 이상 근무를 전환 필수 요건으로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지속 고용을 지원하였다.

라) 온라인 전자민원 및 전담심사팀 운영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쉽게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자민원을 운영하였으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청주외국인보호소 개방형 공사로 인한 유휴인력들을 활용하여 전담심사팀을 구성하였다.

3) 주요 성과

전년 대비 6.75배 증가한 12,035명의 숙련근로자들이 공급되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 표 2-117 | 연도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숙련기능인력 전환인원	706	983	1,218	1,781	12,035

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E-7)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손흥기

1) 추진배경

2023년 한국 조선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총 14,000여 명에 달할 정도의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 개선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었다.

2) 추진내용

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에 법무부는 2023. 1. 6.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공동)하고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먼저, 법무부 본부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조선소가 있는 5개 지역(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심사 소요기간을 기존 5주 이상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또한,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비율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기존 20%까지)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였으며, 국내 대학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에 취업한 경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하여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숙련기능인력(E-7-4)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인력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연수생이 국내 조선업체에서 기능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인력(E-7)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외국인 연수생의 전문인력(E-7) 전환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였다.

나) 조선업 정책현장 방문

그동안 추진했던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 7월(현대삼호중공업), 11월(HD현대중공업)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조선업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조선업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효과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였다.

| 그림 2-137 | 법무부 장관 조선업 정책현장 방문



현대삼호중공업 방문('23. 7. 10.)



HD현대중공업 방문('23. 11. 24.)

3) 주요성과

이러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 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달성*하여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 '23. 3분기까지 국민 2,020명, 전문인력(E-7) 6,966명, 비전문인력(E-9) 5,373명 등 총 14,359명 투입 완료

| 표 2-118 | 조선분야 외국인 기능인력(E-7) 증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도장, 전기, 용접, 플랜트공	422	1,382	8,100

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박정석

1)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화되었다. 특히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17년부터 정식 시행하였다.

| 표 2-119 |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5 ~ 2016년 (시범운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운영 인원	219	1,085	2,824	3,497	223 (국내 체류자)	1,850 (해외입국자 559 +국내체류자 1,291)	12,027 (해외입국자 10,630 +국내체류자 1,397)	32,837 (해외입국자 32,489 +국내체류자 348)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도 운영인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되어 해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 추진성과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확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증가한 고용주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여, 2023년 전국 132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40,647명을 배정하여 직전년도('22년 19,718명) 대비 2배 이상 배정인원을 확대하였다.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어가에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인력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까지 확대하였고, 계절근로자 운영 방식 중 이탈률이 낮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을 확대하였다.

한편, 전년도 이탈률 5% 이상 지자체와 계절근로자 신규 유치 지자체는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도 강화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성실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브로커 개입 등 제도 운영 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여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

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감소

결혼이민자 등 국내 연고자 초청 방식 확대, 체류기간 상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이탈률은 2.1%로 직전년도('22년 9.6%) 대비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제도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최근 생산가능인구와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대학은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커지고,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중·소상공인들은 구인난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사회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제도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가) 유학비자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

유학비자 발급 시 학위과정은 연간 2만 달러, 지방대학은 1만 8천 달러, 어학연수과정은 1만 달러 이상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했으나, 학위과정은 2천만 원, 어학연수과정은 1천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실제 등록금 차이*를 고려하여 지방대학의 경우 학위과정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과정은 8백만 원으로 완화하였다.

* '23년 지방대학 평균 등록금은 수도권 대학의 80% 수준(출처: 교육부)

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활동 병행 허용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은 국내 유학활동이 제한되었으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대학을 다니며 유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국내 학위 소지자는 가점 20점 인정

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방식 다양화

유학비자 심사 시 한국어능력 입증방식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유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향후 유학생이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라) 시간제 취업제도 개선

구인난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재학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리고, 방학 중에는 유학생이 전문분야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규정된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로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된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비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법무부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적정한 체류관리를 통해 유학생이 재학 중에는 학업활동에 집중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어능력과 전공에 대한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자이민제도 개선

● 체류관리과 사무관 황민하

1) 추진배경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납입된 투자금은 지역 관광·휴양시설의 확충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전용 저리 대출상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의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여 년간 유지된 투자 기준금액(5억 원)이 체류 상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이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투자대상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 시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2종류(관광·휴양시설, 공익사업)의 투자이민제도 운영 중

2) 추진내용

가) 투자 기준금액 상향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이민협의회를 2차례('23. 4~5월) 개최하여 적정 투자금액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종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23. 5월) 또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중 투자금 대비 과도한 복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은퇴투자이민(3억 원)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형 공익투자는 종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고액형 공익투자는 종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였다.('23. 6월)

나) 투자 허용기준 강화

투자기준금액 상향 외에도, 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투자이민 제한기간을 신설하고, 투자금 출처를 확인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3. 12월)함으로써 국내 체류가 적절하지 않은 외국인이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다.

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재원

1)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추진내용

가) 동남아 3개국 단체전자비자* 대상 확대

기존 동남아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단체전자비자 신청 대상은 기업인센티브와

수학여행단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비자발급 편의를 위해 일반여행객까지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 단체관광 요건인 5인 이상 구성원을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단체전자비자 발급 범위를 확대하였다.

* 외국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담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하여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시스템

나) 의료관광 비자 제도 개선

고부가산업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의 지정 상한(기존 50개 기관 제한)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시 심사를 면제하였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일반 유치기관의 외국인환자 초청 상한을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였으며, 외국인환자의 동반자 범위를 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관광 제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중국 정부가 자국민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화 15달러인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여 관광객 국내 유입을 촉진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관광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단체관광객 및 의료관광객 유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한 관광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 체류관리과 사무관 유수열

1)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지역특화형비자'를 1년('22. 10. 4.~ '23. 10. 3.)간 시범운영 하였다.

2)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자격변경, 취업제한 완화 등의 체류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하였다.

가) 지역우수인재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실시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을 제안하고,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우수인재를 추천하면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한다.

나)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하고, 단순 노무 허용 등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제한을 완화하였다.

3) 추진성과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우선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총 28개 기초지자체를 시범사업 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가)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선정심사를 거쳐 총 28개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표 2-120 |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단위 : 개)

선정지자체	지자체명
총 28개 기초지자체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전라남도(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경상북도(고령군,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대구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고성군

나) 시범운영 및 비자발급 개시

2022. 10. 4.부터 2023. 10. 3.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3. 12. 31. 기준 총 1,476명(지역우수인재 1,406명, 외국국적동포 70명)이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았다.

다) 정식사업 공모

2023. 12. 8.부터 2024. 1. 8.까지 '24년도 지역특화형비자 정식사업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4) 평가 및 발전방향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비자 제도와 달리,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추천할 수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언론과 국회에서도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여 정식실시 및 확대를 요구하였다.

1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변경 대상 제한, 한국어능력 및 소득요건 강화, 외국국적동포의 지자체 추천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여 2024년도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체류관리과 사무관 유수열

1) 추진배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계 구인난 및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무부는 한국어가 능통하고 우리 문화에 익숙한 동포들의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여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추진내용

가) 인력부족률 상위 6개 직종에 재외동포(F-4) 취업 허용

'22년도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 3.4% 대비 1.5배 높은 상황이므로 우선하여 취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그동안 재외동포의 취업이 제한되었던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6개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였다.

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 취업제한 해제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산업 부진, 그에 따른 인구유출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동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다.

3) 향후 계획

재외동포(F-4)의 취업제한 완화가 산업계 구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면서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재외동포의 취업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법무부는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른 산업분야의 취업제한 해제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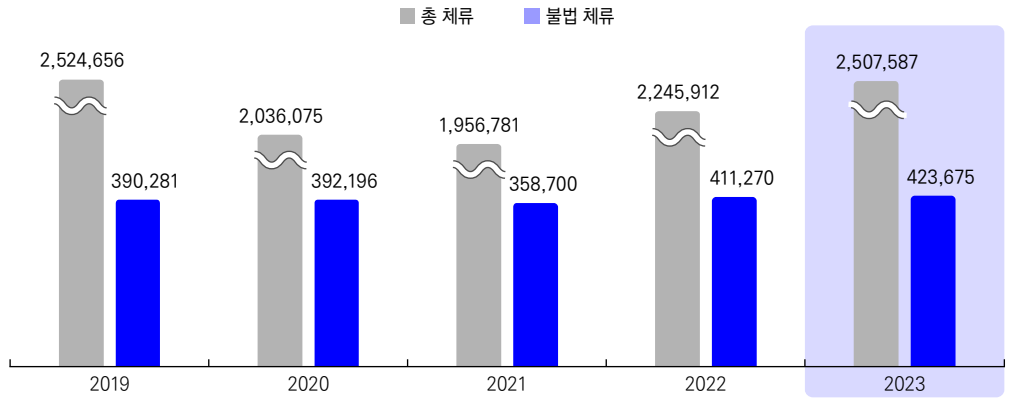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3년도에는 2022. 4월부터 잠정 중단된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입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 그림 2-138 | 총 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이에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하기 위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년~'27년)을 수립하고, 정부합동단속·연중 상시단속·테마별 기획 단속·전국 39개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체류의 원인이 되는 불법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 7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여 효과적인 정부합동단속 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5개 관계부처 530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고용 방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및 불법고용 억제 환경 조성,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홍보, 공익광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정책을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취업 목적 불법입국 시도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적발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 및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특수조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마다 기획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조사 기법 연구 발표 및 공유 등을 통해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방 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범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출입국사범 단속 등 업무 수행 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23년 한해동안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134,083명 가운데, 강제퇴거 31,932명(23.8%), 출국명령 40,538명(30.2%), 출국권고 1,922명(1.4%) 등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총 74,392명이며, 고발된 사람은 1,880명(1.4%), 그 밖에 통고처분(과태료) 후 체류허가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57,811명(43.1%)이었다.

| 표 2-121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고발	기타*
2021	121,225	9,986	29,567	2,922	1,304	77,446
2022	98,350	10,196	28,585	2,067	1,478	56,024
2023	134,083	31,932	40,538	1,922	1,880	57,811

※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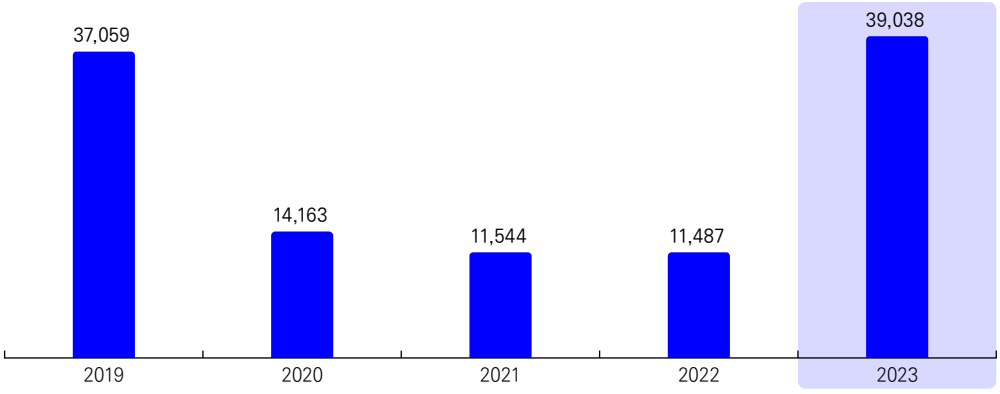
이민조사과 주무관 신철승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노력

정부합동단속 정례화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39,038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그림 2-139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단위 : 명)



2023년 정부합동단속은 각 2개월간 3차례 실시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업종,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상습적으로 불법고용 사업장 및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947명, 불법고용주 4,687명 및 불법입국 및 고용 알선 브로커 41명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표 2-122 |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2	2023
기 간	• 3.6. ~ 5.12. • 9.4. ~ 11.17.	• 2.26. ~ 5.11. • 9.3. ~ 11.16.	• 매 짝수달 각 4주	• 10.10. ~ 12.10.	• 3.2. ~ 4.30. • 6.12. ~ 7.31. • 10.10. ~ 12.9.
참 여 인 원	658	830	899	830	530
불 법 체 류 외 국 인	13,255	16,218	2,806	3,865	20,947
불 법 고 용 주	2,549	2,835	495	483	4,687

※ 2019년 실적산정 방식 변경(전 기관 실적 인정에서 광역단속팀 주관 실적만 인정)으로 실적 감소

※ 2020년 ~ 2021년은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합동단속 잠정 중단 후 2022. 10월 재개

한편,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2차례(1회 : '22. 11. 7. ~ '23. 2. 28., 2회 : '23. 9. 11. ~ '24. 2. 29.) 운영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의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이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였다.

| 표 2-123 |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2 대비 2023 실적
자진출국자	71,663	55,260	32,867	32,026	43,133	11,107↑ (34%↑)

※ 특별자진출국 운영기간(1. 1 ~ 2. 28., 9. 11. ~ 12. 31.)동안 24,329명 자진출국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제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세가 감소되었다.

● 이민조사과 주무관 빈중찬

2) 기획조사 및 마약·테러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 등 합동(집중) 단속

2023년도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 난민신청 알선 및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3,337명(678건)을 적발하여 그중 59명을 구속, 33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472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조치 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페이스북 등에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찬양 글 및 사진을 게시하거나 테러의심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35명 검거, 우즈베키스탄에서 강도범행 후 국내로 도피한 인터폴 수배 우즈베키스탄인 검거, 아프리카 말리, 앙골라 국적 브로커 2명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말리 등 16개국 아프리카인 총 173명을 무역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한 한국인 및 말리·앙골라인 3명 구속, 브라질 등 남미국적 여성 106명을 아이돌 연습생, 모델 등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 후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일당 10명을 적발하여 그 중 4명 구속, "본국에서 범죄자로 오인 받아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등의 허위 난민사유를 작성하여 카자흐스탄인 등 157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12명을 구속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베트남·태국인 등 동남아 국적 외국인들이 주말에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에 모여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다는 첩보가 다수 입수되어 연중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태국인 등 총 45명*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사람 중 마약 판매 및 양성반응자 40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였고, 음성반응자 5명은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 (국적별) 베트남 21, 태국 14, 러시아 5, 카자흐스탄 1, 베트남 귀화자 4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기법연구 발표회, 유관기관·단체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단속을 통해 국민 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표 2-124 | 기획조사 추진 실적

구 분 / 연 도	계		허위서류 제출		허위초청		불법취업		유흥업소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22년	593	1,980	117	132	52	76	132	789	40	278	252	705
2023년	678	3,337	105	242	61	100	192	1,531	91	778	229	686
전년대비(%)	114.3	168.5	89.7	183.3	117.3	131.6	145.5	194.0	227.5	279.9	90.9	97.3

이민조사과 주무관 고성훈

3) 개방형 보호시설 확대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개정 등 인권보호 강화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 6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3. 11월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보호시설로 전환하였다. 보호시설 내 철창을 제거하여 생활 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인터넷PC, 휴대폰 사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소통 및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등 보다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2023. 3월 국가인권위원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2022. 4월부터 운영된 개방형 보호시설의 인권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2023. 8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 등 강제력 행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강제력 행사에 대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인권보호관의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내 소지 가능 물품의 제외 기준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2023년 한해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체불임금 처리 566건 등 총 22,367건의 다양한 고충을 적극 처리하였다.

보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 등 응급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3명을 국군의무사령부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에 파견하여 약 9주 간의 교육 수료 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2023. 11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2급 응급구조사 위탁 교육을 2028년까지 연장하였다.

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반대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역의 사회통합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정책을 국익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지자체 9개 지역(광역 4곳, 기초 5곳)을 대상으로 정책컨설팅을 실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컨설팅을 확대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 사회통합지수를 측정하는 등 균형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최신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지역사회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임(2022. 11월 기준)

이에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뜻을 모아 2023. 12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침서는 부처별로 시행 중인 외국인 대상 주요 정책을 체류단계별, 지원 분야별로 정리하여 부처간 정보 공유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비자 업무 소개, 지자체 위임사무, 관련 법령, 외국인 지원 기관 현황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지침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김포시, 시흥시, 구로구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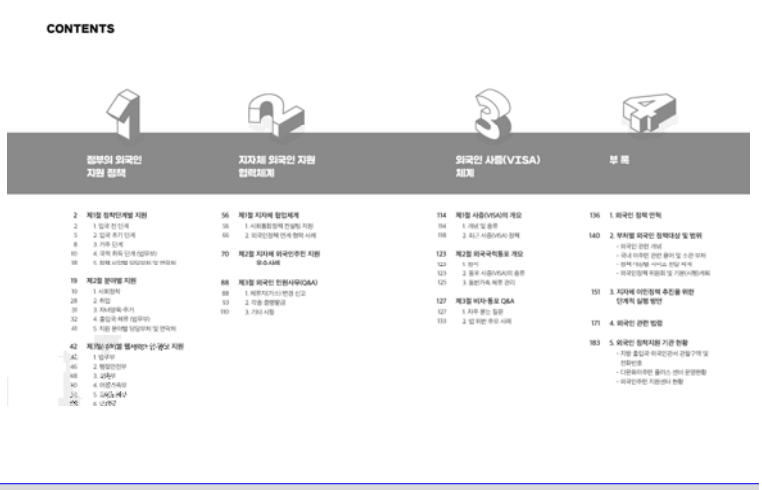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40 | 자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 지침서'



표지



목차

다.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주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7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공유 및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기별 1회 양측이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며, 2023. 6월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관으로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10월에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김포시) 주관으로 제9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 하거나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3%를 초과하는 25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2)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정책 관련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더욱이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41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제8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3. 6. 8.)



제9회 외국인정책협의회(2023. 10. 6.)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비용부담체계 개선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우리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전액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한 예산증액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그간 정부의 시혜적 지원 정책은 국민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이민자의 자립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학습의욕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였다.

법무부는 교육 참여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출입국관리법령에 마련함으로써,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의 학습성취도와 교육효과를 높이는 한편, 유료화로 인한 반발 및 참여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료화는 교육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성실 참여자 등 재수료대상자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다른 교육참여 희망자의 교육기회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직접적 편익을 받는 이민자가 적극적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예산 확충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내용 다양화 및 이민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한편, 교육 참여자의 자립 의식과 책임성 고취를 통해 이민자의 한국 사회 자립을 지원함과 아울러 이민자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민통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마. 외국인력 조기정착을 위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교육 운영

●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선업종 등 산업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내국인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해안에 위치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잔업·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23. 5월부터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회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교육 대상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5사에서 전문인력(E-7) 비자를 소지하고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지만, 비전문 외국인력(E-9)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한국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 기초부터 시작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문화나 제도에 관한 교육까지 진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선업 등 국내 산업현장에 취업한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외국인력이 하루 빨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장기간 산업현장에서 근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입국초기 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조선업 분야 외국인력 대상으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조선업 이외에 외국인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42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범운영 현장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찾아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 기회 확대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법무부는 '22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 기반평가(CBT)를 도입하여 시·공간의 제약이 큰 대규모 집합평가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국내 체류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CBT 평가장이 광명에 위치한 광명시험장 1곳 뿐이어서 지방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평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는 '23. 11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을 대전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고,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 2회 실시하는 대전 CBT 센터의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이민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CBT 센터 추가 개소 등을 통해 지방 거주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및 평가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43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 컴퓨터 기반평가(CBT) 대전센터 개소(2023. 11. 21.)



컴퓨터 기반평가(CBT) 대전센터 개소식



컴퓨터기반평가(CBT)센터 내 평가실

사. 지자체 연계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 이민통합과 사무관 전강섭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농어촌 지역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무단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사회 빠른 적응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별로 개별 시행하고 있던 계절근로자 대상 입국초기 교육을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보다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수요를 파악한 후 '23. 4월 태백시를 시작으로 9개 지자체에 배치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1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기초 법·질서와 한국사회 필수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농작업 안전 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사회 정보 등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적응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그림 2-144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시범 운영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후 기념촬영(태백시)

아.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1)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2007. 7. 18.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 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정하였다.

2008. 5. 20.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2023년에 제16회차를 맞이 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정부 주관의 대규모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에는 소규모 인원만 참여하는 간소화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행사로, 주한 독일 대사, IOM(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등 외교사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민과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5. 19.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 축하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동훈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외국인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59년에 입국하여 44년 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사회적 소외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결혼이민자 출신 '김추리 여사'(중앙기독유치원 설립자, 복수국적)가 올해의 이민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동대문구가족센터 한미영 센터장(개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국제가정문화원 임정민 원장, 강원대학교 한건수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교육실장, 울산동구가족센터 이정숙 센터장과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제주시가족센터, 국제이주민씨앗센터 등 3개 단체가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양주사무소 이민자네트워크 이올가 회장 등 5명과 창원대학교 다문화진흥원(단체)이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장에서는 한국, 미국 등 총 15개 국가 출신 어린이들로 구성된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 공연, 다국적 걸그룹 블랙스완,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 등 공연이 기념식을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이민자 멘토단이 함께 세계인의 날 맞이 무료 떡나눔 행사를 진행하였고, 세계인의 날 연혁, 포상자 소개, 출입국 홍보영상, 인식개선 동영상 등을 상영하는 세계인의 날 주제관을 운영하여 세계인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포토존 설치 및 즉석 인화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행사 참여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기념식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과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 방향

2008년부터 16회 걸쳐 개최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세계인 주간 행사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간 통합에 기여한 공로자를 치하하고, 상생·공존·통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의 장이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그간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 세계인의 날이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갈등 등 이민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기념식 등 관련 행사를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 그림 2-145 |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2023. 5. 19.)



법무부장관 기념사



유공자 정부 포상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합창



폐회 및 기념촬영

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내실화

○ 이민통합과 사무관 홍동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국가의 제도와 문화 등을 소개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경험담 소개,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와 가정폭력 방지 등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에는 결혼이민(F-6) 관련 규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배우자 입국, 체류 가이드북(공통책자)과 각 국가별(7개국) 책자 21,518권을 발행하여 전국 17개 일선 출입국관서에 배부하였고, 교육기관 및 주말 교육 횟수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세부 운영지침과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한국인 배우자로 하여금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의 형성·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차. 결혼이민 관련 제도의 명확화·통일화 추진

● 이민통합과 사무관 홍동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범죄전력이 있거나 공중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혼인당사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를 거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국제결혼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규정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2024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등 결혼이민 자격과 관련한 요건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고의나 중과실 없이 출국명령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에 대한 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을 개정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결혼이민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명확하고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에 대한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가. 국적증서수여식 개최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2018. 12. 20. 시행된 이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약 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재외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 14,431명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특히 올해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하고자 광복회관(여의도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선조들의 강인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에서 각자 원하는 삶을 이루어 내고, 다음 세대에게도 기꺼이 물려줄 만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이번 행사로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3인의 후손 20명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김용남(독립유공자 남인상 선생의 후손) 씨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그때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였고, 김마리나(독립유공자 강상진 선생 후손) 씨는 "아직 러시아에 묻혀 계신 증조부께서 제가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무척 기뻐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은 시행 후 5년을 맞이하였고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귀화자 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적증서 수여식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국익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국적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46 |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2023. 8. 7.)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기념촬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축사

나.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신설 및 국적심의위원회 개편·운영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강성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2020. 9. 24.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적법」 개정(2022. 10. 1.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설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던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관련 부처와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종전의 우수인재 특별귀화 이외에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 심의하도록 하였다.

2023. 5. 25. 법무부는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개최한 이래 연간 총 3회(분과위원회 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년도 위원회에서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99건, 예외적 국적이탈 184건,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153건 등 총 436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또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 지침(법무부 예규)」을 2회 개정하여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생략 근거 및 위원 명단 비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고,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법무부 고시)」도 2회 개정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금년도는 개편된 위원회가 처음으로 운영된 해로 새롭게 심의 안건에 포함된 예외적 국적이탈에 대한 심의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온 한 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남성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통해 국적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강제이주의 아픈 역사를 가진 사할린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통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였다.

한편,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등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우수인재 국적회복 평가기준도 개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체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청서 서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본격 시행

●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 추진배경 및 경과

법무부는 우수한 외국인재에게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카이스트(KAIST) 등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23. 1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취업 등 조건 없이 총장추천서만으로 거주(F-2-7S) 자격을 △3년 후 연구 경력 등이 점수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F-5-S1) 자격을 △논문게재 등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패스트트랙은 2021년 시범운영을 통해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거주(F-2-7S)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이래 2023. 12월 말까지 거주(F-2-7S) 자격을 122건 부여하였다. 또한 패스트트랙 영주(F-5-S1) 신청 대상을 기존 '점수제 거주(F-2-7)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하여 2023. 11월 영주(F-5-S1) 자격 변경(1건)을 최초로 허가하였다.

| 그림 2-147 |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설명회



KAIST 패스트트랙 설명회(2023. 10. 27.)



UNIST 패스트트랙 설명회(2023. 11. 2.)

법무부는 우수인재가 패스트트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 네이버 밴드 'Fast-track program for Talents in Sci & Tec'를 운영 중이고 2023. 10월 KAIST(대전), 11월 UNIST(울산)에서 '찾아가는 우수인재 통합시민교육 및 패스트트랙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189명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교육하고 패스트트랙을 소개하였다.

또한 우수인재에게 단순히 국내 정주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AIST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운영하여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활동 중인 우수인재 및 그 가족들이 지방 출입국 관서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체류기간 연장 및 상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연구소나 기업 등이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민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라.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 제도 개선

국적과 사무관 김종승

1) 추진배경 및 경과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 법률행위이며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등으로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귀화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6,852명, 2020년 16,529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18,091명, 2022년 18,079명, 2023년 18,736명으로 18,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13,187명) 대비 9.43% 증가한 14,431명이 귀화(10,295명), 회복(4,136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귀화 신청 건수의 증가에 따라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의 절차를 개선하였다. 종합평가의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3회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23. 1월부터는 1년 이내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도록 지침을 정비하였고 컴퓨터 시험방식(CBT방식, 광명·대전)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1년 「귀화 면접 심사제도 연구 및 심사문항개발」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단순 지식측정 문항을 지양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관식 문제로 개편하여 면접심사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 귀화 민간면접관 결원발생에 따라 신규 면접관 12명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3회)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귀화신청 시 질병·장애 등 거동 불편자 대상 우편접수 및 국적 민원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하여 귀화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추후에도 거동 불편자 등 노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적민원 온라인 신청제도를 실시하고 지방관서의 업무 비효율과 혼잡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을 모색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표 2-125 | 유형별 국적취득(귀화,회복) 현황

(단위 : 명)

종류별 / 연도별	총 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9	19,952	12,357	16,852	9,914	3,100	2,443
2020	18,899	15,649	16,529	13,885	2,370	1,764
2021	21,160	13,636	18,091	10,895	3,069	2,741
2022	22,789	13,187	18,079	10,171	4,710	3,016
2023	23,754	14,431	18,736	10,295	5,009	4,136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가. 추진배경

'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에 따라 전 세계 난민 발생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94년 난민제도를 시행한 이래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건수는 18,83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 난민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심사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화상면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난민심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난민신청자도 난민신청 단계부터 난민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및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고, 재정착난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업무를 시작하는 등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한 처우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난민인식 개선을 위해 국어사전에 「난민법」상 난민 정의 추가,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실시 및 난민정책 소식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난민법」을 보다 난민협약에 부합하게 하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위해 '23. 12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표 2-126 |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난민신청		15,452	6,684	2,341	11,539	18,837
대기	1차	22,330	14,983	7,649	11,066	20,247
	이의신청	3,254	5,115	4,526	4,888	6,492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나. 추진내용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1) 2023년 난민 신청 및 심사 현황

'94년 난민 업무를 최초 시행한 이후 '23년까지 총 103,759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철회된 25,030건을 제외한 총 51,991건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 결과

총 1,439명에게 난민인정 지위를 부여하고 2,613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여, 총 4,052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3년 난민신청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18,837건으로 전년(11,539건) 대비 63%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심사 대기 건수도 총 20,247건으로 전년(11,066건) 대비 83% 증가하였다.

'23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5,949건으로 전년도 4,907건 대비 21% 증가하였고, 난민인정은 101건으로 전년도 175건 대비 42% 감소하였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는 129건으로 전년도 67건 대비 93% 증가하였다.

2) 「난민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는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13년에는 독립 「난민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시행 이후의 전 세계적 난민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난민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제도 도입, 허위 난민신청 알선자 처벌조항 신설 등 난민제도 남용 방지,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등에 따른 난민신청자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 난민인정자 등의 국내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 12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21.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2. 12월 제40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23. 3월 1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23. 12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국가안보·공공질서 위해자를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 결정할 수 있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난민정책과 사무관 이청훈

3)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심사

'23년 연간 난민신청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보호가 필요한 난민의 심사대기 기간이 길어짐을 우려하여 법무부는 난민인정 가능성이 높은 난민신청자가 있는 경우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신속심사를 허용하였으며, 난민신청 후 장기 대기 중인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심사 지연 사유를 파악, 우선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출신국의 정황 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3년에는 아동 면접 시 유의 사항, 난민 모의 면접 등 실무 중심 교육과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교육,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교육(총 6회),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 표 2-127 | 2023년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참석인원	주요 내용	주최
1차 (3.13. ~ 3. 14.)	32명	• 난민이론 개관 • 난민 모의 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국가 정황정보 수집·분석 방법 등	법무부
2차 (4.24. ~ 4.25.)	29명	• 난민인식 개선 교육 • 아동면접 시 유의사항 • 전문가 초청 강연 – 러시아 정황	법무부
3차 (6.9.)	10명	• 난민이론 및 특이사례 분석 •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 UNHCR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 모의 면접	법무부
4차 (8.16. ~ 8.18.)	19명	• 난민이론 개관 • 난민 모의 면접 및 보고서 작성법 • UNHCR 등 전문가 초청 강연 – 수단 정황 등	법무부
5차 (9.18. ~ 9.19.)	40명	• 난민이론 개관 • 전문가 초청 강연 – 아프리카 국가 정황, 유럽 난민 사례 등	법무부
6차 (12.7. – 12.8.)	32명	• 출입국항 난민회부 절차 및 심사 유의 사항 • 난민전담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완화 심리지원 교육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소송의 이해, 난민 공공외교	법무부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4) 난민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23. 12. 31. 기준 난민신청자의 국적은 131개국으로 국적과 구사 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년부터 난민통역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하여 최종 인증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2. 1월 제1회 인증제를 통과한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한 바 있으며, '22년 제2회 인증제를 시행하여 '23. 1월 25개 언어 148명의 통역인을 추가로 위촉하여 34개 언어 308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보하였다. '23년에도 제3회 인증제를 시행하여 25개 언어 106명을 선발하였으며, '24. 1월 이들이 위촉되면 난민전문통역인은 총 34개 언어 414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9년부터 통·번역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통역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3년에도 4차례에 걸쳐 난민(전문)통역인 108명에 대한 통역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역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난민(전문)통역인에게 난민제도와 통역 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강화 및 통역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그림 2-148 | 2023년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개최(2023. 1. 11.)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윤리선서식)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 참가자 기념촬영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정원

5)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지원 개선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6개월 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참고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며 '23년도 생계비 지원금액은 '22년 7월 기준 긴급복지지원금 수준으로 상향하여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23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5억 7천만 원으로,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28 | 2023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非) 입주자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23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18,838명 중 568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379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23년 7월 난민처우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등 난민의 처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6)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 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임시 정착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23년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 24개국이 재정착난민 수용에 참여하며 국제사회 내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후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약 6개월간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15년부터 '17년까지 1차 시범사업(3년간)을 추진하여 태국 내 임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총 86명(16가족)을 수용하였으며, '18. 6월 사업국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2차 시범사업(2년)'에 따라 18년 26명, '19년 37명, '20년 17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20년 사업 및 '21년 사업을 '22년에 추진하였고, '22년 사업을 '23년에 추진하여 '22년도에 67명(24가구), '23년도에 12명(6가구)을 수용하였다.

| 표 2-129 |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2023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17(5)*	67(24)	12(6)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2019년 수용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입국

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의 숙식·교육·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23년 신규 입소자는 총 77명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착난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3. 3월부터 인천중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착난민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8)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교류·협력 강화

난민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협력·교류를 통해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재정착사업 추진 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받는 등 활발히 교류하여 '23년도에 재정착난민 12명을 수용하였다.

아울러, 국내 난민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난민전담공무원 등 교육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초청 교육을 실시하고 난민조사관 교육을 공동 주최하는 등 난민심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하였다.

한편, '23. 11월 법무부차관은 켈리 클레멘츠(Kelly Clements)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와 면담을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림 2-149 | 법무부차관,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 면담(2023. 11. 29.)



법무부차관,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 면담

● 난민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9) 난민인식 개선

최근 1년간 포털, 뉴스 및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난민'을 주로 가난, 빈곤, 전쟁, 기아 등의 이미지로 인식하는바,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및 차별을 예방하고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 고객별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계 난민의 날(6. 20.)을 맞이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에 「난민법」상 '난민' 정의를 추가(수정) 요청하여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난민'의 법률적 정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난민정책 홍보를 통한 난민 인식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난민소식지(RPM)'를 발간·배포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4년에는 화상면접 시스템을 정식 도입하는 등 난민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국제기구·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난민심사·통역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수언어 등 난민전문통역인 후보군 확대를 위해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계속 시행하는 등 난민심사 인프라를 강화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착사업 정규화 및 다각화를 추진하고 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내 난민인정자 등의 체류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굴하는 등 난민과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교육·의료 등 처우 지원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제도 남용 방지' 및 '난민 처우 강화' 「난민법」 개정안 통과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위해자를 난민불인정 취소·철회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및 통과를 위해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하여 「난민법 시행령」 및 「난민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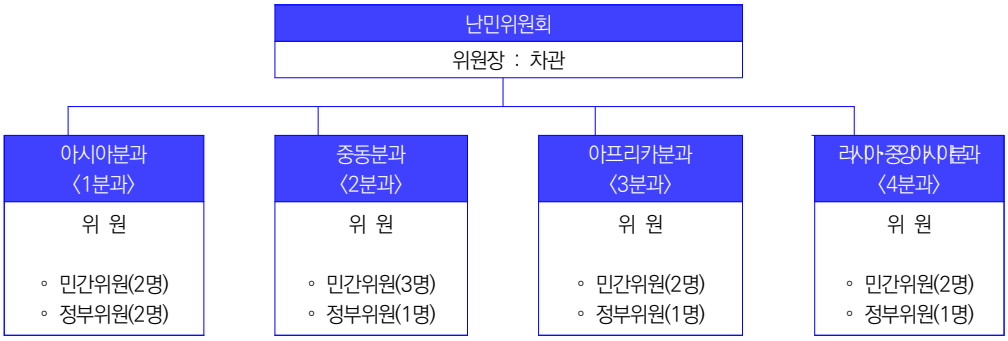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난민심의과는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심의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20. 2. 25. 신설되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에만 해도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약 340건에 불과하였으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95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차 심사기관의 심사결정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의신청 건수도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19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 5,248건에 이르게 되었다.

2023년 한 해 난민심의과는 난민위원회 총 6회, 난민분과위원회 총 44회를 개최하여 약 3,10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의신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 표 2-130 | 난민위원회 조직도(분과위원회별)



| 표 2-131 | 난민 이의신청 및 심사결정 현황

(매년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의신청	5,277	3,723	3,110	4,067	5,955	4,718	3,748	5,248
심사결정	4,276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나. 추진내용

난민심의과 사무관 박병건

1) 난민 이의신청 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그간 이의신청 심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난민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2023. 2월 「난민법 시행규칙」(2023. 2. 27.)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건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난민민조사관의 자격을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교육이수 의무 등 난민조사관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2023. 7월, 난민 신청 다변화 추세에 맞게 아동, 정신건강/의료, 국제법 분야를 신설하고 자문위원을 기존 34명에서 42명으로 증원하는 등 자문위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난민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였다.

2)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2023년에는 난민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쓴 한해였다. 2023. 2월 개정된 「난민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의신청인 의견 청취를 위한 구체적 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사실조사, 추가면접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난민신청자가 난민 이의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난민이의신청 절차 안내 매뉴얼'을 기존 영어, 중국어 등 6개 언어 외 추가 16개 특수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3)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2023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용어사전」를 발간한 것이다. 난민심의과는 사전 발간을 위해 약 1년간 국제기구 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의 용어를 수집한 후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와 5차례의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이민·난민용어사전」 등재 용어의 정확도 및 민감도를 점검하는 등 공동 연구 과정을 거쳐 761개 용어를 「이민·난민용어사전」에 최종 수록하였다.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을 기념하여 2023. 7. 4.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법무부장관과

UNHCR 한국대표부 대표는 향후 사전 개정판 발간뿐만 아니라 난민 정책 및 심사 관련 협력 강화를 다짐하였다.

「이민·난민용어사전」은 총 2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 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높였다. 난민심의과는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업하여 「이민·난민용어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150 |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개최('23. 7. 4.)



법무부-유엔난민기구(UNHCR) 「이민·난민용어사전」 발간 기념식

4) 국가정황정보 관리 체계 강화

국가정황정보(County of Origin Information, COI)는 난민신청자 출신국의 인권, 사회환경, 정치상황 및 법체계, 주요 사건 등에 관한 정보로, 난민심사결정 시 활용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 자료이다.

2023년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해외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등 38건을 한국어로 번역·감수하는 해외 「국가정황정보 번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이를 e-북으로 제작하여 난민심사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3. 12월 그간 난민위원회 분과위 소속이던 국가정황조사관을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담팀으로 신규 편성하고 팀 운영 기준 및 업무 처리절차를 구체화하여 「국가정황정보조사팀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정황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난민심의과 사무관 안재필

5) 난민조사관 연구모임 활동

난민신청자의 출신 국가 및 난민 신청사유는 복잡·다변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난민심사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난민심의과는 2021. 2월 난민조사관 연구모임을 개설하여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2023년 난민조사관 연구모임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친화적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제기구(UNHCR 한국대표부) 및 공익법센터 어필 등 외부 기관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편」에 대한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지역 등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생한 강연 및 의견 공유를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심화된 이해와 의견 공유를 바탕으로 난민조사관의 전문성을 향상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24년에는 국정과제인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국가정황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난민심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정황정보 조사 전문인력을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공신력있는 외국기관 등에서 발간한 국가정황정보 보고서를 번역·감수하여 난민심사에 활용하는 한편 홈페이지 등 대외 공개를 통해 난민심사의 객관성 제고 및 난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6개 언어로 배포해왔던 「난민 이의신청 절차 안내서」를 16개 특수언어 (이란어, 튀르키예어, 몽골어, 미얀마어 등)로 발간·배포하고,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자국어로 작성된 이의신청 안내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SMS)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불복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난민지위심사 안내서를 비롯한 각종 연구자료 등을 발간하고, UNHCR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조사관 교육 사업 등을 정례화하여 난민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

8.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 '27.)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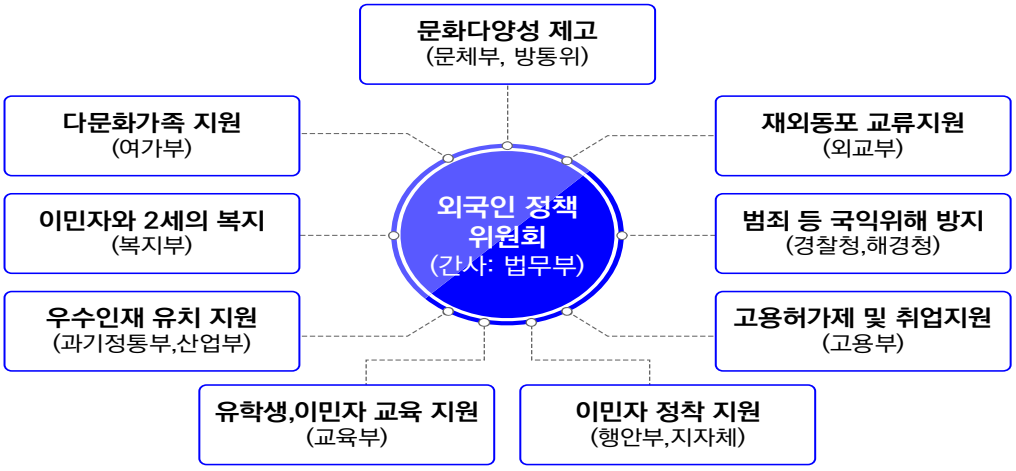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오명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 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2023. 12. 27. "제27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기본 설계도인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 ~ '27년)」을 수립하였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총 290명)하여 온라인회의와 대면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우리 국민은 무분별한 이민 유입의 확대나 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유입하고, 엄정한 체류 관리를 희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반영하였다.

| 그림 2-151 | 외국인정책위원회



2)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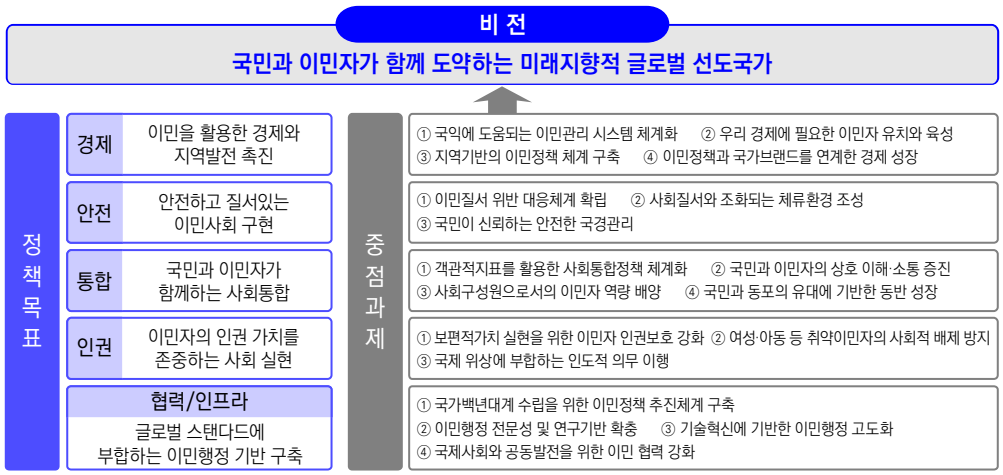
외국인정책은 국경·출입국 및 체류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 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하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를 '해외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하였으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상 한계가 있고,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이민정책'으로 정책 명칭을 전환하였다.

지난 제1차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질서있는 개방과 이민자의 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양적 확대를 이루고, 이민자의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민 전담기구의 부재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정책목표([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와 18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향후 5년간 범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유치하고 육성하여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구위기,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152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나.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박지원

1) 추진배경

최근 지역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으로 이민정책 활용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입·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증대로 이민정책 총괄 부서가 설치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인프라·역량과 이민정책 연구기반은 아직 미진한 단계이다.

2) 추진경과

법무부는 적극적인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23년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을 총 3회 개최하였고, '23. 7월에는 법무부 - 광역지자체 간 정책 세미나에서 이민정책 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 지자체, 학계 및 연구계의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3. 11월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역 이민정책 추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 12개 광역지자체, 31개 지역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 한국행정학회, 법무부 등 총 46개 기관 참여

3) 주요내용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에서 지역연구원 간의 공동연구, 정기 세미나·포럼 등을 통해 지역 이민정책 논의 및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논의된 과제들은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해 중앙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자체용 '외국인 업무지침서'를 활용한 권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주요 현안 공유 등 지역이민 정책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다. 2023년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종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23. 11. 27. 출입국·외국인 정책 환경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현장·실무 중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제26회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 매년 출입국·외국인행정 실무와 관련된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출입국·외국인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3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총 61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23. 11. 27. 개최된 제26회 정책발표회 본선에서는 '직업소개소 동향조사 법적 근거 신설을 통한 불법체류자 감축 방안'이 최우수상을, 'K-Point E74 제도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외국인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효율화 방안'이 우수상을, '전자 입국신고서 도입 및 운영방안'과 'NWC 도입을 통한 상호문화 이해증진 방안' 및 '사전 생체정보취득 및 전자민원과 민원 대행을 통한 외국인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정책발표회는 '본부 현안 또는 중점 추진사항 중 지정과제에 대한 발표과제 선정 방식'을 추가하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53 | 제26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2023. 11. 27.)



라. 2023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종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 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강의 집중도 저하 및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여 2022. 5월부터는 운영방식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 운영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포럼 운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안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2023년 이민정책포럼은 총 4회 개최되었다. IOM, 캐나다 이민부 등 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파견 경험 내부직원, 대학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일본의 고령화와 지역의 공간적 변화(이호상, 인천대 교수), 캐나다의 이민정책(이영범, 캐나다 이민국 근무 경력자), 국제기구! 그것을 알려드림(김태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미국 USCIS 및 이민정책 소개(김재남,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자, 연구원, 정책담당자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외국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듣고 서로의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 및 이해도를 향상시켰고,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그림 2-154 | 2023년도 이민정책포럼



마.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임연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감염병 확산 및 초국경적 범죄의 증가로 이민·출입국 분야에서의 국가 간 협력과 이민정책 정보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초국가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출입국·이주 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장·차관이 유럽·미주 국가 이민정책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또한,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일본, 캄보디아 등 이민 당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주한 공관원들과 해외 이민정책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확대하여 출입국관리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세계 이민정책 동향 파악 및 사례 수집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다양한 국제회의에도 참여하여 국제사회 주요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였고, 우리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분석 및 감식 기법을 공유하여 국제사회에서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2) 주요내용 및 평가

가) 장·차관의 해외 이민정책기관 방문

2023. 3월 법무장관이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장관과 회담하고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구축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딜란 예실괴즈 제거리우스(Dilan Yeşilgöz -Zegerius) 장관,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이민장관 등을 만나 사회통합에 성공한 네덜란드 사례와 한국이 축적한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양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독일 연방내무부와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utter) 연방내무부 차관, 한스 에크하르트 좀머(Hans-Eckhard Sommer) 청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이민·이주 관리 전담 조직 신설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하였다.

2023. 10월에는 법무차관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폴 챵(Paul Chiang)

정무차관을 만나 우수인재 및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는 실무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이민부 및 노인복지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이민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 청취하고, 수도권 등 선호지역 편중화 해소 방안 및 지역 정주를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그림 2-155 | 장·차관 해외 이민정책기관 방문 및 교류 협력 강화



장관,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회담



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 회담



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차관 회담



차관,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노동이민부 장관 회담

나)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개최

2023. 7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그간 연기되었던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를 3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3. 12월에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이민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캄보디아는 2022. 12. 1. 한·캄 FTA 발효로 향후 인력 도입 등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국가인 만큼, 동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우수인재 등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시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였다.

| 그림 2-156 |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다) 국제이민협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 참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23년에는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제8차 아시아 문서 감식 네트워크(ANDEX) 연례회의, 제51차 OECD 국제이주 작업반(WPM) 정례회의, 제2차 APT 이민청장 회의, OECD 이주 전문가 그룹(SOPEMI) 연례회의, 제2차 글로벌 난민포럼(GRF), 제3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등 다수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APT 이민청장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이민환경 변화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 회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다자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특히 2023. 11월 개최된 제8차 ANDEX 연례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참가국들과 문서 위변조 동향 및 감식 기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참여국간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 국제기구, NGO 등 약 4,200여 명이 참석했던 제2차 글로벌 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 GRF)에 한국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세계 난민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각 국가의 난민법·제도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였다.

| 그림 2-157 | 국제회의 참석



제2차 APT 이민청장 회의



제8차 아시아 문서 감식 네트워크(ANDEX) 회의



제2차 글로벌 난민포럼(GRF)



제3차 도쿄 출입국 포럼(TIF)

9.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이민정보과 사무관 서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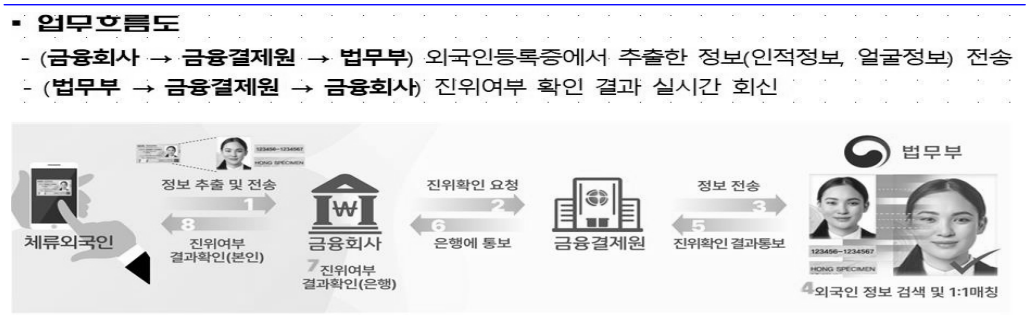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등록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금융회사 등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이 없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이 많아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주요 추진내용

2022.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등록외국인이 금융업무를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 9. 18.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그림 2-158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2023. 12월말까지 제1금융권 10개 은행에 약 45만 여건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추후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2금융권까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 등록외국인의 신분증명서인 외국인등록증 개선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이 흑백이고 크기가 작아 본인 확인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등록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 제안 등 의견 반영이 필요했다.

2022. 5월 신형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협의*(한국조폐공사)를 시작으로 2022.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2023. 4월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하였다.

* 보안 요소 적용 및 컬러사진 인쇄 등 진행 단계별 시제품 제작

| 그림 2-159 | 신형 외국인등록증 등 견본 이미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2) 주요 추진내용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사진 크기를 기존보다 35% 확대하여 본인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QR코드를 통해 등록증 인적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하고, 뒷면을 활용하여 외국인 이름 전체를 표기하도록 개선하였다.

| 그림 2-160 | 신형 외국인등록증 개선 사항



구형 앞면



신형 앞면

① 흑백사진에서 **컬러사진으로 변경**
② 사진 크기 확대**(35%)** 및 위치 변경**(좌→우)**
③ 등록증 정보 자동판독 기능**(QR코드)** 추가
-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 일자



구형 뒷면



신형 뒷면

① 뒷면에 **성명을 풀(Full)로 표기***함으로써 정확한 인적 정보 확인 가능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글자 수 **39자를** 줄 바꿈 없이 한 줄로 표기

3) 평가 및 발전방향

신형 외국인등록증은 2023. 4월부터 2023. 12. 31.까지 499,382건이 발급되어 전체 등록외국인의 37%가 개선된 등록증을 소지하고 하고 있으며, 향후 2년 이내에 대부분이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보다 좋은 고품질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다. 등록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 교부 신설

●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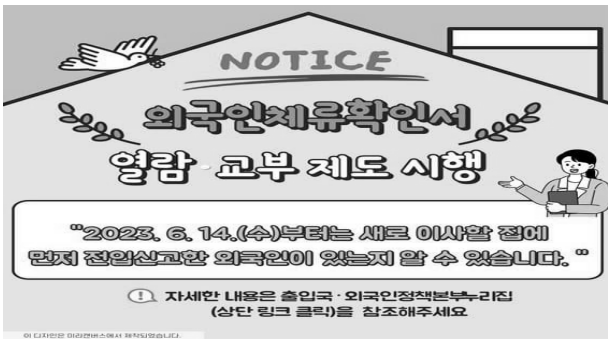
특정 물건 소재지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 등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2022.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 6. 14.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주요 추진내용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와 유사한 제도로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를 신청하면 특정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2-161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소셜미디어 홍보 자료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체류확인서'는 2023. 6. 14.부터 2023. 12. 31.까지 45,281건이 열람·교부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소재지 물건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전세 사기 방지 등 국민과 외국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개선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라.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이민정보과 사무관 윤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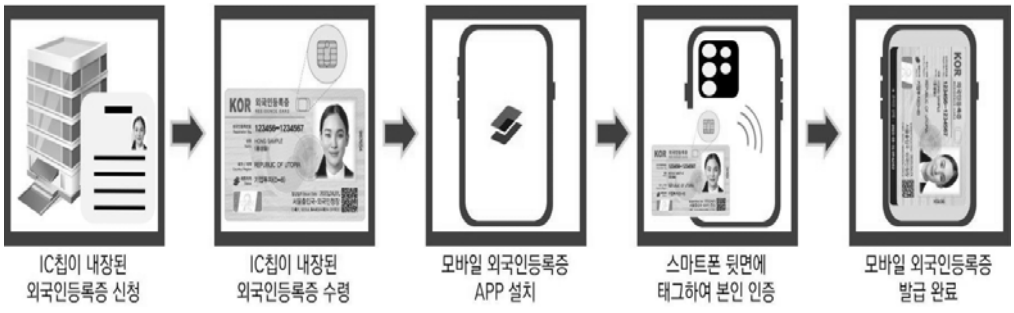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발전 계획(2019. 10월, 2020. 6월 국무회의)의 범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추진계획*에 따라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 ('21년) 모바일 공무원증 → ('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 ('23년)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 ('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3. 6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3.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IC칩 내장 실물 등록증·모바일 등록증 발급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2023. 12월)하여 2024. 12월 시스템 시범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 그림 2-162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2) 평가 및 발전방향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정부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등 이민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가.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경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처 간 상이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표준화하고, 각 부처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인 행정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23. 3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2023. 11월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2023. 12. 7.에는 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른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형사사법기관(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법원) 및 주요 외국인 정책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석하였다.

* 입국 시 외국인이 제시한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의미함

2) 평가 및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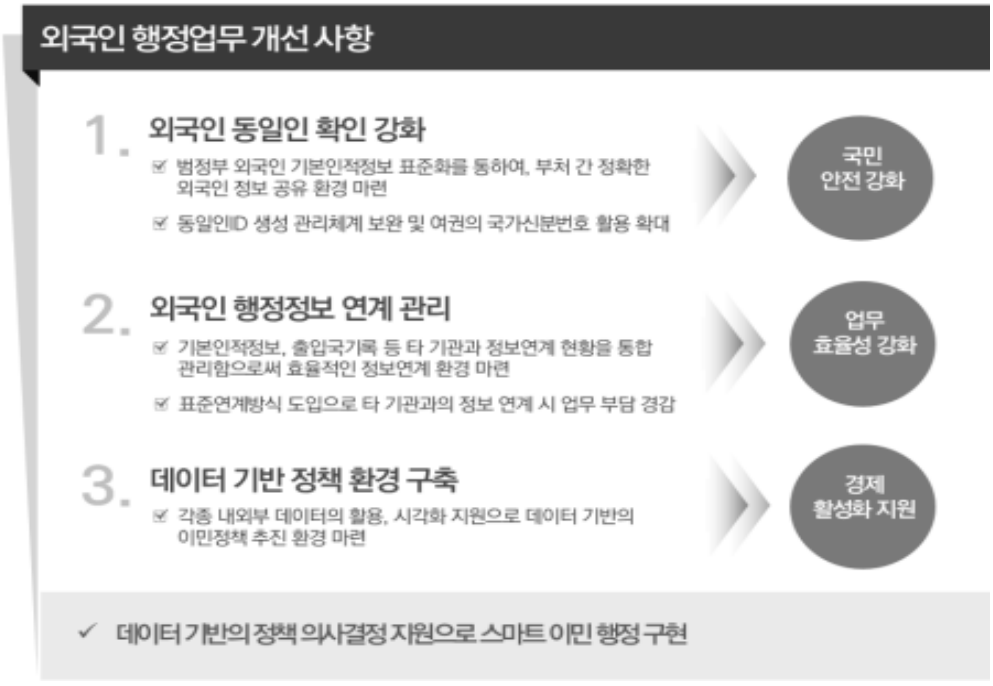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법무부와 기관 간 정확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공유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출국정지자 누락, 조세 체납 및 건강보험료 미납 여부 확인 곤란과 같은 행정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플랫폼에서는 기존 외국인 행정정보 연계 시, 동일 정보를 기관별로 각기 개발·제공하는 것을 개선하여, 자주 쓰는 13종(출입국 기록, 출입국 사실증명, 등록외국인 명단 등)의 정보항목 기준으로 표준 연계 서비스(API 방식으로 제공)를 개발하여 업무를 효율화하였다. 외부기관에서 연계를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외국인 행정정보 주요 항목을 Open API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다양한 외국인행정 데이터를 직접 조회·분석·시각화하고, 분석사례 공유 및 전문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추후 본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부 개방하여 인구감소, 지역소멸 및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른 맞춤형 이민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그림 2-163 |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주요 내용



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외국인의 인적정보는 부처별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고 있어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했다. 이에 ▲기본인적정보의 정의(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정보 제공 및 사용 권고(제78조의 2), ▲정보시스템 운영의 근거(제78조의3)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 4. 17. ~ 5. 30.), 법제처 심사(2023. 7. 1. ~ 8. 10.)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2023. 8. 21.)하여 2023. 8. 22.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2023. 12. 1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회부되었다.

| 그림 2-164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언론보도



매일경제

2023년 08월 22일 화요일 A10면 경제

'중구난방'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화

모자이크 코리아

정부가 그간 중구난방으로 관리해 온 외국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하면서 입국자부터 불법체류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 정보 표기법 및 관리 체계가 하나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목적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인적정보 표기법을 통일시켜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외국인 행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외국인 행정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HONG DAVID'란 이름의 외국인을 A기관은 '홍데이비드'로, B기관은 '홍다비드'로 표기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일인 여부 확인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생년월일 표기에서도 '1971년 6월 12일생'의 경우 어떤 기관은 '1971.06.12.'로, 다른 기관은 '1971.12.06.'으로 적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개정안은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를 '외국인이 입국 시 제시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는 반드시 정부가 파악·관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구축될 예정인 '외국인 기본 인적 정보시스템'에 이러한 정보를 입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정훈 기자

SBS 뉴스 인쇄 취소

"데이비드? 다비드?" 부처마다 제각각 외국인 정보 바로잡는다

강민우 기자

입력 : 2023.08.21 15:47 | 수정 : 2023.08.21 15:47

정부가 기관마다 인적정보 체계가 달라 관리가 어려웠던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통일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경아

지역 상황을 반영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부서와 지자체의 다양한 외국인행정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와

맞춤형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법무부는「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9개 지자체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외국인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및 지역별 외국인 고용·산업별 현황 등을 분석·시각화하여 제공하였다. 향후에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행정 데이터 분석자료를 정책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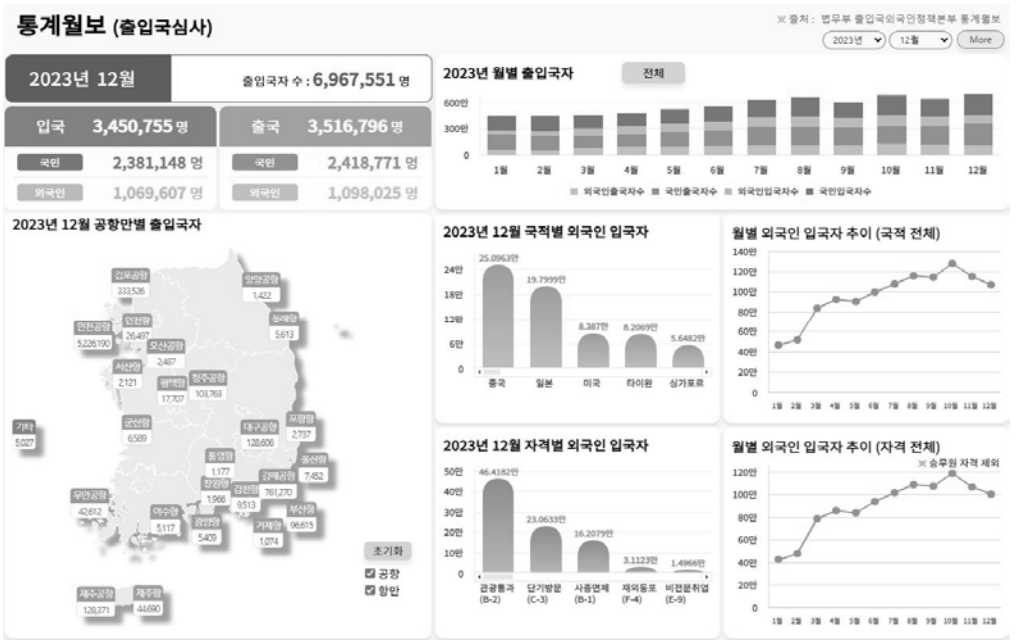
라.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김경아

1) 통계월보 분석 시각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의 '빅데이터 분석' 메뉴를 통해 통계월보 출입국현황 및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을 매달 업데이트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출입국관련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www.all.data.go.kr)에 63종의 정보를 등재하고, 매달 외국국적동포 현황 등 35종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등 출입국행정 통계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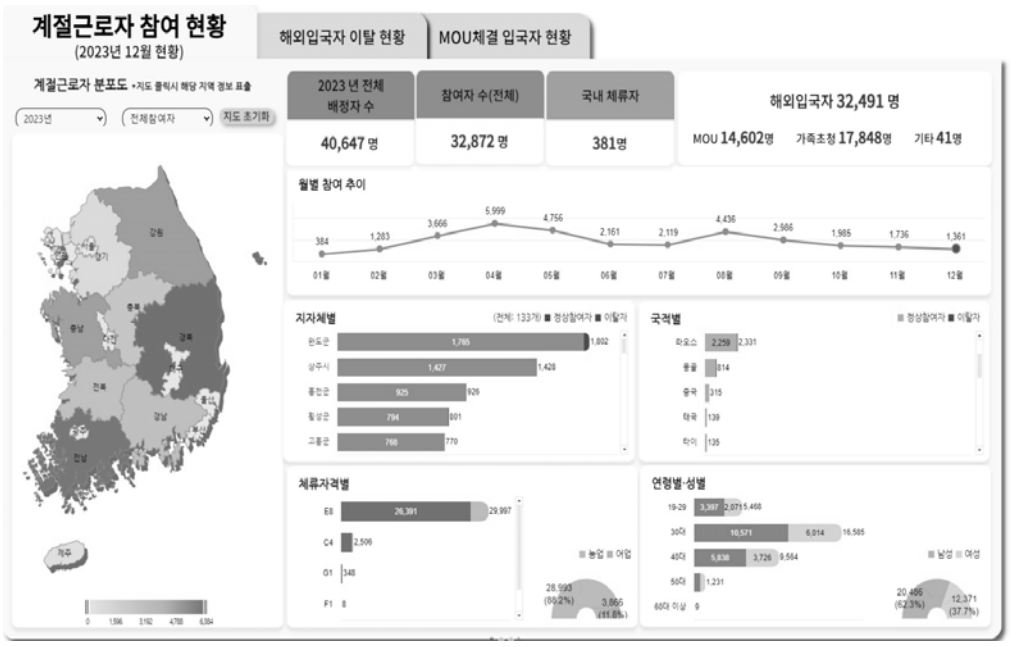
| 그림 2-165 | 통계월보 시각화화면



2) 농어촌 계절근로자 현황분석 및 수요예측 시범모델 개발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역별 운영현황, 이탈률, 국내-해외 지자체간 MOU 체결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분석·시각화 자료를 개발하여, 소관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법무부가 보유한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모델을 완성하기 위하여, 향후 국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측 모델의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 그림 2-166 |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분석·시각화 화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월별추이, MOU 현황

마.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 운영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2023. 4. 3., 10. 16. 총 2차례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각 5일간 2회 운영하였다. 1, 2차 교육과정에 총 40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외국인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132 | 2023년 외국인행정 빅데이터분석 교육훈련 과정 프로그램

일자	교육주제	교육내용
1일차	빅데이터 분석 개론 데이터 활용 교육	• 빅데이터 개요 • 빅데이터 분석 계획, 수집 및 저장
2일차	빅데이터 분석 이해 및 Tableau 활용 방법	• 빅데이터 분석 이해 • Tableau 활용 방법 이해 및 실습
3일차	데이터 분석도구 이해	• R 소개와 활용 사례 소개 • R 및 R Studio 설치 및 활용 실습
4일차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빅데이터 가시화 실습 • 빅데이터 분석 실습 • 빅데이터 활용법 실습
5일차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전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변환 및 검색처리 실습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통계 분석 및 가시화 실습

바.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사무관 송병희

2023. 4. 24. ~ 7. 27. 이민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23. 4. 24. ~ 6. 23.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13팀(20명)이 지원하였으며, 내·외부 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외국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개발-kairbag), 우수상(외국인선원 편의성 제고 OCR기반 택시카드 - 아주브레멘), 장려상(한국형 실리콘밸리 향한 이민자 구인·구직 서비스 - 데이파이브) 총 3팀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 및 상금을 전달하고 최우수 수상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11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림 2-167 |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홍보 배너



2차 발표 심사 ('23. 7. 20.)

11.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 등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추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사무관 김명훈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 농·어업 분야 및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인구 위기로 인한 충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 능동적인 이민정책 활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하여 '23년 현재 약 251만 명에 이른다.

* 2022년 3,674만 명에서 2070년 2,903만 명까지 약 771만 명 감소 전망(통계청, 2023.)

**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지정(행정안전부, 2021.)

한편,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내·외국인 간 갈등 및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등 이민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출입국·이민정책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22. 11. 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속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여,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자율기구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2023. 11. 7.부터 임시조직 전환).

| 그림 2-168 | 이민정책 전담조직 및 이민정책 활용 관련 언론보도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및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을 강조한 언론보도

나. 주요내용

1)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관련 공론화 진행

추진단은 '22년부터 국민, 전문가 대상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관련 학술포럼(2023. 8. 11.)」에서는 과학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결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위원장 : 정인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23. 11. 3.)」에서는 다부처 협업 방식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및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등 외국인력 도입 분야·규모 결정 체계 개선방안 등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으로는 우수인재 및 외국인력에 대한 문호 확대 등 유연한 비자정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및 엄정한 체류질서의 확립, 내·외국인 간 갈등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수렴 내용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림 2-169 |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2023. 11. 3.)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 표 2-133 | 2023년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현황

일 자	내 용
2. 2.	• 이민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2. 15.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단체 면담 – 청 신설에 대한 우려 등 의견수렴
5. 15.	• 5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 – 인구감소 시대의 이민정책
5. 23.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정부와 기업이 win-win 하는 이민 방향 모색
5. 26.	•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 포럼 –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
6. 14.~15.	• 2023 저출산고령사회 인구포럼 –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7. 7.	• 외국인 인력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외국인 인력 유치·활용과 사회통합 방안
7. 10.	• 한국형 이민사회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모자이크 코리아! 한국형 이민사회로 가는 길
7. 21.	•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현실과 과제
8. 11.	•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관련 학술포럼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9. 6.	• '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KEY' 관련 좌담회 – 미래를 좌우할 이민정책, 바른 방향은?
9. 13.	• 농어업·농어촌 이민정책 관련 토론회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이민정책은?
9. 26.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 – 최근 해외 이민정책 동향과 시사점
11. 3.	• 제2회 이민정책위원회 –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방향 등

2) 해외 이민당국과의 정책 네트워크 구축

2023. 3월 법무부장관은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 발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나라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하여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회담하고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난민 문제 등 주요 이민정책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밝혔으며,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역할, 필요성,

조직 구성에 관하여 자국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법무부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민정책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었으며, 이러한 국제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정책 노하우는 향후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70 | 법무부장관, 유럽 주요 국가 이민 관련 부처 책임자 회담(2023. 3. 7.~3. 15.)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회담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회담

3)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마련

위와 같은 공론화 및 전문가 자문, 주요 선진국의 최신 정책사례에 대한 분석 및 과거 추진 사례에 대한 재검토 등을 바탕으로, 2023. 11월 추진단은 다부처 협업 방식의 이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을 마련하였다. 다부처 협업 방식이란,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되는 이민정책의 특성을 고려, 각 정책 영역 소관 부처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각 기능별 소관 부처 인력을 파견받아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협업하는 조직 형태이다.

추진단은 마련된 신설방안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립하였으며, 여·야 국회 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청 신설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2023. 11. 15. ~12. 5.) 또한 법무부장관이 직접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인 청 신설방안과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였다.(2023. 12. 6.)

| 그림 2-171 | 법무부장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발표(2023. 12. 6.)



법무부장관, 국회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 발표

4)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시범 도입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우수 외국인력 선발 및 양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추진단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 예측 ▲그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분석 ▲해외 주요 국가 총량 산출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각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 12월 주요 취업비자별 연간 발급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별도 총량 제한 없이 도입이 허용되어 온 전문인력 분야의 총량은 제한하지 않되, 신규 도입 분야(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는 연간 비자 발급 총량을 설정하였으며, 비전문인력(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의 경우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는 기업 및 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취업비자 총량 산정 시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및 도입 필요성, 불법체류 등 유입 부작용,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단년도가 아닌 3년 단위의 총량 발표를 추진하는 등 제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 향후계획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이민정책 전담조직으로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담조직 설치와 함께,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정책을 국익의 관점에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제11절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업무

정책기획단 검사 이지영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 구성 및 운영

가. 추진배경

법무부 국정과제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이 포함되어 현재 소관부서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업무 적극 추진 중 '23. 10.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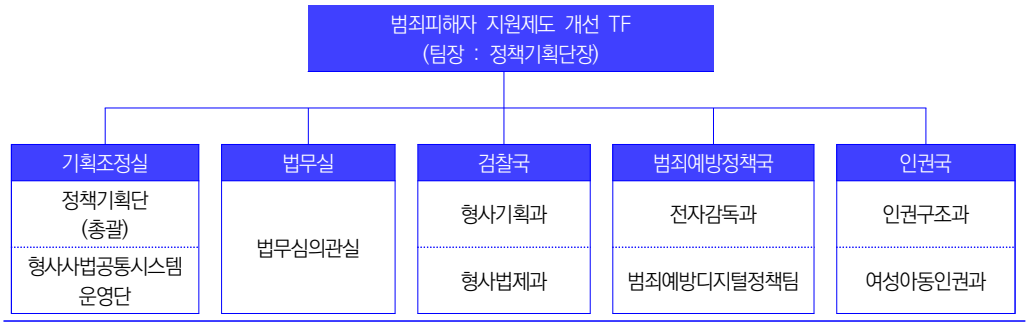
이에 법무부는 '23. 10. 23.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고,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에 있다.

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 구성 및 활동

1)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 구성 및 운영('23. 10.~)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는 기조실장 산하에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법무실·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등 유관부서로 구성되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림 2-172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 구성



2) TF 주요 활동 경과

가) TF 회의 개최(3회, 2023. 10.~12.)

총 3회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및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 피해자 대상 가해자 위치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 사건요약보고서 및 피의자 신상정보 제공 ▲ 기습공탁 방지 ▲ 범죄피해자 지원 모금제도('스마일공익신탁') 활성화 ▲ 차세대 형사사법포탈 등을 통한 가해자 정보 및 전자기록 열람 등 구현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나) 개선 방안 추진

TF 집중 논의를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위치 자동 알림 시스템 시행 점검('24. 1. 시행 예정) ▲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및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3. 12.)를 하였고, 나머지 TF 논의 사항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3) TF 활동 성과

TF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도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12절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업무

정책기획단 검사 김준선

1.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 구성 및 운영

가. 추진배경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 증가로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수용자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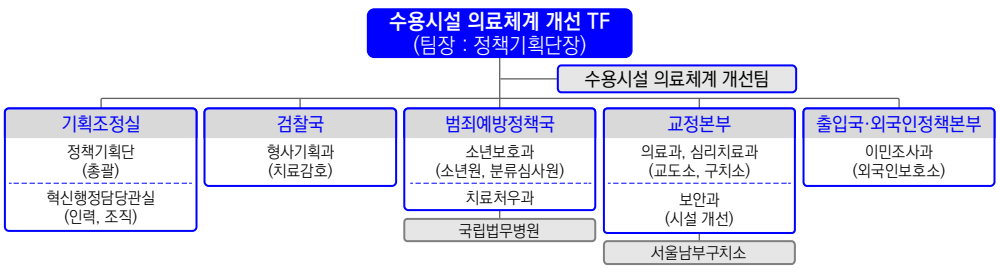
이에 법무부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대책 및 수용시설 내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22. 12. 18.부로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였고, 위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수용시설 의료체계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 구성 및 활동

1)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 구성 및 운영(2022. 12.~)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각 실국의 담당자와 더불어 일선 직원도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TF로 구성하였고 선진 사례 분석,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등을 TF 안건으로 회부,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그림 2-173 |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 구성



2) TF 주요 활동 경과

가) 선진 사례 등 관련 자료 분석(2023.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 요구사항 검토, 국내외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용시설 의료체계 종합대책을 검토하였고 종합대책에는 중증질환 수용자가 시설 내 의료처우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연계 방안까지 포함하였다.

나) 전문가 및 현장 직원 의견수렴, 관계부처 등과 협의(20회, 2023. 1.~)

각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장 근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관계부처·지자체·기관을 방문하여 수용시설 내 의료처우 현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다) TF 회의 개최(10회, 2023. 1.~)

총 10회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관리 인프라 확충 ▲ 의료정보 시스템 개선 및 의료데이터 구축 ▲ 의료인력 확충 ▲ 취약집단 수용자 건강 불평등 개선 등 4가지 핵심 주제와 17개의 세부 안건으로 분류,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라)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1건, 2023.12.13.)

수용시설 내 의료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 12. 13.(수)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

| 그림 2-174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MOU, 23. 12. 13.)



【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

- 중증정신질환 수용자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운영
-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 그 밖에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TF 활동 성과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던 수용시설의 열악한 정신건강 치료체계, 의약품 남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24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부처·기관·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용자 인권보호 및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13절 인사정보관리단

1.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가. 추진배경

과거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검증 기능을 분산하여 권한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사검증 담당기관을 다원화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2. 6. 7.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운영하였다.

나. 운영 현황

1) 구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인사정보관리단장 및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하고, 다양한 검증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 하였다.

2) 인사검증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인사정보관리단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등 공직 적격 여부 판단에 필요한 공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객관적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증 업무의 독립성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검증 과정에서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했으며, 인사정보관리단과 여타 부서 간의 정보교류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3) 제도개선 협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직후보자가 작성하는 자기검증 질문서를 보완하고, 자료확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인사정보관리단도 1차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필요한 협의에 참여하였으며, 대통령실은 '23. 10. 5. 자기검증 질문서에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성인지 감수성, 약물, 가상자산 등 관련 질문을 추가하는 등 개선안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검증항목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 청렴성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충실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法務年鑑

03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1절 개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부령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
2018	58	1	-	1	-	57	19	23	15	-	-
2019	51	2	-	1	1	48	9	24	15	1	-
2020	71	2	-	1	1	69	27	25	17	-	-
2021	86	9	2	3	4	76	27	24	25	1	1
2022	60	1	-	-	1	58	18	18	22	1	1
2023	54	-	-	-	-	54	17	15	22	-	-

제2절 법률

Ⅰ. 개정법률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관리인에게 회계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보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를 완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경과

2020. 7. 2.	(김도읍 국회의원),	2020. 8. 20.	(홍정민 국회의원),
2020. 8. 24.	(송갑석 국회의원),	2020. 11. 23	(장경태 국회의원),
2021. 2. 8.	(문진석 국회의원),	2021. 3. 25.	(정부),
2021. 5. 24.	(류호정 국회의원),	2021. 7. 23.	(김선교 국회의원) 제안
2023. 2. 27.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3. 3. 28.	법률 제16919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관리인이 그 사무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추가

- 관리인에게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토록 하는 법적 의무를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등 감독권을 부여
- 법무부장관에게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법무부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위한 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5에서 3/4이상의 찬성으로 완화
-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재건축 및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5에서 2/3으로 완화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4. 12. 1. 시행)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지급명령 취소 시 강제집행된 금원 등을 환부할 수 있는 자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상호저축은행은 공시송달 특례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음
- 그런데 그 후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다수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출채권에 대한 계약서의 존재 등으로 법률관계가 명확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추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줄여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10. 21. 정부안 국회 제출
2023. 2. 27. 국회 의결
2023. 3. 28. 법률 제19280호로 공포
2023. 9. 29. 시행

다. 주요내용

○ 상호저축은행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가. 추진배경

○ 전문 전세사기 조직이 '무자본갭투기' 또는 '신탁사기' 등 방식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서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

○ 이에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나. 추진경과

2022. 11.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규정 신설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3. 1.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논의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신속화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2023. 2. 15.	국회 제출
2023. 3. 30.	국회 본회의 의결
2023. 4.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법률 제19356호로 공포 및 시행
2023. 7.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법률 제19356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함(법 제3조의7)
- ○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여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3 제3항)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1)

가. 추진배경

- ○ 2009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UN IOM)간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나,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타 국가정책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하므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3. 1. 10. (조정훈 국회의원) 제안
2023. 3. 30. 국회의결
2023. 4. 18. 법률 제19355호로 공포
2023. 7. 19. 시행

다. 주요내용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법인격 부여, 수행 사업, 국고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2015. 1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12. 21. (정점식 국회의원) 제안
2023. 5. 25. 국회의결
2023. 6. 13. 법률 제19434호로 공포
2023. 12. 14. 시행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추가로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거주국’)을 삭제

6.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2. 12. 21. (정점식 국회의원) 제안
2023. 5. 25. 국회의결
2023. 6. 13. 법률 제19435호로 공포
2023. 12. 14.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1. 7. 26. (유동수 국회의원), 2022. 6. 28. (김경협 국회의원), 2023. 6. 23. (권칠승 국회의원) 제안
2023. 5. 10. 정부 제출
2023. 6. 30.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3. 7. 6. 법률 제1951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함(법 제8조의2)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 등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6. 29. 정부안 국회 제출
2023. 6. 21.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공포
2023. 10. 12. 시행

다. 주요내용

○ 성폭력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조사 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나이, 인지적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 법원·수사기관의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진술 절차 지연 방지 등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

- 증거보전기일(반대신문권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 공판준비기일 등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
-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등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 부여(피고인과의 관계, 증언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 고려)

○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공판준비절차 특례 규정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등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토록 할 수 있게 함
-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등으로부터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인신문 장소 등 특례 규정

- 피해자가 법원에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 출석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기존에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외적인 경우 법원이 중계시설 지정)

○ 19세미만등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청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 의무화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3. 2. 15. 정부안 국회 제출
2023. 6. 21.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공포·시행
(단, 일부 개정규정은 2024. 1. 12.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함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고지하도록 함
○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최장 9개월로 연장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신청 근거 마련
-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도입
-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국선변호사 선정 등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신설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삭제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1천만원 이하)에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500만원 이하)에서 형벌(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

1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3. 2. 15. 국회제출
2023. 6. 21. 국회의결
2023. 7. 11. 법률 제19519호로 공포
2023. 10. 12. 법률 시행

다. 주요내용

- ○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 법원은 스토킹범죄자에게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하도록 함
-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됨에 따라 집행 절차를 마련함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 1989년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후 국제사회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인 등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하였음
-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출생통보 제도안을 협의하였고, 법무부는 2022년 3월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5년부터 '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아동들은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양육되면서 생존여부도 확인되지 않음
- ○ 이에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나. 추진경과

2020.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

2021. 3. 법무부·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조문 협의
2022. 3.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2023. 3. 법무부·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업무협의
2023.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3. 7. 18. 법률 제19547호로 공포
2024. 7. 19. 시행(예정)

다. 주요내용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에 대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함

○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함

*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19. 3. 14.시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2020. 5. 1.시행)이 제정되면서 기존 직무범위에 있던 조항이 위 법으로 옮겨짐에 따라, 위 법들을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위생용품 관리법」(2018. 4. 19.시행) 제정에 따른 수사권 부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0. 8. 18. (소병철 국회의원) 제안
2023. 6. 30. 국회의결(원안 가결)
2023. 7. 18. 법률 제1954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법 제6조제6호),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법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법 제6조제7호)

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각종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①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하여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었음
○ 이에 법무부는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일일이 전자문서화 필요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곧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추진

나. 추진경과

2022. 3. 입법예고
2022. 11. 차관·국무회의 통과
2022. 12. 국회 제출
2023. 7. 18.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8. 8. 법률 제19581호로 공포(2024. 8. 1. 시행 예정)

다. 주요내용

○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14. 형법

가. 추진배경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6. 12. 정부안 국회 제출

2023. 7. 18.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3. 8. 8. 법률 제19582호로 공포·시행
(단, 일부 개정규정은 2024. 2. 9.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
-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규정을 삭제

1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

가. 추진배경

- 행정기관이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1. 11. 18. (김영배 국회의원) 제안
2023. 10. 6. 국회의결
2023. 10. 24. 법률 제19742호로 공포
2024. 4. 25. 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 지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 제기

나. 추진경과

2023. 5. 11. (이태규 국회의원), 2023. 7. 27.(서동용 국회의원), 2023. 8. 11. (정춘숙 국회의원), 2023. 9. 8.(권칠승 국회의원), 2023. 9. 19.(정점식 국회의원), 2023.11. 1.(김의겸 국회의원) 제안
2023. 12. 8. 국회 의결(대안 가결)
2023. 12. 26. 법률 제19832호로 공포(2023. 12. 26. 시행)

다. 주요내용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함
○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조사·수사시 조사·수사기관에게 관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함

1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마998 등)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2. 9. 2. (윤영덕 국회의원), 2023. 9. 7.(권칠승 국회의원), 2023. 11. 17.(유상범 국회의원) 제안
2023. 12. 20. 국회의결(대안 가결)
2023. 12. 29. 법률 제1985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 규정 신설

제3절 대통령령

Ⅰ. 대통령령[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 전세사기 피해 급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 증대
- ○ 이에 '22. 10. 개최된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2. 21.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각 권역별로 일괄하여 1,500만 원 상향(시행령 제10조)
- ○ 위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시행령 제11조)

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000분의 17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봉급을 2022년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과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의 재판수당이 각각 5만원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검사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의 수사지도수당을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3. 7. 대통령령 제3331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 대비 1.7% 인상·조정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임
- 단, 검사의 봉급표(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 12. 31.까지는 종전 검사의 봉급표(별표2)를 적용

○ 검사의 수사지도수당 인상·조정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법관의 재판수당 인상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지도수당을 조정함
- 법조경력 20년 이상 검사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월 20만원 이하로 조정

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1)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대검찰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증원
- 대검찰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인력 1명 증원(5급 1명)

○ 대검찰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급 1명을 증원(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 수원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4. 12.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

○ 관리운영직군을 기술직군으로 전환
-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으로 전환함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

가. 추진배경

○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하면서 그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분리,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및 소속 과 분장사무 조정 개편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
- 반부패부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를 신설하여 각각 공직비리, 금융·증권비리, 조세·공정거래·기업범죄 사건을 전담
- 마약·조직범죄부에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를 분리 신설하고,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 산하로 이관
-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부 내 기획·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기획관을 각 신설

○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검증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범죄정보2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보

검증·평가 기능과 수집 기능을 분리

-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공수사기획관 신설 및 일선청 형사부를 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공수사기획관 신설
  -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명칭을 각 공공수사부로 변경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신설 및 금융·증권범죄수사과에 1명 증원(4급 1명)
- ○ 대검찰청 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분장사무를 인권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로 이전

5.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서울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8명), 대전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1명) 및 수원고등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 1명)의 검사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대검찰청(대검찰청 검사 1명,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3명,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 5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 1명)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7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조정

- 서울·수원·대전고등검찰청의 고검검사급 검사 정원 10명(서울 8명, 수원·대전 각 1명)을 대검찰청(9명)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1명)으로 이체하여 정원 조정

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

가. 추진배경

○ 부동산을 매수 또는 임차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계약당사자나 금융기관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는 경우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부동산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88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0개 금융기관으로 정함

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3)

가. 추진배경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집합건물에 행정청의 감독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이 개정('23. 9. 29.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

나. 추진경과

2023. 9. 26. 대통령령 제33737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 지자체장이 관리인에게 규약, 의사록, 서면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자료제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되는 본인확인방식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증방법'을 추가함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 2021년「형사소송법」개정 이후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접수거부 또는 수사의 지연·부실 등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수리하도록 명시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각종 수사기한을 정비하는 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8. 1. ~ 9. 11.	입법예고
2023. 10. 10.	국무회의 통과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08호로 공포
2023. 11. 1.	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활성화
- 「공직선거법」에 따른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 등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

○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 기한 명시
- 고소장이나 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일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함

○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재수사의 기한 명시
- 검사는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송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마치도록 함

○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 마련
-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영장 사본의 교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장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분담 기준 정비
- 종전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여 수사업무의 편중을 개선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 검사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10. 국가배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기존에는 재판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 있는 사람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헌법 위반의 소지(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가 있는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음

나. 추진경과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4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국가배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병역의무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11.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마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22.12.2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6. 26.~ 8. 7.	입법예고
2023. 12. 5.	국무회의 의결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한 응시수수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 반환 절차 명시(제13조제4항 및 제5항)

○ 법령용어 정비(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13조제3항)

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

가. 추진배경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도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8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
- 출국금지·정지 요청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까지 확대
- 체류지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외국인의 국내거소신고증에 적는 사항 중 거주국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를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에서 제외하는 한편, 거소를 이전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성별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9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사유에서 “거주국” 제외, “성별” 추가
- 국내거소 이전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14. 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평가방식이 원가평가방식에서 시가평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계약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함으로써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2023. 12. 7. 제48회 차관회의 통과
2023. 12. 12. 제51회 국무회의 통과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6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파생상품의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

1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4)

가. 추진배경

○ 검찰이 기술유출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의 분장사무에 기술유출범죄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면서 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하고, 마약·조직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1명(5급 3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대검찰청으로 재배치하고, 대검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28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대검찰청으로 이체받으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3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과명칭 변경
-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지원 업무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사이버수사과 분장사무에 포함하며 사이버수사과 명칭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변경

○ 전국 마약·조직범죄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에 필요한 인력 증원 등
-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6명, 반부패부 전문수사관 5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정원(2명)을 대검찰청으로 이체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을 재배치
- 부산서부지청 2명 증원

○ 정부의 통합활용정원 운영 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검찰청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 대검찰청의 정원 5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정원 76명을 각각 감축함

○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가기간을 연장
- 2019. 5. 7. 신설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은 2024. 12. 31.까지 1년 연장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Ⅰ. 규칙[개정]

1. 교도관직무규칙

가. 추진배경

○ 교정시설의 당직간부를 종전에는 교감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운영 및 보안을 강화하고, 인용 법률의 제명과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각종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 2023. 1. 11. 법무부령 제10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휴일 및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는 당직간부의 직급 요건을 교감에서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확대

○ 조문 내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각종 용어 정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2.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신설하고, 회피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난민 조사관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대한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난민 전문가를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나. 추진경과

2022. 12. 입안 보고
2022. 12. 입법 예고
2023. 2. 27. 법무부령 제104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회피 의무를 위반한 난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난민위원회 심의 안건을 조사하는 난민조사관의 직급 및 경력 기준 등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대한 투명성 및 난민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난민 전문가를 난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기반 마련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숙식 제공을 하지 않고 직업훈련 또는 심리상담 등의 방법으로만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시설의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숙식 제공 등을 하는 갱생보호사업의 경우보다 완화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3. 7. 법무부령 제104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 숙식 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갱생보호 면적, 설비 및 종사자 배치를 완화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대기실 운영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에 사할린동포의 국적 판정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385호, 2023.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무실 송무심의관 및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를 폐지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4. 11. 법무부령 제104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23년도 정기직제 반영
- 기구 신설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
- 인력 증원 : 13명(53명 중 1분기 반영 인력)

○ 도심공항출장소 운영종료('23.1.4.)에 따른 관할 조정

○ 평가대상 조직 평가기간 연장
- 법무실 송무심의관·국제분쟁대응과 : 2년 연장

5.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률구조법인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등록신청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1. 11. 입법예고(~1. 31.)
2023. 4. 10. 법제처 심사 완료
2023. 4. 14. 법무부령 제104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률구조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임원의 기본증명서를 삭제하되,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함

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치료감호 집행 중 별건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규정 마련 필요

나. 추진경과

2023. 5. 4. 법무부령 제105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와 별건 형의 집행순서 규정 마련
-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감호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해당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서식 제정

- 치료감호를 정지하고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치 우선 집행을 위한 '집행순서변경요청', '집행순서변경지휘' 등 서식(2개)을 제정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7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7급 1명, 9급 3명)으로 전환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류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마약사범재활팀, 교정시설의 점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별점검팀,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를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각각 신설하고,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한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신설하며,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및 교정사고 조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대구·대전·안양·광주·경북북부제1교도소와 서울·서울남부·서울동부·부산·수원·인천구치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별사법경찰팀을 각각 신설하고, 출입국대기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출국대기실운영팀을 각각 신설하며, 법무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각각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정원 16명(6급 9명, 7급 6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9명, 6급 6명, 7급 1명)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교정청등 정원 11명(6급 1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정원 11명(6급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6. 8. 법무부령 제105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신설 및 직급 조정
  - 기구 신설 : 본부 4팀, 교정기관 15팀, 출입기관 2팀
  - 직급 상향 조정 : 본부 16명, 교정기관 11명, 출입기관 11명
- ◦ 관리운영직군 직군 전환
  - 교정기관 관리운영직군 4명 → 기술직군
  - 소년보호기관 관리운영직군 2명 → 기술직군
  - 출입기관 관리운영직군 1명 → 행정직군

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

가. 추진배경

○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6. 14. 법무부령 제1052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범위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관련 서식 마련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서식을 정함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

가. 추진배경

○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근로(E-8) 자격을 가진 사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6. 30. 법무부령 제1054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함

10.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가. 추진배경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제도를 준용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5. ~ 6.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23. 7. 4. 법무부령 제1053호로 공포 및 시행

다.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적용의 범위와 별지 서식 등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 반영(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9조,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의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을 포함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 신설(제1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과정 및 자격의 관리·감독에 아동보호절차 및 아동·장애인의 특성 추가(제8조제2항)

11. 검찰사건사무규칙(1)

가. 추진배경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8호, 2023. 7.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종류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7. 11. 법무부령 제105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 기간 연장·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절차 신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사법경찰과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변경 또는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어, 그에 따라 변경되는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661호, 2023. 8.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8. 8. 법무부령 제105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수시직제 반영

- 국제법무국 신설
  - 기구 신설 : 국제법무국장, 국제법무지원과
  - 인력 증원 : 8명
  - 명칭 변경 : 국제법무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분쟁대응과→국제투자분쟁과
- 사무분장 조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지원 (인권정책과장 → 통일법무과장)

○ 2023년도 정기직제 반영
- 인력 증원 : 본부 5명, 소속기관 12명(53명 중 3분기 반영 인력)

13.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의 형집행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의 업무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벌금 또는 과료를 미납한 사람에 대한 지명수배 및 지명수배 해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벌과금납부명령서 등의 납부안내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8. 21. 법무부령 제105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 후 유죄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 근거 규정 및 절차 신설
-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소속 검찰청 검사가 집행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므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취소 시 업무처리 절차 신설
- ○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형 분할납부·납부연기 결정 시 결정서 서식 신설
- ○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및 수배해제 근거 조항 신설
- ○ 타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이용조문 변경 및 서식 정비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벌과금 납부에 대한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국세징수법」에 신설되어 이를 반영
  - 체납처분 준용 법규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명칭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
  -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벌과금납부명령서 안내문 등 서식 변경

14.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의 형집행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형의 집행지휘 후 지휘를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정정지휘에 관한 절차 및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취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 조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8. 21. 법무부령 제105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특별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 후 유죄 확정된 사건의 형집행 근거 규정 및 절차 신설
  -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다른 기관이 기소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소속 검찰청 검사가 집행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
- ○ 자유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감염병 확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 있는 경우 검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대상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 자유형 등의 집행지휘 후 지휘 내용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실효지휘 후 취소·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거 규정 및 서식 신설
- ○ 자유형 집행 관련 조문 정비 및 서식 변경
  - 「형법」 제39조 경합범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15. 검찰보존사무규칙

가. 추진배경

- ○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보존기록대출부 등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을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민원신청서 서식에 명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나. 추진경과

2023. 8. 21. 법무부령 제105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반영
- ○ 검찰 기록물 보존 업무와 관련된 장부를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CATS)'을 이용하여 저장·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 기록 열람·등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 정비

1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4)

가. 추진배경

-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고,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8. 30. 법무부령 제106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개방형직위 특례규정 삭제

※ 개방형직위 명칭·등급 등은 훈령등으로 정하도록 함 :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예규)

- ◦ 과장급 개방형직위 개수(15개)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에 추가
- ◦ 의무직렬 정원 전체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 ◦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
- ◦ 본문 직급 순서를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에서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변경

17. 검찰사건사무규칙(2)

가. 추진배경

- ◦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수리의무를 명시하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소시효의 도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수사요구서 등의 서식에 공소시효를 명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11. 1. 법무부령 제106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고소·고발 수리 의무화에 따른 조문 정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수리가 의무화 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 고소·고발·자수는 검찰에서 일단 사건으로 수리하더라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하므로, 고소·고발인 또는 자수자에게 다른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 ◦ 검·경 협력 강화에 따른 관련 규정·서식 정비
  - 검·경 일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이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요청하면 검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의견 제시·요청 서식 정비

-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검·경이 사안의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

○ 영장 사본 교부 절차 정비에 따른 서식 마련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영장 사본 교부가 의무화되어, 관련 서식 신설

○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규정 정비에 따른 조문 인용 보완

- 영장 체포자나 긴급체포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구체적인 석방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경찰의 검사에 대한 통보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반영

○ 군인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관련 규정·서식 정비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등 군인의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고, 군인이 피의자인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소속 부대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 규정으로 관련 서식 정비

○ 재수사 사건의 처리 절차 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서식 정비

- 경찰로부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검·경 사이의 수사기록·증거물 송부 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 주요 서식에 공소시효 명기 등

- 사건이송·이첨서, 보완수사요구서, 재수사요청서 상단에 장·단기 공소시효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시효 도과 방지

18.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2022. 12. 27.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 추가 및 응시자 석차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6. 26.~ 8. 7. 입법예고
2023. 12. 12. 법무부령 제106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서식 추가(제8조제4항 및 별지서식)
- 성적 및 석차 공개 관련 표현 수정(제9조제1항, 제2항)

1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3)

가. 추진배경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35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2호, 1063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및 재발급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보다 간소화된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함

-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정함
-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박업소에서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의 자료 제공의무 범위를 축소

2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4호, 1065호로 공포

다. 주요내용

-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및 재발급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보다 간소화된 신고서를 사용하도록 함
-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이전한 것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정함

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5)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제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에 필요한 인력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사증 및 외국인 체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관리과장의 직급을 각각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52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출입국사범 관리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 53명(6급 10명, 7급 18명, 8급 16명, 9급 9명),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체류외국인 관리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원되는 인력 중 21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과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지정하며,

-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2명, 8급 29명, 9급 35명)을 각각 감축하고, 법무부 법무연수원의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됨에 따라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 2명)을 대검찰청으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025호, 2023. 12.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 법무부의 단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을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으로,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신설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 기간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7급 1명)으로 환원하며, 법무부와 소속기관 분장사무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23. 12. 26. 법무부령 제106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 하반기 수시직제 반영
  - 인력 증원 : 88명
    직급 상향 조정 : 소속기관 3명
- ○ 2023년도 정기직제 반영
  - 인력 증원 : 소속기관 23명(53명 중 4분기 반영 인력)
- ○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감축
  - 본부 7명, 소속기관 103명

◦ 정원 이체
- 법무연수원 2명을 대검찰청으로 이체

◦ 총액인건비 기구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운영 변경
- 존속기간 연장 : 2023. 12. 31.까지 → 2026. 5. 31.까지
- 직급을 상향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

◦ 평가대상 신설기구·신규인력 평가기간 연장 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평가기간 1년 연장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8개 분야 514명 평가기간 1년 연장
- 체류외국인 관리 90명 평가대상에서 제외(정규화)

◦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구역 변경 반영
- 명칭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변경 :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특별자치도 편입

◦ 분장사무 용어를 법령·용례에 맞게 정비 : 영치금품 → 보관금품 등

22.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접수증 등에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법 위반을 방지하고, 주요사항 국·영문 병기 및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나. 추진경과

2023. 12. 27. 법무부령 제106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생계비 지원·불법 취업 시 처벌 안내 등(별지 제3호서식)
-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및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뒤 허가를 받아야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 취업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 ‘난민면접조서’ 국·영문 병기, 안내사항 추가 등(별지 제6호서식)
- 난민면접조서에 영문을 병기하여 난민신청자가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하고, 난민신청자 진술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진술 등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역인의 생년월일 기재란 등을 삭제함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오기 정정 등(별지 제22호서식)
- ‘의료비’로 잘못 기재된 서식 내용을 ‘생계비 등’으로 수정하고, 기존 영문 번역을 개선함

法務年鑑

04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가. 정기회 및 임시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이자희

2023년도에는 총 10회(402회 ~ 411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정책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출입국관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표 4-1 |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02회	'23. 1. 9. ~ '23. 2. 1. (24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
제403회	'23. 2. 2. ~ '23. 2. 28. (27일간)	【본회의】 • 총 8차례 개의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3. 2. 6.)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3. 2. 7.)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23. 2. 8.)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3. 2. 13.)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3. 2. 14.) •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23. 2. 27.) 【법제사법위원회】 • 총 5차례 개회(전체회의 3, 제1소위 2)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404회	'23. 3. 1. ~ '23. 3. 30. (30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23. 3. 30.) • 통과법안('23. 3. 30.)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1소위 1)
제405회	'23. 4. 1. ~ '23. 4. 30. (30일간)	【본회의】 • 총 5차례 개의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3. 4. 3.)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3. 4. 4.)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23. 4. 5.)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3, 제1소위 3)
제406회	'23. 5. 1. ~ '23. 5. 30. (30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통과법안('23. 5. 2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1)
제407회	'23. 6. 1. ~ '22. 6. 30. (30일간)	【본회의】 • 총 7차례 개의 • 국회의원(윤관석) 체포동의안('23. 6. 12.) • 국회의원(이성만) 체포동의안('23. 6. 12.)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3. 6. 12.)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3. 6. 13.)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23. 6. 14.)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3. 6. 19.)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3. 6. 20.)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통과법안('23. 6. 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3. 6. 3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1소위 2)
제408회	'23. 7. 10. ~ '23. 7. 28. (19일간)	【본회의】 • 총 2차례 개의 • 통과법안('23. 7. 1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3, 제1소위 1)
제409회	'23. 8. 16. ~ '23. 8. 25. (10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3)
제410회	'23. 9. 1. ~ '23. 12. 9. (100일간)	【본회의】 • 총 14차례 개의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23. 9. 5.) •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23. 9. 6.)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23. 9. 7.) •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23. 9. 8.)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3. 9. 18.) •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3. 9. 19.) •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23. 9. 21.)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3. 10. 31.)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통과법안('23. 10. 6.)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 • 통과법안('23. 12. 8.)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17차례 개회(전체회의 14, 제1소위 3) • 국정감사('23. 10. 10.~10. 26.) – 법무부('23. 10. 11.), 대검찰청('23. 10. 23.), 종합감사('23. 10. 26.) 실시
제411회	'23. 12. 11.~ '24. 1. 9. (30일간)	【본회의】 • 총 4차례 개의 •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3. 12. 21.) • 통과법안('23. 12. 2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3. 12. 28.)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총 7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1소위 2)

나. 당정협의 및 간담회

당정 협의·간담회에서는 중대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안, 전세사기 대책,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 표 4-2 |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23. 2. 28.	• 중대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 대책	• **〈당 측〉** – 정책위의장, 정무위·법사위·행안위 간사 등 • **〈정부 측〉** – 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등
당정 협의	'23. 3. 2.	• 주요 ISDS 대응방향	• **〈당 측〉** –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 **〈정부 측〉** – 법무부차관, 국조실1차장, 기재부1차관 등
당정 협의	'23. 4. 20.	•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회복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 **〈당 측〉** – 정책위의장, 정무위·법사위·기재위 간사 등 • **〈정부 측〉** – 국토부장관, 법무부차관, 기재부1차관 등
당정 협의	'23. 4. 21.	•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 **〈당 측〉** – 당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복지위 간사 등 • **〈정부 측〉** – 법무부장관, 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고위 당정 협의	'23. 4. 23.	• 전세사기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	• **〈당 측〉**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 **〈정부 측〉** – 국토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당정 협의	'23. 5. 9.	•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	• **〈당 측〉** – 정책위의장, 정무위 간사, 원내대변인 등 • **〈정부 측〉** – 금융위원장, 법무부 검찰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
당정 협의	'23. 5. 11.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성과 및 후속대책 논의	• **〈당 측〉** – 정책위의장, 국토위 간사, 원내대변인 등 • **〈정부 측〉** – 국토부장관, 법무부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
당정 협의	'23. 5. 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논의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 **〈당 측〉**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행안위 간사 등 • **〈정부 측〉** – 법무부장관, 행안부차관, 경찰청장 등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고위 당정 협의	’23. 6. 18.	•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 〈당 측〉 –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 〈정부 측〉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장관 등
고위 당정 협의	’23. 8. 2.	•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	• 〈당 측〉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국토위 간사 등 • 〈정부 측〉 –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토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 협의	’23. 8. 22.	•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 〈당 측〉 –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행안위·복지위 간사 등 • 〈정부 측〉 – 법무부차관, 행안부차관, 경찰청장 등
당정 협의	’23. 8. 28.	• 정기국회 대비 국민의힘 연찬회(정기국회 중점추진 법안 및 주요현안)	• 〈당 측〉 –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장관 등
당정 협의	’23. 9. 12.	•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	• 〈당 측〉 – 정책위의장, 법사위·행안위·교육위 간사 등 • 〈정부 측〉 – 법무부차관, 교육부차관 등
고위 당정 협의	’23. 12. 3.	• 정부 전산망·중대재해법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	• 〈당 측〉 –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 〈정부 측〉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법무부장관 등

法務年鑑

05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교정업무 통계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표 5-1 | 법령자문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458	4,811	5,089	6,039	6,541	7,322	6,608	7,581	5,586	7,482
기획재정부	153	171	169	174	314	285	150	106	127	187
교육부	222	217	287	303	234	262	389	401	397	254
미래창조과학부	149	192	78	92	-	-	-	-	-	-
교육과학기술부	-	-	-	99	-	-	-	-	-	-
과학기술부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348	228	231	218	165	251
외교부	26	23	32	33	18	40	42	28	28	30
통일부	16	28	44	41	57	65	68	67	43	42
법무부	263	438	272	570	710	1,008	896	892	754	1,136
국방부	118	138	101	142	118	130	126	180	112	154
행정자치부	19	313	418	247	-	-	-	-	-	-
안전행정부	412	-	-	187	-	-	-	-	-	-
행정안전부	-	-	-	187	509	605	672	842	576	487
문화체육관광부	224	225	210	240	249	345	332	364	288	245
농림축산식품부	238	287	310	279	309	308	319	352	358	355
산업통상자원부	252	324	370	248	314	379	246	225	140	367
보건복지부	346	430	469	609	530	567	541	795	499	586
환경부	164	196	220	250	310	344	316	349	290	327
고용노동부	145	172	200	261	229	273	170	318	214	251
여성가족부	125	121	77	108	122	114	146	151	104	116
국토교통부	571	578	559	687	706	720	744	897	498	809
해양수산부	194	196	179	176	203	293	212	269	228	244
중소벤처기업부	-	-	-	-	156	190	157	140	132	191
국민안전처	2	150	139	103	-	-	-	-	-	-
방송통신위원회	35	47	70	67	91	82	75	107	69	89
국무조정실	21	10	25	31	28	29	32	50	25	30
공정거래위원회	33	34	74	132	88	141	76	62	33	110
금융위원회	169	94	198	186	231	274	188	151	99	210
국민권익위원회	10	9	11	25	26	23	50	59	29	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3	25	20	17
국가보훈처	55	60	66	86	81	72	108	122	69	73
인사혁신처	1	50	57	65	91	85	99	109	76	111
법제처	10	5	8	11	12	9	18	16	16	32
식품의약품안전처	91	103	103	106	131	119	131	137	172	128
기타	302	382	200	340	456	338	320	65	114	621

| 표 5-2 | 법령해석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68	185	188	171	178	204	171	251	224	167
기획재정부	2	-	2	-	1	2	2	5	-	6
교육부	7	6	1	2	-	-	-	2	11	1
미래창조과학부	1	1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2	3	4	1	3	1
외교부	-	-	2	4	1	1	4	3	2	
통일부	1	-	-	-	-	-	-	-	-	3
법무부	-	8	17	12	10	13	11	15	8	9
국방부	-	1	2	1	3	-	2	-	-	1
행정자치부	-	6	6	2	-	-	-	-	-	-
안전행정부	5	-	-	-	-	-	-	-	-	-
행정안전부	-	-	-	-	9	6	12	27	4	4
문화체육관광부	1	-	-	-	1	3	-	1	2	-
농림축산식품부	2	-	-	1	-	-	-	2	1	-
산업통상자원부	2	-	1	1	-	1	1	3	2	-
보건복지부	1	5	2	2	2	1	1	6	3	4
환경부	3	-	-	1	-	3	1	2	-	-
고용노동부	3	-	-	1	2	3	3	1	2	8
여성가족부	4	3	1	-	-	1	2	1	1	-
국토교통부	4	5	7	4	5	9	5	9	5	2
해양수산부	-	-	-	1	4	-	-	1	-	3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1	-	1
국민안전처	-	1	1	4	-	-	-	-	-	-
방송통신위원회	-	-	-	-	1	-	1	1	-	1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1	1	-	-	-	-
금융위원회	1	1	1	1	3	1	-	1	1	-
국민권익위원회	-	-	3	-	-	1	-	1	2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	2	-
국가보훈처	-	-	4	-	-	-	-	-	-	-
인사혁신처	-	-	-	1	-	1	-	-	-	-
법제처	-	-	-	-	-	-	1	3	2	-
식품의약품안전처	2	-	-	-	3	-	-	1	1	-
기타	129	148	138	133	130	154	121	164	172	121

| 표 5-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4	55	67	66	55	48	73	52	52	44
제 정	소 계	7	3	5	2	1	2	8	7	2	-
	법 률	1	-	3	-	-	-	-	2	-	-
	대통령령	4	2	1	2	1	1	5	2	-	-
	총리·부령	2	1	1	-	-	1	3	3	2	-
개 정	소 계	67	52	62	64	52	45	65	44	49	44
	법 률	22	7	18	15	5	5	15	3	9	10
	대통령령	23	19	20	20	18	21	27	17	15	11
	총리·부령	22	26	24	29	29	19	23	24	25	23
폐 지	법 령	-	-	-	-	2	1	-	1	1	-

| 표 5-4 | 법무자료 발간

(단위 : 건)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3
발간횟수	8	22	18	17	18	11	8	16	16	3

2. 변호사·공증

| 표 5-5 |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등록인원	18,708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29,584	31,281	32,981	34,672
개 업	15,954	17,424	18,849	20,182	21,575	23,144	24,782	26,181	27,741	29,247
비 개 업	2,754	3,107	3,469	3,833	4,263	4,551	4,802	5,100	5,292	5,425

| 표 5-6 |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구 분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임명공증인		66	73	77	75	78	81	83	82	83	83
법 무 법 인	사무소	261	245	241	239	238	234	227	225	225	225
	구성원	1,170	1,029	1,000	981	946	918	882	865	874	879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소	29	27	25	23	20	20	19	17	16	15
	구성원	115	109	93	86	85	60	55	57	45	47
대행청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 표 5-7 |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연도 \ 구분	사건처리건수
2014	3,825,991
2015	3,758,294
2016	3,745,816
2017	3,415,840
2018	3,074,532
2019	2,777,661
2020	2,425,221
2021	2,529,558
2022	2,368,621
2023	2,105,575

3. 국가소송

| 표 5-8 |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12,515	12,683	10,108	9,644	9,859	10,150	10,695	11,176	11,049	9,598
	이월	6,979	7,349	5,595	4,968	5,038	5,226	5,822	6,236	6,154	4,583
	신규	5,536	5,334	4,513	4,676	4,821	4,924	4,873	4,940	4,895	5,015
확정	계	4,807	7,378	5,265	4,515	4,515	4,267	4,396	4,390	4,600	4,958
	승소	1,896	3,351	1,810	1,744	1,799	1,586	1,664	1,736	1,750	1,919
	패소	638	751	565	545	488	473	508	465	450	459
	기타	2,273	3,276	2,890	2,226	2,228	2,208	2,224	2,189	2,400	2,580
계속중		7,708	5,305	4,843	5,129	5,344	5,883	6,299	6,786	6,449	4,640

| 표 5-9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2,515	12,683	10,108	9,644	9,859	10,150	10,695	11,176	11,049	9,598
국가원고	계	2,913	3,763	2,268	2,127	2,105	1,973	2,356	2,698	2,721	2,575
	부동산	302	305	331	400	350	376	434	618	693	644
	손해배상	27	16	17	15	14	7	6	5	6	2
	기 타	2,584	3,442	1,920	1,712	1,741	1,590	1,916	2,075	2,022	1,929
국가피고	계	9,590	8,906	7,828	7,502	7,736	8,164	8,328	8,463	8,317	7,001
	부동산	2,890	2,743	2,607	2,591	2,594	2,738	2,662	2,621	2,545	1,998
	손해배상	3,301	2,677	1,943	1,701	1,682	1,905	1,995	2,274	2,238	2,146
	기 타	3,399	3,486	3,278	3,210	3,460	3,521	3,671	3,568	3,534	2,857
국가참가	계	12	14	12	15	18	13	11	15	11	22
	부동산	3	1	0	2	3	3	3	6	0	0
	손해배상	1	4	3	3	2	0	1	1	0	0
	기 타	8	9	9	10	13	10	7	8	11	22

| 표 5-10 | 민사신청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7,113	5,731	6,220	6,983	8,134	8,974	9,519	9,895	11,972	12,889
	구 수	4,328	3,373	3,584	4,288	5,047	5,566	5,984	5,988	8,338	9,069
	신 수	2,785	2,358	2,636	2,695	3,087	3,408	3,535	3,907	3,634	3,820
처리	계	3,718	1,785	2,020	1,977	2,596	3,062	2,678	2,487	2,710	2,955
	종 결	1,234	1,394	1,512	1,336	1,762	2,314	1,907	1,513	1,688	1,718
	본안이송	2,325	222	255	355	348	255	240	180	113	209
	취 하	86	116	137	149	159	202	225	237	187	190
	각 하	30	15	17	29	36	77	55	97	93	103
	기 타	43	38	99	108	291	214	251	460	629	735
미 제		3,395	3,946	4,200	5,006	5,538	5,912	6,841	7,408	9,262	9,934

4. 행정소송

| 표 5-11 |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33,015	33,253	35,922	36,088	36,233	36,944	38,479	40,978	42,736	46,021
	이월	20,182	19,453	20,784	19,145	19,871	20,088	21,677	20,768	24,635	27,202
	신규	12,833	13,800	15,138	16,943	16,362	16,856	16,802	20,222	18,101	18,819
확정	계	14,279	13,931	18,250	17,662	17,606	15,839	18,260	16,387	15,561	18,922
	승소	7,020	6,231	9,731	10,124	9,826	9,018	10,431	9,302	8,478	11,223
	패소	1,638	1,676	2,043	1,726	1,719	1,649	1,769	1,719	1,752	1,692
	취하 등	5,621	6,024	6,476	5,812	6,061	5,172	6,060	5,366	5,331	6,007
계속중		18,736	19,322	17,672	18,426	18,627	21,105	20,219	24,591	27,175	27,099

| 표 5-12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015	33,253	35,922	36,088	36,233	36,944	38,479	40,978	42,736	46,021
조세관계	5,958	6,574	6,142	5,136	4,910	5,433	5,188	4,831	5,402	6,101
공무원신분	1,477	1,429	1,547	1,642	1,606	1,779	1,957	1,978	2,018	2,027
국토도시계획	2,156	1,824	1,594	1,505	1,708	1,890	2,025	2,978	3,781	4,545
영업허가취소·정지	3,136	2,526	2,242	2,329	2,411	2,194	1,773	1,358	1,174	741
자격·면허·등록·인가	2,693	2,078	1,877	2,029	2,776	2,794	3,245	2,921	2,968	3,327
기타	17,595	18,822	22,520	23,447	22,822	22,854	24,291	26,912	27,393	29,280

5.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표 5-13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3,976	4,149	4,738	4,558	6,064	5,860	7,371	7,394	7,132	8,590
	구 수	1,130	1,057	1,059	1,140	1,629	2,001	2,408	3,603	4,166	4,232
	신 수	2,846	3,092	3,679	3,418	4,435	3,859	4,963	3,791	2,966	4,358
처리	계	2,915	3,047	3,598	2,921	4,054	3,452	3,768	3,228	2,899	4,048
	인 용	1,177	1,057	1,154	801	1,129	895	1,109	779	691	1,079
	기 각	1,627	1,896	2,249	2,008	2,777	2,357	2,456	2,253	2,126	2,876
	기 타	111	94	195	112	148	200	203	196	82	93
미 제		1,061	1,102	1,140	1,637	2.010	2,408	3,603	4,166	4,233	4,542

| 표 5-14 | 국가배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4	3,976 (2,846)	2,915	1,177	1,627	111	1,061
2015	4,149 (3,092)	3,047	1,057	1,896	94	1,102
2016	4,738 (3,679)	3,598	1,154	2,249	195	1,140
2017	4,558 (3,418)	2,921	801	2,008	112	1,637
2018	6,064 (4,435)	4,054	1,129	2,777	148	2.010
2019	5,860 (3,859)	3,452	895	2,357	200	2,408
2020	7,371 (4,963)	3,768	1,109	2,456	203	3,603
2021	7,394 (3,791)	3,228	779	2,253	196	4,166
2022	7,132 (2,966)	2,899	691	2,126	82	4,233
2023	8,590 (4,358)	4,048	1,079	2,876	93	4,542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5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168	174	196	175	185	204	150	145	141	162
	구 수	56	58	50	70	58	97	63	63	92	63
	신 수	112	116	146	105	127	107	87	82	49	99
처리	계	109	124	126	109	88	141	87	53	78	82
	인 용	84	110	112	101	78	119	74	43	65	72
	기 각	20	12	14	7	9	14	11	9	8	9
	기 타	5	2	-	1	1	8	2	1	5	1
미 제		59	50	70	66	97	63	63	92	63	80

| 표 5-16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4	168 (112)	109	84	20	5	59
2015	174 (116)	124	110	12	2	50
2016	196 (146)	126	112	14	-	70
2017	175 (105)	109	101	7	1	66
2018	185 (127)	88	78	9	1	97
2019	204 (107)	141	119	14	8	63
2020	150 (87)	87	74	11	2	63
2021	145 (82)	53	43	9	1	92
2022	141 (49)	78	65	8	5	63
2023	162 (99)	82	72	9	1	80

* 접수란 중 ( )는 신수

6.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 표 5-17 |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구분 / 연도	지급총액	배상결정	판결	소송비용확정액
2014	745 203,013	85 180	385 198,872	275 3,961
2015	1,005 300,722	122 438	461 293,615	422 6,669
2016	960 236,223	91 275	371 228,695	498 7,253
2017	861 354,386	121 599	369 349,084	371 4,703
2018	821 770,075	107 793	319 762,218	395 7,064
2019	780 154,637	99 169	267 146,600	414 7,868
2020	763 72,781	94 210	258 62,530	411 10,041
2021	765 223,742	60 83	275 215,908	430 7,751
2022	882 148,368	57 87	293 140,810	532 7,471
2023	767 99,398	75 170	316 93,217	376 6,011

7. 헌법재판 현황

| 표 5-18 | 헌법재판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4	계	2,712	1,888	60	11	3	15	31	255	104	–	151	1,573	824
	위헌법률	64	14	7	3	3	1	–	6	6	–	–	1	50
	정당해산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5	2	–	–	–	–	–	–	–	–	–	2	3
	헌법소원	2,642	1,871	52	8	–	14	30	249	98	–	151	1,570	771
2015	계	2,683	1,937	110	47	–	15	48	379	176	–	203	1,448	746
	위헌법률	87	44	22	21	–	1	–	20	20	–	–	2	43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11	2	1	–	–	–	1	–	–	–	–	1	9
	헌법소원	2,584	1,891	87	26	–	14	47	359	156	–	203	1,445	693
2016	계	2,697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63	27	14	12	–	2	–	4	4	–	–	9	36
	탄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18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2,614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2017	계	3,347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71	11	1	1	–	–	–	10	10	–	–	–	60
	탄핵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15	2	–	–	–	–	–	–	–	–	–	2	13
	헌법소원	3,260	2,411	41	3	–	1	37	283	106	–	177	2,087	849
2018	계	3,349	2,447	168	57	–	59	52	379	108	–	271	1,900	902
	위헌법률	77	39	26	8	–	18	–	10	10	–	–	3	38
	권한쟁의	15	5	–	–	–	–	–	–	–	–	–	5	10

연도	구분	접수(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헌법소원	3,257	2,403	142	49	-	41	52	369	98	-	271	1,892	854
2019	계	3,632	2,519	49	8	-	7	34	348	142	-	206	2,122	1,113
	위헌법률	69	18	6	5	-	1	-	11	11	-	-	1	51
	권한쟁의	16	5	2	-	-	-	2	2	-	-	2	1	11
	헌법소원	3,547	2,496	41	3	-	6	32	335	131	-	204	2,120	1,051
2020	계	4,354	3,042	81	10	-	7	64	392	162	-	230	2,569	1,312
	위헌법률	71	20	11	7	-	4	-	8	8	-	-	1	51
	정당해산	-	-	-	-	-	-	-	-	-	-	-	-	-
	권한쟁의	16	11	-	-	-	-	-	5	-	-	5	6	5
	헌법소원	4,267	3,011	70	3	-	3	64	379	154	-	225	2,562	1,256
2021	계	2,827	2,621	65	15	-	4	46	343	126	-	217	2,213	1,518
	위헌법률	38	19	8	6	-	2	-	9	9	-	-	2	70
	탄핵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2	1	-	-	-	-	-	1	-	-	1	-	6
	헌법소원	2,786	2,600	57	9	-	2	46	333	117	-	216	2,210	1,442
2022	계	2,829	2,675	85	26	-	30	30	309	113	-	196	2,278	1,672
	위헌법률	43	37	25	17	-	8	-	7	7	-	-	3	76
	권한쟁의	5	4	-	-	-	-	1	1	-	-	1	2	7
	헌법소원	2,781	2,634	60	9	-	22	29	301	106	-	195	2,273	1,589
2023	계	2,591	2,659	102	38	-	14	50	473	220	-	253	2,084	1,604
	위헌법률	25	48	32	25	-	7	-	11	11	-	-	5	53
	탄핵	4	1	-	-	-	-	-	1	-	-	1	-	3
	권한쟁의	10	8	2	-	-	-	2	2	-	-	2	4	9
	헌법소원	2,552	2,602	68	13	-	7	48	459	209	-	250	2,075	1,539

8.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표 5-19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2014	변호사시험	2,432	1,387	1,045
2015	변호사시험	2,704	1,567	1,137
2016	변호사시험	3,115	1,816	1,299
2017	변호사시험	3,306	1,839	1,467
2018	변호사시험	3,490	1,985	1,505
2019	변호사시험	3,617	2,038	1,579
2020	변호사시험	3,592	1,986	1,606
2021	변호사시험	3,497	1,966	1,531
2022	변호사시험	3,528	1,967	1,561
2023	변호사시험	3,644	1,968	1,676

| 표 5-20 | 연령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	0 (0.00)	1,203 (33.01)	1,542 (42.32)	626 (17.18)	198 (5.43)	57 (1.56)	18 (0.49)

나. 합격자 현황

| 표 5-21 |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4	변호사시험	2,292	1,550	67.62	1,298	869	66.94	994	681	68.51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5	변호사시험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6	변호사시험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7	변호사시험	3,110	1,593(가준)	51.22	1,720	870	50.58	1,390	723	52.01
			1,600(가준)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8	변호사시험	3,240	1,599	49.35	1,843	906	49.16	1,397	693	49.61
2019	변호사시험	3,330	1,691	50.78	1,873	935	49.92	1,457	756	51.89
2020	변호사시험	3,316	1,768	53.31	1,809	972	53.73	1,507	796	52.82
2021	변호사시험	3,156	1,706	54.06	1,766	985	55.77	1,390	721	51.87
2022	변호사시험	3,197	1,712	53.55	1,766	951	53.85	1,431	761	53.18
2023	변호사시험	3,255	1,725	53.00	1,731	921	53.21	1,524	804	52.76

9. 국제법무활동

| 표 5-22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횟 수	56	28	14	9	14	16	13	31	30	28

| 표 5-23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횟 수	7	7	12	7	9	4	1	2	-	8

| 표 5-24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횟 수	48	27	29	11	18	27	53	37	39	28
인 원	73	82	55	42	20	38	47	117	104	44

제2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 표 5-25 | 전체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2,463,524	2,580,756	2,672,784	2,506,404	2,401,898	2,503,478	2,397,832	2,154,158	2,164,845	2,280,314
	구수				83,944	88,432	83,473	90,535	99,297	111,949	142,279	181,786	61,141	88,009
	신수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2,192,305
처리	계				2,374,370	2,495,255	2,581,748	2,407,061	2,290,052	2,361,611	2,215,577	2,084,164	2,074,336	2,177,050
	직수 및 송치사건	기소	계		870,320	852,314	894,616	809,882	719,980	699,111	662,077	576,547	608,836	640,075
			구공판		191,080	187,402	209,734	202,649	196,821	205,418	219,062	193,457	190,586	206,498
			구약식		679,240	664,912	684,882	607,233	523,159	493,693	443,015	383,090	418,250	433,577
		불기소	소계		1,344,779	1,460,294	1,458,816	1,367,742	1,320,937	1,381,922	1,291,658	477,541	498,582	507,028
			무혐의		334,419	361,070	371,611	333,716	314,565	324,017	317,251	85,493	79,957	86,707
			기소유예		338,350	378,723	376,137	338,971	274,936	242,471	217,206	197,405	220,235	203,312
			기소중지		208,340	218,047	213,833	209,989	237,460	295,726	264,868	77,564	83,471	80,866
			참고인중지		15,694	12,542	10,008	8,411	7,150	6,836	7,153	1,016	700	630
			각하		95,974	112,931	104,710	116,518	138,712	162,762	171,110	40,109	39,543	52,654
			기타		352,002	376,981	382,517	360,137	348,114	350,110	314,070	75,954	74,676	82,859
		보완수사요구			-	-	-	-	-	-	-	199,901	157,801	149,025
		이송	소년보호		25,226	25,027	25,192	24,948	23,478	24,396	25,919	20,998	24,342	28,204
			가정보호		9,449	20,036	22,264	18,829	19,539	23,424	19,868	22,852	22,208	21,195
			타관		124,378	137,197	179,522	182,140	202,896	228,636	211,165	177,082	143,701	148,978
			성매매보호		218	387	1,338	956	465	249	212	170	142	158
			아동보호		-	-	-	2,564	2,757	3,873	4,678	8,261	7,865	8,261
	불제사건	기록반환			-	-	-	-	-	-	-	477,186	491,696	555,347
		재수사요청			-	-	-	-	-	-	-	21,030	21,863	18,355
	중제사건	기록반환			-	-	-	-	-	-	-	98,861	94,514	98,034
		시정조치요구			-	-	-	-	-	-	-	3,735	2,786	2,390
미제					89,154	85,501	91,036	99,343	111,846	141,867	182,255	69,994	90,509	103,264

나. 청별 사건

| 표 5-26 | 청별 사건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379,580	2,492,321	2,589,311	2,415,869	2,302,596	2,391,529	2,255,553	1,972,372	2,103,704	2,192,305
서울중앙	175,052	175,798	181,844	171,076	165,305	172,967	172,404	150,857	163,017	170,714
서울동부	76,497	76,287	73,148	71,256	73,250	76,612	68,797	57,559	63,472	64,879
서울남부	99,170	103,045	100,839	97,922	96,437	100,253	88,444	80,725	84,956	86,293
서울북부	90,907	91,109	94,269	88,617	84,968	85,674	77,905	67,668	74,777	74,151
서울서부	68,703	67,255	70,706	65,081	64,015	64,409	56,189	51,086	57,401	59,988
의정부	87,175	93,587	98,927	92,808	91,082	90,519	84,813	72,933	50,739	45,683
고양	59,494	62,921	67,051	63,366	58,324	61,366	56,262	49,303	52,696	57,363
남양주	-	-	-	-	-	-	-	-	27,377	32,446
인천	141,832	143,257	155,534	144,821	139,518	145,386	135,824	113,911	123,911	129,435
부천	55,792	60,109	64,154	58,583	58,422	58,402	56,628	48,897	52,664	54,294
수원	123,235	136,617	152,098	142,413	131,605	139,803	136,060	116,510	124,405	128,755
성남	60,984	64,293	74,402	65,256	62,303	63,293	61,240	55,355	55,442	63,060
여주	19,216	20,627	22,661	22,466	21,753	22,826	21,628	18,553	19,825	19,737
평택	34,926	38,080	43,750	41,843	39,415	42,389	44,077	37,191	39,102	43,309
안산	69,766	82,751	94,682	81,275	73,865	75,641	72,090	62,129	62,782	65,865
안양	40,557	43,780	48,460	42,634	40,669	42,096	36,288	31,245	32,113	34,192
춘천	20,227	20,663	21,007	19,579	17,631	19,230	18,802	15,227	16,643	17,793
강릉	18,166	17,941	18,893	18,226	15,779	16,365	14,251	12,525	14,365	15,966
원주	18,948	19,907	21,182	20,387	17,241	18,276	16,524	15,184	17,418	16,963
속초	7,157	7,472	7,362	7,423	6,798	7,132	6,670	6,384	6,635	6,732
영월	7,790	8,403	8,745	7,315	6,916	7,488	6,740	6,214	6,542	7,174
대전	68,139	71,061	77,084	77,375	75,308	78,099	77,509	63,022	69,321	74,618
홍성	13,732	15,991	16,407	14,722	14,584	15,264	15,348	11,810	13,607	13,371
공주	5,878	5,788	5,806	5,473	5,994	5,926	5,920	5,212	5,279	5,473
논산	8,193	8,707	8,193	8,146	7,770	7,702	7,895	6,465	6,859	7,442
서산	17,597	17,529	18,782	17,920	18,197	17,915	17,246	16,192	16,505	19,317
천안	43,292	46,263	48,295	43,913	44,222	44,056	41,842	35,269	37,667	43,547
청주	41,656	44,964	51,021	46,298	45,767	46,182	43,818	39,726	42,830	42,291
충주	13,769	15,577	17,104	14,260	13,905	14,119	14,270	12,214	13,352	12,393

검찰청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천	7,158	7,086	6,787	6,390	5,986	5,903	5,649	5,577	5,440	5,695
영동	3,302	3,623	3,259	3,020	2,673	3,323	3,249	2,930	2,799	3,069
대구	95,746	98,787	98,506	89,621	85,753	89,907	83,411	72,927	74,028	83,642
안동	12,985	13,244	12,416	11,806	10,944	11,702	11,493	10,161	9,916	9,390
경주	12,774	13,362	12,974	12,393	10,855	11,707	10,500	9,325	9,390	9,777
포항	22,382	23,637	22,937	22,055	21,277	21,857	19,398	16,882	17,130	18,666
김천	25,438	26,971	27,520	25,274	22,493	23,189	21,835	19,046	20,030	19,852
상주	7,276	7,496	7,277	7,139	7,576	7,807	7,417	6,773	7,472	6,901
의성	3,687	3,846	4,415	3,944	4,058	4,492	4,065	4,240	3,956	4,172
영덕	3,959	4,239	4,244	4,376	4,313	4,062	4,319	3,902	3,929	4,705
대구서부	48,041	50,597	47,113	43,776	40,931	43,275	41,894	38,438	37,554	38,314
부산	138,579	138,971	134,094	90,312	78,056	84,222	74,932	63,992	66,505	72,650
부산동부	42,094	46,398	44,792	42,596	40,629	42,566	39,187	35,074	37,882	40,895
부산서부	-	-	-	37,240	42,841	45,057	42,435	36,954	38,161	39,908
울산	64,205	69,837	69,618	63,190	59,769	62,922	56,258	54,598	54,181	55,949
창원	49,294	52,880	54,616	51,915	48,384	52,698	49,897	41,694	42,759	43,230
진주	22,036	23,244	23,191	21,133	19,591	21,876	25,006	23,584	37,792	21,279
통영	22,667	24,614	26,793	24,519	20,754	20,871	20,408	16,665	18,161	23,160
밀양	6,753	7,009	6,918	6,836	6,478	8,029	6,975	6,733	6,114	6,679
거창	4,975	5,422	5,610	4,901	4,432	4,811	4,560	4,287	4,389	4,625
마산	20,829	22,187	21,268	18,875	17,839	19,253	17,355	14,717	15,336	16,358
광주	94,977	93,188	89,002	83,088	78,863	81,976	77,858	66,839	70,508	75,938
목포	24,568	25,137	25,152	22,224	21,125	21,387	20,939	19,985	21,034	21,726
장흥	3,120	3,264	3,502	3,264	3,179	3,245	3,154	2,947	2,964	3,451
순천	38,272	42,618	42,724	37,967	35,909	38,359	34,803	31,781	33,249	34,056
해남	6,619	7,106	7,081	6,992	6,490	6,483	6,218	5,945	7,234	7,118
전주	36,633	38,139	39,814	36,768	36,669	37,815	35,442	31,567	35,255	35,821
군산	26,272	26,145	26,631	26,545	24,709	24,975	23,236	20,603	21,077	21,662
정읍	8,389	8,902	8,865	9,267	8,242	8,646	8,227	8,243	8,432	8,155
남원	4,566	5,053	4,737	4,893	4,027	4,261	4,112	4,075	4,105	4,394
제주	34,134	39,537	45,049	43,096	36,708	35,463	35,837	32,522	35,220	37,824

※ 2021년부터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 접수 건수 포함

다. 고소·고발 사건

| 표 5-27 | 고소·고발 사건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743,223	768,579	744,960	729,229	782,251	850,551	843,712	522,368	494,753	524,600
	구수		58,821	62,890	59,659	60,869	68,140	78,511	100,422	116,196	30,816	43,369
	신수		684,402	705,689	685,301	668,360	714,111	772,040	743,290	406,172	463,937	481,231
처리	계		680,782	708,905	683,655	661,220	704,080	750,668	727,137	491,624	451,462	474,989
	기소	소계	152,955	147,111	144,331	135,601	135,340	140,519	135,290	110,220	115,851	130,809
		구공판	46,110	43,211	45,478	43,122	44,932	48,323	51,815	40,001	39,411	49,675
		구약식	106,845	103,890	98,853	92,479	90,408	92,196	83,475	70,219	76,440	81,134
	불기소	소계	465,207	497,561	464,421	452,450	488,050	524,399	505,758	165,338	173,066	185,046
		무혐의	169,636	175,930	174,599	166,589	179,861	187,842	186,589	54,534	53,597	58,567
		기소유예	40,706	46,201	36,880	33,939	31,958	30,678	26,436	29,287	39,240	32,255
		기소중지	84,952	87,672	84,139	80,201	82,678	88,105	72,143	21,090	20,604	19,883
		기타	169,913	187,758	168,803	171,721	193,553	217,774	220,590	60,427	59,625	74,341
	보완수사요구		-	-	-	-	-	-	-	99,634	79,307	75,876
	이송	소년보호	1,441	1,241	1,614	2,040	2,354	2,705	2,706	2,554	2,910	3,008
		가정보호	867	973	909	895	995	839	712	812	755	716
		타관	60,309	62,018	72,378	69,855	76,961	81,704	82,088	112,526	79,138	79,060
		성매매보호	3	1	2	3	1	-	5	2	1	-
		아동보호	-	-	-	376	379	502	578	538	434	474
미제			62,441	59,674	61,305	68,009	78,171	99,883	116,575	30,744	43,291	49,611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표 5-28 | 병역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25,824	23,301	19,397	11,352	8,392	7,605	5,343	2,609	4,902	8,583
	구수			160	99	76	80	78	114	135	124	49	232
	신수			25,664	23,202	19,321	11,272	8,314	7,491	5,208	2,485	4,853	8,351
처리	계			33,461	25,729	23,229	19,318	11,272	8,274	5,221	2,565	4,691	8,439
	기소	소계		20,003	16,604	16,359	13,852	7,680	5,201	2,676	1,130	2,603	5,247
		구공판		1,834	1,899	1,786	1,623	1,293	963	816	655	739	1,287
		구약식		18,169	14,705	14,573	12,229	6,387	4,238	1,860	475	1,864	3,960
	불기소	소계		11,973	8,682	6,443	5,091	3,348	2,785	2,275	598	1,248	2,319
		무혐의		405	393	432	407	242	277	205	86	66	63
		기소유예		1,493	1,187	1,207	1,026	969	1,190	464	280	977	2,026
		기소중지		6,823	5,870	3,903	2,591	1,240	828	1,189	15	8	15
		기타		3,252	1,232	901	1,067	897	490	417	217	197	215
	보완수사요구			-	-	-	-	-	-	-	645	595	572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타관		1,485	443	427	375	244	288	270	192	245	301
		성매매송치		-	-	-	-	-	-	-	-	-	-
미제				165	95	72	79	80	118	122	44	211	144

| 표 5-29 | 경제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125,015	134,123	118,507	115,754	103,541	107,950	118,138	83,911	76,933	92,496
	구수			10,474	10,138	9,562	10,451	11,593	12,145	16,630	21,063	8,338	11,601
	신수			114,541	123,985	108,945	105,303	91,948	95,805	101,508	62,848	68,595	80,895
처리	계			114,950	125,059	108,785	104,756	92,204	93,090	96,994	75,724	65,566	78,938
	기소	소계		26,097	26,878	27,418	27,639	23,072	22,718	22,605	17,954	17,794	22,921
		구공판		9,146	9,208	9,114	8,897	8,667	8,492	8,519	7,028	7,091	9,604
		구약식		16,951	17,670	18,304	18,742	14,405	14,226	14,086	10,926	10,703	13,317
	불	소계		76,958	86,499	66,829	60,151	53,329	54,188	57,787	23,302	22,451	25,747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소	무혐의	16,885	17,335	17,295	17,419	17,045	18,389	22,573	7,582	6,270	7,234
		기소유예	17,135	19,042	12,547	11,420	9,204	8,134	8,555	7,346	7,423	9,208
		기소중지	8,701	8,201	6,835	6,570	7,270	8,300	7,638	2,400	2,441	2,872
		기타	34,237	41,921	30,152	24,742	19,810	19,365	19,021	5,974	6,317	6,433
	보완수사요구		-	-	-	-	-	-	-	14,108	11,948	13,377
	이송	소년보호	680	700	664	534	454	488	616	664	998	1,289
		가정보호	-	-	-	1	-	-	-	-	-	1
		타관	11,215	10,982	13,874	16,431	15,349	15,696	15,986	19,696	12,375	15,603
		성매매	-	-	-	-	-	-	-	-	-	-
미제			10,065	9,064	9,722	10,998	11,337	14,860	21,144	8,187	11,367	13,558

| 표 5-30 | 폭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404,955	431,618	450,413	437,983	419,272	419,596	376,618	245,030	258,900	258,864
	구수		6,775	6,863	6,754	7,481	8,272	9,469	10,762	16,632	6,388	9,842
	신수		398,180	424,755	443,659	430,502	411,000	410,127	365,856	228,718	252,512	249,022
처리	계		397,142	424,815	443,141	429,923	410,157	407,715	360,619	238,674	249,414	248,365
	기소	소계	105,712	98,166	98,581	93,055	91,871	93,464	97,101	82,432	90,316	92,264
		구공판	30,006	28,631	32,339	30,206	28,878	28,315	27,986	24,324	25,818	26,659
		구약식	75,706	69,535	66,242	62,849	62,993	65,149	69,115	58,108	64,498	65,605
	불기소	소계	269,267	293,812	308,410	302,149	284,118	276,000	230,289	94,898	103,055	98,687
		무혐의	33,672	33,511	32,274	31,211	32,250	33,867	33,745	9,003	8,357	9,483
		기소유예	61,757	58,882	51,859	47,175	40,459	34,857	28,649	23,864	23,672	21,254
		기소중지	33,711	45,534	53,443	57,892	55,328	56,412	37,900	25,252	31,521	29,066
		기타	140,127	155,885	170,834	165,871	156,081	150,864	129,995	36,779	39,505	38,884
	보완수사요구		-	-	-	-	-	-	-	22,098	19,050	18,693
	이송	소년보호	6,476	6,072	6,329	7,291	6,914	6,807	5,930	5,247	6,562	6,940
		가정보호	9,069	19,127	20,989	17,701	18,247	21,712	18,206	21,008	20,422	19,421
		타관	6,618	7,638	8,832	9,471	8,756	9,385	8,780	12,724	9,752	12,057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256	251	347	313	267	257	303
미제			7,813	6,802	7,272	8,060	9,115	11,881	15,999	6,356	9,486	10,499

| 표 5-31 | 강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18,125	17,655	16,041	17,713	17,271	17,849	8,804	6,091	8,618	9,198
	구수			926	1,196	838	1,299	1,213	1,277	1,551	868	346	451
	신수			17,199	16,459	15,203	16,414	16,058	16,572	7,253	5,223	8,272	8,747
처리	계			16,826	16,763	14,726	16,449	15,965	15,224	8,061	5,782	8,150	8,750
	기소	소계		6,450	5,912	5,260	4,671	4,787	4,665	2,173	1,812	2,070	2,147
		구공판		5,796	5,158	4,810	4,382	4,514	4,504	2,135	1,790	2,042	2,105
		구약식		654	754	450	289	273	161	38	22	28	42
	불기소	소계		8,466	9,099	7,694	10,335	9,630	8,892	5,264	1,842	3,528	2,622
		무혐의		3,775	3,869	3,866	3,964	4,094	4,362	1,073	379	506	455
		기소유예		1,096	1,196	978	785	682	667	376	290	278	378
		기소중지		1,058	1,042	1,234	1,246	1,116	1,093	143	96	79	68
		기타		2,537	2,992	1,616	4,340	3,738	2,770	3,672	1,077	2,665	1,721
	보완수사요구			-	-	-	-	-	-	-	550	413	413
	이송	소년보호		593	379	384	347	284	312	167	117	110	133
		가정보호		25	49	29	26	33	19	5	4	4	3
		타관		1,292	1,324	1,359	1,066	1,224	1,331	451	1,451	2,021	3,432
		성매매		-	-	-	-	-	-	-	-	-	-
		아동보호		-	-	-	-	4	7	5	6	4	-
미제				1,464	1,299	892	1,315	1,264	1,306	2,625	309	468	448

※ 검찰통계사무규정 개정(2020. 5. 8.)에 따라 흉악사범에서 강력사범으로 변경

| 표 5-32 | 교통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644,397	663,726	688,128	581,769	471,945	442,188	424,448	258,499	271,877	268,075
	구수			1,870	2,528	2,456	2,941	3,317	3,234	3,630	8,108	2,862	4,461
	신수			642,527	661,198	685,672	578,828	468,628	438,954	420,818	250,391	269,015	263,614
처리	계			641,732	661,340	685,327	578,550	468,775	438,643	416,395	255,697	267,571	263,600
	기소	소계		361,137	351,980	358,119	310,143	249,514	213,543	198,716	183,680	198,247	197,181
		구공판		41,637	36,105	42,152	42,485	38,084	43,579	55,864	49,717	47,183	43,169
		구약식		319,500	315,875	315,967	267,658	211,430	169,964	142,852	133,963	151,064	154,012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불기소	소계	270,987	299,463	314,563	255,695	208,095	213,993	205,785	45,514	42,945	40,995
		무혐의	59,968	67,463	76,786	50,160	24,020	22,971	22,992	5,486	4,898	4,579
		기소유예	58,600	70,892	75,315	51,319	25,329	19,752	22,055	22,612	21,580	20,576
		기소중지	14,304	14,575	15,120	14,454	16,565	19,964	17,186	8,026	9,162	8,623
		기타	138,115	146,533	147,342	139,762	142,181	151,306	143,552	9,390	7,305	7,217
	보완수사요구		-	-	-	-	-	-	-	16,117	14,816	13,052
	이송	소년보호	5,042	4,731	4,901	5,073	4,231	4,535	5,496	4,702	5,338	6,359
		가정보호	-	1	1	1	-	-	1	-	0	1
		타관	4,566	5,165	7,743	7,638	6,935	6,572	6,397	5,684	6,225	6,012
		성매매	-	-	-	-	-	-	-	-	0	0
미제			2,665	2,386	2,801	3,219	3,170	3,545	8,053	2,802	4,306	4,475

마. 주요신분별 사건

| 표 5-33 | 소년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91,100	91,723	88,226	85,178	76,642	76,871	74,422	57,247	62,646	68,629
	구수		1,018	921	823	1,062	1,276	1,690	1,817	3,101	1,393	1,837
	신수		90,082	90,802	87,403	84,116	75,366	75,184	72,613	54,146	61,987	67,511
처리	계		90,158	90,890	87,277	84,026	75,150	75,197	72,344	55,854	61,542	67,201
	기소	소계	6,764	6,618	6,238	5,648	5,945	6,155	6,847	5,224	5,563	5,660
		구공판	4,284	4,437	4,010	3,531	3,944	4,255	4,949	3,692	3,945	4,110
		구약식	2,480	2,181	2,228	2,117	2,001	1,900	1,898	1,532	1,618	1,550
	불기소	소계	50,897	51,086	47,718	46,166	37,873	36,499	30,331	18,365	21,223	22,250
		무혐의	5,260	6,201	5,964	5,532	5,280	5,522	5,395	724	800	921
		기소유예	31,036	30,371	26,558	25,416	20,237	19,157	15,952	13,420	15,439	15,895
		기소중지	6,490	5,322	6,707	6,566	5,031	4,889	3,081	2,948	3,598	4,074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 타	8,111	9,192	8,489	8,652	7,325	6,931	5,903	1,273	1,386	1,360
보완수사요구		-	-	-	-	-	-	-	4,709	3,780	3,680
이송	소년보호	25,191	24,999	25,159	24,935	23,478	24,393	25,869	20,998	24,342	28,204
이송	가정보호	49	156	180	183	169	212	233	405	348	373
이송	아동보호	0	0	0	0	9	6	9	5	5	1
이송	타 관	7,253	8,023	7,972	7,067	7,666	7,926	9,054	6,148	6,281	7,033
이송	성매매	4	8	10	27	10	6	1	0	0	0
미제		942	833	949	1,152	1,492	1,677	2,086	1,393	1,838	2,147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표 5-34 | 학생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6,047	4,947	2,972	2,264	1,061	1,360	3,082	4,731	6,067	8,060
접수	구 수	74	76	35	17	27	39	35	153	117	180
접수	신 수	5,973	4,871	2,937	2,247	1,034	1,321	3,047	4,578	5,950	7,880
처리	계	5,970	4,912	2,957	2,242	1,024	1,329	2,954	4,583	5,853	7,825
처리	기소 소계	363	274	244	148	40	27	147	298	302	397
처리	기소 구공판	177	95	85	86	16	9	84	102	123	193
처리	기소 구약식	186	179	159	62	24	18	63	196	179	204
처리	불기소 소계	3,645	3,046	1,809	1,417	534	676	1,358	1,719	2,385	3,039
처리	불기소 무혐의	415	463	247	163	55	95	257	75	87	136
처리	불기소 기소유예	2,353	1,829	1,007	863	288	343	716	1,231	1,759	2,120
처리	불기소 기소중지	179	245	211	210	90	103	138	353	442	667
처리	불기소 기타	698	509	344	181	101	135	247	60	97	116
처리	보완수사요구	-	-	-	-	-	-	-	335	447	511
처리	이송 소년보호	1,520	1,089	670	495	336	448	1,121	1,628	2,219	3,141
처리	이송 가정보호	2	4	4	2	3	5	10	41	32	37
처리	이송 아동보호	0	0	0	0	0	0	0	0	1	0
처리	이송 타 관	439	496	229	180	111	173	318	562	467	700
처리	이송 성매매	1	3	1	0	0	0	0	0	0	0
미제		77	35	15	22	37	31	128	148	214	235

| 표 5-35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7,778	7,942	9,480	13,466	18,458	19,483	21,622	17,707	27,263	20,349
	구수			884	1,085	960	1,233	1,634	1,677	2,057	2,850	1,049	891
	신수			6,894	6,857	8,520	12,233	16,824	17,806	19,565	14,857	26,214	19,458
처리	계			7,044	7,314	8,553	12,041	17,083	17,697	18,870	16,850	26,354	19,451
	기소	소계		415	293	303	345	190	180	128	104	76	86
		구공판		354	256	274	301	147	148	111	97	61	75
		구약식		61	37	29	44	43	32	17	7	15	11
	불기소	소계		6,278	6,755	7,831	11,157	16,227	17,029	18,210	11,482	11,681	12,800
		무혐의		2,560	2,443	2,481	2,894	2,920	2,988	3,102	1,601	1,533	1,490
		기소유예		121	99	104	171	95	80	60	68	24	20
		기소중지		91	71	45	79	74	65	78	26	22	14
		기타		3,506	4,142	5,201	8,013	13,138	13,896	14,970	9,787	10,102	11,276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351	266	419	539	666	488	532	4,794	14,143	6,019
		성매매		-	-	-	-	-	-	-	-	-	-
	보완수사			-	-	-	-	-	-	-	470	454	546
미제				734	628	927	1,425	1,375	1,786	2,752	857	909	898

| 표 5-36 | 외국인 사건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38,674	48,277	54,200	46,928	45,068	50,867	49,504	36,375	38,718	41,437
	구수			775	1,283	1,049	1,257	1,145	1,486	1,785	2,581	1,253	1,850
	신수			37,899	46,994	53,151	45,671	43,923	49,381	47,719	33,794	37,465	39,587
처리	계			37,615	47,280	53,001	45,867	43,671	48,866	48,071	35,128	36,873	39,577
	기소	소계		13,863	16,535	18,332	14,944	13,789	14,811	14,921	13,753	14,975	16,042
		구공판		2,894	3,979	3,985	3,974	4,162	4,927	5,221	5,028	5,353	5,605
		구약식		10,969	12,556	14,347	10,970	9,627	9,884	9,700	8,725	9,622	10,437
	불기소	소계		22,100	28,377	31,609	28,173	27,097	30,174	29,157	13,312	14,147	15,888
		무혐의		4,138	5,981	6,832	5,840	5,175	5,649	5,930	1,414	1,275	1,520
		기소유예		8,308	10,246	11,788	9,960	9,130	10,599	9,169	7,406	8,384	9,355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소중지	4,191	5,642	5,863	5,325	5,385	5,851	6,204	2,141	2,405	2,586
		기 타	5,463	6,508	7,126	7,048	7,407	8,075	7,854	2,351	2,083	2,427
	보완수사요구		–	–	–	–	–	–	–	4,350	3,851	3,671
	이송	소년보호	31	45	48	57	61	86	164	125	179	272
		가정보호	145	314	350	303	365	480	388	478	524	465
		타 관	1,468	2,004	2,649	2,386	2,320	3,312	3,439	3,105	3,195	2,965
		성 매 매	8	5	13	4	6	3	2	5	2	4
미 제			1,059	997	1,199	1,061	1,397	1,940	1,322	1,247	1,845	1,860

2. 구속영장 발부 등

| 표 5-37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연도 \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14	계	41,637	5,310	7,303	28,580	-	30,547	30,269	30,207	62	79	199	16	39	64	80	-
	검사	8,134	-	1,903	5,835	-	6,786	6,750	6,731	19	-	36	3	31	1	1	-
	사경	33,503	5,310	5,400	22,745	-	23,761	23,519	23,476	43	79	163	13	8	63	79	-
'15	계	44,110	5,695	6,831	31,153	-	33,946	33,731	33,655	76	67	148	21	37	47	43	-
	검사	7,013	-	1,528	5,142	-	6,181	6,147	6,115	32	-	34	3	27	1	3	-
	사경	37,097	5,695	5,303	26,011	-	27,765	27,584	27,540	44	67	114	18	10	46	40	-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0	36	0	30	3	3	-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
'18	계	35,946	5,871	5,585	24,438	-	27,525	27,388	27,332	56	20	117	6	20	32	59	-
	검사	4,225	-	1,118	3,095	-	4,584	4,559	4,534	25	1	24	2	18	1	3	-
	사경	31,721	5,871	4,467	21,343	-	22,941	22,829	22,798	31	19	93	4	2	31	56	-
'19	계	35,345	5,683	5,587	24,018	-	26,860	26,756	26,704	52	8	96	5	16	34	41	-
	검사	3,167	-	922	2,235	-	3,645	3,628	3,604	24	0	17	1	14	1	1	-
	사경	32,178	5,683	4,665	21,783	-	23,215	23,128	23,100	28	8	79	4	2	33	40	-
'20	계	31,033	5,260	4,656	21,098	-	24,467	24,373	24,335	38	6	88	4	8	30	46	-
	검사	1,807	-	513	1,289	-	3,126	3,116	3,094	22	0	10	0	5	1	4	-
	사경	29,226	5,260	4,143	19,809	-	21,341	21,257	21,241	16	6	78	4	3	29	42	-
'21	계	28,201	6,174	3,895	18,064	-	20,973	20,897	20,861	36	3	45	0	4	21	20	28
	검사	1,217	-	330	886	-	2,323	2,320	2,302	18	0	3	0	2	1	0	0
	사경	26,984	6,174	3,565	17,178	-	18,650	18,577	18,559	18	3	42	0	2	20	20	28
'22	계	29,000	6,389	4,187	18,352	-	21,555	21,463	21,445	18	4	64	2	7	16	39	24
	검사	1,434	-	385	1,038	-	2,286	2,279	2,270	9	0	6	0	3	1	2	1
	사경	27,566	6,389	3,802	17,314	-	19,269	19,184	19,175	9	4	58	2	4	15	37	23
'23	계	34,434	8,140	5,346	20,882	-	25,467	25,365	25,328	37	6	71	3	6	17	45	25
	검사	1,906	-	517	1,388	-	3,068	3,065	3,051	14	0	3	1	1	0	1	0
	사경	32,528	8,140	4,829	19,494	-	22,399	22,300	22,277	23	6	68	2	5	17	44	25

3. 구속적부심사

| 표 5-38 |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1,956	2,007
	구 수	-	-	-	-	-	-	-	-	-	-
	신 수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1,815	1,542	1,956	2,007
처리	계	2,127	2,117	2,353	2,125	1,993	1,929	1,812	1,542	1,956	2,007
	석 방	441	344	355	301	240	197	118	92	132	157
	기 각	1,656	1,748	1,972	1,795	1,730	1,691	1,666	1,428	1,784	1,831
	취 하	30	25	26	29	23	41	28	22	40	19
심사중		-	-	-	-	1	-	1	-	-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표 5-39 | 항 고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51,995	55,140	53,168	57,306	65,456	80,195	80,627	44,057	33,589	51,562
	구 수	3,327	4,386	4,505	4,825	5,435	7,936	7,651	7,738	3,231	3,421
	신 수	48,668	50,754	48,663	52,481	60,021	72,259	72,976	36,319	30,358	48,141
처리	계	47,602	50,632	48,341	51,886	57,524	72,539	72,879	40,826	30,171	47,551
	기소명령	201	121	117	96	50	60	28	17	13	25
	재기수사명령	3,606	3,436	3,067	3,646	4,402	4,695	4,706	3,017	1,925	2,244
	주문변경명령	114	90	255	240	140	135	44	39	39	77
	항고기각	39,618	42,984	40,305	42,247	43,628	52,451	57,580	35,484	27,099	40,476
	각 하	4,063	4,001	4,597	5,648	9,304	15,198	10,521	2,269	1,095	4,729
미제		4,393	4,508	4,827	5,440	7,932	7,656	7,748	3,231	3,418	4,011

| 표 5-40 | 재항고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	계	2,936	3,110	2,669	3,754	4,300	7,312	6,447	4,616	4,408	4,255
	구 수	919	461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1,491
	신 수	2,017	2,649	2,321	3,289	3,777	6,404	4,968	3,432	3,716	2,764
처리	계	2,476	2,762	2,204	3,231	3,392	5,833	5,263	3,924	2,917	2,935
	기소명령	-	-	-	-	-	-	-	-	-	1
	재기수사명령	52	72	59	61	56	104	142	74	54	52
	주문변경명령	-	1	-	-	-	-	-	-	-	-
	항고기각	1,501	1,722	1,655	2,170	2,247	3,717	4,550	3,059	2,084	1,887
	각 하	923	967	490	1,000	1,089	2,012	571	791	779	995
미 제		460	348	465	523	908	1,479	1,184	692	1,491	1,320

| 표 5-41 | 재정신청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심 사 중		16,037	19,377	22,165	25,061	29,406	36,793	42,005	41,370	44,074	48,101
접수	계	20,771	21,043	19,393	21,285	24,212	34,758	29,743	17,156	13,825	21,095
	공소제기명령	-	-	-	-	-	-	-	-	-	-
	고법송부	20,771	21,043	19,393	21,285	24,209	34,756	29,742	17,155	13,822	19,887
	신청취소	-	-	-	-	3	2	1	1	3	-
처리	계	18,007	19,461	16,605	18,389	19,864	27,369	24,530	17,790	11,118	15,860
	신청기각	17,738	19,184	16,392	18,014	19,586	27,085	24,209	17,571	10,939	15,602
	공소제기결정	150	160	86	171	106	97	161	111	77	117
	신청취소	119	117	127	204	172	187	160	108	102	141

5. 형의 집행

| 표 5-42 | 사형집행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2002	2003~2007	2008	2009~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집행인원	-	-	-	-	-	-	-	-	-	-	-	-
기타 (사면·감형 등)	17	4	-	6	-	-	-	-	-	-	-	-

| 표 5-43 |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분금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14	30,338,793,001	1,515,336,230	2,437,519,838	212,084,718	4,164,940,786	26,173,852,215
2015	30,427,117,765	1,485,721,253	2,172,718,742	285,497,041	3,943,937,036	26,483,180,729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2018	32,367,440,507	1,302,533,747	3,123,518,750	652,849,501	5,078,901,998	27,288,538,509
2019	32,616,527,504	1,223,258,449	3,000,576,228	494,089,002	4,717,923,679	27,898,603,825
2020	37,922,664,770	1,277,513,057	4,242,205,364	321,135,450	5,840,853,871	32,081,810,899
2021	37,716,213,301	1,194,457,327	3,941,826,907	157,795,659	5,294,079,893	32,422,133,408
2022	38,197,346,186	1,193,344,535	3,856,611,451	97,944,158	5,147,900,144	33,049,446,042
2023	39,124,329,114	1,368,269,581	3,767,269,629	119,999,207	5,255,538,417	33,868,790,697

※ 조정금액은 당해 연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 표 5-44 | 사면

(단위 : 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9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19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19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19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19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19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19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19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19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19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19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1990. 4. 12.	-	1	-	-	-	-	-	김현희
19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1991. 5. 25.	-	-	-	30 (9)	-	-	-	-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1991. 12. 24.	-	1	-	-	-	1	-	-
1992. 12. 24.	-	9	-	1	-	12	2	-
19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19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19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19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19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 공무원
19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19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19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19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19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19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19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19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20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20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20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20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20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20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20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20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경축(건설업체 벌점 삭제 등 4,390명)
20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2008. 1. 1.	-	8	-	14	-	18	35	-
20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20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 (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20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2009. 12. 31.	-	1	-	-	-	-	-	-
20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2012. 1. 12.	-	595	-	185	-	-	165	-
2013. 1. 31.	-	16	-	3	-	18	18	-
20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20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2016. 8. 15.	-	858 (6)	-	261	-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2017. 12. 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2019. 2. 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2019. 12. 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2020. 12. 31.	-	556	-	153	-	8	2,307 (1)	2021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118,923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119,608명)
2021. 12. 31.	-	642	-	131	-	369	1952	2022년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980,780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983,051명, 전직 대통령 포함)
2022. 1. 26.	-	-	-	-	-	2	-	2022년 신년 후속조치
2022. 8. 15.	-	495	-	87	-	7	1104	2022년 광복절(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592,037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593,509명)
2022. 12. 28.	-	9	-	2	-	1342 (4)	20 (1)	2023년 신년
2023. 8. 15.	-	2,062	-	82	-	26 (4)	- (2)	2023년 광복절(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808,016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811,978명)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 표 5-45 |

(단위 : 천원,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14,000,000	20,000,000	24,000,000	27,500,000	33,213,000	33,213,000	37,313,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보상인원	34,363	14,546	8,713	7,374	5,073	4,257	4,380	3,414	2,983	2,956
지급금액	88,165,833	52,974,617	31,768,637	36,038,809	36,736,416	40,138,487	41,906,948	44,386,945	42,323,047	56,851,494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 표 5-46 |

(단위 : 천원)

구 분 \ 연 도	마약보상금
2022	120,000 (8)
2023	110,000 (12)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 표 5-47 |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5	28	14	1	2	1	2	2	1	–	1	1	1	1	1	–	–	–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1	–	1	1	–	1	1	1	–	–	–	–
2008	54	21	4	5	2	3	4	2	1	4	2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1	–	2	1	1	1	–	–	–	2	–	1
2018	57	37	1	6	1	2	2	1	–	3	1	1	–	1	–	1	–	–	–	–	–	–	–
2019	57	45	3	2	3	2	–	–	–	1	–	–	–	1	–	–	–	–	–	–	–	–	–
2020	56	41	2	2	1	2	1	–	–	1	–	–	–	3	–	1	–	–	–	–	1	–	–
2021	58	41	4	2	1	2	–	3	–	4	–	–	–	1	–	–	–	–	–	–	–	–	–
2022	57	42	3	1	2	2	–	1	–	1	–	–	–	1	2	1	–	–	–	–	1	–	–
2023	56	41	3	1	1	1	–	1	–	3	2	–	–	2	–	–	–	–	–	–	1	–	–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 표 5-48 |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2005	4	1	1	–	–	–	–	–	–	1	1	–	–	–
2006	4	1	–	–	–	–	1	2	–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
2008	7	3	–	–	–	1	1	1	–	1	–	–	–	–
2009	5	2	1	–	–	–	1	1	–	–	–	–	–	–
2010	6	3	–	–	–	1	1	1	–	–	–	–	–	–
2011	6	3	1	–	–	–	1	–	–	–	–	1	–	–
2012	5	3	–	–	–	–	1	1	–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2014	7	3	–	–	1	–	2	1	–	–	–	–	–	–
2015	6	3	–	–	–	–	2	1	–	–	–	–	–	–
2016	4	3	–	–	–	–	–	1	–	–	–	–	–	–
2017	6	3	–	–	–	1	1	1	–	–	–	–	–	–
2018	7	3	1	–	–	–	2	–	–	–	–	–	–	1
2019	3	2	1	–	–	–	–	–	–	–	–	–	–	–
2020	4	2	–	–	1	–	–	1	–	–	–	–	–	–
2021	3	1	1	–	1	–	–	–	–	–	–	–	–	–
2022	4	1	1	–	–	1	–	–	–	1	–	–	–	–
2023	5	2	2						1					

※ 타부처 주관 포함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감호처분

가. 피보호감호자 수용

| 표 5-49 | 죄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19
강도	32	32	18	8	5	12	13	9	10	8
절도	19	16	10	3	3	9	9	8	3	4
폭력	2	2	-	-	1	2	-	1	1	-
성폭력	48	47	32	20	8	8	8	14	9	6
기타	3	3	2	-	-	-	-	-	1	1

| 표 5-50 | 전과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19
초범	6	7	3	3	-	1	3	2	-	-
2 ~ 3범	22	18	11	5	4	7	3	3	3	2
4 ~ 5범	31	32	20	10	4	8	10	5	3	3
6 ~ 7범	31	29	20	7	6	8	3	10	10	5
8 ~ 9범	8	7	4	3	2	5	8	8	5	5
10범 이상	6	7	4	3	1	2	3	4	3	4

| 표 5-51 | 동기별 수용인원

(단위 : 명)

동기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19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101	98	62	31	17	31	30	32	24	19
원한·분노	-	-	-	-	-	-	-	-	-	-
취 중	3	2	-	-	-	-	-	-	-	-
우 연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표 5-52 | 학력별 수용인원

(단위 : 명)

학력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19
무 학	15	11	14	-	-	3	2	3	3	1
초 졸	31	36	14	7	8	11	6	6	1	3
중 졸	19	17	12	11	2	8	15	11	6	3
고 졸	38	35	22	13	7	9	7	12	13	11
대 졸	1	1	-	-	-	-	-	-	1	1

| 표 5-53 | 직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직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19
노 동	29	30	12	1	3	5	3	1	2	3
종 업 원	16	14	6	1	1	2	1	2	2	3
농 업	-	1	-	-	-	-	-	-	-	1
상 업	10	9	8	3	1	2	2	1	1	3
기 타	49	46	36	26	12	22	24	28	19	9

| 표 5-54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연 도 / 집행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4	100	62	31	17	31	30	32	24	19
1년 미만	5	4	7	3	3	2	-	3	1	-
1년 이상~2년 미만	13	11	7	4	7	5	3	2	2	2
2년 이상~3년 미만	23	12	10	7	1	4	3	1	3	1
3년 이상~4년 미만	27	24	22	7	1	2	6	5	1	2
4년 이상	36	49	16	10	5	18	18	21	17	14

나. 피치료감호자 수용

| 표 5-55 | 죄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죄 명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살 인	340	372	343	338	328	336	321	310	290	250
상해(폭행)치사	37	36	34	38	30	30	28	22	22	22
폭 력	195	161	137	156	149	140	171	141	139	148
절 도	58	68	60	59	58	62	58	51	43	40
방 화	71	80	75	80	76	74	64	49	45	44
강 도	54	57	52	48	48	44	44	31	25	26
성 폭 력	263	279	272	242	208	184	184	144	138	118
기 타	131	127	120	135	141	142	146	115	113	162

| 표 5-56 | 전과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초범	759	769	728	721	671	657	663	577	537	537
2범	121	132	133	129	126	132	135	97	84	74
3범	70	77	61	65	57	60	61	57	51	56
4범	42	40	45	35	38	37	35	31	26	22
5범 이상	157	162	126	146	146	126	122	101	117	121

| 표 5-57 | 병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병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조현병	509	533	507	519	528	543	575	509	471	467
정신지체	104	102	97	93	84	77	84	62	56	50
조울증	72	81	85	84	71	76	79	68	63	76
성격(인격)장애	38	35	27	27	23	13	10	9	5	9
간질	20	14	12	10	10	9	10	6	4	4
약물중독	176	175	130	35	46	35	19	26	26	37
기타	230	240	235	328	276	259	239	185	190	167

| 표 5-58 | 학력별 수용인원

(단위 : 명)

학력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무학	41	48	44	73	70	54	53	47	39	36
초졸	143	141	139	189	163	153	153	125	109	98
중졸	230	227	202	186	173	156	161	141	131	143
고졸	494	512	475	478	475	499	378	321	301	303
대졸	241	252	233	170	157	150	271	229	235	230

| 표 5-59 | 직업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직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노동	104	102	85	94	93	81	89	73	63	53
종업원	94	67	53	46	40	30	33	26	25	21
농업	28	28	27	27	31	28	25	21	19	17
상업	41	7	40	22	17	4	3	2	1	17
무직	759	745	695	693	658	664	691	599	551	555
기타	123	231	193	214	199	205	175	142	156	147

| 표 5-60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단위 : 명)

집행기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016	863	815	810
1년 미만	548	279	283	220	195	210	193	115	138	176
1년 이상~2년 미만	126	199	181	230	167	136	153	140	85	86
2년 이상~3년 미만	115	173	133	156	178	123	112	126	116	76
3년 이상~4년 미만	99	126	115	103	116	144	103	81	102	96
4년 이상	261	403	381	387	382	399	455	401	374	376

| 표 5-61 | 교육훈련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4	7	7	-	2	-	-	1	-	-
학과교육	소 계	12	7	6	-	2	-	-	-	-	-
	초 등 반	-	-	-	-	-	-	-	-	-	-
	중 등 반	-	-	-	-	-	-	-	-	-	-
	고 등 반	2	-	-	-	-	-	-	-	-	-
	학사고시반	10	7	6	-	2	-	-	-	-	-
직업훈련	소 계	2	-	1	-	-	-	-	1	-	-
	목 공	-	-	-	-	-	-	-	-	-	-
	미 (도) 장	-	-	-	-	-	-	-	-	-	-
	조 적	-	-	-	-	-	-	-	-	-	-
	타 일	-	-	-	-	-	-	-	-	-	-
	배 관	-	-	-	-	-	-	-	1	-	-
	전 기	-	-	-	-	-	-	-	-	-	-
	보일러시공	-	-	-	-	-	-	-	-	-	-
	이·미 용	-	-	-	-	-	-	-	-	-	-
	원 예	-	-	-	-	-	-	-	-	-	-
	양 재	-	-	-	-	-	-	-	-	-	-
	정 비	1	-	-	-	-	-	-	-	-	-
	정보기기	-	-	-	-	-	-	-	-	-	-
	기 타	1	-	1	-	-	-	-	-	-	-

| 표 5-62 | 기능자격취득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	-	1	-	1	-	-	-	-	-
천안교도소	소 계	-	-	-	-	-	-	-	-	-	-
	1·2기능사	-	-	-	-	1	-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계	2	-	1	-	-	-	-	-	-	-
	1·2기능사	2	-	1	-	-	-	-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 허	-	-	-	-	-	-	-	-	-	-

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표 5-63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	39	59	53	31	22	34	16	8	9
가 출 소	33	23	53	43	23	11	15	15	7	8
가출소취소	-	16	6	10	8	11	19	1	1	1
집 행 면 제	-	-	-	-	-	-	-	-	-	

| 표 5-64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0	354	456	320	326	269	243	299	215	132
종 료	1	4	2	3	-	-	-	3	-	3
가 종 료	275	266	394	226	246	208	186	270	186	132
가종료취소	54	84	60	91	80	61	57	26	29	15

라. 보호감호 가출소

| 표 5-65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	23	53	43	26	11	15	15	7	8
3년 미만	-	-	3	1	8	6	3	3	3	2
3년이상 ~ 4년 미만	5	5	6	6	6	-	3	4	-	3
4년이상 ~ 5년 미만	8	5	12	23	6	2	2	1	-	2
5년 이상	20	13	32	13	6	3	7	7	4	1

| 표 5-66 | 죄명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	23	53	43	26	11	15	15	7	8
절 도	9	9	10	12	3	2	5	7	-	2
강 도	9	5	20	11	10	4	8	4	3	4
폭력행위등	2	-	4	1	-	1	-	-	-	-
성 폭 력	13	9	19	17	13	4	2	4	4	1
기 타	-	-	-	2	-	-	-	-	-	1

| 표 5-67 | 전과별 가출소 인원

(단위 : 명)

전과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	23	53	43	26	11	15	15	7	8
초 범	2	-	4	2	-	-	1	2	-	-
2 ~ 3 범	10	6	9	8	-	4	2	-	1	-
4 ~ 5 범	11	5	14	13	6	1	6	3	-	2
6 ~ 7 범	8	7	17	14	10	5	3	3	4	1
8 ~ 9 범	1	4	5	3	4	-	2	5	2	3
10범 이상	1	1	4	3	6	1	1	2	-	2

마.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표 5-68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1년 미만	1	65	2	59	1	68	-	11	-	40	-	55	-	53	1	8	-	22	3	18
1년 이상 2년 미만	-	94	2	72	-	80	2	51	-	39	-	30	-	11	1	40	-	24	-	13
2년 이상 3년 미만	-	36	-	41	-	62	1	26	-	41	-	33	-	19	-	28	-	26	-	12
3년 이상	-	80	-	94	1	183	-	138	-	132	-	117	-	105	-	187	-	118	-	94

| 표 5-69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살인	-	42	-	27	-	77	-	48	-	35	-	23	-	48	-	43	-	47	-	22
상해(폭행)치사	-	5	-	6	-	10	-	2	-	8	-	3	-	4	-	6	-	3	-	3
폭력행위등	-	39	2	81	-	78	2	26	-	38	-	45	-	17	-	55	-	26	3	26
강간	-	31	1	16	1	50	-	56	-	54	-	50	-	23	-	46	-	26	-	24
강도	-	6	-	13	1	17	-	12	-	7	-	9	-	6	-	15	-	7	-	3
절도	-	24	1	13	-	26	-	16	-	19	-	17	-	15	-	17	-	16	-	12
방화,실화	-	10	-	10	-	32	-	11	-	19	-	16	-	17	-	16	-	11	-	7
기타	1	118	-	100	-	103	1	55	-	72	-	72	-	58	2	65	-	54	-	40

| 표 5-70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초범	-	114	1	119	-	209	-	124	-	131	-	116	-	87	-	138	-	99	1	65
2범	1	37	2	33	1	43	3	25	-	29	-	25	-	26	-	48	-	17	2	17
3범	-	15	-	17	1	31	-	13	-	20	-	17	-	13	-	18	-	14	-	9
4범	-	14	1	9	-	10	-	15	-	12	-	9	-	14	1	10	-	16	-	6
5범 이상	-	95	-	88	-	100	-	49	-	60	-	68	-	48	1	49	-	44	-	40

| 표 5-71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단위 : 명)

연도 / 죄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	188	2	263	-	190	3	137
조현병	-	65	2	83	1	139	2	80	-	84	-	63	-	64	1	121	-	90	2	61
정신지체	-	11	-	16	-	27	-	19	-	16	-	16	-	17	-	23	-	13	-	8
조울증	-	11	-	15	-	24	-	14	-	23	-	16	-	10	-	21	-	20	1	8
성격(인격)장애	-	8	-	9	1	8	1	1	-	5	-	8	-	5	-	5	-	3	-	5
간질	-	7	-	7	-	4	-	2	-	-	-	1	-	1	-	4	-	2	-	1
약물중독	1	143	-	105	-	138	-	37	-	35	-	41	-	41	-	20	-	38	-	20
기타	-	30	2	31	-	53	-	73	-	89	-	90	-	50	1	69	-	24	-	34

2. 보호관찰

| 표 5-72 | 2023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단위 : 명)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수 원
계	11,526	2,934	1,455	1,631	1,935	1,543	2,028
가석방 (보호관찰)	9,056	2,357	1,211	1,302	1,331	1,266	1,589
임시퇴원	1,332	233	68	183	425	113	310
기타 (임시퇴원취소, 임시해제, 가해제)	1,138	344	176	146	179	164	129

| 표 5-73 | 2023년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단위 : 명)

구분 \ 대상	총 실 시 인 원			종 료	현 원
	계	구 수	접 수		
계	244,451	96,073	148,378	161,429	83,022
선고유예	19	7	12	8	10
집행유예	134,949	59,083	75,896	87,741	47,208
보호처분	34,891	13,129	21,762	20,400	14,491
가석방	13,588	3,566	10,022	10,111	3,477
임시퇴원	1,504	510	994	875	629
가출소	51	34	17	22	29
가종료	779	565	214	252	527
치료명령	1,054	663	391	428	626
치료감호기간만료	35	30	5	12	23
가정보호	11,344	3,723	7,621	8,334	3,009
성매매	196	59	137	157	39
아동학대	3,819	1,411	2,408	2,719	1,100
기소유예	13,143	4,191	8,952	10,049	3,096
성구매자 교육	3,008	1,272	1,736	2,389	619
전자장치부착	4,437	3,147	1,290	1,143	3,294
벌금미납	8,217	1,628	6,589	6,584	1,633
이수명령	13,417	3,085	10,332	10,205	3212

| 표 5-74 |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148,378
형법	소계	60,190	63,746	76,366	81,808	85,217	78,079	85,589	79,301	75,611	71,926
	선고유예	9	22	23	16	22	11	17	23	8	11
	집행유예	55,992	59,568	70,670	74,996	78,057	69,627	77,744	69,625	64,498	61,893
	가석방	4,189	4,156	5,673	6,796	7,138	8,441	7,828	9,653	11,105	10,022
소년법	소계	27,765	26,517	24,718	25,511	24,972	21,912	22,621	19,435	19,729	22,756
	단기보호관찰	12,214	12,974	11,240	11,815	11,319	9,281	9,419	7,870	8,494	9,415
	장기보호관찰	10,956	9,570	9,538	9,594	9,224	8,619	8,437	7,381	7,646	8,550
	단독명령	3,238	2,889	2,707	2,910	3,133	2,954	3,803	3,240	2,666	3,797
	임시퇴원	1,357	1,084	1,233	1,192	1,296	1,058	962	944	923	994
치료감호법	소계	531	481	690	986	1,097	1,118	885	882	690	627
	가출소	61	40	87	78	64	34	24	24	17	17
	가종료	470	441	603	434	488	308	227	372	282	214
	치료명령	-	-	-	474	528	745	620	468	379	391
	치료감호기간만료	-	-	-	-	-	31	14	18	12	5
성폭력처벌법	소계	3,144	4,389	5,533	10,957	17	11,962	12,414	12,810	14,328	14,318
	선고유예	1	5	11	16	12,544	4	2	1	2	1
	이수명령	-	-	-	5,074	6	6,044	6,231	6,361	7,279	7,185
	집행유예	3,143	4,384	5,522	5,867	6,223	5,914	6,181	6,448	7,047	7,132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5,596	7,823	8,608	9,126	6,315	9,384	7,940	6,782	8,529	7,942
	보호처분	5,596	7,823	8,608	9,126	7,875	9,384	7,940	6,771	8,363	7,621
	이수명령	-	-	-	-	-	-	-	-	106	249
	집행유예	-	-	-	-	-	-	-	11	60	72
성매매처벌법	소계	910	1,619	2,274	2,835	7,875	879	840	561	463	361
	보호처분	239	390	1,050	1,443	1,274	243	204	133	137	137
	집행유예	671	1,229	1,224	1,392	521	636	636	428	326	224
기소유예	소계	7,859	11,425	14,859	13,126	753	11,082	8,378	7,849	10,323	8,969
	1급	106	190	103	96	2,301	106	52	49	48	54
	2급	7,753	4,096	3,810	3,553	148	1,835	1,123	908	847	923
	선도교육	-	7,139	10,946	9,477	2,153	9,141	7,203	6,892	9,428	7,992
성구매자교육	소계	2,658	2,847	11,763	5,817	7,213	2,457	1,430	1,468	2,160	1,736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971	833	870	795	3,239	793	822	822	841	832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	-	-	-	-	444	414	458
벌금미납사회봉사	소계	6,718	8,554	8,530	8,282	891	7,413	9,097	7,207	5,830	6,589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5,175	5,608	4,444	1,609	7,624	1,270	1,242	2,214	2,312	2,497
	선고유예	-	-	1	1	1,219	-	-	-	-	0
	이수명령	4,454	4,356	3,219	257	-	251	258	390	274	248
	집행유예	721	1,252	1,224	1,351	-	1,019	984	1,824	2,038	2,249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	522	981	1508	1,219	1,705	2,052	2,657	3,876	3,465
	이수명령	-	149	20	31	1,029	103	158	0	337	462
	보호처분	-	301	839	1235	-	1,364	1,591	2,174	2,958	2,408
	집행유예	-	72	122	242	784	238	303	483	581	595
산업안전보건법	소계	-	-	-	-	-	-	-	1	26	51
마약류관리법	소계	-	-	-	-	-	-	-	105	1,947	2,828
스토킹처벌법	소계	-	-	-	-	-	-	-	-	1,182	3,018
동물보호법	소계	-	-	-	-	-	-	-	-	-	5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 표 5-75 |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단위 : 명)

기관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153,310	142,538	148,261	148,378
서울	7,052	7,875	8,645	8,438	7,153	7,113	6,959	6,597	6,750	6,525
서울동부	3,191	3,626	3,964	3,718	3,397	3,579	3,732	3,526	3,697	3,755
서울남부	4,298	4,758	5,436	5,880	5,361	5,455	5,170	5,012	5,115	4,977
서울북부	2,294	2,898	3,152	3,014	3,328	4,076	4,019	3,570	3,457	3,672
서울서부	2,662	2,988	3,330	3,247	3,132	3,195	3,235	2,963	2,895	2,970
의정부	4,338	4,670	6,561	6,175	6,050	5,850	6,531	5,825	4,915	3,730
인천	5,315	6,092	7,633	7,895	6,856	6,295	5,975	6,093	6,064	7,112
수원	5,966	6,687	8,784	8,857	7,992	7,992	8,589	8,009	8,509	8,071
춘천	1,335	1,340	1,478	1,717	1,596	1,447	1,374	1,291	1,401	1,272
대전	4,255	4,541	4,895	5,753	5,804	5,541	6,251	5,608	5,353	5,000
청주	2,348	2,631	2,654	3,155	3,346	3,270	2,897	3,258	3,517	3,386
대구	4,056	5,975	6,351	5,843	5,204	5,637	5,700	5,488	5,695	5,332
부산	5,370	5,413	7,460	6,634	4,479	3,424	3,478	3,219	3,384	3,448
울산	4,110	3,552	3,178	4,964	4,097	4,738	5,508	4,224	4,305	4,598
창원	3,963	3,818	4,843	4,961	3,976	4,650	5,825	5,375	5,895	5,586
광주	5,159	5,577	5,355	7,899	6,872	5,608	5,982	4,692	4,871	5,399
전주	2,041	2,104	2,888	3,191	3,005	2,667	3,153	2,731	2,371	2,779
제주	1,797	1,699	2,493	3,103	2,839	2,851	2,722	2,040	2,771	2,577
고양	2,942	4,070	4,401	4,155	3,539	3,522	4,247	3,834	4,241	4,268
남양주	-	-	-	-	-	-	-	-	2,878	2,692
인천서부	2,426	2,577	3,057	3,417	2,850	2,689	2,510	2,639	2,725	3,129
성남	3,302	3,344	4,440	4,676	4,026	3,710	3,672	3,887	3,889	3,659
부천	2,837	2,991	3,548	4,351	4,172	4,117	3,656	3,470	3,596	3,884
여주	1,109	1,172	1,422	1,588	1,321	1,255	1,414	1,412	1,428	1,327
안산	4,253	5,301	6,515	5,177	4,856	4,493	4,203	4,336	5,112	4,437
평택	1,802	2,286	3,063	2,580	2,128	2,664	2,897	2,782	3,088	2,986
안양	1,828	2,156	2,606	2,378	2,305	2,308	2,121	2,143	1,914	1,819
강릉	1,259	1,192	1,366	1,355	1,209	1,401	1,192	1,307	1,204	833
원주	1,214	1,562	1,780	1,561	1,499	1,530	1,432	1,207	1,607	1,370

기관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속초	548	474	630	396	497	505	560	625	476	780
영월	445	501	487	489	433	597	620	433	522	426
홍성	843	1,128	992	900	943	754	959	792	947	985
공주	421	429	547	505	478	387	466	531	433	371
논산	805	778	891	890	657	805	717	548	539	535
서산	1,191	1,205	1,079	988	926	1,082	1,443	1,449	1,408	1,603
천안	2,034	2,283	3,304	3,059	2,784	3,173	3,153	2,824	2,801	3,393
충주	904	1,048	1,182	1,130	915	886	962	744	883	1,081
제천	723	746	629	623	506	547	519	493	466	456
영동	349	240	251	218	243	283	294	308	304	242
대구서부	2,389	3,147	3,790	3,011	3,023	3,044	2,868	3,260	3,399	3,126
안동	971	948	1,296	958	1031	839	773	737	875	997
경주	703	685	789	724	621	587	786	837	734	735
포항	1,193	1,584	2,178	2,317	1,754	1,706	2,000	1,535	1,655	1,742
구미	1,611	1,533	1,974	1,978	1,913	2,199	2,550	1,903	1,798	1,691
상주	510	608	612	657	470	643	579	517	501	448
영덕	209	308	388	336	298	332	521	400	399	363
부산동부	2,870	2,918	4,196	3,708	3,436	3,359	3,269	3,073	3,535	3,423
부산서부	-	-	-	-	3,580	2,883	3,160	2,470	2,739	2,851
진주	1,156	1,170	1,478	1,659	1,595	1,562	2,309	1,964	1,837	1,981
통영	1,513	1,499	2,015	2,025	1,627	1,720	1,305	1,541	1,502	2,035
밀양	421	482	544	464	473	470	592	503	462	420
거창	351	361	503	448	440	472	509	361	327	375
목포	1,603	1,755	1,932	2,366	1,772	1,311	1,294	1,868	1,537	1,530
순천	2,036	2,431	2,955	3,319	2,848	2,831	3,014	2,645	2,173	2,505
해남	738	783	788	866	851	692	581	711	672	622
군산	1,438	1,482	1,778	1,469	1,612	2,016	1,864	1,642	1,604	1,979
정읍	700	608	782	851	839	893	772	776	753	715
남원	320	335	348	324	325	399	427	510	333	375

※ 부산서부지소 : '18. 4. 9, 남양주지소 : '22. 7. 25. 개청

| 표 5-76 |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23,072	227,020	260,933	265,792	244,451
소년	계			40,587	39,291	38,546	36,338	38,856
	형법	소계		777	814	746	761	711
		선고유예		3	1	1	-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99	742	671	669	460
			단독명령	56	54	64	74	228
		가석방		19	17	10	18	22
	소년법	소계		36,629	36,281	36,027	33,639	36,395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5,592	15,003	14,508	13,855	15,193
			장기보호관찰	15,693	15,293	14,756	14,338	14,969
			단독명령	3,557	4,403	5,272	4,003	4,729
		임시퇴원		1,787	1,582	1,491	1,443	1,504
	치료감호법	소계		3	3	4	1	1
	성폭력처벌법	소계		127	114	126	142	137
		선고유예		1	1	-	1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8	81	76	79	81
			단독명령	38	32	50	62	55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61	48	62	99	86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53	31	35	63	16
			단독명령	8	17	27	36	70
	성매매처벌법	소계		7	4	2	2	-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6	4	2	2	-
			단독명령	1	-	-	-	-
		소계		5	3	6	3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	3	6	3	1
			단독명령	-	-	-	-	-
	기소유예	소계		2,750	1,821	1,294	1,384	1,264
	성구매자교육	소계		3	3	3	3	2
	벌금미납	소계		37	26	22	23	31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185	172	252	279	219
		선고유예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36	121	148	-	117
			단독명령	47	50	100	153	102
		이수명령		2	1	4	126	1
	아동	소계		3	1	1	-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학 대 처 벌 법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	-	-	-	-
			단독명령	-	1	1	-	-
		소 계		-	1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	1	-	-	-
		이수명령		-	-	-	-	-
	형사소송법(보석)	소 계		-	-	1	2	3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	-	3
	스토킹법	소 계		-	-	-	-	2
성	계			182,485	187,729	222,387	229,454	205,595
	형 법	소 계		119,625	126,227	152,800	150,134	125,305
		선고유예		26	23	38	24	16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61,578	62,042	65,154	60,049	43,275
			단독명령	47,129	54,007	76,082	76,028	68,448
		가석방		10,892	10,155	11,526	14,033	13,566
	치료감호법	소 계		2,726	2,575	2,555	2,213	1,918
		가출소		137	90	64	56	51
		가종료		1,059	840	934	893	779
		치료명령		1,486	1,596	1,496	1,212	1,053
		치료감호기간만료		44	49	61	52	35
	성폭력처벌법	소 계		16,011	16,763	20,126	22,648	11,926
		선고유예		6	4	2	1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3,534	3,547	3,761	4,007	3,869
			단독명령	5,108	5,489	7,974	9,187	8,056
		이수명령		7,363	7,723	8,389	9,453	9,527
인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12,064	11,151	10,091	11,366	11,258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7,998	7,083	5,859	6,835	2,771
			단독명령	4,066	4,068	4,232	4,531	8,487
		소 계		-	-	11	70	130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11	70	101
			단독명령	-	-	-	-	29
		이수명령		-	-	8	110	300
	성매매처벌법	소 계		399	271	241	212	196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02	133	138	82	26
			단독명령	97	138	103	130	170
		소 계		1,358	1,084	1,032	841	557
		집행	보호관찰부	999	703	597	497	276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유예	단독명령	359	381	435	344	281
기소유예	소계		11,016	9,330	10,932	13,918	11,901
성구매자 교육	소계		3,135	1,885	2,371	3,384	3,006
전자장치 부착법	소계		3,183	3,321	3,467	3,635	3,728
형사소송법 (보석)	소계		-	-	537	637	706
벌금미납	소계		8,672	10,535	11,069	7,768	8,186
청소년 성보호법	소계		1,841	1,728	3,037	3,706	3,427
	선고유예		-	-	-	-	0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28	617	704	869	998
		단독명령	797	812	1,830	2,439	2,429
	이수명령		316	299	503	398	346
아동학대 처벌법	소계		1,940	2,221	2,996	4,183	3,819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1,373	1,468	1,937	2,617	692
		단독명령	567	753	1,059	1,566	3,127
	소계		388	436	712	955	982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206	215	349	487	509
		단독명령	182	221	363	468	473
	이수명령		127	202	296	429	574
산업안전 보건법	소계		-	-	1	27	63
마약류관리법	소계		-	-	105	2,036	4,178
스토킹 처벌법	소계					1,182	3,557
동물보호법	소계						5

| 표 5-77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23,072	227,020	260,933	265,792	244,451
보호관찰	계			101,089	95,861	93,654	94,375	93,366
	형법	소계		55,325	53,472	53,340	52,415	48,743
		선고유예		29	24	39	24	17
		집행유예		44,385	43,276	41,765	38,340	35,138
		가석방		10,911	10,172	11,536	14,051	13,588
	소년법	소계		25,735	24,098	22,505	22,114	23,361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1,386	10,658	9,960	9,718	10,479
			장기보호관찰	12,562	11,858	11,054	10,953	11,378
		임시퇴원		1,787	1,582	1,491	1,443	1,504
	치료감호법	소계		2,637	2,492	2,490	2,173	1,890
		가출소		137	90	64	56	51
		가종료		1,059	840	934	893	779
		치료명령		1,397	1,513	1,431	1,172	1,025
		치료감호기간만료		44	49	61	52	35
	성폭력처벌법	소계		2,309	2,311	2,254	2,263	2,342
		선고유예		7	5	2	2	2
		집행유예		2,302	2,306	2,252	2,261	2,340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6,210	5,673	4,663	5,594	5,919
		보호처분		6,210	5,673	4,652	5,524	5,789
		집행유예		-	-	11	70	130
	성매매처벌법	소계		1,056	634	524	403	278
		보호처분		222	102	105	64	37
		집행유예		834	532	419	339	241
	기소유예	소계		2,796	2,023	1,502	1,357	1,400
	전자장치부착법	소계		3,183	3,321	3,467	3,635	3,728
	형사소송법(보석)	소계		-	-	538	639	709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551	481	498	571	663
		선고유예		-	-	-	-	0
		집행유예		551	481	498	571	663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1,287	1,356	1,835	2,497	2,389
		보호처분		1,140	1,212	1,623	2,221	2,064
		집행유예		147	144	212	276	325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38	597	1,408
	스 토 킹	**소 계**	-	-	-	117	535
	동물보호법	**소 계**	-	-	-	-	1
사회봉사명령	계		49,788	51,448	65,693	62,115	53,702
	형 법	소 계	39,910	42,031	54,778	51,798	43,272
		보호관찰부	10,912	11,517	14,079	13,158	10,820
		단독명령	28,998	30,514	40,699	38,640	32,452
	소 년 법	소 계	5,905	5,655	6,301	5,137	5,441
		단기보호관찰	2,095	1,817	1,914	1,565	1,684
		장기보호관찰	1,991	1,924	2,117	1,898	1,947
		단독명령	1,819	1,914	2,270	1,674	1,810
	치 료 감 호 법		92	86	69	41	29
	성폭력처벌법	소 계	1,592	1,761	2,442	2,795	2,404
		보호관찰부	389	411	468	541	527
		단독명령	1,203	1,350	1,974	2,254	1,877
	가정폭력처벌법	소 계	616	612	626	571	620
		보호관찰부	294	245	222	177	185
		단독명령	322	367	404	394	435
	성매매처벌법	소 계	412	424	492	414	302
		보호관찰부	149	138	164	149	84
		단독명령	263	286	328	265	218
	기 소 유 예		838	448	225	141	64
	청소년성보호법	소 계	297	290	532	732	759
		보호관찰부	100	77	98	126	141
		단독명령	197	213	434	606	618
	아동학대처벌법	소 계	126	141	217	254	263
		보호관찰부	32	36	59	60	70
		단독명령	94	105	158	194	193
	마약류관리법	소 계	-	-	11	213	402
	스 토 킹	소 계				19	143
	동물보호법	소 계					3
수강명령	계		42,408	50,357	68,422	72,805	61,040
	형 법	소 계	25,167	31,538	45,428	46,685	34,001
		보호관찰부	6,980	7,991	9,981	9,223	7,087
		단독명령	18,187	23,547	35,447	37,462	26,914
	소 년 법	소 계	4,989	6,528	7,221	6,388	7,593
		단기보호관찰	2,111	2,528	2,634	2,572	3,030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장기보호관찰	1,140	1,511	1,585	1,487	1,644
		단독명령	1,738	2,489	3,002	2,329	2,919
	성폭력처벌법	소계	4,874	5,082	7,167	8,278	7,317
		보호관찰부	931	911	1,117	1,284	1,171
		단독명령	3,943	4,171	6,050	6,994	6,146
	가정폭력처벌법	소계	5,299	4,914	4,875	5,370	4,934
		보호관찰부	1,547	1,196	1,020	1,197	1,088
		단독명령	3,752	3,718	3,855	4,173	3,846
	성매매처벌법	소계	301	304	265	241	174
		보호관찰부	107	71	55	32	23
		단독명령	194	233	210	209	151
	기소유예		-	-	-	-	0
	청소년성보호법	소계	860	829	1,752	2,284	2,224
		보호관찰부	213	180	256	325	332
		단독명령	647	649	1,496	1,959	1,892
	아동학대처벌법	소계	918	1,162	1,657	2,387	2,149
		보호관찰부	263	291	392	547	421
		단독명령	655	871	1,265	1,840	1,728
	산업안전보건법	소계	-	-	1	23	47
	마약류관리법	소계	-	-	56	992	1,852
	스토킹	소계				157	748
	동물보호법	소계					1
성구매자교육			3,138	1,888	2,374	3,384	3,008
벌금미납사회봉사			8,709	10,561	11,091	7,791	8,217
이수명령			7,808	8,225	9,200	11,518	13,417
기소유예			10,132	8,680	10,499	13,804	11,701

| 표 5-78 |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가출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19	877	854	-	-	2	21
2020	492	454	-	-	3	35
2021	527	497	-	-	3	27
2022	603	515	-	-	4	84
2023	447	420	-	-	-	27

| 표 5-79 |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19	1,231	9	1,125	33,849	694	982	122	20	36	65	201
2020	961	9	824	26,412	506	965	85	16	25	56	184
2021	807	7	705	27,472	541	909	77	20	34	36	123
2022	752	8	668	28,427	510	885	64	64	260	39	147
2023	901	10	852	30,590	560	1,217	84	44	116	26	169

| 표 5-80 |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장 반환	구인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 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19	9	20	1,921	24	1,897	1,230	7,622	77	6	15	1,080	1,125	3	236	718	1	127
2020	9	37	1,526	12	1,514	961	564	113	8	17	804	824	4	129	579	-	88
2021	7	90	1,296	12	1,284	805	572	79	14	9	708	705	3	129	465	-	80
2022	8	53	1,246	8	1,238	737	494	65	12	7	658	656	4	126	401	1	80
2023	10	82	1,359	21	1,338	901	453	43	20	7	852	852	3	148	551	3	91

| 표 5-81 |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9	49,788	40,043	36,918	607	1,930	588
2020	51,448	21,609	17,821	629	2,484	675
2021	65,693	36,995	31,831	830	3,283	1,051
2022	62,115	44,152	38,720	918	3,358	1,156
2023	53,702	42,258	38,303	760	2,330	865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표 5-82 |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9	49,788	40,279	39,910	32,214	5,905	4,805	92	74	1,592	1,262	616	517
2020	51,448	41,946	42,031	34,175	5,655	4,746	86	60	1,761	1,420	612	521
2021	65,693	35,954	54,778	29,349	6,301	3,774	69	16	2,442	1,406	626	453
2022	62,115	33,513	51,798	26,924	5,137	3,496	41	14	2,795	1,498	571	419
2023	53,702	35,843	43,272	28,264	5,441	4,219	29	15	2,404	1,487	620	508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기소유예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9	412	344	838	733	297	226	126	104	-	-	-	-	-	-
2020	424	341	448	339	290	226	141	118	-	-	-	-	-	-
2021	492	245	225	187	532	360	217	153	11	11	-	-	-	-
2022	414	199	141	106	732	435	254	198	213	205	19	19	-	-
2023	302	184	64	49	759	501	263	203	402	281	143	129	3	3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표 5-83 |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19	49,788	16,133	33,655	6,787	4,359	2,428	43,001	11,774	31,227
2020	51,448	16,324	35,124	6,292	4,004	2,288	45,156	12,320	32,836
2021	65,693	19,210	46,483	6,763	4,220	2,543	58,930	14,990	43,940
2022	62,115	17,730	44,385	5,570	3,675	1,895	56,545	14,055	42,490
2023	53,702	15,497	38,205	5,754	3,820	1,934	47,948	11,677	36,271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표 5-84 | 사회봉사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9	37,453	5,775	31,678	53	29,718	899	725	283
2020	18,450	6,501	11,949	7	10,057	991	678	216
2021	32,661	10,690	21,971	135	10,031	2,906	7,444	1,455
2022	39,638	10,453	29,185	19	14,095	3,566	9,996	1,509
2023	39,060	7,606	31,454	4	18,260	1,256	11,917	17

| 표 5-85 |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 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9	42,408	33,575	31,199	273	1,262	841
2020	50,357	22,359	19,045	328	2,012	974
2021	68,422	37,351	33,012	326	2,578	1,435
2022	72,805	51,927	46,649	318	3,231	1,729
2023	61,040	45,394	41,340	431	2,158	1,465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 표 5-86 |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9	42,408	34,523	25,167	20,582	4,989	3,975	4,874	3,850	5,299	4,512
2020	50,357	41,672	31,538	26,643	6,528	5,305	5,082	3,978	4,914	3,922
2021	68,422	40,453	45,428	25,836	7,221	4,412	7,167	4,311	4,875	3,152
2022	72,805	41,857	46,685	24,570	6,388	4,334	8,278	4,699	5,370	3,871
2023	61,040	40,305	34,001	21,234	7,593	5,665	7,317	4,805	4,934	3,493

구분 / 연도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관리법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9	301	214	860	624	918	766	-	-	-	-	-	-	-	-
2020	304	237	829	621	1,162	966	-	-	-	-	-	-	-	-
2021	265	125	1,752	1,283	1,657	1,277	1	1	56	56	56	56	-	-
2022	241	128	2,284	1,374	2,387	1,761	23	22	992	941	157	157	-	-
2023	174	90	2,224	1,483	2,149	1,552	47	37	1,852	1,276	748	669	1	1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 표 5-87 |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소계	보 호 관찰부	단 독 명령부
2019	42,408	13,292	29,116	5,182	3,355	1,827	37,226	9,937	27,289
2020	50,357	14,679	35,678	6,724	4,143	2,581	43,633	10,536	33,097
2021	68,422	17,097	51,325	7,488	4,333	3,155	60,934	12,764	48,170
2022	72,805	16,667	56,138	6,705	4,185	2,520	66,100	12,482	53,618
2023	61,040	14,796	46,244	7,840	4,774	3,066	53,200	10,022	43,178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 표 5-88 | 수강명령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 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9	31,472	29,977	1,495	2	81	104	61	70	1,177
2020	19,373	18,811	562	1	3	56	109	57	336
2021	33,338	31,483	1,855	4	1,035	50	125	201	440
2022	46,967	41,232	5,735	17	4,258	20	175	790	475
2023	41,771	41,115	656	13	13	1	154	207	268

| 표 5-89 |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환경조사	소 계	1,594	1,561	1,555	1,921	1,502	1,442	1,365	1,185	1,117	1,511
	소년원	1,395	1,432	1,419	1,693	1,373	1,343	1,297	1,084	1,032	1,397
	교도소	106	59	60	167	104	93	62	100	84	113
	법무병원	93	70	76	60	19	6	6	1	1	1
환경개선		-	-	-	-	1	6	1	4	9	3

| 표 5-90 | 조사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판결전조사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1,596	1,442	1,075	1,209
결정전조사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7,813	18,096	18,574	18,039
검사결정전조사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909	932	527	1,194
청구전조사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1,456	1,311	1,472	1,513
소급청구전조사	192	119	79	86	39	52	37	33	18	12
사실조회	-	-	-	-	-	-	-	176	198	221

| 표 5-91 |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19	2,457	1,812	1,233	579	1,035	822	675	147	1,422	990	558	432
2020	1,968	1,369	959	410	860	666	550	116	1,108	703	409	294
2021	1,743	1,273	829	444	707	539	442	97	1,036	734	387	347
2022	1,606	1,155	748	407	618	485	398	87	988	670	350	320
2023	2,646	1,892	1,315	577	1,671	1,264	914	350	975	628	401	227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 표 5-92 | 보호관찰 사안조사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6,297	6,252	7,895	8,821	9,434	11,571	11,973	13,077	13,872	14,182

| 표 5-93 | 보호관찰 불요결정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 수	5,503	5,716	7,221	8,248	8,575	8,268	8,271	9,395	10,292	9,515
필 요	3,734	3,816	5,127	6,205	6,394	7,962	7,169	8,783	9,762	9,056
불 요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530	456
허 가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743	609	530	456

3. 갱생 보호

| 표 5-94 | 갱생보호 실적

(단위 : 명)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50,218	1,726	4,534	13,082	13	148	10,386	28,531	40,300	7,611	17,004	26,883

| 표 5-9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41,508	1,301	4,389	12,941	4	147	10,201	28,008	38,124	4,661	16,088	25,644

| 표 5-96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지원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8,710	425	145	141	9	1	185	523	2,176	2,950	916	1,239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표 5-97 | 입·출원 인원

(단위 : 명)

입·출원		성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입원	계	남	3,223	2,884	2,763	2,974	2,770	2,392	2,036	1,777	1,765	2,190
		여	484	504	476	510	539	565	504	451	449	556
	전년도 이월	남	1,175	945	928	858	924	695	693	707	533	519
		여	169	155	215	176	186	185	210	160	161	135
	송치	남	1,933	1,858	1,754	2,022	1,729	1,607	1,279	1,017	1,191	1,614
		여	295	321	241	308	333	349	272	264	263	391
	임시퇴원 취소	남	115	81	81	94	117	90	64	53	42	57
		여	20	28	20	26	20	31	22	27	25	30
	이탈학생 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2,275	1,961	1,900	2,029	2,064	1,700	1,330	1,244	1,272	1,516
		여	333	281	316	320	352	358	345	280	316	356
	퇴원	남	1,254	1,119	1,045	1,135	1,049	877	555	462	540	698
		여	188	164	147	194	210	183	134	99	110	144
	임시퇴원	남	952	786	788	832	946	747	687	692	632	713
		여	137	103	158	114	123	137	170	143	178	178
	처분변경 처분취소	남	46	43	41	36	50	58	56	64	47	72
		여	8	13	10	8	18	35	37	37	28	27
	사망	남	-	-	-	-	-	-	1	-	-	-
		여	-	-	-	-	-	-	-	-	-	-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23	13	26	26	19	18	31	26	53	33
		여	-	1	1	4	1	3	4	1	0	7

※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표 5-98 |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기관 \ 연도 / 성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남	1,056	921	932	981	869	738	738	627	552	635
	여	181	192	199	185	209	208	189	155	148	171
서 울	남	270	236	234	246	204	172	206	170	135	99
	여	-	-	-	-	-	-	-	-	-	-
부 산	남	132	118	138	124	111	86	86	14	9	74
	여	1	1	1	1	-	-	-	-	-	-
대 구	남	137	130	141	137	114	94	86	89	87	91
	여	-	-	-	-	-	-	-	-	-	-
광 주	남	129	94	104	134	107	95	104	99	82	97
	여	1	-	-	-	-	-	-	-	-	-
전 주	남	123	108	92	81	91	102	103	97	97	117
	여	-	-	-	-	-	-	-	-	-	-
대 전	남	112	111	92	109	106	64	48	47	43	46
	여	10	5	6	12	15	20	21	19	18	17
청 주	남	-	-	-	-	-	-	-	-	-	-
	여	46	45	45	45	85	85	66	58	59	71
안 양	남	-	-	-	-	-	-	-	-	-	-
	여	123	141	147	127	109	103	103	78	71	83
춘 천	남	117	93	89	107	103	92	79	86	74	87
	여	-	-	-	-	-	-	-	-	-	-
제 주	남	36	31	42	43	33	33	25	25	25	24
	여	-	-	-	-	-	-	-	-	-	-
대 전	남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덕	남										
	여										

'07. 7. 23. 기관폐지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99 | 기관별 신수용 인원

(단위 : 명)

기관 \ 연도 / 성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남	2,048	1,939	1,835	2,116	1,846	1,697	1,343	1,070	1,232	1,671
	여	315	349	261	334	353	380	294	291	288	421
서 울	남	489	474	442	524	482	474	453	297	281	436
	여	-	-	-	-	-	-	-	-	-	-
부 산	남	267	281	213	265	208	198	158	79	95	191
	여	44	44	54	48	38	43	51	39	41	60
대 구	남	110	143	176	162	78	73	75	142	137	91
	여	15	25	16	13	5	6	1	-	1	1
광 주	남	154	122	90	137	139	147	131	114	137	167
	여	28	36	9	28	20	39	29	22	29	37
전 주	남	16	5	-	5	3	385	350	284	401	571
	여	-	-	-	-	-	-	-	-	-	-
대 전	남	921	828	849	943	876	362	152	118	104	151
	여	4	3	15	21	8	30	11	26	13	9
청 주	남	-	-	-	-	-	-	-	-	-	-
	여	106	110	71	102	31	105	82	77	103	132
안 양	남	-	-	-	-	-	-	-	-	-	-
	여	108	122	87	114	233	150	116	123	85	174
춘 천	남	53	66	38	39	30	41	4	12	44	34
	여	6	1	3	1	9	3	-	1	10	3
제 주	남	38	20	27	41	30	17	20	24	33	30
	여	4	8	6	7	9	4	4	3	6	5
대 전	남	'07. 7. 23. 기관폐지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덕	남										
	여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0 | 수용기간별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546	1,396	1,494	1,872
1월 미만	969	883	773	902	830	16	11	9	32	312
3월 미만	80	62	62	47	64	705	232	97	126	562
6월 미만	769	670	676	777	773	535	652	642	801	796
6월 이상	108	91	126	115	131	240	207	189	169	155
7월 이상	19	15	13	8	12	5	4	10	20	11
8월 이상	19	28	13	20	8	11	7	10	9	4
9월 이상	29	16	14	16	25	18	11	11	7	8
10월 이상	13	16	11	12	18	9	10	9	17	5
11월 이상	20	15	12	8	20	17	18	17	13	17
12월 이상	30	30	47	19	49	64	70	48	54	69
13월 이상	77	43	71	46	85	94	81	60	50	45
14월 이상	91	86	83	90	99	78	75	108	70	52
15월 이상	132	84	75	71	87	51	73	60	48	40
16월 이상	80	58	73	59	53	32	33	56	32	21
17월 이상	37	30	37	49	37	21	18	32	13	28
18월 이상	35	26	21	23	24	15	12	11	7	12
19월 이상	19	11	11	10	7	13	7	9	14	8
20월 이상	4	7	20	3	6	4	25	18	12	8
평균수용기간(월)	5.91	5.56	6.03	5.52	5.91	6.51	7.80	8.42	5.51	5.03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표 5-101 | 처우과정 분류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1,520	2,092
7호	소계	108	109	83	132	141	116	139	123	114	120
	기타	108	109	83	132	141	116	139	123	114	120
8호	소계	925	802	762	880	801	707	405	326	464	648
	기타	925	802	762	880	801	707	405	326	464	648
9호	소계	768	766	713	857	741	716	622	584	619	902
	교과	125	168	161	95	87	97	127	123	113	189
	직업	70	102	72	243	219	236	180	106	99	36
	특성화	134	178	136	132	74	78	64	133	135	126
	기타	439	318	344	387	361	305	251	222	272	551
10호	소계	562	611	538	581	516	538	471	328	323	422
	교과	118	53	31	45	34	64	69	56	62	88
	직업	294	408	332	374	314	349	288	147	150	139
	특성화	27	13	12	8	1	-	-	-	-	-
	기타	123	137	163	154	167	125	114	125	111	195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표 5-102 | 교과교육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9	135	154	187	208	253	300	329	367	417
초등학교	-	-	-	-	-	-	-	-	1	1
중 학 교	49	32	25	26	18	95	90	79	91	128
고등학교	90	103	129	161	190	158	210	250	276	288

| 표 5-103 | 검정고시 합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70	600	676	617	447	420	409	303	253	285
초졸	3	1	-	-	-	-	-	-	2	2
중졸	224	190	152	141	76	65	45	39	22	38
고졸	443	409	524	476	371	355	364	264	231	245

| 표 5-104 | 직업훈련 수료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직 업 훈 련	497	500	640	552	633	532	458	354	245	232

| 표 5-105 | 기능자격 취득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3,025	2,741	2,937	3,352
일 반 기 능	947	992	1,238	1,524	1,634	1,478	838	723	830	852
컴퓨터관련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793	608	821	1,218
외국어관련	-	-	-	-		-	-	-	-	-
기 타	764	826	1,028	1,662	1,787	1,529	1,394	1,410	1,286	1,282

| 표 5-106 |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계	7,349		2,093	126	5,130	2	-	2
2014	1,477	-	480	18	979	-	-	-
2015	1,035	-	356	56	623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구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시설 방문	농촌 일손돕기	지역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2018	1,011	-	348	6	657	-	-	-
2019	1,011	-	242	5	764	-	-	-
2020	158	-	10	-	148	-	-	-
2021	-	-	-	-	-	-	-	-
2022	32	-	-	14	18	-	-	-
2023	176	-	18	-	158	-	-	-

| 표 5-107 |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취 업 인 원	327	234	423	417	352	303	187	208	134	69

| 표 5-108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4	154	159	167	165	104	130	148	121	114
대 학 교	71	91	93	88	86	55	64	71	68	66
고등학교	63	63	66	79	79	49	66	77	53	48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표 5-109 | 입·출원 인원

(단위 : 명)

구분		성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입원	계	남	5,230	5,508	4,778	4,931	4,745	4,055	3,534	3,028	3,315	3,651
		여	1,095	1,104	1,051	1,372	1,398	1,305	1,122	1,069	1,097	1,356
	이월인원	남	341	364	348	333	338	307	276	176	173	264
		여	75	68	73	61	102	98	83	45	70	78
	신수용인원	남	4,889	5,144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3,387
		여	1,020	1,036	978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1,278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4,866	5,159	4,446	4,593	4,439	3,778	3,358	2,855	3,051	3,352
		여	1,027	1,030	992	1,270	1,300	1,223	1,077	999	1,019	1,265
	보호자위탁	남	10	29	16	14	19	11	9	3	8	21
		여	4	8	-	6	10	5	10	3	8	17
	보호시설위탁	남	429	474	430	456	438	454	481	467	417	463
		여	181	163	201	241	281	249	262	259	247	259
	소년원송치	남	1,684	1,709	1,507	1,689	1,455	1,227	1,128	806	869	1,101
		여	270	319	243	288	305	285	229	232	196	316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318	2,472	2,121	2,138	2,139	1,789	1,408	1,303	1,530	1,586
		여	494	418	461	630	591	589	462	417	484	572
	위탁변경	남	114	112	92	72	65	38	101	156	102	55
		여	25	21	18	17	14	12	43	53	36	40
	심리불개시	남	-	-	-	-	-	-	2	1	-	-
		여	-	-	-	-	-	-	1	-	-	-
	불처분	남	10	9	8	5	8	11	3	12	11	6
		여	2	2	2	1	-	2	2	1	2	1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301	354	272	219	315	248	226	107	114	120
		여	51	99	67	87	99	81	68	34	54	60
연말현재인원		남	364	348	333	338	307	276	176	173	264	299
		여	68	73	61	101	98	83	45	70	78	91

| 표 5-110 |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기관 \ 연도 / 성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남	4,889	5,142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282
	여	1,020	1,036	979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104
부 산	남	1,059	1,055	893	901	771	670	567	562	624	61
	여	195	213	211	249	186	205	218	216	228	24
대 구	남	367	368	395	344	297	278	198	195	235	21
	여	71	68	73	75	71	66	59	72	81	9
광 주	남	403	463	413	513	452	348	322	237	244	29
	여	97	110	73	110	120	73	55	60	53	9
전 주	남	1	-	-	-	-	-	-	-	-	-
	여	1	-	-	-	-	-	-	-	-	-
대 전	남	305	387	450	363	422	356	328	232	314	27
	여	57	81	102	150	140	107	93	80	102	8
춘 천	남	176	139	144	215	182	169	88	94	92	7
	여	31	18	19	34	31	51	37	40	32	2
제 주	남	44	44	27	26	36	40	48	49	37	4
	여	21	16	8	11	7	16	12	10	7	1
서울심	남	2,534	2,686	2,108	2,236	2,247	1,887	1,707	1,483	1,596	133
	여	547	530	493	682	741	689	565	546	524	51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1 | 기관별 위탁 인원

(단위 : 명)

기관 \ 연도 / 성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남	4,889	5,142	4,430	4,598	4,407	3,748	3,258	2,852	3,142	3,387
	여	1,020	1,036	979	1,311	1,296	1,207	1,039	1,024	1,027	1,278
부 산	남	1,059	1,055	893	901	771	670	567	562	624	664
	여	195	213	211	249	186	205	218	216	228	275
대 구	남	367	368	395	344	297	278	198	195	235	258
	여	71	68	73	75	71	66	59	72	81	108
광 주	남	403	463	413	513	452	348	322	237	244	372
	여	97	110	73	110	120	73	55	60	53	120
전 주	남	1	-	-	-	-	-	-	-	-	-
	여	1	-	-	-	-	-	-	-	-	-
대 전	남	305	387	450	363	422	356	328	232	314	324
	여	57	81	102	150	140	107	93	80	102	96
춘 천	남	176	139	144	215	182	169	88	94	92	78
	여	31	18	19	34	31	51	37	40	32	24
제 주	남	44	44	27	26	36	40	48	49	37	47
	여	21	16	8	11	7	16	12	10	7	15
서울심	남	2,534	2,686	2,108	2,236	2,247	1,887	1,707	1,483	1,596	1,644
	여	547	530	493	682	741	689	565	546	524	640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2 | 위탁기간별 인원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출원 인원	5,893	6,187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4,070	4,617
10일 미만	154	166	106	124	144	70	67	151	155	95
10 ~ 20일	754	950	679	562	616	371	393	444	306	318
21 ~ 30일	3,874	3,850	3,326	3,851	3,573	3,134	2,862	2,413	2,347	2,508
31 ~ 40일	877	1,014	1,018	1,032	1,001	907	812	622	810	1,116
41 ~ 50일	191	160	250	238	291	400	242	199	370	488
51 일 이상	43	47	58	56	114	118	59	25	82	92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표 5-113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분 류 심 사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4,266	3,620	3,661	4,210
상 담 조 사	4,261	4,119	3,993	4,179	3,224	2,421	2,589	2,968	3,512	3,761
검사결정전조사	-	-	25	-	-	-	-	-	-	-

| 표 5-114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9,844	174,494	371,625	408,850	315,184	336,404	137,023	194,314	158,156	167,170
대안교육	소 계	23,630	36,638	49,317	54,019	50,635	48,698	17,179	19,820	22,269	22,386
	일반학생	18,359	31,298	43,305	48,410	45,180	41,557	13,430	15,854	17,323	17,702
	기소유예	4,993	5,123	5,757	5,416	4,365	4,608	2,975	2,504	3,034	2,896
	보호처분	278	217	255	193	1,090	2,533	774	1,462	1,594	1,788
청소년심리검사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3,871	4,488	5,835	5,893
보 호 자 교 육		9,192	8,964	9,465	13,314	12,024	10,373	4,044	4,566	5,871	5,454
법 교 육		153,956	211,331	300,370	328,584	241,657	265,011	94,750	145,620	124,181	111,051

※ 보호자교육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통합 실적임

| 표 5-115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단위 : 명)

판정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893	6,189	5,438	5,863	5,739	5,000	4,435	3,854	4,070	4,617
1호	14	37	16	20	29	16	19	6	16	38
2호	31	42	46	47	80	73	42	52	28	27
3호	69	55	33	29	88	56	41	36	20	30
4호	1,153	1,464	1,118	1,169	1,323	1,049	786	704	815	838
5호	1,659	1,426	1,464	1,599	1,407	1,285	1,134	1,013	1,143	1,263
6호	610	637	631	697	719	703	743	726	664	722
7호	88	74	63	99	116	95	98	93	94	92
8호(1개월)	682	672	525	593	531	372	321	231	291	328
9호(단기)	684	714	670	774	658	607	526	453	482	672
10호(장기)	501	568	492	511	455	479	412	261	255	325
기타	402	500	380	325	333	265	313	279	262	282

※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 표 5-116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14	143,853	98	143,755	21,546	1,505,699
2015	148,161	112	148,049	21,759	1,486,795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2018	154,585	187	154,398	16,770	1,320,476
2019	168,039	169	167,870	15,480	1,399,103
2020	138,998	217	138,781	11,046	1,277,453
2021	131,602	208	131,394	11,253	1,184,692
2022	101,887	92	101,795	13,095	1,107,880
2023	107,696	65	107,631	14,133	1,015,122

| 표 5-117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4	78,977	57,071	11,867	1,082	8,957
2015	89,699	66,876	11,773	512	10,538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2018	184,412	139,294	15,817	538	28,763
2019	192,266	156,939	17,313	485	17,529
2020	199,406	141,123	18,416	526	39,341
2021	195,747	144,416	18,476	604	32,251
2022	215,902	156,309	16,403	435	42,755
2023	205,062	146,364	16,050	418	42,230

| 표 5-118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예산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7,728,000	9,773,000	9,712,000	9,870,000	9,870,000	9,870,000	10,578,000	11,520,000	10,423,000	9,870,000
보상인원	331	382	279	264	248	305	206	191	189	148
지급금액	7,070,624	9,770,720	9,257,269	9,289,429	10,175,047	11,516,297	9,567,057	9,792,147	9,502,935	8,989,710

| 표 5-119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구분 \ 연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5	1,809	26	1,545	30	125	83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2018	2,935	50	2,520	30	150	185
2019	3,435	78	3,942	49	111	255
2020	3,967	107	3,370	89	110	291
2021	4,062	26	3,748	101	80	107
2022	4,002	53	3,525	69	120	235
2023	4,395	39	3,934	62	129	231

| 표 5-120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구수포함)

구분 \ 연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5	1,820	958	543	234	85(4.7%)
2016	2,543	1,300	847	311	85(3.3%)
2017	2,641	1,380	900	281	80(3.0%)
2018	2,872	1,628	898	275	71(2,5%)
2019	3,321	1,670	1,229	360	62(1.9%)
2020	4,005	1,968	1,501	447	89(2.2%)
2021	4,030	1,973	1,557	416	84(2.1%)
2022	3,783	1,916	1,461	320	86(2.3%)
2023	3,953	2,327	1,271	264	91(2.1%)

제5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표 5-121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용정원			46,430	46,600	46,600	47,820	47,820	47,990	48,600	48,980	48,990	49,922
1일평균수용인원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51,117	56,577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2,751	34,625	35,618	37,006	35,877	35,281	34,789	34,259	33,381	36,620
		수형자	30,727	32,649	33,791	35,382	34,380	33,813	33,392	33,548	32,610	35,007
		노역수	2,024	1,976	1,827	1,624	1,497	1,468	1,397	711	771	1,613
	미결구금자	소 계	17,377	19,267	20,877	20,292	18,867	19,343	19,084	18,109	17,736	19,957
		피의자	747	847	864	753	643	632	558	496	526	627
		피고인	16,630	18,420	20,013	19,539	18,224	18,711	18,526	17,613	17,210	19,330

| 표 5-122 |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14	51,327,916	50,128	0.098	15,934	3.1
2015	51,529,338	53,892	0.105	15,887	3.4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2018	51,824,477	54,744	0.106	15,999	3.4
2019	51,849,861	54,624	0.105	16,101	3.4
2020	51,829,023	53,873	0.103	16,482	3.3
2021	51,638,809	52,368	0.101	16,652	3.1
2022	51,439,038	51,117	0.099	16,668	3.1
2023	51,325,329	56,577	0.110	16,776	3.4

| 표 5-123 |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1,760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53,956	52,130	52,940	59,088
수형자	소 계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남	31,661	33,122	34,281	33,905	32,932	32,384	32,404	31,651	31,870	35,054
	여	1,783	1,976	2,198	2,262	2,339	2,313	2,345	2,436	2,605	2,991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5.3	5.6	6.0	6.3	6.6	6.7	6.7	7.1	7.6	7.9
미결수용자	소 계	18,316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21,043
	남	17,008	18,026	19,488	17,520	17,340	17,863	17,580	16,436	16,798	19,088
	여	1,308	1,543	1,708	1,511	1,558	1,539	1,627	1,607	1,667	1,955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7.1	7.9	8.1	7.9	8.2	7.9	8.5	8.9	9.0	9.3

| 표 5-124 |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16세 미만	3	-	2	4	1	4	1	3	1	5
18세 미만	50	47	46	45	35	41	45	63	56	56
20세 미만	270	262	290	244	248	231	233	224	200	264
25세 미만	2,514	2,609	2,642	2,484	2,335	2,255	2,378	2,441	2,504	2,678
25세 이상	2,247	2,244	2,450	2,562	2,779	2,860	3,058	3,264	3,479	4,079
30세 이상	7,584	7,678	7,678	7,543	7,059	6,834	6,488	6,166	6,245	7.057
40세 이상	9,986	10,310	10,275	9,712	9,307	8,637	8,427	7,962	7,807	8.400
50세 이상	7,989	8,624	9,255	9,330	9,067	9,033	8,941	8,673	8,413	9.002
60세 이상	2,801	3,324	3,841	4,243	4,440	4,802	5,178	5,291	5,770	6.504

| 표 5-125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71	1,884	1,997	2,096	2,079	2,315	2,451	2,377	2,644	3,035
소계	기 결	770	1,123	1,232	1,320	1,338	1,416	1,445	1,386	1,657	1,871
	미 결	501	761	765	776	741	899	1,006	991	987	1,164
중국	기 결	492	800	852	903	805	730	700	628	747	835
	미 결	340	500	477	431	343	426	432	464	421	533
일본	기 결	4	6	8	8	7	7	6	6	5	4
	미 결	3	1	1	4	4	2	1	-	1	-
미국	기 결	34	35	37	35	37	40	34	28	31	33
	미 결	24	29	28	26	28	17	15	16	20	17
기타	기 결	240	282	335	374	489	639	705	724	874	999
	미 결	134	231	259	315	366	454	558	511	545	614

| 표 5-126 |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절 도	4,599	4,420	4,061	3,858	3,681	3,549	3,254	2,744	2,667	2,767
폭력행위등 처벌법	2,748	2,863	2,815	2,624	2,544	2,509	2,330	2,325	2,373	2,720
사기 및 횡령	5,911	6,834	7,699	7,630	8,028	8,024	8,330	8,323	8,272	9,338
성 폭 력	6,284	6,272	5,953	5,480	5,713	5,717	5,652	5,572	5,720	5,862
마 약 류	1,344	1,553	1,890	2,133	1,329	1,996	1,595	1,849	2,169	2,492
과 실 범	1,463	1,423	1,691	1,722	1,894	1,851	2,474	2,590	2,448	3,167
강 도	3,014	2,821	2,552	2,333	2,036	1,919	1,803	1,683	1,519	1,522
살 인	3,750	3,728	3,584	3,484	3,291	3,228	3,170	3,063	3,028	3,002
기 타	4,331	5,184	6,234	6,903	6,755	5,904	6,141	5,938	6,279	7.175

| 표 5-127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징역	소 계	32,006	33,637	34,991	34,679	33,790	33,232	33,287	32,643	33,026	36,543
	1년 미만	5,312	5,724	6,362	6,050	6,173	5,599	4,401	3,978	4,574	5,633
	1년 이상	10,898	12,001	13,010	13,208	12,587	12,819	14,053	13,826	13,376	15,093
	3년 이상	6,866	6,870	6,747	6,727	6,587	6,340	6,428	6,532	6,651	7,078
	5년 이상	5,088	5,216	5,195	5,029	4,888	4,902	4,902	4,894	5,023	5,329
	10년 이상	3,335	3,283	3,127	3,071	2,927	2,903	2,784	2,643	2,580	2,532
	20년 이상	507	543	550	594	628	669	719	770	822	878
금고	소 계	60	67	86	73	81	66	86	67	81	85
	1년 미만	37	42	47	32	30	32	27	27	27	39
	1년 이상	19	17	28	28	41	25	45	30	46	40
	3년이상	4	8	11	13	10	9	14	10	8	6
무 기 징 역		1,320	1,337	1,345	1,358	1,343	1,343	1,320	1,322	1,313	1,308
사 형		58	57	57	57	57	56	56	55	55	55

| 표 5-128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무경험자		18,604	19,794	20,649	20,055	19,558	18,955	19,379	18,988	19,482	21,899
유경력자	소 계	14,840	15,304	15,830	16,112	15,713	15,742	15,370	15,099	14,993	16,146
	1 회	5,552	5,987	6,437	6,979	6,741	6,474	6,265	6,329	5,974	6,532
	2 회	2,531	2,506	2,665	2,728	2,668	2,847	2,822	2,802	2,832	3,019
	3 회	1,790	1,742	1,685	1,615	1,623	1,638	1,654	1,609	1,668	1,782
	4회이상	4,967	5,069	5,043	4,790	4,681	4,783	4,629	4,359	4,519	4,813

| 표 5-129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입소자	계	56,044	62,395	64,541	62,624	57,742	56,420	51,874	35,342	36,970	52,120
	신입소	26,573	29,357	28,330	24,851	22,429	21,827	18,609	4,243	5,609	18,227
	형확정	24,281	27,206	30,269	31,500	29,638	29,225	28,204	26,590	26,381	28,330
	기타	5,190	5,832	5,942	6,273	5,675	5,368	5,061	4,509	4,980	5,563
출소자	계	54,203	60,414	62,979	62,819	58,450	56,900	51,817	35,844	36,547	42,389
	형기종료	17,191	19,187	21,357	23,324	21,821	21,092	19,737	17,910	16,479	16,928
	가석방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9,525
	사면	282	559	479	309	-	561	206	110	65	24
	기타	16,173	15,927	14,184	12,559	11,089	10,177	8,588	3,695	4,637	2,982
	노역종료	15,163	19,234	19,802	18,352	16,847	16,896	15,375	4,739	5,056	12,930
연도말 인원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34,749	34,087	34,475	38,045

나. 미결구금자

| 표 5-130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8,265	52,129	55,240	51,863	47,986	47,581	43,820	40,057	41,058	47,063
신입소		43,171	46,585	49,405	45,976	42,461	42,120	38,516	34,571	35,128	40,690
기타 (보석취소 등)		5,094	5,544	5,835	5,887	5,525	5,461	5,304	5,486	5,930	6,373

| 표 5-131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6,272	50,654	53,470	53,890	47,913	47,061	43,929	41,315	40,606	44,235
구속취소		1,669	2,056	2,452	2,761	2,538	2,474	2,200	1,775	1,618	1,666
벌금		1,224	1,306	1,310	1,218	976	775	684	541	507	571
집행유예		11,777	12,914	12,447	11,227	8,985	8,831	7,536	6,823	6,604	8,043
보석		3,167	3,069	2,678	2,555	2,127	2,105	2,165	2,015	1,650	1,869
형확정		23,155	25,985	29,019	30,173	28,216	28,040	27,043	25,770	25,648	27,399
기타		5,280	5,324	5,564	5,956	5,071	4,836	4,301	4,391	4,579	4,687
연도말인원		18,317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19,207	18,043	18,465	21,043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 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표 5-132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1	130	150	128	105	116	115	142	133	160
절 도	34	26	23	24	17	10	21	26	23	41
사기·횡령	2	10	2	12	12	9	8	6	6	3
폭력·상해	5	10	27	4	3	11	13	7	10	8
강 간 등	34	27	35	44	24	26	21	31	36	29
강 도 등	11	14	19	8	5	14	13	11	9	26
살 인	6	5	5	4	4	3	1	1	1	1
과 실 범	2	2	2	-	1	4	1	2	-	2
기 타	37	36	37	32	39	39	37	58	48	50

| 표 5-133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1	130	150	128	105	116	115	142	133	160
징역형	무 기	-	-	-	-	-	-	-	-	-	-
	20년 이상	1	-	-	-	1	-	-	-	-	-
	10년 이상	3	2	2	-	-	1	-	2	1	2
	5년 이상	11	12	13	9	13	21	15	22	25	27
	3년 이상	42	48	56	47	33	45	41	47	62	59
	1년 이상	67	56	69	64	55	45	55	65	40	63
	1년 미만	7	11	8	8	2	4	2	4	3	5
	6월 미만	-	1	1	-	1	-	2	2	2	3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	1
	1년 미만	-	-	1	-	-	-	-	-	-	-

| 표 5-134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4	118	97	113	99	97	81	42	33	52
가석방	33	27	31	28	26	35	35	11	7	12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형기종료	68	78	53	64	38	43	37	27	24	34
기타	23	13	13	21	35	19	9	4	2	6

라. 외부교통권

| 표 5-135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214,205	246,045	279,423	288,953	294,150	316,462	392,735	331,625	585,958	742,084

| 표 5-136 |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1,039,125	4,670,826

| 표 5-137 |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533,348	579,852	657,241	751,207	969,264	903,667	929,250	1,111,364	1,411,107	1,812,843

| 표 5-138 |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2,425,321	2,576,186	2,807,596	2,737,767	2,504,718	2,471,940	1,251,240	779,681	822,051	2,192,796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 표 5-139 | 2019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재복역 기간	'19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8,724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85	0.3%
6월 이내	478	1.7%
1년 이내	1,949	6.8%
2년 이내	4,697	16.4%
3년 이내	6,470	22.5%

※ 조사대상인원 : 28,724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표 5-140 |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총출소인원		재복역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8,724	2,270	6,470	218	85	0	393	9	1,471	37	2,748	106	1,773	66
형기종료	19,992	1,151	5,850	204	78	0	380	9	1,379	36	2,478	99	1,535	60
가석방	8,174	989	558	10	7	0	9	0	75	1	239	3	228	6
감호기간종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출소	12	0	5	0	0	0	0	0	2	0	1	0	2	0
사 면	546	130	57	4	0	0	4	0	15	0	30	4	8	0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29.2%, 가석방 6.8%,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41.6%, 사면 10.4%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3%, 6월 이내 1.7%, 1년 이내 6.8%, 2년 이내 16.4%, 3년 이내 22.5%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이내 85명(1.3%), 3월이상 6월이내 393명(6.1%), 6월이상 1년이내 1,471명(22.7%), 1년이상 2년이내 2,748명(42.5%), 2년이상 3년이내 1,773명(27.4%)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3.6%, 여자 9.6%

| 표 5-141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28,724	16,462	5,561	2,146	1,225	3,330
	재복역인원	6,470	1,780	1,282	845	569	1,994
	재복역률	22.5	10.8	23.1	39.4	46.4	59.9
형기종료	출소인원	19,992	9,475	3,994	2,003	1,200	3,320
	재복역인원	5,850	1,374	1,099	822	567	1,988
	재복역률	29.3	14.5	27.5	41	47.3	59.9
가석방	출소인원	8,174	6,474	1,538	140	22	0
	재복역인원	558	354	181	22	1	0
	재복역률	6.8	5.5	11.8	15.7	4.5	0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2	0	1	2	2	7
	재복역인원	5	0	0	0	1	4
	재복역률	41.7	0	0	0	50	57.1
사면	출소인원	546	513	28	1	1	3
	재복역인원	57	52	2	1	0	2
	재복역률	10.4	10.1	7.1	100	0	66.7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10.8%, 2범 23.1%, 3범 39.4%, 4범 46.4%, 5범 이상 59.9%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5범(59.9%), 가석방 3범(15.7%), 가출소 5범(57.1%), 사면 3범(100%)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2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8,724	163	4,475	5,597	7,113	7,638	3,738
	재복역인원	6,470	62	1,219	1,209	1,609	1,721	650
	재복역률	22.5	38.0	27.2	21.6	22.6	22.5	17.4
형기종료	출소인원	19,992	118	3,038	3,766	5014	5,458	2598
	재복역인원	5,850	53	976	1,089	1505	1,611	616
	재복역률	29.3	44.9	32.1	28.9	30	29.5	23.7
가석방	출소인원	8,174	39	1,362	1,702	1943	2,061	1,067
	재복역인원	558	6	219	109	96	98	30
	재복역률	6.8	15.4	16.1	6.4	4.9	4.8	2.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2	0	0	0	5	5	2
	재복역인원	5	0	0	0	1	3	1
	재복역률	41.7	0	0	0	20	60	50
사면	출소인원	546	6	75	129	151	114	71
	재복역인원	57	3	24	11	7	9	3
	재복역률	10.4	50	32	8.5	4.6	7.9	4.2

※ 연령별 재복역률 : 20세 이내 39.4%, 20대 28.0%, 30대 23.9%, 40대 24.1%, 50대 23.0%, 60대 이상 18.4%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42.9%), 가석방(25.7%)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3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8,724	562	408	2,295	4,076	3,191	9,514	1,605	3,543	3,530
	재복역인원	6,470	25	108	352	1,099	1,568	1,391	512	659	756
	재복역률	22.5	4.4	26.5	15.3	27	49.1	14.6	31.9	18.6	21.4
형기종료	출소인원	19,992	180	274	2,288	3,241	2,746	4,739	1,603	2,349	2,572
	재복역인원	5,850	16	95	352	1,003	1,464	1,147	512	554	707
	재복역률	29.3	8.9	34.7	15.4	30.9	53.3	24.2	31.9	23.6	27.5
가석방	출소인원	8,174	375	130	4	808	380	4,404	2	1,154	917
	재복역인원	558	9	12	0	92	79	220	0	102	44
	재복역률	6.8	2.4	9.2	0	11.4	20.8	5	0	8.8	4.8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2	0	4	3	1	4	0	0	0	0
	재복역인원	5	0	1	0	1	3	0	0	0	0
	재복역률	41.7	0	25	0	100	75	0	0	0	0
사면	출소인원	546	7	0	0	26	61	371	0	40	41
	재복역인원	57	0	0	0	3	22	24	0	3	5
	재복역률	10.4	0	0	0	11.5	36.1	6.5	0	7.5	12.2

※ 죄명별 재복역률 : 살인(4.4%), 강도(26.5%), 성폭력(15.3%), 폭력(27.0%), 절도(49.1%), 사기·횡령(14.6%), 마약류(31.9%), 과실범(18.6%)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53.3%)·사면(36.1%), 가석방(20.8%) 등 대부분 출소사유에서 절도가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4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28,724	874	8,854	14,563	2,950	815	370	193	66	39
	재복역인원	6,470	202	1,858	3,765	467	101	38	30	6	3
	재복역률	22.5	23.1	21	25.9	15.8	12.4	10.3	15.5	9.1	7.7
형기종료	출소인원	19,992	823	6,819	9,461	1,887	580	256	123	32	11
	재복역인원	5,850	201	1,722	3,333	430	96	37	25	3	3
	재복역률	29.3	24.4	25.3	35.2	22.8	16.6	14.5	20.3	9.4	27.3
가석방	출소인원	8,174	39	1,853	4,759	1,055	234	113	69	30	22
	재복역인원	558	0	116	397	36	5	0	4	0	0
	재복역률	6.8	0	6.3	8.3	3.4	2.1	0	5.8	0	0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인원	0	0	0	0	0	0	0	0	0	0
	재복역률	0	0	0	0	0	0	0	0	0	0
가출소	출소인원	12	0	0	0	0	0	1	1	4	6
	재복역인원	5	0	0	0	0	0	1	1	3	0
	재복역률	41.7	0	0	0	0	0	100	100	75	0
사면	출소인원	546	12	182	343	8	1	0	0	0	0
	재복역인원	57	1	20	35	1	0	0	0	0	0
	재복역률	10.4	8.3	11	10.2	12.5	0	0	0	0	0

※ 형기별 재복역률 : 6월미만(23.1%), 6월이상 1년미만(21.0%), 1년이상 3년미만(25.9%), 3년이상 5년미만(15.8%), 5년이상 7년미만(12.4%), 7년이상 10년미만(10.3%), 10년이상 15년미만(15.5%), 15년이상 20년미만(9.1%), 20년이상(7.7%)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5.2%), 가석방(8.3%)은 1년이상 3년미만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5 |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원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7,911	9,390	10,310	9,525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 표 5-146 | 검정고시 교육인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720	609	556	616	639	655	647	647	573	621
고졸 검정	498	428	411	444	473	498	517	523	462	523
중졸 검정	188	147	126	150	155	144	123	114	101	90
초졸 검정	34	34	19	22	11	13	10	10	10	8

| 표 5-147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565	575	533	508	492	502	508	542	441	467
고졸 검정	390	394	383	371	364	379	425	461	359	404
중졸 검정	163	147	133	125	120	113	76	75	76	59
초졸 검정	12	34	17	12	8	10	7	6	6	4

| 표 5-148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교육인원	30	30	30	21	22	17	20	8	4	4
	졸업인원	6	7	6	5	7	6	8	2	-	2
김천	교육인원	30	30	30	21	22	17	20	8	4	4
	졸업인원	6	7	6	5	7	6	8	2	-	2

| 표 5-149 |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14	51	654	58,412	
2015	52	846	55,468	
2016	52	1,285	61,110	
2017	52	1,428	63,671	
2018	38	1,322	50,873	
2019	52	917	43,018	
2020	46	361	8,983	
2021	53	425	3,836	
2022	41	729	14,464	
2023	42	678	20,619	

| 표 5-150 |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집중인성)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2018 (집중인성)	2019 (집중인성)	2020 (집중인성)	2021 (집중인성)	2022 (집중인성)	2023
실 시 인 원	5,763	8,604	10,066	10,525	9,909	11,566	4,917	7,187	5,720	6,955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표 5-151 | 귀휴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 원	1,356	999	1,084	1,142	1,198	1,193	75	52	1,097	1,057

| 표 5-152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 원	4,417	4,322	4,991	5,080	4,850	4,859	134	-	11	305

| 표 5-153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 원	1,338	1,361	1,431	1,583	1,913	1,908	27	-	5	895

다. 교정위원 활동

| 표 5-154 |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688	4,706	4,765	4,830	4,777	4,592	4,495	4,410	4,368	4,982
교화위원	1,778	1,804	1,790	1,845	1,812	1,702	1,647	1,651	1,628	2,000
종교위원	1,924	1,895	1,931	1,910	1,891	1,864	1,835	1,775	1,778	1,926
교육위원	246	275	315	329	328	333	335	316	319	360
의료위원	98	102	98	97	91	84	77	72	68	74
취업위원	642	630	631	649	655	609	601	596	575	622

| 표 5-155 | 교화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2,000	82	41	100	1,358	30	389

| 표 5-156 | 종교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 독 교	불 교	천 주 교	기 타
인 원	1,926	888	656	345	37

| 표 5-157 | 교육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360	68	13	31	14	234

| 표 5-158 | 의료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74	61	1	1	3	8

| 표 5-159 | 취업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622	435	16	61	38	72

| 표 5-160 |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 담 (명)	2,390	1,629	1,734	1,704	1,334	2,371	219	4	112	545
교화강연(회)	8	11	15	5	3	14	-	-	-	130
자매결연(명)	515	519	341	204	306	1,101	10	33	21	42
수 용 생 활 지 원 (명)	6,992	5,867	6,726	4,434	5,363	6,068	8,491	5,130	4,446	4,112

| 표 5-161 |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리지도(명)	37,790	29,560	36,876	33,215	37,085	35,670	99	4	7,496	21,403
자매결연(명)	3,448	3,828	3,333	7,158	11,641	12,360	356	161	3,041	6,732
수 용 생 활 지 원 (명)	22,336	22,170	23,962	24,725	28,224	37,336	13,466	13,350	18,739	30,147
교 화 도 서 기 증 (권)	670	346	3,441	164	3,809	1,013	151	8	4,642	105

| 표 5-162 | 교육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훈련지도(명)	7,668	11,401	14,162	18,003	20,428	18.520	2,988	890	4,110	4,921
자매결연(명)	29	18	13	44	-	-	-	6	10	-
수용생활지원(명)	11	36	187	67	93	20	103	94	341	96
교화도서기증(권)	20	100	43	249	-	230	400	-	189	10,050

| 표 5-163 | 의료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지원(명)	4,731	10,716	12,310	11,566	13,295	12,410	10,288	9,752	9,741	9,665
자매결연(명)	5	9	3	-	-	-	-	-	-	-
수용생활지원(명)	-	45	115	68	120	380	676	884	592	467
교화도서기증(권)	-	-	-	-	100	-	-	-	-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표 5-164 | 취업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형자 총인원		32,867	34,425	36,082	35,990	34,633	34,605	34,621	33,892	33,809	37,145
취업 불가능인원		9,085	10,458	12,154	11,613	11,510	11,662	12,612	12,924	13,436	16,742
취업가능인원	계	23,782	23,967	23,928	24,377	23,123	22,942	22,009	20,968	20,373	20,403
	취업인원	21,471	22,090	22,100	22,265	21,351	21,562	20,577	19,534	19,165	19,135
	비율(%)	90	92	92	91	92	94	93	93	94	94
	불취업인원	2,311	1,877	1,828	2,112	1,772	1,380	1,432	1,434	1,208	1,268

※ 감호작업은 제외

| 표 5-165 |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획	37,699	42,082	55,541	57,033	60,056	60,893	61,374	61,603	61,564	62,480
실적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69,869
실적/계획(%)	125.3	132.6	112.1	115.9	109.5	103.0	102.4	106.4	102.9	111.8
실적 증가율(%)	12.2	18.1	11.6	6.2	△0.6	△0.5	△0.6	4.3	△3.3	10.3

| 표 5-166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실 적	47,246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69,869
직영작업	실 적	24,801	30,228	34,998	38,141	37,905	34,326	37,089	38,413	38,946	41,393
	구성비 (%)	52.5	54.2	56.2	57.7	57.7	54.7	59.0	58.6	61.5	59.2
위탁작업	실 적	15,026	17,448	18,763	19,312	19,886	20,158	18,271	16,996	17,284	18,364
	구성비 (%)	31.8	31.3	30.1	29.2	30.2	32.2	29.1	25.9	27.3	26.3
외통·개방	실 적	7,217	7,914	8,330	8,456	7,807	8,114	7,357	7,489	6,815	7,800
	구성비 (%)	15.3	14.2	13.4	12.8	11.9	12.9	11.7	11.4	10.8	11.2
기타	실 적	202	202	148	218	134	107	132	2,657	321	2,312
	구성비 (%)	0.4	0.4	0.2	0.3	0.2	0.2	0.2	4.1	0.5	3.3

| 표 5-167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생산총액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62,850	65,555	63,366	69,869
관수용품	계	22,504	28,503	31,723	35,343	28,617	26,595	31,603	33,912	38,946	41,394
	교정기관	20,535	25,971	27,479	31,060	24,949	23,570	29,885	31,257	35,303	36,250
	법무부산하	311	205	994	74	99	1,162	211	123	155	138
	부 외 처	1,658	2,327	3,250	4,209	3,569	1,863	1,507	2,532	3,488	5,006

| 표 5-168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급액 (천 원)	17,798,954	20,231,129	20,853,628	22,641,637	22,074,502	23,129,488	20,621,076	22,659,230	22,600,238	24,725,915
지급 연인원 (명)	4,435,528	5,634,098	5,615,637	5,874,204	4,967,883	5,187,748	5,139,172	4,870,453	3,738,721	3,901,691
1인당 1일평균 (원)	4,013	3,591	3,713	3,854	4,443	4,458	4,013	4,652	6,045	6,337

| 표 5-169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급인원	-	5	5 (2)	2	5 (2)	2	4 (1)	3	1	2
지 급 액	-	98,729	96,308 (90,034)	20,040	145,466 (103,986)	10,287	57,328 (44,668)	41,820	19,588	13,924

※ ( )는 조위금

| 표 5-170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 급 액	630,667	687,043	449,740	405,258	167,154	151,133	105,409	52,594	53,078	39,205
지급인원	98	92	64	32	16	21	18	13	13	7
1인당 평균 지 급 액	6,435	7,468	7,027	36,241	36,520	38,348	31,306	18,558	19,127	26,688

| 표 5-171 |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 구분	총세입액	총세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2019	114,086	100,203	13,883	-
2020	118,424	107,406	11,018	-
2021	114,370	106,756	7,614	-
2022	118,026	109,684	8,342	-
2023	124,207	113,046	11,161	-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 표 5-172 |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205,304	204,472	832

| 표 5-173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업 종류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운영 지원작업			취사원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지급액	15,000	12,000	10,000	8,500 (60%)	7,500 (60%)	6,500 (60%)	4,000 (60%)	3,500 (55%)	3,000 (50%)	1,600	1,500	1,400	3,700	3,200	2,700	900

| 표 5-174 | 연도별 취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취업	1,636	1,503	1,663	1,670	1,542	1.557	1,625	1,725	1,832	1,773

나. 직업훈련

| 표 5-175 |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276	6,484	6,644	6,727	6,939	6,433	5,942	5,417	5,635	5,624
양성·향상 훈 련	3,811	3,758	3,913	3,719	4,313	4,276	4,397	4,200	4,865	5,030
숙련훈련	397	360	364	457	608	637	777	720	521	382
일반훈련	2,068	2,366	2,367	2,551	2,018	1,520	768	497	249	212

| 표 5-176 |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278	3,264	3,316	3,443	3,424	3,338	3,128	3,070	2,740	3,237
기 술 사	-	-	-	-	-	-	-	-	-	-
기 능 장	1	5	4	-	-	2	-	-	2	-
기 사	-	-	1	-	1	-	5	7	4	-
산업기사	79	50	56	92	87	60	100	85	91	68
기 능 사	3,198	3,209	3,255	3,351	3,336	3,276	3,023	2,978	2,643	3,169

| 표 5-177 |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01	87	76	77	98	99	94	78	81	70
지방대회	88	77	64	63	76	76	73	58	56	50
전국대회	13	10	12	14	22	23	21	20	25	20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표 5-178 |

구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계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승객	55,316,870	60,054,078	73,916,823	75,134,915	83,558,252
	승무원	6,335,288	6,318,830	6,071,151	5,272,787	5,350,168
국민	소계	32,722,368	39,111,816	45,313,898	53,445,030	57,859,670
	승객	29,971,333	36,228,736	42,197,580	50,130,062	54,321,526
	승무원	2,751,035	2,883,080	3,116,318	3,314,968	3,538,144
외국인	소계	28,929,790	27,261,092	34,674,076	26,962,672	31,048,750
	승객	25,345,537	23,825,342	31,719,243	25,004,853	29,236,726
	승무원	3,584,253	3,435,750	2,954,833	1,957,819	1,812,024

구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계	93,548,093	14,701,831	4,559,693	19,414,228	68,121,657
	승객	87,822,137	12,777,578	2,859,950	17,108,919	63,741,554
	승무원	5,725,956	1,924,253	1,699,743	2,305,309	4,380,103
국민	소계	57,795,389	9,171,481	2,432,517	12,889,166	45,423,313
	승객	54,198,298	7,957,472	1,593,633	11,586,942	42,468,079
	승무원	3,597,091	1,214,009	838,884	1,302,224	2,955,234
외국인	소계	35,752,704	5,530,350	2,127,176	6,525,062	22,698,344
	승객	33,623,839	4,820,106	1,266,317	5,521,977	21,273,475
	승무원	2,128,865	710,244	860,859	1,003,085	1,424,869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79 |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중 국	5,663,482	6,154,730	8,268,262	4,393,936	5,032,906
일 본	2,254,307	1,859,190	2,321,842	2,337,588	2,976,444
미 국	798,858	859,361	960,683	969,277	1,068,173
타 이 완	666,805	551,362	865,948	957,836	1,146,215
홍 콩	550,268	524,116	651,639	659,182	679,942
필 리 핀	162,615	412,197	566,693	459,588	471,532
태 국	412,217	375,021	474,262	503,777	565,784
말 레 이 시 아	227,434	223,782	311,686	308,152	383,467
베 트 남	141,827	199,323	299,084	380,929	519,448
인 도 네 시 아	132,547	194,472	296,377	231,908	250,248
러 시 아	164,628	191,214	238,171	275,779	308,665
싱 가 포 르	185,712	160,402	221,844	216,574	232,359
인 도	68,097	154,294	196,773	124,458	120,975
캐 나 다	135,163	147,715	178,023	178,761	196,859
오스트레일리아	129,504	134,357	153,125	151,583	154,390
영 국	113,786	124,833	136,900	128,046	133,149
독 일	89,004	101,251	111,413	111,077	117,173
프 랑 스	73,846	85,093	93,039	94,013	101,854
몽 골	63,584	81,201	82,780	108,139	118,783
우 즈 베 키 스 탄	48,777	59,453	71,299	81,711	89,391
뉴 질 랜 드	29,119	28,806	32,038	33,526	34,652
기 타	570,439	737,528	886,426	863,669	928,113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중 국	6,284,486	740,039	187,908	250,876	2,212,966
일 본	3,303,088	438,708	18,025	309,460	2,345,679
미 국	1,139,150	265,134	251,203	610,103	1,172,266
타 이 완	1,290,683	171,943	5,779	77,707	978,311
홍 콩	685,569	87,118	1,381	60,220	400,305
필 리 핀	516,503	120,171	117,316	206,529	356,046
태 국	580,191	78,878	9,351	185,409	391,285
말 레 이 시 아	409,254	48,741	4,596	70,988	261,103
베 트 남	624,640	112,938	25,359	239,269	504,347
인 도 네 시 아	280,146	67,301	46,998	108,178	252,473
러 시 아	350,093	75,117	35,235	63,810	165,217
싱 가 포 르	246,736	18,136	7,625	165,713	348,736
인 도	144,758	34,299	31,633	66,018	124,736
캐 나 다	208,280	35,437	30,201	94,589	205,369
오스트레일리아	174,681	23,559	3,717	66,404	200,619
영 국	146,132	21,124	9,337	46,414	124,415
독 일	121,989	24,543	20,381	66,002	134,506
프 랑 스	112,588	19,891	16,195	63,984	135,850
몽 골	118,977	22,535	6,511	67,146	141,638
우 즈 베 키 스 탄	95,634	17,570	16,177	42,314	60,170
뉴 질 랜 드	39,504	6,772	1,732	15,997	40,641
기 타	1,007,421	229,891	197,885	512,879	944,205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0 |

항구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인천공항	7,910,157	7,778,178	10,010,950	9,288,559	10,789,900
제주공항	1,188,019	958,601	1,327,513	555,387	839,775
김해공항	826,736	789,992	1,059,397	1,062,683	1,279,277
김포공항	1,056,803	943,451	1,029,912	922,837	1,084,115
부산항	223,248	460,625	850,990	412,465	380,537
인천항	465,523	543,334	621,693	332,305	410,667
청주공항	190,906	194,255	237,282	61,021	68,166
평택항	141,425	170,805	179,051	211,138	210,495
대구공항	40,523	51,145	103,339	68,730	107,407
군산항	35,035	47,844	65,265	76,979	109,649
감천항	10,070	56,558	57,818	57,964	56,697
울산항	8,429	48,852	48,071	46,328	43,955
광양항	9,622	29,080	44,614	38,986	35,377
오산공항	29,920	36,431	34,994	32,599	32,306
무안공항	32,019	37,727	34,295	4,074	7,717
양양공항	86,785	47,005	34,202	2,446	13,699
동해항	8,320	21,234	27,978	31,066	28,465
여수항	4,649	20,337	26,904	26,031	31,798
창원항	2,380	13,526	13,191	13,034	13,071
서산항	2,380	6,433	6,590	7,782	8,527
속초항	8,879	1,386	1,101	11,858	4,969
기타	400,191	1,102,902	1,603,157	305,237	73,953

항구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인천공항	11,983,837	1,899,649	721,864	2,807,636	8,464,171
제주공항	1,220,957	117,997	23	35,660	522,730
김해공항	1,375,031	154,778	4,429	109,871	793,108
김포공항	1,165,403	148,795	539	73,398	811,996
부산항	450,550	82,576	94,296	101,116	351,402
인천항	510,530	34,139	14,216	17,254	50,832
청주공항	89,695	5,756	12	40	12,218
평택항	296,933	26,151	13,771	14,934	29,820
대구공항	204,324	19,520	4	7,155	93,521
군산항	169,779	13,632	8,034	9,900	12,285
감천항	60,005	26,365	20,529	21,692	42,123
울산항	43,266	26,247	38,141	37,361	19,754
광양항	34,642	18,956	34,385	32,519	14,960
오산공항	28,809	27,188	22,331	27,072	26,719
무안공항	20,770	1,275	-	216	5,104
양양공항	12,113	4,724	3	5,670	8,842
동해항	28,423	6,757	6,141	11,646	31,460
여수항	59,960	18,417	37,312	43,297	18,921
창원항	13,389	7,715	9,507	10,792	8,588
서산항	8,425	2,904	3,497	4,868	3,711
속초항	5,938	516	-	127	8,035
기타	97,724	15,788	15,511	17,785	170,583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오산공항은 2016년부터 평택으로 명칭 변경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1 |

체류자격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12,682,019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사증면제(B-1)	1,426,293	1,249,506	1,556,536	1,634,095	1,908,616
관광통과(B-2)	5,335,626	4,632,593	5,833,225	5,269,825	6,378,362
단기상용(C-2)	-	-	-	-	-
단기방문(C-3)	3,725,073	3,635,898	5,026,435	3,319,579	4,127,283
유 학(D-2)	117,836	140,160	169,715	212,295	248,472
기술연수(D-3)	1,663	1,934	1,678	1,723	1,449
일반연수(D-4)	45,624	62,550	81,033	90,357	83,538
종 교(D-6)	2,323	2,292	2,348	2,428	2,313
주 재(D-7)	9,103	8,991	9,160	8,548	8,460
기업투자(D-8)	40,550	40,795	42,007	41,984	41,886
무역경영(D-9)	38,867	33,958	26,302	18,288	9,705
교 수(E-1)	7,323	7,555	7,550	7,491	7,160
회화지도(E-2)	34,567	32,299	32,158	30,922	27,291
연 구(E-3)	9,670	9,810	9,494	9,618	9,508
예술흥행(E-6)	4,710	4,596	3,996	3,765	4,570
특정활동(E-7)	39,260	43,300	46,324	47,528	46,661
비전문취업(E-9)	115,294	123,433	134,764	140,072	145,174
선원취업(E-10)	9,574	9,431	9,877	10,720	11,737
방문동거(F-1)	41,043	49,310	69,742	82,857	88,747
거 주(F-2)	30,189	35,728	43,041	48,924	53,672
동 반(F-3)	40,173	43,222	43,684	40,048	38,402
재외동포(F-4)	349,137	405,948	468,336	515,587	565,636
영 주(F-5)	101,184	118,553	134,138	151,115	162,760
기 타	1,156,937	2,667,839	3,666,764	1,881,740	1,659,120

체류자격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7,880,503	2,659,845	1,044,545	3,390,009	11,500,883
사증면제(B-1)	2,053,173	222,306	19,938	663,699	1,689,221
관광통과(B-2)	7,158,538	939,748	115,029	945,123	5,121,560
단기상용(C-2)	-	-	-	-	-
단기방문(C-3)	5,184,417	503,028	89,288	439,865	1,919,908
유 학(D-2)	291,007	89,414	53,366	111,101	247,596
기술연수(D-3)	1,103	321	389	397	636
일반연수(D-4)	84,653	29,048	26,718	41,094	66,384
종 교(D-6)	2,398	647	625	1,239	1,883
주 재(D-7)	9,072	2,045	1,044	2,539	5,145
기업투자(D-8)	42,442	9,252	4,574	13,009	28,760
무역경영(D-9)	8,669	3,169	2,562	3,418	5,792
교 수(E-1)	6,904	2,061	964	2,460	4,114
회화지도(E-2)	29,115	11,326	5,376	11,868	20,998
연 구(E-3)	9,212	2,569	1,618	4,346	6,945
예술흥행(E-6)	5,436	1,790	1,934	3,816	7,807
특정활동(E-7)	46,475	12,398	5,827	20,099	49,101
비전문취업(E-9)	151,116	41,992	16,732	135,167	168,755
선원취업(E-10)	11,634	6,325	4,895	9,329	11,344
방문동거(F-1)	97,159	32,329	11,306	46,485	84,677
거 주(F-2)	58,425	13,330	3,637	12,238	45,436
동 반(F-3)	40,284	13,651	9,254	21,388	34,935
재외동포(F-4)	579,522	112,752	64,246	123,610	389,703
영 주(F-5)	177,531	34,140	11,644	24,322	136,492
기 타	1,832,218	576,204	593,579	753,397	1,453,691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82 |

국가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중 국	1,101,782	894,906	840,193	849,804	942,395
베 트 남	224,518	211,243	208,740	235,007	271,712
미 국	156,982	145,580	140,672	156,562	161,895
태 국	209,909	181,386	171,800	201,681	202,121
필 리 핀	62,398	49,800	46,871	57,452	64,055
우즈베키스탄	75,320	65,205	66,677	79,136	87,698
일 본	86,196	26,515	28,093	46,741	58,438
인도네시아	48,854	36,858	34,188	50,841	63,226
캄 보 디 아	47,565	41,405	41,525	49,240	57,018
몽 골	48,185	42,511	37,012	53,038	54,846
네 팔	42,781	39,743	36,903	47,865	63,369
타 이 완	42,767	19,444	18,554	25,417	33,225
러 시 아	61,427	50,410	48,680	56,995	68,075
스 리 랑 카	25,064	22,466	20,291	24,912	30,370
캐 나 다	26,789	21,794	22,830	27,705	27,607
미 얀 마	29,294	26,412	26,096	33,275	42,438
방글라데시	18,340	16,823	16,426	21,928	26,636
오스트레일리아	15,222	7,913	7,591	17,819	18,326
파 키 스 탄	13,990	12,842	12,410	14,460	16,295
인 도	12,929	10,892	11,542	14,419	15,789
영 국	7,550	5,871	6,435	8,149	8,499
기 타	166,794	106,056	113,252	205,087	193,551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83 |

체류자격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507,584
사증면제(B-1)	248,753	179,332	165,869	224,817	223,851
관광통과(B-2)	204,541	51,977	43,673	100,793	137,116
단기방문(C-3)	256,696	114,261	97,225	137,642	176,235
단기취업(C-4)	1,645	2,356	1,691	1,985	2,196
유 학(D-2)	118,254	101,810	111,178	134,062	152,094
기술연수(D-3)	1,964	1,634	1,654	1,719	1,828
일반연수(D-4)	63,691	52,952	53,870	65,204	76,644
종 교(D-6)	1,561	1,254	1,378	1,471	1,530
상사주재(D-7)	1,400	1,057	1,028	1,148	1,128
기업투자(D-8)	5,909	5,587	5,955	6,822	7,565
무역경영(D-9)	2,352	2,136	2,053	2,148	2,512
교 수(E-1)	2,187	2,053	2,017	2,012	1,897
회화지도(E-2)	13,910	12,621	13,403	14,251	14,005
연 구(E-3)	3,132	3,110	3,638	4,009	3,916
예술흥행(E-6)	3,549	3,011	3,285	3,989	4,711
특정활동(E-7)	21,314	19,534	20,675	24,083	44,993
비전문취업(E-9)	276,755	236,950	217,729	268,413	310,825
선원취업(E-10)	17,603	17,552	17,921	19,874	21,476
방문동거(F-1)	122,886	105,382	96,015	105,293	112,260
거 주(F-2)	43,671	43,666	42,367	44,561	53,325
동 반(F-3)	22,890	20,050	21,237	24,917	30,613
재외동포(F-4)	464,152	466,682	478,442	502,451	536,374
영 주(F-5)	153,291	160,947	168,118	176,107	185,441
방문취업(H-2)	226,322	154,537	125,493	105,567	103,981
기 타	246,228	275,624	260,867	272,574	301,068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84 |

사무소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서 울	118,335	102,859	96,888	95,824	102,630
서 울 남 부	127,223	106,526	95,393	91,451	94,731
부 산	52,323	46,147	45,022	48,978	56,035
인 천	118,283	110,849	107,902	115,876	130,029
수 원	133,871	121,265	113,145	114,327	129,229
제 주	25,668	22,943	20,717	21,592	25,456
대 구	54,698	49,605	48,331	53,518	62,278
대 전	41,593	37,511	37,309	43,699	50,954
여 수	6,817	6,673	7,349	8,197	9,211
양 주	39,806	37,291	35,822	40,382	44,893
광 주	34,535	31,372	30,501	34,394	39,175
창 원	30,854	27,472	25,985	28,986	35,065
춘 천	12,196	10,924	11,045	13,044	14,463
청 주	39,114	35,610	34,564	39,543	46,873
전 주	26,973	25,496	24,509	28,138	31,772
울 산	32,239	28,081	26,427	28,326	34,665
안 산	91,164	83,680	78,935	97,165	104,590
세 종 로 (출)	69,750	61,768	60,393	69,019	74,343
구 미 (출)	13,078	12,111	12,127	13,942	16,592
포 항 (출)	8,740	8,349	8,268	9,216	10,415
천 안 (출)	41,226	37,188	36,321	40,448	47,675
서 산 (출)	8,308	7,843	7,513	8,862	10,440
고 양 (출)	24,080	22,177	21,244	23,751	26,477
목 포 (출)	15,424	14,621	14,245	17,603	23,968
거 제 (출)	8,302	6,641	5,404	5,861	11,773
군 산 (출)	6,101	5,792	5,822	6,803	8,443
평 택 (출)	45,606	43,623	43,229	45,911	52,141
김 해 (출)	21,883	19,492	18,524	20,930	25,651
기 타	23,617	21,631	20,957	23,799	28,659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85 |

지역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271,807	1,145,540	1,093,891	1,189,585	1,348,626
경 기	414,318	380,144	360,412	382,865	425,629
서 울	281,876	242,623	226,569	239,297	252,765
경 남	76,123	67,239	63,148	70,390	89,312
충 남	76,375	69,622	67,462	76,495	91,001
인 천	72,259	67,648	66,364	71,849	81,016
경 북	58,119	52,469	51,100	57,055	67,025
부 산	45,999	40,366	39,420	42,863	49,090
충 북	40,714	37,060	36,045	41,270	48,866
전 남	34,638	32,906	32,656	38,988	49,110
전 북	33,074	31,288	30,331	34,941	40,215
대 구	30,191	27,798	27,230	29,568	33,305
울 산	20,450	17,884	16,827	18,379	23,620
광 주	23,825	21,323	20,934	22,967	25,348
제 주	25,668	22,943	20,717	21,592	25,456
대 전	19,109	16,895	17,292	20,594	23,384
강 원	19,069	17,332	17,384	20,472	23,484

※ 충남은 세종시(5,786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 표 5-186 |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878,439	811,211	778,670	804,976	848,724
중 국	719,269	662,845	628,491	626,729	656,142
미 국	45,655	44,039	43,212	45,752	48,837
캐 나 다	16,046	15,975	16,731	17,899	17,923
우즈베키스탄	36,752	31,962	32,216	40,706	43,320
러 시 아	28,020	26,871	27,488	34,220	38,369
오스트레일리아	4,783	4,430	4,232	4,925	5,465
뉴 질 랜 드	2,490	2,393	2,279	2,512	2,661
카 자 흐 스 탄	14,992	13,033	13,993	19,614	22,426
독 일	809	787	812	874	889
일 본	852	768	706	755	873
기 타	8,771	8,108	8,510	10,990	11,819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 표 5-187 |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80,131	153,361	163,699	197,234	226,507
유 학(D-2)	118,254	101,810	111,178	134,062	152,094
한국어연수(D-41)	61,867	51,545	52,506	63,146	74,361
외국어연수(D-47)	10	6	15	26	52
증 감 률 (전년대비, %)	(12.1%)	(-14.9%)	(6.7%)	(20.5%)	14.9%

국가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80,131	153,361	163,699	197,234	226,507
중 국	71,719	52,102	49,033	59,905	70,888
베 트 남	57,539	57,945	63,492	71,038	80,343
몽 골	8,739	8,240	8,838	11,431	13,802
우즈베키스탄	10,499	9,077	9,504	11,555	12,530
일 본	2,887	2,193	3,876	5,105	4,544
인도네시아	1,461	1,342	1,561	2,339	2,511
파 키 스 탄	1,905	1,531	1,392	1,603	1,690
인 도	1,451	1,289	1,412	1,802	1,916
말레이시아	969	724	897	1,124	1,139
미 국	1,385	861	1,285	1,676	1,633
(타 이 완)	1,108	859	960	1,383	1,538
방글라데시	1,387	1,160	1,278	1,569	2,058
러 시 아	965	918	1,303	1,740	2,142
네 팔	2,331	2,796	2,772	2,746	4,543
필 리 핀	613	452	475	694	806
기 타	15,173	11,872	15,621	21,524	24,424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표 5-188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인 원	166,025	168,594	168,611	169,633	174,895
증감률 (전년대비, %)	(4.3%)	(1.5%)	(0.01%)	(0.6%)	(3.1%)

국가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166,025	168,594	168,611	169,633	174,895
중 국	60,324	60,072	59,770	59,499	60,048
베 트 남	44,172	44,058	41,447	39,136	39,956
일 본	14,184	14,595	15,074	15,366	15,662
필 리 핀	12,030	12,002	12,041	12,253	12,557
캄 보 디 아	4,641	4,638	4,565	4,641	4,794
미 국	3,883	4,312	4,538	4,801	5,093
태 국	5,130	5,929	6,558	7,506	8,669
몽 골	2,497	2,486	2,502	2,528	2,583
우즈베키스탄	2,688	2,625	2,709	2,738	2,792
캐 나 다	1,334	1,397	1,426	1,470	1,491
러 시 아	1,668	1,800	2,041	2,224	2,408
네 팔	884	841	834	852	871
파 키 스 탄	984	979	989	1,003	1,015
타 이 완	1,394	1,472	1,596	1,730	1,806
영 국	1,045	1,120	1,200	1,280	1,344
인 도 네 시 아	905	998	1,073	1,205	1,331
방 글 라 데 시	375	361	376	385	396
기 타	7,887	8,909	9,872	11,016	12,079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 표 5-189 |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귀화	9,914	13,885	10,895	10,248	10,346
	회복	2,443	1,764	2,742	3,043	4,203
중 국	귀화	4,371	7,932	5,145	4,480	4,904
	회복	181	120	185	114	98
베 트 남	귀화	3,867	4,076	4,225	4,431	3,807
	회복	39	29	14	18	23
필 리 핀	귀화	423	375	241	203	243
	회복	11	7	25	11	14
몽 골	귀화	102	145	103	60	126
	회복	6	10	3	6	8
우즈베키스탄	귀화	78	138	97	119	113
	회복	6	8	12	10	13
일 본	귀화	14	15	20	30	29
	회복	41	54	86	94	120
태 국	귀화	52	68	78	89	110
	회복	3	7	6	7	9
파 키 스 탄	귀화	48	26	34	26	13
	회복	-	-	-	-	0
기 타	귀화	959	1,110	952	810	1,001
	회복	2,156	1,529	2,411	2,783	3,918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표 5-190 |

구 분 \ 연 도		총계	'94~'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1차	103,759	15,250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11,539	18,837
	이의 신청	43,413	7,566	5,277	3,723	3,110	4,067	5,954	4,718	3,749	5,249
심사 결정	소계	93,425	15,356	10,602	9,634	6,879	9,306	11,894	10,979	8,543	10,232
	1차	58,482	10,131	6,326	5,219	4,295	5,875	8,102	5,982	5,463	7,089
	이의 신청	34,943	5,225	4,276	4,415	2,584	3,431	3,792	4,997	3,080	3,143
철회*	소계	27,008	2,004	815	1,245	2,412	4,264	6,230	4,003	2,966	3,069
	1차	25,030	1,807	735	1,197	2,305	4,138	5,929	3,693	2,659	2,567
	이의 신청	1,978	197	80	48	107	126	301	310	307	502

* 1차 심사의 경우 직권종료 처리 건 포함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14. 난민신청 심사결과

| 표 5-191 |

구 분 \ 연 도		총계	'94~'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심사완료		51,991	7,498	5,665	5,874	3,954	5,060	6,236	6,848	4,907	5,949
난민 인정 (보호)	소계 (보호율, %)	4,052 (7.8)	1,488 (19.8)	350 (6.2)	437 (7.4)	651 (16.5)	308 (6.1)	223 (3.6)	123 (1.8)	242 (4.9)	230 (3.9)
	인정 (인정률, %)	1,439 (2.8)	580 (7.7)	98 (1.7)	121 (2.1)	144 (3.6)	79 (1.6)	69 (1.1)	72 (1.1)	175 (3.6)	101 (1.7)
	인도적 체류	2,613	908	252	316	507	229	154	51	67	129
불인정		47,939	6,010	5,315	5,437	3,303	4,752	6,013	6,725	4,665	5,719

※ 기준 시점에 따라 소송 결과 반영 등으로 수치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인정취소 8건 및 철회 2건 포함

法務年鑑



자 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제1절 직제

1. 직제 연혁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급)을 공보관(2급,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 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시설과를 기획관리실 시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 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이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 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 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 → 26인)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2001. 4.24.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2001.10.10.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2002. 3.30.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 → 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 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 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신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 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 → 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 → 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 → 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 → 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 → 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2013.10. 1.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121	2013.11. 5. 2013.11.13.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122	2013.12.1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 →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124	2014. 8.27. 2014. 9. 4.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125	2015. 1. 6.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 → 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 → 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 → 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5 → 4·5급 1명, 7 → 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 → 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 → 4·5급 2명, 소속기관 4 → 3·4급 1명, 5 → 4·5급 4명, 6 → 5급 13명, 7 → 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 → 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 → 13명)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 → 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 → 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 →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 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 → 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규칙 일부개정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131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2016. 5.10.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 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2016. 9. 5.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33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2016.10.11.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2016.12.30.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135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2017. 2.28.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2017. 5.24.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38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2017. 6.20.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39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 8. 1.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14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2017.10.20.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4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2017.10.31.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143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2017.12.29.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144	2018. 2.20.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
	2018. 2.20.	법무부령 제9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 관리과 -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145	2018. 3.30.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 •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
	2018. 3.30.	법무부령 제92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 •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 -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146	2018. 4. 9.	법무부령 제92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147	2018. 5. 8. 2018. 5.10.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령 제9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8	2018. 5.31.	법무부령 제9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149	2018. 6.26.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 -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 - 소년과 → 소년보호과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50	2018.10. 2. 2018.10. 4.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령 제93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 •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151	2018.12. 4. 2018.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령 제94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152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령 제9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 •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 •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153	2019. 2.26. 2019. 2.26.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령 제94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신설 • 수용자 경계강화, 야간근무교대 개선 등을 위한 인력 375명 증원 • 평가대상 정원 320명 추가
154	2019. 5. 7.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령 제95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직위 변경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신경과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55	2019. 7.29.	법무부령 제9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명칭변경
156	2019. 8.13. 2019. 8.13.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령 제9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공공형사과로 명칭변경 • 법무부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내용 수정 • 소속기관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변경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157	2019.12.24. 2019.12.31.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령 제96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 기구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158	2020. 2.25. 2020. 2.25.	대통령령 제30451호 법무부령 제96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권침해 조사인력, 국제분쟁 대응인력 등 본부 인력 9명,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소속기관인력 519명 증원 • 강원북부교도소,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의정부·천안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신설, 소속기관 하부조직 14과 신설 등
159	2020. 4.28. 2020. 4.28.	대통령령 제30634호 법무부령 제97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출입국 소속기관 총액인건비활용 관련 존속기한 3년 연장
160	2020. 6.30.	법무부령 제97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신설
161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1호 법무부령 제9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송무심의관 신설, 행정소송과 이체 신설 •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 직제에 규정되어 있던 실·국장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으로 이관
162	2020.10. 7.	대통령령 제31093호 법무부령 제98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제도 운영인력 8명 증원 • 20년 3분기 소요정원으로 야간교대근무 인력 등 80명 증원
163	2020.12.29. 2020.12.30.	대통령령 제31302호 법무부령 제99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년수용자 관리, 전자감독 관련 평가대상 정원 68명을 대상에서 제외 • 체류외국인 관련 평가대상 정원 90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 •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자 전자감독' 용어 삭제 • 부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부조직 명칭 변경 교육지원과 → 법체험연수과 교육운영과 → 비행예방교육과
164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무 기타 → 사무와 그 밖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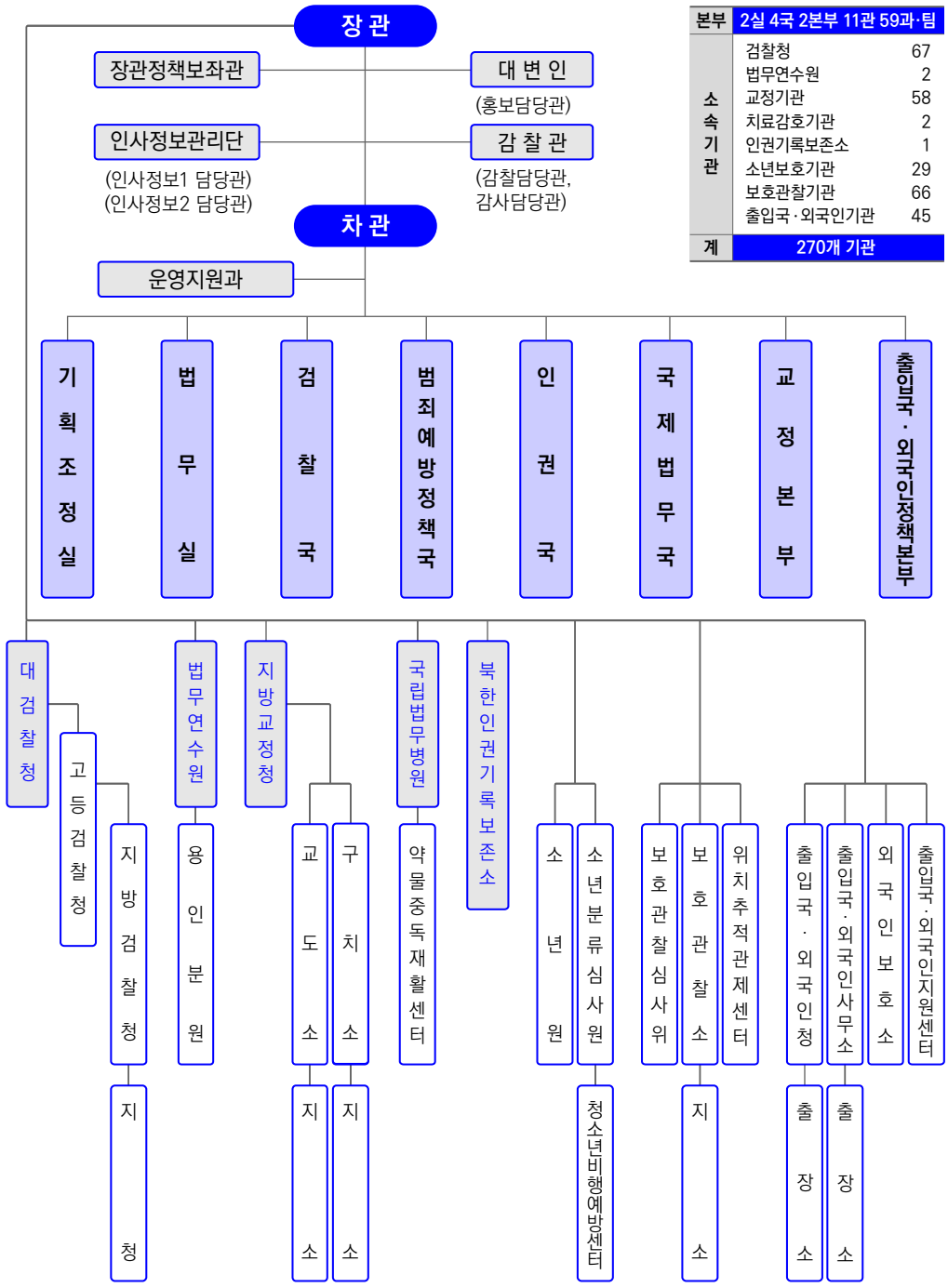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수발 → 접수·발송 피복 및 급양 → 의복 및 음식 제증명 → 각종 증명 기타 형사정책 → 그 밖에 형사정책 수용관리·교정·교화·교화 기타 → 수용관리·교정·교화나 그 밖의
165	2021. 2.25 2021. 3. 2.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령 제100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등 본부 인력 5명 증원 • 전자감독 전담인력 등 196명 증원, 대전소년원 직급상향(5급2→4.5급2) • 치료감호소 하부 조직 명칭 변경 특수치료과 → 정신재활치료과 • 전자감독 대응 인력 101명 등 평가대상 정원 201명 추가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조사과 신설 •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 평가대상에서 제외
166	2021. 7. 1.	법무부령 제101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사항 신설 • 벤처형조직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신설 • 벤처형조직 소관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 기획조정실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데이터과 • 공업직 정원 조정 및 전환 배치
167	2021.11.23.	대통령령 제32139호 법무부령 제101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체복무요원 교육시설 운영·관리 인력 등 본부 정원 4명 증원 •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교대인력 135명 등 소속기관 정원 137명 증원 • 검찰공무원 정원 4명 법무연수원으로 이체 • 교도소 등 교대근무인력 관련 평가대상 정원 156명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정규직화 • 대전소년원 하부 조직 명칭 변경 교무과 → 의료재활과
168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법무부령 제101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데이터분석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획조정실장 분장사무 조정 •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 본부 인력 2명 증원 • 법무부 본부 평가대상 조직(양성평등정책담당관) 평가기간 연장(2021. 12. 31. → 2023. 12. 31.) 등 • 소년수용자 관리 평가대상 정원 47명을 대상에서 제외 • 전자감독, 소년보호관찰 관련 평가대상 정원 99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 • 공업직 전환 배치
169	2022. 2.22.	대통령령 제31476호 법무부령 제10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 인력 등 3명 증원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 처우개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관리 인력 등 168명 증원 • 법무부 정원 8명을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정원 이체 • 일부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관성의 구역과 위치를 현행화 등 반영
170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신설조직의 성과평가결과의 평가기간란 삭제
171	2022. 5.31.	법무부령 제102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 및 직급상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 5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등 반영
172	2022. 6. 7.	대통령령 제32668호 법무부령 제102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사정보관리단장,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 신설 및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 증원
173	2022. 6.27.	대통령령 제32718호 법무부령 제103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검사 5명) 증원 •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
174	2022. 8. 4.	법무부령 제103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직급을 조정하여 배정 등 반영 • 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조사과 미설치 기관 업무분장 기준 조정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할구역 조정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 기관 확대 (6개→18개)
175	2022. 9.30.	법무부령 제103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9월 30까지 2년 연장 반영
176	2022.11. 1.	대통령령 제32969호 법무부령 제103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거창구치소 신설 및 제주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인력 103명 증원 반영
177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5호 법무부령 제10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 131명 증원과 법무부의 정원 7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 등 각각 감축 반영 • 평가대상 정원 평가기간 연장 체류외국인 관리 등 154명→1년 연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성인보호관찰 52명→1년 연장 소년수용자 관리 42명→2년 연장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50명→1년 연장 항만 국경관리 33명→2년 연장
178	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5호 법무부령 제10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요 인력 1명, 사할린동포 국적 판정 심사 업무 수행 필요 인력(2025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1명 증원 •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 필요한 인력 1명, 서울구치소를 증축하면서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 인력 4명 증원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 증원 • 평가대상 조직인 법무실 송무심의관·국제분쟁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폐지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
179	2023. 6. 8.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신설 - 법무부(4팀) : 존속기한 2026년 5월 31일인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마약사범재활팀·특별점검팀,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소속기관(17팀) : 존속기한 2026년 5월 31일인 각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4개, 주요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11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 2개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 상향조정 - 법무부 : 16명 - 교정기관 : 11명 - 출입기관 : 11명 • 관리운영직군 전환 - 교정기관 관리운영직군 4명 → 기술직군 - 소년보호기관 관리운영직군 2명 → 기술직군 - 출입기관 : 관리운영직군 1명 → 행정직군
180	2023. 8. 8.	대통령령 제33661호 법무부령 제105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기록관 운영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간호인력 12명 증원 • 국제법무국 신설 - 기구 신설 : 국제법무국장, 국제법무지원과 - 인력 증원 : 8명 - 명칭 변경 : 국제법무과→국제법무정책과, 국제분쟁대응과→국제투자분쟁과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지원 사무 분장 조정 : 인권정책과장 → 통일법무과장

연번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81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법무부령 제10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 특례규정 삭제하고, 훈령등으로 정하도록 함 • 과장급 개방형직위 개수 15개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에 추가 • 의무직렬 정원 전체를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 •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 • 본문 직급 순서를 행정직군-과학기술직군에서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변경
182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5호 법무부령 제106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에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증원 • 보호관찰기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제 및 관리·감독 필요 인력 20명, 교정기관에 증축 수용동 교대근무 인력 23명, 출입기관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필요 인력 55명, 사증 업무 증가로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및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자비자센터를 온라인 체류·사증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 증원 • 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직급을 5급에서 4·5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감축 - 본부 7명, 소속기관 103명 • 법무연수원 정원 2명을 대검찰청으로 이체 • 법무부 총액인건비제 기구인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법무부 정원 2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 • 평가대상 기구·인력 평가대상 연장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평가기간 1년 연장 -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8개 분야 514명 평가기간 1년 연장 - 체류외국인 관리 90명 평가대상에서 제외(정규화) •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구역 변경 - 명칭 변경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 관할구역 변경 : 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특별자치도 편입 • 분장사무 용어 정비 : 영치금품 → 보관금품 등

2. 조직도



본부	2실 4국 2본부 11관 59과·팀	
소속기관	검찰청	67
	법무연수원	2
	교정기관	58
	치료감호기관	2
	인권기록보존소	1
	소년보호기관	29
	보호관찰기관	66
	출입국·외국인기관	45
계	270개 기관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473	4,621 (+148)	4,569 (−52)	4569	4,569	4,504 (−65)	4,504	4,474 (−30)	4,556 (+82)	4,083 (−473)	3,862 (−221)	3,862	3,952 (+90)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905 (+228)
본 부		148	148	148	148	83 (−65)	83	53 (−30)	53	68 (+15)	68	68	68	170 (+102)	177 (+7)	199 (+22)	189 (−10)	189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검 사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90 (+27)	190	190	190	190	190	220 (+30)	220	243 (+23)	243	300 (+57)	300	300	300
검찰청 일반직등	586	586	534 (−52)	534	534	534	534	534	589 (+55)	589	589	589	589	904 (+315)	903 (−1)	996 (+93)	1,089 (+93)	1,089	1,089	1,273 (+184)	1,338 (+65)	1,388 (+50)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3,372	3,372	3,372	3,372	형무소 3,372	3,372	3,372	3,372	2,914 (−458)	2,790 (−124)	2,790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089	3,229 (+140)	3,229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 년 원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96 (−30)	96	96	136 (+40)	164 (+28)	164	181 (+17)	181	250 (+69)	250	363 (+113)	397 (+34)	397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9)	47 (−2)	59 (+12)	116 (+57)	118 (+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조선형 무관학교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형무관학교 226	129 (−97)	129	129	138 (+9)	138	138	교도관학교 138	138	138	138	138	138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7,035 (+130)	7,568 (+53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99)	9,589 (+1,033)	9,938 (+349)	10,664 (+726)	10,995 (+331)	11,538 (+543)	13,210 (+1,672)	13,431 (+221)	13,561 (+130)	13,820 (+259)	13,967 (+147)	14,255 (+288)	15,216 (+961)	15,708 (+492)	18,847 (+3,139)
본 부	332 (+14)	256 (−76)	245 (−11)	248 (+3)	210 (−38)	291 (+81)	295 (+4)	295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29	444 (+15)	444	444	444
검찰청 검 사	300	343 (+43)	343	360 (+17)	377 (+17)	377	417 (+40)	417	473 (+56)	473	473	467 (−6)	497 (+30)	527 (+30)	557 (+30)	587 (+30)	587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388	1,457 (+69)	1,457	1,473 (+16)	1,539 (+66)	1,565 (+26)	1,565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6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474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6	8,074 (−2)	8,092 (+18)	8,092	8,092	8,447 (+355)	8,574 (+127)	10,780 (+2,2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397	427 (+30)	425 (−2)	425	484 (+59)	484	484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695	749 (+54)	749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998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7)	166 (−9)	202 (+36)	218 (+16)	218	279 (+61)	279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31	581 (+50)	621 (+40)	783 (+162)	795 (+12)
법무연수원	138	138	137 (−1)	137	137	67 (−70)	75 (+8)	75	76 (+1)	76	80 (+4)	86 (+6)	86	90 (+4)	90	90	135 (+45)	135	13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20,270 (+1,423)	21,211 (+941)	21,795 (+58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3,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3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75)	870	930 (+60)	929 (−1)	937 (+8)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법 무 연 수 원	148	148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79 (+279)	283 (+4)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32,607 (+537)	33,076 (+469)	33,741 (+665)	34,133 (+392)	34,427 (+294)	34,402 (-25)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679 (+11)	697 (+18)	752 (+55)	763 (+11)	772 (+9)	781 (+9)
검찰청 검사	1,942 (+95)	1,942	1,942	1,942	1,942	2,032 (+90)	2,112 (+80)	2,182 (+70)	2,252 (+70)	2,292 (+40)	2,292	2,292	2,292	2,292
검찰청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8,444 (+107)	8,493 (+49)	8,482 (-11)	8,480 (-2)	8,453 (-27)	8,391 (-62)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15,860 (+128)	15,963 (+103)	16,338 (+375)	16,504 (+166)	16,668 (+164)	16,638 (-30)
소년원 (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1,291 (+53)	1,339 (+48)	1,417 (+78)	1,425 (+8)	1,437 (+12)	1,438 (+1)
출입국·외국인기관 (외국인보호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2,330 (+133)	2,439 (+109)	2,551 (+112)	2,568 (+17)	2,576 (+8)	2,632 (+56)
법무연수원	105	105	105	105	107 (+2)	124 (+17)	131 (+7)	130 (-1)	130	130	130	134 (+4)	138 (+4)	135 (-3)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1,609 (+35)	1,711 (+102)	1,767 (+56)	1,955 (+188)	2,079 (+124)	2,083 (+4)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2 (+12)	12	12	12	12	12	12	12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54	1. 1.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 • 운영기간 연장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교정기관, 출입기관 별도정원 삭제 •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립법무병원 별도정원을 7명 증원(8명→15명)	혁신행정담당관실
1456	1. 3.	법무부 감찰규정	•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찰관실
1457	1. 9.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감찰담당관실
1458	1. 11.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 사건 공개가 가능한 범죄를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체 피부착자까지 확대	전자감독과
1459	1. 20.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 소년보호위원의 임기 연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출입증 명칭 및 재검토기한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소년보호과
1463	2. 3.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인사혁신처와의 전문직위 협의 결과 반영 •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 기산점 등 명확화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등 직제 개정 반영	혁신행정담당관실
1464	3. 13.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당직근무 인원이 9인 이하인 기관의 경우,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최소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장이 3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기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 부여	보호관찰과
1465	3. 14.	교정직 공무원의 강사 등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심사의 원활한 시행과 합리적인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항목별 점수와 비율을 개선하고 자격기준 조정	사회복귀과
1466	3. 16.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	• 사건 공개 범위에 대상자 실명 추가 • 사건공개 사항은 보호관찰소장에 결정하는 등 작성사건 공개 절차 간소화	전자감독과
1467	3.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 국가보안시설 지정 해제, 인용규정 개정 등 소년보호행정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소년보호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68	3. 27.	법무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 휴무 확대	운영지원과
1469	4. 24.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 일부 조항(이수 과목, 최소 이수시간 등)을 보호직 교육 현장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지침 자체에 존재하는 이행 저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호직 직원의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 지침으로 정비	범죄예방기획과
1470	5. 1.	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	• 난민전문통역인, 소수언어 통역인, 긴급한 필요 등에 따른 당일 섭외 통역인에 대한 통역료 인상	난민정책과
1471	5. 3.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2.11.7. 신설된 자율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	출입국기획과
1472	5. 23.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사항 규정 •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육성	보호정책과
1473	6. 2.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가상자산 보유신고에 대한 '소속 기관장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을 제외	감사담당관실
1475	6. 26.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비용(항공료, 체재비 등)의 지급기준과 학자금 소요경비 지급 한도액을 설정하고, 다른 논문 등을 표절한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등 국외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훈련비 환수 근거 명시	검찰과
1476	6. 28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규정	•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라는 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명시 • 위원의 요건(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그밖에 민사법 분야에 관한 학식·경험 갖춘 자), 위원장/위원의 임기(2년/1년), 해촉 사유, 회의 진행방식 등 • 기초위원회, 검토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명시	법무심의관실
1477	7. 20.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직급별 승진심사 기준 추가 • 근무성적평정의 일반 원칙 신설 • 6급 이하 직원의 보직관리를 위한 직무 관련 규정 신설 등	범죄예방기획과
1478	8. 1.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인권보호관 지정 세부 기준 및 인권침해신고 세부절차등을 규정하고, 물품 소지 제외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이민조사과
1479	8. 8.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및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 법무부 및 각 교정시설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	교정기획과
1481	8. 10.	6급 보호관찰관 운영규정	•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6급 보호관찰관 자격 요건, 직무 범위, 선발절차 등 규정	범죄예방기획과
1484	8. 1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규정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해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형사통계단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85	8. 29.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에 '사법경찰직무 전담 부서' 설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항 및 제5조제1호·제2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약칭 "교정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특별점검팀
1487	9. 4.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 특수우편물 등에 대한 검수 및 반입 제한 강화 • 환자별 반입신청 물품 목록 사전 입수 • 부정물품 반입 시도 적발 시 조치사항 추가	치료처우과
1488	9. 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감호실무관의 지휘 체계를 구체화하고, 감호실무관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단독 감호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소년보호과
1489	9. 21.	보호소년 교육지침	• 필수 인성교육 과정 구분과 보호소년별 필수 과정 지정 및 교육 인원 등 조정 • 변경된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용어 등 재정비	소년보호과
1490	10. 16.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하한 신설 • 위원의 해촉사유 보완 정비	혁신행정담당관실
1491	10. 16.	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정비	혁신행정담당관실
1492	10. 16.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 위원회의 서면심의 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수정	혁신행정담당관실
1493	10. 19.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 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8. 30.) 개정사항 반영	감사담당관실
1495	10. 25.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 사용에 관한 지침	• 대구소년원 중학교 과정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폐지 •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설 반영 등	소년보호과
1496	10. 25.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 재검토 기한 도래(2024. 1. 1.)에 따른 검토기한 재설정 • 용어 정비('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 • 공중보건의사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임상연구비 대상에 공중보건의사 제외 • 연구자가 사망한 경우 임상연구비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신설	의료과
1497	11. 1.	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	• 교도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정사고 상황별 대응 및 교정장비 사용·조작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 기본사항을 규정	보안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499	11. 16.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 보호관찰소등의 장 보고대상 신설	범죄예방 기획과
1501	12. 4.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현행화 • 일부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 조정 및 미비점 개선	혁신행정 담당관실
1502	12. 4.	법무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무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혁신행정 담당관실
1503	12. 13.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 청원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 구성 변경	혁신행정 담당관실
1505	12. 26.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 제명 변경(「국립법무병원 주·부식 급여규칙」 →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 피치료감호자의 주·부식에 대한 검수 및 보관·관리 강화 • 환자식 등 급식 제공 기준 마련 •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 등 강화	치료 처우과
1507	12. 27.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신설 등	범죄예방 기획과
1509	12. 28.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 대체복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배치 및 전보, 휴가 등 처우, 복제 및 보급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교정 기획과
1510	12. 28.	대체역 교육규칙	• 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생 준수사항, 교육운영관 임무 등 학사 및 복무관리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	교정 기획과
1511	12. 28.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인사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기간을 연장	혁신행정 담당관실

2. 예 규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12	1. 2.	교정기관 공용차량 관리지침	• 공용차량 관리업무의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 규정 마련 및 차량 교체·불용처리에 대한 규정 보완 등 지침 일부개정	복 지 과
1313	1. 20.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리원에 대한 명칭 개선·직무교육 규정을 추가하고 외국인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 및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보완	소 년 보 호 과
1314	2. 6.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 설 담당관실
1315	2. 6.	교도작업운영지침	• 교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교도작업 시행 • 업무 간소화를 통한 교도작업 효율성 제고 • 민간참여작업 계약 절차 개선	직 업 훈 련 과
1316	3. 13.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 교정기관 간판의 규격, 영어 명칭 표기방법과 영어 명칭 사용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정원칙 마련 • 교정본부 등의 직제 및 비직제 조직에 대한 영어 명칭 표기안, 교도관 직위 및 직급에 대한 영어 명칭 표기안, 사복교관 직렬의 영어 명칭 표기안 마련	교 정 기 획 과
1317	3. 14.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수기장부 폐지 및 교정정보시스템 대체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석방 전 교육대상자 명확화 • 효율적인 집중인성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형기주기별 재교육 대상자 교육을 기본교육 시행 시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신설 및 유예자의 유예 사유 해소 이후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재정비	사 회 복 귀 과
1318	3. 14.	교정위원 운영지침	• 교정위원 신규 위촉 요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참여활동실적 제출'을 삭제하여 민간자원봉사자의 참여 기회 확대	사 회 복 귀 과
1319	3. 27.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국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등 제고를 위해 국적심의조사관 직위 도입,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생략 근거 신설, 위원 명단 비공개 등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국 적 과
1320	4. 18.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 '23. 2. 27. 개정된 「난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난민조사관의 필수 교육 이수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예규로 정함	난 민 심 의 과
1321	6. 1.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지침의 명칭을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여 소년수형자 처우 전담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수형자의 작업 및 교육 관련 규정을 보완	분 류 심 사 과
1322	6. 5.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확대됨에 따라, 법률구조법인 등록신청서 양식의 제출 서류 범위를 변경	인 권 구 조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323	6. 29.	분류처우 업무지침	• 「교정심리검사」 개정사항 반영 및 수형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자치생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신청 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문장 중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쉽게 정비하며, 분류심사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	분 류 심 사 과
1324	7. 17.	분류센터 운영지침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의 고위험군 수형자 집금수용을 폐지하고 분류센터 담당 직원의 출장 심사를 도입함에 따라 출장 분류심사에 따른 업무절차를 규정하며, 분류센터 심사 대상 범죄 유형에 마약, 스토킹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분류센터 심사 제외 대상자 유형을 명확히 규정	분 류 심 사 과
1326	8. 22.	법무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 규정	•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비 상 안 전 기 획 관 실
1328	9. 8.	법무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개정에 따른 현행화 • 기타 미비점 보완 및 오기 정정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1329	11. 10.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 '22.10.1.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장 격상, 정부위원 참석 인원 감소 및 직급 상향 조정,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근거 마련, 근거 마련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등 세부사항을 개정	국 적 과
1330	11. 27.	심리치료 업무지침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취소자의 재참여 근거규정 마련 • 이수명령 집행률 제고 및 미이수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이수명령 미집행 안내 확인 규정 마련 • 비효율적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수기장부 작성 폐지	심 리 치 료 과
1331	12. 11.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	• 입주 자격과 퇴거 요건의 불일치 해소를 통한 비상대기숙소 관리 및 운영 철저를 위한 지침 일부개정	복 지 과
1332	12. 26.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 담당근무자의 청원서 인계 절차 단서 규정 추가 • 별지 서식 변경 (청원부 처리 서식 자구 보완, 청원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접수증명원 안내 문구 변경 및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예시 조문 수정)	특 별 점 검 팀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 2.	2023년 수용자 상담 사례회의 운영 계획 시달	• 수용자 전문상담 사례의 전문가 수련 감독을 통한 내부 상담 인력 역량 강화	무	심 리 치 료 과
3.	보안근무 환경 개선 관련 보안배치 적정성 확인 등 이행 재강조 지시	• 주·야간 지원한계인원 준수 철저 • 지속적인 보안 배치 적정성 확인	무	보 안 과
1. 5.	「당직교정관」 제도 시범운영 계획(안) 시달	• 당직교정관 제도 시범운영 - 서울구치소, 광주교도소	무	보 안 과
1. 6.	2023년 수용자 전문상담 운영 기본계획 시달	• 수용자 내적 변화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상담 체계 시행	무	심 리 치 료 과
9.	4부제 보안근무 체계 개선 시범 운영 계획(안) 시달	• 야간 근무자 교대근무 체계 개선을 통한 직원 처우 향상 • 서울동부구치소 완전4부제 시범 실시	무	보 안 과
1. 12.	2023년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및 교정기관 운영 종합계획 시달	• 설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교정시설 운영 종합계획 시달 및 자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 20.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보완) 시달	•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보완) 시달	무	교 정 기 획 과
26.	2022년 순회점검 종합결과 시달	• 2022년 순회점검 수범사항 등 종합결과 시달	무	교 정 기 획 과
1. 27.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정장비 개선 및 도입 계획(안) 시달	• 장비휴대용 근무벨트, 휴대용 가스분사기, 접이식 소형 방패, 방검토시·방검장갑 신규 도입	무	보 안 과
1. 31.	소년수용자 급식운영 철저 지시	• 소년수용자 급식단가 변경에 따라, 식단 작성 및 추가 급식 등 소년수용자 급식 운영 철저	무	복 지 과
2. 7.	2023년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시달	• 수용자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 시달 • 범죄심리사 등 심리치료 관련 자격 과정 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직원 교육 시행	무	심 리 치 료 과
2. 7.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 변경(안) 시달	• 중점관리군 수용자 주기적 검사 폐지 • 상시 모니터링군 폐지 • 유증상자 검사 및 백신접종 실시	무	의 료 과
2. 15.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본계획 알림 및 관서별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제16회 세계인의 날(2023. 5. 19.) 기본계획 시달 및 관서별 자체 행사 계획 보고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이 민 통 합 과
18.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정장비 휴대 표준화 시범 운영 계획(안) 시달	• 교정장비 휴대 기준 표준화하여 통일성있는 공권력 사용 • 11개 기관 시범운영 실시	무	보 안 과
2. 21.	장소변경접견 제도 개선 방안 시달	• 장소변경접견 제도 개선 - 증거인멸 차단 - 강자 위주로 선정되는 구조적 문제 개선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2. 21.	포승 연결 장비(연승줄) 개선 시범 운영 결과 시달	• 포승의 연결부분을 버클에서 금속고리로 변경하여 편의성 개선 및 착용 시간 단축	무	보 안 과
2. 28.	접이식 소형방패 시범 운영 계획 시달	• 수용자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근접 진압 능력 향상 • 6개 기관 시범운영 실시	무	보 안 과
3. 2.	교정위원제도 활성화 기본 계획 시달	• 청년 교정위원 위촉 • 대학생, 교사,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 발굴	무	사 회 복 귀 과
3. 7.	스포츠 활동을 통한 수용자 준법 인성교육 추진 계획(안) 시달	• 이론 위주 수용자 인성교육의 한계 극복 및 교육 효과성 향상을 위해 참여·실천형 인성교육 방안 도입 • 준법정신·협동심·공동체 규칙준수 등 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인성) 함양 지원	무	사 회 복 귀 과
3. 7.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조 지시	• 작업장 안전교육 강화 • 작업장 환경 개선 및 안전장치 구비 등	무	직 업 훈 련 과
4. 5.	취업매칭반 등 수형자 취업지원 개선 방안 시달	• 자체 직업훈련과정을 활용하여 각 기관의 여건에 맞는 취업연계 직업훈련반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실질적 취업지원 업무 추진	무	직 업 훈 련 과
4. 5.	광주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 이전 계획(안) 송부(시달)	• 심리치료센터의 '중간감독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광주청 심리치료센터를 군산(교)에서 정읍(교)로 이전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	심 리 치 료 과
4. 6.	교정본부장 공직기강 확립 특별 지시	• 예산 집행 시 신중 검토 및 주요 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당부	무	교 정 기 획 과
4. 20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출입국편의 제공협조 지시	•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자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4. 27.	보안근무 환경 개선 시범 운영 결과 시달	• 자율 선택형 야간 지원 근무 방식 도입 • 야간·휴일 지원 한계 인원 설정, 대체복무요원 활용	무	보 안 과
5. 1.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개정	• 재외동포(F-4) 자격자에 대해 구인난이 심각한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체 류 관 리 과
5. 12.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급식관리 철저 지시	• 여름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	무	복 지 과
5. 19.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관련 고시 개정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 변경 및 투자금액 상향 등 제도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 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5. 30.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조치 변경(안) 시달	• 확진자 격리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 수용동청소부 선발 시 백신접종 여부 확인 폐지 • 수용동청소부 순환교체 가능 • 외부인 체온 측정 폐지	무	의 료 과
6. 13.	비상대기숙소 관리·운영 철저 지시	• 소속기관 비상대기숙소의 관리 및 운영 철저	무	복 지 과
6. 21.	마약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 및 시범운영 계획 시달	• 마약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 • 회복이음 과정 프로그램 도입 • 마약재활 전담 직원 배치	무	마약사범 재 활 팀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6. 21.	중경비시설 운영 활성화 계획(안) 시달	• 형집행법에 규정된 중경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 중경비시설 수용대상자 전담교도소(경북2교) - 중경비시설(중경비처우 수용동)	무	보 안 과
6. 22.	신형 교정장비 사용 매뉴얼 및 교육 동영상 배포 알림	• 신형 교정장비의 제원 및 사용대상과 요건 등 기준 마련 • 신형 교정장비 사용법 동영상 배포	무	보 안 과
6. 29.	장마 및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 지시	•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철저	무	복 지 과
6. 29.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 고시명 변경 및 투자금액 상향, 은퇴이민 폐지 등 제도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7. 1.	「당직교정관」 제도 시범운영 확대 계획(안) 시달	• 당직교정관 제도 확대 시범운영 -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무	보 안 과
7. 3.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알림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7. 4.	장마철 등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	• 여름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	무	복 지 과
7. 6.	교정시설 내 의약품 오·남용 근절 재강조 지시	• 펜타닐 등 패치제 마약류의약품 관리 • 복약지도 및 복용 확인 철저 • 처방전 타당성 여부 확인 및 의약품 중복 복용 방지	무	의 료 과
7. 10.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 음주운전 근절,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무	교 정 기 획 과
7. 11.	도주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교정청 특별 점검 지시	• 소속기관의 도주방지 시설 점검하여 적의 조치 지시	무	보 안 과
7. 12.	마약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관련 중독재활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계획(안) 시달	• 척도 개발연구팀 구성 및 운영 • 척도선정 및 번안 • 타당화 절차 및 방법	무	마약사범 재활팀
7. 21.	집중호우 관련, 교정본부장 특별지시 재강조 시달	•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대비 • 행동메뉴얼 및 비상연락망 재점검, 상황발생시 즉각 대처 • 주요 재난상황 신속히 보고	무	보 안 과
7. 26.	법무시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분석결과 알림 및 관리 철저 지시	• 교정시설 중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실태 분석결과 시달관리 철저	무	복 지 과
8. 1.	식품사고 사례 전파 및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 식품 사고 사례 전파 및 위생관리 철저	무	복 지 과
8. 3.	교정기관 식중독 예방관련 실태점검 실시 지시	• 소속기관 취사장 위생관리 사항 등 실태점검 실시	무	복 지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8. 7.	정전 등 비상 상황 대비 시설물 특별 점검 지시	• 노후 변전시설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비상연락망 및 행동 매뉴얼 정비 등 신속 대응 태세 점검	무	보 안 과
8. 9.	마약류사범 이수명령 집행률 제고 개선(안) 시달	• 마약류사범 이수명령 대상자 급증에 따라 집행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시달	무	마 약 사 범 재 활 팀
8. 17.	수형자 정역의무 집행 제고 지시	• 적극적인 정역의무 집행으로 미작업자 감소를 통한 교정사고 예방 • 계약인원을 준수하고, 재계약 시 계약인원 확대 • 유휴 작업장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체 유치	무	직 업 훈 련 과
8. 18.	수용자 전화 제5차 시범운영 계획 알림	• 수용자 전화 제4차 시범운영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내용 반영 새로운 시범운영 실시	무	보 안 과
8. 28.	「의료관광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알림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 등 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8. 29.	전동킥보드,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등 복무관리 철저 지시	• 전동킥보드, 자전거 음주운전 사례 전파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등 복무관리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9. 5.	식품사고 사례 전파 등 급식관리 철저 지시	• 식품 사고 사례 전파 및 급식관리 철저	무	복 지 과
9. 8.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알림	•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C-3-2)의 비자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시행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9. 11.	교정시설 음란도서 종합대책 시달	•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의 급증 및 교정시설 음란도서 반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수용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무	사 회 복 귀 과
9. 11.	행동교정을 위한 운영지원직업 분야 실용직업훈련 도입(안) 시달	• 건강한 생활습관(행동교정)의 정착,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위생·방역 직업훈련 도입 • 안양(교) 등 5개 기관, 총 160명 대상 시범운영 실시	무	직 업 훈 련 과
9. 19.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및 교정기관 운영 종합계획 시달	• 추석 연휴 기간 복무기강 확립, 교정시설 운영 종합계획 시달 및 자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9. 19.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 시달	• 발달장애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 및 형사·행정 절차상 권리보장	무	의 료 과
9. 20.	이상동기범죄등 중범죄자 전담기관 운영 계획(안) 시달	• 이상동기범죄자 강력 처벌 및 중경비시설 구금을 통한 엄중계호 및 심리치료 시행	무	보 안 과
9. 20.	2023년도 교정기관 사격훈련 관련 준비 철저 지시	• 사격훈련 실시를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 협조 • 안전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위한 준비	무	보 안 과
9. 21.	2023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달	• 갑질, 성희롱 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시달	무	교 정 기 획 과
9. 22.	귀휴 활성화 계획 시달	• 일반수형자 석방 전 귀휴 심사 필요적 실시 • 중간처우자 단계별 귀휴 확대 실시 등	무	사 회 복 귀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9. 25.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시행	•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확대 및 고용기업 추천 의무화 등 제도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체류관리과
9. 26.	급식안전관리기준 강화 지시	• 급식안전관리 기준 시달 및 급식업무 철저	무	복지과
10. 10.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도입일정(시범운영) 및 관련 지시	• DUR 시범운영 실시(10.19.~11.8.) • 시범운영기관 : 안양(교), 화성직훈(교), 창원(교), 대전(교), 장흥(교)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 화성직훈(교), 창원(교), 대전(교), 장흥(교)	의료과
10. 18.	2023년 교정기관 인력진단 계획 알림	• 인관 인력운영 실태분석 및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효율화 도모	무	교정기획과
10. 23.	4부제 정상화 추진TF 운영(안) 시달	• 교정본부, 각 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 TF 구성	무	보안과
10. 23.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형 교정장비 시범운영 결과 및 활용 지시	•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및 교정기관의 통일된 강제력 행사 • 폭행피해 대비 교정장비 적극 활용	무	보안과
11. 1.	공용차량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 철저 등 지시	• 소속기관별 안전교육을 통한 공용차량 사고 방지 및 차량관리 철저	무	복지과
11. 3.	음주운전 근절 특별 지시	• 기관별 특별 교육 실시 등 음주운전 근절 특별 지시	무	교정기획과
11. 9.	교정시설 빈대 발생 예방 방제 추진 강화 방안 시달	• 빈대 생태적 특성 및 발견 방법 • 예방 및 대응 방법 • 빈대 집중 점검 기간 : 11.13.~12.8.(4주간)	무	의료과
11. 13.	주요 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당부 지시	• 직원 교육 강화 및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적극 시행 등을 통한 주요 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당부	무	교정기획과
11. 20.	겨울철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 겨울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운영을 위한 관리 철저	무	복지과
11. 20.	작업장 화재 사례 전파 및 동절지 화재예방 강조 지시	• 작업장내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화기 등 관리 철저	무	직업훈련과
11. 21.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환경 조성 확대 운영계획 시달	• 성폭력 심리치료 효과 저해 간행물의 열람 제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형자를 수용할 별도의 거실 지정 • 성폭력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중 '동의자'에 대해 '저해 간행물'의 소지·열람 제한 • '저해 간행물'의 회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자'를 성폭력 심리치료 참여 기간 중 '심리치료거실'에 분리수용 • 성폭력 심리치료 참여자가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장도서'를 구비하여 운영·관리	무	심리치료과
11. 24.	접견 예약 필수제 개선(안) 알림	• 접견 예약제로 인해 장기간 접견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의 고충 해소	무	보안과
11. 24.	외부의료시설 입원·진료 수용자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안) 시달	• 다중감시체계 마련 등을 통한 외부의료시설 입원·진료 수용자 도주사고 재발방지	무	보안과

자료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1. 30.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 시달	•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 및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원칙적 금지 • 의약품 일일권장량 유지 및 장기처방 자제	무	의 료 과
12. 4.	평택항 이용 소무역상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실시 지시(협조)	• 평택항 이용 소무역상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실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2. 7.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복무 점검 등 지시	• 근무시간, 유연근무,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2. 11.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절차 개선방안 시달	• 각 지방교정청에 '외부진료 심사위원회' 설치 • 구성 : 위원장(지방교정청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 (외부위원 1인 이상)	무	의 료 과
12. 13.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추가 확대 관련 업무 지시	• 출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지역 확대 시행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2. 14.	난민인정자 영주(F-5-27) 취득요건 일부 개정 알림	• 난민인정자 중 참전용사 후손 등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일부 개선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난 민 정 책 과
12. 15.	심리치료 개선 과제 검토결과 시달	• 심리치료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 증진을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파악·개선 • 이수명령 집행 대상자 명부 수기작성 등 폐지 • 변화상담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업무경감 조치	무	심 리 치 료 과
12. 21.	비상대기숙소 관리·운영관련 개선사항 시달	• 비상대기숙소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입주자 선정 등 운영관리 철저	무	복 지 과
12. 22.	외부의료시설 도주사고 예방 고성능 웹캠 등 도입 계획(안) 시달	•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도주사고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물적 계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실질적인 방지대책 마련	무	보 안 과
12. 27.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DUR) 전면 실시 알림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전면 실시 • 2024. 3.경 사용자 의견 취합하여 시스템 개선 예정	무	의 료 과
12. 28.	마약사범의 건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회복자원 연계 계획(안) 시달	• 마약사범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직업재활 방안 마련	무	마 약 사 범 재 활 팀
12. 28.	호루라기 지급 및 활용 지시	• 도주관련 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미흡에 따른 호루라기 지급 • 현장 근무자 호루라기 반드시 휴대 후 근무	무	보 안 과
12. 28.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형 헬멧 도입 및 시범운용 계획(안) 시달	• 수용자에 의한 직원 안면부위 폭행에 대한 기능이 개선된 헬멧 도입 • 수용동, 기동순찰팀 등에 상시불출로 비치	무	보 안 과

제3절 장관 연설문

▣ 2023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설현황 |

일 자	주요 행사명	비 고
1. 2.	• 신년사	
2. 6.	• 신임검사 임관식	
4. 25.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	
5. 1.	• 신임검사 임관식	
5. 11.	•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5. 19.	•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6. 2.	•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6. 5.	•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	
7. 28.	• 제35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8. 1.	• 신임검사 임관식	
8. 18.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10. 18.	• 거창구치소 개청식	
10. 27.	• 제78주년 교정의 날	
11. 1.	•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컴퍼런스 개회사	
11. 15.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식	
11. 29.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12. 13.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MOU)	
12. 21.	• 2023년도 선진법제포럼	

• 신년사

Ⅰ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가 좋은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뜻하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Ⅱ

지난해 5월, 저와 여러분은 '정의와 상식의 법치', 그리고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한 출발을 함께 했습니다.

7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교육·교정·교화 강화를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였고,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장 교정공무원의 처우 합리화를 통하여 대국민 교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제주 4·3 재심사건 등 억울한 국민들이 오래도록 고통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 고심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등 비자·국적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나이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하지만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Ⅲ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집단행동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Ⅳ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작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1:1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 등 전자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하여 하루 빨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읍시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지금부터라도 전쟁하듯이 막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꼭 해냅시다.

아울러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읍시다.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갑시다.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나갑시다.

셋째, 반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합시다.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합시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합시다.

국제업무 관련 부서 통합·확대를 통해 국제규범 성안과 도입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무 역량을 키워 첨예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국제분쟁에도 원활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CBT 변호사시험, 소송 과정의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등 법률서비스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께서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로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법집행기관들의 이전·배치 문제도 한 걸음 진전시켜 나갑시다.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인권보호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V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해내봅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소신을 가지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신임검사 임관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관하는 검사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검사직을 떠났지만, 저는 20여년 간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일이 힘들어도 검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검사는 따박따박 월급받아 일하면서도 '정의와 상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멋진 검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Ⅱ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의 마음가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오늘의 기억과 다짐을 잊지 말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고, 진범을 놓치지 않도록,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려면 실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기량을 갖춘 검사로서, 소신대로 열정을 다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신임검사와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사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60회를 맞은 '법의 날'에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법(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고,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조건에서 이런 성취를 이룬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정치·경제·문화적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것이 바로 법치(法治)입니다.

Ⅲ

건국 이래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1987년 개헌 이후 법률의 내용도

자연법과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한걸음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적인 행태나 '법을 지키면 손해', '법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이익만을 좇아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충격적인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으로 심화되는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더욱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 대량 살상 무기, 팬데믹, 기후 위기 등은 전 지구적으로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오늘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국민의 존엄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정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범죄피해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챙기겠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의 실태도 섬세하게 살펴 모든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고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번영을 이끌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토대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백년대계로서의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컨트롤타워인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습니다.

AI,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시에 담아낼 수 있도록 「민법」, 「상법」 등 기본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우리나라에 부여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V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법치'라는 가치는 제도만으로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하고,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고, 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이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본분을 다하고, 법이 주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법무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신임검사 임관식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전직 검사이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길은 제 각각이었겠지만 아무 어려움 없이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에,(사실 제가 제일 그래요) 우리에게 특별히 더 웃어준 행운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행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과소평가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패에 불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과소평가하게 될 거에요.

추측컨대, 저 뒷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여러분의 행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나 저나 좀 서로 재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20여년전 처음 검사가 된 날, 제 아버지가 어떤 표정으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오늘을 오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이 검사 일을 꽤 오랫동안 했지만, 리허설 없이 무대 위에 오른 배우처럼 하루 하루 정신없이 살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검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살면 돼' 할 만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날이니 두서없이 한 두 말씀드리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듣고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국민 같은 건, 검사가 마주쳐야 할 현실 세계에는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특별할 뿐이죠.

그런 특별한 분들을 대하는데, 전문가로서의 매너리즘이나 권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 검찰청에 오는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검사의 일은 바쁘고 투쟁적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더라구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어느 영화잡지에 난 한석규 배우의 인터뷰를 봤어요.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인터뷰는 한석규 배우가 혼자서 큰 영화들의 주연을 독차지 할 당시였으니 꽤 오래 전이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는 걸 신조로 삼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일이야 말로 그 속성 때문에 매일매일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아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시작하는 여러분이 그 다짐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단순한 직업윤리를 나침반처럼 삼았는데,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침반이 그 길에서 만날 늪이나 사막은 알려주지 않겠지만요.

(늪이나 사막을 돌파할 실력을 기르는 걸 나침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검사로서 어떤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을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도 첫날 그걸 생각했는데, 일하면서 금새 바빠지니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더라구요. 그러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법도 법이지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입니다.

이건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상식에 안맞는 결정을 해 놓고, '니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됩니다.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Voltaire가 한 말인데, (물론 불어로 했겠지만)

이제 일을 하다보면, 무엇이 상식인지부터 시작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상식적인 결정이 다수의 순간적 기호와 다른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비법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많이 읽고 많이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용인 법무연수원에 가시죠?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거기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에 구내카페에서 신임검사님들과 같이 줄서서 커피와 토스트를 먹었어요. 신임검사님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으면 모두 그곳에서 즐거워 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Ⅰ

전국의 동료 교정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교정위원 및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제41회를 맞은 '교정대상'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교정'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더 우리 사회에 알리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게 축하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곁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을 수상자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정 공직자와 교정 참여인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정대상을 주관하고 후원해 주신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님과 KBS 한국방송 김의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전국의 동료 교정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의 존엄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범죄자들을 교정교화하여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법무부 대표 제복공무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우리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동료 교정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정 공직자와 함께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Ⅲ

동료 교정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교정대상을 통해 새 삶을 바라는 수용자들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보았습니다.

동료 교정 공직자분들의 노력들은 수용자들을 건강한 이웃으로 되돌려 보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다하고, 교정이 주는 의미를 인식하며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교정교화에 전념할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의와 상식, 인권 보장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둘째, 언제나 수용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교정위원 여러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교정 참여인사 여러분의 교정에 대한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마음 따뜻한 교정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상자 중에는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매달 인천에서 경상북도 청송까지 200km 넘는 거리를 오가며, 헌신하고 계시는 교정위원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교정에 대한 열정은 수용자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사회에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이 이어지고, 더 큰 성과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교정위원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국가적 소명을 다하는 교정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선배 교정 공직자분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다가 전투와 불법 처형으로 167명이 순직하셨습니다. 우리 선배 교정 공직자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며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교정현장에서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 그리고 일부 수용자들의 수용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선배 교정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본받아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인권이 보장되는 따뜻한 교정행정을 만들어 갑시다.

Ⅳ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교정'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최후의 보루 중 하나입니다. 오늘, '교정'이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교정 공직자와 교정 위원 여러분이 함께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16회 세계인 날 기념식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올해로 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에 “공감과 존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기념식을 빛내 주신 아랍에미리트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대사님을 비롯한 각 국의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 국제이주기구 스티브 해밀턴 대표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김병수 김포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대한민국은 그간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내 어느덧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7위 규모의 문화컨텐츠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경제발전의 핵심 축이었던 제조업 등 주력산업 분야의 부진이 인구감소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가 성장동력 상실”, “경제활력 저하” 등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2023년 4월기준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39만명으로, 총 인구의 4.7%에 달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국가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Ⅲ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세계인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 첨단 과학기술 분야, 미래 신산업 등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정하고 원칙있는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체류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과 외국인의 통합과, 외국인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포용정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인 체류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과, 글로벌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Ⅳ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맞이할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 봤습니다.

다가 올 우리의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V

끝으로, 1959년 대한민국에 오신 후 유아교육, 여성교육의 발전과, 소외계층,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올해의 이민자' 상을 받으신 김추리 여사님을 비롯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외국인 정착지원 유공으로 영예롭게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9.
법무부장관 한동훈

•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Ⅰ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16기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239개팀, 1079명의 지원자중에서 35개팀 165명에 선정된 법질서 실천문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법무부 자원봉사단입니다.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중심의 발대식을 개최하여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함께 모이셨습니다.

Ⅱ

지난 2008년부터 14년 동안 3,000여명 선배 저스티스 서포터스들은 법무부 및 범죄예방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선배들의 활동을 이어받아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에는 가족, 이웃, 공동체속으로 번지는 마약을 퇴치 및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Ⅲ

마지막으로,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여러분! 앞서 시청한 제15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활동 동영상과 선배들 응원 기운을 전달받아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법질서 캠페인을 전개하며 흘릴 땀과 노력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기 중 바쁜 대학생활 속에서도 저스티스 서포터스 위촉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순직교도관 충혼탑 제막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은 아니잖아". 힘들 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위로가 되지요. 저는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167분들에게는 '진짜 전쟁통'이었고,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공포와 타협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럴 때 멋있는 척 해봐야 너만 손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여기 167분은 그때 그곳에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으로, 167분의 교정공직자들은 '불멸'이 되셨습니다.

70년 후,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167분의 이름을 소박한 돌에 새겨 기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이자 선진국이 된 2023년의 대한민국이지만, 동료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7년 전 군복무 중 순직하신 21살의 고 홍정기 일병님은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처럼 무딘 사람도, 꾹꾹 눌러쓴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셨을테고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이실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기 일병님이 말한 그 '좋은 나라 대한 민국'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70년 전 그날 밤, 그곳으로, 개성소년형무소로, 마포형무소로, 서울형무소로, 인천소년형무소로, 대전형무소로, 공주형무소로, 부천형무소로, 광주형무소로, 진주형무소로, 안동형무소로, 목포형무소로, 군산형무소로, 청주형무소로, 대구형무소로, 형무관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은 패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평소 쏴본 적도 없는 소총 한 자루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 그분들이 있다는 걸 신경쓰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히 모닥불만 타고 있었지요.

그 적막 속에서, 167분은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2023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35기 공익법무관 임용식

Ⅰ

신임 공익법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초임 공익법무관으로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공익법무관으로 새 출발을 하는 날인 만큼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도 25년 전에 여러분처럼 법무관으로 복무하였는데, 그 시절을 거친 선배 법조인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Ⅱ

첫째,
우리에게 많은 행운이 따랐고,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따른 행운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주세요.

Ⅲ

둘째,
바르고 실력 있는 공직자가 되기 바랍니다.

공익법무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소송 사무를 지원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는 기본이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잘' 해야 합니다.

다른 일처럼 이 일도 경험과 실력이 같이 갑니다.
잘하고 싶어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일하면,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는게 공무원의 좋은 점입니다.

Ⅳ

셋째,
정의와 상식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기 바랍니다.

법은 '상식'에 바탕을 둔 것인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상식적인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온 법을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적용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이 읽고, 많이 들으며 끊임없이 그 힘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Ⅴ

이제 8월 1일이 되면 여러분은 각자의 임지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3년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갈 텐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틈틈이 떠올리면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신임검사 임관식

I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년간의 법무관 근무를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열 여섯의 신임검사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니 제가 20여년 전 처음 검사가 된 날이 생각납니다.
그 날 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오늘 이 순간을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I

오늘은 여기 젊은 공직자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이니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검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검사의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고될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일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선서 문구처럼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분명히 가치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검사의 일을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끈기있게 일하고, 항상 상식에 맞게 일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검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국민들 대부분은 평생 어쩌다 한 번 검찰청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같이 마주할 사건에는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엘리트이고, 사회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동안 받은 혜택을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검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여러분 모두 각자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검사가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러 파도를 만날 때마다 오늘의 기억과 다짐을 잊지 말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며 꿈을 이루는 멋진 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여기계신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현판식 축사

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켜봐주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뜻을 모아주신,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님,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용인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옮겨져(2018.9.6.) 사실상 방치된 지 5년 만에, 다시 이곳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한 현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Ⅱ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2016년에 만들어질 때,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 한귀퉁이로 마치 안쓰는 물건 안보이게 치워버리듯 옮겨졌고, 홀대받고 방치되어 맡겨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두 번째 좌천을 당했을 때, 제가 지내던 바로 옆 방이 그렇게 옮겨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매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맡겨진 임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잡고자 합니다.

Ⅲ

여러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대한민국이 북한인권을 신경 쓰고 있다는 자기만족을 위한 상징물이나 우월한 체제의 선전물에 불과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지역에서 범해진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나중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 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기관입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참담한 인권상황을 외면하고도 '우린 뭐라도 했어' 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상징물이 아닙니다. 할 일이 구체적이고 현실세계에서 성취 가능하죠. 이념적인 장식품도 아닙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지켜내려고 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고 진영이나 이념을 따지지 않죠.

둘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지역에서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범하거나 범할 사람들에게 그런 인권침해 범죄행위가 나중에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거고, 여기에 법정에서 쓰일 증거가 쌓이고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역사의 법정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법정에서 말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지난 세기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가담자들이 나중에 뉘른베르그 재판이나 도쿄재판이 열릴 거란걸 미리 예상했다면, 나치나 일제의 인권침해 피해의 정도가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뉴욕에서는 6년 만에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고, 대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규명에 모든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마규정」이나 그 국내 이행법률인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하면,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에 따라 바로 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북한인권 침해의 증거들은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이제부터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거창구치소 개청식

I

거창 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교정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생각도, 반대하는 생각도 모두 '말이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죠.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평행선만 긋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창은 달랐습니다. 오늘 거창구치소를 개청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모두 해냈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II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하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거창 주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2011년 거창 주민들께서 법무부에 자발적인 유치 건의를 하셨지만, 2014년경부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차이가 극심해졌고, 결국 사업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물건너갔다'고 보는게 현실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거창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2019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개청 결론을 이끌어 내셨고, 반대하시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반대하시던 분들께서 거창구치소 개청을 위한 교정위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Ⅲ

십여 년 전, 지금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구치소 개청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성산마을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십여 년 간, 거창구치소 유치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셨고,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상처입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교정시설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혹시 모를 안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마음, 모두, 지역과 동료시민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찬성하셨던 분들, 반대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찬성과 반대, 그 절실했던 두 마음 모두를 생각하면서, 거창구치소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Ⅳ

저희는, 거창 구치소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거창 주민들께서 모이면, '그때 참 잘 한 결정'이었다고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창구치소는, 시설 외관을 저층 분산형 구조로 설계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환경보호에도 힘쓸 것입니다.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농구장, 개방공원 등 부대시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께 개방할 겁니다.

거창의 지역인재를 거창구치소 직원으로 특채했습니다.

청사와 민원실에, 거창 지역 관광명소와 특산품 홍보물 등을 게시하여 외지에서 찾아올 민원인들에게 거창을 홍보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거창구치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못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잘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거창 발전을 위해,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V

바쁘신 가운데 와 주신, 해인사 혜일 주지스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산마을 주민분들, 구인모 거창군수님, 이홍기 전 거창군수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님, 김홍섭 민주당 군의원님 등 군의원님들, 김태호 국회의원님, 신성범 전 국회의원님, 강석진 전 국회의원님 등 오늘 개청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동안의 거창 주민들의 마음고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시며 저에게 이번 개청식에 꼭 와달라고 편지 주신, 김덕선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개청을 준비해 주신 우리의 동료 교정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들끼리는 고맙다는 말은 안할께요.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네요.

거창 주민 여러분, 거창구치소 개청과 관련해서, 지난 10여 년 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역을 위해 대단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내신, 거창의 주민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78주년 교정의 날

제가 어제밤까지 국회에서 국감을 하다가 왔는데요. 뭘로 든 저를 공격해 보려는 눈빛에 둘러싸여 있다가 여러분의 따듯한 눈빛을 만나니까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 거창에 거창구치소가 개청했죠. 그 기념식에서 저는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경남 거창의 주민들, 성산마을 주민들을 비롯해서요. 그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10년간의 각고의 집요한 노력으로 그 어려운 개청을 이뤄내신 우리 동료 교정공직자들에 대해서는우리끼리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우리끼리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국의 1만 7천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여기 78년 이상을 살아오신 우리 인생 선배분들도 계시는 걸로 압니다만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대한민국 교정이 78년에 지난 세월을 겪었습니다.
특히, 힘든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마스크 없이 이렇게 4년 만에 모이게 된 것도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과 수상자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상자들이 그렇게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하시는 동안 가족분들의 희생이 많으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님,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님,
유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님,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님,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제가 하나하나 거론하게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벌써 꽤 되었네요. 5월에 취임하면서 그 동안 법무부의 다른 업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개선되지 못했던 교정업무의 열악함과 문제점을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말대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4부제는 반드시 합시다. 이거는 그냥 말만 하고 말아서는 안되는 거고요

제가 언젠가 저도 나이가 들고, 공직을 모두 떠났을 때, 제가 주변인 분들한테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교정 공직자들과 대국민께, '정상적인 대국민 서비스, 이거를 위해서 완전 4부제를 해냈어'라고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것보다 누구를 잡아 넣었다 이런 거보다 그걸 해주십시오

지금 완전 4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고 지금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과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는 등 교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마약사범재활팀은 더 중요합니다.
이유는 마약은 끊기 힘드니까 마약이거든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본인에 자발적 의지에 기댈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수감한 분들이 다시 나가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감돼 있는 동안은 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마약에 관한 어떤 선을 넘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 그건 역시 범죄에 대한 응징의 면도 있지만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입니다.

그 축에 하나가 우리 교정공직자입니다. 마약사범재활팀입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해서 보고를 받을 때를 보면,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하는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을 막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곤란한 직급체계가 있었습니다. 임무에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직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무에 걸 맞는 직급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수 십 년간 고위직들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다만,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무 공직자들의 직급이 그냥 고정돼 있습니다.
수십 년째 직급 구조가 그냥 급수가 높게 배정되거나 이런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안 챙겨서 그런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충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4부제에 있어서 교정본부장님과 함께 추진한 것 중에 하나는 하위직들의 직급 상향을 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많이 뽑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은, 그 임무에 적합한 직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나햐면,
그건 그 공직자들의 집에서 기분 좋으라는게 아니고요
그래야 국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위직에 편중된 비정상적 직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
5급 15개, 6, 7급 121개의 직급 격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끼리 얘기지만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의지를 갖고 했고 우리 정부의 조직과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내는 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직급.

저희는
교정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고위직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무의 하위 실무자들의 직급 상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번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후배로 들어오실 분들이 조금 더 비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간 똑같이 직급에 하위 직급에 머문다면, 그럼 누가 훌륭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후배님들이 들어오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첫발을 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회복하자는, 저는 처음에 교정, 저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교정의 어떤 현실이라 이런거에서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죠. 20년 넘게 검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와서 놀란게 처음에 와서, 뜬구름 잡고 뭐 하지 말고 '당장에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걸 뽑아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들고 직급 상향, 4부제 그건 하겠는데 당장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복지가 나아지고 결국 그래서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게 뭔지찾아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게 뭐냐면 냉장고, 공기청정기, 프린터기를 넣어 달라고 한거였습니다.전 깜작 놀랬습니다. 그거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그게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제 업추비를 가져가면 되죠. 이런게 업무추진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안 해 왔던 것이고 그걸 먼저 했습니다.

저는 또 이게 대단히 미안하게 느낀게 이게 현장 근무자실, 이게 뭐냐면 야간 근무 이런곳이예요 냉장고가 있어야죠.

어떤 민원 서류를 발급 할 때 프린터, 재소자들이 원하는 프린터물을 출력할 때 4, 5층을 오르내리면 안되죠. 각 사무실마다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거죠..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놀란 것은 고마워한다는 것이었어요. 기본이 안 되었던 것인데

그만큼 저는 우리 교정 서비스
우리 교정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조금 더 그런거에다가 쓸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진짜 교화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직 갈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비를 인상했고, 정신 건강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경찰 공직자들, 검찰 공직자들 이렇게 대민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들은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산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심하지 않습니까
매일 죄를 저지르고 극한에 처한 사람들과 대하시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보면 느낍니다.
가서 표정부터가 다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늘릴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보수의 현실화 관련해서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는데, 앞으로도 확대할 겁니다.
특정업무경비, 이런데 쓰는겁니다.
이런 돈을 늘리는 것, 국민들께서 누구도 뭐라 안하실껍니다.

차라리 와서 보니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쓰는 돈은 줄여도 되겠더라구요
제가 줄여 놓으면 다음 사람들이 힘들어 할 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익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우리 교정공직자들이 저에게 어떤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 했을 거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서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들게 보여드리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땜에 마약이 줄어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약사범재활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왜나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거에요
마약을 잡는데 교정이 그렇게 중요할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사람을 완전히 마약으로부터 일정 기간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차단만 할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재활 교육하고, 진짜 재활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다른 정부부처처럼 해보면 자발적인 rehab(중독치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갈려고 하겠어요
마약은 끊기 힘드니까 마약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걸 알아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공직자니까
한번 여기서 성과를 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약재활팀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게 틀린 것이 아닌 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정위원 여러분!

수형자 교정교화 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교정공무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힘든일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를 만나서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각종 지원을 해주시는 것 이건 누구나 하기 싫은 거고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교정 소년 라디오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재소자에게 어떤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 세금은 왜 그러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까지도 다 감안해서 본다면 여러분께서 이런 봉사를 하시는 것은 속된 말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특히, 저희 교정 공직자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끔은 수용자들에게 협박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기듯이 음해를 당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점은 보통 그럴 때 "에이 더럽다, 안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오시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정 동료 공직자 여러분!

기왕 오늘 뵈었으니, 두 가지 말씀 정도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인권 보호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정부가 수용자 인권만 치중해서 오히려 수용질서 문란 시켰다는 지적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수용자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걸 지키지 않는 한 우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잘 합시다.
그걸 잘하자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용 질서를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수용자 인권을 무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는 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만, 마음속에 그걸 하나를 항상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0대 경제 대국이고, 국격이 있는 나라, 어느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를 매력있는 나라로 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맞는 인권 존중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 보장이나,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해야 다른 재소자, 다른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강을 잡는 권한, 권한이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임무입니다.
트러블 일으키기 싫어서, 진정 받기 싫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기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건 해야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인권을 지키키 위해서 최소한의 기강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은 같이 가야 가는 개념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우리 젊은 동료 공직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직업윤리를 항상 생각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다 보면 길을 잃을 길이 생기거든요

이게 꼭 현실 세계에서에 각론에서의 선택이 그렇게 명진하고 선명하지 않잖아요
모호한게 더 많은게 인생이니까 그러다 보면 직업적인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정 공직자서의 직업윤리가 1번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도 보호하게 될 것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의 직업윤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167분의 충혼탑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보여주신 것이 진짜 직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분명히 우리 교정 현장 공직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을껍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우리가 현장 교정공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나은 교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더 잘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필요한 조치, 충분히 해나가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우리 교정본부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일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헌신과 열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교정공직자들 외의 가족들과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줄 것을 감시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대단한 지원을 해주셨구요

제가 보기에 많이 오신분들에게 우리 교정 공직자 모두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정동우회 진주지회에서 50여명의 퇴직 선배님들 이상경하셔서 우리가 지난 6월에 만든 순직 교도관 충혼탑에 참배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역시 마음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길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회사

I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제12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UNCITRAL과 대한상사중재원, ICC 측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기꺼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I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엔데믹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은 중재기관과 중재 실무자들의 역할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끝났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직접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 간의 팬데믹 기간 중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대면기회 박탈, 절차지연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전자 사건관리 시스템, 비대면 심리, 신속중재규칙 등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통해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발전을 지속해왔습니다.

이제는 팬데믹 시대 그 이후를 준비할 때입니다.
엔데믹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중재기관과 실무자의 역할을 고민해보고, 각국의 시도와 혁신의 방향성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ISDS, 디지털 금융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가장 각광 받는 주제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종래 ISDS는 단순히 협정문 상의 문구로만 존재했지만, 국제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ISDS 건수가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ISDS 제도에 대해, 비용 증가, 절차 지연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ISDS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ISD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디지털 금융은 중재 분야에 있어 ISDS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빅데이터·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분쟁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건설적인 제안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Ⅲ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어느덧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제1회부터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이제 ADR 분야의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재 활성화를 위해 PCA 지역사무소의 대한민국 유치를 협의 중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 성안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투자분쟁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1개과였던 국제법무 전담조직을 3개과로 확대·개편하여 법무부 내에 '국제법무국'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식

Ⅰ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부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Ⅱ

저는, 흉기 테러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연쇄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소위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도 안될 겁니다. 범죄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으십니다. 유영철 피해자의 유족들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 관련 정보에의 접근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의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현관까지 침입해 칼과 토치를 두고 간 협박범이, 석방되면 또 해코지할지도 모르는 범죄자가, 혹시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석방되지는 않았는지조차,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직접 범죄피해자가 되어 보면서, 저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감 등 상황을 알고 혹시 모를 추가 범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범행의 전말을 상세히 알고 피해회복을 잘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기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범죄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때 피해자가 제출할 첨부서류를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최소화하는 것, 범죄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즉각 알 수 있게 하여 안심하고 일상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가해자접근 알림시스템을 만드는 것,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 분명 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은, 국가나 정부가 먼저 고민했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건 국가나 정부의 말이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편지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그 분께서 주신 귀한 생각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보기 위해, 저는, 그 편지를 받고서 지난 10월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며, 가해자를 상대로는 구상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 되기 쉬운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단기 과제로 성과를 낼 겁니다.

저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그 중 오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간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에 걸쳐, 그 부처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몰라서, 복잡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지원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보니, 모두의 책임이 되어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되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제도를 접한 피해자들은, 아마 대부분 일생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겠죠, 피해회복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기보다는 혼자 감내하며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제가 당한 사건들에서 피해자 지원제도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복잡하다보니, 결국 아무 것도 안하게 되더라구요. 따져보면, 참 유용한 지원제도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 최초의 물리적 결합일 뿐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Ⅲ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간의 물리적 결합을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첫걸음은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들어설 이 장소는 서울의 중심부, 접근성 좋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합니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가 결정됐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열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곳에서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울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범죄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겁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저는, 범죄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잘 지원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범죄피해자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시는 분들이 서로 서로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등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뵙는 자리를 할 수 없었는데요,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님,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이렇게 현장에서 뵙게 되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헌신하신,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며칠 전, 2019년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분들께서 제기하셨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 국가 소송수행책임자로서 항소포기를 즉시 결정하고, 유족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걸로,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잃은 유족분들의 상처가 백만분의 일도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봤는데요, 그 마음이 상상조차 안됩니다.
범죄피해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문제를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 층간 소음에서 비롯된 범죄피해를 입은 가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던 가족은,

범죄피해로 인해 깊은 상실감에 빠져계셨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검찰청 관계자의 도움 덕에,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죄피해자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더 분발하겠습니다.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꾸준히 정비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지원사례도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두텁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논의를 지속해왔고,

최근, 서울특별시와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죠.

내년 중 1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함께 일하게 될 전담인력도 피해자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세계의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세계의 범죄 피해자들이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흉기 테러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연쇄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으로 이번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도 최일선에서 피해자와 함께하시는 여러분 없이는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선의가 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는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료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할 겁니다.

Ⅳ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력해주신,
범죄피해자지원 기관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인득 사건 유가족분들을 포함하여, 이 나라의 모든 범죄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도울 겁니다. 그분들의 일상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MOU)

I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벌써 12월도 반 정도가 지났네요. 2023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법무부와 성남시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위 조례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8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위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죄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공직자로서 이렇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아울러 정신질환 수용자 등의 치료체계 개선을 위해 오늘 법무부와의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성남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II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9년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8월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도 최원종이라는 20대 남성이 차량을 몰아 인도로 돌진하고 뒤이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 위 사건으로 인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안인득 사건, 최원종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가해자들 모두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여 피해망상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만약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았거나 중단 없이 치료를 계속 받았다면 이와 같이 끔찍하고 극단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묻지마식 강력범죄, 이상동기로 인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입,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다른 묻지마식 강력범죄와 달리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적시에 질 좋은 치료를 통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거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통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 추이입니다.

2022년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약 9,875명으로, 전체 범죄자 대비 약 0.8%에 해당하고, 이는 10년 전인 2013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 범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의 수도 급증하여 2022년 기준 약 5,600명의 정신질환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고, 그 중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급격한 산업발전, 1인 가구 증가,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인 치료 기피 현상과 국가 차원의 투자 부족,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동의입원, 행정입원의 요건 강화 등으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율이 전체 범죄자의 재범율 보다 약 2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중에는 안인득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출소가 불가능한 수용자도 있지만, 수감 기간이 지난 후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수용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이 수감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출소한다면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감 기간 동안 정신질환 수용자를 치료하는 것은

수용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들이 수감 기간 중에는 강제로 단약하는 결과가 되어 수용기간 중의 마약치료가 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법무부와 성남시의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업무협약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회 복귀 후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Ⅲ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동료 시민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상관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끔찍한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사법입원제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고, 최근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난제인 정신질환 수용자를 포함하여 수용자의 치료체계 개선 등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현재 교정시설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거의 없어 자체적인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쇄병동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의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거부, 계호상 어려움, 입원 동의 등의 문제로 사실상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법무부도 그 동안'정신 재활 치료 수용동'을 운영하고, 정신과 전문의 초빙진료를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수용자 치료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늘 업무협약과 같이 공공의료원 등 외부 병원에 중증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입원병상을 설치하여 전문 의료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용 입원 병동이 설치되어 있는 외부 병원에 단기간이라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구치소와 연계하여 구치소 내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외부 진료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 나갈 것이고, 법정신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서도 성남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이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공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법무부 소관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집행법에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국립법무병원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송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립법무병원 병동을 추가로 개설하여 치료 여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만큼 이송 규정을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국립법무병원 이송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성남시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뿐 아니라 국립법무병원도 함께 중증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나설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Ⅳ

공공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병상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외부 병원들이 수용자를 위한 입원병상 설치에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 필요성을 적극 공감해 주시고, 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강조해 주셨기에 오늘 업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협약 이후 법무부와 성남시 사이에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용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범죄의 회전문을 반복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성남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수용자의 관리에 모든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수용자 입원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수에 비하면 극히 소규모에 불과하겠지만,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병상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입원 수용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무엇보다도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과 지역사회 공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법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상진 성남시장님과 성남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 2023년 선진법제포럼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년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사회를 맡아 주신 前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윤남근 변호사님, 주제 발표를 하시는 서울대 최준규 교수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참석해주신 선진법제포럼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80% 이상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복합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회생·파산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곧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육성을 위하여 다방면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논의되는 회생제도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2015년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채무 금액 50억 원 이하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간이 회생은 일반 회생에 비하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회생제도를 이용하기에, 그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추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 바꾸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Ⅳ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적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는 코로나19 이후 도산사건 증가에 대비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산절차의 정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미국은 2019년 연방파산법에 소규모기업 회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는 2021년 소규모기업 도산제도에 관한 입법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도산원칙을 개정하여 소규모기업 도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내용에도 여러 국제기구의 규정이 소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각국의 변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경제계, 학계를 대표하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법무부가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들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V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의 사회, 발표,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참석해 주신 선진법제포럼 회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이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權)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 ~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 ~ 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 ~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 ~ 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熹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熙)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8.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9.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 2019. 9. 8.	
66 대	조 국(曺 國)	2019. 9. 9. ~ 2019. 10. 14.	
67 대	추미애(秋美愛)	2020. 1. 2. ~ 2021. 1. 27.	
68 대	박범계(朴範界)	2021. 1. 28. ~ 2022. 5. 9.	
69 대	한동훈(韓東勳)	2022. 5. 17. ~2023. 12. 20.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1988 ~)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喜)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畯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2019. 7. 24.	
43 대	윤석열(尹錫悅)	2019. 7. 25. ~ 2021. 3. 4.	
44 대	김오수(金㤭洙)	2021. 6. 1. ~ 2022. 5. 6.	
45 대	이원석(李沅石)	2022. 9. 16.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 汚 洙)	2018. 6. 22. ~ 2020. 4. 27.	
62 대	고기영(高基榮)	2020. 4. 28. ~ 2020. 12. 2.	
63 대	이용구(李容九)	2020. 12. 3. ~ 2021. 6. 3.	
64 대	강성국(姜聲國)	2021. 7. 14. ~ 2022. 5. 12.	
65 대	이노공(李魯公)	2022. 5. 13.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2019. 6. 27.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9. 7. 31. ~ 2020. 1. 12.	
50 대	구본선(具本善)	2020. 1. 13. ~ 2020. 8. 10.	
51 대	조남관(趙南寬)	2020. 8. 11. ~ 2021. 6. 10.	
52 대	박성진(朴成鎭)	2021. 6. 11. ~ 2022. 5. 22.	
53 대	이원석(李沅石)	2022. 5. 23. ~ 2022. 9. 15.	
54 대	심우정(沈雨廷)	2023. 9. 27.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정책홍보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관리실로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기획조정실로 개편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 2019. 7. 30.	
49 대	김후곤(金煦坤)	2019. 7. 31. ~ 2020. 1. 12.	
50 대	심우정(沈雨廷)	2020. 1. 13. ~ 2021. 6. 10.	
51 대	주영환(朱映奐)	2021. 6. 11. ~ 2022. 5. 22.	
52 대	권순정(權純汀)	2022. 5. 23. ~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법무실로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개편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畯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2020. 5. 18.	
52 대	강성국(姜聲國)	2020. 7. 6. ~ 2021. 7. 13.	
53 대	이상갑(李尙甲)	2021. 8. 6. ~ 2022. 9. 8.	
54 대	김석우(金錫佑)	2023. 2. 6. ~ 2023. 9. 6.	
55 대	구상엽(丘尙燁)	2023. 9. 7.~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熙)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2019. 7. 30.	
56 대	이성윤(李盛潤)	2019. 7. 31. ~ 2020. 1. 12.	
57 대	조남관(趙南寬)	2020. 1. 13. ~ 2020. 8. 10.	
58 대	심재철(沈載哲)	2020. 8. 11. ~ 2021. 2. 8.	
59 대	이정수(李正洙)	2021. 2. 9. ~ 2021. 6. 10.	
60 대	구자현(具滋賢)	2021. 6. 11. ~ 2022. 5. 22.	
61 대	신자용(申子容)	2022. 5. 23.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 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2021. 6. 29.	
13 대	윤웅장(尹雄章)	2021. 8. 6.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 방 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2020. 1. 14.	개 방 직
13 대	이상갑(李尙甲)	2020. 8. 28. ~ 2021. 8. 5.	개 방 직
14 대	위은진(魏銀鎭)	2022. 1. 3. ~ 2023. 2. 28.	개 방 직
15 대	승재현(昇宰賢)	2023. 10. 5. ~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 방 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 방 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 방 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 방 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2018. 7. 18.	직무대리
15 대	이정현(李定炫)	2018. 7. 19. ~ 2019. 4. 28.	직무대리
16 대	마광열(馬光烈)	2019. 4. 29. ~ 2020. 5. 10.	개 방 직
17 대	박은정(朴恩貞)	2020. 5. 11. ~ 2020. 7. 5.	직무대리
18 대	류 혁(柳 赫)	2020. 7. 6. ~	개 방 직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鐘元)	1973. 4. 6. ~ 1975. 9. 30.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일반직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2020. 6. 30.	
8 대	이영희(李英姬)	2020. 7. 6. ~ 2021. 6. 30.	
9 대	유병철(柳炳喆)	2021. 7. 1. ~ 2022. 9. 1.	
10 대	신용해(愼鏞海)	2022. 9. 1.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晙)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2021. 7. 1.	일반직
10 대	이재유(李在兪)	2021. 7. 2. ~	일반직

• 인사정보관리단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행열(朴幸烈)	2022. 6. 7. ~	2022. 6. 7. 인사정보 관리단 신설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1. 본 부(5급 이상)

(2023. 12. 31. 기준)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공 석**	
차 관	**이노공**	**2022. 5. 13.**
감 찰 관	**류 혁**	**2020. 7. 6.**
감찰담당관	김형석	2023. 9. 25.
검 사	나영욱	2023. 9. 25.
검 사	장려미	2022. 7. 4.
검찰사무관	이기용	2019. 1. 28.
〃	남호현	2019. 12. 23.
〃	김승남	2020. 2. 10.
〃	최병휘	2022. 7. 18.
교 정 관	김충원	2022. 9. 26.
보호사무관	정명훈	2023. 7. 4.
출입국관리사무관	김관영	2022. 11. 14.
감사담당관	천정훈	2022. 7. 1.
서 기 관	조오행	2023. 6. 21.
〃	권창모	2022. 1. 24.
〃	강문덕	2023. 7. 24.
행정사무관	이승항	2022. 7. 1.
〃	김용갑	2023. 2. 16.
〃	김경모	2023. 2. 16.
〃	장윤석	2023. 4. 3.
시설사무관	최대원	2023. 7. 10.
운영지원과장	김정열	2020. 7. 1.
서 기 관	조상민	2023. 12. 16.
〃	김진섭	2022. 6. 21.
행정사무관	김현우	2021. 1. 25.
〃	이두형	2023. 2. 16.
〃	최영만	2023. 2. 16.
〃	이병흔	2023. 7. 10.
시설사무관	김 송	2021. 1. 3.
〃	이윤교	2022. 1. 3.
교 정 관	서기동	2023. 3. 13.
대 변 인	신동원	2022. 5. 23.
부대변인	김종욱	2022. 7. 4.
홍보담당관	한정진	2013. 9. 1.
홍보기획팀장	김범영	2023. 2. 1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찰사무관	이상우	2014. 5. 1.
출입국관리사무관	주태길	2022. 8. 29.
보호사무관	주경일	2022. 9. 19.
교 정 관	이성수	2022. 9. 26.
행정사무관	최영만	2023. 2. 16.
기획조정실장	**권순정**	**2022. 5. 23.**
정책기획관	최정석	2020. 7. 1.
검 사	양찬규	2022. 2. 7.
검 사	온정훈	2023. 2. 6.
행정사무관	이동주	2022. 9. 19.
교 정 관	유동윤	2023. 1. 30.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	2019. 1. 1.
행정사무관	하 헌	2022. 10. 18.
정책기획단장	박승환	2023. 9. 25.
검 사	김준선	2022. 7. 4.
〃	이지영	2022. 7. 4.
검찰사무관	김남철	2023. 1. 30.
기획재정담당관	유지중	2022. 7. 1.
서 기 관	임성훈	2020. 8. 25.
〃	김에오	2022. 2. 7.
행정사무관	홍주영	2023. 2. 16.
〃	박상열	2023. 2. 16.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2019. 7. 1.
서 기 관	김효민	2023. 2. 16.
행정사무관	김승권	2021. 2. 22.
〃	이준석	2022. 2. 22.
시설담당관	강동헌	2022. 9. 26.
시설사무관	이인환	2019. 7. 1.
〃	박주선	2023. 5. 20.
〃	정민수	2019. 7. 1.
〃	유영종	2022. 9. 26.
〃	박찬웅	2023. 3. 27.
공업사무관	장동선	2019. 10. 7.
〃	방승구	2017. 10. 16.
보호사무관	이희창	2022. 1. 24.
정보화데이터담당관	유상동	2022.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과학기술서기관	조용찬	2022. 9. 19.
〃	정혜찬	2022. 9. 19.
전산사무관	김시은	2021. 1. 25.
〃	정성훈	2018. 10. 11.
〃	유재두	2021. 9. 6.
〃	배재민	2022. 5. 9.
〃	박상영	2022. 10. 31.
〃	김창용	2022. 10. 31.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김종철	2019. 12. 2.
정책성과관리팀장	심경보	2023. 8. 7.
행정사무관	유재륜	2021. 8. 16.
〃	유환희	2023. 7. 10.
행복민원센터장	이영일	2023. 2. 1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2019. 11. 20.
행정사무관	이준서	2023. 2. 16.
〃	김정원	2021. 4. 6.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	2023. 9. 25.
검사	강용묵	2023. 9. 25.
전산사무관	오은정	2021. 3. 2.
〃	윤정희	2021. 8. 9.
“	조윤주	2022. 2. 21.
보호사무관	명선희	2023. 1. 16.
경정	신명승	2023. 2. 8.
법무실장	**구상엽**	**2023. 9. 7.**
법무심의관	구승모	2023. 2. 6.
검사	최형규	2023. 9. 25.
〃	석수민	2022. 7. 4.
〃	김영민	2023. 9. 25.
〃	박준석	2023. 9. 25.
서기관(일반임기제)	김다혜	2023. 7. 3.
행정사무관	박지수	2023. 2. 16
송무심의관	정재민	2023. 2. 6.
법무과장	박양호	2023. 9. 25.
검사	석동현	2023. 2. 6.
검찰수사서기관	소진호	2022. 1. 24.
서기관(일반임기제)	강윤정	2023. 1. 30.
검찰사무관	고동재	2021. 8. 9.
국가소송과장	임성택	2023. 6. 26.
검찰사무관	유영걸	2021. 8. 9.

직 위	성 명	발 령 일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윤경식	2020. 12. 28.
〃	서 려	2021. 1. 11.
행정사무관	강형광	2021. 4. 2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이선민	2022. 9. 5.
〃	이현진	2023. 7. 5.
행정소송과장	김은미	2023. 2. 6.
검사	이현진	2022. 7. 4.
〃	김영준	2022. 7. 4.
검찰수사서기관	배수용	2022. 7. 18.
검찰사무관	김재덕	2023. 7. 1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차유진	2022. 7. 4.
〃	김민식	2023. 3. 6.
〃	최정규	2023. 10. 30.
〃	송영주	2023. 11. 20.
〃	오상욱	2023. 11. 27.
통일법무과장	홍승표	2023. 9. 25.
검사	심재신	2023. 2. 6.
서기관(일반임기제)	한경태	2019. 2. 11.
검찰사무관	이응현	2021. 2. 22.
〃	김동주	2023. 7. 1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태희	2019. 10. 14.
〃	이예은	2021. 4. 5.
행정사무관	장윤정	2021. 8. 16.
상사법무과장	김봉진	2023. 2. 6.
검사	정성두	2022. 7. 4.
검사	박광호	2023. 2. 6.
서기관(일반임기제)	박세준	2023. 8. 21.
행정사무관	김영수	2023. 2. 16.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효선	2023. 12. 14.
법조인력과장	주혜진	2023. 9. 25.
검사	이재인	2023. 2. 6.
서기관	이한식	2019. 2. 11.
〃	유경남	2019. 12. 23.
검찰사무관	권정근	2021. 2. 22.
행정사무관	김유호	2023. 2. 16.
〃	홍진희	2022. 2. 22.
〃	양동규	2020. 2. 10.
검찰국장	**신자용**	**2022. 5. 23.**
사법연수원부원장	윤대진	2020. 1. 13.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 찰 과 장	이동균	2023. 9. 25.
검 사	정영서	2023. 9. 25.
〃	김봉경	2021. 2. 1.
〃	이승주	2022. 2. 7.
〃	안홍균	2023. 2. 6.
검찰수사서기관	김원석	2023. 1. 30.
〃	오은택	2022. 1. 24.
〃	김철곤	2023. 1. 30.
검 찰 사 무 관	정근용	2023. 7. 19.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2023. 9. 25.
검 사	문종배	2022. 7. 4.
〃	차병곤	2023. 2. 6.
검찰수사서기관	심재빈	2023. 1. 30.
검 찰 사 무 관	김형오	2022. 4. 11.
〃	김항수	2023. 1. 30.
공공형사과장	조민우	2023. 9. 25.
검 사	진세언	2022. 7. 4.
〃	남상오	2023. 2. 6.
검 찰 사 무 관	이정재	2022. 1. 24.
〃	김충범	2023. 7. 19.
국제형사과장	김태형	2023. 9. 25.
검 사	이진희	2022. 2. 7.
〃	윤기선	2023. 2. 6.
검 찰 사 무 관	김철민	2022. 1. 24.
〃	심주용	2023. 7. 19.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2023. 9. 25.
검 사	장태형	2022. 2. 7.
검 사	이정아	2023. 2. 6.
검 찰 사 무 관	정태규	2021. 2. 22.
〃	박상우	2021. 8. 9.
〃	김봉수	2023. 7. 19.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2021. 8. 6.**
범죄예방기획과장	이법호	2022. 1. 23.
서 기 관	이경주	2022. 1. 23.
보 호 사 무 관	배성준	2023. 7. 24.
〃	김종갑	2022. 9. 19.
〃	서용승	2023. 1. 16.
〃	박종석	2022. 9. 19.
보호정책과장	박종균	2023. 1. 1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호 사 무 관	이은주	2022. 1. 24.
〃	이태윤	2022. 1. 24.
〃	김미경	2023. 7. 24.
행 정 사 무 관	김영남	2021. 1. 25.
〃	정혜정	2022. 1. 1.
치료처우과장	권은아	2023. 7. 24.
서 기 관	이경민	2023. 7. 24.
보 호 사 무 관	반기리	2023. 1. 16.
검 찰 사 무 관	박두길	2020. 8. 21.
보 호 사 무 관	김정현	2023. 1. 16.
보호관찰과장	송중일	2022. 9. 19.
서 기 관	강신원	2022. 9. 19.
보 호 사 무 관	정광수	2022. 1. 24.
〃	김현미	2023. 7. 24.
〃	이상기	2022. 1. 24.
소년보호과장	윤일중	2023. 1. 16.
서 기 관	배성희	2023. 1. 16.
행 정 사 무 관	황규성	2023. 2. 16.
보 호 사 무 관	김인수	2021. 8. 30.
〃	최윤경	2023. 7. 24.
〃	장수용	2023. 1. 16.
전자감독과장	심선옥	2021. 8. 30.
보 호 사 무 관	한상경	2021. 1. 24.
〃	박지훈	2023. 7. 24.
〃	김용권	2022. 1. 24.
〃	이정희	2023. 1. 16.
소년범죄예방팀장	조연호	2022. 7. 5.
보 호 사 무 관	홍성원	2023. 1. 16.
〃	박유원	2023. 1. 16.
〃	배현정	2023. 7. 24.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노일석	2022. 1. 24.
보 호 사 무 관	정진경	2020. 7. 13.
〃	김태영	2023 9. 3.
인 권 국 장	**승재현**	**2023. 10. 5.**
인권정책과장	박진열	2023. 4. 24.
검 사	최지예	2022. 7. 4.
서 기 관	서혜주	2023. 2. 16.
행 정 사 무 관	이동훈	2021. 1. 25.
검 찰 사 무 관	여혜진	2022. 1. 2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행 정 사 무 관	이정환	2021. 2. 22.
행 정 사 무 관	전현신	2023. 1. 19.
〃	장현주	2023. 5. 30.
인 권 구 조 과 장	강정영	2023. 9. 25.
검 사	박지영	2023. 2. 6.
서 기 관	김홍준	2022. 2. 7.
검 찰 사 무 관	김용석	2023. 1. 30.
행 정 사 무 관	손장혁	2022. 7. 4.
〃	박종범	2023. 2. 16.
인 권 조 사 과 장	이진용	2023. 9. 25.
검 사	최현주	2022. 2. 7.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차현수	2023. 7. 19.
검 찰 사 무 관	박정순	2022. 7. 18.
여 성 아 동 인 권 과 장	정가진	2023. 9. 25.
검 사	서혜선	2022. 2. 22.
검 찰 사 무 관	김도연	2023. 1. 30.
〃	강성우	2023. 7. 19.
국 제 법 무 국 장	**공 석**	
국 제 법 무 정 책 과 장	조아라	2023. 9. 2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승은	2022. 4. 16.
행 정 사 무 관	권호연	2023. 8. 8.
국 제 법 무 지 원 과 장	신동환	2023. 9. 25.
검 사	이성직	2023. 8. 8.
행정사무관(임기제)	김지언	2023. 8. 8.
검찰사무관(임기제)	박다혜	2023. 8. 8.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황현준	2023. 11. 17.
국 제 투 자 분 쟁 과 장	김지언	2023. 11. 1.
검 사	양준열	2023. 2. 6.
서기관(일반임기제)	엄영신	2020. 8. 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박소영	2023. 1. 19.
〃	김영옥	2023. 4. 17.
교 정 본 부 장	**신용해**	**2022. 9. 1.**
교 정 정 책 단 장	최제영	2022. 1. 1.
보 안 정 책 단 장	우희경	2023. 7. 1.
교 정 기 획 과 장	한태환	2023. 1. 30.
서 기 관	이권상	2023. 7. 1.
교 정 관	박지영	2021. 8. 30.
〃	권혁규	2021. 8. 30.
〃	박천성	2022. 1. 24.
〃	승영근	2022. 9. 26.
〃	이민희	2022. 1. 24.
〃	이형직	2022. 9. 26.
직 업 훈 련 과 장	김현우	2022. 9. 26.
교 정 관	박성현	2021. 8. 30.
〃	권익광	2021. 8. 30.
행 정 사 무 관	홍찬주	2023. 2. 16.
사 회 복 귀 과 장	최국진	2023. 1. 30.
교 정 관	정희동	2021. 8. 30.
〃	오원종	2022. 9. 26.
〃	최소연	2023. 6. 12.
복 지 과 장	이희정	2022. 9. 26.
교 정 관	위종진	2022. 1. 24.
행 정 사 무 관	신한헌	2021. 1. 25.
시 설 사 무 관	최명근	2022. 3. 21.
특 별 점 검 팀 장	이도곤	2023. 6. 12.
교 정 관	김상훈	2023. 6. 12.
〃	이동근	2023. 6. 12.
〃	정세락	2023. 6. 12.
보 안 과 장	박삼재	2022. 7. 4.
교 정 관	김유신	2021. 8. 30.
〃	김세정	2022. 9. 26.
〃	문준영	2023. 1. 30.
〃	문우식	2023. 7. 1.
분 류 심 사 과 장	박진홍	2023. 3. 1.
서 기 관	정혜리	2022. 1. 1.
교 정 관	양성필	2023. 1. 30.
의 료 과 장	이민열	2023. 1. 1.
교 정 관	임종오	2021. 1. 25.
〃	최장훈	2020. 9. 21.
심 리 치 료 과 장	정 진	2021. 8. 9.
교 정 관	박경식	2020. 9. 21.
〃	임용희	2022. 9. 26.
행 정 사 무 관	이현진	2022. 1. 13.
마 약 사 범 재 활 팀 장	김진아	2023. 6. 12.
교 정 관	김도균	2023. 6. 12.
〃	정성진	2023. 7.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2021. 7. 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2022. 9. 19.
국적·통합정책단장	공 석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2022. 9. 19.
출입국관리사무관	고동중	2020. 8. 27.
〃	옥효재	2022. 1. 24.
〃	최준호	2023. 2. 8.
〃	홍창기	2023. 7. 3.
〃	임연주	2023. 2. 8.
〃	김명훈	2023. 11. 7.
〃	김민기	2023. 11. 7.
〃	이향숙	2023. 11. 7.
출입국심사과장	이기흠	2023. 8. 17.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영오	2022. 1. 24.
〃	최재원	2022. 7. 20.
체류관리과장	김태형	2023. 2. 8.
출입국관리사무관	황민하	2023. 7. 3.
〃	김재원	2023. 7. 3.
〃	손흥기	2023. 7. 3.
〃	박정석	2023. 4. 11.
이민조사과장	박재완	2021. 8. 9.
출입국관리사무관	임용성	2021. 8. 9.
〃	전동균	2022. 1. 24.
〃	이성호	2022. 3. 21.
〃	김관영	2022. 11. 14.
이민정보과장	이종철	2023. 8. 25.
출입국관리사무관	윤철민	2019. 1. 7.
〃	서제선	2022. 1. 24.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유성오	2023. 8. 30.
전산사무관	이수천	2023. 6. 8.
출입국관리사무관	김경아	2023. 6. 8.
〃	송병희	2023. 6. 8.
외국인정책과장	하용국	2022. 1. 24.
서기관	고영석	2022. 2. 7.
출입국관리사무관	서석주	2018. 7. 23.
〃	김경수	2023. 7. 3.
〃	박지원	2023. 7. 3.
국적과장	장희정	2023. 8. 17.
출입국관리사무관	정금심	2020. 1. 1.
〃	김종승	2022. 7. 20.
〃	배창준	2023. 2. 25.
이민통합과장	이승현	2023. 2. 8.
출입국관리사무관	전강섭	2021. 5. 1.
〃	홍동우	2022. 11. 14.
〃	최민수	2022. 7. 20.
〃	이주호	2023. 7. 3.
난민정책과장	이재형	2023. 8. 17.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청훈	2022. 8. 24.
〃	김정욱	2022. 1. 24.
난민심의과장	이정미	2020. 4. 13.
출입국관리사무관	안재필	2021. 1. 1.
〃	박병건	2023. 2. 28.
부이사관	송소영	2023. 12. 16.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장	고등검사장	김석우	2023. 09. 07.
기획부장직무대리	검사	서정민	2023. 09. 25.
용인분원장	검사	한제희	2023. 09. 25.
교정연수부장	고위공무원	류기현	2023. 07. 01.
연구위원	고등검사장	이성윤	2022. 05. 23.
	검사장	이정현	2022. 05. 23.
	검사장	신성식	2022. 06. 27.
	검사장	고경순	2022. 06. 27.
	검사	류장만	2014. 04. 28.
	일반직고위공무원	민낙기	2023. 11. 27.
	일반직고위공무원	차규근	2023. 04. 17.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재웅	2023. 01. 27.
	이사관	장태성	2023. 01. 26.
	비상임	조혜림	2023. 08. 16.
검사교수	검사	서정민	2023. 09. 25.
		정광일	2022. 07. 04.
		이곤호	2023. 09. 25.
		김지은	2021. 02. 01.
		최유리	2022. 07. 04.
		김승언	2023. 09. 25.
		정보영	2023. 09. 25.
		손명지	2023. 09. 25.
		임두환	2023. 09. 25.
		김정화	2023. 09. 25.
		최근영	2023. 09. 25.
		윤효선	2022. 07. 04.
		장송이	2022. 07. 04.
로스쿨 검사교수	검사	김영신	2022. 07. 04.
		김치훈	2022. 07. 04.
		이윤구	2022. 02. 07.
		김도형	2022. 07. 04.
		황나영	2023. 02. 06.
		김현우	2022. 07. 04.
		홍지예	2023. 08. 21.
기획과장	검사	손지혜	2023. 11. 01.
법무교육과장	검사	김용자	2023. 09. 25.
총무과장	서기관	이천재	2022. 02. 07.
일반연수과장	검찰수사서기관	송재동	2023. 01. 30.
교정연수과장	서기관	김수희	2023. 07. 01.
교정훈련과장	서기관	최상혁	2023. 02. 16.
운영지원과장	검찰수사서기관	유대식	2022. 01. 24.
시설팀장	과학기술서기관	손영조	2023. 05. 20.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찰총장	이원석	2022. 9.16.
차장검사	심우정	2023. 9. 7.
기획조정부장	성상헌	2023. 9. 7.
반부패부장	양석조	2023. 9. 7.
형사부장	박세현	2023. 9. 7.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영빈	2023. 9. 7.
공공수사부장	박기동	2023. 9. 7.
공판송무부장	정유미	2023. 9. 7.
과학수사부장	박현준	2023. 9. 7.
감찰부장	이성희	2022.11. 9.
대변인	박혁수	2023. 9.25.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	2023. 9.25.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	2023. 9.25.
범죄정보2담당관	소정수	2023. 9.25.
형사정책담당관	장준호	2023. 9.25.
인권정책관	윤경원	2023. 9.25.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	2023. 9.25.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	2023. 9.25.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	2023. 9.25.
국제협력담당관	홍용화	2023. 9.25.
정책기획과장	김수홍	2023. 9.25.
정보통신과장	이성범	2023. 9.25.
반부패기획관	엄희준	2023. 9.25.
반부패1과장	김영철	2023. 9.25.
반부패2과장	이승형	2023. 5.23.
반부패3과장	김민아	2023. 9.25.
선임연구관	김향연	2023. 9.25.
형사1과장	이준호	2023. 9.25.
형사2과장	손정숙	2023. 9.25.
형사3과장	김지용	2023. 9.25.
형사4과장	박윤희	2023. 9.25.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병수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마약과장	박경섭	2023. 9.25.
조직범죄과장	이태순	2023. 9.25.
범죄수익환수과장	국 원	2023. 9.25.
공공수사기획관	이희동	2023. 9.25.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찬규	2023. 9.25.
선거수사지원과장	김태훈	2023. 9.25.
노동수사지원과장	이병주	2023. 9.25.
공판1과장	조영희	2023. 9.25.
공판2과장	박향철	2023. 9.25.
법과학분석과장	박진성	2023. 9.25.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	2023. 9.25.
디지털수사과장	이상혁	2023. 9.25.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	2023. 9.25.
감찰1과장	유광렬	2023. 9.25.
감찰2과장	이완희	2023. 9.25.
감찰3과장	장재완	2023. 9.25.
검찰연구관	정현주	2023. 9.25.
〃	박수민	2023. 9.25.
〃	송규영	2023. 2. 6.
〃	고영하	2023. 9.25.
〃	김동율	2023. 9.25.
〃	김성태	2023. 9.25.
〃	이한울	2023. 9.25.
〃	조아라	2023. 9.25.
〃	한대웅	2023. 9.25.
〃	이윤환	2022. 2. 7.
〃	김해밝은	2022. 7. 4.
〃	신영민	2023. 9.25.
〃	양진선	2022. 2. 7.
〃	이상민	2023. 9.25.
〃	전혜현	2022. 2. 7.
〃	진종규	2023. 9.25.
〃	김한울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서소희	2022. 7. 4.
〃	오승환	2023. 9.25.
〃	윤효정	2023. 9.25.
〃	이선화	2023. 9.25.
〃	이희준	2023. 9.25.
〃	김희동	2022. 7. 4.
〃	박찬영	2022. 7. 4.
〃	이종민	2023. 9.25.
〃	이형석	2023. 9.25.
〃	임상규	2023. 9.25.
〃	문재웅	2022. 7. 4.
〃	박중화	2023. 9.25.
〃	임수민	2022. 7. 4.
〃	장지영	2023. 9.25.
사무국장	윤득영	2023. 7. 1.
운영지원과장	정영운	2023. 7.19.
집행과장	조동규	2023. 1.30.
검찰총장실	정연철	2023. 7.19.
범죄정보기획관실	나상필	2021. 8. 9.
반부패기획관실	이재수	2022. 7.18.
디지털수사과	이인수	2020. 2.10.
법과학분석과	최제웅	2023. 7.19.
운영지원과	홍석표	2023. 1.30.
운영지원과	최대진	2023. 7.19.
운영지원과	정복영	2022. 1.24.
공공수사기획관실	김병준	2023. 7.19.
복지후생과장	고영호	2023. 7.19.
감찰제1과	유정호	2023. 7.19.
감찰제2과	조순남	2022. 9.26.
비상안전담당관	박정호	2018. 3.28.
과학기술서기관	원민정	2020. 8.21.
과학기술서기관	김봉우	2021. 8. 9.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주형	2023. 9. 7.

직 위	성명	발령일
차장검사	이종혁	2023. 9. 7.
부장검사	장동철	2023. 9.25.
부장검사	박찬록	2023. 9.25.
부장검사	김윤섭	2023. 9.25.
부장검사	최재민	2023. 9.25.
인권보호관	손우창	2023. 9.25.
검사	하종철	2023. 2. 6.
〃	이승영	2022. 7. 4.
〃	정의식	2022. 7. 4.
〃	이선훈	2021. 7. 2.
〃	이재구	2022. 7. 4.
〃	김 훈	2023. 9.25.
〃	방봉혁	2022. 7. 4.
〃	류원근	2022. 7. 4.
〃	김기준	2022. 7. 4.
〃	김현채	2020. 2. 3.
〃	박규은	2022. 7. 4.
〃	하충헌	2022. 7. 4.
〃	김충한	2022. 7. 4.
〃	유일석	2023. 9.25.
〃	최용석	2022.10.30.
〃	황의수	2023. 9.25.
〃	명점식	2023. 9.25.
〃	박소영	2022. 7. 4.
〃	양요안	2022. 2. 7.
〃	김대룡	2023. 9.25.
〃	박봉희	2023. 9.25.
〃	박윤석	2022. 7. 4.
〃	손석천	2022. 7. 4.
〃	신교임	2021. 7. 2.
〃	이형관	2023. 9.25.
〃	최성완	2023. 9.25.
〃	강수산나	2022. 7. 4.
〃	김남순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	신형식	2023. 9.25.
〃	이병대	2023. 9.25.
〃	전미화	2022. 7. 4.
〃	정진용	2023. 9.25.
〃	한윤경	2023. 9.25.
〃	오세영	2022. 7. 4.
〃	정경진	2022. 7. 4.
〃	김정헌	2022. 7. 4.
〃	위수현	2023. 9.25.
사무국장	윤진웅	2023. 7.19.
총무과장	김동욱	2023. 1.30.
사건과장	이상남	2023. 7.19.
관리과장	정해영	2023. 7.19.
소송사무과장	임상업	2023. 7.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송경호	2022. 5.23.
차장검사	김창진	2023. 9.25.
차장검사	박현철	2023. 9.25.
차장검사	김태은	2023. 9.25.
차장검사	고형곤	2022. 5.23.
인권보호관	김형주	2023. 9.25.
공보담당관	김종우	2023. 9.25.
기획담당관	노선균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백찬하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김정호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류지열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반종욱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부장	김제성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김영태	2022. 2. 7.
중요경제범죄조사2부장	이세진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채수양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김진호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부장	신혜진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부부장	이일규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인권보호부	임일수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김승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손정현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조석규	2023. 9.25.
형사제4부장검사	이유선	2023. 9.25.
형사제5부장검사	이준동	2023. 9.25.
형사제6부장검사	정지은	2023. 9.25.
형사제7부장검사	박건욱	2023. 9.25.
형사제8부장검사	홍완희	2023. 9.25.
형사제9부장검사	김상민	2023. 9.25.
조세범죄주사부장	박현규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장혜영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원신혜	2023. 9.25.
공판제1부장검사	백수진	2023. 9.25.
공판제2부장검사	김해경	2023. 9.25.
공판제3부장검사	임선화	2023. 9.25.
공판제4부장검사	강민정	2023. 2. 6.
공판제5부장검사	유민종	2023. 9.25.
공공수사제1부장검사	김종현	2023. 9.25.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정원두	2023. 9.25.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임삼빈	2023. 9.25.
약식부장검사	한진희	2023. 9.25.
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이지형	2023. 9.25.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 춘	2023. 9.25.
반부패수사제1부장검사	강백신	2023. 9.25.
반부패수사제2부장검사	최재훈	2023. 9.25.
반부패수사제3부장검사	김용식	2023. 9.25.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김연실	2023. 9.25.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	용성진	2023. 9.25.
범죄수익환수부장	이희찬	2023. 9.25.
(부부장)검사	황금천	2023. 9.25.
〃	박지용	2023. 9.25.
〃	조영찬	2022. 7. 4.
〃	박석용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	황수연	2023. 9.25.
〃	이윤희	2022. 7. 4.
〃	정재신	2021. 7. 2.
〃	구민기	2023. 9.25.
〃	김민구	2022. 7. 4.
〃	김상문	2022. 7. 4.
〃	김지숙	2022. 7. 4.
〃	박건영	2023. 9.25.
〃	신기련	2022. 7. 4.
〃	신희영	2022. 7. 4.
〃	이대성	2022. 7. 4.
〃	정일권	2022. 7. 4.
〃	최정민	2023. 9.25.
〃	최혜경	2023. 9.25.
〃	호승진	2022. 7. 4.
〃	고아라	2023. 9.25.
〃	권영필	2023. 9.25.
〃	김경목	2023. 9.25.
〃	김민정	2023. 9.25.
〃	김석훈	2023. 9.25.
〃	김윤정	2023. 9.25.
〃	김준호	2023. 9.25.
〃	김지은	2023. 9.25.
〃	박상희	2023. 9.25.
〃	박성진	2023. 9.25.
〃	방준성	2023. 9.25.
〃	서민석	2023. 9.25.
〃	서정화	2023. 9.25.
〃	소재환	2023. 9.25.
〃	유관모	2023. 9.25.
〃	유지연	2023. 9.25.
〃	윤석환	2023. 9.25.
〃	이건표	2023. 9.25.
〃	이경화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세종	2023. 9.25.
〃	이정훈	2023. 9.25.
〃	이주현	2023. 9.25.
〃	임풍성	2023. 9.25.
〃	정우준	2023. 9.25.
〃	조수영	2023. 9.25.
〃	차호동	2023. 9.25.
〃	한지혁	2023. 9.25.
〃	허용준	2023. 9.25.
〃	홍상철	2023. 9.25.
〃	황윤재	2023. 9.25.
〃	황진아	2023. 9.25.
검 사	구진미	2022. 2. 7.
〃	김 건	2023. 2. 6.
〃	김민정	2022. 2. 7.
〃	김희연	2022. 2. 7.
〃	박일규	2021. 2. 1.
〃	박현규	2022. 2. 7.
〃	선현숙	2022. 2. 7.
〃	오상연	2023. 2. 6.
〃	오지석	2023. 2. 6.
〃	오진세	2021. 2. 1.
〃	유병국	2023. 2. 6.
〃	이정민	2023. 2. 6.
〃	임아랑	2022. 2. 7.
〃	정정욱	2022. 7. 4.
〃	조미경	2021. 2. 1.
〃	조재철	2021. 2. 1.
〃	최상훈	2023. 2. 6.
〃	최수지	2021. 2. 1.
〃	최윤희	2023. 2. 6.
〃	최하연	2023. 2. 6.
〃	허정은	2021. 2. 1.
〃	황성아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황영섭	2020. 2. 3.
〃	권경호	2022. 2. 7.
〃	권영주	2022. 2. 7.
〃	김동규	2022. 2. 7.
〃	김민정	2020. 2. 3.
〃	김성현	2021. 2. 1.
〃	김영식	2022. 2. 7.
〃	김지혜	2023. 2. 6.
〃	김태희	2023. 2. 6.
〃	김형섭	2021. 2. 1.
〃	문정신	2021. 2. 1.
〃	박경화	2022. 2. 7.
〃	박재훈	2021. 2. 1.
〃	서성광	2021. 2. 1.
〃	신헌섭	2023. 2. 6.
〃	오흥세	2023. 2. 6.
〃	유제민	2023. 2. 6.
〃	이건웅	2023. 2. 6.
〃	이주현	2022. 2. 7.
〃	이주현	2021. 8. 2.
〃	조종민	2023. 2. 6.
〃	최명수	2022. 2. 7.
〃	강현욱	2022. 2. 7.
〃	김춘성	2022. 2. 7.
〃	김태호	2022. 2. 7.
〃	박금빛	2021. 2. 1.
〃	은종욱	2022. 2. 7.
〃	이라영	2023. 2. 6.
〃	이소연	2018. 2. 5.
〃	이종원	2021. 2. 1.
〃	이주연	2023. 2. 6.
〃	이주형	2023. 2. 6.
〃	이한종	2021. 2. 1.
〃	정정화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조범진	2021. 2. 1.
〃	조현웅	2023. 2. 6.
〃	허 정	2022. 2. 7.
〃	허태훈	2022. 2. 7.
〃	황재동	2022. 2. 7.
〃	황호석	2022. 2. 7.
〃	구승기	2023. 2. 6.
〃	김경완	2021. 2. 1.
〃	김대철	2022. 2. 7.
〃	김영석	2021. 2. 1.
〃	남재현	2022. 2. 7.
〃	남지민	2023. 2. 6.
〃	박기웅	2022. 2. 7.
〃	서강원	2022. 7. 4.
〃	손정아	2023. 2. 6.
〃	유재근	2021. 2. 1.
〃	이호재	2021. 2. 1.
〃	한은지	2023. 9.25.
〃	강정욱	2023. 2. 6.
〃	김수겸	2021. 2. 1.
〃	김수길	2022. 2. 7.
〃	송민주	2022. 2. 7.
〃	신기창	2022. 2. 7.
〃	윤기형	2023. 2. 6.
〃	이재원	2023. 2. 6.
〃	임찬미	2022. 2. 7.
〃	임현철	2022. 2. 7.
〃	장재정	2023. 2. 6.
〃	조재학	2023. 2. 6.
〃	김동현	2021. 2. 1.
〃	김세현	2022. 2. 7.
〃	김형철	2022. 2. 7.
〃	민은식	2022. 2. 7.
〃	이용정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준석	2023. 2. 6.
〃	정거장	2021. 2. 1.
〃	최지은	2023. 2. 6.
〃	권영우	2023. 2. 6.
〃	문태권	2022. 2. 7.
〃	박병인	2021. 2. 1.
〃	박성현	2022. 2. 7.
〃	박세혁	2023. 2. 6.
〃	성진영	2023. 2. 6.
〃	송성광	2022. 2. 7.
〃	이동훈	2021. 2. 1.
〃	이정규	2022. 2. 7.
〃	이정우	2023. 2. 6.
〃	이종민	2023. 2. 6.
〃	임성환	2023. 2. 6.
〃	조지현	2022. 2. 7.
〃	최대호	2023. 2. 6.
〃	최준환	2021. 2. 1.
〃	허윤행	2022. 2. 7.
〃	고기철	2022. 2. 7.
〃	고재린	2021. 2. 1.
〃	김아연	2022. 2. 7.
〃	김주혜	2021. 2. 1.
〃	김현경	2022. 2. 7.
〃	송보형	2022. 2. 7.
〃	양재헌	2023. 2. 6.
〃	원세정	2021. 2. 1.
〃	진아름	2023. 2. 6.
〃	김승미	2023. 2. 6.
〃	나혜윤	2023. 9.25.
〃	정기훈	2023. 2. 6.
〃	심기하	2023. 9.25.
〃	우세호	2023. 2. 6.
〃	김다락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현창	2023. 2. 6.
〃	박가희	2023. 2. 6.
〃	김도희	2023. 2. 6.
〃	김범준	2023. 2. 6.
〃	박혜진	2023. 2. 6.
〃	김기왕	2023. 2. 6.
〃	임동민	2022.11. 1.
〃	김민수	2023.11. 1.
〃	경기수	2022. 2. 7.
〃	윤재희	2022. 2. 7.
〃	이종욱	2022.11. 1.
〃	허은지	2022.11. 1.
〃	강우영	2023.11. 1.
〃	류지연	2023.11. 1.
〃	오성원	2023.11. 1.
사무국장	오만욱	2023. 7.19.
총무과장	최수종	2023. 7.19.
사건과장	조경익	2023. 7.19.
집행제1과장		
집행제2과장	이택근	2023. 7.19.
기록관리과장	허철안	2022. 7.18.
형사증거과장	서상국	2023. 1.30.
피해자지원과장	이승희	2023. 7.19.
공공수사지원과장	강순석	2022. 7.18.
수사제1과장	배은호	2023. 7.19.
수사정보과장	이철희	2023. 7.19.
수사제2과장	김상우	2023. 7.19.
수사지원과장	김문규	2023. 7.19.
조사과장	장영표	2023. 7.19.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용권	2023. 1.30.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2023. 1.30.
공판과장	김재영	2023. 1.30.
검사직무대리	박 준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최창환	2023. 1.30.

직 위	성명	발령일
검사직무대리	이창균	2023. 1.30.
검사직무대리	정구환	2023. 7.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황병주	2023. 9. 7.
차장검사	성상욱	2023. 9.25.
인권보호관	이만흠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고병민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정지영	2023. 9.25.
〃	전계광	2022. 7. 4.
〃	공태구	2023. 2. 6.
〃	김원학	2022. 7. 4.
〃	변수량	2022. 7. 4.
〃	이영규	2023. 9.25.
형사제1부장	김영남	2023. 9.25.
형사제2부장	박명희	2023. 9.25.
형사제3부장	김희영	2023. 9.25.
형사제4부장	김승걸	2023. 2. 6.
형사제5부장	안창주	2023. 9.25.
형사제6부장	최순호	2023. 9.25.
사이버범죄수사부장	김영미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2023. 9.25.
공판부장	박대환	2023. 9.25.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장	김수민	2023. 9.25.
(부부장)검사	서경원	2023. 9.25.
〃	이승희	2023. 9.25.
〃	김한민	2023. 9.25.
〃	신은식	2023. 9.25.
〃	유종건	2023. 9.25.
〃	윤효선	2023. 9.25.
검사	김형아	2023. 2. 6.
〃	송명진	2022. 2. 7.
〃	이선기	2021. 2. 1.
〃	하일수	2021. 2. 1.
〃	이승현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윤식	2022. 2. 7.
〃	김은정	2022. 2. 7.
〃	서지원	2022. 2. 7.
〃	이수행	2022. 2. 7.
〃	이승우	2021. 2. 1.
〃	김벼리	2023. 2. 6.
〃	김민아	2023. 9.25.
〃	김현곤	2022. 2. 7.
〃	송가형	2020. 2. 3.
〃	유주현	2021. 8. 2.
〃	홍동기	2023. 2. 6.
〃	박종호	2023. 2. 6.
〃	김정선	2023. 2. 6.
〃	원선아	2023. 2. 6.
〃	송현탁	2022. 2. 7.
〃	조영주	2022. 2. 7.
〃	조재익	2022. 2. 7.
〃	김상순	2023. 2. 6.
〃	박형건	2023. 2. 6.
〃	양서원	2023. 2. 6.
〃	최혜민	2023. 2. 6.
〃	김신혜	2023. 2. 6.
〃	한두현	2023. 2. 6.
〃	김지혜	2022. 2. 7.
〃	김마로	2022. 2. 7.
〃	서민욱	2022. 2. 7.
〃	신용섭	2022. 2. 7.
〃	신종화	2023. 2. 6.
〃	김기웅	2022. 4. 1.
〃	민경준	2022.11. 1.
〃	이정원	2023.11. 1.
〃	이현정	2022. 2. 7.
〃	김언영	2022.11. 1.
〃	이상원	2022.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예림	2022.11. 1.
〃	이민정	2023.11. 1.
〃	조영선	2023.11. 1.
〃	하다현	2023.11. 1.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정국	2023. 7.19.
사건과장	양기용	2023. 7.19.
집행과장	소상은	2022. 7.18.
공판과장	박민규	2022. 7.18.
조사과장		
수사과장	조광훈	2023. 7.19.
검사직무대리	홍지항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유철	2023. 9. 7.
제1차장검사	박성민	2023. 9.25.
제2차장검사	배문기	2023. 9.25.
인권보호관	황우진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변창범	2023. 9.25.
〃	김영익	2023. 9.25.
〃	박재영	2022. 7. 4.
〃	송연규	2023. 9.25.
〃	도상범	2023. 9.25.
〃	윤철민	2022. 7. 4.
〃	김진남	2023. 9.25.
인권보호부부장	강석철	2023. 9.25.
형사1부장검사	김형원	2023. 9.25.
형사2부장검사	강선주	2023. 9.25.
형사3부장검사	서원익	2023. 9.25.
형사4부장검사	김정국	2023. 9.25.
형사5부장검사	허지훈	2023. 9.25.
형사6부장검사	이재만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재아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공판부장	이재연	2023. 9.25.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하동우	2023. 9.25.
금융조사1부장	권찬혁	2023. 9.25.
금융조사2부장	박건영	2023. 9.25.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이정렬	2023. 9.25.
(부부장)검사	손상욱	2023. 9.25.
〃	김용제	2023. 9.25.
〃	한연규	2022. 7. 4.
〃	김태겸	2023. 9.25.
〃	신승호	2023. 9.25.
〃	윤 경	2023. 9.25.
〃	장송이	2023. 9.25.
〃	홍희영	2023. 9.25.
검사	김미지	2023. 2. 6.
〃	김지아	2023. 2. 6.
〃	류경환	2023. 2. 6.
〃	이환우	2022. 2. 7.
〃	정효민	2023. 2. 6.
〃	최재현	2021. 2. 1.
〃	고명아	2022. 2. 7.
〃	문지연	2021. 2. 1.
〃	이현석	2023. 2. 6.
〃	함재원	2023. 2. 6.
〃	김재우	2020. 2. 3.
〃	김지훈	2021. 2. 1.
〃	김태엽	2023. 2. 6.
〃	김희송	2023. 9.25.
〃	신지나	2022. 2. 7.
〃	이부용	2022. 2. 7.
〃	차동호	2021. 2. 1.
〃	금명원	2020. 2. 3.
〃	남경우	2021. 2. 1.
〃	허세진	2020. 2. 3.
〃	황진선	2020. 2. 3.

직 위	성명	발령일
〃	나상돈	2021. 2. 1.
〃	박건태	2023. 2. 6.
〃	반영기	2022. 2. 7.
〃	이은우	2021. 8. 2.
〃	임성수	2023. 2. 6.
〃	권인표	2023. 2. 6.
〃	박규남	2021. 8. 2.
〃	조윤경	2022. 2. 7.
〃	현승록	2022. 2. 7.
〃	박기태	2023. 2. 6.
〃	조혜민	2020. 2. 3.
〃	최영준	2022. 2. 7.
〃	이선미	2021. 2. 1.
〃	정종헌	2021. 2. 1.
〃	조 혁	2022. 2. 7.
〃	김예은	2021. 2. 1.
〃	류수헌	2022. 2. 7.
〃	박윤상	2023. 2. 6.
〃	신의호	2022. 2. 7.
〃	오정헌	2022. 2. 7.
〃	최재호	2023. 2. 6.
〃	허성호	2023. 2. 6.
〃	김원재	2022. 2. 7.
〃	탁광진	2023. 2. 6.
〃	임지은	2022. 2. 7.
〃	김대훈	2022.11. 1.
〃	이세희	2023.11. 1.
〃	강윤제	2022. 2. 7.
〃	이경민	2022. 2. 7.
〃	전해창	2022. 2. 7.
〃	송원우	2022.11. 1.
〃	한우현	2022.11. 1.
〃	김규영	2023.11. 1.
〃	박소영	2023.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태현	2023.11. 1.
〃	신서연	2023.11. 1.
〃	정은라	2023.11. 1.
사무국장	권영준	2023. 1. 1.
총무과장	이 헌	2022. 8.18.
사건과장	장지섭	2023. 7.19.
집행과장	이정용	2023. 1.30.
조사과장	조병웅	2022. 9.13.
수사과장	김흥철	2023. 1.30.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윤재남	2023. 7.19.
공판과장	강중원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송 희	2023. 1.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진수	2023. 9. 7.
차장검사	단성한	2023. 9.25.
인권보호관	박광현	2023.10.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권도욱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최영의	2022. 7. 4.
〃	김명수	2023. 9.25.
〃	박혜경	2023. 9.25.
〃	최성국	2022. 7. 4.
〃	유현정	2023. 9.25.
형사1부장검사	장윤영	2023. 9.25.
형사2부장검사	김재혁	2023. 9.25.
형사3부장검사	신금재	2023. 9.25.
형사4부장검사	송정은	2023. 9.25.
형사5부장검사	천대원	2023. 9.25.
조세범죄수사부장	용태호	2023. 9.25.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민경호	2023. 9.25.
공판부장	박순애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2023. 9.25.
(부부장)검사	이성식	2023. 9.25.
〃	정지영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	단정려	2023. 9.25.
〃	이정호	2023. 9.25.
검 사	김동진	2023. 2. 6.
〃	김미혜	2021. 2. 1.
〃	김현우	2023. 2. 6.
〃	양재영	2022. 2. 7.
〃	우옥영	2022. 2. 7.
〃	이경선	2023. 2. 6.
〃	정선철	2023. 2. 6.
〃	조정복	2021. 2. 1.
〃	최은영	2022. 2. 7.
〃	오재준	2022. 2. 7.
〃	이지륜	2023. 2. 6.
〃	김승곤	2022. 2. 7.
〃	나민영	2023. 9.25.
〃	이성화	2022. 2. 7.
〃	이재인	2023. 2. 6.
〃	이한별	2023. 2. 6.
〃	오흥식	2023. 2. 6.
〃	이안나	2023. 2. 6.
〃	정다은	2023. 2. 6.
〃	정일두	2023. 2. 6.
〃	이채훈	2022. 2. 7.
〃	민경재	2023. 2. 6.
〃	박동준	2022. 2. 7.
〃	박원영	2021. 2. 1.
〃	정인혜	2023. 2. 6.
〃	강민욱	2023. 2. 6.
〃	윤지윤	2021. 2. 1.
〃	김용선	2022. 2. 7.
〃	김가연	2022. 2. 7.
〃	조승우	2022. 2. 7.
〃	설제민	2023. 2. 6.
〃	홍광범	2022. 4.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윤상운	2022.11. 1.
〃	김상호	2023.11. 1.
〃	박달재	2022. 2. 7.
〃	심지원	2022. 2. 7.
〃	유제일	2022. 2. 7.
〃	서형우	2022.11. 1.
〃	양혜민	2022.11. 1.
〃	박세연	2023.11. 1.
〃	조상우	2023.11. 1.
사무국장	김승현	2023. 7.19.
총무과장		
사건과장	강재성	2023. 1.30.
집행과장	박승주	2023. 7.19.
조사과장	양근석	2023. 1.30.
수사과장	박종길	2023. 7.19.
공판과장	김기영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신현태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진동	2023. 9. 7.
차장검사	유태석	2023. 9.25.
인권보호관	유상민	2023. 2. 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성윤	2022. 2. 7.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서종혁	2022. 7. 4.
〃	배창대	2022. 7. 4.
〃	황성연	2022. 7. 4.
〃	조남철	2023. 9.25.
형사1부장검사	박성민	2023. 9.25.
형사2부장검사	허성환	2023. 9.25.
형사3부장검사	권내건	2023. 9.25.
형사4부장검사	유효제	2023. 9.25.
형사5부장검사	김정훈	2023. 9.25.
공판부장	정영주	2023. 9.25.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송명섭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2023. 9.25.
(부부장)검사	신재홍	2023. 9.25.
〃	이경민	2023. 9.25.
〃	이주훈	2023. 9.25.
〃	최유리	2023. 9.25.
검사	김연주	2020. 2. 3.
〃	이수현	2023. 2. 6.
〃	진경섭	2021. 2. 1.
〃	조동훈	2022. 2. 7.
〃	김나리	2022. 2. 7.
〃	김은혜	2020. 2. 3.
〃	이선미	2023. 2. 6.
〃	장준혁	2022. 2. 7.
〃	박경남	2022. 2. 7.
〃	최종경	2019. 2.11.
〃	박철량	2022. 2. 7.
〃	정윤정	2021. 2. 1.
〃	장지철	2022. 2. 7.
〃	주영선	2023. 2. 6.
〃	하언욱	2022. 2. 7.
〃	김지수	2022. 2. 7.
〃	장기영	2022. 2. 7.
〃	전유경	2022. 2. 7.
〃	김동민	2022. 2. 7.
〃	오광일	2022. 2. 7.
〃	유승진	2022. 2. 7.
〃	최예원	2022. 2. 7.
〃	하보람	2022. 2. 7.
〃	홍등불	2022. 2. 7.
〃	김동휘	2023. 2. 6.
〃	김규완	2023. 2. 6.
〃	오슬기	2021. 2. 1.
〃	김경회	2022. 2. 7.
〃	이아람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허강녕	2022. 7. 4.
〃	박동진	2023. 2. 6.
〃	왕규호	2022. 2. 7.
〃	조성운	2022.11. 1.
〃	김찬구	2023.11. 1.
〃	구민하	2022. 2. 7.
〃	류미래	2022. 2. 7.
〃	박성원	2022. 2. 7.
〃	홍준기	2022. 2. 7.
〃	변민후	2022.11. 1.
〃	박주명	2023.11. 1.
사무국장	강갑진	2023. 1.30.
총무과장	최성규	2022. 7.18.
사건과장	이재규	2023. 7.19.
집행과장	이동영	2023. 7.19.
조사과장	신현미	2023. 1.30.
수사과장		
공판과장	김용덕	2022. 7.18
검사직무대리	곽재문	2023. 1.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2023. 9. 7.
차장검사	윤병준	2023. 9.25.
인권보호관	김준섭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태광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종철	2023. 9.25.
〃	이성일	2023. 9.25.
〃	양성필	2022. 7. 4.
〃	이동원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일권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윤동환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강호준	2023. 9.25.
형사제4부장검사	이상훈	2023. 9.25.
환경범죄조사부	이호석	2023. 9.25.
공판송무부장	고은별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부부장)검사	김영준	2023. 9.25.
〃	강용묵	2023. 9.25.
〃	반 지	2023. 9.25.
〃	이기영	2023. 9.25.
검사	이지혜	2020. 2. 3.
〃	박수정	2022. 2. 7.
〃	안재욱	2022. 2. 7.
〃	이승철	2022. 2. 7.
〃	황수희	2019. 2.11.
〃	문민영	2021. 2. 1.
〃	박광호	2023. 2. 6.
〃	박진섭	2023. 2. 6.
〃	김수지	2023. 2. 6.
〃	박상훈	2023. 2. 6.
〃	석동현	2020. 2. 3.
〃	이병래	2023. 2. 6.
〃	이승훈	2023. 2. 6.
〃	김해슬	2023. 9.25.
〃	이정훈	2023. 2. 6.
〃	이재원	2023. 2. 6.
〃	신명은	2022. 2. 7.
〃	강기보	2023. 2. 6.
〃	유지혜	2022. 2. 7.
〃	홍성표	2022. 2. 7.
〃	김영중	2022.11. 1.
〃	신종식	2022. 2. 7.
〃	김혜원	2022. 2. 7.
〃	박진우	2022. 2. 7.
〃	이현철	2022. 2. 7.
〃	김동현	2022.11. 1.
〃	나효정	2022.11. 1.
〃	고석균	2022.11. 1.
〃	김채은	2022.11. 1.
〃	원충연	2022.11. 1.
〃	이문경	2023.11. 1.
사무국장		
총무과장	김태곤	2023. 1.30.
사건과장	조 호	2023. 7.19.
집행과장	김윤애	2023. 7.19.
수사과장	윤성훈	2023. 7.19.
공판송무과장	정한석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이재종	2023. 7.19.
(고양지청)		
지청장	허 정	2023. 9.25.
차장검사	곽영환	2023. 9.25.
인권보호관	김상현	2023. 9.25.
형사제1부장	김상균	2023. 9.25.
형사제2부장	김재남	2023. 9.25.
형사제3부장	조은수	2023. 9.25.
공판부장	임연진	2023. 9.25.
(부부장)검사	정미란	2023. 9.25.
〃	김소현	2023. 9.25.
검사	임지연	2020. 2. 3.
〃	황나영	2023. 2. 6.
〃	김미경	2023. 2. 6.
〃	김미영	2021. 2. 1.
〃	김대근	2023. 2. 6.
〃	심재신	2023. 2. 6.
〃	이소연	2019. 2.11.
〃	홍해숙	2023. 2. 6.
〃	유경준	2023. 2. 6.
〃	김정현	2021. 2. 1.
〃	정지원	2020. 2. 3.
〃	성용진	2023. 2. 6.
〃	김지혜	2022. 2. 7.
〃	김수현	2023. 2. 6.
〃	김현중	2022. 2. 7.
〃	허성준	2022.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임한결	2023.11. 1.
〃	김명섭	2022. 2. 7.
〃	김수영	2022. 2. 7.
〃	민애리	2022. 2. 7.
〃	김보라	2022.11. 1.
〃	송민정	2022.11. 1.
〃	이루다	2023.11. 1.
〃	정태륜	2023.11. 1.
〃	조은별	2023.11. 1.
사무국장	박치활	2023. 7.19.
총무과장	설우용	2022. 7.18.
사건과장	고건창	2023. 1.30.
집행과장	김명희	2023. 1.30.
수사과장	박찬근	2022. 7.18.
(남양주지청)		
지청장	백재명	2023. 2. 6.
형사제1부장	유정현	2023. 9.25.
형사제2부장	남대주	2023. 9.25.
(부부장)검사	송인호	2022. 7. 4.
검사	오자연	2022. 3. 1.
〃	강민정	2023. 2. 6.
〃	심동선	2023. 2. 6.
〃	김재현	2022. 3. 1.
〃	최윤미	2022. 3. 1.
〃	박상우	2023. 2. 6.
〃	민경찬	2022. 3. 1.
〃	안수진	2022. 3. 1.
〃	이가희	2022. 3. 1.
〃	이강천	2022. 3. 1.
〃	전진표	2022. 3. 1.
〃	이리원	2023. 2. 6.
사무과장	임종철	2023. 7.19.
집행과장	이상철	2022. 3. 1.
수사과장	강화구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송 강	2023. 9. 7.
제1차장검사	김도완	2023. 9.25.
제2차장검사	박주성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대	2021. 7. 2.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영준	2023. 9.25.
〃	윤원상	2022. 7. 4.
〃	장성철	2022. 7. 4.
〃	이영준	2022. 7. 4.
〃	정지영	2023. 9.25.
인권보호부장	김은미	2023. 9.25.
형사1부장검사	이정배	2023. 9.25.
형사2부장검사	최재준	2023. 9.25.
형사3부장검사	남계식	2023. 9.25.
형사4부장검사	이정민	2023. 9.25.
형사5부장검사	김은하	2023. 9.25.
형사6부장검사	엄재상	2023. 9.25.
국제범죄수사부장	정유선	2023.11. 1.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2023. 9.25.
강력범죄수사부장	이영창	2023. 9.25.
공판송무1부장	박혜란	2023. 9.25.
공판송무2부장	김재성	2023. 9.25.
(부부장)검사	박준영	2022. 2. 2.
〃	신태훈	2023. 2. 6.
〃	김준선	2022. 7. 4.
〃	김형걸	2023. 9.25.
〃	김호경	2023. 9.25.
〃	김정은	2023. 9.25.
〃	김진용	2023. 9.25.
〃	윤인식	2023. 9.25.
검사	임지수	2023. 2. 6.
〃	임홍주	2022. 2. 7.
〃	김민정	2022. 2. 7.
〃	송민하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영진	2020. 2. 3.
〃	최한얼	2023. 2. 6.
〃	홍성기	2022. 2. 7.
〃	오보미	2022. 2. 7.
〃	배관성	2023. 2. 6.
〃	최진혁	2023. 2. 6.
〃	김동직	2022. 2. 7.
〃	김영준	2020. 2. 3.
〃	김한준	2023. 2. 6.
〃	고병무	2023. 2. 6.
〃	송윤상	2023. 2. 6.
〃	채필규	2020. 2. 3.
〃	김남엽	2021. 2. 1.
〃	김지웅	2021. 2. 1.
〃	김지혜	2022. 2. 7.
〃	장성훈	2021. 2. 1.
〃	정성욱	2021. 2. 1.
〃	홍석원	2022. 2. 7.
〃	이기명	2021. 2. 1.
〃	최진우	2022. 2. 7.
〃	김민희	2021. 2. 1.
〃	도용민	2021. 2. 1.
〃	안동찬	2022. 2. 7.
〃	윤장훈	2022. 2. 7.
〃	박상환	2023. 2. 6.
〃	박영우	2020. 2. 3.
〃	이영준	2023. 2. 6.
〃	최세윤	2021. 2. 1.
〃	최희선	2022. 2. 7.
〃	김병희	2023. 2. 6.
〃	김봉수	2023. 2. 6.
〃	김진규	2023. 2. 6.
〃	박종환	2023. 2. 6.
〃	김종민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나상현	2021. 2. 1.
〃	류정인	2023. 2. 6.
〃	오정은	2021. 2. 1.
〃	이혜진	2023. 2. 6.
〃	황종현	2022. 2. 7.
〃	김문주	2023. 2. 6.
〃	양현세	2023. 2. 6.
〃	이로운	2022. 2. 7.
〃	황성규	2023. 2. 6.
〃	김태헌	2023. 2. 6.
〃	조운형	2023. 2. 6.
〃	박연주	2022. 2. 7.
〃	한 항	2022.11. 1.
〃	김현균	2023. 2. 6.
〃	도준엽	2023.11. 1.
〃	서원준	2022. 2. 7.
〃	신승재	2022. 2. 7.
〃	전다솜	2022. 2. 7.
〃	최소영	2022. 2. 7.
〃	남상지	2022.11. 1.
〃	박수진	2022.11. 1.
〃	이형민	2022.11. 1.
〃	조현희	2022.11. 1.
〃	한태희	2022.11. 1.
〃	변영지	2023.11. 1.
〃	손영조	2023.11. 1.
〃	이현수	2023.11. 1.
〃	이혜진	2023.11. 1.
〃	최윤경	2023.11. 1.
사무국장	정연익	2023. 1.30.
총무과장		
사건과장	김용욱	2023. 7.19.
집행과장	임용희	2023. 1.30.
조사과장	장문기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수 사 과 장	정 기	2023. 1.30.
마 약 수 사 과 장	김 태 현	2023. 1.30.
공 판 송 무 과 장	신 광 섭	2022. 7.18.
검 사 직 무 대 리		
검 사 직 무 대 리	백 충 영	2022. 7.18.
검 사 직 무 대 리		
(부 천 지 청)		
지 청 장	차 순 길	2023. 9.25.
차 장 검 사	권 유 식	2023. 9.25.
인 권 보 호 관	장 소 영	2023. 9.25.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오 기 찬	2023. 9.25.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이 선 녀	2023. 9.25.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박 상 수	2023. 9.25.
공 판 부 장	이 유 현	2023. 9.25.
(부 부 장) 검 사	정 수 정	2023. 9.25.
검 사	강 현 정	2023. 2. 6.
〃	박 수	2022. 2. 7.
〃	이 지 은	2019. 2.11.
〃	신 비 나	2022. 2. 7.
〃	장 태 원	2023. 2. 6.
〃	고 현 욱	2022. 2. 7.
〃	유 희 경	2020. 2. 3.
〃	조 한 이	2021. 2. 1.
〃	정 다 미	2022. 2. 7.
〃	신 가 현	2022. 2. 7.
〃	조 윤 정	2022. 2. 7.
〃	장 우 진	2022. 2. 7.
〃	정 영 지	2021. 2. 1.
〃	조 예 림	2023. 2. 6.
〃	김 혜 리	2023. 2. 6.
〃	조 경 민	2023. 2. 6.
〃	이 인 원	2022. 2. 7.
〃	정 재 인	2023. 2. 6.
〃	김 효 진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임 송	2022. 2. 7.
〃	권 다 아	2022.11. 1.
〃	전 승 조	2022.11. 1.
〃	지 수 민	2022.11. 1.
〃	최 윤 정	2022.11. 1.
〃	김 유 진	2023.11. 1.
〃	이 준 호	2023.11. 1.
〃	정 웅 택	2023.11. 1.
사 무 국 장	김 근 모	2023. 7.19.
총 무 과 장	김 정 호	2023. 1.30.
사 건 과 장	이 인 용	2023. 7.19.
집 행 과 장	최 정 인	2023. 7.19.
수 사 과 장	이 영 수	2023. 1.30.
(수 원 고 등 검 찰 청)		
검 사 장		
차 장 검 사	변 필 건	2023. 9. 7.
검 사	오 규 진	2022. 7. 4.
〃	강 길 주	2023. 9.25.
〃	김 용 승	2022. 7. 4.
〃	이 수 철	2022. 7. 4.
〃	이 주 일	2023. 9.25.
〃	임 용 규	2023. 9.25.
〃	이 현 철	2022. 7. 4.
〃	배 용 찬	2022. 7. 4.
〃	정 희 원	2022. 7. 4.
〃	강 형 민	2022. 7. 4.
〃	배 성 효	2022. 2. 7.
〃	이 계 한	2023. 9.25.
〃	정 용 환	2023. 9.25.
사 무 국 장		
총 무 과 장	이 은 상	2023. 7.19.
사 건 과 장	이 종 철	2023. 1.30.
(수 원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신 봉 수	2023. 9. 7.

직 위	성명	발령일
제 1 차 장 검 사	강성용	2023. 9.25.
제 2 차 장 검 시	이정섭	2023. 9.25.
인 권 보 호 관	김종호	2023. 9.25.
인 권 보 호 부 부 장	추혜윤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용민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찬일	2022. 7. 4.
〃	강남수	2023. 9.25.
〃	김은심	2023. 9.25.
〃	하신욱	2021. 7. 2.
〃	이주영	2022. 7. 4.
형 사 제 1 부 장	오종렬	2023. 9.25.
형 사 제 2 부 장	유옥근	2023. 9.25.
형 사 제 3 부 장	정화준	2023. 9.25.
형 사 제 4 부 장	홍승현	2023. 9.25.
형 사 제 5 부 장	이정화	2023. 9.25.
형 사 제 6 부 장	서현욱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2023. 2. 6.
공 공 수 사 부 장	김동희	2023. 9.25.
공 판 부 장	남수연	2023. 9.25.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 사 부 장	안동건	2023. 9.25.
(부 부 장) 검 사	윤재슬	2022. 7. 4.
〃	나의엽	2022. 7. 4.
〃	박성민	2023. 9.25.
〃	정광수	2023. 9.25.
〃	안광현	2023. 9.25.
〃	장은희	2023. 2. 6.
〃	송민경	2022. 7. 4.
〃	김승우	2023. 9.25.
〃	박상용	2023. 9.25.
〃	엄영욱	2023. 9.25.
〃	전세정	2023. 9.25.
검 사	김성훈	2021. 2. 1.
〃	김지은	2022. 2. 7.
〃	문승태	2023. 2. 6.
〃	서혜선	2019. 2.11.
〃	신현만	2023. 2. 6.
〃	정우성	2023. 2. 6.
〃	한강일	2022. 2. 7.
〃	고유진	2022. 2. 7.
〃	설수현	2022. 2. 7.
〃	이상미	2022. 2. 7.
〃	전효곤	2023. 2. 6.
〃	최성규	2022. 2. 7.
〃	김정연	2023. 2. 6.
〃	김준엽	2023. 2. 6.
〃	신병우	2019. 2.11.
〃	이선영	2023. 2. 6.
〃	정종원	2023. 9.25.
〃	조도준	2022. 7. 4.
〃	박선영	2023. 2. 6.
〃	김보경	2021. 2. 1.
〃	안지영	2023. 2. 6.
〃	오신환	2022. 2. 7.
〃	박영수	2022. 2. 7.
〃	이경환	2023. 2. 6.
〃	장영롱	2022. 2. 7.
〃	전종택	2021. 2. 1.
〃	김자은	2023. 9.25.
〃	박성현	2021. 2. 1.
〃	손재용	2022. 2. 7.
〃	안화연	2021. 2. 1.
〃	김유완	2022. 2. 7.
〃	이동우	2021. 2. 1.
〃	이수영	2022. 2. 7.
〃	전우진	2021. 2. 1.
〃	고두성	2022. 2. 7.
〃	김지혜	2023. 2. 6.
〃	김찬우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노영진	2022. 2. 7.
〃	서민우	2023. 2. 6.
〃	하용만	2023. 2. 6.
〃	김용휘	2023. 2. 6.
〃	김인선	2020. 2. 3.
〃	윤오연	2020. 2. 3.
〃	최선희	2022. 2. 7.
〃	황준성	2023. 2. 6.
〃	최지윤	2023. 2. 6.
〃	왕은진	2023. 2. 6.
〃	이영주	2023. 2. 6.
〃	김태영	2022. 2. 7.
〃	안덕중	2022. 2. 7.
〃	가혜리	2023. 2. 6.
〃	김병진	2023. 2. 6.
〃	신재욱	2022. 2. 7.
〃	정은경	2022. 2. 7.
〃	홍철의	2023. 2. 6.
〃	김홍도	2023. 2. 6.
〃	김대영	2022.11. 1.
〃	송태환	2023.11. 1.
〃	김동영	2022. 2. 7.
〃	김민정	2022. 2. 7.
〃	남정하	2022. 2. 7.
〃	채용욱	2022. 2. 7.
〃	정수호	2022.11. 1.
〃	조은정	2022.11. 1.
〃	최예인	2022.11. 1.
〃	구자빈	2023.11. 1.
〃	김혜인	2023.11. 1.
〃	박건우	2023.11. 1.
〃	심성현	2023.11. 1.
〃	조소현	2023.11. 1.
사무국장	장병인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박영범	2022. 1.24.
사건과장	이용건	2023. 7.19.
집행과장	임상현	2023. 7.19.
조사과장	안태성	2023. 7.19.
수사과장	장정호	2022. 7.18.
공판과장	김상훈	2023. 7.19.
검사직무대리	황성철	2022. 7.18.
검사직무대리	장성자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성남지청)		
지청장	전무곤	2023. 9.25.
차장검사	박규형	2023. 9.25.
인권보호관	최명규	2023. 9.25.
형사제1부장	허 훈	2023. 9.25.
형사제2부장	황정임	2023. 9.25.
형사제3부장	하준호	2023. 9.25.
공판부장	여경진	2023. 9.25.
(부부장)검사	문하경	2023. 9.25.
〃	서성목	2023. 9.25.
〃	조상규	2023. 9.25.
〃	차경자	2023. 9.25.
〃	허윤희	2023. 9.25.
검사	김지연	2022. 2. 7.
〃	박채원	2022. 2. 7.
〃	손아지	2019. 2.11.
〃	전영우	2021. 2. 1.
〃	송혜숙	2023. 2. 6.
〃	이수환	2023. 2. 6.
〃	정민희	2018. 2. 5.
〃	박종현	2022. 2. 7.
〃	신주희	2021. 2. 1.
〃	고은진	2023. 2. 6.
〃	정재연	2022. 2. 7.
〃	금성호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성호	2023. 2. 6.
〃	이지은	2022. 2. 7.
〃	정지희	2023. 2. 6.
〃	차민형	2022. 2. 7.
〃	곽병수	2023. 2. 6.
〃	배성재	2023. 2. 6.
〃	한경우	2022. 2. 7.
〃	김한나	2023. 2. 6.
〃	정아름	2021. 2. 1.
〃	김보민	2022. 2. 7.
〃	박재형	2022. 2. 7.
〃	변형기	2022. 2. 7.
〃	박지은	2022.11. 1.
〃	이근호	2022.11. 1.
〃	최원희	2022.11. 1.
〃	김기홍	2023.11. 1.
〃	송정현	2023.11. 1.
〃	이건모	2023.11. 1.
〃	정예진	2023.11. 1.
사무국장	이재호	2023. 7.19.
총무과장	김연천	2022. 1.24.
사건과장	최기영	2023. 7.19.
집행과장		
수사과장	이병태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2023. 7.19.
(여주지청)		
지청장	공봉숙	2023. 9.25.
부장검사	정대희	2023. 9.25.
검사	조현욱	2022. 2. 7.
〃	김선진	2023. 2. 6.
〃	이상돈	2023. 2. 6.
〃	최예지	2022. 2. 7.
〃	임주연	2022. 2. 7.
〃	권예슬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성수	2023. 2. 6.
〃	정용진	2023. 2. 6.
사무과장	오홍석	2023. 7.19.
수사과장		
(평택지청)		
지청장	유도윤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김희주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김주현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이지연	2023. 9.25.
검사	곽중욱	2022. 2. 7.
〃	심기호	2021. 2. 1.
〃	정경진	2022. 2. 7.
〃	김효준	2022. 2. 7.
〃	전원영	2022. 2. 7.
〃	이호진	2022. 2. 7.
〃	구지훈	2023. 2. 6.
〃	심요한	2023. 2. 6.
〃	박신우	2023. 2. 6.
〃	신석규	2022. 2. 7.
〃	안창보	2022. 2. 7.
〃	조진희	2022. 2. 7.
〃	강송훈	2023. 2. 6.
〃	박소영	2023. 2. 6.
〃	박은혜	2023. 2. 6.
〃	석초롱	2023. 2. 6.
〃	손은선	2023. 2. 6.
사무과장	손주근	2023. 7.19.
수사과장	송학수	2022. 7.18.
(안산지청)		
지청장	정희도	2023. 9.25.
차장검사	신준호	2023. 9.25.
인권보호관	이장우	2023. 9.25.
형사1부장검사	조희영	2023. 9.25.
형사2부장검사	최선경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3부장검사	이동원	2023. 9.25.
형사4부장검사	배철성	2023. 9.25.
공판부장	최희정	2023. 9.25.
(부부장)검사	정태원	2023. 9.25.
〃	신도욱	2022. 7. 4.
〃	전수진	2023. 9.25.
〃	변진환	2023. 9.25.
검사	송선민	2018. 2. 5.
〃	송수연	2017. 2.20.
〃	황윤선	2022. 2. 7.
〃	권오장	2023. 2. 6.
〃	고려진	2022. 2. 7.
〃	김슬아	2022. 2. 7.
〃	박예주	2022. 2. 7.
〃	오연택	2022. 2. 7.
〃	온정훈	2023. 2. 6.
〃	박진아	2022. 2. 7.
〃	이자희	2022. 2. 7.
〃	임병일	2022. 2. 7.
〃	강인선	2020. 2. 3.
〃	도윤지	2023. 2. 6.
〃	정혜라	2022. 2. 7.
〃	박원석	2023. 2. 6.
〃	박상희	2022. 2. 7.
〃	이재연	2022. 2. 7.
〃	정재훈	2022. 2. 7.
〃	김민영	2021. 2. 1.
〃	김성훈	2022. 2. 7.
〃	김은성	2023. 2. 6.
〃	박조민	2021. 2. 1.
〃	백지은	2023. 2. 6.
〃	김병기	2022.11. 1.
〃	정지선	2022. 2. 7.
〃	심원석	2023.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상환	2023. 2. 6.
〃	전진우	2022. 2. 7.
〃	조아영	2022. 2. 7.
〃	홍혁기	2022. 2. 7.
〃	박광근	2022.11. 1.
〃	장유정	2022.11. 1.
〃	김나라	2023.11. 1.
〃	양종화	2023.11. 1.
사무국장	조병민	2023. 7.19.
총무과장	강영일	2022. 7.18.
사건과장	손주표	2023. 7.19.
집행과장	이필재	2023. 1.30.
수사과장	이치길	2023. 1.30.
검사직무대리	함찬신	2023. 1.30.
(안양지청)		
지청장	강대권	2023. 9.25.
차장검사	장준호	2023. 9.25.
인권보호관	이상록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최형원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노정옥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최종필	2023. 9.25.
(부부장)검사	류주태	2022. 7. 4.
〃	추창현	2023. 9.25.
〃	장세진	2023. 9.25.
검사	김유나	2023. 2. 6.
〃	성대웅	2022. 2. 7.
〃	이혜현	2021. 2. 1.
〃	이지은	2021. 2. 1.
〃	홍지예	2023. 9.25.
〃	황근주	2022. 2. 7.
〃	박지영	2020. 2. 3.
〃	장 진	2021. 2. 1.
〃	박민희	2020. 2. 3.
〃	전영경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하영	2023. 2. 6.
〃	오세진	2023. 2. 6.
〃	최종윤	2022. 2. 7.
〃	백가영	2023. 2. 6.
〃	양정훈	2022. 2. 7.
〃	정세연	2023. 2. 6.
〃	오영민	2023. 2. 6.
〃	강다롱	2022. 2. 7.
〃	윤세희	2022. 2. 7.
〃	윤치호	2022.11. 1.
〃	조영진	2022.11. 1.
〃	신현솔	2023.11. 1.
〃	홍원택	2023.11. 1.
사무국장	황세일	2023. 7.19.
총무과장	전태선	2023. 7.19.
사건과장	이한형	2023. 1.30.
집행과장	설용원	2023. 1.30.
수사과장	박찬길	2023. 1.30.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진우	2023. 9. 7.
차장검사	하담미	2023. 9.25.
인권보호관	임세호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조만래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한상훈	2023. 9.25
(부부장)검사	정은혜	2023.11. 1
〃	이규원	2022. 2. 7
〃	곽계령	2023. 9.25
〃	박상범	2022. 7. 4
〃	최성겸	2023. 9.25
검사	최수경	2023. 9.25
〃	김방글	2023. 9.25
〃	김진희	2022. 2. 7
〃	윤성호	2023. 2. 6
〃	김광락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진인동	2022. 2. 7.
〃	최순호	2023.11. 1.
〃	유수미	2022. 2. 7.
〃	박병훈	2022.11. 1.
〃	최재우	2022.11. 1.
〃	김리안	2023.11. 1.
〃	오세현	2023.11. 1.
사무국장	김용관	2023. 7.19.
총무과장	이승호	2023. 1.30.
사건과장	왕선중	2023. 1.30.
수사과장	김재주	2023. 7.19.
집행과장	김중호	2023. 7.19.
(강릉지청)		
지청장	문영권	2023. 9.25.
형사부장검사	국 진	2023. 9.25.
검사	안현선	2022. 2. 7.
〃	김병채	2022. 2. 7.
〃	주용하	2023. 2. 6.
〃	이지영	2021. 2. 1.
〃	황인혜	2022. 2. 7.
〃	조아영	2022. 2. 7.
〃	황호용	2022. 2. 7.
〃	전인수	2023. 2. 6.
〃	정한균	2023. 2. 6.
사무과장		
수사과장	이태영	2023. 7.19.
(원주지청)		
지청장	김호삼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신건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이주현	2023. 9.25.
검사	박형수	2022. 2. 7.
〃	황익진	2020. 2. 3.
〃	한윤석	2020. 2. 3.
〃	박제연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양건수	2022. 7. 4.
〃	이종찬	2022. 7. 4.
사무국장	박상욱	2023. 7.19.
총무과장	한생일	2023. 7.19.
사건과장	유효상	2023. 1.3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재억	2023. 9. 7.
차장검사	서정식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부장	김찬중	2022. 7. 4.
〃	최헌만	2023. 9.25.
〃	김원지	2022. 7. 4.
〃	김지연	2022. 7. 4.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2023. 9.25.
형사제1부장	백승주	2023. 9.25.
형사제2부장	서영배	2023. 9.25.
형사제3부장	조재철	2023. 9.25.
형사제4부장	송봉준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혜	2023. 9.25.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용	2023. 9.25.
공판부장	장인호	2023. 9.25.
(부부장)검사	조용우	2023. 9.25.
〃	채희만	2023. 9.25.
〃	윤나라	2023. 9.25.
〃	김영주	2023. 9.25.
〃	인 훈	2023. 9.25.
〃	정원석	2023. 9.25.
〃	오민재	2023. 9.25.
검사	우만우	2023. 9.25.
〃	김병욱	2021. 2. 1.
〃	박영식	2022. 2. 7.
〃	송찬우	2022. 7. 4.
〃	오대건	2022. 2. 7.
〃	오창명	2022. 7. 4.
〃	유시동	2021. 2.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동현	2022. 2. 7.
〃	장혜수	2020. 2. 3.
〃	이정성	2023. 2. 6.
〃	박유나	2022. 2. 7.
〃	이수경	2022. 2. 7.
〃	정성용	2022. 2. 7.
〃	유승재	2023. 2. 6.
〃	이하은	2023. 2. 6.
사무과장		
수사과장	이인국	2022. 1.24.
(속초지청)		
지청장	정 현	2023. 9.25.
검사	모형민	2022. 2. 7.
〃	김종훈	2022. 2. 7.
〃	박준웅	2023. 2. 6.
사무과장	이백영	2023. 7.19.
(영월지청)		
지청장	송준구	2023. 2. 6.
검사	이동헌	2022. 2. 7.
〃	박성종	2023. 2. 6.
〃	강가람	2022. 2. 7.
〃	권태환	2023. 2. 6.
사무과장	소병수	2023. 7.19.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임관혁	2023. 9. 7.
차장검사	이영림	2023. 9. 7.
인권보호관	김 현	2023. 9.25.
검사	최상훈	2022. 7. 4.
〃	위성국	2022. 7. 4.
〃	김성훈	2023. 9.25.
〃	서성호	2022. 7. 4.
〃	정진웅	2022. 5.23.
〃	권기환	2023. 9.25.
〃	남상관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은주	2022. 2. 7.
〃	강화연	2020. 2. 3.
〃	박신영	2022. 2. 7.
〃	박한나	2022. 2. 7.
〃	최은미	2020. 2. 3.
〃	김경태	2023. 2. 6.
〃	김혜주	2022. 2. 7.
〃	연제혁	2023. 2. 6.
〃	조소인	2023. 2. 6.
〃	한승훈	2023. 2. 6.
〃	홍현준	2023. 9.25.
〃	안인수	2023. 9.25.
〃	전형준	2023. 2. 6.
〃	김준성	2023. 2. 6.
〃	손성민	2022. 2. 7.
〃	장현구	2022. 2. 7.
〃	김동욱	2023. 2. 6.
〃	김성진	2023. 2. 6.
〃	천재영	2023. 2. 6.
〃	김진영	2023. 2. 6.
〃	이상윤	2023. 2. 6.
〃	조하림	2022. 2. 7.
〃	홍영기	2022. 2. 7.
〃	김시현	2023. 2. 6.
〃	박 현	2023. 2. 6.
〃	박상준	2023. 2. 6.
〃	서정효	2022. 2. 7.
〃	안형진	2022.11. 1.
〃	이평화	2023.11. 1.
〃	이수호	2022. 2. 7.
〃	전옥길	2022. 2. 7.
〃	강성학	2022.11. 1.
〃	김주영	2022.11. 1.
〃	김서연	2023.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성예지	2023.11. 1.
〃	정규록	2023.11. 1.
사무국장	박상락	2023. 7.19.
총무과장	주영수	2023. 7.19.
사건과장	김원철	2023. 7.19.
집행과장	이전철	2023. 8. 1.
조사과장		
수사과장	이은승	2022. 7.18.
검사직무대리	고익찬	2023. 7.19.
(홍성지청)		
지청장	최인상	2023. 9.25.
형사부장검사	박지나	2023. 9.25.
검사	신승헌	2022. 2. 7.
〃	전종현	2022. 2. 7.
〃	박민규	2023. 2. 6.
〃	김태현	2021. 2. 1.
〃	김윤정	2023. 2. 6.
〃	김지훈	2023. 2. 6.
사무과장		
수사과장	이규사	2023. 1.30.
(공주지청)		
지청장	최재순	2023. 9.25.
검사	유호원	2022. 2. 7.
〃	김태환	2022. 2. 7.
〃	김수진	2023. 9.25.
사무과장	박민자	2023. 1.30.
(논산지청)		
지청장	김가람	2023. 9.25.
검사	조정연	2022. 2. 7.
〃	이준태	2023. 2. 6.
〃	안태영	2022. 2. 7.
〃	정수진	2023. 2. 6.
사무과장		
(서산지청)		

직 위	성명	발령일
〃	임여은	2023. 2. 6.
〃	홍유정	2023. 2. 6.
〃	김지원	2021. 2. 1.
〃	김호중	2023. 2. 6.
〃	장민수	2023. 2. 6.
〃	이지은	2023. 2. 6.
〃	정민영	2022.11. 1.
〃	주이레	2022.11. 1.
〃	김하경	2023.11. 1.
〃	박휘성	2023.11. 1.
〃	배민기	2023.11. 1.
사무국장	김승호	2023. 7.19.
총무과장	이승열	2022. 7.18.
사건과장	권기원	2023. 7.19.
집행과장	안국영	2023. 7.19.
수사과장	강용묵	2023. 1.30.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용원	2022. 6.27.
차장검사	조광환	2023. 9.25.
인권보호관	이종민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윤춘구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양재혁	2022. 7. 4.
〃	김정진	2023. 9.25.
〃	최현철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이승훈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김지혜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남철우	2023. 9.25.
(부부장)검사	소창범	2021. 7. 2.
〃	정선제	2022. 7. 4.
검사	최혜경	2020. 2. 3.
〃	강명훈	2022. 2. 7.
〃	김민정	2021. 2. 1.
〃	임은정	2022. 2. 7.
〃	류승진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지청장	원지애	2023. 9.25.
형사부장검사	박지훈	2023. 9.25.
검사	김구열	2022. 2. 7.
〃	오재완	2023. 2. 6.
〃	이희동	2023. 2. 6.
〃	서수정	2022. 2. 7.
〃	공민진	2023. 2. 6.
〃	김민호	2023. 2. 6.
〃	박지현	2023. 2. 6.
〃	서세영	2023. 2. 6.
사무과장	조형식	2023. 1.30.
수사과장	오후균	2023. 1.30.
(천안지청)		
지청장	최지석	2023. 9.25.
차장검사	이준범	2023. 9.25.
인권보호관	최재봉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오세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최용락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홍정연	2023. 9.25.
(부부장)검사	정우석	2022. 7. 4.
검사	손수진	2023. 2. 6.
〃	이재원	2021. 2. 1.
〃	이종혁	2023. 2. 6.
〃	최한나	2022. 7. 4.
〃	김민석	2023. 2. 6.
〃	노경은	2020. 2. 3.
〃	송새봄	2022. 2. 7.
〃	송정범	2023. 2. 6.
〃	김녹원	2021. 2. 1.
〃	차대영	2023. 2. 6.
〃	문동기	2023. 2. 6.
〃	박진덕	2023. 2. 6.
〃	신재성	2023. 2. 6.
〃	유선문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황보영	2023. 2. 6.
〃	백상준	2023. 2. 6.
〃	안성민	2023. 9.25.
〃	김승연	2023. 2. 6.
〃	박정선	2023. 2. 6.
〃	안제홍	2022. 2. 7.
〃	이재영	2023. 9.25.
〃	박은석	2022. 2. 7.
〃	서지혜	2023. 2. 6.
〃	이대희	2023. 2. 6.
〃	전은석	2022. 2. 7.
〃	이수경	2023. 2. 6.
〃	김성현	2022.11. 1.
〃	김정헌	2023.11. 1.
〃	김동현	2022. 2. 7.
〃	오소영	2022. 2. 7.
〃	백승봉	2022.11. 1.
〃	주해인	2022.11. 1.
〃	강 솔	2023.11. 1.
〃	이지예	2023.11. 1.
사무국장	박형석	2023. 1.30.
총무과장	이창희	2023. 7.19.
사건과장	신익수	2023. 7.19.
집행과장	최정열	2023. 7.19.
수사과장		
검사직무대리	구형석	2023. 3.13.
(충주지청)		
지청장	김윤선	2023. 9.25.
형사부장검사	조정호	2023. 9.25.
검사	신건수	2022. 2. 7.
〃	임헌준	2022. 2. 7.
〃	정초롱	2022. 2. 7.
〃	송혜경	2023. 2. 6.
〃	이현민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사무과장	정석현	2023. 7.19.
(제천지청)		
지청장	최수봉	2023. 9.25.
검사	박광현	2023. 2. 6.
〃	김지윤	2023. 2. 6.
〃	유재덕	2023. 2. 6.
사무과장	장재호	2023. 7.19.
(영동지청)		
지청장	강성기	2023. 9.25.
검사	원현호	2022. 2. 7.
〃	류범선	2023. 2. 6.
사무과장	김형빈	2023. 7.19.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노정연	2023. 9. 7.
차장검사	손준성	2023. 9. 7.
인권보호관	김희경	2023. 9.25.
검사	고석홍	2023. 9.25.
〃	유두열	2023. 9.25.
〃	심재계	2022. 2. 7.
〃	윤영준	2023. 9.25.
〃	이종구	2022. 7. 4.
〃	김경우	2023. 9.25.
〃	박철우	2022. 5.23.
〃	서창원	2022. 2. 7.
사무국장	곽명규	2023. 7.19.
총무과장	김봉석	2023. 1.30.
사건과장	금광식	2022. 7.1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신응석	2023. 9. 7.
제1차장검사	임승철	2023. 9.25.
제2차장검사	조상원	2023. 9.25.
인권보호관	황보현희	2023.10. 4.
인권보호부장	민영현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문수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임은정	2022. 5.23.
〃	김봉현	2022. 7. 4.
〃	김공주	2022. 7. 4.
〃	이방현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유정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김성원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김해중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장진영	2023. 9.25.
공공수사부장	윤수정	2023. 9.25.
반부패수사부장	공준혁	2023. 9.25.
강력범죄수사부장	최재만	2023. 9.25.
공판제1부장	정명원	2023. 9.25.
공판제2부장	문지석	2023. 9.25.
(부부장)검사	신대경	2023. 9.25.
〃	이상민	2022. 7. 4.
〃	류남경	2023. 9.25.
〃	김재환	2023. 9.25.
〃	이주용	2023. 9.25.
〃	이준희	2023. 9.25.
검사	김도형	2019. 2.11.
〃	김은정	2022. 2. 7.
〃	성기범	2023. 2. 6.
〃	최여련	2020. 9. 3.
〃	양근욱	2023. 2. 6.
〃	이현진	2020. 2. 3.
〃	이소현	2021. 2. 1.
〃	임진철	2023. 2. 6.
〃	이경아	2019. 2.11.
〃	이웅희	2021. 2. 1.
〃	김서영	2019. 2.11.
〃	김소정	2021. 8. 2.
〃	박대한	2021. 2. 1.
〃	구재연	2019. 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윤석	2022. 2. 7.
〃	김희진	2023. 2. 6.
〃	이희욱	2022. 2. 7.
〃	김정화	2020. 2. 3.
〃	이영호	2023. 2. 6.
〃	김다현	2023. 2. 6.
〃	박형철	2021. 2. 1.
〃	양효승	2021. 2. 1.
〃	정수희	2021. 2. 1.
〃	최자윤	2023. 2. 6.
〃	김윤식	2021. 2. 1.
〃	조윤영	2023. 2. 6.
〃	권예리	2022. 2. 7.
〃	최건호	2023. 2. 6.
〃	최영권	2022. 2. 7.
〃	한채란	2023. 2. 6.
〃	박강일	2023. 2. 6.
〃	윤지언	2023. 2. 6.
〃	김명호	2022.11. 1.
〃	송현석	2023.11. 1.
〃	박세빈	2022. 2. 7.
〃	고신관	2022.11. 1.
〃	남현규	2022.11. 1.
〃	유화경	2022.11. 1.
〃	최원재	2022.11. 1.
〃	길상난	2023.11. 1.
〃	송승환	2023.11. 1.
〃	우종림	2023.11. 1.
사무국장	김정호	2023. 1.30.
총무과장	전정규	2023. 7.19.
사건과장	이범재	2023. 1.30.
집행과장	김재영	2023. 7.19.
수사과장	김종철	2023. 7.19.
조사과장	김진룡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공 판 과 장	김영채	2023. 7.19.
검 사 직 무 대 리	이동진	2023. 8.28.
검 사 직 무 대 리	이준호	2023. 7.19.
(대 구 서 부 지 청)		
지 청 장	김영일	2023. 9.25.
차 장 검 사	김현아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이동현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정혁준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장유강	2023. 9.25.
(부 부 장) 검 사	최소연	2023. 9.25.
검 사	박은혜	2019. 2.11.
〃	신영삼	2020. 2. 3.
〃	이재연	2022. 2. 7.
〃	탁동완	2021. 2. 1.
〃	유광선	2022. 2. 7.
〃	배석희	2023. 2. 6.
〃	염호영	2022. 2. 7.
〃	박예진	2023. 2. 6.
〃	최정훈	2022. 2. 7.
〃	원상환	2020. 2. 3.
〃	김소영	2020. 9. 3.
〃	오승식	2022. 2. 7.
〃	이상범	2022. 2. 7.
〃	주은혜	2022. 2. 7.
〃	이승재	2022. 2. 7.
〃	배상아	2023. 2. 6.
〃	이형우	2023. 2. 6.
〃	오나영	2022. 2. 7.
〃	최문석	2022. 2. 7.
〃	최은민	2022. 2. 7.
〃	김소정	2022.11. 1.
〃	서제원	2022.11. 1.
〃	김규섭	2023.11. 1.
〃	박준범	2023.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이상돈	2023. 7.19.
총 무 과 장	이길우	2023. 7.19.
사 건 과 장	전봉환	2023. 1.30.
집 행 과 장	이광호	2023. 1.30.
수 사 과 장	김재철	2023. 1.30.
(안 동 지 청)		
지 청 장	임종필	2023. 9.25.
검 사	김용석	2022. 2. 7.
〃	송미루	2023. 2. 6.
〃	허정훈	2022. 2. 7.
〃	김소연	2023. 2. 6.
〃	윤지훈	2023. 2. 6.
사 무 과 장	황재화	2023. 7.19.
수 사 과 장	김종웅	2023. 7.19.
(경 주 지 청)		
지 청 장	이상현	2023. 9.25.
형 사 부 장 검 사	김지영	2023. 9.25.
검 사	문성은	2022. 2. 7.
〃	정지수	2023. 2. 6.
〃	남연진	2022. 2. 7.
〃	권은비	2023. 2. 6.
사 무 과 장	주도경	2023. 7.19.
수 사 과 장	김일수	2023. 1.30.
(포 항 지 청)		
지 청 장	조주연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김종필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김금이	2023. 9.25.
검 사	고형근	2022. 2. 7.
〃	어원중	2022. 2. 7.
〃	이경문	2022. 2. 7.
〃	김태훈	2023. 2. 6.
〃	김대성	2022. 2. 7.
〃	이경준	2022. 2. 7.
〃	이윤정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양경문	2022. 2. 7.
사 무 과 장	최석렬	2023. 7.19.
(부산고등검찰청)		
검 사 장	최경규	2023. 9. 7.
차 장 검 사	주영환	2023. 9. 7.
인 권 보 호 관	정재훈	2023. 9.25.
검 사	신은철	2022. 7. 4.
〃	이제관	2023. 2. 6.
〃	정용수	2023. 9.25.
〃	박용호	2023. 9.25.
〃	윤중기	2022. 7. 4.
〃	전영준	2022. 7. 4.
〃	채석현	2022. 7. 4.
〃	김태훈	2022. 5.23.
〃	조용한	2023. 9.25.
〃	신지선	2023. 9.25.
〃	최두천	2022. 7. 4.
사 무 국 장	김종일	2023. 1.30.
총 무 과 장	김권태	2023. 7.19.
사 건 과 장	채상훈	2023. 1.30.
(부산지방검찰청)		
검 사 장	정영학	2023. 9. 7.
제 1 차 장 검 사	박상진	2023. 9.25.
제 2 차 장 검 사	안동완	2023. 9.25.
인 권 보 호 관	김지완	2023. 9.25.
인 권 보 호 부 장	유진승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노상길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재호	2023. 9.25.
〃	김덕곤	2022. 5.23.
〃	정재현	2022. 7. 4.
〃	하재무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김도연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최준호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서효원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	최진석	2022. 2. 7.
〃	문승기	2023. 2. 6.
사 무 과 장	강동배	2023. 7.19.
집 행 과 장	김종열	2023. 7.19.
수 사 과 장	한상수	2023. 7.19.
(김천지청)		
지 청 장	진정길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이치현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김진혁	2023. 9.25.
검 사	노우석	2022. 2. 7.
〃	유용훈	2023. 2. 6.
〃	이섬연	2022. 2. 7.
〃	이준명	2022. 2. 7.
〃	강상혁	2023. 2. 6.
〃	공도운	2023. 2. 6.
〃	김동욱	2023. 2. 6.
〃	안주원	2023. 2. 6.
〃	황수이	2023. 2. 6.
사 무 과 장	김재곤	2023. 7.19.
수 사 과 장	문준연	2023. 1.30.
(상주지청)		
지 청 장	김상현	2023. 9.25.
검 사	김정호	2023. 2. 6.
〃	신수민	2023. 2. 6.
〃	하경준	2023. 2. 6.
사 무 과 장	서창훈	2023. 1.30.
(의성지청)		
지 청 장	김희영	2023. 9.25.
검 사	정민섭	2022. 2. 7.
〃	김도환	2023. 2. 6.
사 무 과 장	이호종	2022. 7.18.
(영덕지청)		
지 청 장	윤국권	2023. 9.25.
검 사	고승우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이주희	2023. 9.25.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검사	김형원	2023. 9.25.
반부패수사부장	김익수	2023. 9.25.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2023. 9.25.
공판부장	김상준	2023. 9.25.
(부부장)검사	류장만	2013. 4.23.
〃	김창수	2023. 9.25.
〃	이용균	2023. 9.25.
〃	진혜원	2022. 7. 4.
〃	김미은	2023. 9.25.
〃	이태협	2023. 9.25.
〃	장대규	2023. 9.25.
〃	이주희	2023. 9.25.
〃	이지영	2023. 9.25.
〃	홍정연	2023. 9.25.
〃	황선옥	2023. 9.25.
검사	김영신	2022. 7. 4.
〃	강진욱	2022. 2. 7.
〃	김대현	2023. 2. 6.
〃	김세희	2019. 2.11.
〃	박상선	2023. 9.25.
〃	양익준	2021. 2. 1.
〃	정성헌	2023. 2. 6.
〃	이자영	2018. 2. 5.
〃	임하나	2023. 2. 6.
〃	정승원	2023. 2. 6.
〃	이승필	2023. 2. 6.
〃	신정수	2021. 8. 2.
〃	이재표	2023. 2. 6.
〃	송형진	2020. 2. 3.
〃	이홍석	2022. 2. 7.
〃	최지예	2019. 2.11.
〃	손유빈	2020. 2. 3.
〃	권준택	2021. 2. 1.
〃	김민수	2021. 2. 1.
〃	김하영	2023. 2. 6.
〃	이거량	2022. 2. 7.
〃	황두평	2023. 9.25.
〃	이재희	2023. 2. 6.
〃	이해영	2023. 2. 6.
〃	이권석	2023. 2. 6.
〃	정주희	2023. 2. 6.
〃	김민주	2021. 2. 1.
〃	최완영	2021. 2. 1.
〃	최인성	2023. 2. 6.
〃	김진호	2022. 2. 7.
〃	김병준	2023. 2. 6.
〃	김태완	2023. 2. 6.
〃	박민지	2023. 2. 6.
〃	박슬기	2021. 2. 1.
〃	박영웅	2023. 2. 6.
〃	이승호	2022. 2. 7.
〃	황보관범	2022.11. 1.
〃	유성윤	2023.11. 1.
〃	김도윤	2022. 2. 7.
〃	김민수	2022. 2. 7.
〃	박상현	2022. 2. 7.
〃	박덕승	2022.11. 1.
〃	진주환	2022.11. 1.
〃	최신영	2022.11. 1.
〃	서동훈	2023.11. 1.
〃	신정안	2023.11. 1.
사무국장		
총무과장	박용선	2023. 7.19.
사건과장	이동희	2022. 7.18.
집행과장	배정도	2023. 1.30.
조사과장		
수사과장	권경원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대성	2022. 7.18.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2023. 1.30.
공판과장	서맹웅	2023. 7.19.
검사직무대리	김진희	2023. 7.19.
〃	김형국	2023. 7.19.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형수	2023. 9.25.
차장검사	차범준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송영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김정옥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나희석	2023. 9.25.
(부부장)검사	이근정	2023. 9.25.
검사	김정훈	2023. 2. 6.
〃	문선주	2022. 2. 7.
〃	민경원	2022. 2. 7.
〃	양귀호	2023. 2. 6.
〃	박민지	2023. 9.25.
〃	김필수	2020. 2. 3.
〃	김진혁	2023. 2. 6.
〃	최혜진	2021. 2. 1.
〃	강지원	2022. 2. 7.
〃	김필수	2022. 2. 7.
〃	성혜진	2022. 2. 7.
〃	신충섭	2022. 2. 7.
〃	유한실	2023. 2. 6.
〃	전제희	2022. 2. 7.
〃	김선형	2022. 2. 7.
〃	박윤협	2022. 2. 7.
〃	오희원	2022. 2. 7.
〃	고유정	2022.11. 1.
〃	정다완	2022.11. 1.
〃	최지우	2023.11. 1.
〃	하성진	2023.11. 1.
사무국장		

직 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신상성	2023. 1.30.
사건과장	이경두	2023. 7.19.
집행과장	백종군	2023. 7.19.
수사과장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이덕진	2023. 9.25.
차장검사	한기식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이영화	2023.10.12.
형사제2부장검사	천헌주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장욱환	2023. 9.25.
(부부장)검사	김창섭	2023. 9.25.
〃	신미량	2023. 9.25.
〃	김희영	2023. 9.25.
검사	이강우	2022. 2. 7.
〃	이수진	2022. 2. 7.
〃	이정현	2022. 2. 7.
〃	김정선	2021. 2. 1.
〃	안상현	2023. 2. 6.
〃	임기웅	2023. 2. 6.
〃	문지원	2021. 2. 1.
〃	유상우	2023. 2. 6.
〃	하지수	2023. 2. 6.
〃	김연재	2022. 2. 7.
〃	김준소	2023. 2. 6.
〃	장근보	2023. 2. 6.
〃	안세영	2022. 2. 7.
〃	안태민	2021. 2. 1.
〃	정주미	2023. 2. 6.
〃	이승민	2022. 2. 7.
〃	장진우	2022. 2. 7.
〃	홍기영	2022. 2. 7.
〃	구승완	2022.11. 1.
〃	배국희	2022.11. 1.
〃	김아현	2023.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주환	2023.11. 1.
사무과장	여문숙	2023. 1.30.
수사과장	조승래	2023. 1.30.
집행과장	남상완	2023. 7.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석리	2023. 9. 7.
차장검사	김훈영	2023. 9.25.
인권보호관	주민철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석재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홍보가	2023. 9.25.
〃	김기윤	2022. 7. 4.
〃	박정의	2022. 7. 4.
형사제1부장검사	김병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박진석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이세희	2023. 9.25.
형사제4부장검사	박성민	2023. 9.25.
형사제5부장검사	김윤정	2023. 9.25.
공판송무부장검사	손은영	2023. 9.25.
(부부장)검사	김미수	2022. 7. 4.
〃	성두경	2023. 9.25.
〃	이은윤	2023. 9.25.
검사	김진우	2023. 2. 6.
〃	안준석	2023. 2. 6.
〃	김승기	2021. 2. 1.
〃	유새롬	2022. 2. 7.
〃	최우혁	2022. 2. 7.
〃	한주동	2022. 2. 7.
〃	김수희	2023. 2. 6.
〃	양준석	2022. 2. 7.
〃	김석순	2021. 2. 1.
〃	남소정	2021. 2. 1.
〃	박민경	2021. 2. 1.
〃	최정훈	2022. 2. 7.
〃	남도현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나영	2023. 2. 6.
〃	이혜원	2023. 2. 6.
〃	김미선	2021. 2. 1.
〃	김청아	2022. 2. 7.
〃	박보영	2023. 2. 6.
〃	박지향	2022. 2. 7.
〃	박선영	2022. 2. 7.
〃	정고운	2022. 2. 7.
〃	박수영	2023. 2. 6.
〃	정종일	2023. 2. 6.
〃	하연지	2023. 2. 6.
〃	고동식	2023.11. 1.
〃	도예진	2022. 2. 7.
〃	임대현	2022. 2. 7.
〃	정현혁	2022. 2. 7.
〃	연선모	2022.11. 1.
〃	이지수	2022.11. 1.
〃	최나현	2022.11. 1.
〃	강경민	2023.11. 1.
〃	박옐림	2023.11. 1.
사무국장	백종동	2023. 7.19.
총무과장	정유진	2023. 7.19.
사건과장	김해곤	2023. 7.19.
집행과장	김정연	2023. 7.19.
공공수사지원과장	김재섭	2022.10. 7.
수사과장	안병훈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추영종	2023. 7.19.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성훈	2023. 9. 7.
차장검사	박주현	2023. 9.25.
인권보호관	신종곤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승환	2023. 2. 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허정수	2022. 7. 4.
〃	박홍규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국 장	노희동	2023. 1.30.
총 무 과 장	안호현	2023. 7.19.
사 건 과 장	성주경	2023. 7.19.
집 행 과 장	진성창	2023. 1.30.
조 사 과 장	박준형	2022. 7.18.
수 사 과 장	이승환	2023. 1.30.
검 사 직 무 대 리	박남규	2023. 7.19.
(마 산 지 청)		
지 청 장	박대범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이상목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김수민	2023. 9.25.
검 사	김대양	2023. 2. 6.
〃	김주성	2023. 2. 6.
〃	이선균	2023. 2. 6.
〃	우희준	2022. 2. 7.
〃	이희진	2022. 2. 7.
〃	박보경	2023. 2. 6.
〃	우경진	2023. 2. 6.
〃	임영하	2023. 2. 6.
사 무 과 장	정영호	2022. 7.18.
수 사 과 장	문명룡	2022. 7.18.
(진 주 지 청)		
지 청 장	김봉준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허성규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곽금희	2023. 9.25.
검 사	이창헌	2023. 2. 6.
〃	김다혜	2022. 2. 7.
〃	염준범	2022. 2. 7.
〃	이종옥	2022. 2. 7.
〃	김나경	2023. 2. 6.
〃	박자영	2023. 2. 6.
〃	백희진	2023. 2. 6.
〃	신혜원	2023. 2. 6.
〃	최인혁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1부장검사	임길섭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최미화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박종민	2023. 9.25.
형사제4부장검사	박 철	2023. 9.25.
공판송무부장검사	김병철	2023. 9.25.
(부 부 장) 검 사	배상윤	2022. 7. 4.
검 사	강은선	2023. 2. 6.
〃	장아량	2020. 2. 3.
〃	임홍석	2022. 2. 7.
〃	현동길	2023. 2. 6.
〃	우재훈	2023. 2. 6.
〃	이수정	2023. 9.25.
〃	정동현	2023. 2. 6.
〃	이정환	2023. 2. 6.
〃	신은정	2022. 2. 7.
〃	박대웅	2023. 2. 6.
〃	김상직	2023. 2. 6.
〃	김선태	2023. 2. 6.
〃	박진형	2023. 2. 6.
〃	임성열	2022. 2. 7.
〃	장우혁	2021. 2. 1.
〃	김나연	2022. 2. 7.
〃	안창인	2022. 2. 7.
〃	이영훈	2022. 2. 7.
〃	반동호	2022. 2. 7.
〃	강희윤	2022. 2. 7.
〃	손세희	2022. 2. 7.
〃	송채은	2022. 2. 7.
〃	한지현	2022. 2. 7.
〃	장예솔	2022.11. 1.
〃	최승훈	2022.11. 1.
〃	김창하	2023.11. 1.
〃	유형일	2023.11. 1.
〃	전종혁	2023.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사 무 과 장	이상범	2023. 7.19.
집 행 과 장	최희주	2023. 1.30.
수 사 과 장	정대웅	2022. 7.18.
(통 영 지 청)		
지 청 장	김성동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조영성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최성수	2023. 9.25.
검 사	최 웅	2023. 2. 6.
〃	라 혁	2022. 2. 7.
〃	박효정	2022. 2. 7.
〃	전여민	2022. 2. 7.
〃	안도은	2023. 2. 6.
〃	유재승	2023. 2. 6.
〃	정하은	2023. 2. 6.
〃	최종환	2023. 2. 6.
사 무 과 장	김영환	2023. 1.30.
수 사 과 장	강복만	2022. 7.18.
(밀 양 지 청)		
지 청 장	김정환	2023. 9.25.
검 사	공현진	2023. 2. 6.
〃	정유정	2022. 2. 7.
〃	김진혁	2023. 2. 6.
사 무 과 장	손종운	2023. 7.19.
(거 창 지 청)		
지 청 장	이수창	2023. 9.25.
검 사	손성훈	2022. 2. 7.
〃	박진현	2022. 2. 7.
사 무 과 장	도용락	2023. 7.19.
(광주고등검찰청)		
검 사 장	홍승욱	2023. 9. 7.
차 장 검 사	구자현	2023. 9. 7.
인 권 보 호 관	정우식	2023. 9.25.
검 사	강여찬	2023. 9.25.
〃	최현기	2022. 7. 4.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종칠	2023. 9.25.
〃	박철완	2023. 9. 7.
〃	김춘수	2023. 9.25.
〃	강종헌	2023. 2. 6.
〃	김재호	2022. 7. 4.
〃	노진영	2023. 9.25.
〃	윤중현	2022. 7. 4.
사 무 국 장		
총 무 과 장	홍흥표	2023. 7.19.
사 건 과 장		
(광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박종근	2023. 9. 7.
차 장 검 사	문현철	2023. 9.25.
인 권 보 호 관	조홍용	2023. 9.25.
인 권 보 호 부 장	김남훈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 환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병규	2023. 9.25.
〃	박은정	2022. 7. 4.
〃	김정훈	2023. 9.25.
〃	정성현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김영오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안성희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한문혁	2023. 9.25.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2023. 9.25.
공공수사부장검사	김명옥	2023. 9.25.
반부패강력수사부장검사	김진호	2023. 9.25.
공 판 부 장 검 사	기노성	2023. 9.25.
(부 부 장) 검 사	구태연	2023. 9.25.
〃	박승환	2023. 9.25.
〃	신승희	2022. 7. 4.
〃	최태은	2020. 9. 3.
〃	이경석	2022. 7. 4.
〃	이동근	2023. 9.25.
〃	김지영	2023. 9.25.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진희	2023. 9.25.
검 사	김지윤	2021. 2. 1.
〃	이현주	2023. 2. 6.
〃	정혜승	2022. 2. 7.
〃	천재인	2023. 2. 6.
〃	강일민	2022. 2. 7.
〃	조현일	2022. 2. 7.
〃	홍석기	2022. 2. 7.
〃	김보미	2022. 2. 7.
〃	허수진	2023. 9.25.
〃	윤신명	2022. 2. 7.
〃	홍민유	2022. 2. 7.
〃	강 현	2022. 2. 7.
〃	박재성	2022. 2. 7.
〃	오승은	2022. 7. 4.
〃	전성환	2023. 2. 6.
〃	김상범	2023. 2. 6.
〃	문호섭	2021. 2. 1.
〃	허창환	2021. 2. 1.
〃	류재현	2023. 2. 6.
〃	원민영	2022. 2. 7.
〃	원경희	2022. 2. 7.
〃	공소정	2022. 2. 7.
〃	김정화	2020. 2. 3.
〃	김주현	2022. 2. 7.
〃	정성욱	2022. 2. 7.
〃	최정수	2022. 2. 7.
〃	박종현	2022. 2. 7.
〃	심우석	2022. 2. 7.
〃	최형욱	2023. 2. 6.
〃	조영민	2023. 2. 6.
〃	함석욱	2023. 2. 6.
〃	김성천	2022.11.01.
〃	이해민	2023.11.0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가현	2022. 2. 7.
〃	노현선	2022. 2. 7.
〃	조인태	2022. 2. 7.
〃	연미현	2022.11. 1.
〃	유다솜	2023.11. 1.
〃	정민혁	2023.11. 1.
〃	진혜원	2023.11. 1.
사무국장	유정민	2023. 7.19.
총무과장	최이석	2023. 7.19.
사건과장	이상조	2023. 7.19.
집행과장	박기랑	2023. 7.19.
조사과장	박종섭	2023. 7.19.
수사과장	박춘광	2023. 7.19.
공판과장	서동희	2023. 7.19.
검사직무대리	서용기	2023. 7.19.
(목포지청)		
지청장	최 혁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김은경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박인우	2023. 9.25.
검 사	봉진수	2020. 2. 3.
〃	이원창	2023. 2. 6.
〃	이광세	2022. 2. 7.
〃	박숙영	2023. 2. 6.
〃	송동민	2022. 2. 7.
〃	오혜림	2022. 2. 7.
〃	김현지	2023. 2. 6.
〃	김힘찬	2023. 2. 6.
〃	임지혜	2023. 2. 6.
〃	장정윤	2023. 2. 6.
사무과장	고영록	2023. 7.19.
수사과장	김용석	2023. 1.30.
(장흥지청)		
지청장	조 철	2023. 9.25.
검 사	주재현	2022. 2. 7.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세미	2023. 2. 6.
사 무 과 장	김선철	2023. 7.19.
(순 천 지 청)		
지 청 장	최호영	2023. 9.25.
차 장 검 사	이응철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오미경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박종선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방지형	2023. 9.25.
(부 부 장) 검 사	이세원	2023. 9.25.
〃	이윤구	2023. 9.25.
검 사	김현서	2023. 2. 6.
〃	김현수	2022. 2. 7.
〃	박성욱	2022. 2. 7.
〃	이진순	2021. 2. 1.
〃	이휘소	2022. 2. 7.
〃	최서준	2022. 2. 7.
〃	이가은	2022. 2. 7.
〃	이동욱	2022. 2. 7.
〃	김연중	2022. 2. 7.
〃	박현우	2022. 2. 7.
〃	김세윤	2022. 2. 7.
〃	채원재	2021. 2. 1.
〃	권하늘	2022. 2. 7.
〃	박창구	2022. 2. 7.
〃	김예진	2022.11. 1.
〃	이선엽	2022.11. 1.
〃	정우채	2022.11. 1.
〃	김서정	2023.11. 1.
〃	김홍진	2023.11. 1.
사 무 국 장	김중근	2023. 7.19.
총 무 과 장	명관호	2023. 1.30.
사 건 과 장	양유철	2023. 1.30.
집 행 과 장		
수 사 과 장	유경백	2023. 7.19.

직 위	성명	발령일
(해 남 지 청)		
지 청 장	조윤철	2023. 2. 6.
검 사	김한민	2022. 2. 7.
〃	우승민	2022. 2. 7.
〃	임현진	2023. 2. 6.
사 무 과 장		
(전 주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이창수	2023. 9. 7.
차 장 검 사	김 우	2023. 9.25.
인 권 보 호 관	김선문	2023. 9.25.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안성수	2022. 7. 4.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호준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원형문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황성민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이승학	2023. 9.25.
(부 부 장) 검 사	김현우	2023. 9.25.
검 사	김유나	2023. 9.25.
〃	박재호	2021. 2. 1.
〃	황경원	2023. 2. 6.
〃	안미현	2020. 2. 3.
〃	박동주	2019. 2.11.
〃	박노산	2022. 2. 7.
〃	박경세	2023. 2. 6.
〃	구자원	2022. 2. 7.
〃	이은정	2021. 2. 1.
〃	천안문	2023. 2. 6.
〃	최우석	2023. 2. 6.
〃	최윤영	2023. 2. 6.
〃	한웅세	2023. 2. 6.
〃	강재하	2021. 2. 1.
〃	박근영	2022. 2. 7.
〃	정제훈	2023. 2. 6.
〃	손용기	2022.11. 1.
〃	이인영	2020. 3.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연우	2023. 2. 6.
〃	홍준현	2023. 2. 6.
사무과장	김금숙	2023. 7.19.
(남원지청)		
지청장	김종욱	2023. 9.25.
검사	김종원	2022. 2. 7.
〃	황용범	2023. 2. 6.
사무과장	최병주	2022. 7.18.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노만석	2023. 9. 7.
차장검사	최영아	2023. 9.25.
인권보호관	황정현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황현아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장영일	2023. 9.25.
형사제3부장검사	윤원일	2023. 9.25.
(부부장)검사	심형석	2023. 9.25.
〃	김효진	2023. 9.25.
검사	왕선주	2021. 2. 1.
〃	김진영	2022. 2. 7.
〃	전철호	2021. 2. 1.
〃	고은실	2021. 8. 2.
〃	권동욱	2022. 2. 7.
〃	김미선	2023. 2. 6.
〃	한승진	2019. 2.11.
〃	정 혁	2022. 2. 7.
〃	정덕채	2022. 2. 7.
〃	정소영	2022. 2. 7.
〃	최주원	2023. 2. 6.
〃	최민혁	2022. 2. 7.
〃	권다송이	2021. 2. 1.
〃	정세연	2022. 2. 7.
〃	김남용	2022. 2. 7.
〃	오종혁	2023. 2. 6.
〃	송민석	2022.11. 1.

직 위	성명	발령일
〃	안형균	2022. 2. 7.
〃	김민재	2022.11. 1.
〃	김성호	2022.11. 1.
〃	조원하	2022.11. 1.
〃	박승권	2023.11. 1.
사무국장	이운연	2023. 7.19.
총무과장	조수희	2023. 7.19.
사건과장	채진수	2023. 7.19.
집행과장		
수사과장	김성곤	2023. 7.19.
검사직무대리	강병철	2023. 7.19.
(군산지청)		
지청장	손찬오	2023. 9.25.
형사제1부장검사	김창희	2023. 9.25.
형사제2부장검사	장진성	2023. 9.25.
검사	류광환	2022. 2. 7.
〃	구재훈	2022. 2. 7.
〃	천대우	2021. 2. 1.
〃	고영인	2022. 2. 7.
〃	김광제	2022. 2. 7.
〃	김태훈	2022. 2. 7.
〃	전정우	2022. 2. 7.
〃	정윤경	2022. 2. 7.
〃	황지홍	2022. 2. 7.
〃	김민정	2023. 2. 6.
〃	박소미	2023. 2. 6.
사무과장	조성길	2023. 7.19.
집행과장	성백우	2023. 7.19.
수사과장	정일훈	2023. 1.30.
(정읍지청)		
지청장	이시전	2023. 9.25.
검사	목찬수	2022. 2. 7.
〃	진동화	2023. 2. 6.
〃	이혜진	2023. 2. 6.

직 위	성명	발령일
〃	송진민	2022. 2. 7.
〃	천의진	2022. 2. 7.
〃	손아령	2022.11. 1.
〃	오창현	2023.11. 1.
〃	윤서영	2023.11. 1.
사무국장	강형규	2023. 1.30.
총무과장	김병호	2023. 7.19.
사건과장	박광수	2023. 1.30.
집행과장	하도겸	2023. 7.19.
수사과장		
(사 법 연 수 원)		
부원장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성우제	2022. 1. 24.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	2022. 9. 19.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정근	2022. 2. 4.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이승욱	2023. 7. 24.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김준성	2022. 9. 19.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	2023. 7. 24.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고영종	2021. 8. 30.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이승원	2022. 9. 19.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	2022. 9. 19.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민덕희	2023. 7. 24.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	2023. 7. 24.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윤태영 백문석 (직무대행) 정경진	2022. 7. 1. 2023. 7. 24. 2023. 7. 24.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형섭 홍정원 정주호	2022. 1. 24. 2023. 7. 24. 2023. 7. 24.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용현	2022. 9. 19.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	2023. 1. 16.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시종	2022. 9. 19.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정민 이길복 강영욱	2023. 1. 16. 2023. 7. 24. 2023. 7. 2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영면 김양곤 손세곤	2023. 1. 16. 2023. 11. 30. 2023. 7. 24.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정기조	2023. 1. 24.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김기환	2022. 1. 24.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김충섭	2023. 7. 24.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023. 7. 24.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김영배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안병경 배점호 김경렬	2022. 1. 24. 2023. 12. 6. 2022. 7. 6.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박종국	2022. 1. 24.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황남례	2022. 1. 24.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김남중	2022. 9. 19.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	2023. 7. 24.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황철주	2022. 9. 19.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장	김근한	2023. 7. 24.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김원진	2022. 9. 19.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장	최 걸	2022. 1. 24.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권을식	2022. 1. 24.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김택준	2023. 7. 24.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최배근	2023. 7. 20.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국립법무병원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원장	이영호	2022. 1. 24.
행정지원과장	강의곤	2023. 2. 16.
교무과장	김동민	2023. 7. 24.
분류보호과장	이지영	2023. 7. 1.
호송과장	차영환	2022. 9. 19.
의무과장	공석	
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	2023. 1. 16.
행정지원과장	김영재	2023. 1. 16.
교무과장	이용재	2023. 7. 24.
분류보호과장	곽칠선	2023. 7. 24.
의무과장	시현욱	2019. 2. 18.
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김기근	2022. 9. 19.
교무과장	양병곤	2023. 1. 16.
분류보호과장	김용수	2023. 7. 24.
의무과장	공석	
광주소년원		
원장	신원식	2023. 1. 16.
행정지원과장	김경모	2023. 7. 24.
교무과장	홍재성	2023. 7. 24.
분류보호과장	김정렬	2023. 7. 24.
의무과장	김재휴	2022. 10. 31.
전주소년원		
원장	염정훈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정태권	2022. 9. 19.
교무과장	성봉호	2023. 7. 24.
분류보호과장	공석	
의무과장	김학성	2019. 7. 1.
대전소년원		
원장	장재원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김용수	2023. 1. 16.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2023. 7. 24.
분류보호과장	차풍회	2023. 7. 24.
의무과장	장재호	2012. 11. 1.
청주소년원		
원장	공석	
행정지원과장	조윤식	2023. 7. 24.
교무과장	김현정	2023. 1. 16.
의무과장	전승화	2015. 10. 26.
안양소년원		
원장	김대요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부영준	2023. 7. 24.
교무과장	이춘희	2023. 7. 24.
의무과장	최원석	2015. 7. 30.
춘천소년원		
원장	오상섭	2023. 1. 16.
행정지원과장	김영진	2023. 1. 16.
교무과장	변형섭	2023. 1. 16.
분류보호과장	박정일	2023. 1. 16.
의무과장	공석	
제주소년원		
원장	정 윤	2023. 7. 24.
행정지원과장	김종준	2023. 1. 16.
교무과장	남철호	2022. 9. 19.
의무과장	최병선	2018. 10. 19.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원장	권기한	2022. 9 19.
행정지원과장	최해규	2023. 7. 10.
교무과장	신달수	2023. 7. 24.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2023. 7. 24.
호송과장	고기원	2023. 7. 24.
의무과장	박정환	2011. 4. 8.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권용목	2022. 9. 1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태호	2023. 7. 24.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재홍	2023. 1. 16.
국립법무병원		
원장	조성남	2019. 2. 11.
의료부장	박재상	2022. 9. 19.
행정지원과장	오유진	2021. 7. 12.
감호과장	김충원	2023. 7. 24.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4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공석	-
검 사	최 용 보	2023. 09. 25.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윤 치 기	2023. 07. 19.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장	정병헌	2022. 9. 26.
총무과장	양원동	2023. 1. 30.
보안과장	박대철	2022. 7. 1.
사회복귀과장	이효선	2022. 9. 26.
분류센터장	손용대	2023. 1. 30.
대구지방교정청		
청장	박호서	2023. 7. 1.
총무과장	윤영주	2023. 7. 1.
보안과장	이정용	2023. 7. 1.
사회복귀과장	황진석	2023. 7. 1.
분류센터장	송진수	2023. 7. 1.
대전지방교정청		
청장	김승만	2023. 7. 1.
총무과장	박기주	2023. 12. 11.
보안과장	김용국	2023. 7. 1.
사회복귀과장	최종일	2023. 7. 1.
분류센터장	김경화	2023. 7. 1.
광주지방교정청		
청장	김동현	2022. 9. 26.
총무과장	윤대하	2023. 1. 30.
보안과장	김남진	2023. 7. 1.
사회복귀과장	주기남	2023. 7. 1.
분류센터장	이남구	2023. 7. 1.
서울구치소		
소장	김문태	2023. 11. 27.
부소장	박원규	2023. 11. 27.
총무과장	송재열	2023. 7. 1.
보안과장	오선호	2023. 11. 27.
의료과장	이병연	2019. 8.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구교도소		
소장	김남주	2022. 9. 26
부소장	최창호	2023. 11. 27.
총무과장	류일열	2023. 7. 1.
보안과장	임유정	2023. 7. 1.
의료과장	정원석	2022. 9. 26
대전교도소		
소장	남준락	2023. 12. 11.
부소장	정진우	2023. 7. 1.
총무과장	김정학	2023. 7. 1.
보안과장	박승률	2023. 1. 30.
의료과장	이준호	2009. 2. 17.
논산지소장	허영열	2023. 7. 1.
광주교도소		
소장	최규철	2022. 9. 26.
부소장	최세림	2023. 7. 1.
총무과장	이성하	2023. 7. 1.
보안과장	장귀남	2023. 7. 1.
의료과장	강기영	2022. 9. 26.
안양교도소		
소장	하영훈	2023. 1. 30.
부소장	박정민	2023. 7. 1.
총무과장	김수철	2020. 11. 7.
보안과장	박병근	2023. 7. 1.
의료과장		
부산구치소		
소장	신동윤	2023. 1. 30.
부소장	이영성	2023. 7. 1.
총무과장	김홍대	2023. 7. 1.
보안과장	이현국	2023. 7. 1.
의료과장	양정원	2023. 7. 2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원구치소		
소장	이홍연	2023. 1. 30.
부소장	허만혁	2023. 7. 1.
총무과장	김 승	2023. 7. 1.
보안과장	정상필	2023. 7. 1.
의료과장	조재관	2020. 2. 24.
평택지소장	이성호	2023. 7. 1.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김도형	2023. 1. 1.
부소장	김희곤	2023. 7. 1.
총무과장	이일환	2023. 7. 1.
보안과장	정영모	2022. 9. 26.
의료과장	강승원	2021. 9. 13.
인천구치소		
소장	오세홍	2022. 9. 26.
부소장	한희도	2023. 1. 30.
총무과장	최장문	2023. 7. 1.
보안과장	황인균	2023. 7. 1.
의료과장	김찬성	2022. 1. 24.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서호영	2023. 1. 30.
부소장	김봉영	2023. 7. 1.
총무과장	김성열	2023. 7. 1.
보안과장	백성현	2023. 7. 1.
의료과장	박종민	2016. 9. 26.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안영삼	2023. 1. 30.
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장	윤창식	2022. 9. 26.
총무과장	손은경	2023. 1. 30.
의료과장	곽연우	2016. 10. 5.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장종선	2021. 8. 30.
부소장	박은옥	2023. 7. 1.
총무과장	이희동	2023. 11. 27.
보안과장	이병훈	2023. 7. 1.
의료과장	한주섭	2002. 1. 21.
시설과장	엄동철	2023. 5. 20.
전주교도소		
소장	박경선	2023. 1. 30.
총무과장	조항덕	2023. 7. 1.
보안과장	김만헌	2023. 7. 1.
의료과장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주교도소		
소장	류동수	2022. 9. 26.
의료과장		
부산교도소		
소장	최진규	2023. 1. 30
총무과장	김태훈	2023. 7. 1.
의료과장	윤종철	2015. 7. 14.
의정부교도소		
소장	김재술	2022. 7. 4.
총무과장	김지명	2023. 7. 1.
의료과장	주재호	2021. 9. 13.
창원교도소		
소장	김학봉	2022. 9. 26.
의료과장		
순천교도소		
소장	김종곤	2022. 1. 24.
의료과장	박경철	1996. 9. 1.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장원재	2024. 7. 1.
의료과장		
포항교도소		
소장	주정민	2023. 7. 1.
의료과장	우재택	2019. 8. 7.
진주교도소		
소장	조형근	2023. 7. 1.
의료과장	이진철	2007. 12. 13.
목포교도소		
소장	서호성	2023. 1. 30.
의료과장	강 철	1990. 6. 26.
대구구치소		
소장	김영광	2023. 7. 1.
의료과장	이재광	2005. 11. 7.
군산교도소		
소장	오우정	2023. 7. 1.
의료과장	장성용	2006. 4. 17.
청주교도소		
소장	윤순풍	2023. 1. 1.
의료과장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 안 교 도 소		
소 장	강 기 천	2023. 1. 30.
의 료 과 장	신 준 식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 장	이 현 주	2023. 1. 30.
의 료 과 장	최 창 학	2011. 1. 1.
춘 천 교 도 소		
소 장	육 근 우	2023. 7. 1
의 료 과 장		
원 주 교 도 소		
소 장	서 민	2022. 9. 26.
의 료 과 장	김 영 진	2015. 6. 18.
안 동 교 도 소		
소 장	박 상 용	2022. 9. 26.
의 료 과 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 장	강 성 헌	2022. 9. 26.
의 료 과 장	계 영 남	2019. 7. 22.
청 주 여 자 교 도 소		
소 장	이 규 성	2023. 1. 30.
의 료 과 장	박 병 철	2018. 3. 13.
김 천 소 년 교 도 소		
소 장	남 창 식	2023. 7. 1.
의 료 과 장	최 인 환	2008. 1. 24.
공 주 교 도 소		
소 장	조 진 호	2023 1. 30.
의 료 과 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장	조 관 성	2023. 7. 1.
의 료 과 장		
울 산 구 치 소		
소 장	안 경 수	2023. 7. 1.
의 료 과 장	서 보 균	2020. 3. 9.
정 읍 교 도 소		
소 장	심 성 일	2023. 1. 30.
의 료 과 장		
거 창 구 치 소		
소 장	김 찬 우	2023. 1. 30.
의 료 과 장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 주 교 도 소		
소 장	배 경 석	2023. 7. 1.
의 료 과 장	박 재 홍	2018. 8. 20.
홍 성 교 도 소		
소 장	박 석 규	2022. 7. 4.
의 료 과 장	윤 성 로	1994. 11. 12.
서 산 지 소 장	제 환 국	2022. 9. 26.
경 주 교 도 소		
소 장	김 철 민	2023. 7. 1.
의 료 과 장	조 윤 철	2012. 1. 9.
통 영 구 치 소		
소 장	정 인 식	2023. 1. 30.
의 료 과 장		
밀 양 구 치 소		
소 장	최 재 우	2023. 7. 1.
의 료 과 장	전 윤 식	2014. 5. 12.
상 주 교 도 소		
소 장	윤 양 호	2023. 7. 1.
의 료 과 장	박 현 우	2022. 10. 4.
강 릉 교 도 소		
소 장	허 덕 환	2023. 7. 1.
의 료 과 장	한 명 식	2023. 7. 5.
영 월 교 도 소		
소 장	윤 상 륜	2023. 1. 30.
의 료 과 장	김 건 도	2015. 6. 23.
장 흥 교 도 소		
소 장	조 병 주	2022. 7. 4.
의 료 과 장	김 규 정	2020. 2. 17.
해 남 교 도 소		
소 장	지 경 선	2023. 7. 1.
의 료 과 장	최 영 기	2017. 4. 10.
충 주 구 치 소		
소 장	김 선 희	2023. 7. 1.
의 료 과 장		
강 원 북 부 교 도 소		
소 장	김 성 호	2023. 1. 30.
의 료 과 장	손 승 재	2021. 12. 20.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종민	2022. 1. 1.
지원국장	이호원	2023. 2. 8.
심사1국장	길강묵	2023. 8. 17.
심사2국장	김태완	2023. 9. 16.
총무과장	박진수	2023. 2. 8.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2022. 9. 19.
총무과장	이한태	2023. 11. 7.
관리과장	김세진	2022. 8. 21.
이민특수조사대장	김홍규	2023. 2. 8.
출입국정보화센터장	김희성	2022. 7.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이동휘	2022. 3. 8.
관리과장	김기락	2023. 8. 31.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2023. 3.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공 석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2023. 2. 8.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공 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문수용	2023. 2. 8.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본준	2023. 2. 8.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모	2023. 2. 8.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종복	2022. 1. 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종국	2023. 9. 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임선봉	2022. 7. 2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수근	2022. 1. 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대열	2022. 1. 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문한	2023. 2. 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용규	2023. 8. 17.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공 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권택성	2023. 2. 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성	2023. 2. 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성록	2023. 2. 8.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박찬순	2022. 7. 25.
청주외국인보호소장	나현웅	2023. 11. 7.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류재석	2023. 8. 17.

제6절 인사

•총 괄

(2023. 1 ~ 12월)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3,791	2,662	8,085	1,770	1,233
검 사		1,501	0	1,261	95	145
일반직	소 계	12,290	2,662	6,824	1,675	1,088
	본 부 (연 수 원)	384 (67)	91 (0)	178 (57)	35 (0)	39 (10)
	검 찰 청	4,382	890	2,757	366	369
	보 호 기 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1,454	258	946	104	146
	지 방 교 정 청 (구 치 소 , 교 도 소)	4,998	1,208	2,217	1,102	471
	출 입 국 · 외 국 인 기 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005	215	669	68	53

제 7 절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23. 1 ~ 12월)

직급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118	56	20	101
검 찰 총 장	1	-	-	1
검 사	117	56	20	101

• 일반직

(2023. 1 ~ 12월)

기관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189	9	4	176
본 부	85	1	-	84
검 찰 청	48	5	2	41
교 정 기 관	19	1	-	18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8	1	2	5
출입국·외국인기관	28	1	-	27
법 무 연 수 원	1	-	-	1

제8절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23. 1. 1. ~ 12. 31.)

예방일	국 명/기관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 3.	태국	주한 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	왓타나쑤와꾼 니티팟	• 태국인 불법체류 현황 및 대책 방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30.	UNHCR (유엔난민기구)	UNHCR 선임보호관	오호 르부샤	• 재정착난민, 대안적 방식 보호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9.	몽골	주한 몽골대사	에르데네촉트 사란토고스	•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14.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식재산존중국장	제프 레브스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공동세미나 등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국제법무국
2. 23.	싱가포르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회장	그레고리 비자옌드란	• 법무부-싱가포르 변호사협회 간 소개 및 질의	국제법무국
4. 12.	유럽연합	유럽연합 사법담당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집행위원 등 3명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실천방안 등 논의	인권국
4. 20.	ICC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법원장	클라우디아 살로몬	• 국제중재 활용도 제고 및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국제법무국
4. 27.	UNHCR (유엔난민기구)	UNHCR 최고대표보	질리안 트릭스 등 5명	• 난민업무 관련 교류 협력 등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 1.	필리핀	교정국장	Gregorio Pio Catapang	• 대한민국 교정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 및 벤치마킹	교정본부
5. 19.	몽골	이민청장	우간바야르 네르구이	•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기관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5. 24.	휴먼라이츠워치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	티라나 하산 사무총장 등 4명	•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 등 논의	인 권 국
5. 26.	국제사형제반대 위원회	국제사형제반대 위원회 위원	차히야 엘벡도르지 위원 등 4명	• 사형제 관련 논의	인 권 국
5. 30.	싱가포르	재활총괄단장	Terrence GOH	• 대한민국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 및 관심사항 질의	교정본부
6. 7.	필리핀	주한필리핀대사	Maria Theresa Dizon-De Vega	• 양국 간 법무 교류 및 협력 강화, 법무 협력 MOU 체결 논의	국 제 법 무 국
6. 8.	유엔 인권최고 대표사무소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정진성 교수 등 4명	• 국내외 인권상황 논의	인 권 국
6. 19.	영국	영국 법무부 정무차관, 주한영국대사	마이크프리어, 콜린 제임스 크룩수	• 양국 간 법무 교류 및 협력 강화	국 제 법 무 국
7. 20.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장	키쿠치 히로시	• 양국 협력관계 강화 위해 장관 예방 •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8. 4.	중국	주한중국대사 총영사	중훙눠	• 양국 간 출입국·이민 관련 협조 사항 논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8. 28.	몽골	판결집행청 부청장	Dashdavaa B.	• 대한민국 교정행정 이해를 위한 교정본부 방문 및 교정시설 참관	교정본부
9. 5.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과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
10. 17.	말라위	교정본부장	Wiscot Masauko	• 대한민국 교정행정 이해를 위한 교정본부 방문 및 교정시설 참관	교정본부
10. 18.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CBP 주재관	피트 아코스타	• 미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정보 공유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기관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0. 20.	카자흐스탄	이민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아탈리코브 아슬란	• 협력관계 구축 및 현안 논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0. 27.	홍콩	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Winsome Au	• 법무부-ICSID 간 협력관계 강화	국제법무국
10. 31.	ICSID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사무총장	맥 키니어	• 법무부-ICSID 간 협력관계 강화	국제법무국
11. 3.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 법위원회)	사무총장	안나 주빈브렛	• 법무부-UNCITRAL 간 협력관계 강화	국제법무국
11. 6.	우즈베키스탄 총리실	우즈베키스탄 총리실 제1차장	Toychiev Nusratbek	• 한국 보호관찰 분야 자료 수집을 위한 법무부 방문	범죄예방정책국
11. 6.	몰타	외교장관	이안 보그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추진 논의 및 양국 협력 방안 논의차 장관 예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15.	캐나다	캐나다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이주 지역국장	타일러 알렐	•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양국 이민·난민 정책 공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29.	UNHCR (유엔난민기구)	UNHCR 부대표	켈리 클레멘츠 등 5명	• 난민 정책 관련 상호 의견교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29.	스리랑카	주한스리랑카대사관 2등 서기관	디아스 갈라가마 아라치 도나 사치니	• 현안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12.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차관	응우엔 바 환	• 베트남 계절근로자 송출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목적으로 차관 예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13.	캄보디아	이민청장	속 비에스나	• 한-캄보디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13.	중국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	• 신년 인사	법무실
12. 19.	조지아	주한 조지아대사	파파스쿠아 타라쉬	• 사증면제 방안 및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 논의차 본부장 예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23. 1. 1. ~ 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 8. ~ 1. 14.	오스트리아	• UN사이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4차 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 16.	화상회의	• 한-에콰도르 SECA 회기 간 협상 참석	전무위원 김희은	국 제 법 무 국
1. 15. ~ 1. 21.	오스트리아	• UNODC 확산금융 네트워크 전문가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 23. ~ 1. 27.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 개선) 제44차 회의	서기관 엄영신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1. 23. ~ 2. 1.	스위스	•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이노공 차관 외 9명	인 권 국
2. 7. ~ 2. 11.	인도	• IPEF 특별협상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2. 12. ~ 2. 15.	일본	• 아태지역 형사사법포럼(Crime-AP)	국제형사과장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2. 13. ~ 2. 17.	네덜란드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관할권 작업반	사무관 최승은	국 제 법 무 국
2. 13. ~ 2. 17.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중소기업) 제39차 회의	법무관 강윤성	국 제 법 무 국
2. 19. ~ 2. 23.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2. 22. ~ 2. 24.	대만	•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한-대만 MOU 체결	국제형사과장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2. 27. ~ 3. 4.	아일랜드	• 재정착난민에 관한 실무회의(WGR)	권강이 출입국관리주사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2. 28. ~ 3. 4.	인도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3. 6. ~ 3. 11.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1분기 정례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3. 12. ~ 3. 17.	인도네시아	• IPEF 2차협상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3. 12. ~ 3. 16.	파리	•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검사 정성두	법 무 실
3. 27. ~ 3. 31.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개선) 제45차 회의	국제투자분쟁과장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3. 27. ~ 3. 31.	화상회의	• 제110차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참석	사무관 임세영	국 제 법 무 국
4. 8. ~ 4. 16.	미국 뉴욕	• 제65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제4실무작업반 회의	검사 석수민 외 1명	법 무 실 국 제 법 무 국
4. 15. ~ 4. 25.	뉴욕	• 유엔 상거래법 위원회 제62차 회의 참석	서기관 김진원	법 무 실
5. 8. ~ 5. 12.	미국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복합운송증권) 회의	사무관 임세영	국 제 법 무 국
5. 10. ~ 5. 14.	싱가포르	• IPEF 3차협상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5. 20. ~ 5. 27.	오스트리아 몬테네그로	• 유엔 CCPCJ 및 몬테네그로 당국 실무협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5. 23. ~ 5. 28.	인도	•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5. 24.	화상회의	• 한-칠레 FTA 제7차 개선협상(지식재산권 분과)	사무관 임세영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5. 24.	화상회의	• 아시아문서 감식네트워크(ANDEX) 웨비나	김종무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5. 30. ~ 6. 2.	서울 (법무부)	• 제1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
6. 7. ~ 6. 11.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35차 정기총회 참석	검사 심재신 외 1명	법 무 실
6. 8.	화상회의	• 한-EU IP 다이얼로그 참석	전문위원 김은경	국 제 법 무 국
6. 11. ~ 6. 16.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2분기 정례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6. 18. ~ 6. 30.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사이버범죄 협약위원회(T-CY) 총회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6. 18. ~ 6. 24.	파리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참석	검사 박광호	법 무 실
6. 20. ~ 6. 25.	프랑스	• 제51차 OECD 국제이주작업반(WPM) 정례회의	홍인표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6. 21.	서울	•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본회의 참석	검사 이성직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6. 21. ~ 6. 25.	인도네시아	• 아세안 초국가범죄에 관한 고위급 회의(SOMTC)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7. 3. ~ 7. 7.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6차 본회의	사무관 최승은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7. 5. ~ 7. 8.	캄보디아	• 형사사법공조 현안 사건 해결방안 등 논의	국제형사과장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7. 16. ~ 7. 23.	미국	• ICC 로마규정 채택 25주년 기념행사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8. 8. ~ 8. 12.	태국	• 제2차 APT 이민청장회의	하용국 외국인정책과장 외 1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8. 18. ~ 8. 23.	인도네시아	• 아세안 초국가범죄에 관한 각료급 회의(AMMTC)	국제형사과장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8. 27. ~ 9. 3.	미국	• UN 사이버범죄협약 임시위원회(AHC) 6차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9. 10. ~ 9. 12.	화상회의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서비스 국내규제(SDR) 분과)	검사 이성직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9. 17. ~ 9. 20.	아랍에미리트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공식협상(지식재산권 분과)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9. 17. ~ 9. 19.	카자흐스탄	• 형사사법공조 현안 사건 해결방안 등 논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9. 20. ~ 9. 24.	프랑스	• FATF 정책개발 실무그룹(PDG) 회기간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0. 2.	서울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2차 공식협상(서비스 분과)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10. 4. ~ 10. 7.	필리핀	• 국제공조를 위한 필리핀 유관기관 실무 협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0. 5. ~ 10. 9.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36차 정기총회 참석	검사 심재신 외 1명	법 무 실
10. 9. ~ 10. 15.	프랑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3분기 정례회의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0. 9. ~ 10. 13.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ISDS 제도 개선) 제46차 회의	서기관 엄영신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10. 9. ~ 10. 11.	프랑스	• 이주전문가 그룹(SOPEMI) 연례회의	이향숙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0. 14 ~ 10. 22.	오스트리아 비엔나	• 제66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제4실무작업반 회의	검사 최형규	법 무 실
10. 15. ~ 10. 25.	스위스 제네바	•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 참석	검사 김영민	법 무 실
10. 16.	화상회의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6차 공식협상(디지털경제, 서비스 국내규제(SDR) 분과)	검사 이성직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 17. ~ 10. 24.	스위스	• 제5차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승재현 인권국장 외 14명	인 권 국
10. 21. ~ 10. 27.	네덜란드	• SeaJust 컨택포인트 헤이그 방문	검사 윤기선	검 찰 국
10. 22. ~ 10. 29.	프랑스	• FATF 총회 및 실무그룹 회의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0. 26.	서울	• 한국-걸프협력회의(GCC) FTA 제8차 공식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10. 29. ~ 11. 1.	이란	• 국제수형자 이송 조약 협상 회의	검사 전성환	검 찰 국
11. 6. ~ 11. 11.	홍콩, 싱가포르	• 2023년 국제세미나	검사 정성두 외 2	법 무 실
11. 7. ~ 11. 10.	화상회의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7차 공식협상	사무관 심인혜 외 2명	국 제 법 무 국
11. 11. ~ 11. 17.	베트남	• 제41회 APCCA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교정본부장 외 8명	교정본부
11. 12. ~ 11. 16.	파리	• 제46차 OECD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서기관 박세준	법 무 실
11. 21. ~ 11. 23.	화상회의	• 한국-걸프협력회의(GCC) FTA 회기간회의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11. 23. ~ 11. 24.	태국	• 아시아문서 감식네트워크(ANDEX) 제8차 연례회의	이종철 이민정보과장 외 3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1. 26. ~ 12. 3.	비엔나	• 국제연합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유통 가능한 화물증권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VI) 제43회 회의	전문위원 이보미	법 무 실
11. 27. ~ 11. 29.	화상회의	• 한국-걸프협력회의(GCC) FTA 회기간회의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11. 27. ~ 12. 1.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회의	교수 현낙희	국 제 법 무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 29. ~ 12. 10.	미국	• 제22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및 ICC재판관 선거	검사 이진희	검 찰 국
11. 30.	서울	• 대한민국-칠레 FTA 제8차 공식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12. 2. ~ 12. 7.	미국	• 제22차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및 ICC재판관 선거	국제형사과장	검 찰 국
12. 5.	프랑스	•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정부대표단 참석	국제법무지원과장 외 1명	국 제 법 무 국
12. 10. ~ 12. 16.	비엔나	• 제63차 UNCITRAL 제5실무작업반(도산법) 회의 참석	검사 박광호	법 무 실
12. 11. ~ 12. 13.	오스트리아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회의	교수 김정연	국 제 법 무 국
12. 13.	벨기에	• 대한민국-EU 디지털통상협정(DTA) 제1차 공식협상	사무관 심인혜	국 제 법 무 국
12. 13. ~ 12. 15.	이탈리아	•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제82차 총회	사무관 최승은	국 제 법 무 국
12. 13. ~ 12. 15.	스위스	• 제2차 글로벌 난민포럼(GRF)	허진경 출입국관리주사 외 1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 20. ~ 12. 21.	일본	• 제3회 도쿄 출입국포럼	장희정 국적과장 외 2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9절 상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23. 1 ~ 12월)

직급 / 상훈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217	-	93	21	23	74	435	600	740	213	18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37	-	6	15	16	-	-	-	-	-	-
홍조근정훈장	2	-	2	-	-	-	-	-	-	-	-
녹조근정훈장	303	-	-	-	-	37	266	-	-	-	-
옥조근정훈장	214	-	-	-	-	-	-	195	19	-	-
근 정 포 장	165	-	5	5	5	7	89	46	8	-	-
대통령표창	64	-	3	1	2	16	24	12	6	-	-
국무총리표창	48	-	8	-	-	5	21	11	3	-	-
모범공무원	191	-	-	-	-	-	-	179	12	-	-
법무부장관표창	1,193	-	69	-	-	9	35	157	692	213	18
유관기관표창	-	-	-	-	-	-	-	-	-	-	-

• 기 관

(2023. 1 ~ 12월)

기관 / 상훈	계	법무부	검찰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법무부장관표창	68	4	19	13	7	16	9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23.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2023.0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사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홍조근정훈장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배용찬	2023.02.28.	검찰업무 수행 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백재명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영림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광주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성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공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보호관찰소	부이사관	조태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원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구지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부이사관	김대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부이사관	정병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주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백순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홍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이사관	김기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경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동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경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안규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창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문태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재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이사관	오점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전고등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동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교정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유태오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규승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일남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영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동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부이사관	조동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권선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영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영갑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부이사관	윤재원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김기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수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찰부이사관	홍승모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녹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교정관	오종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정관	장인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석주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우형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강병섭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권성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성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재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박영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서기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윤영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홍운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서기관	서보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정관	문해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정관	이재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장우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전승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공주교도소	교정관	자상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최정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정관	한민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박병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이형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보호관찰소	서기관	김영갑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영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서영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송정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사무관	김영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사무관	김혜경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사무관	이순이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송영훈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이주화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진영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정관	차혁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순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철안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휘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이경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임득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정호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표원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용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광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현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사무관	김종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조상범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찰사무관	정창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정평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사무관	차한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권재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사무관	김현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교정청	서기관	장승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고진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길건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박만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손영국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이계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이상돈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임종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강인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박종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편무평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정관	한영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소년원	보호사무관	임충섭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기관	강종모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김성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김주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박종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이기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정경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서기관	백영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시설사무관	양상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서기관	박종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노임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박재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백승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서운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최용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정관	이강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서기관	천원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문희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윤종봉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최창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사무관	서정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김정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창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김금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오미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나용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문주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범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손창열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양기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이종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유은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종명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김희중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이병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이재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송영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명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도춘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조현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이명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최용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주현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권재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김경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김순중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손기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우정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안동교도소	교정관	정관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기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성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이승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정해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권남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박주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서상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엄상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진각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정관	최재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정관	김봉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정관	최연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정관	김현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정관	손창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안종립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김혁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노봉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이숙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허남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이진국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정미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최낙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민상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사무관	김동섭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오금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이인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보호관찰소	서기관	이정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이광열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김정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이창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배영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오현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소년원	보호사무관	김선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동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서기관	최철경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배정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이성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정관	김현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양성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김규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김완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김인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신연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이계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이상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장순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홍중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송태옥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이은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조성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천화정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보호사무관	김종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이개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이병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지병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주인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정관	임성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	교정관	김운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서산지소	교정관	봉철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가군	이기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양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재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주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손은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양형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이학송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한민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문병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유상용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윤종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정관	황봉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관	박윤용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현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김형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원희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정관	문해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정관	박관웅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찰사무관	전경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찰사무관	장순복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사무관	박병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보호사무관	이장행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정관	김영운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권태익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희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손갑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오해운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정관	조오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오성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정관	황명모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광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승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사무관	이성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권귀원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찰사무관	어성국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박병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정관	조대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전화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정관	이수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정관	한창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과학기술서기관	배성용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연수원	검찰수사서기관	편영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정관	김세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정관	안대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사무관	이재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고기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박수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김정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서금용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정관	양규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고등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창옥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광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이규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이기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정관	이희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공업사무관	박광섭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이병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정관	이재국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정용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석봉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오명섭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윤석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김재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문경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박현섭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혜경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임국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고등검찰청	검찰사무관	정병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대홍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수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정관	조현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정영자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서기관	김종말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보호사무관	황혜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보호사무관	문병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강용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병종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사무관	서문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사무관	장철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찰사무관	전호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정관	길강열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배연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우문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정관	하한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성곤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정관	김장윤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용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보호관찰소	서기관	손태억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정관	박종명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최재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구제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이호원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박병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정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정관	왕영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장흥교도소	교정관	곽상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정관	장호익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정관	한현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	노시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고명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간호사무관	문수련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박노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정관	임기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박성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정근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정관	차명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강수웅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노희창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서기관	김일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이상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정관	최영묵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김기룡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정관	백종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정균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정송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여자교도소	교정관	조미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최종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정관	황석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서기관	김현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강신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배성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정관	최병무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강복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김진해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신학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정관	양윤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통영구치소	교정관	이형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포항교도소	교정관	최상권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서산지소	교정관	김주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관	박종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남수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박중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장성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옥조근정훈장	강릉교도소	교감	윤진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이장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정춘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기계운영주사	안근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	임채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김도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	권석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감	정병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북부제3교도소	기계운영주사보	이동율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안희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윤성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욱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조현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주대효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권명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김길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오승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경주교도소	교감	최상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공주교도소	교감	김지훈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김승모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김재곤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김종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서정열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신희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염규섭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광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운전주사보	김태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	이명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	이승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보호주사	이은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보호주사	장채섭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	조종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김종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공업주사	박수정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유재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정자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최기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최상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최한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강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김진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서보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박해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교도소	교감	성경모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박남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윤영옥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이원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이충무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김철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임헌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정회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보호주사	신용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김형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밀양구치소	교감	성귀범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사무운영주사보	나미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부산교도소	교위	최연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김종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김태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박위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박정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정진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구치소	교감	정태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강경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정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유승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운영주사보	김미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사무운영주사보	신순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권봉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신재광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상주교도소	교감	전혜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강동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김현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정태혁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김빈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오정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기계운영주사	우상복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최권덕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한진욱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전혜경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이영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상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종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처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완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준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임중빈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경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곽원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안창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정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감	김영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교감	서종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공업주사	김경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교감	김성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이영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민상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신윤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이종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심상박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이동준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계운영주사	홍주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여주교도소	교감	황성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감	황철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임동식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문정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송영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원종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시설주사	유석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원주교도소	교감	이승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교도소	교감	성언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김남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안태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춘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감	송판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공현철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정상용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조만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전주소년원	보호주사	이명희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강여홍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제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정영필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기계운영주사	서만교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김지호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성근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남순우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운전주사	박남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송윤회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이흥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청주소년원	열관리운영주사	최낙빈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교도소	교감	최혜숙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충주구치소	교감	권태수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통영구치소	교감	서덕순	2023.06.30.	상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김선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릉교도소	교감	김정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감	이원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강원북부교도소	교감	정의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위	조병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교도소	교감	이민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홍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	김광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국립법무병원	간호조무주사보	이현중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군산교도소	교감	이성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김호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전기주사	김희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구치소	교감	이상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	류종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주사	임규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운전주사보	이원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교도소	교감	이용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전소년원	보호주사	김일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신동훈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김갑중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정기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목포교도소	교감	차용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법무부	행정주사	김삼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방송통신주사	김상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공업주사	오매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고등검찰청	운전주사보	박수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교도소	교감	강용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보호주사	강현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이상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	황상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김명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박강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손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이연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구치소	교감	이현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신완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염창권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임채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박진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소년원	보호주사	박정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정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한상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권혁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윤혜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영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순천교도소	교감	양동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동교도소	교감	배세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김근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정용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영월교도소	교감	김주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구치소	교감	박성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울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안미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최영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주사	허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주사	이종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김창환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여규복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인천구치소	교감	한용은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감	안송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장흥교도소	교감	이기술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송규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교도소	교감	윤준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방호주사	조영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전주지방검찰청	전화상담운영주사	채문희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정읍교도소	교감	박석운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교도소	교감	곽대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김창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진주교도소	교감	정환경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감	전양배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교도소	교감	조병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변재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김원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주홍식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천안교도소	교감	천동성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김승원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김태형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박천근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교도소	교감	백봉현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보호주사	민경옥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박삼동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소년원	보호주사	임돈혁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사무운영주사	김성순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홍성교도소서산지소	교감	이규문	2023.12.31.	하반기퇴직자유공

• 외부인사 및 단체

(2023.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변호사 이광수법률사무소		이광수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모란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고영두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김홍식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순국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		김기홍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안양교도소		김철환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김대수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		박상규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홍조 근정훈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안갑준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김천지역협의회		윤상훈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해남지역협의회		한남열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민포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구진섭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홍성교도소		권태만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서울남부교도소		이명자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포장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광주소년원 협의회		나금석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류우현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민포장	(사)논산부여계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형철	2023.11.29.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중앙기독유치원		김추리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통령표창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동대문구가족센터		한미영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김만웅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김진안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김환중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이윤주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홍성지역협의회		이태규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정희명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경북북부제1교도소		김금화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제주교도소		박병해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청주교도소		윤병희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춘천교도소		전택선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주)케이티앤지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경기도 안산시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종환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보호위원 서울서부지소협의회		박건택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 협의회		서정희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이성금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사)영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엄오섭	2023.11.29.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대통령표창	(사)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재업	2023.11.29.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김남원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정숙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수형	2023.04.2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국제이주민씨앗센터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울산동구가족센터		이정숙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국제가정문화원		임정민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제주시가족센터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강원대학교	교수	한건수	2023.05.19.	외국인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성지역협의회		김성일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김현숙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구서부지역협의회		박보석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송점식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고양지역협의회		안효승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군산지역협의회		이정웅	2023.07.07.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부산교도소		곽영호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진주교도소		신계주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서울동부구치소		전기선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서울구치소		정병환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순천교도소		최재원	2023.10.27.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김덕성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선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용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이영수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표래식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협의회		황종연	2023.11.27.	보호관찰 및 사회정착 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공주·청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병권	2023.11.29.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유창효	2023.11.29.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국무총리표창	(사)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정석	2023.11.29.	범죄예방 및 피해자지원 유공

제10절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23. 12월 현재)

소 관 별	계	총리 소속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75	1	24	11	12	3	1	6	4	6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건축협위, 중앙급식관리위,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 (훈령 제136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공석	공석	정책 기획단	기획조정실
2	법무부 직장방위 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비정규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3명	비상 안전	
3	법무부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 (훈령 제1450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1명	기획 재정	
4	법무부 정책연구 심의위원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훈령 1357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 조정 실장	17명	기획 재정	
5	법무부 공적심사 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6~11명	혁신 행정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	법무부 보통징계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5명	혁신행정	
7	법무부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8	법무부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혁신행정 담당관	9명		
9	법무부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0	법무부 성과급 심사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1	법무부 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 차관	5명 이상		
12	법무부 적극행정 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490호)	법무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7명		
13	법무부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법무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492호)	법무부 공무원제안 재심사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등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9명		
14	법무부 자체규제 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96호)	규제신설(강화)되는 경우 규제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및 입안부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차관, 이명로(민간위원)	8~15명	행복민원	
15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심의	정정화(민간위원)	12명		
16	법무부 청원심의회	청원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1503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기획관	5명		
17	법무부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69호)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심의	기획조정실장	8~11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8	법무부 자체평가 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윤종설 (연구위원)	25명	정책성과	
19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6명		
20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훈령 1416호)	법무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3명 이상	정보화데이터	
21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7조 (훈령 1416호)	정보화 의견수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신용태 (교수)	8명		
22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훈령 1360호)제14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5명	양성평등	
23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규칙(훈령 1390호)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자문	법무부 차관, 문유경	12명		
2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운영 규정 제9조 (법무부 훈령 제1484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	이성환 (교수)	13명	형통단	
25	법무자문위원회 (특별분과위 : 가족법특별위, 젠더폭력처벌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장관이 임명	25명 이하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6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 차관	10명		
27	민법개정위원회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훈령 제1476호)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	양창수 (前대법관)	26명		
28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법무부 장관	8명	법무과	
29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0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법무부 차관	6명	국가소송과	
31	국가송무자문위원회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법무부훈령 제1398호)	국가송무의 수행·지휘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한인섭 (교수)	14명	행정소송과	
32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 훈령 제1258호)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 자문	이중기 (교수)	7명	상사법무과	
33	상법특별위원회	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법무부 훈령 제816호)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등의 수행	외부 위원 중 위촉	35명 이하		
34	회계자문위원회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호(법무부 훈령 제858호)	회계원칙의 지정 및 회계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	외부 위원 중 위촉	10명 이하		
35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법조인력과	
36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 장관	8명	검찰과	검찰국
37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1명		
38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9명		
39	검사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 차관	4명		
40	마약류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 국장	4명	형사기획과	
41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 장관	6명		
42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법무부 훈령 제1384호)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43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국장	6명	공공형사과	
44	보안관찰처분심의 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공공형사과	
45	공안사범자료관리 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국장	10명		
46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1004호) 제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국장	4명		
47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 (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국장	4명	국제형사과	
48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 차장 검사	각 9명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49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공석	5명	보호정책과	
50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 차관	7명	치료처우과	
51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이우영 (교수)	6명	감찰관실	감찰관실
52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훈령 제1152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국장 (주재)	30명	인권정책과	인권국
53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 장관	17명	인권구조과	
54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55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56	장애인차별시정 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차관	8명	여성아동인권과	
57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공석	12명		
58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모범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여부 심사 등	법무부 차관	7명	분류심사과	교정본부
59	교화방송 자문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1호(예규 1288호)	교화방송 전문성강화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황제연 (방송인)	12명	사회복귀과	
60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479호)	교정행정 정책에 관한 자문	임대기 (경제인)	15명	교정기획과	
61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심리치료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제1330호) 제8조	심리치료에 관한 사항 자문 등	공석	10명	심리치료과	
62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1239호) 제1조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3	이민정책위원회	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406호)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정인섭 (교수)	20명	외국인정책과	
64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국무총리	28명	외국인정책과	
65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 제22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및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법무부 차관	30명	국적과	
66	법무부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4명	이민통합과	
67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난민심의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8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훈령 제1447호)	출국금지·정지 및 그 기간 연장과 이의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5명	출입국심사과	
69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훈령 제1348호)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차관	8명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70	법무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산자부 고시 제2020-197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법무부차관	5명		
71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예규 제1213호)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장	5명		
72	법무부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운영지침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조정실장	10명		
73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장관	9명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국
74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사항 등 심의		10명		
75	국제사법개정위원회	국제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국제사법 개정 사항 등 심의		10명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23.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71개 기관(본부 1, 소속 270)	34,402
법무부	2실 4국 2본부	781
검찰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6, 지방검찰청 18, 지청 42	10,683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 1	135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6	42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40, 위치추적관제센터 2	2,041
국립법무병원	국립법무병원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64
소년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	974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2, 교도소 39, 지소 3	16,638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출장소 22,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1	2,63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23.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1,34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2, 지소 74, 법문화교육센터 1,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개	81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9, 지소 7, 교육원 1	384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3

法務年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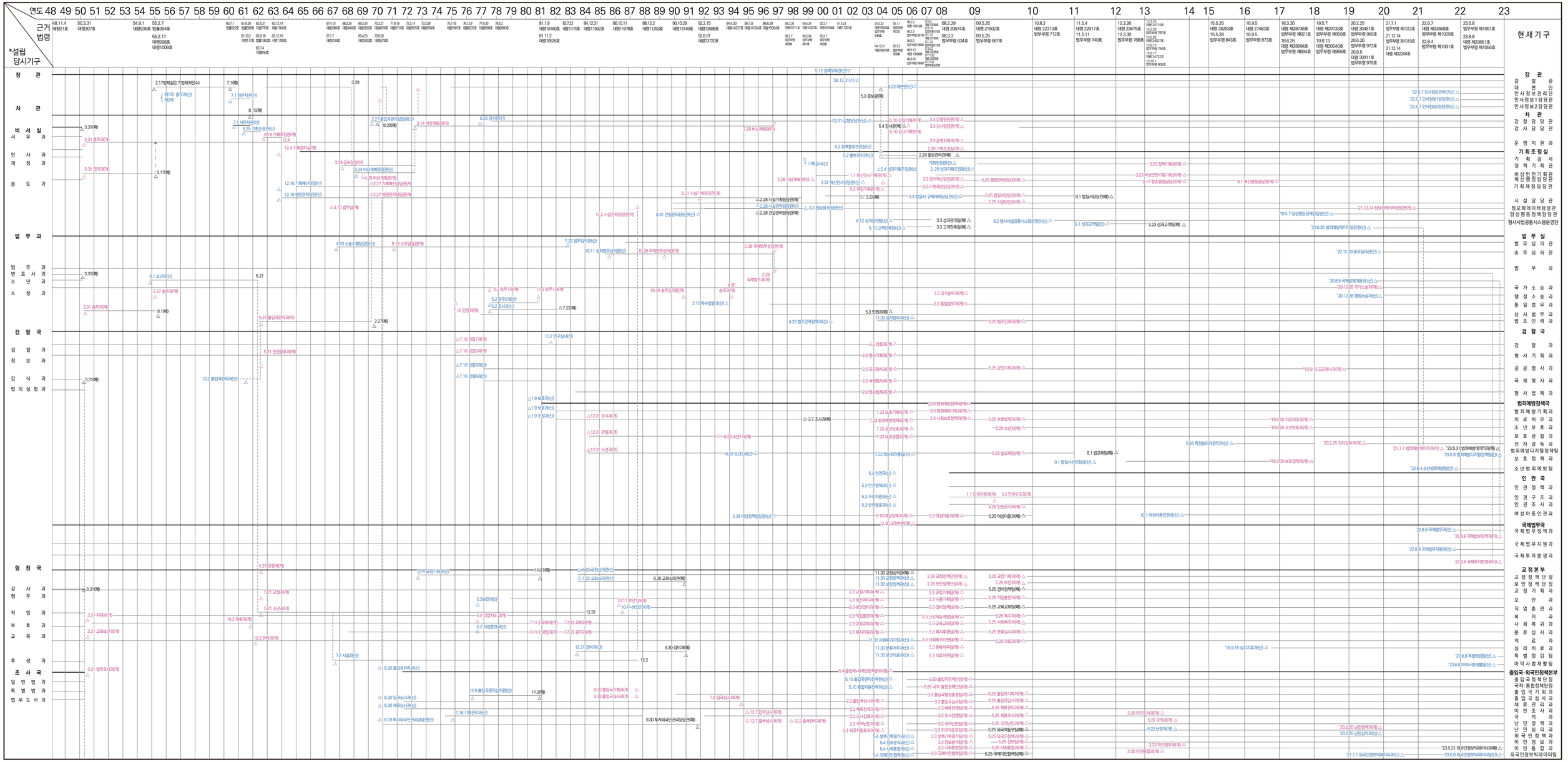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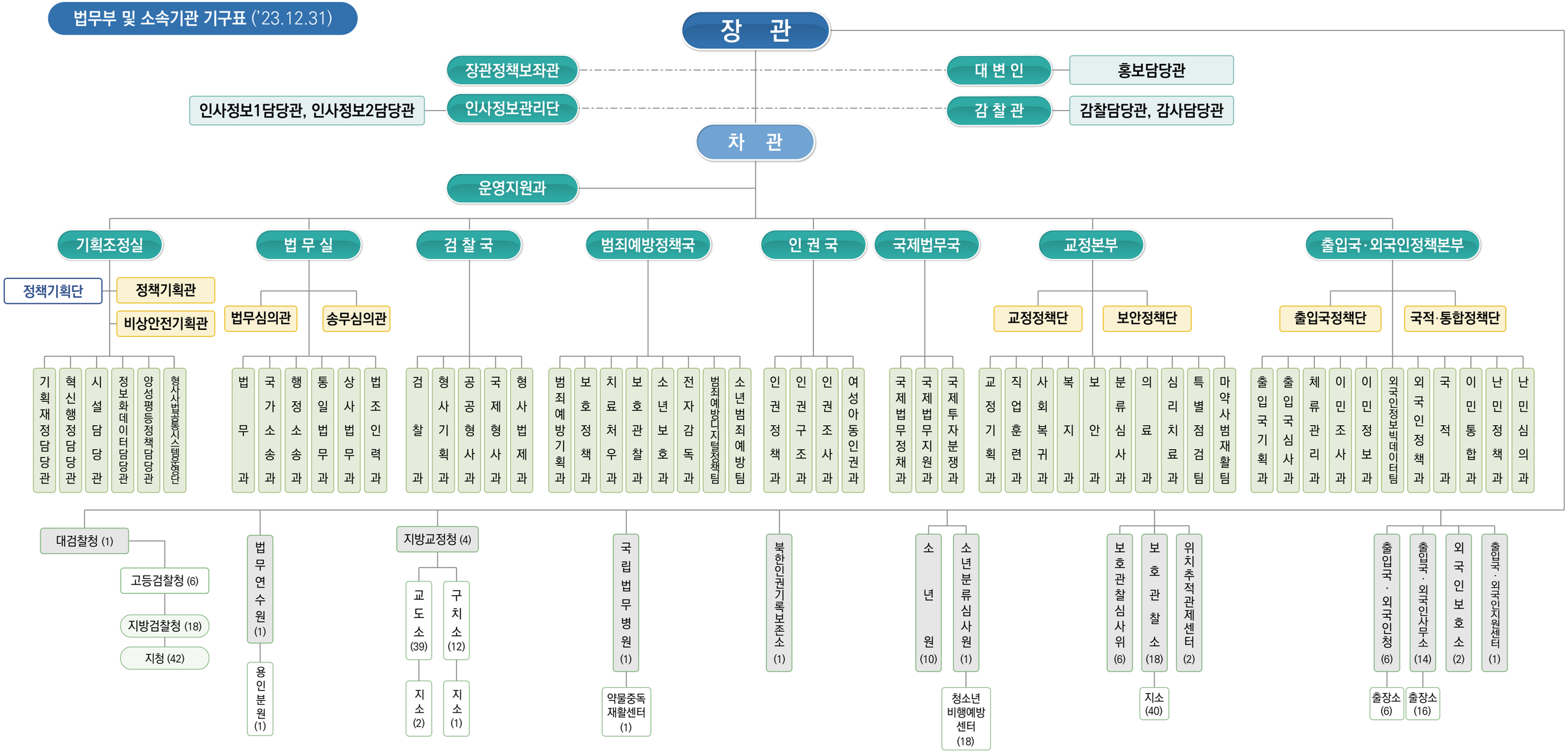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연도
근거 법령
*설립 당시기준
현 재 기 구
장 관
차 관
비 서 실
서 무 과
인 사 과
재 정 과
융 도 과
법 무 과
법 무 과
법 무 과
범 죄 예 방 정 책 국
검 찰 국
검 찰 과
정 보 과
감 식 과
법 의 실 험 과
형 정 국
감 사 과
행 형 과
작 업 과
보 호 과
교 육 과
후 생 과
조 사 국
일 반 법 과
특 별 법 과
법 무 도 서 과
검 찰 국
검 찰 과
형 사 기 획 과
공 공 형 사 과
국 제 형 사 과
형 사 법 제 과
범죄예방정책국
범 죄 예 방 기 획 과
자 료 자 원 과
소 년 보 호 과
보 호 관 찰 과
전 자 감 독 과
보 호 정 책 과
인 권 국
인 권 정 책 과
인 권 구 조 과
인 권 조 사 과
여 성 아 동 인 권 과
국제법무국
국 제 법 무 정 책 과
국 제 법 무 지 원 과
국 제 투 자 분 쟁 과
교정본부
교 정 정 책 단 장
보 안 정 책 단 장
교 정 기 획 과
보 안 과
직 업 훈 련 과
복 지 과
사 회 복 귀 과
분 류 심 사 과
의 료 과
심 리 치 료 과
특 별 검 토 팀
마 약 사 범 재 활 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 입 국 정 책 단 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출 입 국 기 획 과
출 입 국 심 사 과
체 류 관 리 과
이 민 조 사 과
국 적 과
난 민 정 책 과
난 민 심 의 과
외 국 인 정 책 과
이 민 정 보 과
이 민 통 합 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범례: △靑(신설) △赤(개편, 이관) △黑(폐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23.12.31)



법무연감 편집위원

편 집 위 원 장

기 획 조 정 실 장	검 사 장	변 필 건

편 집 위 원

기 획 조 정 실	부 이 사 관	유 지 중
법 무 실	검 사	박 양 호
검 찰 국	검 사	안 홍 균
감 찰 관 실	검 사	장 려 미
범 죄 예 방 정 책 국	부 이 사 관	송 중 일
인 권 국	부 이 사 관	박 진 열
국 제 법 무 국	검 사	조 아 라
교 정 본 부	부 이 사 관	이 희 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 이 사 관	하 용 국
대 변 인 실	홍보담당관	한 정 진
정 책 기 획 단	검 사	박 승 환
운 영 지 원 과	부 이 사 관	김 정 열
법 무 연 수 원	검 사	손 지 혜

편 집 실 무 위 원

기 획 조 정 실	사 무 관	홍 주 영
법 무 실	검 사	김 유 완
검 찰 국	사 무 관	정 근 용
감 찰 관 실	사 무 관	최 병 휘
범 죄 예 방 정 책 국	사 무 관	배 성 준
인 권 국	서 기 관	김 진 섭
국 제 법 무 국	사 무 관	최 승 은
교 정 본 부	교 정 관	승 영 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 무 관	이 주 호
대 변 인 실	서 기 관	이 상 우
정 책 기 획 단	사 무 관	김 경 보
운 영 지 원 과	서 기 관	조 상 민
법 무 연 수 원	사 무 관	박 창 현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24년 5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케이에스센세이션
TEL : (02) 761-0031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012-10

2023

법무연감

법무부